

#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김승권 · 김인숙 · 박동은 · 이배근 · 이용교 · 이재연 · 이호균 · 황옥경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H E A L T H  
A N D S O C I A L  
A F F A I R S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정책자료 2009-04

---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

발행일 2009년 12월  
저자 김승권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19,000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52-4 93330**

본 핸드북은 유니세프에서 2007년도에 발간한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개정3판을 번역한 것이다. 귀중한 자료의 번역을 허락한 유니세프 본부와 한국위원회 관계자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본 핸드북을 위해 번역에 직접 참여해 주신 학계 및 관련 전문가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본 핸드북이 한국사회 아동의 권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번역자별 역할

목 차	번역자
서 문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소장
제1조 아동의 정의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소장
제2조 차별금지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제3조 아동이익 최우선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제4조 협약 내 권리실현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제5조 부모의 지도 및 아동능력발달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6조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	박동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제7조 출생신고, 이름, 국적 및 부모를 알 권리	박동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제8조 신분의 유지	박동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제9조 부모와의 분리	이호균 굿네이버스 부회장
제10조 가족 재결합을 위한 입국과 출국	이배근 중앙입양정보원 원장
제1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이배근 중앙입양정보원 원장
제12조 아동의 관점 존중	이재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제13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	박동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제14조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에 관한 권리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제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박동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17조 정보접근권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18조 국가의 부모공동책임 원칙	이배근 중앙입양정보원 원장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호균 굿네이버스 부회장
제20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이호균 굿네이버스 부회장
제21조 입양	이배근 중앙입양정보원 원장
제22조 난민아동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제24조 보건서비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소장
제25조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정기조사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소장
제26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28조 교육에 대한 권리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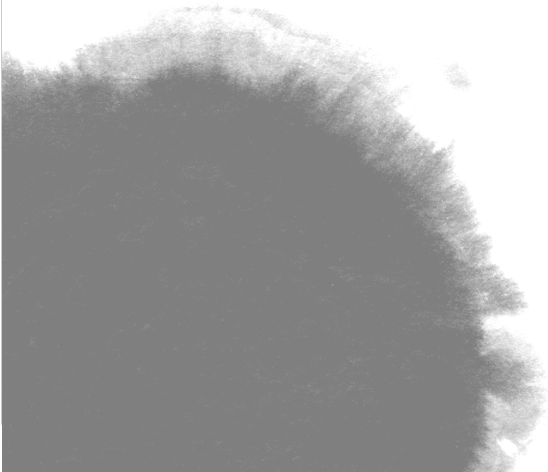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서 문 .....	1
제1조 아동의 정의 .....	11
제2조 차별금지 .....	41
제3조 아동이익 최우선 .....	73
제4조 협약 내 권리실현 .....	95
제5조 부모의 지도 및 아동능력 .....	143
제6조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 .....	159
제7조 출생신고, 이름, 국적 및 부모를 알권리 .....	187
제8조 신분의 유지 .....	217
제9조 부모와의 분리 .....	233
제10조 가족 재결합을 위한 입국과 출국 .....	265
제11조 불법해외이송 및 미귀환 .....	281
제12조 아동의 관점 존중 .....	291
제13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 .....	347
제14조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에 관한 권리 .....	363
제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387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	401
제17조 정보접근권 .....	425
제18조 국가의 부모공동책임 원칙 .....	449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483
제20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	535
제21조 입양 .....	569

제22조	난민아동 .....	589
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 .....	621
제24조	보건서비스 .....	659
제25조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정기조사 .....	721
제26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	735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751
제28조	교육에 대한 권리 .....	777



# 서문





# 서 문

## 목적과 구조

이 안내서의 목적은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과 2000년 채택된 두 선택의정서의 이행 그리고 이들 간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실증함으로써,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각 조항 상 이 안내서는 다음을 망라, 분석하며 요약한다.

- 아동권리위원회의 논평과 권고는 본 협약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되며, 44차례(1991년부터 2007년 2월까지)의 회기에서의 공식 보고서와 동 위원회의 보고서 가이드라인 관련 초록에 근거한다. 여기에는 동 위원회 일반논평의 발췌본과 요약본이 포함된다. 특히, 이 안내서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1차, 2차, 3차 보고서에 대한 동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분석한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에서 연설하는 경우(예를 들어 일반논평, 최종견해를 통해, 그리고 위원회 회기에서의 공식 보고서 혹은 동 협약에 관련된 주제로 위원회가 주최하는 종합토론에서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동 위원회 논평의 특별한 의미는 문장 내에서 “...기울임체...” 형식으로 강조하여 표시된다(개별위원회 회원들의 논평 역시 인용될 수 있지만, 위원회 논평과 동일한 권위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그 인용부분은 강조 표시되지 않는다).
- 동 협약의 준비 작업에서 실례가 되는 논평, 동 협약을 고안한 실무그룹의 회의 보고서

- 동 협정에 비준 또는 가입 시 국가들이 행하는 유보와 선언
- 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두 국제규약(아동권리협약의 많은 조항은 이들 문서에 근거한다), 기타 선언 및 협약들, 청소년 사법에 대한 UN 규정 및 가이드라인, 장애인을 위한 기회평등의 최소표준원칙,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헤이그 협약
- 타 ‘조약 기구’의 관련 일반논평, 특히 인권위원회(시민·정치적 권리 협약에 책임이 있는)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에 책임이 있는)를 포함하여 기타 국제문서의 이행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위원회들
- 아동권리 협약 위원회 최초보고자인 Marta Santos씨가 작성한 장(章)이 수록된 동 협약 상 인권보고 매뉴얼 1997년판에서의 논평
- 타 주요 UN기구 및 기관으로부터의 논평과 권고, 인권과 사회적 발전에 대한 세계 컨퍼런스의 결론과 권고

이 안내서는 지역 인권문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으며, 국제적 혹은 지역적 판례법을 다루지 않는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그리고 동 협약의 당사국의 보고의무는 협약 상 관련 조항(43조와 44조)에서 다루어진다.

이 안내서의 목적은 개별 국가 내의 협약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들에 대한 동 위원회의 논평과 권고를 인용하는 목적은 동 협약의 해석에 있어 실례를 제시하고 이를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특정 국가의 개선 상황을 분석하기 원한다면 해당국의 최초 보고서와 후속 정기 보고서와 함께 위 보고서들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기록과 최종견해를 찾아보기를 권고한다.

이 안내서의 각 조항의 단락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 각 조항의 함축적 의미와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개요
- 각 조항의 개별 요소에 대한 배경과 함축적 의미에 대한 세부적 고찰

- 공식 보고서와 권고들로부터의 일부 사례들(이 안내서는 비정부기구가 제공하는 보고서와 기타 정보들을 분석하지 않는다.) 이 사례들은 각 조항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을 설명하고 실례를 들어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
- 최종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최종 협약이행 체크리스트는 이행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질문들을 제시한다. 이는 또한 협약 상 조항들이 상호의존적임을 강조하며 기타 밀접히 관련된 조항들을 확인한다.
- 부록에는 아동권리협약, 두 선택의정서, 기타 주요 문서의 전문, 그리고 정기 보고서에 대한 동 위원회의 가이드라인(2005년 개정)의 전문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UN 및 UN 관련 기관에 대한 지침과 참고문헌이 수록되어 있다.

## 이행 체크리스트 이용방법

이 체크리스트는 공식적인 권위를 갖지 않는다. 각 체크리스트들은 이행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정부, UNICEF, 타 UN기관 및 국제기구들, 비정부기구 등)을 원조하고, 각 조항이 법률, 정책, 실행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며,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이행과 관련된 것이며,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 체크리스트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동 협약 상 최초 및 정기보고서를 준비하는 당사국에 권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의 공식 가이드라인과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체크리스트는 어떤 조항도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되고 동 협약은 불가분적이며 그 조항들은 상호의존적임을 환기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각 조항의 이행에 있어 아동권리위원회가 강조하는 “일반원칙”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또한 특별히 밀접하게 관련되는 타 조항들이 확인되어야함을 강조한다.

각 체크리스트는 당해 조항에 대한 “협약이행과 관련한 일반적 조치”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협약이행과 관련 있는 정부부서와 기타 기관이 식별 가능하고 적

절하게 조직되어 있는가, 혹은 이행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채택, 예산 분석과 재원 할당, 모니터링 및 평가의 개발, 필요한 교육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이 고안된 것은 “네”, “아니오”, “어느 정도”, “모르겠음(이행의 평가를 위한 입수가능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로 대답하기 위함이다. 각 체크리스트 상 질문들에 “네” 혹은 “아니오”로 대답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답변이 동 협약에의 준수 혹은 비준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 체크리스트는 국가적, 지역적인 사용을 위한 더 상세하고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질문들은 “예”, “아니오” 또는 “모르겠음”과 같은 기초적인 답변을 넘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이행에 대한 완전한 분석과 논평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만일 체크리스트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변했다면, 그 요약은 관련 법률, 정책, 실행을 추구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관련된 모든 아동의 특정한 권리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좀 더 세부적인 정보의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만일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그 상황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위한 초안이 만들어 질 것이다.

“어느 정도”라고 대답한다면, 이행하려는 국가에 대한 정보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모르겠음”이라고 대답한다면, 입수 가능한 관련 정보에 대한 개요가 주어질 것이고, 특정 권리를 이행하도록 결정을 가능케 하는 정보의 차이에 대한 개요가 구성될 것이다.

## 참조(References)에 대한 설명

약식화 된 참조는 문서 전반에 걸쳐 포함되어 있으며, 참조한 참고문헌 및 부록 4에서 언급되는 국제문서 리스트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두문자어는 핸드북 후반부에 설명되어있다.

### 아동권리위원회의 공식보고서

아동권리위원회 공식보고서의 특정시리즈 참조에 대한 축약버전은 이 안내서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가이드라인.** 최초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기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기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들은 동 위원회가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대해서 당사국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원 제목은 다음과 같다.

동 협약 44조 1항 (a)호상 회원국이 제출하는 최초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CRC/C/5, 1991.10.15)

동 협약 44조 1항 (b)호상 회원국이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CRC/C/58, 1996.11.20, 2005.6.3 개정)

**당사국 보고서.** 당사국은 동 협약 비준 2년 이내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매 5년 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핸드북에서의 2차, 3차 보고서 등을 의미한다.

**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모든 최종견해와 예비견해**는 위원회의 제40회기(2005년 9월10월)까지는 “CRC/C/15/Add. ...”등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40회기에서 참조에 대한 분명한 시스템이 UN기록체제로 새로이 채택되었고 이 날 이후로 안내서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당사국 이름의 축약형과 보고서의 번호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CRC/C/CHN/CO/2”는 중국(China)의 제 2차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의미하며, “CRC/C/OPSC/CHN/CO/1”은 아동 인신매매, 아동 매춘, 아동포르노에 대한 선택의정서에의 중국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의미한다.

**회기 보고서.** 공식보고서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각 회기가 끝난 이후에 발행된다. 이 안내서에는, 예를 들어 1994년 1월 제5회기(CRC/C/24)에 대한 보고서와 같이, 모든 참조가 수록되어 있다.

**일반논평.** 일반논평들은 현재 CRC/C/GC/1-10 등 일련의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다. (UN 문서기록 시스템에서 각 인권조약기구를 위한 특별한 기호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를 위한 참조는 “CRC/C/...”로 시작한다. 모든 UN 인권 문서 기호에 대한 설명은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웹사이트: [www.ohchr.org](http://www.ohchr.org) 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기타 주요 문서들

자주 참조되는 기타 주요 문서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아동권리협약에 관련한 유보, 선언과 반대. 이 문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 문서에서 언급되는 판은 CRC/C/2/Rev.8(1999년 12월 7일)이다.

인권조약기구가 채택한 일반적 논평과 일반적 권고의 모음집. 이 문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 문서에서 언급되는 판은 HRI/GEN/1/Rev.8 (2006년 5월 8일)이다.

준비작업: 아동권리 협약을 고안한 “개방형 실무그룹”의 모든 보고서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 이 “개방형 실무그룹”은 1979년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공식 보고서들에서 발췌되어 수정된 것이 1992년 UN 아동권리협약 내의 “준비작업”에 대한 지침 (Sharon Detrick, Martinus Nijhoff 편집 및 수정)으로 발행되었다. 준비작업의 발췌 부분은 이 안내서에서 인용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공식



UN문서에 대한 참조와 위 책에 대한 참조가 수록되어 있다.

2007년 6월 11일 UN, 스웨덴 아동구호연맹과 UN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아동권리 협약의 입법 역사 제1권과 제2권을 발간했다. 이 책은 아동권리 협약의 입법의 역사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제공한다. 또한 이 책에는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승인된 1989년에 이르기까지 십년간의 모든 회의 기록이 포함되어있다.

인권보고 매뉴얼: 주요 국제 인권 문서를 포함하지만 아동권리협약은 다루지 않고 있는 최초판으로서, UN인권센터, UN국제훈련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1991년 발간하였다.

1997년 발행된 새로운 판은 “아동권리협약”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 회의 최초보고자였던 Marta Santos Pais가 집필하였다(이 판은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제네바), UN국제훈련조사연구소(UNITAR), 유엔직원대학프로젝트(1997, Geneva)와 공동으로 발간되었다). 안내서에는 1991년도 인권보고 매뉴얼, 1997년도 인권보고 매뉴얼 등 두 판이 언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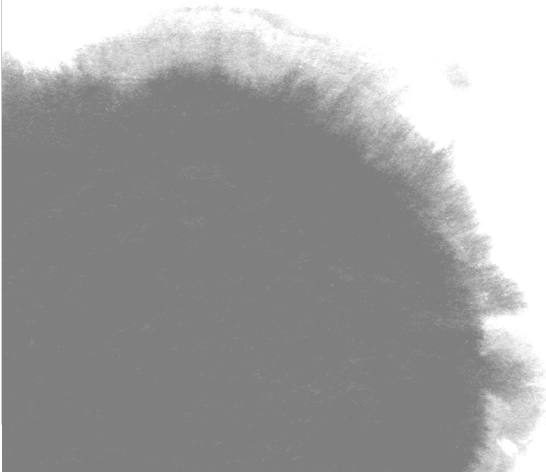
### 위원회의 보고서를 구하는 방법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는 UN 사무총장을 대신하는 동 위원회의 사무국이다. 요약 기록은 모든 대중에 공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동 위원회의 일부 비공식 회의를 위해 작성된다(모든 회의는 동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당사국의 최초 및 정기보고서과 동 위원회의 최종견해, 동 위원회 회기에서의 요약 기록과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동 위원회가 사용하는 세 가지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이에 더하여 동 위원회는 특정 문서를 협약상의기타 “공식”언어(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한 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01

## 제조 이동의 정의





## 제1조 아동의 정의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18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요약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서는 본 협약의 목적상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으로 정의한다. 본 정의는 아동의 시작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본 정의는 아동의 시작점을 출생 시점으로 할 것인지 혹은 태아의 착상기나 임신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본 협약이 만약 낙태 또는 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입장을 포함하는 것이었다면, 협약의 비준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본 협약의 목적은 낙태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특정 국가에서 성인 연령의 기준을 18세 이전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아동기를 18세 생일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권리획득이나 보호 상실을 위한 연령 설정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연령 설정은(제5조와 제14조에 인정되어 있는) 아동이 역량발달을 존중받을 권리와 특별한 보호를 제공해야하는 국가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본 협약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연령을 설정을 하였다.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석방

가능성이 없는 중신형이나 사형의 금지(제39조), 15세 미만인 아동의 징병 또는 적대행위에서의 직접적인 참여 금지(제38조와 무력분쟁에 있어 아동의 관여에 대한 선택의정서)가 그것이다. 또한 취업(제32조)과 형사책임(제40조)에 관해서도 국가가 최소 연령을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위한 연령 설정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제28조).

본 위원회는 국가가 입법과정에서 최저 연령을 정할 때, 협약의 기본원칙, 특히 비차별(제2조, 예를 들어 남아와 여아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혼인가능연령에 이의 제기 하는 것),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및 생명권과 발달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제6조)의 기본원칙에 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아동의 ‘역량변화’(제5조):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 No.7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가 본 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의 주권자임을 강조했다. 아동은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역량변화에 상응하여 권리를 점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CRC/C/GC/7/Rev.1, para. 3). 예를 들면, 의무교육 종료 시의 연령과 노동시작 연령은 일치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는 보고 지침에서,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 및 남아와 여아 사이의 모든 차이들에 대해 구체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청하였다. 본 위원회는 논평에서 당사국이 아동기의 정의를 검토하고 보호의 최저연령, 특히 성적 동의 (sexual consent), 고용과 형사책임에 관한 최저 연령을 높일 것을 장려해왔다. 또한 성차별이 퇴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협약의 목적상 아동기의 시작점

1924년과 1952년 아동권리선언에서는 아동기의 시작시점과 종료점을 정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9년 아동권리협약의 전문에서 “아동은 출생 이전은 물론 출생이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미성숙함으로 인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 장치와 돌봄을 필요로 하다”고 제시된 점은 많은 이의 이목을 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협약의 첫 번째 조항은 아동기 시작점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조항을 만든 이들은 본 협약의 보편적인 수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낙태 및 기타 출생 이전의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동기 시작점을 설정하지 않았다.

위에서 인용된 1959년의 협약을 작성한 실무진 사이에서 선언 전문을 표현하는 방식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에, 실무자들은 “이 전문을 채택함에 있어 실무진들은 제1조 또는 협약의 다른 조항들이 당사국에게 편견을 갖게 하려고 한 의도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을 준비보고서(travaux preparatoires)<sup>1)</sup>에 넣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본 협약은 낙태 및 가족계획과 관련한 권리와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개별국가의 몫으로 남겼다. 이는 본 협약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국내법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상충하면 안 됨을 강조한 제41조와 같은 맥락이다.

본 협약의 대부분은 출생 이후의 아동에게만 적용이 된다. 그러나 많은 국가는 제6조에 명시된 아동의 “타고난 생명권”과 “가능한 최대한으로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근거로, 태아에 대한 특별법 혹은 견해 또한 선언이나 유보입장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는 한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협약의 첫 번째 조항과 관련하여, 아동을 태아가 잉태된 시점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인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RC/C/2/Rev.8, p.13).” 또한 교황청(Holy See)은 그들의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황청은 UN이 아동권리원칙을 기술한 협약이 비준된 법률로써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선언과 아동권리협약 전문의 9번째 문

1) 협약에 대한 협상의 기록들로, 협약을 해석하거나 왜 일부 조항들이 포함, 또는 포함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식견을 제공한다.

단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출생 이후뿐만 아니라 출생 이전의 아동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교황청은 비엔나 협약 제31조에서처럼, 전문의 9번째 문단이 협약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할 때 주요 관점으로 고려될 것을 확신하였다.

반대로 영국은 위의 표현이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룩셈부르크는 본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현재 협약의 제6조가 성관련 정보(sex information), 불법낙태(backstreet abortion) 금지 및 임신 중절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법률을 이행함에 있어 장애물이 되지 않음을 밝힌다(CRC/C/2/Rev.8, p.28).”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의 낙태에 대한 법을 보호하기 위한 유보는 불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본 위원회는 가족계획에 의한 낙태 또는 불법 낙태를 언급하면서, 높은 낙태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낙태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다음의 조항을 유보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헌법 내 가족계획에 관한 헌법 제25조와 유아법 제2조를 준수하여, 이들 법률과 일관되게 아동권리협약의 제6조 의무사항을 이행 할 것이다(CRC/C/2/Rev.8, p.16).”

모든 국가에게 유보조항의 철회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침에 따라, 본 위원회는 중국의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on China’s Initial Report)에서 유보조항을 다시 검토하여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2005년 중국의 두 번째 정기보고(Periodic Report)에서도 요구되었다.

“초기 유년기 아동권리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No.7에서, 본 위원회는 초기 유년기의 아동도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보유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들의 역량이 변화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의무를 이행*



하는데 있어서 권리의 소유자인 유아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아동기 내 각각의 발달단계 동안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본 위원회는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초기 유년기 전체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3).”

본 위원회는 초기 유년기의 “실제적 정의”를 제시했다.

“본 위원회는 모든 유아에게 유년기의 권리를 보장하길 바라며, 초기 유년기에는 출생영아, 학령전기, 학교를 진학하는 시기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출생 이후 8세까지의 기간을 초기 유년기의 실제적 정의로 제시한다. 당사국들은 본 정의의 맥락에서 유아의 의무를 검토해야한다(CRC/C/GC/7/Rev.1, paras. 3, 4).”

## 아동기의 종료

아동에게 적용되는 당사국의 국내법 상 성년기가 조기에 정의되지 않는다면, 아동 권리협약의 목적상 아동기는 18번째 생일에 종료된다. 즉, 본 협약은 아동기 종료시점의 정의에 있어 융통성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규범적인 태도를 취한다.

2003년 “아동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No.4에서, 본 위원회는 다음을 강조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동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주체이다. 청소년은 역량변화에 따라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으며, 그들의 역량이 발달함에 따라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제5조)(CRC/GC/2003/4, para. 1).”

위원회는 국가가 성인기의 시작을 18세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 이를 다시 검토하고 보호연령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다. 예를 들어:

“본 위원회는 국가가 가능한 빨리 범국가적으로 아동에 대한 분명한 법적 정의를 제정

하고, 혼인, 아동 노동과 아동 성적 학대에 관한 형법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령 제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스리랑카, CRC/C/15/Add.207, para. 22)."

200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두 번째 정기 보고서에 대한 견해에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가는 소년사법시스템 등 특정 사례에도 예외 없이, 성인기의 시작을 18세로 법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사우디아라비아, CRC/C/SAU/CO/2, paras. 25, 26)."

도미니카 공화국의 첫 번째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회는 "아동(14세 이하)"과 "청소년(14세에서 18세 사이)"의 구별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 모두 협약의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당사국이 보장해야 한다(도미니카 공화국, CRC/C/15/Add.238, para. 20)."

또한 본 위원회는 지역의 관습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가 제1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예로, 모잠비크, CRC/C/15/Add.172, paras. 23, 24).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중 아동 보호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현 Human Rights Council의 전신: 번역자 주)는 보호 연령이 "불합리적으로 낮게" 설정되어서는 안 되며, 당사국의 법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성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당사국이 자체적으로 본 규약의 의무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규약 제24조는 국가, 사회 그리고 가족은 어떠한 차별 없이 "미성년자"인 모든 아동에게 아동의 지위에 응당한 보호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은 미성년자의 정의 및 성년의 시작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1989년 일반논평 No.17에서 인권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는 각 국가가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조건들에 비추어 결정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보고서에 아동

이 민사상 성년지위를 얻고 형사책임을 갖는 연령이 언제인지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법적 노동연령과 노동법에서 성인이 되는 연령도 언급해야 한다. 나아가 제10조의 문단 2와 3(소년범에 대한 분리된 처우)에 있어서 아동이 성인으로 취급되는 연령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본 위원회는 위와 관련한 연령이 불합리적으로 낮아서는 안 되며, 당사국의 법에서 18세 미만 아동이 성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당사국이 자체적으로 본 규약의 의무사항을 배제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7, 1989, HRI/GEN/1/Rev.8, para. 4, p. 184).”

아동권리협약의 작성 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아동기의 종료시점이 18세 이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양한 보호의 제공을 위해서는 연령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세하였다(E/CN.4/L.1542, pp.3, 6; Detrick, pp.115, 116). 본 협약은 전반적인 협약의 내용 및 일반원칙과 일관성이 있을 경우, 특정 목적으로 인해 18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으로 보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성인의 시작점이 18세 이상인 국가에게도 제1조 “본 규약의 목적상...”을 인정하면서도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 “아동”에 대한 정의를 돌아보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본 협약의 비준 전까지 아동기의 정의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약 제1조는 당사국에게 모든 관련법을 검토하게 하였다. 정기보고(Periodic Reports)를 위한 가이드라인(2005년에 개정)은 당사국에게 “제1조와 관련하여 국내법 및 규정에서 아동에 대한 정의, 특히 남아와 여아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를 제공” 하도록 요청하였다(CRC/C/58/Rev.1, para,19). 본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이 일치하지 않는 당사국에게 이를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 법률제정 시, 특정 최저연령 정의

정기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CRC/C/58) 최초판은 아래에 열거된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국내법에서 정의된 최저 법적 연령”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상당수 사안은 협약의 기타 조항과 관련된 것이며, 조항에 대한 자세한 해석 및 논의는 본 해설서의 해당 장에서 찾을 수 있다.

### 본 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연령”관련 쟁점

1996년에 채택된 정기보고서를 위한 가이드라인(CRC/C/58) 최초판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제1조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 아동에 대한 정의와 관련한 국내법과 본 협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다음에 대해서 국내법에서 정의한 법적 최저연령
  - 부모의 동의 없는 법률 및 의료 상담
  - 부모의 동의 없는 의료적 치료와 수술
  - 의무 교육의 종료
  - 위험한 일, 비상근직 및 상근직을 포함한 노동 및 취업
  - 혼인
  - 성적 동의(sexual consent)
  - 자발적 군입대
  - 군징집
  - 전쟁 참여
  - 형사 책임
  - 체포, 구금, 수감 등 사법행정, 피난처, 복지·보건시설에서 아동의 자유박탈
  - 사형 및 종신형
  - 민사와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정에서의 증언
  - 부모의 동의 없이 고소 또는 법정 및 기타 관련 당국에 시정 요청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법적 절차에 참여
  - 이름 수정, 가족 관계, 입양사실 및 후견인 역의 수정을 포함한 신분 변경에 동의를 구하기
  - 생물학적 가족에 대한 정보 접근
  - 재산 거래 및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역량
  - 집회결사
  - 종교 선택 또는 종교적 학교 교육을 받는 것
  - 알코올과 기타 규제약물 섭취
- 최저 고용연령과 의무교육 완료시점 간의 관련성과 그것이 아동의 교육권에

주는 영향 및 관련 국제 규약의 반영 여부

- 혼인과 성적 동의를 포함하여 남아와 여아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 본 협약의 제2조를 어느 정도 고려하였는지
- 사춘기의 기준이 형사법에서 사용될 때, 여아와 남아에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협약의 원칙과 조항이 고려되고 있는지(CRC/C/58, para 24).”

최저연령과 관련한 정보의 요청은 협약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 특정 연령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 법률상의 아동의 정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뿐이다. 일반적으로 보호를 위한 최저연령은 가능한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유해한 노동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유죄판결, 구류 판결 및 무력 분쟁에의 참여의 경우, 최저 연령은 가능한 높아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역량변화에 대한 존중, 아동의 자율성 획득과 관련한 최저연령이 아동 개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일부 “최저 연령” 관련 시안은 자율성 보장과 아동 보호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에게 법률 및 의료 상담을 받고, 부모의 동의 없이 고소하며,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는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연령제도로 인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최저연령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동의 이익과는 맞지 않는다.

본 협약은 원칙의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령, 아동 권리 획득의 연령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제12조에 따르면, 견해를 형성 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시안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견해는 아동의 성숙도와 나이를 고려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본 협약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인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제5조, 제14조). 특정 권리의 획득을 위한 연령을 법률상

설정한 것처럼,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는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이라는 유연한 개념으로 아동들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할 때 스스로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융통성 없는 연령 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아동이 충분한 이해를 얻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을 존중하지 않는 성인이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본 위원회는 최저 연령을 설정할 때, 모든 국가에게 협약 전체, 특히 일반원칙을 고려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즉, 최저 연령 설정에는 차별이 없어야 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의 정의와 관련하여 비차별 원칙(제2조)의 중요성은 정기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2005년에 개정) 중 당사국에게 남아와 여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에 대해 명시하도록 요청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CRC/C/58/Rev.1, para. 19).

전체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일관되게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기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최초판에서 본 위원회가 요청한 최저 연령 목록은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당사국의 최초 및 정기 보고서를 심사하는 동안, 연령과 관련된 다음의 추가적인 사안들이 제기되었다. 투표연령, 선거에 입후보 할 연령, 아동의 독립적 여권획득 연령, 특정 미디어(영화, 비디오 등) 접근에 대한 연령, 종교 수도회 및 종교 커뮤니티 입문 연령.

다음은 정기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최초판에서 제1조에 의거하여 정보를 요청한 사안이다.

## 부모의 동의 없는 법률 및 의료상담

가이드라인에서 “국내법에 정의된 모든 법적 최저연령”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본 위원회는 최저 연령을 독자적으로 법률 또는 의료상담을 받기에 낮은 연령을 법정 연령으로 설정하는 것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이 질문은 아동이 권리로부터 배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언을 구할 권리가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결정할 권리는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에 따라 부여될 것이다.

**법률 상담.**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는 본 협약에서 보장된 많은 권리의 집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의 이익과 부모의 이익이 다르거나 상충될 경우에 중요하게 강조되는데, 예를 들어 가족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성적학대와 같은 아동폭력, 이름 또는 국적과 관련한 아동권리에 대한 논쟁, 부모와의 분리, 가족 재결합, 불법이송 및 납치, 입양, 노동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 등이 발생했을 때이다.

아동이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 또는 고소되었을 때 법적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0조 2항(b)(ii)에 언급되어 있으며, 자유가 제한된 아동의 경우에는 제37조 (d)에 따라 “법적 및 기타 적절한 지원에 대한 즉각적으로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해(제12조 2항)”, 아동이 진술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부모와의 분리와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때(제9조)에 아동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 상담.** 부모의 동의 없이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는 협약에서 보장된 많은 권리를 집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아동의 이익과 부모의 이익이 다르거나 상충하는 경우에 매우 필요한 권리이다. 예를 들어, 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치료 결정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의견이 다른 경우, 그리고 성, 피임, 조기 임신의 위험 등에 관한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등이 있다. 상담과 조언을 받을 아동의 권리는 아동이 독립적으로 치료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의 획득연령과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 (e)는 아동과 부모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에 대해 국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No.4에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본 협약 제3조, 제17조, 제24조에 의해 당사국은 청소년에게 혼인 여부 및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과 생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족계획, 피임, 조기 임신의 위험, HIV/AIDS의 예방과 성감염질환(STDs)의 예방과 치료법이 포함된다. 청소년인 남아와 여아의 특유의 권리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정보제공 수단과 방법을 만드는 것은 매우 필수적 업무이다..”*

*“사생활, 비밀보장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에 관련하여, 당사국은*

*(a) 청소년에게 치료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하여 정보에 대해 고지를 받은 상태에서 동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한 법률 및 규정은 절차와 관련해 연령을 설정해야하고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b) 보건 종사자에게 청소년의 권리 중 사생활 및 비밀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시켜야 하며, 계획적인 치료를 하고 청소년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고지된 후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3, CRC/GC/2003/4, paras. 28, 33, 39, 41. 협약의 전문은 [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에서).”*



## 부모 동의 없는 의료적 처치와 수술

일부 국가는 아동이 의료적 처치에 대해 동의 또는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연령을 설정하였다. 다른 국가의 법령에서는 아동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될 때, 독립적으로 동의 또는 결정보류를 할 권리를 부여한다. 반면, 일부 국가의 경우, 아동이 완전한 발달을 하여 성숙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최저 연령을 법에 규정하였다.

위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 일반논평 No.4에서, 본 위원회는 청소년이 충분히 성숙하다면,

*“청소년은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 치료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면, 부모에게 고지할 수도 있다(제3조)(CRC/GC/2003/4, para. 32).”*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가 혹 문화적 또는 종교적 근거로 의료적 처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이 직접 상황에 개입하여 아동의 의료적 처치를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은 본 협약 제3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한다.

##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

제28조 1항 (a)와 (b)는 당사국이 “점진적이고 동등한 기회”를 원칙으로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화되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중등교육이 장려되어야 하고 “모든 아동들이 중등교육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본 협약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연령을 설정하지는 않았다(제28조). 제32조는 당사국이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명시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상근근무 가능 연령과 의무교육 종료연령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제32조). 또한 의무교육 종료시점과 상근근무 시작시점을 동일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몇몇 국가에서 두 시기의 법적인 연령이 불일치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 위험직업, 상근·비상근직 등 노동 및 취업 허가

제32조는 국가가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모든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취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설정하며, “노동 조건과 시간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함을 명시한다. 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일부 국가에게 최저연령을 높일 것을 권고했으며, 나아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최저연령에 대한 조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해왔다.

## 성적 동의

대부분 국가에서 성적 동의에 대한 아동의 최저연령은 아동이 동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낮은 연령으로 설정되어 있다. 성적 학대와 착취는 폭력 및 강압을 포함한 행동뿐만 아니라, 상호간 합의를 하였거나 합의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특정 연령 미만의 아동과의 성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제19조, 제34조). 따라서 성적 동의가 불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한 가해자는 자동적으로 강간혐의를 받는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성적 동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연령으로 최저연령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일반논평 No.4에서, 본 위원회는 혼인과 성적 동의에 대한 최저연령을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연령은 남아와 여아에게 동일해야 하고(제2조),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권리의 주체자로 보아야 하며, 그들의 진화하는 역량, 연령 및 성숙도(제5조,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위를 인정하여 이를 엄밀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3, CRC/GC/2003/4, para. 9).*

본 위원회는 성적동의에 대한 연령을 높일 것을 여러 국가들에게 제의하였으나, 18세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하지는 않았다.

혼인상태는 배우자와의 성행위를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임을 의미할

수 있다. 정기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최초판은 “혼인과 성적동의를 포함한 문제들에 있어서 법률상 남아와 여아에게 차이가 있는 경우...(CRC/C/58, para. 24).” 본 협약 제2조의 비차별 요건이 고려되었는지 그 여부를 묻는다.

본 위원회는 이성간 성행위와 동성 간 성행위를 동의할 수 있는 법적 최저연령이 다른 것은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노력이 미진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본 위원회는 맨섬(Isle of Man)에게 동성 간 성행위를 동의할 수 있는 법적 최저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이성 간 성행위(16세)와 동성 간 성행위를 동의할 수 있는 법적 최저연령이 다르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본 위원회는 맨섬이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본 협약의 제2조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법적인 성격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영국 - 맨섬, CRC/C/15/Add.134, paras 22, 23. 영국령해외영토 CRC/C/15/Add.135, paras 25, 26).”*

## 혼인

상당수 국가는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 가능한 연령(주로 성년)을 설정하였으며, 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는 혼인 가능 연령을 더 낮추어 설정하였다. 일부 국가는 여아가 임신하였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법정 및 기타 당국의 허가에 더 이른 나이에 혼인을 허가하기도 한다. 아동은 혼인을 함으로써 성년이 되며 협약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혼인 가능연령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일반논평 No.4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본 위원회는 조혼과 임신이 HIV/AIDS를 포함한 성 및 생식과 관련된 건강문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몇몇 당사국의 혼인관련 법적 최저연령과 실제 결혼연령은 모두 매우 낮으며, 이는 여아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 건강 외의 주요한 우려사항으로 결혼한 아동, 특히 여아는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도록 강요받거나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되기도 한다. 또한 몇몇 당사국의 경우, 18세 미만의 혼인한 아동은 법적인 성인으로 취급되며 협약 상 부여된 아동을 위한 모든*

특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남아, 여아 모두가 부모의 동의하에 또는 동의 없이 혼인 가능연령을 18세까지 높이도록 법률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는 바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3, CRC/GC/2003/4, para. 20)."

본 위원회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1994년에 최저연령을 18세로 한 유사한 권고를 내렸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일반논평 No.21, 1994, HRI/GEN/1/Rev. 8, para. 36, 하단 참조).

본 위원회는 많은 국가에게 협약의 제2항을 준수하여 여아와 남아의 혼인 연령이 동일해야 함을 계속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본 위원회는 법적 혼인 최저연령이 낮고, 남아(14세)와 여아(16세)의 법적 혼인 최저연령이 다른 점이 우려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여아와 남아의 혼인 최저 연령을 높이고, 남아와 여아의 최저연령을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조혼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고양 캠페인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한다...(멕시코, CRC/C/MEX/CO/3, paras 21, 22)."

또한 본 위원회는 한 국가에서 법마다 다른 혼인연령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였으며, 본 협약의 일반원칙이 차별을 용인하는 문화적·종교적 배경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는 성인 남녀는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한다. 혼인에 대한 동의, 혼인 최저 연령과 혼인 등록에 관한 조약(The Convention on Consent to Marriage, Minimum Age for Marriage and Registration of Marriages)(1962)은 혼인의 최저 연령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국가는 조혼과 사춘기 이전에 어린 여아를 약혼시키는 행위를 철폐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전문에서도 기술되어있다. 또한 제2조는 모든

국가에게 “혼인최저연령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비부부의 이익과 관련한 중대한 사유로 특별히 혼인을 합법적으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 연령 미만의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1994년에 만든 “혼인과 가족 관계의 평등에 대한 일반논평”에서도 혼인 최저연령을 남성과 여성 모두 18세로 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권고에서 세계 가족의 해(1994년)를 기념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 중 가족 내 여성지위에 대한 특별한 중요성을 다루는 세 가지 조항을 분석하였다. 제16조는 국가가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번째 조항에서는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덧붙였다.

1993년 6월 14~25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강령”은 여아를 차별하고 위해를 가하도록 하는 현재의 법과 규정을 폐지하고, 그러한 관습 및 관행을 중단시킬 것을 국가에게 요구하였다. 제16조 2항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규정은 당사국이 미성년자들 간 혼인을 허용하는 것을 금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법적으로 성년을 더 어린 나이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비엔나 선언의 규정을 유념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의 혼인 최저 연령은 18세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남성과 여성은 혼인을 함으로써 중요한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성숙하고 성인으로써 행동할 능력이 갖추지기 전에 혼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미성년자 특히 여아가 혼인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는 경우, 여아의 건강 상태는 나 빠지고 교육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치권이 제한된다...”

“일부 국가는 남아와 여아의 혼인 최저 연령을 다르게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여아의 지적발달 속도가 남아와 다르다거나, 혼인과 여성의 신체적·지적 발전 정도는 무관하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다른 일부 국가는 여아의 약혼 혹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가족구성원에 의한 혼인을 허용하는데, 이 또한 본 협약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권을 방해한다.”

“당사국은 또한 민법, 관습, 종교법 등에 준거하여 모든 혼인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이를 통해 협약을 준수하고 부부간 평등, 혼인 최저 연령을 보장하며 중혼과 일부다처혼을 금지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No.21, 1994, HRI/GEN/1/Rev.8, paras. 36, 38, 39, p.315).”

### 자원입대 그리고 무력단체로의 징병; 전쟁 참여

아동권리협약의 제38조는 당사국이 15세 미만 아동의 징병을 삼가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연장지를 우선하여” 징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15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2000년 5월 UN 정기총회에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무력분쟁 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에게 지체 없이 본 의정서에 서명하여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선택의정서는 2002년 발효되었으며, 당사국에게 18세 미만 아동은 강제로 징병되지 않아야 하며, 이들이 직접적인 적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요구한다. 선택의정서에 동의한 당사국은 협약에서 15세로 설정되어 있던 자발적 입대 연령을 18세로 올려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징병 최저연령을 15세 이상으로 하며 제네바 협약의 추가 의정서에 비준할 것을 권유해왔다. 본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이 절대 징병되거나 교전에 관여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밝혔다.

## 형사 책임

아동권리협약은 제40조 3항 (a)에서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을 제안한다.

“소년 사법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No.10에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저 연령을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CRC/C/GC/10, paras. 30 이하 참조; 이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는 제40조 참조). 당사국의 최초 및 정기보고서, 본 위원회와의 토론 기록에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연령의 정의가 종종 불분명하다. 일부 당사국에서는 형사법에 있어서 아동이 중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나이가 경범죄로 책임을 지는 나이보다 더 어린 것으로 나타나 매우 모순적인 양상을 보였다.

몇몇 케이스에서 위원회는 형사책임에 대한 최저 연령이 정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본 위원회는 상당수 국가에게 최저연령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8세로 최저연령을 설정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였다. 이와 같은 예는 다음과 같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형사책임에 대한 최저 연령을 높이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소년법에 준거하여 보호해야 하고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에티오피아 CRC/C/15/Add. 144, para. 29).”*

*“본 위원회는 형사책임의 최저 연령이 7세에서 10세로 높아진 점을 주목하긴 했으나, 아직도 그 연령이 매우 낮고 여러 가지 법이 서로 다른 연령을 제시하기도 하여 최저연령의 설정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우려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높이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 받을 것을 권고한다(사이프러스 CRC/C/15/Add. 205, paras. 23, 24).”*

소년법 행정에 대한 UN 최저기준 규칙인 “베이징 규정”은 규정 4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소년의 형사책임에 대한 최저연령 제도를 적용할 때, 최저연령을 너무 낮게 설정해서는 안 되며, 정서적·정신적·지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최저연령을 설정해야 한다(제40조).”

## 자유의 박탈; 투옥

제37조 (b)는 “어떠한 아동도 자유를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투옥은 법률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며, 마지막 수단으로써 최단기간동안에만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언급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자유의 제한에 있어 연령제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회의 논평에서 최저연령이 협약의 기본 원칙, 특히 제2조, 3조, 6조와 연관성 있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유아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소년법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 No.10에서, 본 위원회는 자유의 박탈이 모든 상황에 있어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재판 전 구금을 포함하여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CRC/C/GC/10, paras. 78 이하 참조; 이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는 제37조 참조).

제9조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필수적인’ 때에만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가족으로부터의 아동의 자유에 더 많은 제약을 준다.

정기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판은 “체포를 포함한 자유의 박탈, 구금과 수감, 특히 사법행정, 피난처를 구하는 것, 복지 및 보건 시설에 아동을 보냄에 있어서 (CRC/C/58, para, 24; 제37조)” 국내법에서 정의된 법적 최저 연령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이는 제37조가 형사시스템에서 자행된 자유의 박탈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유의 제한에 적용됨을 보여준다.

## 사형과 종신형

본 협약의 제 37조 (a)는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석방 가능성 없는 사형과 종신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종종 금지사항을 위배하는 경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사형이 실제로는 집행되



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여전히 18세 미만 아동에게 사형 또는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제6조, 제37조).

##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의 법정증언

제12조 2항은 아동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아동이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 본 협약은 최저 연령의 설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본 위원회는 특정 연령 미만의 아동이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증언이 금지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다.

아동이 관여된 민사소송에는 양육권, 부모와의 분리 등 자녀양육, 입양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이슈가 있다.

아동이 관여된 형사소송은 아동이 본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타인이 아동에게 범죄를 행한 경우, 아동이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이 증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사법을 어겨 유죄로 추정되거나 고소된 아동의 경우, 제40조 2항 (b)(iv)에 따라 진술을 강요받아서 안 된다.

본 위원회는 아동의 성적 착취 등 폭력과 착취 예방과 관련한 경우에, 아동의 증언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해왔다. 본 위원회는 아동의 성적 착취 등 폭력과 착취 예방과 관련한 경우에 있어서, 아동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국가에게 권고한다(제19조).

2005년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아동 피해자 및 목격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이는 당사국이 형사법 체계 내에서 아동 피해자와 목격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서다(경제사회이사회 2005/20, 2005. 7. 22.)

## 부모의 동의 없이, 법원 또는 관계 당국에 고소를 하고 시정을 요구함

아동권리위원회는 제12조를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고소절차에 접근가

능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부모의 동의 없이 법원 또는 관계 당국에 고소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는 성적학대 등 가족 내 폭력과 착취에 관련한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 본 협약은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고소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때 아동의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아동이 그러한 권리로부터 배제할 때는 반드시 비차별과 아동최선의 이익 등 일반원칙의 맥락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행정적 절차에 참여하는 것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협약의 제12조 2항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에 관하여 아동에게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명시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이 권리에 관하여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제12조, 제9조).

### 성명, 가족 관계, 입양, 후견인 변경 등 아동의 신분 변경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기

본 협약의 제8조는 국적, 성명, 가족관계 등 아동의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본 협약은 최저 연령 제한을 권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신분을 보존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만이 아동의 모든 신분 변경에 있어서 아동에게 동의를 구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상당수 국가는 최초 보고서에서 입양 시 아동이 입양을 동의 또는 거부를 할 권리를 갖는 최저 연령을 설정하였음을 명시하였다. 본 위원회는 입양 시 아동의 동의를 구하는 최저연령을 낮추기를 권고한다(제21조).

### 생물학적 가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아동권리협약의 제7조는 아동이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가짐을 규정한다.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는 입양 아동과 인공 수태를 통해 태어난 아동에게 특히 중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이 이용하는 정보에 있어 아동의 연령에 법적인 제약을 둔

다. 아동의 출생등록에 기록된 정보의 충분성과 아동의 정보이용 용이성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제7조). 많은 국가는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게 생물학적 부모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였는데, 본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제7조).

### 재산 거래 및 상속이 가능한 법적 역량

일부 국가는 성년기 또는 혼인 이후에 재산상속 및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 역량을 부여하였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최저연령이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다. 본 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거래 및 상속에 대한 법적 최저연령은 반드시 협약의 일반원칙, 특히 비차별과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많은 국가에서 상속 및 재산관련 법과 관행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여성은 아버지 또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 상속 시 환부(홀아버)와 아들에 비해 적게 받는다(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No.21, 1994, HRI/GEN/1/Rev. 8, para. 35, p.314).” 이와 같은 차별은 18세 미만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권리위원회는 상속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해 논평에서 언급하였다(제2조).

### 집회결사의 자유

아동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협약의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는 아동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참여권을 명시한 제12조와 13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부 국가는 최초 보고서에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적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은 집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설정하였음을 밝혔다. 본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결코 지지하지 않음을 밝힌다(제15조).

## 종교를 선택하거나; 종교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 것

본 협약의 제 14조에서는 아동의 사상과 종교의 자유에 대해 명시하였다. 현재 일부 국가는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구체적인 법이 있으며, 다른 국가는 자녀가 종교적인 양육 및 교육을 결정하는 연령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다. 또한 교내에서의 종교교육을 허용하는 국가는 학생이 특정 종교와 관련한 교과 및 예배를 제외하거나 대체교과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있다. 제12조 2항은 국가가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에 맞게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모의 권리 및 의무”에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였다.

## 알코올과 기타 규제약물의 섭취

제33조는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이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는 특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알코올, 담배, 규제약물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때, 연령 설정은 제2조, 3조, 6조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여 설정되어야 한다(제33조).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1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모든 정부 부처 중 협약이행과 관련한 부서 및 기관 명단 작성과 그들의 상호협력(제1조의 아동에 대한 정의는 모든 정부 부서와 관련됨)
- 협약이행 관련 NGO 및 시민단체 명단 작성
- 모든 법안, 정책, 관행이 본 협약에 부합하여 모든 사법권에 속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 검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목표 및 과정지표의 설정이 필요할 때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하는 모든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기타 관련 국제기준을 고려하였는가?
- 국제협력이 필요할 때는 이를 포함하는가?

(이러한 조치들은 협약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정부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

- 예산분석과 필요한 자원의 할당
-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메커니즘 개발
- 본 협약의 제1조의 함의를 아동, 성인이 모두 알도록 하기
- 적정 수준의 교육 및 인식제고 방안 마련 (제1조와 관련하여, 부모 교육 등 아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포함)

### ● 제1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여 국가는 아동기의 시작시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 출생시점
  - 출생이전 다른 목적에 따라
- 아동은 성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언제 획득하는가. 또한 모든 아동은 투표권 및 선거출마의 권리를 언제 획득하는가?
  - 18세

- 18세 이전
- 다음의 내용에 대한 최저연령이 법적으로 정의되었는가?
  - 의무교육의 시작과 종료시점
  - 다음을 포함한, 취업허가
    - 위험한 일
    - 비상근직
    - 상근직
    - 성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가능
    - 혼인
    - 음란물, 폭력 등 유해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 알코올 및 기타 규제 약물의 구매와 소비
    - 자발적 군입대
    - 형사책임
    - 소년사법체계, 망명요청 등 이민, 교육·복지·보건시설 등 모든 상황에서 자유의 박탈
- 18세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한 중신형 및 사형이 금지되었는가?
-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혼인의 최저 연령은 18세인가?
- 군입대가 18세 미만에게는 금지되었는가?
- 국가는 18세 미만 아동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취했는가?
- 아동이 충분한 이해력을 가질 경우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일반 원칙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 아동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있는가?
- 아동은 그러한 평가에 항소할 수 있는가?
- 아동의 '역량발달' 개념을 존중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가?
- 아동은 규정된 상황 또는 연령에서 다음의 권리를 획득하는가?
  - 부모의 동의 없이 의료적 치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다.
    - 민사사건
    - 형사사건
  - 부모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날 수 있다.
  - 부모가 별거를 할 때, 거주지, 연락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여권을 취득한다.

- 부모의 동의 없이 법정, 관련기관에 고소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행정적, 법적 절차에 참여한다.
- 신분변경에 대해 동의를 한다.
  - 개명
  - 국적
  - 가족관계 수정
  - 입양
  - 보호자
- 생물학적 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입양, 인공수태 등의 경우).
-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진다.
- 재산거래를 한다.
- 집회를 만들고 참여한다.
- 종교를 선택한다.
- 교내의 종교교육에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 종교 공동체에 가입한다.
- 위의 법적 최저연령이 본 협약의 기본 원칙(특히,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최대한도로 생존과 개발을 위한 권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는가?
- 위의 연령 기준과 관련한 법조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가?

###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1조에 명시된 아동의 정의는 각각의 조항과 관련이 있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 일반원칙

제2조: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어떤 배경에도 차별을 함이 없이 아동을 위한 모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3조(1):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제12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 존중;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의 진술의 기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1조의 이행과 이하 조항들의 이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5조: 아동의 “역량 발달”에 대한 존중 (제14조 2항 포함)

제24조: 의료적 조언과 카운슬링에 대한 접근권; 치료에 대한 동의

제28조: 의무 교육의 연령

제32조: 취업 가능 연령의 설정

제34조: 성적 동의를 할 수 있는 연령

제37조: 18세 미만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나 종신형 금지

제38조: 군대 입대와 교전 참전에 있어서 최소 연령

제40조: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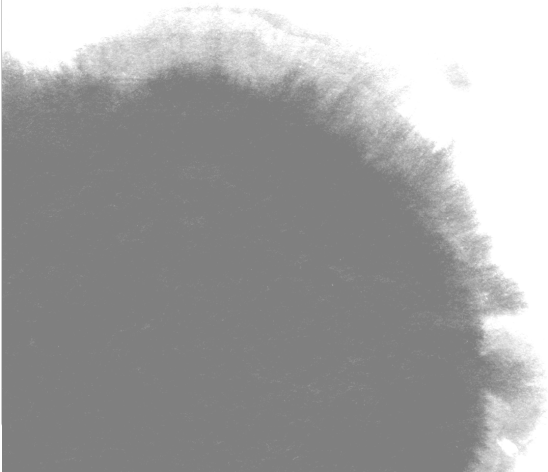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무력 분쟁에 있어 아동의 개입에 대한 아동 권리 협약의 선택 의정서



02

K  
I  
H  
A  
S  
A

제2조 차별금지





## 제2조 차별금지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each child within their jurisdic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rrespective of the child's or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 is protecte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activities, expressed opinions, or beliefs of the child's parents, legal guardians, or family members.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요약

아동권리협약 제2조 1항은, 제3조 2항 및 4조와 함께, 본 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의 제반권리와 관련하여 협약당사국의 기본 의무 -즉, 어떠한 차별도 없이 협약당사국의 관할 안에서 모든 아동에게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차별의 금지”는 아동권리 위원회에서 협약이행을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반원칙으로 인정되었다. 누차에 걸쳐 제시된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통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양한 이슈와 아동집단과 관련하여 동 원칙적용의 함의를 정립해왔다. 또, 차별의 외연을 놓치지 않고 감시하기 위해 동 위원회는 이제

까지 가공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내고, “차별”이라는 용어를 “인종, 피부색, 성별, 사용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출신 민족 및 사회계층, 빈부, 출생 및 기타에 의한 지위 등 여하한 근거에 바탕을 두든, 모든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모든 권리와 자유의 인정, 향유, 행사를 무효, 방해할 목적으로 하거나 무효, 방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구분, 배척, 제한 또는 우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개별아동을 아동에 따라 정당하게 다르게 대하는 소수자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금하지 않는다. 인권위원회의 한 일반논평은 당사국이 때로 소수자 우대정책을 도입하여 차별을 야기하거나 차별이 이뤄지도록 방조한 제반 조건을 감소 내지 제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은 그 전문에서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권리 위원회는 일관되게 혜택 받지 못한 취약아동들에게 특별할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아동의 특정권리와 관련된 차별의 함의에 대해서는 본 실무지침의 해당 협약조문을 다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협약조문에 따라서는 해당 조문이 다루는 차별과 관련된 형태의 차별에 특별히 취약한 아동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2조의 난민아동 그리고 23조의 장애아동 규정을 들 수 있겠다. 차별이 다양한 형태의 아동착취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아동보호와 관련된 또 다른 조문들은 차별완화를 위한 조치를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본 협약 제2조 2항은 아동의 신분이나 아동의 부모 또는 인척의 행위를 이유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차별의 정의

“차별”이라는 용어는 아동권리협약에도 정의되지 않았고, 협약과 유사하게 차별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정의하지 않고 있다. 아동권리 위원회는 협약 제2조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주장해왔고 협약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할 때마다 차별금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07년 6월 현재 동 위원회는 협약 제2조에 관한 해설을 담은 어떠한 일반 논평도 발행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다른 일반 논평에서 특정 분야에 관련한 차별문제에 관한 논의를 확장시켜왔다. 동 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일반 이행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No.5(협약 제4조, 42조 및 제44조 6항)”에서 동 위원회는 협약 제2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본 차별금지 의무에 따라 각국은 그 권리 인정과 보장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개별 아동 또는 아동집단을 적극 파악해 나가야한다. 예를 들어, 동위원회는 특히 철저히 분석하면 현실적 또는 잠재적 차별 사례를 파악해낼 수 있는 자료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태도변화를 위한 교육은 물론 입법, 행정 그리고 자원배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반 권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라는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이 똑 같은 대우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CRC/GC/2003/5, para. 12)."*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에 관한 첫 번째 일반논평에서 차별을 교육 전반적인 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 상에 예시된 이유를 근거로 하는 차별은, 공개적인 것이든 음성적인 것이든, 모두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위배되며 아동이 교육기회를 이용할 자격을 훼손하거나 심지어 박탈할 수도 있다. 아동이 교육기회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주로 협약 제28조와 관련이 있지만, 협약 제29조 2항에 규정된 원칙의 위반이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다양한 개연성이 존재한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지면, 남녀차별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심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여학생이 부여된 교육기회로부터 얻어낼 것을 제한하기도 하고 위협하거나 서먹한 분위기로 여학생의 참여를 저해하기도 한다. 장애아에 대한 차별 또한 모든 공공 교육기관에 팽배한데, 이는 대부분의 비공식 교육환경을 지배하며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선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아동에 대한 차별도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환경에서 심각하다. 이러한 모든 차별행위는 교육이 아동의 성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잠재력의 최대한 개발을 지향해야한다는 협약 제29조 1항 a와 정면으로 위배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 2001 CRC/GC/2001/1 para. 10)."

일반논평은 특히 인종차별 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종 및 이와 관련된 차별이 창궐하는 곳에는 무지나 인종, 민족, 문화, 언어 기타 어떠한 형태든 자기 것과 다른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편견을 악용하거나 왜곡된 가치관을 가르치고 퍼뜨리고 있기 십상이다. 이상의 해악에 확실하고 오랫동안 효과가 있는 해독제는 협약 제 21조 1항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도록 장려하는 교육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규정에는 차이를 존중하고 모든 차원의 차별과 편견에 도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교육은 차별이라는 악마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해악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 CRC/GC/2001/1 para. 11, 협약 제29조 참조)."

"유년기 아동권리보호" 에 관한 일반논평 No.7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당사국들이 유년기의 권리보호를 위해 차별금지 원칙의 의미를 파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약 제2조는 유년기의 아동이 여하한 이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됨을 뜻하고 있다. 법이 유년기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폭력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유년기의 아동은 특별히 차별받을 위험이 큰 것이, 이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남의 도움을 얻어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약 제2조는 또한 특정 집단의 아동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차별의 형태는 다양해서 영양수준의 축소, 보호와 관심의 미흡, 놀이, 학습 그리고 교육기회의 제한 또는 감정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금지 등의 형태를 띠 수 있다. 차별은 또한 가혹한 처우 또는 터무니없는 기대를 통한 착취와 학대로 나타나기도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GC/7/Rev.1 para.11)."

위원회는 계속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아래 박스 참조, page 53). 위원회는 또한 서비스 접근권의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년기 아동의 제대로 된 서비스접근에 대한 잠재적인 차별문제는 특히 우려할 만한데, 이는 보건, 교육, 복지 서비스가 모두에게 개방되지 않고 국가와 민간 또는 자선단체의 상호관련아래 제공되는 경우에 심각하다. 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위원회는 유년기 아동의 생존과 발육에 시급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는 지 감시할 것을 협약당사국들에 권장하고 있다. 감시수단에는 아동과 해당 가족의 배경과 상황에 관한 주요변수가 가공되지 않고 살아있는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포함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모든 아동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도록 보장할 조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협약당사국들은 유아기 아동일반, 특별히 취약집단 아동의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GC/7/Rev.1 para.12)."

(“후천성 면역결핍증과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3, paras. 7~9, p.364; “아동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보건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No.4, para. 6, p.368; “장애와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No.9, paras. 8~10, p.329; 일반논평 전문은 [www.ohchr.org](http://www.ohchr.org)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관할하는 인권위원회는 1989년 일반논평을 내고 여타 인권관련 문헌에 나오는 차별에 관한 정의에 주목하여 차별의 일반적 정의를 제안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는,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 그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빈부,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약 24조 1항은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빈부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규약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하여 법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빈부,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인권위원회는 1989년 일반논평에서 강조하고 있다. “차별의 금지는 법 앞의 평등과 차별이 없는 법의 평등한 보호와 함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이루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상의 “차별” 이라는 용어를 인종, 피부색, 성별, 사용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출신 민족 및 사회계층, 빈부, 출생 및 기타에 의한 지위 등 여하한 근거에 바탕을 두든, 모든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모든 권리와 자유의 인정, 향유, 행사를 무효, 방해로 목적으로 하거나 무효, 방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구분, 배척, 제한 또는 우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와 “여성에 대



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두 협약 모두 비슷한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나아가 “하지만 대등한 위치에서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모든 사안에서 같은 처우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평등원리에 따라 협약 당사국은 때로 “소수자 보호정책을 채택하여 규약이 금지한 차별을 유발하였거나 차별에 조력한 여러 조건을 축소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는 “차별화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또한 그 지향하는 바가 규약 상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우의 차별화가 모두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8, 1989, HRI/GEN/Rev.8 paras. 7~13 pp. 187, 188).

### 유아기의 차별

"유아기의 아동권리 보호"에 관한 일반논평 No.7에서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차별유형의 사례:

"어린 여아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권리침해로서 이들이 사회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존과 어린 생명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이들은 여자 태아에 대한 선택적 낙태, 성기절제, 유아기의 영양실조와 같은 방임 혹은 유아살해의 피해자일 수 있다. 그들은 과도한 가족부양 책임을 떠맡거나 유아기에 참여기회나 초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장애아차별은 생존 가능성과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 이런 아동도 일반 아동이 받는 보호, 영양, 양육과 격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의 정상생활 유지와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 특별 도움 또한 필요할 것이다.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영향을 받은 아동에 대한 차별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원을 박탈한다. 차별은 공공시책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상관행은 물론 서비스에 대한 법규와 접근권 등이 그 예이다.

출신 민족, 계급/카스트, 개인 환경과 생활양식, 혹은 아동이나 부모의 정치적 종교적 견해에 관련된 차별로 아동이 완전한 사회 참여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은 아동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부모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아동과 성인간의 분노와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아동의 기회와 자긍심에 영향을

미친다.

출신민족, 사회적 문화적 신분, 성별이나 장애 등에 관련된 복합적인 차별로 고통 받은 어린 아동은 특히 위험에 처해 있다.

유아의 경우 그 부모에 대한 차별의 결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동이 사생아라거나 전통 가치와 어긋난 상황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아동의 부모가 난민이거나 망명 기도자인 경우를 들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은 어떤 형태의 차별이든, 가정, 공동체, 학교 혹은 기관 등 그 어디서 일어나는 차별이든 이를 감시하고 퇴치할 책임을 진다...."

*(“유년기의 아동권리 보호”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s. 11, 12)*

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규약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는 1989년 발표된 일반논평을 통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권규약에 따라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사용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빈부 또는 출생을 사유로 하는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본위원회는 아동의 경우 인권규약상의 권리에 대한 차별금지로서 규약 제2조의 차별금지와 규약26조가 규정하는 법 앞의 평등조항의 보호도 받지만, 규약 제24조상의 차별금지는 해당조항에서 규정하는 보호조치만을 특정 하는 것임에 유의한다. 규약당사국의 보고서는 입법과 현실에서 보호조치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차별을 뿌리 뽑는데 목표를 둘 것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명시하여야한다. 이들 분야에는 특별히 국적아동과 비국적 아동과의 관계에서나 또는 적자와 사생아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상속문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7, 1989, HRI/GEN/Rev.8 para. 5, p.186).

### “협약당사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협약 제2조 규정과 아동위원회의 이 규정 해석은 협약당사국의 차별방지 의무가 적극적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협약 이행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조치들이 요구되는데 여기에는 검열, 전략기획, 입법, 감시, 인지도 제고, 교육, 홍보활동 그리고 채택된 조치를 평가하여 목표와 성과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동위원회의 한 간행물에 나오는 해설에 따르면 국제법상 “존중”이라 함은 협약 당사국이 “협약 상 아동에게 보장된 권리를 침해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다. “보장”은 “존중”에서 훨씬 더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보장”이라는 말이 개인이 보장된 권리를 즐기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당사국이 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Phillip Alston, 아동권리협약의 법적구조, *Bulletin of Human Rights*, 1991/2, p.5).

### 원칙이행에 적극적으로 접근

아동위원회는 언제나 실행 특히 차별금지에 있어 “적극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점을 1993년 위원회에 제출된 최초보고서에 대한 논평에서 강조하였다.

“ 본 위원회는 협약 제2조에 명시된 차별금지의 원칙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부류의 아동, 특히 어린 여아에 대한 차별철폐에 더욱 적극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볼리비아, *CRC/C/15/Add.1, para. 14*). ”

제2조의 이행이 여타의 모든 조항의 이행에 통합되어 명시된 모든 권리가 모든 아동에게 하등 차별도 없이 돌아가도록 보장해야할 것이다.

### 기존 법률을 검토하여 차별금지 원칙을 입법화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일반 이행조치(협약 제4조, 42조, 제44조 6항)”에 관한 일반논평 No.5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국내법이 협약 상 명시된 일반원칙(협약 제2조, 3조, 6조 및 12조)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본 위원회는 각국에 아동권에 관한 포괄법률이 제정되어 아동협약상의 여러 원칙을 조명하고 강조하는 사태발전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모든 관련분야의 법률(교육, 보건, 사법 등)이 일관되게 아동협약의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 22*). ”

아동위원회는 협약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검토소견에서, 일반원칙으로 명시된 다른

조항과 같이, 차별금지의 원칙도 법률에 반영되어야 하며 협약 제2조에 나열된 가능한 모든 차별사유를 법률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차별사유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차별금지 조항이 헌법상 규정되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차별금지 원칙이 인권관계 법률에 반영되고 여기에 아동문제를 포함하기도 한다. 아동협약은 다른 인권관련 국제문서와 같이 협약당사국이 성문헌법을 갖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의 경우 그 헌법규정은 아동협약과 상통하거나, 또는 협약 41조가 규정한 대로 아동의 권리실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국이 자국의 헌법과 모든 기존 법률을 검토하여 이들에 차별 조항이 없도록 보장할 필요성 또한 강조해왔다. 때에 따라 논평을 통해, 위원회는 현존하는 특정의 차별사유에 주의를 환기시켜왔다. 예를 들자면:

*"인권위원회는 장애아, 난민 및 피난민 아동, 노숙아동, 및 선천성 면역결핍증 아동 등 특정부류의 아동에 대한 차별태도를 우려하고 있다."*

*"협약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전국에 걸쳐 모든 취약집단에 대한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도 철폐하려는 보다 전향적이고 종합적 전략을 채택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권고한다(아제르바이잔, CRC/C/Aze/CO/2, paras. 24, 25)."*

*"본 위원회는 레바논 헌법 제7조가 차별금지원칙을 거양함에 긍정적으로 유의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헌법과 국내법이 동등한 지위를 레바논 아동에게만 보장하고 예를 들어 외국인 아동, 난민이나 망명기도 아동을 배제하는 데 우려한다. 우리는 장애아, 위에 언급한 외국인 아동, 난민이나 망명기도 아동, 팔레스타인 아동, 빈민 아동, 비행아동, 농촌거주 아동이 특히 적절한 사회 및 보건 서비스와 교육시설에의 접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실상 차별에 직면해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장애아, 외국인 아동, 난민이나 망명기도 아동, 팔레스타인 아동, 빈민 아동, 비행아동, 농촌거주 아동 기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해소 노력을 아래와 같이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a) 레바논 내 거주 모든 아동이 평등한 개인으로서 대접받을 것을 보장하도록  
국내법의 재검토

- (b) 이들 아동이 보건, 복지, 양질의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충분한 재정, 인적자원 지원을 보장
- (c)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책과 서비스에서 차별을 찾아내고 시정하는 감시체제 강화
- (d) 난민 및 망명기도 아동을 포함하는 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종차별과 혐오행위 방지(레바논, *CRC/C/LBN/CO/3, paras. 27, 28*)"

회원국의 최초보고 또는 정기보고를 검토하면서 아동위원회는 새로운 차별규정이 기존 법률에 추가되는 현상에 자주 접한다. 특히 자주 일어나는 남녀 성차별 사례가 남아와 여아의 결혼 최소연령을 다르게 정해놓는 입법레이다(다음에 추가 설명). 또 다른 예는 결혼한 부부의 아동과 혼외정사에 의한 아동 즉 사생아를 국법으로 차별하는 경우이다. 가족 수를 제한하는 인구증가 억제책이 개별아동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협약 제2조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1가족 3자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3번째 이후의 아동에게 사회서비스를 제외하는 시책에 대한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모든 아동의 시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전 유고공화국 마케도니아, *CRC/C/15/Add.118, para. 17*)."

2002년 아동위원회는 “아동권리 시행자로서의 민간부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이어 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은 모든 민간화 과정에서 차별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비스의 제공이 비정부 기관에 위임되어도 협상당사국은 협약상의 의무에 계속 기속된다.

"예를 들어, 민영화는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제24조) 및 교육에 대한 권리(제28조, 29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며, 협정당사국은 민영화에 의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기준 -특히 차별금지의 원칙에 의한 금지-을 근거로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아동권리위원회, 제31회기 보고서, 2002.9/10, *CRC/C/121 p.153*)."

위원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이 국가만이 아니라 민간기관과 개인에게도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점이 입법에도 반영되어야함을 강조해왔다.

"위원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이 민간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적용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한다(짐바브웨, *CRC/C/15/Add.55 para. 12*)."

## 차별조치에 대응할 그 외의 적극적 조치

아동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 원칙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그 이행을 위해서는 근본적이지만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차별금지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히나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여타의 차별태도나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법률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차별을 야기하는 전래의 태도와 관습이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그 관할안의 모든 아동이 차별받음이 없이 공교육이나 사회적 인습의 타파를 통하여 협약 제2조에 의거 협약에서 제시된 모든 권리를 즐기도록 보장하는 데 협약 당사국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나이지리아, CRC/C/15/Add.179 para. 28)."*

회원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논평에서, 아동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제안하는데 예를 들면:

- 차별의 연구 - 위원회는 권리에 대한 접근의 차별을 알아내기 위한 비정형화된 통계 및 기타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한다.(자세한 사항은 협약 제4조 참조)
- 종합전략의 개발
- 홍보 및 경각심 제고 운동 - 이에는 “종합적이고 통합된 공공 홍보 운동” 등 차별적 태도와 관행철폐를 위한 공공운동이 포함된다.
- 일반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차별 완화를 위한 정치인, 종교인, 지역지도자 참여.

### “예산제약을 무릅쓰는” 실행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협약의 제2조와 3조에 담긴 일반원칙의 이행이 “예산상 제약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현실에 있어 빈곤은 명백히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차별의 주요한 원인이다. 위원회가 뜻하는 바는 차별금지와 최선의 아동이익이 예산책정과 가용자원의 배분에 최우선 고려요소가 되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불우한 취약계층을 위해 끊임없이 소수자 우대정책-긍정적 차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예를 들자면: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협약 제4조의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모든 계층에 걸쳐 아동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예산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장애아,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영향 받거나 감염된 아동, 노숙아동 그리고 빈곤아동을 포함하는 취약아동의 아동권리보호에 특별한 배려를 권고한다(가나, CRC/C/GHA/CO12 para. 18)."

## 감시 및 평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협약상의 모든 권리가 실현되도록 감시가 중요하다. 따라서 감시과정과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각종 이슈를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종, 피부색, 성별, 사용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 견해, 민족적 종족적 기타 사회적 출신, 빈부, 장애, 출생 기타 신분 등이다. 조문 표현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협약에 제시된 항목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다만 예시에 불과하므로, 협약당사국은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고려해야한다. 정기 보고서 작성지침(2005년 개정)은 많은 항목, 예를 들어 연령, 성별, 지역, 농촌/도시 지역여부, 사회적 종족적 출신 등에서 비정형화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제4조 참조). 그 목적은 협약당사국이 관련 조문이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차별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갖도록 보장함에 있다.

협약의 조문 조문을 해석할 때는 개별 아동이나 아동집단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차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협약 제2조는 많은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 차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연령이나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는 위에 성별, 인종 또는 장애 같은 특별한 이유로 이중으로 차별받는 경우이다.

### “관할 안에서 각 아동에게..”

협약 제2조는 아동권리협약상의 모든 권리가 그 국가 내의 모든 아동 - 방문 아동, 난민 아동, 이민 노동자의 자녀 및 불법 체류 아동까지 포함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출신국을 벗어난 비동반 이산 아동의 처우”에 관한 일반논평 No.6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면에서, 이산 및 비동반 아동에 대한 모든 처우와 관련해서도 적용된다. 특히나 이 원칙은 비동반 또는 이산, 난민, 망명기도 또는 이민과 같은 아동의 지위를 사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이 원칙은 제대로 이해한다면, 연령이나 남녀성별 같은 사유에서 기인하는 서로 다른 보호소요를 근거로 하는 차별화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는 장려할 수도 있다. 사회내의 비동반아동이나 이산 아동에 대해 있을지 모를 잘못된 인식이나 멸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6 2005, CRC/GC/22005/6 para. 18)."

준 자치령이나 준 자치지역이 있는 나라의 경우에 대해 위원회는, 법률이나 다른 요소의 차이로 아동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협약상의 권리를 누리는 데 차별이 올 수 없음을 강조해왔다.

캐나다 정부대표와의 토론에서 어느 아동위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협약 제2조에 의해 협약당사국은 인종, 성별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아동의 권리를 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 위원은 이를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의 모든 지역과 영토에서 아동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캐나다, CRC/C/SR.214, para. 45).

아동위원회는 캐나다와 다른 회원국에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캐나다내의 지방과 영토에 따라 법률과 관행이 달라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은 위원회의 관심사이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은 해당 지역의 책임문제라는 인식은 캐나다의 여러 다른 지역에 따라 이러한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이 달라지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캐나다, CRC/C/15/Add.37, para. 9)."

아동위원회는 캐나다의 두 번째 보고서를 검토할 때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본 위원회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자국 내 지방과 영토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숙지하도록, 그리고 협약상의 권리들이 입법과 정책 그리고 기타 적절한 조치에 의해 모든 지방과 영토에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캐나다, CRC/C/15/Add.215, para. 9)."

"부속"영토가 있는 나라들은 아동협약이 이들 모든 영토에서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당사국의 모든 속령-구체적으로 저지섬과 건지섬-에 아동권리 협약을 아직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차기 정기보고서에 영국의 모든 속령에서 아동권리 협약을 시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영국-맨 섬, CRC/C/15/Add.134, paras. 4, 5)."

위원회는 또한 법률의 차이에 의하지 않으나 더 일반적인 차별이 지역 간에 존재하는 것에 유의했다.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열거 명시된 차별사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기술된 내용과는 출생종족과 장애를 첨가했다는 것 외에는 비슷하다(각 규약 제2조).

위원회는 회원국의 헌법이나 국내법이 협약 제2조상의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하지 않을 경우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상의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된 기준이 일부라도 협약당사국 헌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자국 헌법과 기타 관련 국내법령을 재검토하여 차별금지 사유로서 아동협약 제2조에 명시된 바대로 '장애, 출생, [정치]기타 견해'를 넣음으로써 이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시에라리온, CRC/C/15/Add.116, paras. 30, 31)."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박스 참조) 예를 들어 동성애를 포함하여 협약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수많은 차별사유를 찾아냈다.

"동성애를 사유로 한 차별철폐를 위해 충분한 노력이 없었던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는 동성애 허락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려는 맨 섬(Isle of Man)의 의도에 유의하지만, 이성애 허락연령(16세)과 동성애 관계의 허락연령의 격차에 대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맨 섬이 성적 정향을 사유로 한 차별방지와 아동협약 제2조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영국-맨섬, CRC/C/15/Add.134, paras. 22, 23)."

위원회는 또한 일반논평 No.3 "후천성 면역결핍증과 아동의 권리"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관계에서 성적정향을 사유로 한 차별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우려는 성적 정향에 따른 차별이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대응전략 수립과 협약상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정당사국은 자국사회에서 규정된 남녀성별 규범을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숙고해야 한다. 이는 이들 규범이 소년 소녀가 선천성 면역결핍증에 취약하도록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3, 2003, CRC/GC/2003/3 para. 8)."

아동권리 위원회는 위원회가 또한 일반논평을 통해 협약 제2조의 "기타 신분"이 아동이나 부모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여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나아가 협약당사국에 권고한다.

### 아동 차별의 여러 사유

아래의 차별사유와 차별받는 부류들이 아동권리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최초보고서와 정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밝혀졌다.(열거순위는 중요성과 무관):

- 남녀성별
- 장애
- 인종, 외국인 혐오 및 인종차별
- 출신종족
- 성적정향
- 특정 카스트, 부족
- "(인도의)불가촉 천민"
- 사용언어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 쌍둥이
- 불길한 날의 출생아동
- 둔위자세 출생아동
- 비정상 여건 출생아동
- "한 자녀" 또는 "세 자녀" 정책
- 고아
- 거주지
  - 거주 지방/영토/주, 기타
  - 농촌(탈농지역 포함)

도시  
 달동네거주 아동  
 벽지 및 도서 거주 아동  
 떠돌이  
 노숙아  
 가족 외 보호아동  
   가족 외 보호에 맡겨진 소수민족 아동  
 시설 보호 아동  
 노숙아동  
 소년원 보호아동  
   특히 강제수용아동  
 군사투쟁지역 아동  
 노동종사 아동  
 폭력 피해아동  
 걸식아동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영향 받은 아동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자녀  
 미혼모  
 다음을 포함하는 소수민  
   로마아동/집시/유랑아/노마드 아동  
   토착민 아동  
 비국적 아동  
 이민 아동  
 불법이민 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난민/망명신청 아동  
   비동반 난민아동 포함  
 자연재해 피해아동  
 극빈아동  
 국부의 불평등 분배  
 사회적 신분/사회적 낙오/사회적 격차  
 경제난/변화에 영향 받은 아동  
 부모의 재력에 따른 학교에서의 인종분리  
 부모의 재산  
 부모의 종교  
 개인의 신분에 관한 종교법  
 혼외출생 아동  
 결손가정 아동  
 근친결혼에 의한 자녀  
 다른 종족/종교/국적자간 결혼에 의한 자녀

"협약당사국들은 기존 법규를 재검토하거나 새로 법을 제정하여, 협약 제2조에  
 완전히 이행하고, 특히나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받는 사람들  
 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모든 아동이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한다(CRC/GC/2003/3, para. 40(c))."

아동협약의 다른 조문을 보면 특정형태의 차별에 노출된 아동부류들이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아(제20조), 난민아동(제22조), 장애인(제23조), 소수민족 및 토착원주민 아동(제30조), 경제 기타 면에서 착취당하는 아동(제32조, 34조, 36조), 소년범으로 재판중이거나 자유를 속박당한 아동(제37조 및 40조), 그리고 전투지역거주 아동(제38조) 등이다.

“토착원주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종합토론의 날 이후 발표한 권고문에서 아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다.

*"협약당사국은 협약 제2조를 완전히 이행하고 토착원주민 아동에게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주택, 음용수 및 위생 등 문화적으로 타당한 서비스에 대한 동등 접근권을 포함하여, 이들이 가지는 권리를 평등하게 그리고 차별 없이 보장할 효과적인 조치를- 입법조치를 포함하여- 취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34회기 보고서, 2003,9/10, CRC/C/133 p.134)."*

아동위원회는 나아가 협약에서 토착원주민 아동과 토착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이들과 일하는 관련전문가의 교육 훈련을 주문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대중매체와 토착원주민 사회 및 아동이 모두 참여하여, 토착원주민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인식을 타파할 관심제고 운동을 일으킬 것을 권고한다(CRC/C/133 p.134).

2001년 8월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인종주의, 인종차별, 이국인혐오 기타 관련 배척행위 철폐 세계대회”는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한 차별에 대처하는데 새로운 세계적 의제를 제공한다(A/CONF.189/12, 위의 박스참조). 이 회의의 회의 자료로 위원회는 최초로 “교육의 목적”에 관해 일반논평을 만들어 제공했다(제29조 참조). 결론에서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차기 정기보고서에 더반선언과 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자국이, 협정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와 정책을 수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 허용되는 차별형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동부류간의 정당한 차별화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동 “능력의 증대”를 존중하고 우선권을 주기 위한 “특별고려”나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 살고 있는 아동을 위한 소수자

우대정책이 있다.

아동권리협정의 전문은 “세계 모든 나라에는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 살고 있는 아동이 있고, 이들 아동에게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 살고 있는 아동의 범주는 문제도 다양하고 치유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동의 상황은 협약상의 다양한 권리의 실현이나 향유에 대한 차별의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위원회는 일관되게 각국이 가장 취약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을 찾아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들의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 아동에게 협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조치를 권고해왔다.

## 여아에 대한 차별

위원회는 여아에 대한 차별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고, 잇단 검토소견에서 사라질 줄 모르는 차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했다.

### 인종주의, 인종차별, 이국인혐오 기타 배척 철폐 세계대회

이 세계대회의 선언 및 행동강령(남아공화국 더반, 2001년 9월)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배척에 희생되는 수많은 아동과 젊은이, 특히 여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에 관련 배척과 싸우는 시책에는 최선의 아동이익과 아동의견 존중원칙에 따라 특별조치를 채택하여 이러한 관행의 희생자인 아동과 젊은이들의 권익과 현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선언 제72항).

이 선언 및 행동강령은 아동권리와 관련한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바 그 내용은 소수종족, 종교, 언어 또는 토착원주민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 인신매매 희생자, 소아노동과 빈곤 그리고 인종차별의 연계, 새로운 정보기술이 인종차별 등에 악용되었을 때 아동 및 젊은이에 대한 영향 등이다.

선언은 교육에의 권리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 배척에 대한 투쟁 및 교육의 필수기능과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기능에는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모든 형태의 배척과 차별을 예방하고 추방하는데 있어 특히 아동과 젊은이에 대한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존중교육을 중시한다(선언 제97조).

행동강령은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고하면서, 소년과 소녀 모두를 위한 초등보통교육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권 보장에 당사국들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법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 접근권을 보장해야하고, 교육을 받는 데 인종분리를 가져올 어떠한 법적, 기타 조치도 취해서는 아니 된다(행동강령 제 121조 및 122조).

강령은 당사국들이 또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배척행위와의 싸움을 발전, 기획, 수행하는데 청소년을 좀 더 긴밀히 관련시키는 것은 물론 이들의 완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할 것을” 촉구하면서, 당사국들이 비정부기관과 기타부문과의 협력아래 이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국내적 국제적 대화를 촉진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인종차별에 맞설 청년운동의 창설과 유지를 장려하고 지원해야한다(행동강령, 제216조, 217조).  
(“인종주의, 인종차별, 이국인혐오 및 관련 배척행위 철폐 세계대회” 보고서)

아동위원회는 199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를 위한 행동”을 주제로 한 제4차 세계여성대회 준비의 일환으로, 1995년 1월 “어린 여아”에 대한 종합토론의 날을 마련하였다. 위원회에서 베이징대회 “참가와 제출”을 위해 채택된 권고안은 다음과 같이 재확인하였다.

*“아동권리협정과 이의 이행은 전 세계적으로 소녀의 상황을 개선하고 소녀들의 기본권을 완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과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협정”이

*“본질적으로 보완적이고 서로를 강화시켜준다”*

고 회고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이들 두 협정은 소녀와 여성의 기본권을 보호, 증진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결정적으로 철폐하는 전향적 전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뼈대이다(아동권리위원회, 제8 회기 보고서, 1995, CRC/C/38/p.3).”*

아동권리협약이 가장 널리 비준된 인권문서임에 따라 종합토론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동협약은 또한 의심의 여지없이 소녀의 기본권에 대해 가장 널리 인정받은 행*

동기준이다. 국제사회가 아동협약을, 어린 소녀에 대한 지속적 불평등 및 차별 형태를 밝혀내고 소녀들의 권리행사에 유해한 인습과 전통을 철폐하고 나아가 이들 권리의 촉진과 보호를 위한 진정 전향적 전략을 도출해내는, 행동지침으로 활용하는데 충실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종합토론 보고서는 계속 된다.

“성별에 근거를 둔 불평등과 차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녀가 특별한 권리를 갖는 특별부류나 되는 것처럼 이들을 완전히 별도로 취급해야 됨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소녀는 한 개인으로서 대접받아야 하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따르는 기본권을 온전히 향유할 한 인간인 것이지, 나의 딸, 나의 누이, 나의 부인 또는 어머니로 대할 것이 아니다. 여성의 권리실현이라는 커다란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에 유해한 전통과 인습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린 소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임을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어린 세대에 초점을 맞추는 소녀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전략을 통해서만이 공감 받고 지속성 있는 접근, 폭넓은 보호와 의식함양 운동이 가능해져서, 여성의 자이를 향상시키고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준비시켜줄 기량을 습득시켜줄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성별에 따른 편견에서 자유로운, 보편적이고 의심의 여지없는 현실로서의 인권을 인식하는 데 그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아동협정의 원칙과 규정을 이해시키고 함양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 어린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줄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할 것; 비정부기구를 포함하는 사회 모든 분야의 참여를 증진시킬 것. 이와 관련하여 아동위원회는 인습과 관습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에 전통, 종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체계적으로 참여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위원회의 다른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 직업교육에 소녀들의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여 등교율을 높이고 퇴학률을 낮출 것

- 여성에 편견적인 교육교재를 정리하고 모든 교육종사자에게 아동협정에 대한 교육 실시
- 아동협정을 교육 훈련 교과에 편입
- 신문 방송과 각종 홍보물에서 소녀와 여성을 비하나 착취 대상으로 그리지 말 것

위원회는 또한 밝히고 있다.

"입법부가 나서면 아동권리에 위배되는 전통이나 관습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보내게 되어 의미 있는 억제 작용을 하며 명백히 태도변화에 기여한다. 아동협약 제2조에 비춰 아동위원회는 협약당사국들의 국회가 평등원칙을 명백히 인식하고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하며 위반행위가 있을 때 효과적인 보호와 보상을 제공해야 함을 자주 권고해 왔다. 또한 성기절단이나 강제결혼 그리고 성추행을 포함한 소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같은 유해한 전통인습에 대한 금지도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결혼 최저연령 도입이나 형사책임 연령을 사춘기와 연계시키는 것과 같이 민법과 형법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한 입법 분야도 밝혀냈다."

위원회는 전투지역이나 난민 아동 같은 구체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계층의 소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을 에워싼 비상상황에 비추어, 이들 소녀는 자신들의 소녀기를 누릴 실질적인 시간이 없고, 소녀의 삶을 지배하는 전통적인 열악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다. 성폭력과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가 자주 일어나며,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할 때는 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강제결혼이나 조혼이 보호책으로 떠오른다. 극도의 비상상황에 처해서, 소녀들은 공포와 불안을 나타내지 못하고 스스로의 희망이나 감정을 나누지도 못한다."

근로소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15살도 안된 소녀가 성인의 가사를 감당하는 일이 잦다; 이러한 노동은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따라서 통계자료에 반영되는 일도 없다. 소녀들을 이 사슬에서 해방시키려면, 특히 교육면에서, 기회의 균등과 균등한 처우가 이뤄져야한다."



종합토론은 결론으로 남녀 성별로 가공되지 않은 자료수집의 긴급한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그 자료는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현실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문제점을 밝혀내며 소녀문제에 눈감아 문제점을 영속시키는 세태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국제적, 대륙적, 국가적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종합되고 통합된 자료를 말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18회기 보고서 1995.1, CRC/C/38, pp.47~52)."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년 9월, 베이징)에서 189개국 대표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행동강령에는 어린 소녀를 위한 "전략목표와 행동"에 관해 자세하게 나와 있다(A.CONF.177/20/Rev.1, section L, p.145). 2000년과 이어서 2005년에 국제연합 총회 특별회의는 국제여성회의의 5년 뒤 및 10년 뒤의 성과를 검토하고, 선언과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추가 행동을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몇몇 국가에 당국에 의한 "이슬람 경전의 편협한 해석"이 아동협정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아랍 에미리트 연합에 대해 권고하기를 협약 당사국은

"이슬람 경전의 해석이 기본권과 상충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아랍 에미리트 연합, CRC/C/15/Add.183, para. 22(b))."

또한 요르단의 제2차 보고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슬람교가 가르치는 평등과 관용의 보편적 가치를 감안할 때, 아동위원회는 당국에 의한 이슬람 경전의 편협한 해석이, 특히 가족법 관련분야에서 아동협약 상 보호되는 몇몇 인권의 향유를 저해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평결(CPR/C/79/Add.35),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의 평결 및 아동위원회의 기존 검토의견(요르단, CRC/C/15/Add.21)과 아동협약 제2조에 의거하여, 아동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민사,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성별과 출생신분을 사유로 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철폐할 효과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헌법 제6조 평등권에 남녀 성별을 기초로 한 평

등을 포함시키기를 권고한다.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어떠한 이러한 차별도 금지하는 데 필요한 민법 및 형법 개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이점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기본권과 이슬람 율법을 조화시키는 데 성공한 여타 국가들의 관례를 고려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사회의 부정적 태도를 - 특히 가족 내에서 -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광범위한 대중 교육 운동 같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요르단, CRC/C/15/Add.125 paras. 9, 30)."

### 장애를 가진 아동

“장애아의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제9호에서 위원회는 장애아동이 아직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아동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데 있어 장애에 직면해 있음을 유의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이라는 것이 장애자체가 아니며 장애를 가진 아동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회적, 문화적, 태도 및 물리적 장애의 묶음을 강조한다. 이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전략은 따라서 이들 장애를 제거할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협약 제2호가 금하는 차별사유로 장애를 명시하는 의미에 주목한다.

"장애에 의한 차별은 독특한데 장애를 가진 아동이 가장 취약계층인 사실로 설명될 수 있겠다. 많은 경우에 있어 차별사유가 많다는 것은 -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경우, 즉, 장애가 있는 토착원주민, 농촌지역 거주 장애아동 등, 특정그룹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차별금지 조항에서 장애를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차별은 때로는 사실상의 차별- 장애아동의 생애 및 성장의 다양한 단계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차별과 멸시는 이들의 참여를 막고 따돌려, 이것이 장애아동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까지 이르면 이들의 생존과 성장마저 위협할 수 있다. 서비스 분야의 차별은 장애아동으로부터 교육을 박탈하고 제대로 된 보건과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한다. 적당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부족은 장래 이들로부터 고용기회를 박탈하여 차별을 가져온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멸시, 두려움, 괴임보호, 부정적 태도, 그릇된 믿음 및 편견의 지배는 사회 곳곳에 팽배해 있으며 장애아동을 한계화와 소외로

몰아가고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GC/9, paras. 5, 8)."

## 노숙/거리노동 아동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협약당사국들은 자체보고서나 아동위원회와의 토론에서 자국에 노숙이동이나 길거리노동 아동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취약아동들로서 이들의 상황과 이들이 당하는 다양한 차별은 위원회 권고사항의 주요 관심 사항이나 초점이 되었다(제20조 참조).

위원회의 제6차(특별)회의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길거리 아동의 곤경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1993/4년 결의안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엄격한 준수가 이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진전이 라는 인권위원회의 성명을 환영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생존을 위해 노숙하며 길거리에서 일하도록 내몰린 아동의 상황에 대한 감시활동에 아동위원회가 쏟고 있는 관심'에 인권위원회가 경의를 표한 데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나아가 아동위원회는 인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일반 논평도 고려해보도록 재삼 권유한 사실에 주목했다. 토론에서 위원회는 또한 '길거리 아동'이라는 용어가 이들이 당하는 고통의 본질과 원인을 명확히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실상 이들 아동이 겪은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어떤 아동은 길거리에서 일은 하지만 집이 있고, 어떤 아동은 방치 또는 다른 이유로 집 없는 아이가 되었고, 어떤 아동은 학대를 못 이겨 집을 나왔거나 윤락이나 마약중독에까지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이 용어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어떤 사회에서는 멸시나 차별의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었다. 아동위원회는 따라서 좀 더 적당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었다(아동권리위원회, 제6회기 특별보고서 1991.4, CRC/C/29, p.31)."

## 제2조 2항: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

협약당사국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준비하면서 이 조항이 가지는 매우 광범위한

잠재적 의미를 충분히 숙고했는지는 의문스럽다. 협약 제2조 1항은 차별의 근거로 “아동이나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을 열거하고 있다. 제2항은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더하고 있다. 제1항이 협정상 권리항유와 관련해서만 차별을 문제 삼는데 비해, 제2항은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행동을 규정하고 협정에서 제기된 것에 국한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많은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된 차별을 당하는 다양한 유형의 아동에 접하게 되었다. 협약당사국은 협약이행을 위해 기존의 어떤 헌법, 관련 입법, 판례, 행정지침 및 관례도 이 원칙에 부합도록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아동의 부모가 범법이나 이민법 위반을 사유로 처벌대상이 되었을 때 아동을 차별과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졌는가? (나아가 제9조는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최선의 아동이익을 위해 불가피할 때만 허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이 부모의 혼인상의 지위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가? 위원회는 수시로 “혼인 외” 출생 아동에 대한 차별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보자.

*"혼인 외 출생아동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이들에게 평등상속권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비 적출' 이라는 차별적 분류를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법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필리핀, CRC/C/15/Add.259, para. 21)."*

국가는 (예를 들어 병원진료 등) 부모의 극단적 종교 신봉으로 아동의 권리가 위협받을 때 개입할 수단이 있는가? 시설의 방침과 현실이 형제자매의 문제로 형제나 자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가?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2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책임 있는 부서 및 기관이 지정되고 이들 간 협조가 원활한가(제2조의 차별금지 원칙은 모든 정부 부서와 관련됨)?
- 관련 비정부기구 또는 시민사회 협력기관이 명시되어 있나?
- 모든 법규, 정책과 관행이 당사국 내의 모든 아동들이 제2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 검토가 이뤄졌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필요한 곳에 목표가 설정되고 진도가 표시되었나?
- 아동권리를 더 많이 보장하는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 다른 관련 국제 기준을 받아들이는가?
- 필요할 때 국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나?

(상기 조치들은 전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전략의 일부로서 채택될 수도 있다.)

- 예산 분석과 소요자원의 배분은?
- 감시 및 평가체제의 개발은?
- 성인과 아동에게 제2조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나?
- 적절한 훈련과 인식제고 방안의 발전은?

### ● 제2조 이행의 구체적 문제

- 차별금지의 협정원칙이 아동조항이 명시되어 헌법 기타 법규에 반영되어 있나?

아동권리가 차별 없이 당사국내 다음 부류를 포함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인정되나?

- 비국적자
- 난민아동
- 불법 이민 아동은?
- 협약당사국은 특히 불이익을 받거나 취약한 부류의 아동을 파악하고

있나?

당사국은 불이익을 받거나 취약한 부류의 아동에 대한 차별을 줄여 줄 소수자 보호책이나 적절한 우선순위, 목표를 발전시켰나?

당사국의 법규, 정책 및 관행이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후견인의 다음 특성을 사유로 차별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나?

- 인종
- 피부색
- 남녀성별
- 사용언어
- 종교
- 정치적 기타 견해
- 출신계층
- 출신종족
- 재산정도
- 장애유무
- 출생신분
- 기타신분

(아동 권리위원회가 파악한 차별사유의 완전한 목록은 원문 24쪽 박스참조)

이상의 모든 사유로 인한 권리의 향유에 대한 잠재적 차별, 출신 지역에 따른 아동차별, 도시와 시골출신 아동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감시해줄 가공되지 않은 자료가 수집되는가?

당사국은 소녀들과 관련하여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이행전략을, 2000년 및 2005년 보고서 검토에 따른 권고안까지 고려하여 발전시켰나?

당사국은 더반선언과 ‘2001년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 배척 반대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아동협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와 방안들을 발전시켰는가?

협약에서 보장된 각 권리의 실현여부를 감시하는 데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었는가?

당사국 법규, 정책 및 관행이 아동의 부모, 후견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다음 특성을 사유로 하는 모든 차별 또는 처벌에서 아동이 보호되도록 보장하는가?

- 결혼을 포함한 신분
- 활동
- 알려진 견해
- 신념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2조 차별금지 원칙은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일반원칙으로 인정받았고, 따라서 모든 다른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제3조 1항: 최선의 아동이익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 시 최우선 고려사항

제6조: 생명에 대한 권리와 가능한 최대의 생존과 성장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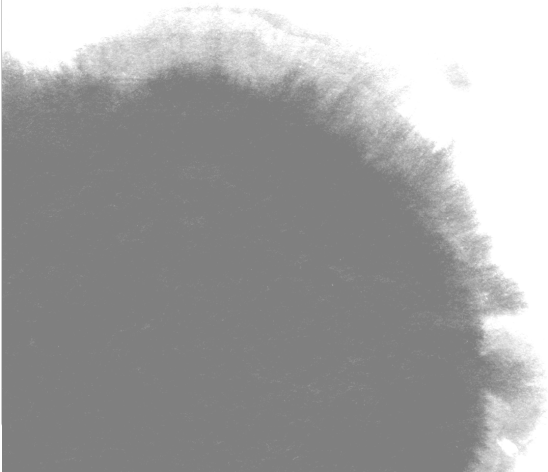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제12조: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서 아동의 견해 존중; 아동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든 출석 발언할 권리





# 03

## 제조 이동이익 최우선





## 제3조 아동이익 최우선

1.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child such protection and care as is necessary for his or her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rights and duties of his or her parents, legal guardians, or other individuals legally responsible for him or her, and, to this e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3.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institutions, services and facilities responsible for the care or protection of children shall conform with the standards established by competent author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afety, health, in the number and suitability of their staff, as well as competent supervision.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 복리에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요약

아동권리위원회는 “최선의 아동이익”<sup>2)</sup>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제3조 1항이 제2조, 제6조, 제12조와 함께 아동권리협약

2) ‘best interest of child’의 개념은 주로 영미의 가정법원에서 아동의 양육권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발전되었고 1970년대 이래 확고하게 자리 잡아 사용빈도가 아주 높은 말이다 (BIC라는 약어로 자주 쓰임). 우리말 직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정도가 되겠으나 좀 더 우리말 어법상 자연스러운 ‘최선의 아동이익’을 쓰기로 한다.

의 일반원리를 이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원리는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에 처음 등장하였다. “최선의 아동이익”의 해석이나 이 원칙의 발동이 협약 상 보장된 다른 개별 권리들에 우선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개념은 협약의 다른 좀 더 구체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얻게 된다. 제3조 1항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공공 및 민간기구는 최선의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장하도록 이들의 행위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의무 부여함으로써 아동을 제대로 위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후속 일반논평에서 다양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 원리에 대한 해석을 발전시켜왔다.

아동권리협약 내에서도 이 개념은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다음의 경우와 같은 특정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최선의 아동이익” 고려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부모로부터의 격리: 아동은 사법심사의 대상인 적법한 기관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부모로부터 격리가 “최선의 아동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사국은 “최선의 아동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양부모와 개인적 관계와 직접접촉을 유지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한다(제9조 1항, 3항).
- 부모로서의 의무: 부모 둘 다 아동의 양육과 “최선의 아동이익”을 항상 염두에 둘 일차 의무를 진다(제18조 1항).
- 가정환경의 박탈: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에서 격리되었거나 “또는 자신의 최선의 이익은 가정 밖에 있어야 보장되는 경우”의 아동은 특별보호와 조력을 받는다(제20조).
- 입양: 당사국은 “최선의 아동이익이 지상의 고려사항이 되도록” 보장해야한다(제21조).
- 자유의 제한: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그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아동이익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성인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제37조 c항).
- 청소년과 관련된 형사문제에 대한 법원청문: 부모나 법적 후견인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아동이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한” 참석해야 한다(제40조 (2)(b)(iii)항).

제3조 2항과 3항의 중요성도 크다. 제3조 2항은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부양을 보장해야한다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전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2조 1항 및 제4조와 함께 제3조 2항은 국가의 전반적 이행의무를 규정한다.

제3조 3항은 아동을 위한 모든 기관, 편의 및 시설에 대하여 “적임기관”<sup>3)</sup>에 의해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국가는 그 기준의 준수를 보장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조 1항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되어있는 그 어느 개념보다 학계의 분석대상이었다. 이 개념은 아동협약비준 이전에 각국의 입법에 반영된 경우가 많고, 국제인권문서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다.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 원칙<sup>2</sup>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법률 기타에서 특별보호와 기회 그리고 편의를 누림으로써,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유롭고 품위 있게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이 원칙은 1979년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2개 조문에 걸쳐 채택되었다. 이 협약 5조 b항은 여성차별협약 당사국에게 “사회적 기능으로서 모성의 합당한 이해와, 모든 경우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원초적 고려대상임에 비추어 아동의 부양 및 발전에 남성과 여성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족교육에 포함시킬 것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제16조 (1)(d)에서는 결혼 및 가족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이익이 가장 중시되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3) 외교통상부 번역에서는 “관계당국”으로 되어있으나, 원문에서는 정부기관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어디에도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두 번에 걸쳐 아동의 이익이 부부 별거나 이혼의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7, No.19, HRI/GEN/1/Rev.8, p.185, 189).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 원칙의 표현이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 국가의 행위를 넘어 민간기구까지 포함하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일반논평과 협정당사국의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통해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조 1항이 협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협약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전반적 의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선의 아동이익은 국가차원의 아동계획이나 정책에, 그리고 특히 모든 차원의 예산책정이나 자원배분 활동을 포함하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활동에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No.5에서 위원회는 국내법에 기타 일반원칙과 함께 제3조 1항이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술하기를 최선의 이익 원칙이

*“...전 정부, 의회 및 사법기관의 적극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기관 및 기구는 자신들의 결정이나 행위에 의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어떻게 영향 받고 있고 영향 받게 될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해야한다. 이러한 결정이나 행위로는 직접 아동문제와는 관련 없을지라도 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포함하여, 각종 입법안, 현행법규, 정책, 행정행위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CRC/GC/2003/5, para. 12).”*

위원회는 이어서 아동영향 예측 및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선의 아동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제3조 1항)되고 아동협약의 모든 규정이 모든 차원의 정부 입법 활동, 정책 및 시행에서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아동영향 예측(아동과 아동권리의 향유에 영향을 주는 입법안, 정책, 예산배정의 영향예측)과 아동영향 평가(실행이 실지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모든 차원의 정부활동에서, 그리고 가능한 정책개발 초기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다."

"자체 모니터링 및 자기평가는 정부의 의무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예를 들어 의회의 각 위원회, 비정부기관, 학술기관, 전문기관, 청소년단체 및 독립된 인권기관이 독자적으로 이행의 진척을 감시하는 것 또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입법부나 일반대중에 공식영향평가의 제출이나 발표 의무화 입법을 채택한 몇몇 국가를 치하하는 바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협정 제3조 1항 준수를 보장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정책결정에서 아동에 대한 고려와 아동권의 존중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s. 45~47)."

"유아기 아동권리의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No.7에서 위원회는 기술하고 있다.

"최선의 이익원칙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적용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생존, 성장 및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조치에는 아동의 권리실현에 일상적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 기타 인원을 원조 지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a) 개별아동의 최선이의. 아동의 보호, 건강, 교육 기타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그것이 부모의 결정이든 전문가나 기타 아동에 대한 책임자의 결정이든, 최선의 이익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협약당사국은 어린 아동이 모든 법절차에서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대표되고, 아동이 자신의 의사와 선택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것이 경청될 수 있도록 규정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b) 집단 및 주민으로서 어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입법, 정책개발, 행정적 사법적 결정 및 서비스 규정은 최선의 이익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아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를 들면, 의료, 보육제도 또는 교육)는 물론 어린 아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예를 들어 환경, 주거 또는 교통 관련)도 포함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GC/7/Rev.1 para. 13).”

## 최선의 아동이익

아동협약을 기초한 실무그룹은 “최선의 이익”의 정의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았고, 아동권리위원회도 2007년 현재 이 원칙에 대한 일반논평을 기초한 일이 없다. 그러나 2001년 이래 2007년까지 발표된 초기 10개의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이 원칙을 언급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칙을 개별 아동이나 특정한 환경에 놓인 특정 아동집단에 적용했을 때의 함의에 대해 아주 구체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함을 재삼 강조하면서 협약의 상호관계, 특히 위원회가 일반원칙의 반열로 격상시킨 조항 간(제2조, 3조, 6조 및 12조)의 상호 관계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차별금지의 원칙, 생존 및 발달의 극대화 원칙 그리고 아동관점의 존중원칙 등은 모두, 집단으로서 최선의 아동이익은 물론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의 아동이익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알바니아의 최초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위원회는

“... 최선의 아동이익에 최대의 고려함에 있어 협상당사국이 보고한 진전에 유의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무엇이 “최선의 이익”인지에 대한 결정이, 아동이 자신의 견해와 이익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아동과의 상의 없는 성인들만의 결정인 듯 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알바니아, CRC/C/15/Add.249, para. 26).”

최선의 이익은 아동을 위한 장기와 단기 이익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최선의 이익



에 대한 해석은 협약 전체의 정신과 그 취를 같이 해야 하며, 특히 스스로의 견해와 감정을 가진 아동, 그리고 특별한 보호는 물론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을 강조하는 협약의 정신과 일치해야 한다.

국가는 최선의 이익을 지나친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최선의 이익’에 대한 자국의 해석을 원용하여 아동협정에 의해 아동에게 보장된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통 관례와 난폭한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부정할 수 없다. 2006년도 “체벌 기타 잔인 또는 비인간적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No.8에서 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가입국 보고서를 검토하는 도중, 아동권리위원회가 특정국들의 체벌철폐문제를 거론하자, 가입국 대표들은 때로 어느 정도의 “합리적” 또는 “적당한” 체벌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중요한 일반원리로서, 최선의 아동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1항)는 아동협정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아동협정은 또한, 제18조에서, 최선의 아동이익은 부모의 기본관심사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최선이익에 대한 해석은 아동협정과 전체적으로 일관되어야 하며, 이는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와 아동의 관점에 정당하게 배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인간적 존엄 및 육체적으로 온전할 권리와 상충하는 체벌 기타 형태의 잔인하거나 비인간적 처벌을 포함하는 행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8 2006, CRC/GC/8, para. 26).”*

위원회는 협정 제3조 1항 규정의 함의를 비 동반 및 가정이탈 아동에 대한 국가의 처리와 이들에 대한 장단기 해법 추구하고 관련하여 검토했다. 2005년의 “원 거주국 밖의 비 동반 및 가정이탈 아동처리”에 관한 일반논평 No.6에서 위원회는 원거주지역 이탈 아동에게 이 원칙이 거주지 이탈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최선의 이익결정”의 요소에 대해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다.

*“원거주지역 이탈의 어떤 단계에서든, 비 동반 또는 가정이탈 아동의 삶에 근본적*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결정에라도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이익결정이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무엇이 최선의 아동이익인가 하는 결정에는 국적, 양육 종족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 특정 취약점 및 보호수요 등을 포함하는 아동의 정체에 대한 명백하고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에게 새로운 지역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런 선행평가과정의 선결조건이다. 평가과정은 나이와 성별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사기법으로 훈련된 유자격 전문가에 의해 우호적이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유능한 보호자를 지명하는 것과 같은 후속조치야말로 비 동반 또는 가정이탈 아동의 최선의 이익 존중을 보장하는 핵심적 보호절차로 작용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6, 2005, CRC/GC/2005/6, paras. 19~21),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협약 제 12조의 함의를 별도의 일반논평 제25항에서 다루고 있다."

“선천성 면역결핍증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밝힌다.

"선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 간호 및 치료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수립되었고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은 거의 고려되지 못했다. 이 권리에 수반된 의무는 선천성 면역결핍증과 관련하여 국가의 행동을 지도하는 출발점이다. 아동은 이 질병에 대한 반응의 핵심 문제이며, 따라서 아동의 권리와 필요에 따라 전략이 적응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3, 2003, CRC/GC/2003/3, para. 10)."

## 최우선적인 고려

이 표현은 최선의 아동이익이 언제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은 아님을 가리킨다, 상호 경쟁하는 또는 상반된 인권 문제가, 예를 들어, 개별 아동 간, 서로 다른 아동집단 간 그리고 아동과 성인 간 존재할 수 있다. 아동의 이익은 그러나 실질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아동의 이익이 검토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협정을 기초한 실무그룹에서 논쟁이 있었고, 이 조항에서 아동의 최선이익이 “유일한 최우선적 고려” 또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3조 1항의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라는 매우 광범위한 표현 속에는 다른 권리주체들이 동등한 권리로 주장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최선의 이익”이라는 구절이 사용된 협정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 초점이 특정 상황에서 개별아동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정하는 데 있고, 개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동의 이익이 “유일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제21조 입양과 관련해서는 이점이 명백히 기술돼있다).

### 입법과정에 최선의 이익원칙을 반영

위원회는 일관되게 제3조가, 협약상의 여타 일반원칙들과 같이, 입법과정에 반영되고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본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일반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No.5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제4조, 42조, 44조 제6항).

아동권리위원회는 최선의 이익원칙이 법정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제2차 및 후속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실제로는 협약 제3조와 12조의 일반원칙들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음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권리위원회는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제3조)과 “아동의 관점존중” 원칙(제12조)이 국내법에 반영되었음에 유의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국 보고서에서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원칙들이 아동이 아직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아동의 권리가 성인의 권리에 짓눌려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선의 아동이익”과 “아동의 관점존중” 원칙의-특히 가정, 학교, 기타 기구 및 사회 일반에서 아동의 참여권의-이행 보장을 위한 기일층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이 원칙들은 또한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시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이행을 위한 교육은 물론 전통사회집단과 종교지도층을 포함한 사회일반을 위한 인식제고 노력도 일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볼리비아, CRC/C/15/Add.95, para. 18)."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이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을 모든 아동관련 입법, 시책 및 정책에 있어 핵심 중점사항으로 삼고 있는 데 대해 치하하며 이점 진전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선의 아동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입법례에 따라서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특히 원주민 아동은 물론 이혼, 수용, 추방에 처한 아동에게는 -에서 아직 충분히 정의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이점 전문가에 대한 연구와 훈련이 부족한 데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협정 제3조 상의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이 다양한 상황(예를 들면, 원주민 아동)에 처한 개별 아동 또는 아동집단과 관련하여 충분히 분석되고 객관적으로 이행될 것과, 아동에 영향을 끼치는 종합계획, 시책, 서비스 와 사법 행정적 결정은 물론 아동관련 모든 입법심의회와 법원의 사법절차에도 반영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관련 전문가를 위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협정 제3조를 완전히 이해하며 이 원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캐나다, RC/C/15/Add.215, paras. 24, 25)."

"협약 제3조 상의 최선의 아동이익이라는 일반원칙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 원칙이 법률과 정책차원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과 이 원칙이 예를 들어 아동 보호권 결정과 같은 아동관련 의사 결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아울러 이점에 대한 낮은 일반의 인식에 우려하며 유의한다."

"위원회는 이점 당사국의 최초보고와 관련 언급한 이전의 권고를 환기하면서, 당사국이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의 의미와 현실적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협약 제3조가 입법과 행정조치에 적의 반영될 것을 보장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국의 입법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아동권리 협약의 주된 취지, 즉 아동이 자신의 권리의 주체자임이 입법에 충분히 반영되고, 최선의 아동이익이 아동양육권을 포함한 아동관련 모든 의사결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알제리, CRC/C/15/Add.269, paras. 29, 30)."

"위원회는 아동권리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환영하나, 최선의 아동이익에 대한 대책이 경제체제 전환과 노령인구의 압력 아래 불충분하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최선의 아동이익이라는 일반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입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b) 이 원칙이 아동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종합계획, 시책 및 서비스는 물론 모든 정치적, 사법적 및 행정적 의사결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라트비아, CRC/C/LVA/CO/2, paras. 22, 23)."

“최선의 이익” 원칙이 이미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면 아동이 가장 중요한 또는 아주 중요한 주체나 객체가 되는 것은 개별 아동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별거나 이혼에 따른 가족법 절차, 입양 그리고 잘못된 처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개입 등이다. 이 원칙이 아동 집단이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활동에 대한 입법에서 발견되는 예는 훨씬 적다. 이 원칙은 예를 들어 고용, 각종계획, 교통 기타 분야의 정책결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심지어 아동발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교육이나 보건, 분야에서도 이 원칙이 입법구조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래서 영국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즉,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2조의 이행보장을 위한 조치가 명백히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특히 아동 권리 존중에 관련 있는 보건, 교육 및 사회 안전망 분야의 입법에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영국, CRC/C/15/Add.34, para. 11)."

위원회는 영국의 제2차 보고서 검토에서도 이 우려를 강조하며 재삼 표명하였다.

## 훼손불가의 권리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상의 일반원칙은 비상시의 경우에도 훼손불가의 권리임을 강조해왔다. 예를 들어 “무장분쟁에 처한 아동”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아동협정 제2조, 3조 및 4조가

“... 전시나 비상시에도 양보될 수 없음.”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제2회기 보고서, 1922.10, CRC/C/10, para. 67).

##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 협약 제3조 2항

국가는 자국의 관할아래 있는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아동의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별 부모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배려와 보호”가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과 교통사고에서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가정이 아동을 보호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복리를 보장해야 한다. 때로 국가와 부모의 의무가 밀접히 관련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국가는 무료 초등의무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부모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맞춰 교육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Bulletin of Human Rights*의 어느 발표문은 협약 제3조 제2항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의 중요성은 우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장하려는 포괄규정의 지위에서 온다. 두 번째로 아동권리협약의 여타 부분이 보다 구체적 의무에 관한 것인데 반해, 이 규정은 종합성이 강하여 일반적 또는 전체적으로 정부의 의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거점이 되고 있다. “아동 복리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한다고 명시된 의무에는 그 한계가 없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다른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할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망정, 당사국의 의무가 아주 분명하게 명시돼있다. 의무를 표현

하는 동사(보장)는 매우 강력해서 소극적 및 적극적(전향적인 것 포함) 의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보호와 배려”라는 말도 확대 해석되어야 하는 바, 이는 그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부정적 용어(“아동을 위협으로부터 보호”와 같은)로 표현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총체적 이상으로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Philip Alston, 아동권리협약의 법적구조, *Bulletin of Human Rights*, 1991.2, p.9).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의 특정 취약아동 집단에 대한 충분한 부양실패 사례를 아주 자주 언급해왔다. 가장 흔한 범주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부랑아들 문제이다. 협약 제3조 2항은 부모와 법적 책임 있는 자들의 권리와 의무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런 아동의 복리에 적극적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일반 의무가 협약 제2조, 제6조, 제12조에 규정된 일반원칙 상의 의무와 다른 모든 구체적 의무와 연계되어 있는 바, 예를 들면, 제 18조 2항의 “부모와 법적후견인에게 이들의 양육의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의무, 가정에서 유리된 아동에게 “특별보호 와 도움”을 제공할 의무(제20조 1항), 아동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와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할 의무(제26조, 27조), 그리고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제19조, 32~37조) 등이 그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경제 불황이나 위기 때, 또는 환경재해나 무력충돌 때 이 가장 중요한 적극적 의무가, 여타 좀 더 구체적 규정과 연계되어, 중요성을 띄게 된다. 국가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느 때 아동의 복리가 위협받는지, 어떤 국가 행동이 필요한지, 최대한 광범위하게, 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아동에 대한 보살핌과 보호에 책임 있는 시설, 서비스 및 설비가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것을 보장하여야한다: 제3조 3항**

아동을 위한 시설, 서비스 및 설비를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당사국은 적절한 검사를 통해 여러 기준이 준수되도록 보장해야한다. 다른 조항에서는 당국이 공급을 보장해야하는 특정 서비스들을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의 수용(제18

조 2항 3항)”,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체수용(제20조), 장애아에 대한 배려(제23조) 재활서비스(제39조) 및 소년사범제도와 관련된 시설 및 기타 수용(제40조) 등이다. 수용이나 보호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및 교육시설도 있어야 한다.

협약 제3조 3항은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 분야 모두를 완벽히 열거하지는 않고 있지만 “특히 안전과 보건 분야, 이 분야 종사자의 적정수와 적합성 및 효과적 감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배려와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과 시설은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다른 규정, 예를 들면 차별금지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견해와 기타 시민적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제2조, 3조, 제12~16조, 제19조, 제32~37조). 이외에도 제25조는 수용, 보호, 치료받고 있는 아동이 가지는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와 아동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기타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을”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 3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든 또는 자원기관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든 이들 기관이나 편의에 적용되는 입법 구조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거쳐야 한다. 이 점검은 위탁이든 보육이든 양육문제, 보건, 교육, 교정시설 등등 모든 서비스가 그 대상이 된다. 충분히 독립적인 검사 및 관찰과 함께 이 모든 사항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도 많은 국가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성적 폭력이 만연한 시설들이 발각되지 않고 은폐되어왔는데, 여기서 독립적인 검사와 효과적인 신고절차와 같은 적절한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하겠다(제12조 참조).

“유아키 아동권리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No.7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은 어린 아동을 책임진 시설, 서비스, 설비 등이 특히 보건, 안전 등에서 질적 기준에 부합하고 종사자들도 적절한 사회 심리적 심성을 갖고, 적절하며, 수적으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훈련받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린 아동이라는 여건, 나이 그리고 개인차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종사자들은 이 연령대에 맞춰 일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어린 아동과 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것*



으로 인정받고 보수도 정당해야 여성이든 남성이든 제대로 자격 있는 종사자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종사자는 필수적으로 아동의 권리와 발달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최신의 이론적 및 실제적 이해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들이 적절한 아동중심의 보살핌, 교과과정 및 교육법을 채택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종사자가 공공 및 민간 프로그램, 시설 및 서비스의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하여 전문가를 위한 특별 자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DC/71Rev.1 para. 23)."

이 규정은 국가가 지원하는 시설, 서비스 및 설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책임 있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가정 밖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동의 대부분은 자원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는 나라가 많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민영화로 인해 이들이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협약 제3조 3항은 이 모든 기관,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하여 적임의 기관에 의한 기준이 설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 제2조상의 차별금지 원칙과 함께, 이 기준은 협약전반에 걸쳐 일관되고 부합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민간부문과 아동권리 실현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친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였다(제31회기 보고서 2002.9/10, CRC/C/121 p.152). 위원회는 일반논평 No.7에서 이 권고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린 아동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를 확장하고 있다.

" ... 위원회는 당사국이 프로그램 이행 채널로서의 비정부부문의 활동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모든 비정부 서비스 제공자들(‘영리’기관이든 ‘비영리’기관이든) 이 아동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이점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에게 협약의 이행보장이 당사국의 주요 의무사항임을 상기하고자한다. 어린 아동관련 전문가들에게-정부부문 소속이건 비정부부문 소속이건- 완전한 준비, 지속적 훈련 그리고 적절한 보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들은 어린 아동기 발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국가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 비정부 서비스 제공자가 주요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고 최선의 아동이익이 실현되도록 보

장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관찰하고 규제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32)."

아동권리위원회는 특히 기관들의 유자격 종사자부족, 훈련부족, 모니터링-감독 부족에 대해 자주 언급해왔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스리랑카에 등록 또는 비등록 기관 또는 자발적 가정에 대한 아무런 모니터링 기제가 없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공공 및 민간 기관과 자발적인 가정에 대해 통일 기준을 설정하고 이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스리랑카, CRC/C/15/Add. 207, para, 32, 33)."

"...위원회는 또한 사회사업, 법무, 교육종사자와 같은 모든 시설의 인원에 대한 추가 교육훈련을 권고한다. 이러한 훈련에서는 아동의 스스로에 대한 존엄심의 고양과 보호, 그리고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대한 강조가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관련 종사자에 대해 종사자 훈련을 평가하는 체제 또한 필요하다(러시아 연방, CRC/C/15/Add.4, para. 19)."

위원회는 러시아의 2차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재론했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 3항에 비추어 위원회는 시설의 조건과 이들에 대한 정기 검사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등 법적개혁을 포함한 추가 개혁을 권고한다. 특히 독립적 검사체제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이 위탁가정과 공공시설을 사전 통보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러시아 연방, CRC/C/15/Add.110, para. 39)."

이어서 위원회는 제3차 보고서 검토 시 중점사항을 거론하며 “아동시설에 대해 공공 기관에 의한 독립적 검사” 필요성에 다시 유의하였다(CRC/C/RUS/CO/3, paras. 44, 45).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3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책임 있는 부서 및 기관이 지정되고 이들 간 협조가 원활한가(제3조의 이행이 모든 정부 부서와 관련됨)?
- 관련 비정부기구 또는 시민사회 협력기관이 명시되어 있나?
- 모든 법규, 정책과 관행이 당사국 내의 모든 아동들이 제3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 검토가 이뤄졌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필요한 곳에 목표가 설정되고 진도가 표시되었나?
- 아동권리를 더 많이 보장하는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 다른 관련 국제 기준을 받아들이는가?
- 필요할 때 국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나?

(상기 조치들은 전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전략의 일부로서 채택될 수도 있다.)

- 예산 분석과 소요자원의 배분은?
- 감시 및 평가체제의 개발은?
- 성인과 아동에게 제3조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나?
- 아동관련 모든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인식제고 방안의 발전은?

### ● 제3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아동관련 모든 활동에서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협정원칙이 헌법 기타 다음 사항관련 법규에 반영되어 있나?
  - 공공사회복지기관
  - 민간사회복지기관
  - 각종 법원
  - 행정당국
  - 입법기관
- 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고려가 입법, 행정

의사결정 및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정부차원의 정책과 현장에서 고려되고 있는가?

- 사회 및 아동분야에 대해 그리고 정부부서 간 및 정부부서 내 예산배분
- 사회보장
- 기획 및 개발
- 환경
- 주택
- 교통
- 보건
- 교육
- 고용
- 청소년 관련 사법제도
- 형법 (부모의 양형에 아동에 대한 영향고려 등)
- 망명기도를 포함하여 국적 및 이민업무
- 아동기관을 포함하는 대체수용에 관한 제 규정
- 아동관련 법규에 최선의 아동이익을 최대한 고려가 아니라 “최우선 고려”라는 규정이 있는가?
- 법률이 특정상황에서 최선의 아동이익을 결정하도록 할 때, 이를 위해 아동이 나타낸 견해에 대해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는 등 아동협약 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가?

#### 아동권리협약 제3조 2항

- 아동 복리를 위해 필요한 배려와 보호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법이 국가가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법이 국가적 재난 시 배려와 보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이 규정이 모든 아동에 대해 완전히 이행되는지 판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가?

#### 아동권리협약 제3조 3항

국가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식기준이 설정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아동보호와 보살핌에 책임 있는 공적 사적 기관, 서비스, 시설을 점검했나?

- 안전
- 보건

-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보호
- 종사자의 수와 그 적정성
- 협약상의 모든 규정 준수?
- 독립적 검사와 감독

● **주의사항**

아동권리협약은 일부를 떼어 생각할 수 없고 각 조문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 1항은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전체협약 이행에 관련된 일반원칙으로 인정받았다. 협약 제3조 2항은 당사국들에게 아동 복리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보살핌을 보장할 일반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제2조: 자국 내 모든 아동에게 어떠한 사유에서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인정

제6조: 생명에 대한 권리와 가능한 최대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

제12조: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에서 아동의 견해 존중; 아동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든 출석 발언할 기회의 제공

**최선의 아동이익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구하는 조항들**

제9조: 부모로부터의 격리

제18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의무

제20조: 가정적 환경의 박탈

제21조: 입양

제37조 c: 수용중인 성인으로부터 분리

제40조 (2)(b)(iii): 소년사법 형사문제에 관한 법원청문에 부모의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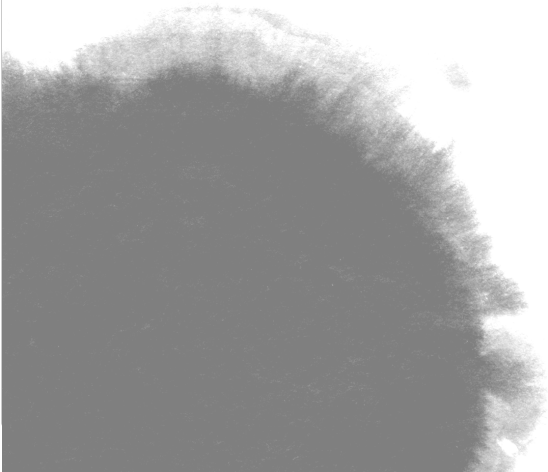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협약 제3조 3항**

협약 제3조 3항은 아동관련 모든 기관,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규정, 예를 들어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 (협약 제18조, 20-23조, 39조), 보건(제24조), 교육(제28조), 및 소년사법(제37조 및 40조)과 관련되어 있다.



# 04

## 제4조 협약 내 권리물권







## 제4조 협약 내 권리실현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With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such measures to the maximum extent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 need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요약

제4조는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권리 수행에 관한 국가의 전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해서만 이 같은 조치들은 가용가능한 자원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국제협력의 틀 내에서 필요한 곳에 최대한도로 취해질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협약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분명한 것은 거의 모든 조항들이 시민적 권리 혹은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이행은 제2조(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 대해 협약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와 제3조 2항(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배려

를 보장하는 것)에서 제시된다.

의무의 이행에 적합한 입법적·행정적 모델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권리 위원회는 정부가 아동에게 적절한 우선권과 관심을 부여함으로써 협약 전반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처음부터, 최초 보고서의 지침을 통해 위원회는 모든 국내법이 협약과 일치할 수 있고 하는데 특별한 강조점을 두었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이 모든 정부 수준에서 그리고 정부들 간에 적절하게 협력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2003년,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이행 원칙(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에 대한 세부적인 일반논평을 채택하였다. 서문에서, 위원회는 개념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이어서 위원회는 적절한 과정에서 개별적 요소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일반논평을 제시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일반논평 No.2와 관련하여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적인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을 지적하였다(CRC/GC/2002/2; 하단 참조).

##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이 1995년 캐나다의 1차보고서를 평가하면서 논평한 바 처럼, “174개의 지역들이 서로 다른 매우 광범위한 행정체계와 입법 체계를 가짐으로써 위원회는 그 어떤 특별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 협약이행을 위해 수립된 메커니즘의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일정정도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쟁은 매우 유익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협약이 지방과 중앙 차원에서 행동을 위한 주요 기준점이자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캐나다, CRC/C/SR. 214, para. 54).”

2003년의 아동권리협약이행의 일반조치에 관한 일반논평 No.5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일반논평은 서문에서 그 개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때, 국가는 국제법상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행은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내에서의 아동을 위한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다. 제4조에서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에 포함된 권리의 이행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 하에서 당사국은 의무를 부담하고, 아동인권의 실현이라고 하는 의무의 이행은 아동을 물리거나 사회의 모든 부분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모든 국내적 법률이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고, 협약상의 원칙과 규정들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특별한 구조의 개발과 모니터링, 정부 내 훈련과 기타 활동들, 의회와 모든 수준의 사법기관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포괄적인 조치들을 구체화해왔다.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이행의 일반 조치들"의 용어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위원회가 검토 후 펴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일반 조치들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고들을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회의의 정기 보고서에서 이러한 권고들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설명할 것으로 기대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 5, 2003, CRC/GC/2003/5, paras. 1, 2)."

위원회의 보고서 지침은 협약의 조문을 몇 개의 클러스터(Cluster)로 배열하였고, 그 첫 번째가 일반 이행조치에 관한 것으로 제4조와 제42조(협약의 내용을 아동과 성인에게 널리 알릴 의무) 및 제44조 6항(국가 내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이다.

아동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의 최종보고서인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이행을 위한 조치의 개발을 논평했다(제27차 총회 특별회의 전체 특별위원회 보고서, 2002, A/S-27/19/Rev.1 하단 박스 참조).

위원회는 이행 초기 10년 동안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지적하였다.

"위원회에 의해 확인되고 현재의 일반논평에서 설명된 일반 이행조치들은 입법, 조정, 정부 및 비정부 모니터링 기구,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 인식제고와 훈련, 적절한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서 모든 아동들이 협약 상 모든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하는 것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약의 채택과 가장 보편적인 비준에 따른 만족스러운 결과 중 하나는 국가차원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아동 중심·아동 친화적인(sensitive) 기구와 구조, 그리고 활동 - 중앙 정부의 아동권리 부서, 아동부, 아동에 관한 행정부서간 위원회, 의회 위원회, 아동의 영향 분석, 아동의 예산과 '아동권리의 상태'에 대한 보고, 아동 권리에 관한 비정부 기구의 연대, 아동 옴부즈맨 및 아동 권리 위원회 등을 진전시켰다는데 있다. 비록 이러한 진전 중 일부는 매우 표면적인 것일 수 있지만, 이 같은 기구의 출범은 적어도 사회 내에서 아동의 지위에 대한 인식과 아동에게 보다 높은 정치적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의지가 변화하고 있으며 통지행위가 아동과 그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협약의 맥락에서 국가의 역할은 개별 아동과 모든 아동들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다는 점을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 아동 인권의 이행은 아동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선행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 CRC/GC/2003/5, paras. 9~11)."

각각의 국제조약은 아동권리협약 제4조의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조치와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 책임 있는 협정기구가 이와 관련한 일반논평을 개발해 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에서는 이행과 관련하여 협약 제2조 1항과 유사한 비차별의 원칙을 첫 문단에 제시하였다. 2항에서는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국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맞게 현 규약이 인정한 권리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적 조치 혹은 여타의 조치를 채택하는 필수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3항에서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규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초기 일반논평에서, 인권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

2조에 대해 “동조항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관련 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의무 이행 방법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협약은 의무의 이행이 헌법과 법률의 제정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 그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 위원회는 동 규약에서 규정한 의무가 인권의 존중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고 당사국이 자국 관할권내의 모든 개인이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반논평은 아동권리협약 제42조에 제시된 의무처럼,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3, 1981, HRI/GEN/1/Rev.8, para. 1 p.164).

## 유보의 검토와 철회

일반 이행조치 하에서, 위원회의 보고서 지침이 제기한 첫 번째 주제는 관련 당사국의 유보결정에 대한 검토와 철회였다.

일반논평 No.5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협약 당사국은 협약에 대한 비준이나 수락 당시에 유보를 할 권리가 있다(제51조). 본 위원회는 아동 인권에 관한 완전하고 조건 없는 존중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 같은 목적은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유보를 철회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유보에 대한 재검토와 철회를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 검토 이후, 국가가 유보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정기 보고서에서 유보결정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포함되도록 요구한다. 본 위원회는 세계 인권 회의에서 유보를 재검토하고 철회하도록 장려한 것에 대한 당사국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제2조에서는 “유보”를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성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은 당사국들이 조약의 수락이나 비준 시에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보를 행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아동권리협약 제51조 2항은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예를 들어 협약에 대한 존중이 일부 종교법을 포함한 국가 기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고 제시함으로써 몇몇 국가들이 제51조 2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유보를 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서는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부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이 행한 광범위한 유보결정에 공식적인 반대를 표현해왔음에 주목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로 하여금 협약이 가능한 한 완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s. 13~16)."

협약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유보의 재검토와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예를 들어, 이란은 유보를 결정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는 이슬람법과 국내법에 부합하지 않는 협약의 규정이나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협약 당사국의 일반적 유보가 많은 협약의 규정들을 잠재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고시켜 줄 것을 권고한다(이란, CRC/C/15/Add/123, para. 7).”

이란의 두 번째 보고서의 평가에 대한 회신에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초기 보고서의 제출 이후 협약당사국의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유보에 대해 그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이란, CRC/15/Add. 254, para. 6).”

위원회는 요르단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협약 제14조에 대한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유보결정이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유보의 결정이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전 권고에 비추어(요르단, CRC/C/15/Add/21), 위원회는 당사국이 14조에 대한 유보를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22 및 권고를 참고하여 정밀한 관점에서 재고하고 최종적으로 비엔나선언 및 행동프로그램에 부합하게 유보결정을 철회할 것으로 권고한다(요르단, CRC/C/Add. 125, paras. 12, 13).

## 기타 국제협약의 비준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위원회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와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의 두 개의 선택의정서 및 여타의 국제인권협약에 협약당사국이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원칙의 관점에서 서명과 비준 혹은 가입을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일반논평 No.5에서는 비열거적 목록이 부록에 첨부되어 있고, 이 같은 비열거적 목록은 때때로 갱신할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No.5, CRC/GC/2003/5. para. 17, Annex, 하단 박스 참조).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하여, 협약당사국은 자신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도로 사용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약을 기안하는 동안, 협약의 초안 제4조는 “가용가능한 자원의 범위에서”라는 구절을 포함하여 협약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다수 위원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보호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가용가능한 자원에 종속되지 않으며 협약의 기준이 새로운 협약에서 제약될 수 없다는 논리를 근거로 이 구절의 삭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그 제안의 존치를 주장했다(E/CN.4/1989/48, pp.30, 31; Detrick, p.155).

## 기타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비준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이행 조치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열거하지 않은 여타의 국제협약 목록을 제시하고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원칙에 근거하여 비준을 촉구하였다. 비준항목에는 아동권리협약의 두개의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와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와 여섯 개의 주요 국제 인권 협약을 추가하였다. 위원회는 비열거적 목록을 가끔씩 갱신할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두 번째 선택의정서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 교육상 차별금지 협약
- ILO 강제적 노동협약, 1930
- ILO 강제적 노동철폐 협약, 1957
- ILO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3
- ILO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1999
- ILO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2000
-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51, 수정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67
-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1949
- 노예제도협약, 1926
- 노예제도협약의 개정 의견서, 1953
- 노예제도, 노예 매매, 그리고 노예제도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추가협약, 1956
-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2000
-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협약 및 국제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추가의정서
- 1949년 8월 12일 제네바협약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추가의정서
-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의 금지 및 그 파기에 관한 협약
- 국제형사재판에 관한 규정
- 국제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 국제 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 부모의 책임 및 아동보호조치에 대한 관할, 적용법률,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절충안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차별화하지는 안이 수용되었다. 협약에서 인정한 모든 권리의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국들은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이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협력의 틀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취해져야 한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No.5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권 혹은 협약상의 권리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단순하거나 권한 있는 구분은 없다. 본 위원회의 보고서 지침은 "시민적 권리와 자유"라는 제목 하에 제7조, 제8조,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37조 (a)를 하나로 범주화하였지만, 문맥상, 협약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2조와 같은 많은 다른 조문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향유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아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사법심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제4조의 두 번째 문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적인 자원을 비롯한 여타 자원의 부족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때문에 이 같은 권리에 대한 "점진적 실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즉, 국가들은 그들의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을 구해야만 한다. 국가가 협약을 비준할 때, 당사국들은 자기 관할권내에서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인 이행에 기여할 의무도 함께 가진다. 경제적 상황을 불문하고, 국가는 아동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며, 가장 취약한 집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CRC/GC/2003, paras. 6~8)."

### 점진적 이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이라는 개념은 경제적·사회적·문화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조 2항에 반영되었다. 즉, “각 당사국들은 입법적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코자 개별적으로 그리고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해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비차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인권과 자국의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본 규약이 인정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1990년에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일반논평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법적조치의 채택과 관련된 것으로 아래에 인용하였다. 가용자원의 최대한도에 의한 점진적 실현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점진적 실현의 개념은 모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이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때문에 의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관련된 권리의 완전한 존중과 보호에 관한 즉각적인 의무와는 매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적 실현 혹은 점진적 실현은 협약의 매우 중요한 규정들에 대한 의무의 면책으로 잘못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으로 점진적 실현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이행해야 할 모든 국가들의 어려움과 실제 세계의 현실성들을 반영한 불가피한 유연책이다. 다른 한편으로 점진적 실현은 사실상 규약의 존재이유로서 당사국은 본 규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해야 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하는 매우 객관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점진적 실현은 그 목표를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이것과 관련된 의도적인 퇴행적 조치들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본 규약이 규정한 모든 권리에 대한 고려 그리고 가용 자원 최대한도의 완전한 사용의 맥락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각각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본질적 수준을 최대한 만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핵심적인 의무가 현재 재임 중인 규약 당사국에 있다는 견해를 가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수의 개인들이 기본적인 식료품과 의료보험, 쉼터와 주택, 혹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당사국은 협약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만약 규약이 최소한의 핵심적인 의무를 실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최소한의 핵심적인 의무를 가진 국가가 의무의 이행 시에 자원의 한계를 고려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논의되어야 한다. 규약 제2조 1항에서는 규약 당사국이 가용 가능한 자원의 최대한도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약 당사국이 가용가능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적어도 최소한의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했다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고 무엇보다도 이 같은 최소한의 의무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가용자원이 명백히 부족하다 하더라도 당사국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해당 권리의 가능한 최대한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 정도나 특히 동 권리가 실현되지 않는 정도를 감독하고, 권리 실현 증진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고안할 의무는 자원 제약을 이유로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3, 1990, HRI/GEN/1 Rev.8, para. 11, pp.17~18).”

“가용가능한 자원의 최대한도의 사용”이라는 개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접근은 아동권리협약 제4조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 같은 사항은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No.5에 제시되었다(CRC/GC/2003/5, para. 8).

국가가 권리이행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자원”은 재정자원 그 이상을 의미한다. 때문에 가용가능한 자원에는 인적자원과 조직적 자원들도 포함된다.

**모든 적절한 입법적 조치: 모든 법률이 협약과 완전하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포괄적인 검토의 필요성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입법이 협약의 규정이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법률들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행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강조해왔다(가능한 한 당사국들은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기술적인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은 일반논평 No.5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내법과 관련 행정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라고 믿는다. 협약에 따른 1차 보고서와 현재의 2차 및 3차 정기 보고서의 검토하면서, 위원회의 경험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차원의 검토과정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은 더욱 엄밀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검토 시에는 개별 조항뿐만이 아니라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을 인정하여 협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검토는 일회적이기 보다는 **지속적이어야 하며 현행 법률을 비롯하여 입법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토 절차는 모든 관련 정부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회 위원회와 공청회, 국가 인권 기구, 비정부 기구들, 학계, 영향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 등에 의한 독립적인 검토절차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CRC/GC/2003/5, para. 18)."

위원회는 관습법이나 조례의 구조도 검토하고 협약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전통적인 실천들이 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당사국의 경우, 관습법과 성문법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부르키나파소, CRC/C/15/Add.193, para. 4)."

### 법은 협약의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협약은 당사국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협약이 담고 있는 모든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적·행정적·기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래서 법적 이행과 관련하여 협약은 두 가지 범주의 권리 즉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양분되어 있고 이중 후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만 이행될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협약은 어떤 것이 경제적 권리이고 사회적 권리이며 문화적 권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협약의 거의 모든 조항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들로 구성된 최소한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록 가용가능한 자원의 부족이 협약의 일부 권리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제약할 수 있고 법률의 부존재가 빈곤이나 수용할 수 없는 불평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될 수 없거나 비사법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령, 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인 무상의 교육을 규정하거나 고용허가의 연령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리는 당사국이 책임져야 할 목표들의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은 가용가능한 자원의 최대한도의 원칙을 특별히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일반논평 No.5에서는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협약의 규정들이 자국의 국내법 체제 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많은 협약 당사국들에게 도전으로 남아있다. “즉각적인 이행”의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나 협약이 “헌법적 지위”를 가지거나 협약을 국내법에 통합시킨 국가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원회는 협약의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환영하며 이는 모든 국가에서는 아니지만 몇몇 경우에 국제 인권 문서의 이행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다. 수용은 협약의 조항이 법원에서 직접 인용될 수 있으며, 국가 기관에 의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법이나 일반적 관행과의 충돌이 있을 때 동 협약이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국가에 의한 수용은 조례나 관습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내법이 협약과 일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거부하지 않는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비추어 법률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협약이 항상 우선해야만 한

다. 국가가 입법권한을 연방 지방 정부나 지역정부에 위임한 경우에, 이러한 보조적인 정부는 협약의 체제 내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위원회에 “모두”를 위한 권리의 보장을 자국의 헌법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동의 이러한 권리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용가능한 권리가 아동을 위해 실제로 실현되는지 여부 그리고 법정 앞에서 직접적으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는 협약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국내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환영하며, 이는 협약의 핵심적 의미인 성인과 아동이 공히 인권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동권을 국내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아동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시키고, 아동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인 법률의 제정과 여타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특히 협약에서 확인된 일반 원칙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2조). 위원회는 협약의 원칙을 두드러지게 하고, 강조할 수 있는 통합된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의 진전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모든 관련 “분야별(교육, 보건, 사법 및 기타)” 법률이 협약의 원칙들과 기준들을 일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CRC/GC//2003/5, paras. 19, 20, 22)."

위원회는 계속해서 협약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독일의 2차 보고서를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최초 보고서 심사이후 채택된 아동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을 잘 알고 있지만 1차 보고서에서 예견한 바와 같이, 협약이 기본법에 통합되지 못한 점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표한다. 이전 권고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을 기본법에 통합시키는 것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독일, CRC/C/15/Add. 226, paras. 9, 10)."

아울러 위원회는 종합적인 아동권리상황이나 아동관련 법률들의 진전을 원한다.

"위원회는 아동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채택한 많은 다른 법률들과 결정들, 그리

고 여기에 더하여 1997년 아동보호법 제5의 채택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같은 많은 조치들이 권리중심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주로 복지중심의 접근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협약상의 많은 권리들이 (예를 들어 비차별, 아동최상의 이익, 소년사법에 관한 권리) 가족법을 포함한 법률들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자국의 법률과 행정규정 그리고 법적인 절차들이 협약의 조항과 원칙 그리고 여타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단일한 통합된 아동권리법을 단계적으로 채택하여 협약상의 권리가 자국 수준에서 이행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b) 종교법의 해석이 기본적인 인권과 양립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법률은 아동권리 접근에 기초해야 하고 매우 명료하고 정확해야 하며, 출판을 통해 대중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리비아, CRC/C/15/Add, 209, paras. 7, 8)."

"위원회는 콜롬비아가 아동권리에 관한 많은 조항들을 헌법에 통합시킨 것과 자국법을 뛰어넘는 국제규약에 비준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1989년 제정된 불완전한 미성년법(Minors' Code)이 10년간의 논쟁과 아동권리협약 비준에 따른 의무를 국내법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하는 수많은 유엔 가입국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하고 당사국이 콜롬비아의 모든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협약과 완전하게 일치하도록 다음의 네 가지 관심 영역 즉, 소년사법, 입양, 노동 그리고 학대로부터의 보호 등에 대한 소년법 개정과정을 즉각적으로 완결할 것을 권고한다(콜롬비아, CRC/C/COL/CO/3, paras. 9, 10)."

관련 법률이 시행될 때, 리트비아의 2차 보고서에 대한 논평에서처럼, 위원회는 법률의 이행과 함께 문제들을 자주 언급해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특별히 교육, 보건의료, 소년사법,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영역에서 법과 실천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능한 법률을 수정 혹은 개정하고 특별히 적절한 인적·재정적 자원의 제공을 통해 법률이 협약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리트비아, CRC/C/LVA/Co/2, paras. 9, 10)."

## 권리침해의 구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5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때, 법률과 정책 그리고 실천이 아동에게 구제책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권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구제책들이 침해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구제조치의 요건은 협약에 내포되어 있고, 기타 6개의 주요 국제 인권 조약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었다. 아동의 특별하고 의존적인 지위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구제조치가 실효적이고, 아동에 민감한 절차가 아동 및 그들의 대표자에게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아동 친화적인 정보와 자문 그리고 자기변호의 지원을 포함한 옹호, 필요한 법적 그리고 기타 조력으로 독립적 진정절차나 법원에의 접근의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 권리의 침해가 발견될 경우, 제39조의 요구대로 배상 및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적, 심리적 회복, 재활 및 복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만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 24)."*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사법적 심사가 가능해야 하고 이 같은 권리의 침해가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률에 충분히 상세하게 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 모든 적절한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

위원회는 개별 당사국이나 모든 당사국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이것이 일반 논평 5에서 규정한 정부, 유엔기구, 비정부기구 그리고 기타의 기구들과의 대화나 보고서에 대한 최초 10년간의 경험에서 유용한 수단이 도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정은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은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부간에, 서로 다른 정부 수준 간에 그리고 정부와 아동과 청소년들을 포함한 시민사회 간에 가시*



적이며 교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서로 다른 많은 정부부처와 여타의 정부 혹은 준정부 기구들은 아동의 삶과 권리 향유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권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부 부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수준의 정부절차 내에 엄격한 이행 모니터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기구, 비정부기구 및 기타 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 27)."

### 아동을 위한 광범위한 국가전략

위원회는 세계아동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인용하면서 아동들이 최상의 혹은 최우선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아동권리를 이행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원회는 전체 협약의 이행을 반영한 국가정책 혹은 종합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주 지적하였다.

이 같은 전략의 개발과 관련 내용은 일반논평 No.5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협약의 틀 내에서 아동을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이나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 전략을 개발하거나 검토할 때 정정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 본위원회의 권고들을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 이 같은 전략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전략이 모든 아동의 상황 및 협약의 모든 권리와 연계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과의 논의 등을 포함한 협의 과정을 통해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과의 의미 있는 협의는 특히 아동에 민감한 주제와 과정을 요구하며 이는 단순히 아동에게 성인의 절차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변화 되고 취약한 아동 집단을 확인하고 우선권을 주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협약상의 비차별의 원칙은 협약이 규정한 모든 권리가 국가 관할권내의 모든 아동에게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비차별의 원칙은 차별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전략에 권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략이 최고위 정부 기관에 의해 승인되어

야 한다. 또한 전략은 국가개발 계획과 연계되어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략은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계속해서 배제될 것이다."

"전략은 좋은 의도를 가진 단순한 목록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국가전체의 아동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략은 정책과 원칙에 대한 설명을 넘어 모든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모든 범위와 관련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종합적인 국가 전략은 교육이나 건강과 같은 세부적인 국가 행동계획으로 정교화 되어 특수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 같은 목표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며 재정적·인적·자원이 할당될 수 있다. 전략은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하지만, 이 같은 우선순위의 설정이 협약 상 당사국이 수용한 세부적인 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홀히 하거나 희석해서는 안된다. 전략은 인적 및 재정적 측면에서 적절한 자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국가 전략의 개발은 일회성의 과제가 아니다. 한 번 수립된 전략은 정부 전체를 통해서 아동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아동 친화적으로 번역되고 적절한 언어와 형식을 통해) 보급될 필요가 있다. 전략에는 모니터와 지속적인 검토, 정기적인 개선과 의회 및 대중들에 대한 정기적 보고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CRC/GC/2003/5, paras. 29~33)."

세계아동정상회담(1990), 인권에 관한 세계회의(1993), 아동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2002)를 포함한 다양한 세계 회의는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을 요구해왔다. 위원회는 2002년 아동특별회의에서 수립한 목적과 목표들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국가의 노력과 그 노력이 A World Fit for Children과 같은 결과보고서에서 구체화된 점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세계 회의에서의 특별한 서약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협약 상 당사국의 법적인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유사하게 특별회의에 따라 특별한 행동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협약 의무에 관한 종합적인 이행전략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당사국은 2002년 특별회기와 여타의 관련 국제회의에 대한 대응을 협약의 전반적인 이행전략에 통합시켜야 한다."

"결과문서에도 협약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보고서에 현재 행동계획에 대한 이행과정에서 취한 조치와 달성된 결과들을 포함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제안이 특별회기에 채택된 서약을 달성하기 위한 진전 상황의 모니터링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협약 상 정기보고를 위한 개정 지침에도 더 나은 방향을 제공해 줄 것임을 확신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 paras. 35~36)."

그래서 이탈리아의 2차 보고서 검토 시,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신속하게 채택하고, 국가행동계획과 UNGASS의 최종문서 이행 계획을 서로 일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이탈리아, CRC/C/15/Add.198, para. 13).

"이와 유사하게, 위원회는 인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밀레니엄개발 목표를 포함한 협약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아동행동 계획의 채택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인도, CRC/C/15/Add. 228, para. 16)."

### 이행의 조정: 상설적인 정부기구의 필요성

위원회는 이행과정이 정부 내 상설적인 많은 기구가 요구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조정은 핵심적인 목표 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 아동들의 존재감을 증가시킨다.

게다가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매우 상이한 정부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들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조정을 달성하는 데는 정부 간 위원회와 부서 간 위원회를 포함하여 많은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방법들이 있다. 지금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그리고 특별히 일반원칙에서 제시한 4개의 조항의 관점에서 정부기구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많은 당사국들이 여러 장점 때문에 중앙정부에 산하에 특별부서나 기구를 설치하였다. 일부 당사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내각 산하에 조정목적의 특별부서나 기

구를 설치하였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정부부서의 실제 활동들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한 부서가 모든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토록 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정부 내에서 아동의 문제를 더욱 주변화 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총리, 대통령 혹은 아동에 관한 내각 위원회에 직접 보고되는 높은 권한이 한 개의 특별부서에 주어진다면, 이는 정부 내에서 아동의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전체적인 목적에 기여할 수 있고, 조정을 통해 정부 전반 및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부서는 종합적 아동 전략을 개발할 책임과 함께 협약 상 보고를 조정하는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 39)."

당사국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종결하면서 위원회가 표명한 가장 일반적인 관심사 중 하나는 조정의 부족이었고, 이 같은 조정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조정'이 자주 권고사항에 포함되었다. 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이나 계획은 정부 간 조정의 중요한 산물이다. 그리고 이 같은 조정은 모리셔스에 대한 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권고에서처럼,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을 조정하는 토대가 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 내 협약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수준에서 공히 아동권리관련 다양한 정부 조직 간의 조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모리셔스, CRC/C/15/Add. 64, para. 23)."

2006년 모리셔스의 2차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여성권리국과 아동개발국, 가족복지국과 소비자 보호국의 역할을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서로 다른 정부부처와 기구간의 조정이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수준에서 다양한 부처와 기구들 간의 조정을 더욱 강화하고 당사국 내 다양한 지역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모리셔스, CRC/C/MUS/CO/2, paras. 12, 13)."

위원회는 정부부처 및 부서와 여타의 기구들 간,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 정부 및 공공기관과 인권과 아동권리를 다루는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민간기구 간, 그리고 민간기구들 간에 조정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해왔다.

## 분권화와 중앙화

위원회는 과도하게 중앙화 된 의사결정과 정책수행을 비판해 왔고 아동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는 분권화의 위험에 주목해왔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실행한 분권화의 과정에 환영하면서도 이 같은 분권화가 인권과 아동의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지역의 법률과 실천들이 협약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다(인도네시아, CRC/C/15/Add. 233, paras. 16, 17)."

"당사국의 분권화에 대한 최근 경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아동에게 의료, 교육,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하기 위한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아동을 위해 적절한 자원의 배분을 보장할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와 모니터 기구의 부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헝가리, CRC/C/15/Add. 87, para. 10)."

2006년 헝가리의 2차보고서의 검토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계속되었는데, 1997년 아동보호법이 효과적인 서비스의 수립을 위한 충분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서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책임을 위임한 1997년 아동보호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무사항들이 재평가되어야 하고 이들 기관들에게는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의 수립과 적절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수립을 위한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헝가리, CRC/C/HUN/CO/2, paras. 7, 8).

일반논평 No.5에서 위원회는 권한의 이양이 국가의 의무를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위원회는 권한의 이양과 위임을 통해 권력을 분권화하는 것이 국가 구조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 정부가 국가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을 위해 실현해야 할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축소되지 않다는 점을 많은 당사국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원회는 협약을 비준했거나 수용한 당사국은 그 관할권 내의 모든 영토에서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권한을 이양하는 모든 과정에서, 당사국은 권한을 이양 받은 기관이 협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재정적, 인적 및 기타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 정부는 권한을 이양 받은 행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한 협약의 전적인 준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차별 없이 국가관할권내의 모든 아동에게 협약이 존중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상설적인 감독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나아가, 분권화나 권한 이양이 다른 지역의 아동들의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의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안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s. 40, 41)."

그래서 위원회는 2차 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캐나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협약의 많은 부분이 주와 지역의 능력 범위 내에서 적용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것이 일부 경우 주와 지역의 차이로 인해 협약의 최저 수준조차도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연방정부로 하여금 주와 지방이 협약 상 자신들의 의무를 인식하고 법률과 정책 그리고 여타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모든 주와 지역에서 협약상의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캐나다, CRC/C/15/Add, paras. 8, 9)."

## 민영화

위원회는 서비스의 민영화 과정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일반논평에서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민간 부문과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을 주제로 한 2002년 전체회의에서 민간부문을 사업자를 포함하여 NGO와 영리 및 비영리 목적의 민간협의체로 정의하였다.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는 일반논평 No.5에서 인용한 세부적인 권고사항들을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들이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보장해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당사국은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가 새롭게 부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민간 부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기관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자국 내 모든 아동들의 협약 상 모든 권리의 완전한 인정과 실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제2조 1항 및 제3조 2항). 제3조 1항은 공공 혹은 민간 기구에 의해 행사 되는 것과 상관없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3항은 권한 있는 기구(적절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들)에 의한 적절한 기준, 특히 보건 영역에 있어 직원의 수 및 적격성에 있어 적절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감독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모든 국가와 비 국가 서비스 제공자들이 협약을 존중할 수 있도록 상설적인 모니터링 기구나 절차가 존재해야한다고 제안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s. 42~44. 협약 제3조 2항과 제3조 3항 참조)."

"레바논의 3차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아동권리 이행과정에서 그리고 교육과 보건의료, 사회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국가와 비정부기구간의 긴밀한 조정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에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민영화나 비정부기구로의 위탁과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허약한 책임성과 투명성 여기에 외부 모니터링과 평가 기구에 의해 제공된 중요한 정보의 부족에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서비스 제공자로서 민간부문 그리고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에 관한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사항들을 고려하여 (a) 비정부조직 간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협약이행과 정책 형성의 모든 단계에서 이 같은 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b) 비정부기구들이 협약의 이행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대신할 경우, 비정부 조직에게 적절한 재정적인 자원과 여타의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c) 영리 혹은 비영리 목적의 비정부조직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완전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의 지침과 기준을 당사국은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d) 그리고 민영화나 비정부기구로의 위탁 시,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세부적인 협정을 통해 서비스의 제공이 효과적으로 모니터 되도록 해야 하고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레바논, CRC/C/LBN/CO/3, paras. 21, 22)."

## 아동영향 분석

위원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들을 탐색해왔다. 일반논평 No.5에서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에

"아동에 관한 모든 행동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제3조 1항) 모든 정부수준에서의 협약의 모든 규정들이 입법과 정책 개발 그리고 전달과정에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아동영향사정(아동과 그들의 권리의 향유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제안된 입법, 정책 또는 예산 배정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아동영향평가(이행의 실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행되어야만 한다."

"자기 감독과 평가는 정부의 의무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회위원회, 비정부기구, 학술기관, 전문가 단체, 청소년 단체 및 독립인권기구 등이 행하는 이행정도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을 제정하여 의회 그리고/ 혹은 대중들에게 공식적인 영향 분석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시하도록 한 몇몇 국가들을 격찬하였다. 모든 국가는 제3조 1항의 준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정책형성에 있어 아동의 가시적 통합과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 5, 2003, CRC/GC/2003/5, paras. 45~47)."

## 예산편성과 예산분석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의 이행이라고 하는 당사국의 의무가 적절한 예산의 분석까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 위원회가 경제정책에서 아동이 가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거의 대부분 아동은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배제되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어느 정



도의 예산을 아동에게 지출해야 하는지 대해서 그 어떤 생각도 가지지 못했고, 예산의 지출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거의 알지 못했다. 위원회는 다른 영역에서처럼 예산 영역에서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효과적인 이행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일반논평 No.5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보고 지침과 협약 당사국의 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본 위원회는 국가 및 기타 예산에서 아동을 위한 자원을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 사회 부문, 그 중에서도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할당된 국가 및 기타 예산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어떤 당사국도 협약 제4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로"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 일부 당사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당사국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분석하여 매년 "아동 예산"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사회적 계획, 의사결정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소외 집단의 아동이나 불리한 집단의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이 경제 정책 또는 재정적 침체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 51)."*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항상 세부적인 분석과 정보를 통해, 예산과 관련 쟁점들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일관적인 논평을 제시해 왔다.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중에서 사회프로그램에 할당된 총예산 비율은 적절해야하고,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용가능한 자원의 부족이 결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의 할당과 관련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위원회는 모든 수준에서 아동권리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당사국이 협약*

제4조를 완전하게 이행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장애아동, HIV/AIDS 위협아동이나 감염아동, 거리아동, 빈곤 아동 등을 포함한 취약집단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 당사국이 국가와 지방수준에서 아동들을 위한 예산의 배분에 관한 특별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권고한다(가나, CRC/C/GHA/CO/2, paras. 17, 18)."

"위원회는 예산할당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에 유감을 표하고 콜롬비아의 주요 빈곤 원인 중 하나가 아동의 복지, 특별히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문의 아동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재정의 불평등한 배분에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특히 위원회는 교육비, 의료비, 복지서비스 등 아동권리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예산의 삭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 제 4조의 규정에 부합하게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예산을 증액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 전체의 자원을 보다 균등하게 배분하고,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아동과 원주민 아동을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모든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보건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의 아동을 위한 예산의 배분이 불충분하고, 가끔 예산이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게 배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1999년에 시작된 분권화 과정이 재정적인 자원과 인적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퇴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협약 제 4조에 의거, 위원회는 당사국이 (a) 예방적인 빈곤감소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b) 아동권리에 관한 최우선의 원칙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 까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 특히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국제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c) 예산의 지출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수준에서 아동에게 지출된 예산의 규모와 비율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다(몰도바, CRC/C/15/Add. 192, paras. 14, 15)."

국가기구들은 전체 예산이 아동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결정이 예산에 직접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체적인 계획과 예산의 수립을 아동복지관련 상급위원회와 국가아동위원회의 활동들과 완전하게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시리아, CRC/C/15/Add.70, para. 26)."

위원회는 조세회피와 가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부정의 영향에 우려를 표한다. 러시아 연방의 3차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광범위한 부정, 그중에서도 보건의료와 교육부문 뿐만 아니라 입양절차에서의 광범위한 부정이 아동들의 완전한 권리의 향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당사국은 부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러시아 연방, CRC/C/RUS/CO/3, paras. 19, 20)."

"협약 이행에 사용될 자원들의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세회피와 부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조세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세의 부정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그루지야, CRC/C/15/Add.124, paras. 18, 19)."

##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기타 강제적 경제 조정의 영향

위원회는 경제조정과 경기후퇴가 나타난 1990년대의 세계 경기침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해 왔다. 1999년에 있었던 10주년 기념워크숍 둘째 날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경제정책이 결코 아동권리에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시민사회가 인권고등판무관이나 유니세프의 사무총장과 같은 주요 국제 지도자들의 지원받을 받아 거시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이 아동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이 같은 정책들이 아동권리의 이행에 더욱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을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22회기 보고서, 1999,9/10, CRC/C/90, para, 291(m)). "

위원회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해왔고 이 같은 우려는 일반논평 No.5에서 제시되고 있다.

"경제정책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원회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 제4조 및 기타 협약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위해 경제정책의 변화와 조정에 따른 영향들이 엄격하게 감시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 52)."

국가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아동관련 지출의 삭감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장 취약한 아동집단의 욕구가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페루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이 아동의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협약 제3조와 4조의 관점에 따라, 국가기관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 아동에게 충분한 자원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페루, CRC/C/15/Add.8, para. 1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이행을 위해, 예산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기 동안에도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 따라 가용가능한 자원의 최대한도까지 배분되어야 한다(우크라이나, CRC/C/15/Add.42, para. 20)."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2차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의료와 교육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였고 2000년~2001년 동안 정보관련 예산이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 교육은 여전히 낮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서비스의 질과 접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빈곤아동의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아동들(Children of Ukraine)'이라는 프로그

램이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사회서비스의 계획과 예산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재조정프로그램이 아동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협약 제2조와 3조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4조의 완전한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권고한다. (a) 협약의 이행을 위해,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하고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특히 사회적으로 주변화 된 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와 공공재정의 제공에 대한 분권화를 심사숙고하고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b) 빈곤감소전략(2001)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c) '우크라이나의 아동들'을 이라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가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d) 당사국의 아동관련 예산의 총액과 비율은 서로 다른 부분들의 아동들에 예산의 지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더 나아가 비용의 관점에서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그리고 효과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혹은 민간조직들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 경제적 제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존중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1997년 일반논평에서 경제적 제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존중의 관계에 대해 논평하였다. 위원회는 경제적 제재가 거의 대부분 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적 제재는 식량이나 의약품, 위생용품을 배분하는데 상당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고 음식의 질과 깨끗한 식수의 이용을 어렵게 할 뿐 만 아니라 기본적인 보건의료와 교육체계의 기능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 제재는 근로의 권리로 침해할 수 있다.

일반논평에서는 아동을 포함하여 사회 내 취약집단에 대한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일반논평을 채택함에 있어 위원회의 유일한 목표는 피제재국 지도자가 국제평화 및 안보에 관한 규범을 위반하였다는 결정에 의해서 해당 국민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

적 권리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동 목표는 결코 피제재국 지도자들을 지지 혹은 격려하는 것이나 유엔헌장의 규정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의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손상하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일종의 불법성이, 그러한 집단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기초가 되는 기본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않는 다른 종류의 불법성으로 대응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8, 1997, HRI/GEN/1/Rev.8).

아동권리위원회는 제재를 경험한 특정 당사국의 최종 검토에서 전술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에 관심을 기울였다.

## 모니터링과 자료수집

위원회는 세분화된 자료를 포함하여 충분한 자료의 수집 없이는, 협약 이행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주 언급해왔다. 일반논평 No.5에서, 위원회는 “자기 모니터링과 평가가 정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행의 진척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예를 들어 의회 위원회, 비정부기구, 대학기관, 전문가 협의체, 청소년 집단, 그리고 인권기구 등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일반논평 No.5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동권리실현에 있어 차별이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에 관한 충분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과 분류는 협약 이행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정보수집이 18세에 이르는 모든 아동기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정보의 수집은 국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표를 통해 확보되도록 관할권 전역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적합한 연구 기관과 협력해야 하고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이행에 대한 완전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협약의 정기보고에 관한 보고지침은 동 협약 전 분야에 대한 자세하게 분류된 통계적 및 기타 정보를 요구한다. 단순히 정보 수집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가 이행의 진척정도를 평가하고 문*

제를 구체화하며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의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는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와 관련된 지표들을 개발을 필요로 한다. 위원회는 자국 관할권내의 아동 권리의 현황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연례적으로 발표해온 당사국들을 칭찬한다. 이 같은 보고의 발표와 광범위한 보급 그리고 의회 등에서의 보고서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한 대중적 참여를 집중시킬 수 있다. 아동 우호적인 설명을 포함한 번역은 이 과정에 아동과 소수집단을 참여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많은 경우에 아동 자신만이 그들의 권리가 완전히 인정되고 실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동을 면담하는 것과 아동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안전조치와 함께) 예를 들어 제12조에 규정된 필수적인 권리를 포함한 아동의 시민적 권리가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고 고려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학교 등에서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s. 48~50)."

2005년에 개정된 정기보고서의 지침에서, 위원회는 많은 조항들과 관련된 세부적인 통계 자료와 여타의 자료들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독립적인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일반 논평 2”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이행에 대한 국가의 이행과 진척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의 완전한 존중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로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강화하는 과제의 개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정부가 자신들의 모니터링 의무를 국가인권기구에 일임해서는 안된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기구의 의제를 설정하고 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완전한 자유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2, 2002, CRC/GC/2002/2, para. 25).

일반논평 No.2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시민사회의 참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약 이행을 위한 조정과 활동이 정부를 뛰어넘어 사회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반논평 No.5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이행은 당사국의 의무이지만, 아동을 포함하여 사회의 모든 부분의 참여도 필요하다.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와 국가가 통제하는 서비스와 기구를 뛰어넘어 아동, 부모, 광범위한 가족, 기타 성인, 비국가 서비스 그리고 조직 등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협약 제 12조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 아동의 관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비정부기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이들 기구와 광범위하면서도 밀접하게 활동해야 한다. 비정부기구에는 인권관련 비정부기구, 아동과 청소년이 주도하는 조직 및 청소년 단체, 부모와 가족집단, 종교단체, 학술단체와 전문가 단체 등이 포함된다. 비정부기구는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행과정에서 이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아동의 인권 보장, 보호 및 감독을 위한 비정부기구와의 연대와 연합의 개발을 환영하며 정부가 비정부기구에 비지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과 긍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도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비정부기구는 협약보고과정에서 제45조에 따른 권한 있는 기구로서 이들의 참여는 많은 경우에 보고뿐만 아니라 이행과정에서 현실적인 추진력을 제공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비정부기구 단체는 보고과정과 여타의 위원회 업무에 매우 환영할만한 강력하고 지지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이 정부정책에 대한 공공의 면밀한 조사와 대중의 참여를 고무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보고지침에서 강조하였다. 언론은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s. 56~59)."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비정부기구의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아동단체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활발한 시민사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비정부조직들이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완전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협약 규정을 이행의 동반자로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당사국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형성을 포함한 협약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비정부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참여시킬 것을 권고한다(폴란드, CRC/C/15/Add, paras. 21, 22)."

"위원회는 국가기관과 복지부분 그리고 국제조직들 간의 협력이 증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 왔다. 그러나 협약이행과정에서 특히 시민권과 자유의 영역에서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시민권과 자유를 포함한 협약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단체 등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것.

(b)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비정부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협약 제15조와 여타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시리아, CRC./C./15/Add. Add. 212, paras. 19, 20)."

## 인식제고와 훈련

이행의 일반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 제4조처럼, 24조도 협약의 규정들과 원칙을 성인과 아동에게 광범위하게 알릴 의무에 관한 규정과 연관되어 있다. 위원회는 인식제고의 모든 과정에서 협약이 학교 교과목뿐만 아니라 아동과 함께 일을 하거나 아동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일반논평 No.5, 협약 제42조에 대한 논의 포함).

##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인권기구가 모든 국가에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일반논평 No.2에서, 위원회는 인권기구가 어떤 형태로든 아동의 권리를 독립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진하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아동 옴브즈만, 아동위원이나 아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나 일반 옴브즈만 제도내의 아동권리특별기구 등과 같은 독립적인 인권기구의 설치를 권고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에 다음과 같은 권고했다.

*"위원회는 옴브즈 사무소 내에 아동권리에 특별한 책임을 가진 동일한 위원이나 아동 권리의 책임을 가진 부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규정한 일반논평 No.2를 참조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독립적인 인권기구에는 아동 친화적이며 신속한 방식으로 아동의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협약 상의 권리 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아제르바이잔, CRC/C/AZE/CO, para. 15)."*

위원회는 이 같은 인권기구가 이미 설치된 당사국에 대해서는 아동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설치된 인권기구의 지위와 효과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스웨덴의 3차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아동 옴브즈만의 역할을 강화한 2002년의 법률 제정에 대해 환영하고 아동들의 권리 이행을 위해 아동 옴브즈만이 행한 많은 활동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더 많은 개선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당사국이 아동 옴브즈만에게 개인적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b) 의회에 제출되는 아동 옴브즈만의 연간 보고서에 아동 옴브즈만의 이행권고에 따라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스웨덴, CRC/C/15/Add. 248, para. 6, 7)."*

성인들도 아동과 유사하게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가 필요하지만, 아동의 인권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당성이 존재한다.

"이 같은 정당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아동은 발달 상태로 인해 인권침해에 특히 취약하고, 아동의 견해는 여전히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 아동들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아동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권리침해에 대해 대책을 구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2 2002, CRC/GC/2002/2, para 5)."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특수하고 독립적인 인권기구나 아동권리를 위한 옴브즈 퍼슨 혹은 위원이 많은 당사국에서 설치되어왔음을 강조하였다. 자원이 제한된 경우에도,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의 효율적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에게 특별한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국제인권기구(NHRI)의 발달은 최선의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광범위한 국제인권기구에는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전담하는 개별 위원이나 특별부서 혹은 아동권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가 중심이 되고 당사국 내 모든 인권기구들이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는 점을 강조한다(CRC/GC/2002/2, para. 6).

일반논평은 국제인권기구가 1993년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와 관련된 원칙(파리원칙)에 부합하도록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같은 최소 기준들은 국가기구의 설치, 권한, 책임, 구성, 독립성, 운영방식, 국가기구들의 준수법적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국제인권기구(NHRI)는 가능한 한 헌법에 근거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입법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구의 권한이 아동권리협약 및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 그리고 관련 국제 인권문서들을 수용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가능한 한 최

대한도로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다. 그래서 국제인권기구는 아동의 인권 특히, 아동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인권기구는 이들의 권한 내에 있는 상황들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획득하고 모든 사람의 견해를 청문할 권한 등을 포함하여 그들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같은 권한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관련 모든 공적 실체와 사적 실체와의 관계에서 당사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의 증진과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아동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2. 2002, CRC/GC/2002/2, para 8).

국제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리도 가져야 한다.

아동권리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의회에 직접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고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당사국은 의원들에게 아동권리 관점과 협약에 대한 국가 이행의 관점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업무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회 내 연례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CRC/GC/2002/2, para. 18).

국가인권기구는 심의적이고 통합적이면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설립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과정을 포함한 적절하고 투명한 지명절차를 가져야 한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기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통제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적절한 자원과 기금을 가져야만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개인의 진정과 탄원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아동이 직접 혹은 아동을 대리하여 제출된 진정과 청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인권기구는 증인이 증언하도록 하고 심문할 권한 및 관련 문서 증거 및 구금된 장소에 접근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기구는 어떤 권리의 위반이든 아동들이 독립적인 조언과 변호 그리고 진정절차 등의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적절하다면, 국가인권기구는 진정에 대한 중재와 조정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 (a) 국가인권기구 명의로 아동 문제에 관련된 사건을 제소할 권리,
- (b)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하여 법원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개입할 권리를 포함한 아동이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지지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2, 2002, CRC/GC/2002/2, paras. 13, 14)."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가 아동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가인권기구는 지리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모든 아동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협약 제2조의 정신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모든 아동집단, 그중에서도 특히 보호아동, 구금아동,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장애아동, 빈곤아동, 난민 혹은 이주아동, 노숙아동, 문화와 언어, 보건과 교육의 영역에서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 등 가장 취약하고 불이익을 받는 아동집단들을 예방적으로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법률은 인권기구의 권리가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과 모든 보호시설 내 아동에 대한 비밀보장 하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협약 제12조의 규정처럼,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아동의 견해의 존중이 증진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같은 일반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인권기구의 조직 및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고 아동들이 적절하게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에 관한 문제에 있어 아동의 실질적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의 자문기구로서 아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협약 제12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맞춤형 협의 프로그램과 창의적인 의사소통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아동이 국가인권기구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2, 2002, CRC/GC/2002/2, paras. 15~17)."

일반논평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상 보고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에 권고되는 행위

협약의 일반원칙 하에서 아동권리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가 수행해야 할 다음과 같은 일련의 활동 목록들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열거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수행해야 한다.

- (a) 진정에 의한 것이든 자발적인 신고이든, 권한 범위 내에서 아동권리 침해의 모든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 (b) 아동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에 청문해야 한다.
- (c)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든,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와 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의견, 권고 그리고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표해야 한다.
- (d) 아동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실천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e)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그리고 아동권리와 관련된 여타의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이나 실천 간의 조화를 증진시키고, 협약의 해석과 적용과정에 공공기구와 민간기구에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시켜야 한다.
- (f)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자들이 국가의 경제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아동의 권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g)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를 적절하게 분류하며 여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아동권리 상황을 모니터해야 하고 정부의 이행 보고서도 검토해야 한다.
- (h) 모든 관련 국제인권구의 비준이나 가입의 장려해야 한다.
- (i)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동관련 모든 조치들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관련 법과 정책의 영향이 개발에서부터 이행, 그리고 그 이상에까지 신중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j) 협약 제12조의 관점에서,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과 아동권리 관점 쟁점들을 정의하는데 있어 아동의 관점이 표현되고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k)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에 대한 국내 법률과 국제문서의 개발과정에 아동들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하여 아동권리 관련 비정부기구의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참여를 옹호해야 한다.
- (l)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위해 언론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현장의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 (m) 당사국은 협약의 원칙과 규정들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아동은 물론 성인에게도 광범위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협약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협약의 규정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국이 이와 관련된

- 국가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해야 한다.
- (n) 학교와 대학 그리고 전문직의 분야에서 아동권리 관련 교육과 조사 그리고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공식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o) 특별히 아동에게 초점을 맞춘 인권교육(여기에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p) 국가에서 아동의 권리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법률을 발전시키고 아동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q) 소송에 앞서, 적재적소에 조정과 화해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r) 필요한 경우, 법정에 법정 조력자나 중재자 등의 아동권리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 (s) 협약 제3조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의 치료와 보호의 책임 있는 기관과 서비스 그리고 시설들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수립된 기준, 특히 안전과 보건 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 충분한 관리감독 등의 영역에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수립된 기준에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년원(아동의 갱생이나 처벌을 이유로 구급되어 있는 모든 장소)에 대한 방문과 상황에 대한 보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 (t) 전술한 부수적인 기타 활동들을 수행해야 한다.

##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

이행의 일반원칙에 관한 논평에서, 위원회는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 협력과 기술적 원조를 모색하고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원조한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적 원조 프로그램이 협약의 기준에 따라 아동에게 분명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기부 국가에게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특히 양자 원조 프로그램에 할당된 인적·재정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 국제원조 혹은 개발 원조를 받은 국가는 원조를 받는 총 재원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할당된 비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논평 No.5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협약 제4조는 협약의 이행이 전 세계 당사국들의 협력적인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약 제4조와 협약의 기타 규정들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55조와 56조는 국제경제 및 사회적 협력의 전반적인 목적을 확인하고, 회원국들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구와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와 개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본 헌장 하에서 자진하여 서약하였다. 유엔의 밀레니엄 선언과 아동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기를 포함한*

기타 국제회의에서 국가들은 특별히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자신해서 서약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에게 작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제 개발 원조를 위한 토대를 형성해야 하며 기부 국가의 프로그램은 권리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위원회는 회원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의 0.7%를 국제개발에 원조하도록 하는 유엔의 목표를 포함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적으로 동의한 목표를 충족 할 것은 촉구한다. 이 목적은 2002년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도출된 몬트레이합의의 여타 목표들과 일치한다. 위원회는 국제원조와 지원을 받은 당사국이 특별히 아동에게 할당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의 이행에 매년 할당된 국제적 지원의 양과 비율을 구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원회는 개발 국가와 기부국가가 공동의 책임으로 지속적인 토대위에서 양질의 기초적인 사회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0 이니셔티브의 목적을 지지한다. 위원회는 진전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국제회의에서 국가들이 부가적 자원의 할당과 지원할당의 효율성을 증가되지 않는다면, 많은 국가들이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권리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는 결론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빈곤감소전략보고서(PRSP)를 통해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들의 빈곤해소를 위해 행한 노력들을 격려하고 이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국가주도 전략인 빈곤감소전략보고는 아동권리에 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정부, 기부자 그리고 시민사회에게 빈곤감소전략의 개발에서 아동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도록 보장하고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빈곤감소전략과 광범위한 접근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종합적인 아동중심의 접근으로서 아동권리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고 아동 관련 목적 및 목표의 개발과 통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유니세프나 인권고등판무관, 유엔과 유엔관련 기구들로부터 적절하게 기술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이용할 것을 장려한다. 당사국은 협약에 따른 그들의 보고서에 기술적 원조에 대한 당사국의 관심을 밝힐 것이 장려된다. 모든 유엔 및 유엔 관련 기구들은 국제협력과 기술적 원조의 증진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야 하고 이들의 모든 활동들은 아동의 권리가 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유엔 및 유엔관련 기구들은 자신의 영향력 내에서 국제협력이 당사국들의 협약 상



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세계은행과 국제 통화기금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국제협력과 경제개발 관련 행동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CRC/GC/2003/5, paras. 60~64)."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원조를 위한 유엔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빈곤감소를 위한 2015 행동프로그램과 국제협력과 원조의 영역에서 수많은 여타의 활동들이 승인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만, 당사국이 총국내소득의 단 0.27%만을 공식적인 개발원조에 투자하고 있고, 2006년까지 그 비율이 매우 낮은 0.33%까지만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앞선 권고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능한 한 국내총생산의 0.7%를 해외 개발원조에 할당해야 한다는 유엔목표의 이행을 권고한다(독일, CRC/C/15/Add. 226, paras. 21, 22)."

### 자원의 동원 아동에게 꼭 맞는 세상에서 발취

개별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권리는 증진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행동계획을 이행해야 할 책임 그리고 적합한 환경을 통해 아동의 복지를 보호해야 할 주요한 책임은 개별국가에게 있고, 여기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새로운 자원과 부가적인 자원을 인식하는 것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오랜 기간 동안 평균이상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가 지속된다면, 아동에 대한 투자는 매우 생산적이다. 아동에게 투자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강력한 경제와 빈곤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공정한 사회의 토대가 된다.

현재의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국제환경의 틀 내에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부가적인 인적, 재정적, 물질적 자원의 충분한 할당과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북-남 및 남남간의 협력을 포함한 강력한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전 세계적 목표를 위해 그리고 아동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행동들을 추구해야 한다.

- (a) 선진국이 국내총생산의 0.7%를 총 공식적 개발원조에 배정하되 동의하고 이 같은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을 표현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선진국에게 국제적으로 동의한 공식적 개발원조에 국내총생산의 0.7% 배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능한 한 달성할 수 있도록

- 촉구한다. 우리는 감소하고 있는 국제개발원조를 반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따른 긴박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동의한 바대로 선진국이 최소한 국제개발원조에 GNP의 0.15%에서 0.20%까지 배정하는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b)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외채과다 최빈국에 대한 외채경감 방안(HIPC)을 강화시키고 가능한 한 외채과다 최빈국에 대한 모든 양자 간의 공식적 부채를 취소하는데 동의하는 대신 최빈국에게 빈곤 철폐를 위한 노력들을 입증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채상환서비스가 빈곤철폐프로그램, 특히 아동과 관련된 빈곤프로그램의 재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 (c) 부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채무교환과 같은 기존의 부채감소 기제를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쟁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조치와 국제적 조치를 통해 선진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가 그리고 중간소득의 개발도상국들이 포괄적이면서 적합한 개발중심의 영속적인 방법으로 부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책을 요구한다.
- (d) 관세장벽 감소 협상이나 양자무역체계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방해하는 무관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개도국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을 확대하고 개선한다.
- (e) 무역의 증가가 선진국의 성장과 발달에 본질적인 것이라 믿는다면, 자국시장 내에서 자신들의 모든 상품들에 무관세 무쿼타를 추진하는 선진국의 특혜적인 시장접근을 개선해야 한다.
- (f) 국가수준에서 그리고 국제수준에서 지역 간 불평등과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회개발을 위한 새로운 실질적인 추가 자원을 동원해야 하고 기존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장단기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동안아동이 보호되고 아동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도의 사회지출을 보장해야 한다.
- (g) 특별히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삭감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세계적인 국방비 지출 등의 무기의 생산과 보유에 대한 지출 삭감 및 무기거래의 삭감을 통해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식을 탐색해야 한다.
- (h) 기부국가와 수혜국가가 상호 동의와 노력에 기초하여 기본적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Oslo와 Hanoi의 합의문서에 따른 20/20 제안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협약 제4조는 협약 상 모든 권리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전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어떤 조치가 협약이 이행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포괄적으로 검토되었는가?
- 모든 관습과 국내의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률이 협약과 일치하도록 포괄적인 검토를 하였는가?
- 위원회가 구체화한 일반원칙이 법률에 반영되었는가?
- 협약 제2조 : 그 어떤 근거에 대한 차별 없이 사법심사를 받는 아동들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 협약 제3조 :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들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는가?
- 협약 제6조 : 생명권과 생존 및 발달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하고 있는가?
- 협약 제12조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아동의 관점을 존중하고 있는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행정적 과정에서 청문의 기회를 존중하고 있는가?
- 법정 앞에서 이 같은 원칙들이 최대한 발현되고 있는가?
- 협약이 국내법에 통합 혹은 자동적으로 발효되고 있는가?
- 협약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는가?
- 특별히 아동과 관련하여 헌법이 협약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가?
- 아동권리에 관한 통합된 법이 개발되었는가?
- 아동과 아동의 대표들이 협약 상 아동권리 관련 부서에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가지는가?
- 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은 존재하는가?
- 아동을 위한 국가계획이나 행동 프로그램이 협약의 모든 부분들의 이행에 통합되었는가?
- 정부의 상설기구가 수립되었는가?
  - 적절히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 적 지방정부간
    - 중앙정부의 부처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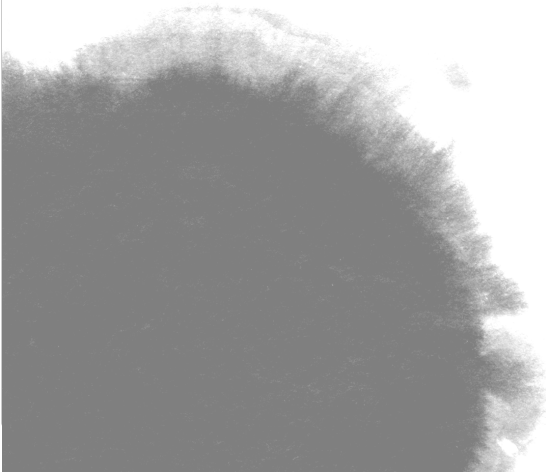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 아동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 이행이 효과적으로 모니터 되고 있는가?
  - 상설적인 조정기구들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국가 기구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공식적인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사회지출에 투자되는 전체 예산의 비율은 적정한가?
    - 국가적으로
    - 광역지방정부에서
    - 기초지방정부에서
  - 아동에게 투자되는 사회지출의 비율은 적정한가?
    - 국가적으로
    - 광역지방정부에서
    - 기초지방정부에서
  - 중앙정부와 기타 정부 수준에서 예산분석을 취해 설치된 상설 기구가
    - 아동에게 투자된 전체 예산의 비율을 확인하고 있는가?
    -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 특수한 아동집단간의 불균형을 확인하고 있는가?
      - 구조조정, 경제개혁, 경제변화는
        - 모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 가장 취약한 아동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모든 아동의 상황을 종합적이면서도 다학제적인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비차별의 원칙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가 충분히 분류되어 있는가?
  - 모든 정부 수준에서 정책형성과정과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보장되고 있는가?
  - 의회에 협약이행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가?
  -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적절하게 조사하고 논의하기 위한 의회의 기구가 설치되었는가?
  - 모든 수준의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가? 특히,
    - 관련 비정부기구가 참여하고 있는가?

- 아동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가?
- 협약 관련 비정부기구 그리고 아동들과 함께 협약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상담할 상설기구는 존재하는가?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독립적인 인권기구- 아동 옴브즈만, 인권위원회 내 위원이나 전문가 집단-가 설치되었는가?
-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보장되는가?
- 조사 등 적절한 법률적 권한은 가지고 있는가?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 05

## 제5조 부모의 지도 및 이동능력







## 제5조 부모의 지도 및 아동능력발달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esponsibilities, rights and duties of parents or, where applicable, the members of the extended family or community as provided for by local custom, legal guardians or other person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provi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exercise by the child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역량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요약

제5조는 협약 제18조와 함께 아동, 부모, 가족과 국가 간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본 조항은 “가족”을 융통성 있게 정의하면서, 협약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부모의 “책임”과 아동의 “역량 발달”—을 소개 한다. 이와 더불어서 본 조항은 협약이 “아동에 의한” 자신의 권리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아동을 권리의 활동적 주체로 간주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본 조항의 해석을 확대하였다. 협약에 “반 가족론(anti-family)”이나 아동이 부모에 대항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협약전문은 가족을 “사회의 기본집단이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에게 성장과 복지를 제공하는 일차적 환경”으로 규정한다. 몇몇 조항은 부모의 본질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과 부모로부터의 아동 분리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둔다(제3조 2항, 제7, 9, 10, 18, 27조). 교육 목표 중 하나는 부모에 대한 존중을 발달시키는 것이다(제29조).

## 당사국은 “...책임과 권리, 그리고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는 부모나 기타 아동을 양육하는 자의 책임을 부모의 권리와 의무로 연결시키면서, 아동에 대한 부모나 양육자의 “책임”의 개념을 협약에 소개하고 있다. 제18조는 부모의 책임에 대한 개념을 확대한다. 제18조는, 당사국은 부모 모두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적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부모의 책임은 또한 제27조 2항에 언급되어 있다.

이 조항을 제외하면 협약은 “부모의 책임”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협약의 내용은 관련이 있다. 제5조에 의하면, 부모는 “아동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 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 협약은 많은 사회 내에서 전통적이나, 이미 어느 정도 붕괴되어 가고 있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절대 권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행사하기 위한 부모의 책임으로부터 비롯된 권리와 의무, 이러한 부모의 책임에 대한 개념의 함축적 의미는 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법에 반영되고 정의되어야 한다.

##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이나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정의는 전 세계의 아동이 양육되는 친척관계와 공동체 양육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한다. 가족에 대한 중요성은 협약의 전문에 강조되어 있다.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제5조는 부모와 다른 법적 책임자들 뿐 만 아니라 확대가족 혹은 현지 관습에 의

하여 인정되는 공동체를 확대가족으로 인정한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No.7에서 “영유아의 아동 권리 이행”을 언급했다.

*"일반적 환경에서, 후견인을 포함한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유아의 부모는 영유아의 권리를 달성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전문(특히, 제 5조)안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위원회는 “가족”을 ... 핵가족과 확대가족, 그리고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공동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보호, 양육과 발달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들은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제공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15)."*

위원회는 또한 사회동향이 가족형태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인정 한다.

*"...위원회는 부모에 대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지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족의 크기, 부모의 역할, 아동양육 환경이 훨씬 다양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유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신체적, 개인적, 심리적 발달은 안정적인 양육관계가 형성될 때 최고로 제공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조부모, 확대가족의 다른 구성원 그리고 유아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양육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관계가 협약의 아동권리 이행에 눈에 띄는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가족형태의 범위는 아동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일치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CRC/C/GC/7, para. 19)."*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3조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 단위로써,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시하며, 제24조에서는 “가족, 사회, 국가의 일부이며, 미성년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로써 아동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1989년과 1990년의 두 가지 일반논평에서 “당사국의 사회에서 고려되는 가족을 형성하는 모든 사람을 광범위하게 포함” 한다고 가족의 정의에 대한 융통성을 강조하고 있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7, 1989, HRI/GEN/1/Rev.8, para. 6, p.184).

또한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 No.19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가족

의 개념이 국가와 국가, 심지어 같은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표준화된 가족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가의 법률과 관습에 의해 인정되는 가족은 제23조에서 언급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당사국은 그들의 사회와 합법적 체제 내에서 가족의 개념과 범위가 어떻게 해석되고 정의되는가를 보고해야 한다. “핵가족”, “확대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개념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각각에게 제공되는 보호의 정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야만 한다. 예를 들어, 당사국은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과 그의 자녀들 혹은 한 부모 가족과 그의 자녀들과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구성원들이 국내 법과 관습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보호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만 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9, 1990, HRI/GEN/1/Rev.8, para. 2, p.188).”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및 조부모가 가장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다처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조사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제18조). 1994년 여성차별금지협약의 일반권고는 “중혼과 일부다처의 금지와 아동권리보호”를 제안한다(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No.21, 1994, HRI/GEN/1/Rev.8, para. 39, p.315).

###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아동의 역량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 제공하기”**

협약에서 “역량발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임의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성숙도의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것은 아동이 독립된 성인으로 발달하기 위해 아동기 동안 존중받고, 지원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협약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이것은 아동이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라는 제12조와 연관된다. 이 개념은 제14조항에서 반복된다. 부모와 후견인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역량 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협약에서 “아동에 의한” 권리실행을 의미하며, 주체자로서의 아동

을 강조한 것이다. 영아와 유아기 아동의 권리와 능력은 위원회의 일반논평 No.7, “영유아기(early childhood)의 아동권리 실행”에 설명되어 있다.

*“부모와 다른 일차적 보호자에게 부여된 책임은 그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요건과 관련된다. 제5조는 부모의 역할은 ‘협약내의 권리가 아동에 의해 실행’되도록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한다. 이것은 나이가 많은 아동과 동등하게, 나이가 어린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신생아와 유아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지만 보호와 감독, 그리고 지도에 있어서 수동적 수령인만은 아니다. 그들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로부터 그들의 생존, 성장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 양육과 이해를 찾는 활동적인 사회 행위자이다. 신생아들은 출생 직후, 그들의 부모(혹은 다른 보호자)를 인식할 수 있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일반 환경에서 영유아들은 그들의 부모나 최초의 보호자와 강한 상호 애착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는 아동에게 일관된 배려와 관심 뿐 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정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인으로서 존중받는 기술, 지식과 태도를 획득한다. 이러한 면에서, 부모(그리고 다른 보호자)는 보통 유아(young child)가 그들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된 연결통로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16).”*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권능부여원칙(enabling principle)”으로서의 “역량개발”의 개념을 언급한다.

*“제5조는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최대화시키기를 포함하여 아동이 지식, 적성 및 이해력을 습득하는 성숙과 학습의 과정을 통한 ‘역량개발’의 개념을 이끌어낸다. 아동의 능력개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영아기 부터 취학 아동까지의 발달적 변화가 중요하다. 제5조는 부모(그리고 다른 성인)가 그들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지와 지도의 수준을 계속해서 조절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절과정에서 아동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의 역량발달 뿐 만 아니라 아동의 관심사와 희*

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이 나이가 많은 아동보다 더 많은 지도를 필요로 하고 같은 연령의 아동이라 하더라도 발달역량과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역량발달은 아동의 상대적 미숙함과 사회화를 위한 필요에 대해,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었던 아동의 자율성과 자기표현을 제한한 권위주의 실행에 대한용서가 아닌, 긍정적이고 권위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보여야한다. 부모(혹은 다른 성인)는 아동의 참여권(제12조)과 사상, 양심 및 종교에 대한 자유의 권리(제14조)를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아동의 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대화와 예시를 통해, 아동 중심적 방법의 지도와 감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17)."

위원회는 또한 일반논평 No.4,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청소년 보건과 발달”에서 역량발달의 개념과 나이가 많은 아동에 의한 권리 실행에 있어서 적당한 감독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 이라고 정의된다(제1조). 결과적으로, 18세까지의 청소년기는 협약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권리의 소유자이다; 그들은 능력발달에 따라 특별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다(제5조)..."

"위원회는 부모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은 그들의 청소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실행하고, 지도 및 감독을 제공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청소년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들의 견해를 고려하고, 청소년이 발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은 그들의 가족 환경 구성원에 의해 완전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될 역량을 가진 적극적인 권리 소유자로 인식되고 적절한 지침과 지도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3, CRC/GC/2003/4, paras. 1, 7)."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을 때, 교황청은 유보조항을 만들었다. "...이것은 협약의 조항을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해석한다. 특히,

이러한 권리들은 교육(제13조 및 28조), 종교(제14조), 결사와 집회(제15조), 사생활(제16조)과 관련된 권리이다(CRC/C/2/Rev.8, p.23).”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유보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 특히 권리의 주체자로서 아동의 충분한 인식을 위한 존중"

위원회는 계속하여 권고하였다.

" ... 협약 제5조와 12조의 관계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와 특권이 협약에 의해 인정된 아동의 권리, 특히 아동이 정당한 비중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철회되기를 희망했다(교황청, CRC/C/15/Add.46, paras. 7, 13)."

"몇몇의 다른 유보조항과 선언은 부모의 권위를 강조해왔다. 예를 들어, 키리바시 공화국은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 특히 제12조, 16조에 정의된 권리는 아동의 가족 내외 위치에 따라, 또한 키리바시의 관습과 전통 내에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임을 명시했다(CRC/C/2/Rev.8, pp.27, 35)."

위원회는 제5조와 12조, 16조와 관련하여 국가가 아동을 권리의 적극적 주체로서 충분히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들에 대해 자주 우려를 표해왔다.

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아동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다른 가족구성원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족전체 특히, 부모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 따라서 위원회의 한 구성원은 부르키나파소와 토론을 하는 동안 이렇게 말하였다. "...협약의 조항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협약의 기본정신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즉, 협약은 '아동의 힘'을 찾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가족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아동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부모와 관련해서 권위가 아닌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 다른 구성원은 "아동권리의 주장을 부모의 권리와 충돌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동과 가족의 권리는 서로 협력하여 나아간다."는 데에 동의했다(부르키나파소, CRC/C/SR.136, paras. 51, 53).

같은 주제에 대하여 1997년도 인권보고 매뉴얼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협약에서 아동의 권리는 자율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즉, 아동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에 대항하기 위해서나 혹은, 부모의 권리에 대한 대안적 권리가 아니라 가족의 핵심적 가치의 테두리 안에서 아동을 고려하는 새로운 차원의 장면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평가에서 벗어난, 다른 권리와 함께 아동의 기본적 존엄성과 개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인권보고 매뉴얼, p.445).”

위원회는 아동의 시민권리 실행을 위해 가족을 중요하게 본다. “아동권리증진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일반논의의 낱의 개요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아동의 시민 권리는 가족 안에서 시작된다..가족은 인권을 알리고 보호하며, 인간 가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 그리고 다른 문명을 존중하기 위한 중요한 중계자이다. 부모의 권위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아동권리의 실현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제15회기 보고서, 1994.1, CRC/C/24, Annex.V, p.63).”*

일반논의 마지막에서 위원회는 몇 개의 임시적 결론에 도달했다.

*“전통적으로 아동은 의존적이며, 눈에 띄지 않는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되었다. 최근에는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대화, 타협, 참여는 아동을 위한 움직임에 선두가 되고 있다.”*

*“가족은 아동을 포함한 개별 가족구성원의 민주적 경험의 첫 번째 단계를 위한 이상적인 테두리가 된다. 이것은 단지 이상인가? 혹은, 정확하고 도전해야할 과제 로 파악되어야 하는가?”*

위원회는 주장한다. 협약은

*“...가장 적절한 테두리는 개별 가족 구성원 모두의 기본 권리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는 자율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동은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격려 받음에 있어서 특히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족자체의 지위를 높이고,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아동권리*



위원회, 제17회기 보고서, 1994.9/10, CRC/C/34, paras, 183 이하 참조.”

제5조는 부모의 감독과 지도가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부모의 감독과 지도는 “적절”해야 하고, “아동의 능력발달”과 협약의 나머지 부분과 일치되어야만 한다. 제18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부모의 “기본적인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몇몇 당사국들은 부모의 권위를 지지하는 유보조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머지 당사국들은 그들의 초기 보고서에서 “전통적” 부모의 권리를 나타냈다.

이 국가들의 초기 보고서에서, 영국은 협약 제19조가 제5조와 결합되어야 하고, 아동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은 “합리적이고 적당한 신체적 체벌이 포함된 부모의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영국, CRC/C/11/Add.1, para. 335). 영국정부 대표자들과의 토론에서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제5조에 따르면, 부모의 책임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곳에서도 신체체벌을 위한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은 자신들의 시민법에 이 조항을 통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임을 발견했다.(영국, CRC/C/SR.205, para. 72).”

비슷하게, 위원회의 한 구성원은 세네갈의 초기보고서의 토론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전통적인 태도와 관습은 인정했지만, 아동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신념은 그러한 태도 중 하나였다.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것보다, 지도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세네갈, CRC/C/SR.248, para. 73).”

따라서 제5조와 제19조가 결합될 때, 위원회는 아동이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돌봄 안에서 “신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의 모든 형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지도”는 폭력적이거나 굴욕적인 훈육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No.8에서 “신체적 체벌 그리고 잔인하며 모욕적인 형태의 체벌(특히, 제19조, 제28조 2항, 제37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권리”를 반복하고 있다(제19조 참조).

*“제5조는 당사국이 ‘협약에서 인정된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

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부모의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적절한’ 감독과 지도의 의미는 전체 협약의 내용과 일관되며, 폭력 및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태의 훈육을 위한 조그마의 여지도 남겨서는 안 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8, 2006, CRC/C/GC/8, para. 28)."

제5조 “역량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동의 자율적 성장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또한 아동의 발달과정(제6조, 27조, 29조)과 아동의 발달 상태에 부적합한 어떠한 요구나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부모의 책임과도 관련이 있다. 제5조는 성숙기로 가는 아동의 과정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계속적인 자율성의 신장으로부터 발생해야만 한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은 성숙기 이전에 자기결정권이라는 특정한 권리를 얻는다. 그들은 종종 결혼이라는 성인의 권리를 갖으며, 몇몇 국가에서 14세나 15세에 결혼을 허락한다(위원회는 이것을 강력하게 비난한다).

몇몇 나라에서 “역량발달”의 개념은 아동이 충분히 성숙하였거나, 충분한 이해력을 갖추었음을 법률 내의 일반조항에 반영한다. 아동은 특별히 법에서 제한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없다면,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 내에 성숙기에 대한 인식의 차별-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제1조).

### 부모기를 위한 준비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위원회는 아동을 “의존적이고, 눈에 띄지 않으며 수동적인 가족구성원”으로 여기는 전통적 견해를 가진 몇몇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는 부모들이 자신의 책임을 위해 준비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위원회는 “영유아기의 아동권리 실현”에 대한 일반논평 No.7 에서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CRC/C/GC/7/Rev.1, paras. 20~24, 협약 제18조 참조).

이 일반논평의 언급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폭력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가족 내에서 영유아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

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더 나아가 부모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부모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 비행방지에 관한 유엔가이드라인(the Riyadh Guidelines)은 제안 한다. “조치는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발달과 아동보호, 긍정적인 부모-아동 관계 증진, 아동의 문제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 증진, 가족과 공동체 활동에 참여, 격려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의무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가족에게 제공 될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한다(para, 16).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5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책임 있는 부서와 기관의 확인과 협조가 이루어지는가? (제5조는 가족 법, 가족 지원관련 부서와 연관 있음)
- 관련된 비정부 기구/시민사회 협력자의 확인?
- 사법권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아동을 위해 법률, 정책과 관습이 조항과 양립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전반적인 검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목표의 확인과 과정의 지표가 필요한 곳을 포함하는가?
- 아동의 권리에 더 도움이 되는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다른 적절한 국제 기준을 승인하는가?
-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곳을 포함하는가?

(이런 기준들은 규약을 전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부의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필수적인 자원의 예산상 분석과 배분?
- 감독과 평가를 위한 체계의 개발?
- 성인과 아동들에게 제5조의 적용을 널리 알리는 것?
- 적절한 교육의 개발과 인식의 증가(제5조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가족을 위한 교육 그리고 부모교육을 포함)?

### ● 제5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가족”의 정의는 협약의 융통성 있는 정의와 일치하는가?
- 부모의 책임, 의무와 권리의 상세한 법적 정의가 있는가?
- 이러한 정의는 협약의 원칙과 조항과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되는가?
- 법률은 부모에 의해 아동에게 제공된 지도와 감독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신하는가?
- 아동의 능력 발달은 헌법과 법률에서 적절하게 존중되는가?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중요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를 얻고, 의사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일반 원칙이 있는가?
- 아동발달, 아동의 능력 발달 등에 관한 정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모, 다른 보호자와 아동,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용 가능한가?
- 이러한 운동이나 프로그램이 평가되어 왔는가?

● **주의사항**

협약은 분리할 수 없으며 협약의 조항들은 상호의존적이다. 제5조는 독립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정의는 다른 조항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 본 조항은 아동의 능력 발달과 함께, 다른 모든 권리 실행에 있어서 아동의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아동을 권리의 적극적 주체자로 주장한다.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일반원칙**

제2조: 사법권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각 아동을 위해 규정된 권리

제3조(1):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제6조: 최대한도로 생존과 발전 보장

제12조: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 존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진술할 기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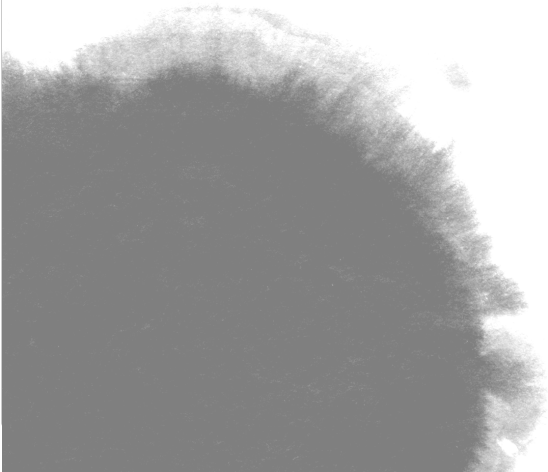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제5조의 실행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제1조: 법률과 실행에서 아동의 정의는 아동의 “역량발달”을 고려해야 한다.

제18조: 부모의 책임과 당사국의 양육지원



## 제6조 이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







## 제6조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every child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 요약

협약 제6조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원칙으로 지정한 조항 중 하나로 다른 협정에서도 보편적인 인권원칙으로 인정받은 어린이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함께 생존과 발달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가능한 한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은 협약 전체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발달을 협약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본다. 실제로 협약의 많은 조항들이 발달의 목표에 속해 있다. 다른 조항들은 아동의 발달을 위한 부모와 가족의 역할 및 아동을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또한 생존과 발달권을 최대 보장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일반원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다른 조항들(제2조, 제3조, 제12조)과 마찬가지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6조가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생명에 대한 이동의 고유한 권리

생존권은 국제인권선언 3조 안에 보편적인 인권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생존과 자유, 안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는 조항이 그것이다. 시민권과 정치권에 대한 국제협약 제 6조도 같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는다.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첫 줄).” 또한 이 협약의 3조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나라들이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 제한을 둘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2년 인권위원회는 생존권에 관한 일반논평을 통해 이 권리가 너무 편협하게 해석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인간이 가진 고유의 생존권”을 이해함에 있어 제한적인 방법은 있을 수 없으며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권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영아사망률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을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 특히 영양실조와 전염병 퇴치를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6, 1982, HRI/GEN1/Rev.8, para. 5, p.167).

1997년의 인권보고 매뉴얼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6조를 이행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는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기대수명의 연장, 영아와 유아사망률의 감소, 질병 퇴치, 보건 개선, 적절한 영양공급과 안전한 식수 제공 등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사형제도나 불법적 자의적, 또는 약식처형, 모든 강제실종 상황 등을 금지하고 방지함으로써 생명의 박탈을 막으려는 그 이상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조치를 단계별로 취함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생명을 빼앗으려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매뉴얼 p.424).

어린이의 건강과 보건서비스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24조는 특별히 영아와 유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제24조 2(a)항). 아동권리위원회는 어린이사망률 감소를 위해 각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격려해왔다. 그리고 사망

률이 높아지거나 편파적인 측정으로 인해 사망률이 들쭉날쭉해지면 그 때마다 우려를 표현해왔다(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참고 : 제24조).

“유아기의 아동권리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No.7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제6조는 생명에 관한 아동의 고유한 권리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각국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임신부와 아기를 보호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의 복지를 개선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양실조와 예방 가능한 질병은 어린이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왔다. 아동의 생명과 신체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일은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협약 6조가 발달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은 여러 면에서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무시와 무관심, 혹독한 대우, 잠재적 능력을 실현할 기회 금지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침해가 두 가지 모두를 위협하게 할 수 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위원회는 각국 정부에게 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협약의 다른 모든 조항들과 함께 총체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다른 조항들이란 보건의 권리에 대한 권리, 적절한 영양섭취의 권리, 사회적 안전과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 놀 권리 등을 다른 조항들(제24, 27, 28, 29, 31조)과 부모의 책임 및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서비스를 명시한 5조와 18조 등이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는 영양과 보건서비스, 질병 예방을 증진하는 활동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10).”*

에이즈가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에 미치는 특별한 위협은 “에이즈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에 언급되어 있다.

*“아동은 가장 넓은 의미의 보장 관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책의 혜택을 받아 건*

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권리 뿐 아니라 생명을 임의적으로 빼앗기지 않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생존과 발달권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무는 또한 아동의 행동과 생활양식, 성별 등에 관한 주의 깊은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한 연령그룹을 위한 문화적 규범이라는 명목 하에 허용되는 사회적 결정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자어린이는 강제조혼과 같은 유해한 전통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조혼은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에이즈에 대한 교육과 정보로부터 차단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에이즈 감염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절한 정보와 생활기술, 예방조치에 접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성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게 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실제 삶의 양식을 인정하는 것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3, 2003, CRC/C/GC/7/Rev.1, para. 11)."

#### 아동의 생존권 : 낙태와 안락사

협약의 제1조에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특별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은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출생 이전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적절한 법적 보호와 함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유엔아동권리선언을 상기시키고 있다.

협약의 초안 작업에 참여한 실무진은 이 구절을 협약 전문에 두자고 합의했다. 협약 비준국들이 전문을 채택하면서 협약의 1조와 다른 조항들을 편견 없이 판단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E/CN.4/1989/48, pp.8~15; Detrick, p.110).

협약 제1조는 신중을 기해 아동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열린 개념으로 명시해 두었다. 그 시기는 태아가 착상된 순간일 수도 있고, 출생한 순간일 수도 있으며, 그 중간 시기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약은 각 국가의 정부가 낙태나 가족계획 등과 관련해 어린이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엔권리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낙태에 관한 자국의 법에 맞게 유보조항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위원회는 반대로 가족계획의 한 방법으로 낙태를 하거나 성감별 때문에 높아지는

낙태율을 언급하며 낙태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만들 것을 촉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은밀하게 행해지는 낙태를 비롯해 10대들의 임신, 나이 어린 엄마들의 인권, 영아살해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현해왔다.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가 불법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불법적인 낙태 범위에서 의학적인 이유의 낙태 및 강간이 근친상간으로 인한 아동피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낙태를 제외하고 있다...."*

*"위원회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아동피해자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낙태에 관한 법률을 평가하라고 당사국에게 권고하고 있다(필라우, 5/Add 149, paras. 46, 47)."*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과 보건, 신분에 관한 일반권고에서 "...가능하면 낙태를 한 여성에게 부과되는 형벌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는 법안을 개정하자"고 언급하고 있다(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No.24, 1999, HRI/GEN/i/Rev.8,para. 31(c), p.336).

아동권리위원회가 예를 들어 중증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거나 체중이 심하게 미달되는 조산아들의 생명을 유지시킬 책임 등 아직 이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생존의 권리는 견지에서는 도덕적 논쟁이 될 만하다.

위원회는 네덜란드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형법 293조가 안락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형법 293조 2항이 제시한 기준에 명확하게 부합되는 의뢰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한 안락사는 기소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법률은 명백한 자기 의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하는 12세 이상의 아동(16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원회는 그러한 요청을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안락사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심각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생명을 의사 개인이 끄는 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이 문제에 관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해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a) 안락사에 대한 잦은 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중증장애 신생아에 대한 안락사를 인정하는 안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자국에서 법을 개정하고 법규와 절차를 마련할 것. 아동에 대한 보호와 법률과 절차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부합되도록 할 것.
- (b) 안락사 시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고되지 않는 안락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것. 안락사 요청을 승인할 것인지 결정할 때는 안락사를 요청하는 어린이와 부모, 보호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할 것.
- (c) 당사국의 요청에 의한 안락사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기한 보고서로 주기적으로 제출할 것(네덜란드, CRC/C/15/Add.227, paras. 33, 34)."

유엔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기한 권고사항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위원회는 안락사와 자살방조 문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당사자 요청에 의한 안락사와 자살방조를 다루는 절차를 평가하는 새로운 법령을 2002년 1월 발효할 것이다. 이는 복잡한 법적, 도덕적인 이슈를 공공적으로 광범위하게 쟁점화 시킨 결과이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수 년 동안 법과, 의료분야 사례로부터 도출된 상황에 법적 명확성과 함께 인도주의적 자선을 제공하려는 새로운 법을 인정한다. 위원회는 그 새로운 법령이 안락사와 자살방조를 범죄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님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생명을 고의적으로 거두려는 행동을 인정해 법적인 관대함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협약이 당사국에게 협약 2조와 6조와 관련된 생존권 보장의 의무를 부여하는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엄격하고 정밀한 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새 법령은 의사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격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데다 상태가 호전될 가망이 없고,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가 심사숙고해서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요구할 때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시스템이 상황을 제대로 밝혀내고 예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

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기준을 따르려는 과도한 부담으로 편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또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요청을 엄격하게 적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 시행이 일상적이 되고, 무감각한 일이 될 수 있음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의 법적 시스템 하에서 2천 건 이상의 안락사와 자살방조(또는 두 건이 한꺼번에 일어남)가 2000년 한 해 동안 평가위원회에 보고되었다는 사실과 평가위원회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건수가 단 3건 뿐이라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이 단지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고 있는지 의혹들이 지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새로운 법령이 12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16세가 된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16~18세 청소년들의 의지를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게 한 그 법이 그 문제에 있어 미성년자가 자신의 이익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미성년자의 발달과 성숙을 고려해 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생명 포기에 대한 결정을 올바로 판단해 내리는 일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안락사와 자살방조는 한번 시행하고 나면 절대 돌이킬 수 없으므로 위원회는 미성년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신념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그러한 평가 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한 그 작업이 법적으로 상황이 종료되기 전 안락사나 자살방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사건이 일어난 후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고에 따라 안락사와 자살에 관한 자국의 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안락사 등의 절차가 제3자의 압력이나 잘못된 사용을 방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후의 평가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에 나오게 될 보고서는 “심사숙고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요청”, “격심한 고통”,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상태” 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적용할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법령이 적용된 사례, 평가위원회의 관련보고서에 나오는 사례

수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찰 하에 법을 지키고 이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의료진이 장애를 가진 신생아들을 개인 판단으로 안락사 시키는 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당사국은 안락사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생명권에 대해 법에 어긋난 폭력적인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어떤 사안이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당사국은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있었던 법적 재판의 결과들은 어떠한지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네덜란드인권위원회, 국제시민정치권협약에 관한 제3차 보고서, CCPR/CO/72/NET, paras. 5, 6)”

2006년 12월에 적용된 장애인권리에 관한 새 협약 10조는 “생명에 대한 권리”에 대해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과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인생을 즐기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확인하라고 요구한다.” 장애인을 위한 균등한 기회 보장 기본규칙은 당사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기한 권고사항 안에서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은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에게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누리는 것과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rule 2.3).”고 요구한다. 그 규정은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앨 것을 강조한다(rule 15.1, 15.2).

비차별 원칙과 생존권과 관련해 어떤 국가는 태아가 장애를 가져올 질환을 가졌다고 진단되면 임신 후기, 심지어 만삭이 다 되어서도 낙태를 허용하도록 용인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 문제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도덕적 딜레마를 무수히 만들어낸다. 아기의 권리와 엄마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아동에 관한 협약의 일반논평 No.9를 통해 위원회는 생명과 생존, 발달에 관한 고유의 권리는 장애아의 경우 특별한 보호와 관심을 받을 권리라고 역설하며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한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장애아동의 이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완전히, 또는 부분*



적으로 타협해 버리려는 다양한 관행이 있다. 더구나 장애아동은 영아살해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어떤 종류의 장애이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가족의 혈통을 더럽힌 나쁜 징조로 취급되어 특정한 인물이 지역사회로부터 장애아를 살해하는 임무를 부여받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는 대개 처벌받지 않거나 가해자가 아주 약한 형벌만을 받는다. 당사국은 공공인식캠페인, 적절한 법률 제정과 직간접적으로 장애아동의 생명과 생존, 발달의 권리를 침해한 모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보장하는 법의 강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para. 31, 협약 제23조 참조)."

## 영아살해

남아가 여아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는 사회에서 성비불균형은 선별적인 낙태나 영아살해가 여전히 널리 퍼져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the Platform for Action”은 제4차 여성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채택하였다.

“ ... 통계에 따르면 많은 나라에서 여자어린이들이 출생 시부터 어린 시절, 어른이 될 때까지 차별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지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100명당 5명이 더 많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태아 성감별과 여아에 대한 영아살해를 들 수 있다.” “the Platform for Action”은 여자어린이에 대한 모든 차별과 남아선호사상을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이 태아성감별 및 여자영아살해와 같은 해롭고도 비윤리적인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아선호사상은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과학기술과 결합해, 여아에 대한 낙태로 이어졌다(제4차 세계여성회의, 베이징, 중국, 1995, 9월, the Platform for Action A/CONF.177/20/Rev.1, paras. 259, 277(c), 283(d)).

위원회는 인도의 1차 보고서 심사 기간에 이 이슈를 제기하고, “당사국이 영아살해와 선택적 낙태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와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전략 개발에 착수하라”고 권고했다(인도, CRC/C/15/Add.115, para. 49).

두 번째 보고서가 나왔을 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슈를 다시 제기했다.

"위원회는 임신 전 및 산후 진단법(성별 선택 금지)을 위한 2003년 개정안에 주목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악화되어 왔던 0~6세의 성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차별(para. 30)에 관련된 권고안에 추가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강하게 추천했다.

- (a) 임신전과 출산 전 진단법(성별 선택 금지)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b) 선택적 낙태와 여아 영아살해를 막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부모, 지역사회, 법률가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다.
- (c) 경제적 사회적 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성 차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다(인도, CRC/C/15/Add.228, paras. 33, 34)."

1차보고서의 심사에 이어 나는 중국 대표와의 대화에서, 위원회 위원들은 특별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언급했다. "중국은 성차별 문제에 관한 중요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왜곡된 성비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며, 임신 후기 이후의 낙태, 영아 유기, 영아살해의 가능성 등은 관찰이 필요하다(중국, CRC/C/SR.299, para. 18)."

위원회는 권고사항 안에서 이 문제를 추가로 지적했다.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들이 취해진 반면 위원회는 선택적인 영아살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남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가족계획정책이 어떤 어린이의 생명도, 특히 여아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협약 24조를 비롯해 협약의 원칙 및 조항들과 부합되면서 목적이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가족계획정책의 명확한 지침이 관련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당사국은 여아에 대한 낙태와 유기 뿐 아니라 인신매매, 성매매, 납치, 유괴 등과 맞서 싸울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대책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중국, CRC/C/15/Add. 56, paras. 15~36).

그리고 중국의 2차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는 만족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선택적인 낙태와 영아살해를 중국 본토에서 금지하는 법적 조치를 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낙태와 유아 뿐 아니라, 아동 유기, 특히 여자어린이와 장애아동 유기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는 기존의 가족계획정책과 사회적 관습이 낳은 부정적 결과이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국 내에서 생명, 생존, 발달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선택적 낙태와 영아살해에 대한 기존의 법률을 강화할 것과, 불균형한 성비와 출생신고 비실행 등 가족계획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중국, CRC/C/CHN/CO/2, paras. 28, 29)."

대부분의 법률 시스템은 영아살해를 일반 살인과 구분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영아 대상의 특정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인정해 산모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아살해는 특별하고 일반살인보다 경미한 범죄라고 인식하는 이러한 법은 살인사건의 희생자인 어린이를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이란에 대해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버지가 자녀나 손자들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 Panel Code 220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보상금 중 어머니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어머니가 공식으로 고소를 한 사건에 있어서도 처벌은 판사의 자유재량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관련 형법에 대한 개정을 비롯해 그러한 범죄 처리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기소가 실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이란, CR/C/15/Add.254, paras. 31, 32)."

일부 국가에서 여자어린이와 장애아는 영아살해를 당할 위험이 특별히 높다. 위원회는 이어 1997년 "장애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 토론의 날"에 토고에 대해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제23조).

"위원회는 일부지역에서 장애아와 기형아, 피부가 변색된 신생아, 치아가 난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 출산과정에 사망한 산모로부터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는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죽음의 발생에 대해 토론하면서 위원회는 이 같은 살인을 막기 위해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하는 것이 필요하다(토고, CRC/C/15/Add.255, paras. 30, 31)."

## 조혼

조혼은 특히 여자어린이에게 협약 2조에 명시된 비차별 원칙을 저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6조에 명시된 생명과, 생존, 최대의 발달을 누릴 권리 엄마와 신생아의 권리를 위협한다.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 여성대회는 행동강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15~19세 사이의 1,500만 명 이상 소녀들이 매년 출산을 한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되면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기기 쉽고, 사망률 또한 평균 이상으로 높아진다. 어린 엄마의 자녀들 또한 사망률이 높다(행동강령, A/CONF.177/20/Rev.1, para. 268).

## 사형

아동 권리 협약의 37조는 18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6조는 어린이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를 인정해 이렇게 단언한다.

시민과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6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신부에게 사형선고를 내려서는 안 된다(para. 5)."고 말하고 있다. 협약에 대한 제2차 선택의정서는 1989년 유엔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해 채택되었다. 협약의 1조는 누구도 처형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과 함께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사형으로부터 어린이들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어린이에 대한 사형 금지는 법률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제37조).

사법제도 밖에서 일어나는 약식재판이나 임의재판 등을 다루는 인권특별보고관은 청소년 범죄자의 보호를 비롯해 사형제도의 집행실태에 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제37조).

## 무력분쟁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8조는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당사국에 요청하고 있다. 무력분쟁은 수많은 아동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자주 언급해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광범위하게 침해되는 것 - 그 중에서도 특히 무력분쟁, 무장군인 등 무기를 가진 사람들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 국가의 재편성 정책, 다른 형태의 인구이동, 열악한 보건 위생 시설, 심각한 영양실조 및 관련 질병, 집단 간의 만연한 분쟁 등의 결과로 아동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자국 내 모든 아동의 생명·생존·발달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책과 프로그램, 편지 등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더 나아가 당사국이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국제원조를 추구할 것을 권고한다(브룬디, CRC/C/15/Add.133, paras. 30~31)."

"6조와 협약의 다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암살, 실종, 경찰 및 준군사집단에 의한 고문 등 무력분쟁이 아동의 삶에 끼치는 위협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며, 거리의 아동에 대한 다수의 "사회정화(social cleaning)",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계속 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을 무력분쟁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권고사항[CRC/C/15/Add.31 참조]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을 "사회정화"로부터 보호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사법적으로 고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콜롬비아, CRC/C/15/Add.137, paras. 34~35)."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콜롬비아의 3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할 때 이 이슈를 다시 언급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규군에 의해 자행되는 수많은 폭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러한 폭력으로 아동들이 죽임을 당하며, 군대가 아동을 전투 중에 죽은 것으로 잘못 보고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범죄자가 계속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군대의 사법시스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특별히 언급하는 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잔재를 철폐하고 조속히 아동이 생명을 잃은 인권 침해사례를 수사하고 최우선적으로 범죄자를 법에 따라 확실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공정한 재판과 관련된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수사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증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콜롬비아, CRC/C/COL/CO/3, paras. 44~45)."

같은 맥락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무장병력의 신병모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과 원칙, 특히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원칙(제3조)과 생명·생존·발달의 권리(6조)에 비추어볼 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무장병력에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법적 최소 연령이 낮은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적인 인권 및 인도주의 법에 비추어, 무장병력에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법적 최소 연령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이라크, CRC/C/15/Add.94, para. 15)."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뢰로 인해 아동의 생존과 발달이 위협받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예를 들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잠비크에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지뢰를 제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재활 및 관련된 다른 지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모잠비크, CRC/C/15/Add.172, paras. 30~31)."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1982년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에서 "협약 제6조에 명시된 생명에 대한 권리는...비상사태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라고 특별히 언급했다. 다음으로 이 일반논평은 전쟁의 위험을 피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가

장 중요한 조건이자 보증이 됨”을 강조했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6, 1982, HRI/GEN/I/Rev.8, para. 2, p.166).

인권위원회는 1984년의 다른 일반논평에서 다음의 내용을 강조했다. “핵무기를 설계하고 실험하고 생산하고 보유하고 배치하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권리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다… 핵무기를 생산하고 실험하고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며 반인도주의적 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 위원회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규약의 당사국이던 아니던 간에 모든 국가가 단독으로 또는 협약에 의해 세계에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시급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4, 1984, HRI/GEN/I/Rev.8, paras. 4~7, p.178).”

###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폭력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과 최대한의 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6항의 의무는 다른 많은 조항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19항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37조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로부터의 보호, 38조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대한 선택의정서 등).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보안병력과 경찰 등에 의해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다른 규정들과 함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법집행관이나 대리인 등에 의해 무력이 과도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들이 형사법의 73절 규정들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는 것에 심히 놀란 바이다. 이는 생명에 대한 권리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된 나이지리아의 형사법 조항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및 규정들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이다(나이지리아, CRC/C/15/Add.61, para. 24).”*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생명·생존·발달의 권리가 국내법에 통합되어있음을 주목하고 있지만, 살해당한 아동의 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히 우려하고 있는 바이다.*

브라질에서의 암살, 즉결 약식 또는 독단적인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2004년도 보고서에서 보고하였듯이,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는 주로 무장경찰이나 전직 경찰관들이다(E/CN.4/2004/7/Add.3)."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우선적으로, 아동의 죽음을 막고 아동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각각의 사례들을 충분히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가정에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브라질, CRC/C/15/Add.241, paras. 34~35)."

영국의 2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군중을 제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고무 총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것은 아동을 다치게 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고문에 반대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A/54/44, para. 77(d))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폭동 진압의 한 방편으로 플라스틱 고무 총탄을 사용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영국, CRC/C/15/Add.188, paras. 27~28)."

동행이 없거나 가족과 헤어진 아동들이 특히 취약하다는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005년도 일반논평에서 제기되었다.

"6조에 명시된 당사국의 의무는 최대한 아동의 생명·생존·발달의 권리를 위협하는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과 헤어졌거나 동행이 없는 아동들은 성적인 목적이나 다른 착취를 위한 아동 매매, 아동에게 해를 끼치거나 극단적인 경우 죽게 하는 범죄행위에 관여하는 것 등 그들의 생명과 생존,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위협 등에 취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6조는 당사국의 경계를 필요로 하며, 조직화된 범죄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아동권리위원회, No.6, 2005, CRC/GC/2005/6, paras. 23~24)."

아동의 "실종"은 다수의 국가에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2006년 유엔총회는 강제 실종되기 쉬운 아동이나 그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강제실종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을 채택하였다(제8조, 37조 참조).

거리에서 살며 일하거나 거리에서 일하는 아동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특히 위협받고 있을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에서의 학대와 폭력, 사회경제적 요인과 내부 무력분쟁으로 인해, 당사국에 매우 많은 거리의 아동들이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1년 보고타(Bogota)에 1만 명 이상의 거리의 아동들이 있다고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아동들이 비행청소년그룹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우려하는 바이며 특히 사회정화의 위협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이 할 것을 권고한다.

- (a) 거리의 아동들에 대한 사회정화와 다른 폭력들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b) 거리의 아동들과 비행 청소년집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이들의 범위와 본질,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 (c)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에 따라 거리의 아동들의 견해를 고려하고, 성별(gender)을 감안하여, 그들에게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편의를 특히 콜롬비아 가정복지연구소(Colombian Institute for Family Welfare; ICBF)의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활동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이들에게 적절한 영양, 주택, 필요한 건강관리,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d) 가능한 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가정의 재결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 (e) 기술적 지원을 특히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로부터 요청한다(콜롬비아, CRC/C/COL/CO/3, paras. 84~85)."

## “명예” 살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일반논평 No.4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6조, 12조, 19조, 24조 3항에 비추어볼 때, 당사국은

명예살인 등 청소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는 모든 행동과 활동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널리 퍼져 있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인식증진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법안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전통적인 악습의 원인이 되는 성역할과 관습의 문제를 다룰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당사국은 조혼과 여성할례 등 몇몇 전통적인 관습의 해로운 측면에 대해 여러 전문분야의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센터의 설립을 촉진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3, CRC/GC/2003/4, para. 24)."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각 개별국가에 이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제기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명예살인을 문제로 인식했다는 것에 주목하는 바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소위 명예살인이 널리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종종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을 꺼리고 가해자가 관대한 처벌이나 명목상의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행되는 범죄를 차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러한 범죄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철저히 수사되고 기소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기존의 법률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인식증진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파키스탄, CRC/C/15/Add.217, paras. 34~35)."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명예를 위해 행해지는 범죄의 문제가 당사국에 없다는 대표단의 진술에 주목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살인'과 관련된 규정이 형법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중 몇몇 사건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는 대표단의 진술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이 할 것을 권고한다:

- (a) 논쟁 중인 범죄가 명예를 위해 자행되었다면 처벌의 경감을 허용하는 모든 규정을 철폐하기 위해 당사국의 법률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 (b)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법을 개정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c) 그러한 관습들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인식증진 캠페인을 실시한다(레바논, CRC/C15/Add.169, paras. 28~29)."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레바논의 제3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며 이 문제를 다시 다루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명예를 위해 자행된 범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형법 562조에 따라, 부인이나 다른 여성 친척을 죽인 남자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희생자의 성적 관계에 대응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을 증명할 경우 처벌이 감형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우려하는 바이다.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들 중 일부는 아동에 의해 행해져 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에 의거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명예살인'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명예'를 위해 자행된 범죄의 경우 감형을 허용하는 모든 규정을 철폐하기 위해 국내법, 특히 형법 562조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법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훈련과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은 또한 종교 지도자나 지역사회 지도자 등과 함께,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이러한 관습에 대한 인식을 증진해야 한다(레바논, CRC/C/LBN/CO/3, paras. 32~33)."

## 다른 전통적인 악습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이 아동의 건강에 해로운 전통적인 관습을 철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제24조). 전통적인 관습들은 또한 협약 6조에 명시된 아동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간다의 "아동 제물(child sacrifice)" 문제를 제기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동 제물이 Mukono와 Kayunga 지역에서 행해지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래와 같이 행할 것을 권고한다:

(a) 지역 차원에서 아동을 제물로 드리는 관습을 확실하게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채택한다;

(b) 아동을 제물로 바친 사람들이 반드시 당국에 신고 되고 기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로 노력한다.

(c) 지방정부를 통해 부정적인 문화적 관습, 특히 지역과 관련된 관습에 대한 인식증진 캠페인을 실시한다(우간다, CRC/C/UGA/CO/2, paras. 33~34)."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또한 거꾸로 태어난 아동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거꾸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사고방식 등 아동에게 해로울 수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검토하고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중앙아프리카공화국, CRC/C/15/Add.138, para. 33)."

## 자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각 나라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몇 국가에서 아동의 자살 비율이 높거나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우려해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자살의 원인과 효과적인 예방 방법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해 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청소년 자살의 여러 가능한 원인과 가장 위험해 보이는 청소년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우선시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신건강, 교육, 취업이나 다른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지원 및 개입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은 이 점에 있어서 이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는 다른 나라의 정부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뉴질랜드, CRC/C/15/Add.71, para. 28)."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뉴질랜드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당사국에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청소년 자살, 특히 마오리족 청소년들의 자살을 다루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특히 청소년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취해야 한다...(뉴질랜드, CRC/C/15/Add.216, para. 38)."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Periodic Reports, 2005년 개정판)>은 자살로 인한 아동 사망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명확하게 요청하고 있다.

## 교통사고

예방 가능한 사망의 다른 주요 원인,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교통사고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생명을 빼앗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공공정보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계속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요르단, CRC/C/15/Add. 125, paras. 37~38)."*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에 나타나있듯이 사람이 차에 치이는 사고의 90%가 아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려하는 바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아동과 운전자, 교통경찰,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 관련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것을 권고한다(모잠비크, CRC/C/15/Add.172, paras. 30~31)."*

## 사망 조사 및 신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 초판본에서 모든 아동의 사망 및 사망원인을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아동의 사망을 조사하기 위해 법률에 의무와 절차를 제정하는 것은 실제 사망 원인을 은폐할 가능성을 줄인다. 또한, 종교적 · 사회적 사고 방식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자살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대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모든 아동의 사망을 조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폭력이나 방치가 관련되어 있는 사망이 보다 많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충분한 조사는 또한 예방 전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법에 의한 아동 사망 조사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해왔다(영국, CRC/C/15/Add.188, para. 40).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유엔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은 감금되어 있는 아동의 사망원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재소자의 자살률이 높고 재소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재소자 간에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유엔규칙은 다음과 같이 명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기간 중에 청소년이 사망하였을 경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망진단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시체를 확인하고 시신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감금 중에 청소년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보고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구류시설에서 풀려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사망이 감금기간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질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규칙 57).”

유엔아동권리협약 9조 (4)는 “당사국의 활동에 의해 아동의 부모나 아동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해롭지 않다면, 부모와 아동 모두 서로의 사망을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9조).

###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확실히 보장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6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증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발달”이라는 개념은 단지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현재 아동의 삶을 위해 어린 시절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주는 것에 대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발달을 협약 전체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협약의 많은 의무사항들, 특히 건강, 적절한 생활수준, 교육, 여가와 놀이와 관련된 의무사항(제24조, 제27~29조, 제31조) 등은 최대한의 아동발달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별 조항들은 “발달”의 개념을 자세히 제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27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모든 아동들이 신체적 · 지적 · 정신적 · 도덕적 ·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

정하고 있다. 29조에 제시된 교육의 목적 중에는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과 “아동이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가 포함되어 있다.

아동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특히 제19조, 제32~39조)은 편의의 제공만큼이나 아동의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에 필수불가결하다. 성적 학대와 착취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단기적 ·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로 증명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은 가정을 “모든 가족 구성원과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 지지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5조는 종합적인 발달의 핵심개념인 “점차 발달되어가는 아동의 능력”의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8조는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양육과 발달을 위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당사국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20조에 의거하여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5조는 양육이나 보호, 치료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명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아동과 관련하여, 23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 참여와 문화적 · 정신적 발달을 포함한 개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을 달성하기 위해 협약의 다른 모든 조항들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6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모든 수준의 정부에 있는 담당 부처와 기관을 확인하고 조정(6조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든 부처와 관련됨)
- 관련된 비정부기구/시민사회 협력자들을 확인
- 관할지역의 모든 아동을 위해 모든 법률과 정책, 관습이 6조와 양립하는지 포괄적으로 검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진보의 목적과 지표의 확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 아동의 권리에 더 도움이 되는 규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 다른 관련 국제기준을 인지하고 있는가?
- 필요한 경우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조치들은 협약을 총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전체적인 전략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 예산분석과 필요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였는가?
- 6조의 의미가 어른과 아동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가?
- 적절한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가?(6조와 관련하여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거나 양육 교육이 포함될 수 있다)

### ● 제6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6조에 반영된 일반원칙이 당사국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가?
-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영아사망률과 아동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도입되어 왔는가?
- 영아사망률과 아동사망률이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는가?
- 낙태율(연령별 등)이 기록되고 보고되고 있는가?
- 낙태가 허용되는 곳에서는 낙태가 적절히 규제되고 있는가?
- 낙태가 허용되는 곳에서는 당사국이 낙태가 허용되는 데 있어서 차



별적인 편차가 없도록 해 왔는가?(예를 들어 장애여부 확인에 따라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사국은 영아살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특히

- 여자아동 살해
- 장애아동 살해
- 아동 임신율이 기록되고 보고되고 있는가?
- 아동 임신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왔는가?
- 당사국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에게 사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왔는가?
- 모든 아동의 사망과 그 원인에 대한 등록과 조사, 보고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는가?
- 살해된 각 연령대의 아동 비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살인률이 희생자의 연령별로 분석되고 있는가?
- 영아살해 범죄가 당사국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면, 협약의 원칙에 비추어 검토 되어왔는가?
- 아동 자살이 기록되고 보고되며 자살률이 연령별로 분석되고 있는가?
- 아동 자살을 줄이고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왔는가?
- 교통사고 등 아동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고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왔는가?

###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6조: 아동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해 전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일반원칙으로 인식되어 왔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2조: 모든 권리는 그 어떠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을 위해 인정되어야 한다.

3조(1):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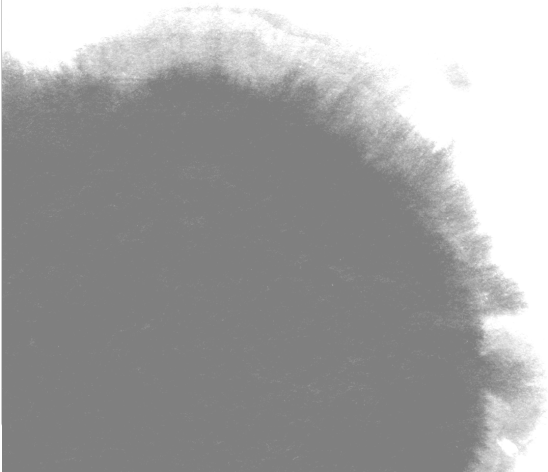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6조의 이행과 관련된 조항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37조(a): 사형 금지

아동의 최대한의 발달과 특별히 관련된 조항에는 18조, 24조, 27조, 28조, 29조, 31조가 있다.

# 07

제7조 출생신고, 이름, 국적 및  
부모를 알권리





## 제7조 출생신고, 이름, 국적 및 부모를 알 권리

1.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where the child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요약

7조는 아동의 출생신고와 성명권, 국적취득권 및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 2항 및 제24조 3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제24조 2항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을 가져야 한다. 3항 모든 아동은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협약의 24조에 대한 인권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의견은 이 조항이 특별 보호조치에 관한 조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석되어야 하며, 아동의 법적 인격을 인정해야 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7, 1989, HRI/GEN/1/Rev.8, para. 7, p.185).”

아동권리협약 7조는 “새로운” 권리 -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 - 를 포함하고 있다. 이 권리는 “가능한 한” 이라는 조건부 조항이다. 경우에 따라 부모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친 부모가 아동에게 양육자가 아닐 수 있다.

제7조는 제8조(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한 신분의 보존), 9조(부모와 분리), 제10조(가족 재결합) 및 제20조(가족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의 양육 연속성)와 연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 될” 권리

### 전국민 출생등록의 중요성

지속적으로 전국민 출생등록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위원회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중요함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주장했다.

출생등록은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인지하는 첫 공식 절차이다. 이는 각 아동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고 아동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을 개연성이 높으며, 때로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여러 형태의 차별을 당하는 집단에 속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아동, 특히 사생아의 출생등록 보장에 있어 지속적으로 난관에 봉착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위원회는... 출생등록률이 높은 수준에 올랐다는 사실을 인지하나, 몇몇 부류의 아동, 특히 산부인과 병동에서 버려졌거나, 부모가 출생등록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없거나, 난민 또는 피난민이 된 아동들이 적법한 출생등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상당한 노력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위원*

회는 가족계획 정책으로 인한 일부 영향 때문에 중국 본토의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여아들과 장애 아동 및 일부 농촌지역에서 출생한 아동들에게 불평등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아직도 다수의 아동, 특히 오지 및 쓰나미 피해 지역 아동들의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이주 노동자, 난민, 망명자, 원주민 및 소수민족 자녀들, 특히 병원 이외의 곳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등록을 보장하는데 있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출생등록은 인구 분포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가능케 하는 국가 아동 계획 작성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출생등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동 생존 전략의 주요 지표인 아동 사망률을 정확히 집계할 수 없을 것이다(아동 사망신고의 중요성이 기술된 6조 176페이지를 참조할 것). 모든 출생 아동의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특히 농촌지역에 인구가 분산된 형태의 국가에서 그 비용은 더욱 높아지지만,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필두로 하여 상당한 이점을 발생시킨다.

위원회가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은 필수적이다.

"... 아동들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하고 명확한 대상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들이 완전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는 협약의 7조에 기반 하여 효과적인 출생등록 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 노력을 개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그러한 체계는 협약 이행의 진행을 촉진하는데 있어 봉착하는 주된 난점들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에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위원회는 모잠비크에 대한 평가에서 이러한 이점들을 전 국민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 여러 요인으로 인해 출생등록의 목적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아...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 캠페인을 진행하여 출생등록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추가적으로 출생등록은 아동의 다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쟁, 유기 또는 납치 후 신분 파악이나 부모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수단(특히, 사생아들), 법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호 제공(예를 들어, 청소년 사법 체계가 지정한 근로 또는 군 징집 연령) 및 유아 납치/살해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출생 미등록이 아동의 물리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루의 초도 보고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 국내 폭력사태로 인하여 몇몇 출생등록 센터가 파괴되었으며, 이는 신분증명 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수천 명의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그 아동들이 테러 활동에 관계되었다는 의혹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후 페루 당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나 페루 아동 인구의 15%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예멘에서는:

*"... 위원회는 출생증명서의 미발급으로 인해 아동을 사형에 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심각한 합의에 대한 당사국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권위원회 일반 의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출생 직후 신고 의무화의 주목적은 아동의 납치, 노예 매매, 또는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온전한 향유 원칙에 어긋나는 기타 부적절한 대우가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당사국의 보고서에는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다수 국가에서 출생증명서 발급이 아동에 대한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의 선결조건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표 참조). 위원회는 이러한 행정조치의 목표 중 일부가 출생 신고율 제고이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명



확히 했다.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동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벨리즈 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

*"... 등록되지 않았거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아동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등록되기까지 보건 및 교육과 같은 기본 복지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

### 출생등록의 시기와 방법

“유아기 아동 권리 이행”에 대한 7번 의견에서 위원회는 전 국민 출생신고 보장 의 “주요 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이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제대로 관리되는 등록체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효과적인 체계는 유연하고 각 가정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요에 따라 이동 등록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위원회는 일부 지역에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등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모든 아동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출생 직후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한다(제2조). 또한 위원회는 사후 출생신고의 촉진과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이 차별 없이 보건, 보호, 교육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상기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가난한 국가에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위원회는 높은 출생등록율을 기록한 상투메 프린시페와 같은 국가들에게 특별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위원회는... 전국적 출생신고 캠페인 이후 높은 신고율을 달성한 당사국의 노력을 치하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최단 시일 내 100% 출생신고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된 전략적 노력을 지속하기를 당사국에 건의한다..."*

7조에 따르면 아동은 “출생 직후” 등록되어야 하며, 이는 수개월의 개념이 아닌 수일의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어떠한 이유로든 아동들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신고 기록이 누락 또는 분실된 경우 당사국이 이를 시정할 책임이 있

다고 밝혔다.

전 국민 출생신고를 보장하려면 출생신고를 부모와 유관 당국 양측의 책임으로 명시하는 국내법 적용이 선결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라 함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가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뜻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일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다.

"... 특히 우려되는 상황은 당사국이 아이티 출신 아동 또는 아이티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등록권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상기 아동들은 보건, 교육과 같은 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 바 있다."

"위원회가 우려하는 바는... 밀입국자들이 그 자녀들의 출생을 신고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국적 없는 아동들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못한 부모에게 벌금 및 기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30일의 출생신고 기간 동안 자녀를 등록하지 못한 알바니아 부모들은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니비사우 공화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언급했다.

"...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되고 있지 않으며, 공식 신고 기간 이후에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부모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출생등록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출생등록은 완전히 무료이거나 적어도 저소득층 부모에게만이라도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히 등록비용을 억제하고 체계를 분권화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 위원회는 아르메니아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보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저소득층에게 등록비용을 면제해줌을 통해 이를 실현할 것을 권유한다."

1997년 발간된 인권 보고 지침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타국적자, 망명자, 난민 및 국적 미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출생신고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당사국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목민 자녀 또는 농촌 및 변경지역 거주 아동들의 경우 등록소의 부재 또는 물리적 거리 때문에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문제점이 생긴다는 인식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무력 분쟁을 포함한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유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국은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상황에 걸맞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등록소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검증된 바 있다.”

위원회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옹호한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기존의 출생등록 체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향상시킬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 (a) 영토 내 가장 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까지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출생등록소 운영 및 인식 제고 캠페인 시행
- (b) 출생등록 행정당국, 분만소, 병원, 조산원 및 산파들 간의 공조 강화를 통해 국가내 출생등록 가능 범위를 증대
- (c) 출생등록에 대한 명확한 지침 및 법규를 개발하고 국가 및 지역 관료들에게 이를 전파
- (d) 등록 되어 있지 않거나 출생신고서가 없는 아동들이 적법하게 등록될 때까지 보건, 교육과 같은 기본권 향유를 보장"

위원회는 모든 아동 출생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활용 가능한 방안”을 고안할 것을 장려하며, 그 예로는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나는 의료진,” 네덜란드 엔틸리스 제도에서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허락하는 3개월의 “유예기간,” 그리고 모리셔스의 “출생신고 지연자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핫라인 전화” 등이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UNICEF 및 UNFPA와 같은 기구들의 지원을 받을 것과, 아동 등록소를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공익 캠페인을 벌일 것을 건의한다.

"... 텔레비전, 라디오 및 발간물을 통해 출생등록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출생등록을 통해 보장되는 권리와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동들을 다양한 착취에 노출시킬 개연성이 있는 출생등록 자료의 위조 또한 우려 사항이다.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에게 “가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등록증의 정확성을 통제하고 관련법의 적용을 보장하라”고 권유하였으며, 필리핀 당국에게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 무엇보다 우선하여 복지개발부와 같은 정부 부처를 지정하여 관련 사법 조항을 적용하고 위조사건 기록을 정리, 보관하도록 하여 출생등록증 위조를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신고 시 포함 되는 사항

협약이 출생 신고 시 등록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으나, 관련된 권리(성명과 국적을 가지고 부모, 가족 및 신분을 알 권리)와 연관 지어 미루어볼 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출생 시 아동의 성명
- 성별
- 출생일
- 출생지
- 부모의 성명 및 주소
- 부모의 국적

일례로 위원회는 시에라리온에서 체계적인 출생신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체계적인 출생신고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동의 신분 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 명시된 아동에 대한 보호 조항의 시행을 보장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동의 연령 및 신분을 임의로 결정하는 관례에 대해서도 우

려를 표하는 바이다."

"협약의 7조에 기반 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단 시일 내 자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출생등록을 실시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당사국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출생등록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부모의 직업, 형제 관계, 인종과 같은 부수적인 정보 또한 통계를 위해 유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의 수집이 사생활 침해 또는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르완다에서 "아동의 인종적 출신을 포함하지 않는" 출생등록증을 도입한 것을 확인했다. 온두라스 당국은 이런 이유로 출생등록증에 아동의 조부모 성명, 출생 시 신생아 크기 및 체중이 기록되나, 부모의 혼인 관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신생 아동의 부모를 등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아동의 관점에서는 친모의 등록을 생략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나 프랑스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며, 이는 위원회의 우려를 촉발했다.

아동의 친부를 식별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문제이다. 당사국은 신생아의 부모를 동시에 등록함으로써 아동의 양육 책임을 확실시 하는 이점을 바랄 수 있다. 아동 또한 본 협약의 조항에 의거하여 부모를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아일랜드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는 출생신고 시 아동의 친부를 식별하는 적절한 절차의 미비로 인하여 사생아들이 불우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생아를 신고할 때 가능한 한 친부를 식별하여 출생등록증에 명시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그러나 출생등록증이 공개된 문서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아동의 사생활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일례로 친부가 친모와 근친 관계인 경우가 있다. 벨기에 당국은 위와 같은 경우 친모와의 관계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했다.

유엔 통계국은 행정 등록 및 주요 통계체계 핸드북을 발간하여 목표 대상 영향력, 비밀보장, 기록 보관, 사법 체제와 같은 출생등록 관련 조언을 제공한다.

## 아동의 출생 시 이름을 가질 권리

조항은 아동의 성명권이 “출생 즉시” 발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어떠한 지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일부 아동들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으며, 출생 후 3~4개월까지 소요 될 수 있는 세례식 때까지 성명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버려진 신생아와 아동들에게도 이름을 부여해야 하며, 특히 번호를 이름 대신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대규모 난민 이동과 같이 미아 발생이 많은 상황)는 없어야 한다.

협약은 아동들이 특정한 종류의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당수 국가들은 아동의 성명을 등록하도록 조치할 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성명이 주어질 것인지도 규정한다. 일례로 미국 인권 선언(1969)의 18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부모 또는 양친 중 1인의 성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법률을 통해 이 권리의 보장을 위한 방안을 규정할 것이며, 필요시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의 의도는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특정한 부류의 아동을 보호한다. - 인권위원회 의견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명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생아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몇몇 경우 부여 가능한 성명의 종류를 정의하는 법규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2조 또는 소수 문화를 평화롭게 향유할 권리를 규정한 30조와 상충될 수 있으며, 부모의 성을 이어받지 않는 소수 문화권 자녀들이 그 일례라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그리스에서 “난민과 정치적 망명자와 같이 그리스어를 모

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자녀의 성명을 등록하는데 애로를 겪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 모든 아동들이 스스로 선택했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부여한 이름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라” 고 권유했다.

더 나아가 모든 아동이 친부의 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거나, 예외적인 경우 부여받아서 안된다고 규정하는 강제 법령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아동에게 최선의 배려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사생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들의 성명을 결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대단히 복잡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불륜관계를 통해 출생한 아동에게도 적용되며, 신생아 잉태 시 친부의 법적인 부인이었던 개인의 동의 없이는 친부의 성을 부여할 수 없다. 벨기에는 이와 같은 법규가 “법적인 가족의 도덕성”과 결부되어 있는 만큼 아동의 복지와도 관계가 깊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위원회는 우루과이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런 면에서 위원회는 사생아들의 민권 향유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차별받는 상황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한다. 상기 아동들의 성명을 결정하는 절차가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자신의 출신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모든 아동이 부모의 성을 부여받도록 규정하는 모든 국제 또는 국내법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아동권리협약 41조에 의거하여 가정하는 것은 위험한 결론일 것이다. 당사국들은 성명에 관한 법령이 2조 및 3조에 명시된 권리를 의도하지 않은 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한다.

제5조(부모의 지도와 아동 능력의 신장), 제12조(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 및 제19조(위험으로부터 보호)에 명시된 조항 또한 성명의 부여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출생 시 성명을 부여받을 권리는 보호자인 성인들 또는 당사국과 관계가 클 수밖에 없다. 신생아는 자신의 성명을 결정하는데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아동이

차후 적절한 경로를 통해 본인의 성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성명은 부모의 재혼이나 입양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신분을 알 권리 또한 연관되며, 위원회는 뉴질랜드의 입양법 개정에 “가급적 아동이 출생 시 부여받은 이름 중 한 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첨부할 것을 권유하였다.

위원회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사례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성명을 변경할 경우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동의 성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부모가 될 확률이 가장 높지만, 협약의 조항에 비추어볼 때 성명을 결정하는 것이 부모의 절대적 권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당사국은 아동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악운을 초래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이름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말라위 당국에 “사생아들을 비롯한 일부 아동들에게 모욕적인 이름을 부여하는 관습”을 철폐할 것을 권고했다.

### 국가의 “해당 국제법에 의거하여 국적을 획득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책임” 과 관련된 아동의 “국적을 가질” 권리

일부 국가들은 부모가 자국 국민이 아닌 아동들과 같은 특정 부류의 아동들에게 제한된 형태의 국적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는 차별의 일종이다. “국적을 가질 권리”의 함의는 국적을 가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향유할 권리이다.

위원회는 여러 국가들에 이러한 논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헌법 제27조와 거류 외국인 및 이민법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국 내에서 출생한 아동들에게 부여되는 국적이 피부색 또는 인종적 차이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아동권리협약 2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시민권 법령이 시민권의 종류를 3가지로 분리, 명시하여 일부 아동 및 그 부모들이 차별받고, 불명예스런 대우를 받으며, 특정한 권리 행사를 거부당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시민권 획득 경로가 단일화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소수 집단의 아동들, 특히 집시 아동들이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한다."

모든 국가들이 보이는 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민감성, 국적 획득 방법에 관련된 법적, 문화적 가정사항의 차이점, 그리고 부유한 국가들이 빈국 국민들을 국적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국 국적 획득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의 증가와 같은 난점들로 인하여 아동의 국적과 관련된 문제는 대단히 난해하다. 동 조항의 초안, 제9조(부모로부터 분리) 및 제10조(가족 재결합)는 위와 같은 염려들과 아동들이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운 대안을 제시한다. 제7조 2항은 "당사국은 상기 권리들의 적용을 국내법 및 해당 국제법에 의거하여 국적을 획득치 못할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아랍 에미리트 연방 및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7조의 내용에 대해 다수의 제한 및 해석을 첨가한 바 있다. 상기 국가들은 자국의 헌법 및 국적 관련 국내법이 7조의 적용 범위를 규정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 당국은 국적이 없는 아동이 고아가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정부는 7조의 개념이 쿠웨이트 국적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쿠웨이트에서 태어났으며, 그 부모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아동들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쿠웨이트의 국적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당국의 국적 관련 법령이 쿠웨이트 국적의 친부에게서 태어난 아동에게만 쿠웨이트 국적이 주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쿠웨이트 국적 획득 여부가 협약에 명시된 원칙, 특히 2조와 3조 및 7조의 조항에 부합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국내법을 개정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국적을 가질 권리"라는 표현은 인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제24조 3항) 에서 차용한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상기한 바와 같이 다음 사항을 언급하였다.

“아동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호의 측면을 고려할 때 24조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의 국적을 가질 권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기 조항의 목적은 아동들이 국적이 없음으로 인해 사회 및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를 완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이는 당사국이 자국 국적을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부여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들은 모든 아동이 출생 시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또는 타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적을 취득하는데 있어 부모의 결혼 관계, 부모의 국적 소지 여부, 또는 부모의 국적 관계로 인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국내법은 용납될 수 없다.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보고서에 언급할 의무가 있다.”

제7조 2항에 언급된 “당사국은 상기 권리들의 적용을 국내법 및 해당 국제법에 의거하여 국적을 획득치 못할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문구는 일차적으로 국적 미보유자 감소를 위한 조약을 참조한 것이다. 동 조약은 아동에게 타 국가의 국적이 주어지거나, 국적 보유권을 위한 적법한 요청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출생 국가의 국적이 주어져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부모 중 1인의 국적이 주어져야 한다(특정 조건에 따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첫 번째 조항을 조약에 첨부할 것이 제안되었으나, 일부 국내법 관련 난점들 때문에 수용되지 않았다. 제7조 2항은 양자 의견의 절충안이며 41조의 조항들과 명백히 연관되어 있다. “이 협약의 어떠한 부분도 아동 권리의 실현에 더욱 큰 도움이 되는 다른 어떤 조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조항은 (b) 당국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에 포함될 수 있다.”

아동 권리 위원회는 국적 미보유 아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국적 미보유자 자녀의 귀화 절차를 간소화한 1998년 시민권법 개정을 치하하는 바이며, 에스토니아 내의 국적 미보유자 숫자가 감소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 신분으로 인해 에스토니아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는 국적 미보유 부모들의 상황이 자녀들의 에스토니아 사회 융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시민권법 21조에 의하면 전직 군 및 안*

보계통 업종 종사자들의 자녀 및 가족들은 국적 취득이 불가하다고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 위원회는 국적이 없고 출생 시 어떠한 국적도 주어지지 않는 쿠르드족 아동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는 협약의 2조와 7조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요르단 국적 획득에 있어... 아직까지 시행상 괴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요르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국적 미보유자의 숫자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우려는 요르단 당국의 두 번째 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결론에서 재현되었다.

"... 위원회의 앞선 조언에 비추어볼 때... 위원회는 요르단 여성이 자신의 국적을 자녀에게 물려줄 권리에 대한 제한 때문에 난민과 결혼하여 태어난 자녀가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1954년 국적 미보유자의 지위에 대한 조약 및 1961년 국적 미보유자 감소를 위한 조약을 비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국적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고, 출생지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이슬람 율법은 국적을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방안을 선호한다. 일부 국가는 이중 국적 보유를 금지하여 아동의 국적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국적과 출생지에 따라 결정된 국적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며, 이는 종종 차별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기타 차별 효과 유발 가능성을 지닌 관행으로는 아동이 친부의 국적을 자동으로 계승하는 경우나 또는 반대로 친모의 국적을 자동으로 계승하는 경우, 그리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부의 국적만 계승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조약 제9조 2항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자녀의 국적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가 비판한 국가들 중에는 아랍 에미리트 연방, 영국 및 일본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에미리트 국적의 친부와 국적이 다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는 국적을 부여하는 반면 에미리트 국적의 친모와 타 국적 남성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국적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친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일본 국적의 친부와 다른 국적 친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친부가 출생 전 본인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 국적이 주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아동이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적을 가질 권리”라는 문구는 “출생 즉시” 주어지는 권리라고 해석될 수 있으나, (아동인권선언(1959)의 제3원칙은 단순히 “아동은 출생 즉시 이름 및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표현한다) 국적 미보유 아동들에게는 일정 기간 이상 생활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후자의 조항은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유년기를 보낸 국적이(종종 부모도) 없는 아동들이 일정 연령에 이르러 본인들이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중요성이 높다.

아동의 국적에 대한 결정은 많은 경우 출생 시 부모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타국 아동 입양의 필수 요소인 입양 아동의 시민권 신청을 촉진하는 법령을 시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가능한 한 부모를 알 권리”

### “부모”의 의미

몇 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교적 명확했다. 그것은 “생물학적” 부모이며, “자연적” 또는 “친부모”라고도 일컬어지고, 또한 아동을 유아

기 동안 돌보아준 수양부모나 양부모와 같이 “심리적” 또는 “양육하는” 부모일 수도 있다.

7조의 초안이 작성되었을 당시 일부 국가들 - 예를 들어 독일 민주 공화국, 미합중국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 의 법령은 입양된 아동이 생물학적 부모의 신분을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비밀” 입양 방식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제는 “생물학적” 부모라는 용어의 의미가 더욱 복잡해졌다. 예를 들어 난자 기증이 이뤄진 경우 생물학적 부모는 유전적 부모(난자 기증자)와 출산모 양자를 일컬을 수 있다.

국가들은 이 권리와 관련하여 보장과 제한 조치들을 취했다. 영국 정부는 조약에 언급된 “부모”라는 용어를 국내법상 부모라고 간주되는 개인들이라 해석한다. 이는 한 개인에 의해 아동이 입양된 경우, 친모가 성교를 통해 수태하지 않은 경우라면 친모인 여성이 유일한 부모로 간주되는 법적인 사례들을 포함한다.

“익명 원칙 및 인공수정에 기반 하여 진행되는 번복 불가능한 입양의 경우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는 기증받는 부부와 기증자가 서로 모르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생물학적 부모 및 부모들의 성명을 출생 아동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협약의 3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룩셈부르크 정부는 협약의 7조가 아동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익명 출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바는 아동이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해 논하는 경우 “부모”의 정의는 유전적 부모(단지 의학적 사유로 인해 아동에게 이 지식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및 친부모, 즉 아동을 출산한 친모와 출산 당시 친모와의 관계를 통해 부권을 주장한 친부(또는 문화권 내에서 사회적으로 아버지라 규정되는 사람. 요점은 아동의 정체성에 있어 이러한 사회적 정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3번째 부류로 아동의 정체성과 긴

밀하게 연계된 심리적 부모 - 유아기 및 유년기 중 상당 기간 동안 아동을 양육한 자 - 도 논리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권리는 8조에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는 룩셈부르크의 “익명” 출산이라는 개념에 대해 놀라움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익명으로 출생한 아동들이 가능한 한 부모를 알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관련 당국이 이러한 관행을 방지 및 철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익명 출산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당사국은 부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등록 및 정리하여 아동이 -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가능한 한”의 의미

각각의 상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부모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아동들이 있다(예를 들어, 친모가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아동이 언제 유기되었는지 모르는 경우). 당사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되어 있으나, 2조에 의거하면 이러한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두 번째는 친모가 친부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이다(근친상간이나 친부가 친모를 강간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 친모는 친부의 신원을 밝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집행하기 까다로울 뿐더러 친모의 권리와 아동의 권리가 상충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사생아의 친부가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경향이 사회적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감당할 역할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친모가 친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길 꺼리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사생아들이 친부의 신분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가정지원부가 현재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로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친부 확인 절차 포함)를 촉진 및 지원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당사국 내 모든 가정의 50% 가량은 그 가장이 여성인 상황을 고려할 때 친부가 법적으로 아동의 친권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친부 확인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접근 용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확립하고 친모들에 대한 사법 및 제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생아들에 대한 법적 친권 확립을 촉진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요청에 따라 친모의 신분마저 감출 수 있다:

"위원회는... 친모 또는 친부가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생아들이 법적인 친모 또는 친부가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 위원회는... 뜻에 따라 친모의 신분을 감출 권리는 협약의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한다."

세 번째로 정부가 친부모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 입양법이 아동의 입양 사실 및 유전적 부모의 신분을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위원회는 ‘비밀’입양 정책을 유지하는 여러 국가들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항상 아동들이 부모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권유해 왔다.

"위원회는 다시금 입양된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의 신분을 비밀로 하는 관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 입양법은 아동의 출신 및 생물학적 부모와 본인의 주요 병력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서 입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연령 및

전문적 지원 조치를 포함한 상기 목적의 법적 절차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양된 아동들이 적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본인의 생물학적 부모의 신분을 알 권리를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 친부가 친모와 현재 부부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나 위원회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우루과이의 예와 같이:

"... 미성년자 친모 또는 친부에게서 태어난 경우 해당 친부모의 친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아동이 사생아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출생신고서에서 부모의 신분을 위조하도록 규제하는 경우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증자의 신분을 보호하는 체외수정을 위한 정자난자 기증의 경우
- 오스트리아의 예와 같이 정부가 묵시적으로 아동의 유기를 장려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사국 내 익명 출산('신생아 부종' 또는 '신생아 등지'라고도 알려진) 관습 및 부모와 관련된 일부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수집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국가의 승인에 따른 부모의 신분 비공개는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를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능한 한"의 의미 해석에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일부 당사국들은 입양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입양(아동이 유전적 부모의 신원을 알 권리가 없는 경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 국가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공개 입양은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유엔 선언에 의하면 "아동의 복지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동의 양육 책임을 가진 개인들은 양육위탁 또는 입양된 아동이 본인의 출생 배경을 알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제9조)."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초안 계획 단계에서 일부 대표들



에 의해 제안되었음에도 7조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이라는 표현이 “최선의 이익”보다 훨씬 엄격하며 덜 주관적인 조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현이 함의하는 바는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라도 친부모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아동은 이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의 전체론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친부모의 신분 확인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논거에는 “가능한 한”이라는 조건이 아동의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사실도 포함된다. 또한 그 누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한 한”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가장 극단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 아동의 복지에 확실히 반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아동들은 이러한 결정을 추후 재검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최선의 이익”이 어떠한 문건에도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아동에게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가해질 수 있는 위해를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중 어느 방안이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협약의 제5조(아동의 능력의 신장) 및 제12조(아동의 의견)가 함의하는 바는 출생 배경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결정은 아동의 생애에 단 한 번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 사안에 대하여 6세 아동을 위한 최선의 결정과 16세 아동을 위한 최선의 결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입양된 아동이 친부모와 연락을 취하거나 아동에게 친부모에 대한 세부 인적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양된 아동들이 출생 배경에 대한 인식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아동이 친부모에 대해 알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입양 법원에서는 이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수의 아동들은 유전적 부모를 확인하고자 하지 않으며, 이는 그들의 삶

에 있어 중요한 부모는 양육한 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7조는 당국이 유전적 부모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여 가능한 한 아동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비밀 입양을 고수하는 국가들이 내세우는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동(또는 입양자)의 권리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친모를 배척, 폭력,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사회적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에 대한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아동의 출신 배경을 알 권리와 친모의 사생활 및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가 상충된다. 아동 보호 및 국제 입양과 관련된 협조에 대한 헤이그 조약(1993)의 30조는(협약 제21조) 아동의 출신 국가의 정부가 부모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친모의 권리를 지지한다. 그러나 친모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 입양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친모의 허락이 있을 시, 또는 추후 친모가 사회적 위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 때 정보가 아동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양된 아동의 출생 기록을 위조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통에 의한 출생 시 출생기록을 위조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된다. 일부 국가들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법적인 친부를 남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많은 경우 친모의 간통과 연관되며, 아동에게는 해보다 득이 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개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국가가 이를 조장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양친이 모두 유전적인 친자 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지만 법이 이를 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난자 및 정자 기증과 비밀 보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주를 이룬다. 첫 번째는 아동에게 있어 본인이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전적 부모를 알아야 할 의료적 이유가 생긴 이상 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두 번째는 기증 사실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추후 수치스러운 상황 또는 유전적 자녀가 부양료 지불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저어하여 개인들이 기증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률을 통해 기증자에 대한 부양료 지불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몇몇 국가들

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 숫자가 초기에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기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인공수정과 관련된 법안은 입양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녀가 없는 부부의 필요가 아니라 아동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입안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다.

*"아동의 신분을 알 권리에 관하여 위원회는 협약의 조항과 당사국의 정책 사이에 인공수정, 즉 정자 기증자의 신분 보장에 관련된 부분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바이다."*

또한

*"위원회는... 의료기술 지원에 의한 출산 관련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아동에게 친부의 신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 중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의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능한 한 아동이 부모의 신분을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 **"...가능한 한... 본인의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

이 권리는 다른 3개의 조항과 연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부모의 양육 우선권과 함께 "지역 관습에 따라 확대 가족 또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양육 참여를 인정한 제5조,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지에 반하여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도록" 보장하는 제9조 그리고 국가의 적절한 지원 하에 아동을 양육할 책임이 양친에게 공히 있다고 규정하는 제18조, 제27조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가 부모의 물질적 책임을 지원하도록 하는) 또한 관련이 있다.

양친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함의하는 바는 아동과 함께 있지 않은 친부 또는 친모가 상대방 또는 국가에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 이상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다 (제27조 4항). 제한적으로나마 부모와 관련인들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는 5조와는 달

리 이 조항은 부모가 아닌 아동의 권리에 기반 하여 작성되었다. (동 조항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아동은 출생 즉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예속될 권리를 가진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서 “예속되다”라는 표현의 적절성에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강조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룩셈부르크 당국의 선언에 적법성 논란을 초래한다. “아동을 수태할 당시 친부 또는 친모가 다른 개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부모의 반려자의 동의하에 부부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다.”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 또한 “가능한 한”이라는 수식이 붙는다. 이러한 조항의 목적은 일면 자명하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자녀를 거부한 경우 양육은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 당국이 부모가 가학적이거나 무관심하다는 사유로 부모에 의한 양육이 아동에게 최선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도 불가능할 수 있다(제9조). 그러나 당국은 다음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협약 전반에 걸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일반적인 경우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가 문제가 되는 가장 심각한 경우는 부모와 정부의 의견과는 상반되게 아동 본인이 부모에게 양육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이다. 수천 명의 부랑 아동들 중에는 이 분류에 속하는 아동들이 있다. - 가출을 결심한 아동들이다. 정부들은 가출 아동들과 관련하여 유연하면서도 아동 중심적인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가출 아동을 가출 사유에 대한 조사 없이, 기타 양육 방안을 제공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귀가시키는 조치는 협약의 조항 및 원칙에 위배된다.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7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 각급에 걸쳐 책임 부서 및 기관을 식별 및 협조(제7조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관련 있다.)
- 연관된 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를 식별
- 모든 관할지역 내 전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법률, 정책 및 관례가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포괄적인 검토 시행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식별된 목표 및 진행률 확인 도구를 포함하는 전략
  - 아동의 권리에 더 중요한 도움이 되는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략
  - 기타 유관 국제 기준에 비준한 전략
  -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을 포함하는 전략
- (이러한 조치는 협약 전반을 시행하기 위한 정부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예산 분석 및 필요 자원의 분배
  - 감시 및 평가 체계 개발
  - 제7조가 함의하는 바를 성인 및 아동들에게 널리 공포
  - 적절한 교육 훈련 방안 개발 및 인지도 제고

### ● 제7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국내법이부모가 자녀의 출생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가?
- 출생등록 의무가 충분히 알려졌는가?
- 출생등록이 무료인가?
- 출생등록이 접근성(예를 들어 이동 등록소 또는 학교 조직 이용 등) 및 이해도 (예를 들어 소수민족 언어 사용 및 등록 인원의 교육) 면에서 부모들이 쉽게 시행할 수 있는가?
- 비시민권자를 포함하여 관할지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들이 등록되는가?
- 부모가 아동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출생등록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가?

출생 등록이 다음의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가?

- 성명
- 국적
- 부모에 대한 정보
- 등록되는 아동에게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가?
- 국내법이 모든 아동의 출생 즉시 이름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가?
- 이 법률이 어떠한 아동도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가(예를 들어 아동의 복지와 관계없이 특정한 종류의 이름을 강요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적정 연령 이상의 아동들이 스스로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가?
- 법원이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할 권한이 있는가(예를 들어 아동이 공포 및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름)?
- 국내법이 사법권 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적 없는 아동들이 자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보장하는가?
- 정부가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국제협약(1961)을 비준했는가?
- 정부가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가?
- 정부가 국적 획득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도록 보장하는가(예를 들어 사생아의 국적 취득 또는 부모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
- 아동이 국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가?
- 국내법 및 행정 관례가 아동의 부모(유전적 부모, 친모 및 양육 부모 포함)의 신분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기록 및 보존되도록 보장하는가?
- 아동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본인의 출생 배경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권리가 있는가(예를 들어 입양 또는 인공수정에 의한 출생)?
- 입양된 아동과 인공수정에 의해 출생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능한 한 유전적 부모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는가?
-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유일한 사유가 아동 또는 부모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인가?
- 아동이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를 거부당하는 경우 추후 다시 요청할 수 있는가?
- 국내법이 부모에게 양육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추정을 포함하고 있는가?
- 이 법률이 아동의 권리에 기반을 둔 것인가?
- 아동이 부모에게 양육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도록 보장하고, 조사 기간 중 대안적인 양육 조치가 이뤄져 있는가?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7조는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일반원칙**

제2조: 사법권 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제3(1)조: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아동에게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제6조: 생명권 및 최대한의 생존 및 발육에 대한 권리

제12조: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존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 및 행정 절차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기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그 시행이 1조의 시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들:

제5조: 부모의 지도와 신장하는 아동의 능력

제8조: 아동의 신분 보존

제9조: 아동에게 최선의 선택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분리 금지

제10조: 국제 가족 재결합

제11조: 아동의 불법 거래 및 국외 반출로부터 보호

제16조: 사생활, 가족 및 가정을 독단적 간섭으로부터 보호

제18조: 부모의 공동 책임

제20조: 가족 환경 결핍 아동

제21조: 입양

제22조: 난민 아동

제30조: 소수민족 또는 원주민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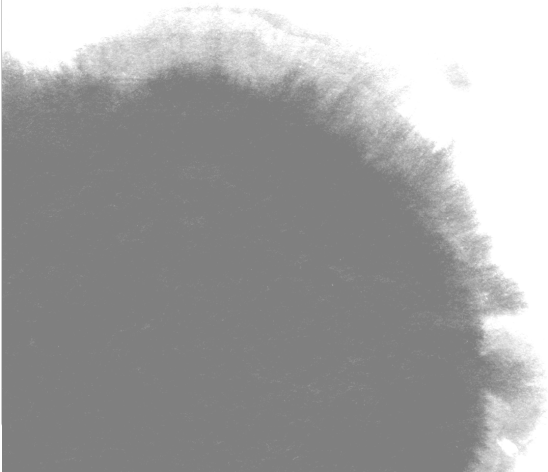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제35조: 아동의 거래, 밀반출/입 및 납치 방지





# 08

## 제8조 신분의 유지





## 제8조 신분의 유지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 including 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 as recognized by law without unlawful interference.
  2. Where a child is illegally deprived of some or all of the elements of his or her identity,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and protection, with a view to re-establishing speedily his or her identity.
-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요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제8조는 신분을 가질 아동의 권리 그리고 그 신분을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국가에 의해 신분회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이 실무위원회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제안 즉 신분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가 신속히 개입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 당시 아르헨티나는 1970~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실종된 아동과 영아의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었다. 많은 실종아동과 영아들이 살해되었고 일부 아동들은 불임부부에 의해 입양되었다. 이런 아동들을 추적하여 본래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어야 할 문제가 시급하였다(E/CN 4/1986/39, p.8~10; Detrick, p.292~294). 유엔총회는 그 이후 "1992년 실종자 보호 선언(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결의안 47/133)을 채택하였다. 2006년에는 실종자보호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을 채택하였고 이 협약도 실종아동의 신분 회복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8조는 신분의 3가지 측면 즉 국적, 성명, 가족관계 만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제2조(비차별), 제7조(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 제16조(사적 생활, 가족 그리고 가정에 대한 임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0조(문화, 종교, 그리고 언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조항들은 아동의 신분에 대한 다른 형태의 침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는 가정이라는 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은 어디에서든지 지속적으로 특히 그들 고유의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고려한 양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국적, 성명 그리고 가족관계를 포함하는 신분을 법률에 의해 유지할 권리**

신분의 3가지 필수 요소는 국적, 성명 그리고 가족관계(법률에 의해 인정된)이다.

### **국적**

7조와 10조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듯이, 국적을 가질 권리는 협약에서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적과 신분을 유지할 권리 간의 연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국적은 부모로부터 얻어질 수 있으며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는 어떤 법률도 협약과 대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결혼하지 않은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치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의 국적은 거주지에 의해 습득될 수 있다. 상당 기간의 거주사실에 의거하여 아동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은 문제이다. 또한 일단 취득된 시민권에 대한 박탈은 아동의 신분에 대한 폭력과도 같은 것이다.

"위원회는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할 경우 아동의 시민권이 동시에 박탈되는 경우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어떤 아동도 부모의 국적 상태와 관계없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국적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호주, CRC/C/15/Add 79, paras. 14, 30)."

## 성명

어떤 국가들은 부권의 존중 측면에서 아동의 성명이 부모들에 의해 바뀌는 (예를 들면, 이혼이나 재혼)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입양법은 이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는(일부 국가들은 나이가 어리지 않은 아동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7조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 가족관계

“법률에 의해 인정된 가족관계”라는 구절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구절은 초안 단계에서 비합리적 개정과정에서 유래되었다. 아르헨티나가 의도한 본래 구절은 “아동은 본래의 개인적, 그리고 법률적 가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어떤 국가들은 가족정체성은 자신들의 법률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고 항의 하면서 법률에 의한 가족정체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정체성을 가족관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가지 변경요구는 수용되었으나 “법률에 의한” 은 여전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가 의도한 정체성의 본래 의미는 단지 법률적 형태의 정체성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E/CN.4/1986/39, p.8~10; Detrick, p.294).

그러나 이 구절은 중요한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데 즉 아동의 신분은 단지 그 부모가 누구인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제7조). 형제, 조부모, 그리고 다른 친척들도 부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아동의 신분에 중요성을 갖는다. 대부분의 법률적 체계, 예를 들면, 입양, 위탁양육, 이혼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은 자신의 친부모를 찾거나 만날 기회를 갖는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들은 있지만 부모이상의 가족을 만날 기회를 허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동의 정체성의 개념은 아동의 부모나 형제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점점 더 아동이 그 이상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정립된 가족관계의 안정 속에서 아동은 다른 성인들과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문화를 누릴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비밀입양 혹은 익명의 난자/정자 기증 등을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출신을 알 권리를 침해 하지 않으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신분은 유지될 수 있다(제7조).

한쪽 혹은 양쪽 부모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사는 아동은 그들의 가족관계가 규정하는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긴 이민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아동이 있는 국가들은 아동이 부모와 살 권리가 허용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들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제9조, 10조, 22조 참조).

제네바 협약의 추가 프로토콜 1은 전쟁 시 탈출하거나 피신하여 분리된 아동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각 아동에게 카드를 제공하고 기록된 카드는 적십자중앙신분추적위원회(The Red Cross Central Tracing Committee)에 보내져야 한다. 그 카드는 아동의 사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부모의 성명, 친인척, 아동의 국적, 언어, 종교, 본래 집과 현재 주소, 그 외의 식별할 수 있는 특징, 건강 상태, 발견 상황 정보 등에 대한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성명, 국적, 그리고 가족은 신분의 일부 요소에 불과하다. 신분의 다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의 출생 이후 개인적 이력 즉 살던 장소, 누가 돌보아 주었는지, 중대 결정이 내려진 사유 등
- 아동의 인종, 문화, 종교 그리고 언어. 이러한 측면의 정체성에 가해진 아래와 같은 불법적 침해

- 교육체계, 미디어, 국가정보에 의한 소수언어에 대한 억압
- 종교에 대한 박해 혹은 금지
- 입양된 혹은 위탁 양육된, 혹은 시설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게 그들 본래의 문화, 언어, 종교 유산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
- 아동의 신체적 외모, 능력, 성정체성

이러한 특면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는 제20조에 의해 “아동이 가족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아동의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에 대해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는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이 자신들의 문화, 종교 그리고 언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유지”

신분의 유지는 가계 기록, 출생등록, 아동이 기억할 수 없는 영아시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유지와 외부 개입이 없는 신분의 유지 모두를 포함한다. 이중 일부는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나 아동이 난민, 유기, 위탁양육, 입양되거나 시설보호에 처해진 것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보존을 제도화하는 조치는 취해져야 한다. (혹은 기아의 경우 신분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보) 또한 이러한 기록들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제16조). 본 위원회는 가족 분리를 제재하거나 금지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권장하였다.

*"본래 가정이 아닌 곳 즉 위탁가정, 공공 및 민간 보호시설과 보호자, 종교기관 등의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적절한 신분조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과거의 비가정보호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문서화된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한 기록문서는 아동의 성장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완성되어야 한다 ... (아동권리위원회, 제40회기 보고서, 2005.9, CRC/C/153, para. 680)."*

위원회는 해외입양절차를 받는 아동을 위한 출생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중국의

경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동이 입양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명확한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중국정부가 입양과정에서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동들이 자신의 신분에 대한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조치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중국, CRC/C/C/CHN/CO/2, paras. 52, 53)."

위원회는 세이셸공화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이혼가정 혹은 별거 가정의 아동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음을 우려한다(세이셸공화국, CRC/C/15/Add.189, paras. 30, 32)."

또한 페루에 대해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최초 보고서시기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국내 폭력사태로 인해 몇몇 등기소가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신분증명 문서가 없는 수천 명의 아동들이 피해를 받았고 테러 활동에 종사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위험도 발생하였음을 우려한다... "내부 폭력사태로 인해 신분증명서가 없이 도피했던 아동들에게 적절한 신분증명서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해야 한다(페루, CRC/C/15/Add/8, paras. 8, 17)."

"1998년 유엔고등인권판무관 국내난민에 대한 지침" 16조에 의하면 "모든 난민들은 실종된 친척의 소재와 행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계 당국은 실종된 국내난민들의 소재와 행방을 파악해야 하고 관련 국제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근친자에게 조사상황에 대해 통보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지침 제 20조 2항에 의하면 "... 관계 당국은 여권, 개인신분 증명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와 같은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특히, 당국은 새로운 문서의 발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증명서의 분실 시 본래 사는 지역으로 돌아와야 한다던가 하는 이상한 조건을 달지 않고 신속히 보충해주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9조에 의하면 국가에 의해 아동과 부모가 분리된 경우(예를 들면 구금, 추방 혹은 사망) 국가는 아동과 부모에게 서로의 소재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분유지의 권리는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해야 함을 포함하며 이는 “1992년 실종자 보호에 대한 선언”의 권고 중의 하나이다. 실종자의 자녀 혹은 실종 중 태어난 아동의 본래 신분증명서를 변경하고 제재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제20조).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실종자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은 실종 피해자의 보상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협약인준국가들이 강압에 의한 실종 행위를 범죄행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5조는 실종자의 자녀를 부당하게 제거하거나 아동 본래의 신분에 대한 증명서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막거나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신분유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일 경우 입양을 무효화하는 법적 조치를 지녀야 한다. 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와 제21조는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단지 우선적 요소가 아닌 최고의 우선권을 가지는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 “불법적 권리침해의 배제”

이러한 제목은 아동의 신분유지 권리에 대한 침해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몇몇 국가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된 사항이기도 하다(E/CN.4/1989/48, p.55~56; Detrick, p.295~296). 국가 자신이 권리 침해의 가해자인 경우, 법 집행의 당사자인 국가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미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국가는 아동의 신분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근거를 갖는다. 예를 들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신분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부당하게 박탈당한 아동에게 국가는 신분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는 신분의 상실로 인해 아동이 받는 고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8조의 필요성을 초기에 제안한 국가인 아르헨티나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아르헨티나의 국가신분회복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1976년부터 1983년 간 군부독재기간 동안 실종된 약 500명의 아동 중 73명을 찾아낼 수 있었음을 인정한다(아르헨티나 CRC/C/15/Add.187, para. 34)."

또한 르완다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1994년 대학살 중 혹은 그 이후에 다른 나라로 피신한 수많은 아동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에 주목한다. 반면 위원회는 아직도 많은 아동들의 신분이 파악되지 못하고 가족들과 재회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르완다, CRC/C/15/Add.234, para.30)."

한편 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엘살바도르가 좀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1908년부터 1982년까지 내전기간 동안 발생한 약 700명의 실종아동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협약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내전 기간 동안 실종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담당 위원회를 설립하고 재정과 권한을 부여하여 실종아동의 소재파악과 신분회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메리카실종자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을 인준할 것을 촉구한다(엘살바도르, CRC/C/15/Add.232, paras. 31, 32)."

### 적절한 지원

실종아동의 신분회복을 위한 적절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 부모를 파악하기 위한 유전정보를 확보한다.

- 홀로 된 난민아동의 마을 어른이나 친척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한다.
- 미디어를 통해 부모와 재결합하게 한다.
- 국제아동납치의 민간측면에 대한 헤이그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인준, 불법적 아동납치로 인한 아동양육권문제는 (국제적 논쟁의 경우를 포함하여) 법원의 적절한 고위수준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몇 달씩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제11조).
- 국제입양에 관한 협력과 아동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을 인준하고 국내입양의 경우 아동의 사전 동의가 있도록 하고 입양 전에 아동의 출생에 대해 적절한 기록이 확보되어야 한다(제21조).
- 아동의 신분에 대한 모든 변화 즉 성명, 국적, 친권 등의 변화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아동은 자신에 대해 관리되어온 문서에 대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제16조). 예를 들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호주의 조치를 환영한다.

*"위원회는 1997년 실시된 국가심의를 통해 원주민의 정체성, 성명, 언어, 문화 그리고 가족관계 등을 박탈하였던 과거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였음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원주민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가족 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취해진 조치를 환영한다(호주 CRC/C/15/Add/258, 31조).*

- 국가의 보호를 받는 아동이 고유의 종교, 문화 그리고 모국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송환, 가족 재결합, 국적 및 망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한다.

“1997 인권보고 매뉴얼(The Manual on Human Rights Reporting 1997)”에 의하면 적절한 지원은 민법 및 형법과 관련된 법적 조치, 예를 들면, 아동의 납치 혹은 불법적 상황에 의한 입양 시, 성명, 국적, 가족관계 등 아동 신분상의 변경내용을 잘 보존하고 적절한 시기에 열람, 내용추가 등이 가능한 국가아동정보은행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매뉴얼 p.432~433).

전쟁 시에는 헤어진 부모와 아동을 신속하게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시에라리온의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원회는 사망 혹은 분리로 인해 부모와 가족을 잃은 수많은 아동들이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그들의 고통과 헤어진 가족과 아동을 추적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가족추적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족과 헤어진 아동들 특히 길거리에서 홀로 살아가는 아동들을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는 대안적 양육서비스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시에라리온, CRC/C/Add.116, paras. 50, 51)."*

## “보호”

신분상실의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신분이 회복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아동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안심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 불확실함과 상황에 대한 무지는 아동의 불안감과 슬픔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

## “아동의 신분의 신속한 회복”

아동과 관련된 일에서 신속함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의 신분은 부모가 누구인가 혹은 타고난 문화가 어떠한가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함께 사는 일시적 가족이나 지역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면 또 다른 제2의 신분 상실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이중으로 위배되는 일로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은 국가 혹은 개인의 납치에 의해 자녀와 분리된 부모들에게 특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아르헨티나는 초기에 “아동의 신분회복과 관련된 정부의 책임은 아동이 그가 성장한 친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구절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E/CN.4/1986/39, p.8~10; Detrick, p.292~294).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8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각 정부조직상의 책임부서나 기관의 배치와 조정(제8조는 법무부, 내무부, 외무부, 교육부, 복지부, 문화공보부 등과 관련이 있다.)
- 관련 민간단체 혹은 시민단체는 어디인가.
- 모든 법, 정책과 시행 등이 제8조에 어긋나지 않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필요한 경우 이행 정도에 대한 지표와 목표의 수립
- 아동의 권리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 다른 관련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
-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을 해야 한다.  
(그와 같은 조치는 협약이행을 위한 전체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예산의 분석과 필요한 자원의 분배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체계 개발
- 제8조의 의미를 모든 성인과 아동들에게 알린다.
- 적절한 훈련과 인식 제고 홍보활동의 개발

### ● 제8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아동은 양부모의 국적을 모두 택할 수 있는가
- 아동은 상당 기간 거주한 국가의 국적을 채택할 수 있는가
- 아동은 자신들의 국적 국가에서 부모들과 살 수 있는가
- 국적문제와 가족재결합 권리문제는 신속하게 취급되고 있는가.
- 아동의 이름의 변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절차에 의해 검토되었는가
- 그러한 이름의 변경은 충실히 기록되었고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가
- 아동은 그들의 최선의 이익에 저해되지 않는 한 본래 가족과 접촉할 수 있는가.
- 아동의 신분과 신분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기록되었는가.

- 아동은 이러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가
- 아동은 부모가 명확하지 않을 때 유전자검사에 의해 친부모를 확인 받을 수 있는가(필요하다면 무료로)
- 실종아동과 가족을 추적하기 위해 다른 자원들도 활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미디어 혹은 추적기관)
- 정부는 해외입양에 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대한 헤이그협약 그리고 국제아동납치의 민간측면에 대한 헤이그협약을 인준하였는가.
- 아동신분과 가족관계에 대한 불법적 행동이 일어났다고 의심될 때 모든 사례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 아동의 신분 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가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로 취급 되는가
- 교육, 복지 그리고 사법체계가 아동이 자신의 언어, 종교 그리고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아동의 본래 가족과 초기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유지되는가.
- 그리고 아동이 그러한 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가.
-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국가에 의해 취해진 아동의 배치는 아동의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배경이 지속성을 갖도록 배려하였는가.

###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8조 또한 분리하여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2조: 모든 권리들은 모든 아동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3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6조: 삶의 권리 그리고 가능한 최선의 생존과 발전의 권리

12조: 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 아동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정적 그리고 법적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8조와 긴밀하게 관련된 조항들:

7조: 출생등록,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

9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10조: 국제적 가족 재결합의 권리

11조: 불법적 양도 그리고 해외로부터 귀환할 수 있는 권리

16조: 사적, 가족 그리고 집에서 임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8조: 공동책임을 갖고 있는 부모를 가질 권리

20조: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21조: 입양

22조: 난민 아동

30조: 소수민족 아동 혹은 원주민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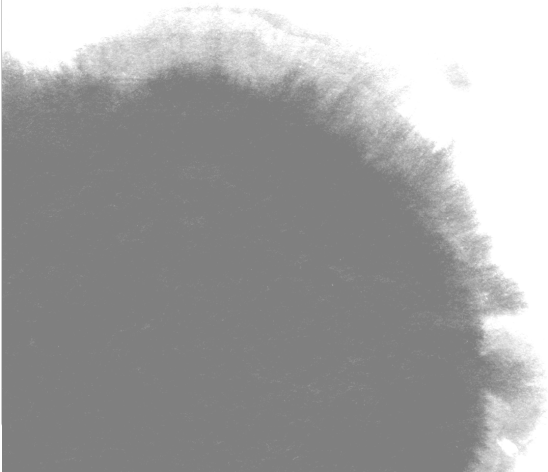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35조: 아동의 납치, 인신매매의 예방





# 09

## 제9조 부모와의 분리





## 제9조 부모와의 분리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uch determination may be necessary in a particular case such as one involving abuse or neglect of the child by the parents, or one where the parents are living separately and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2. In any proceedings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ll interested parties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and make their views known.
  3.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who is separated from one or both parents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except if it is contrary to the child's best interests.
  4. Where such separation results from any action initiated by a State Party, such as the detention, imprisonment, exile, deportation or death (including death arising from any cause while the person is in the custody of the State) of one or both parents or of the child, that State Party shall, upon request, provide the parents, the child or, if appropriate, another member of the family with the ess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whereabouts of the absent member(s) of the family unless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would be detrimental to the well-being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of itself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person(s) concerned.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 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 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요약

아동권리협약 제9조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두 가지 핵심적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다는 전제하에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할 때에 그 모든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 협약조항은 쌍방 부모와의 관계와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권리가 아동에게 있음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은 국가에 의해서 아동과 부모가 분리되었을 경우에는(예를 들면, 강제되거나 투옥에 의한 분리) 부모나 아동 양자에게 서로의 행방을 알려줄 의무를 그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기본 원칙은 1959년에 공표된 아동권리선언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즉,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에 의한 양육과 그 책임 아래에서 성장하여야 한다...(제6조)”. 이러한 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에서 다시 강조되고 발전되었다. 즉, “아동은...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 사랑, 그리고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정례보고서 작성 지침(2005년 개정)은 당사국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될 때에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그 원인별(무력분쟁, 빈곤, 차별에 기인한 유기 등으로) 분류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RC/C58/Rev.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가족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23조 1항인 이 조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또한 동 규약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신의 명예나 명성에 불법적으로 공격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제17조 1~2항).”

## **이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하는 아동의 권리**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장에는 부모의 의사나 혹은 부모와 아동의 의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그들이라는 말이 아동 자신만의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부모의 “의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영유아는 자신을 돌보아줄 사람을 선택할 힘이 없다. 자신의 가족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그들을 대신하여 양육할 사람을 선택하도록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위치에 있다고 하여도 부모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도록 그들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국가는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를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하게 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자녀를 적절하게 잘 양육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국가가 책임 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는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부모를 위한 상담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그동안 계속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높은 이혼율과 - 아마도 세계 최고치라고 생각되는 -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혼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들이 불충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혼과 조기 결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당사국이 가정의 붕괴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와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일을 책임 있게 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부모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몰디브, CRC/C/15/Add.91, paras. 17, 37)."

협약 조항은 아동을 일방 혹은 쌍방 부모로부터 언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였을 때이며, 둘째는 부모가 별거할 때이다. 세 번째는 협약 초안을 만들 때에 미국 측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서, "부모와 아동 간에 아동이 거주할 장소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이다(E/1982/12/Add.1.C, pp.49-55; Detrick, p.168). 소모적인 이유들은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 제안은 탈락되었다. 위의 두 예시는 부모로부터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제안한 세 번째의 예시는 - 아동이 어디에서 거주해야 하는지를 부모들 간에 합의할 때에, 혹은 부모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렇지만 아동은 그러한 조정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때 - 등의 경우에 어떤 아동들에게는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부모의 사적인 조정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논쟁은 하면서도 어느 국가도 위와 같은 환경에 처한 아동을 위한 법 규정을 만들지는 않고 있다. 만약 부부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에 국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면, 부모와 자녀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에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적어도 아동사건의 중재를 위한 사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정도는 해야 한다. 아동에게는 부모와 함께 살고 싶지 않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위원회가 러시아 연방의 "거리의 아동 수 증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을 때에 당사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거리의 아이들과 부모 혹은 다른 친척들과의 재결합을 촉진하거나 대안적인 양육을 제공하시오(러시아, CRC/C/RUS/CO/3, para. 75)."

한편으로, 국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동은 부모와 살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를 참작하지 않고 종종 아동이 대안적 양육환경으로 보내지는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부모-자녀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계 당국이 항상 적절하게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아동을 대안적인 양육환경으로 보내는 결정을 할 때에 당사국은 아동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더욱이 대안적 양육환경에 보내지는 것에 의해서 부모-자녀의 관계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게 할 것을 권고한다(핀란드, CRC/C/15/Add 272, paras. 28, 30)."

부모로부터의 “불필요한” 분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관점들이 있다.

### 국가에 의한 양육

제20조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빼앗긴 아동을 위해 가정생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범위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잘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국가적 보호를 위한 근거들을 지정할 때에, 반드시 차별화된 적용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집이 없거나 부모의 빈곤문제 그 자체가 아동 격리보호의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게 된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만약 이러한 결핍으로 인하여 아동의 발달이 지체된다면 아동이 그 가정 내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하면서 국가는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부모의 가난을 입양의 합법적 조건으로써 허용하는 네팔의 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네팔 정부에 말했으며(네팔, CRC/C/15/Add.261, para. 54), 아제르바이잔이나 헝가리와 같이 부모의 가난으로 인하여 아동이 국가의 보살핌을 받는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심히 우려를 표하였다.

"위원회는 불리한 조건에 처한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동이 종종 그들의 부모들과 불필요하게 분리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가 불리한 조건에 처한 가족들에게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포함하

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부모로부터의 아동 분리가 필요하다면 오직 아동 최선의 이익과 정확한 법적 근거에 입각하여 이뤄지게 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아제르바이잔 CRC/C/AZE/CO/2, paras. 37, 38)."

" 위원회는 종종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대안적 양육환경에 있는 아동의 비율이 매우 높음에 대해 우려한다. 많은 아이들이 장기간 보호되며, 그들 중에는 매우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가능한 빠르게 아동을 그들의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헝가리, CRC/C/HUN/CO/2, para. 30)."

장애인 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23조는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이 되었는데, 이 조항은 협약 제 9조 1항 초반부에서 그 규정을 반복하면서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아동의 장애나 일방 혹은 쌍방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 아동의 은폐, 유기, 방임과 격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는 반드시 "조기에, 포괄적인 정보, 서비스 그리고 지원을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유럽의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로마 아동의 수치가 높음을 우려하였다.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에서 인종적으로 소수인 아이들의 불균형적 숫자는 종사자의 태도나 가족 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을 유도할 수 있다. 세인트키츠네비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처럼 성별 또한 하나의 차별요소가 될 수 있다.

"... 당사국은 가족적인 환경 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상황과, 대안적 양육 또는 위탁보호에 대한 그들의 감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세인트 키츠네비스, CRC/C/15/ Add.104, para. 23)."

국가가 시설이나, 특수학교, 거리 아동을 위한 프로젝트, 위탁보호 또는 "단순 입양" 등과 같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떨어져서 살게 하는 보호조치를 할 때에 아동이 자신의 부모와 지속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다. 특히 아동의



부모가 적대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아동의 발달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할 것이다, 때로는 아동이 “정착”할 필요가 있다거나, 혹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동을 자극한다는 등의 논쟁이 일어난다. 하지만 만약 대안적 양육환경에서 사는 초기 몇 달 간 부모와의 연락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아동은 부모와 재결합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는 증거들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아동의 배치계획을 세울 때에는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거나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부모들을 고려하여 아동과의 접촉이 쉽게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위원회는 체코 공화국 보고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아동이 종종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상당히 먼 지역으로 보내지거나, 부모와의 전화연락이나 만남의 제한이 징벌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때로는 아동의 행동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체코, CRC/C/15/Add.201, para. 44).”*

위원회는 폴란드에게 다음 사항을 강경하게 권고하였다.

*“...아동이 원래 환경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입하고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복지 담당자들의 역량과 기술을 향상하라(폴란드, CRC/C/15/Add.194, para. 37).”*

### **버려지고, 가출하고, 동반자 없이 노숙하거나 노동하는 아동**

극심한 가난에 처한 부모나 폭력 혹은 무력 분쟁은 자녀를 버리게 하며, 혹은 그러한 상황의 압박으로 인하여 서로 연락이 끊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부모의 폭력이나 착취 때문에 아동이 집을 떠나 길거리로 나선다. 그 결과, 세계의 가장 큰 도시들에는 가족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아동 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아동을 위하여 국가는 아동이 언제나 그들의 부모와 가족을 찾아서 재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떤 아동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반면에, 원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가정 하에 동 조항을 위반하면서 분리된 다른 아동들은 제9조에 있는 그들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가족들을 추적하는데 기울인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그동

안 장려해 왔다.

*"...분리된 가족과 아동을 추적하는 일이 어렵고 또 진전이 느린 것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족 추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콜롬비아, CRC/C/15/Add.137, paras. 40, 42)."*

거리의 아동에 대하여 더 진전된 논의는 제2조와 제20조를, 그리고 추적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8조를 참조하라.

### 입원 중인 아동

부모들은 아마도 문병을 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병원에 머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가 보다는 산업화 된 국가에서 더욱 흔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분리 형태는, 비록 아동 환자의 의료적인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주장되었다고 할 지라도, 주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된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병원에 있는 것이 아동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이제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비록 병원에서의 치료과정은 주로 의료담당 직원과 병원 관리자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아동-친화적인 병원을 권장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크로아티아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자녀가 6개월 미만이 아닌 경우는 어머니가 입원한 자녀와 함께 병원에 머무는 것이 무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자녀가 입원하였을 때에 그들의 부모와 분리되지 않아야 할 것을 권고한다(크로아티아, CRC/C/15/Add.243, paras. 51, 52)."*

### 수감 중인 부모들

부모의 수감, 특히 부양해야 하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그 부모를 따라서 아동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죄가 없는 그의 친척들에게 항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 반면

에, 아동이 관련이 되면 그 영향은 특별히 그들에게 파멸적일 수 있다. 아동을 당장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조기 분리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인 비용부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해결책은 영아유와 어머니를 감옥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좀 더 건설적이면서 수용 보호하지 않고 제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뒤에 언급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협약 제 3조 1항은 법정에서 부모에게 형을 선고할 때에 “1차적인 고려 대상”으로서 이에 영향을 받게 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갓난아기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은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는 전혀 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이 성장하면서 어머니와 아동을 분리하게 된다면 언제 분리할 것인지 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수감된 부모와 함께 아동을 수용하는 문제나, 네팔에 관한 권고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수감된 부모와 아동이 서로 연락을 계속 하지 못하는 문제 모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종종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열악한 조건의 성인용 감옥에 수감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점을 우려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수감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의 현 상황들을 검토해 볼 것과 아동의 거주가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아동의 조화로운 인성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부모가 수감 중인 아동에게는 확대가족 안에서 적절한 대안적인 양육을 제공할 것과 수감된 부모와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네팔, CRC/C/15/Add.261, paras. 51, 52).”*

조직적인 접근에 대한 권고:

*“위원회는 부모가 수감 중인 아동의 처치를 정함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명확한 지침을 개발하고 실천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예를 들면 아동의 나이, 거주 기간, 외부와의 접촉, 감옥으로의 출입 등). 또한 협약 제27조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의료보호를 포함하여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감옥 내 거주 환경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서 위원회는 또한 감*

옥 바깥으로 나간 이동을 위해 적합한 대안적 양육환경을 개발하고 실천할 것과, 아동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할 것과 그 아동이 감옥에 남아 있는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멕시코, CRC/C/MEX/CO/3, para. 40)."

제 2조 2항은 “부모, 법적 후견인, 혹은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나 활동에 근거하여 비롯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홀로된 어머니는 어린 자녀의 발달에는 특히나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수감 또한 매우 해로울 수 있고, 중요한 역할모델을 아동에게서 빼앗는 것이며, 종종 그 일가족이 가난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국가는 인식하여야 한다.

### 소년범죄자

아동이 범죄행위를 한 것에 부모가 기여하였다고 사법당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죄를 범한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에 대한 형량의 일부로서 친권을 박탈하는 아동보호명령은 내리지 말아야 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내려야 한다. 소년사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 규칙) 제18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 어떤 청소년도 그의 상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잠시 동안 안이든 혹은 영구적이든 부모의 감독권한에서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 죄를 범한 아동의 수감과 그로 인한 가족과의 분리는 제37조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일어나야 한다.

### 해외에서 일하는 부모.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들이 해외에서 취업을 하면서 자녀를 집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어머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처음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였다.

“... 자녀들을 집에 남겨두고 특히 걸프지역에 나가서 일하는 어머니를 둔 아동의

상황: 이러한 아이들은(200,000~300,000명 사이) 종종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은 또 다른 학대나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마도 기대한 대로이겠지만, 엄마 없는 아동을 위한 스리랑카의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 아니라, 협약 제9조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해외에서 일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는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의 자녀를 해외로 함께 데려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와 대화의 물꼬를 트고서 국제적인 협약을 이끌어 낼 것을 당사국에 제안한다.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스리랑카, CRC/C/15/Add.40, paras. 16, 33)."

스리랑카가 두 번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때에 위원회는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동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문하였다.

"... 이주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자녀양육에 필요한 보조를 거의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 위원회는 이주 노동자 가정의 가족들이나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동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에서는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스리랑카, CRC/C/15/Add.207, paras. 30, 31)."

위원회는 세인트 빈센트와 그라나다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시하였는데, "어려운 국내 고용 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부모들이, 때로는 양쪽 부모 모두가 자녀들의 양육은 조부모나 혹은 조금 더 나이 든 자녀들에게 맡기고 해외로 나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당사국은... 가족 관계 내에서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들을 위한 국내 고용 여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강구하라(세인트 빈센트와 그라나다 CRC/C/15/Add.184, paras. 30, 31)."

## 이민과 국외 추방

제10조는 아동 혹은 아동의 부모가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때(혹은 그러기를 바랄 때), 가족 재결합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9조와 제 10조의 초안을 만들 때에 협약을 기초한 실무그룹의 의장은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만들었다. “실무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는데, 제6조(현 제9조)는 국내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리에 적용되며, 반면에 두 번째 제 6조(현 제10조)는 다른 나라와 관련된 분리와 가족 재결합 사례에 적용하고자 고안하였다. 두 번째 제6조(현 제 10조)는 국가가 국제적 책임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여 관련 이민법을 제정하고 규정을 만들게 되는 일반적 권리에 영향을 주려고 고안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장의 진술은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였다. 실무그룹에 속한 세 국가의 대표는 “국제적인 책임”에는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원칙들, 당연히 제9조의 원칙을 포함하는, 아동권리와 인권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독일연방공국 대표는 “의장의 진술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입장을 유보하였다(E/CN.4/1989/48, pp.32~7; Detrick, pp.181~182).”

이러한 진술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만한 사람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다. 영향은 출지언정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아니 하다. 그 진술은 위원회와 캐나다와의 구두 회기 중에 다시 인용되었다. 이민 통제와 국외 추방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한 위원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9조에 의하여 당사국들은 사법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에 의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인 것으로 심사되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부모를 국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어떻게 아동 최선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어왔다. 가족의 가치가 의사 결정자에 의해서 고려되었는가? 제9조는 또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기회가 주어지는 소송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어떤 법적 지원을 받으면서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알릴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였다. 제12조의 두 번째 문장에서 아동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 중에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확립되었다(캐나다, CRC/C/SR.216, para. 28).”

캐나다 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국제법은 가족 재결합에 대한 표현의 권리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협약 또한 가족 재결합을 표현의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1988년 12월 협약을 기안한 국제연합 실무그룹에서 논의된 한 가지 관심 주제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음에 대한 제9조의 조항이, 부모로부터의 이동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이 이민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실무그룹에서는 보고서 심의 시 가족 재결합에 관한 제10조는 관리에 관한 문제임을 설명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다. 실무그룹에서 이해한 바로는 제10조가 자국의 이민법을 국제적인 책임에 맞추어서 제정하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일반적인 권리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국제적인 조약들은 “가족 재결합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캐나다, CRC/C/SR.216, paras. 47, 55).

이러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원은 제10조의 가족 재결합에 대한 조항은 제9조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캐나다, CRC/C/SR. 216, paras. 84). 캐나다가 두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이 주제를 다루지 않았다.

이민에 대한 다른 측면들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1951년의 난민 지위와 관련된 협약에서 기술한대로 난민가정의 가족 재결합을 위한 국가적인 요구사항과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긴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가족 재결합을 위한 요구사항과 절차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서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독일, CRC/C15/Add,226m paras. 54, 55)."*

*"노르웨이에서는 자녀가 있는 외국인이 심각한 죄를 범한 결과 영구적으로 국외로 추방을 당하는 경우에 이동 최선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음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를 국외 추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이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노르웨이, CRC/C/15/Add.263, paras. 21 , 22)."*

*"위원회는 본토에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유입되는 현재의 이민할당수와 특별행정구 내에서의 거주권에 관한 규정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부모와 분리되거나 가족 재결합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한다(중국, CRC/C/CHN/CO/2,*

para. 50).

일본은 국외 추방 문제를 언급하였고, 그것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민법에 따라 국외로 추방됨으로서 아동이 그의 부모와 분리되는 경우는 아동권리협약 제9조의 첫 번째 문단에 적용받지 아니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CRC/C/2/Rev.8, p.26; 일본, CRC/C/15/Add.90, para. 6).

## 무력 분쟁

부모와 아동의 분리는 무력 분쟁이 일어나거나(제38조) 또는 그들이 난민이 되었을 때에 발생한다(제22조). 내란이나 경제 붕괴의 결과는 가족 단위를 파괴할 수 있다.

때때로 정부는 무력분쟁으로 야기된 사회의 대 격변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안마가 제출한 보고서 심의 시, 위원회는 국가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는 아동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부와 주요 무장 반군 사이에 최근 체결된 평화 협정을 환영하면서 위원회는 가족과 아동권리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강제적인 인구 재배치, 이동, 그 밖에 유형의 비자발적인 인구 이동을 방지할 것을 당사국에게 강력하게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가족 재결합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든 중앙 추적 기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미안마, CRC/C/15/Add.69, para. 40)."

미안마의 두 번째 보고서에 대해서 위원회는 가정생활에 미치는 전쟁의 영향, 특히 소수 민족의 가족붕괴와 양측으로부터 징집된 소년병 징병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미안마, CRC/C/15/Add.237, paras. 42, 66).

비슷한 우려는 네팔에서도 제기되었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는데,

"...확대가족과 같이 기존의 가족구조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서 분리된 가족을 재결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수행하도록...(네팔, CRC/15/Add.261, para. 50)."



## 전통 혹은 관습

관습으로 인한 아동과 부모의 분리는 아마도 혼외 임신으로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 과거에는 어머니들이 그러한 자녀를 내버리거나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화적 압박은 세계 여러 곳에서 여전히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스리랑카에 대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원회는 혼외 출생한 자녀를 계속 키우기 원하는 어머니들을 당국에서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스리랑카, CRC/C/15/Add.40, para. 34)."*

관습은 또한 부모와의 분리로 인하여 아동이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와는 어느 정도의 연락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결정은 오로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때때로 전통이나 종교적 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불륜을 저지른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접근권한을 상실한다든지, 아버지가 사망하여도 아동은 반드시 부계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18조에 의하면 아동은 쌍방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가 있으며, 쌍방 부모 모두 자녀의 양육과 발달 및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러한 결정이 그와 관련된 개별 아동의 필요와 이익을 참고하지 않고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모의 책임을 자동적으로 할당하는 결정들은 협약정신에 위배가 된다.(아래 내용과 협약 제18조 그리고 앞으로의 토론 내용 참조).

###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부모와의 분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이 갖는 권리

- 관계 당국의 책임 아래에서
- 시법적인 심사의 구속을 받는
-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갖고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것

정당한 이유도 없이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국가가 아동에게 저지러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권리 침해 중 하나이다. 동시에, 국가는 아동을 부모의 해악에

서 보호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동 협약은, 제9조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그러한 조치들이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관리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부모-자녀 분리문제에 대해 일정한 절차 없이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접근하는 국가들에게 경고한다. 예를 들면, 리투아니아와 같이 부모의 보살핌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수의 아이들이 격리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당사국은 친권과 부모-자녀 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하는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하여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관계 당국이 사법적인 심사를 하고, 아동최선의 이익을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 제9조에 부합하여 부모와 아동이 모두 그러한 절차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방안을 당사국이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리투아니아, CRC/C/LTU/CO/2, para. 40)."*

### “관계 당국”

“자격이 있는, 적절한”이라는 단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이 있는 지위와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당국은 증거에 근거하여 무엇이 아동 최선의 이익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기술들은 공식적인 훈련에 의해서(예를 들어, 심리학, 사회복지 혹은 아동과 관련한 법적인 사례관리) 혹은 상응하는 경험들(예를 들어, 지역사회 공동체나 종교적인 중재자로 재직)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 위원회는 세인트 빈센트와 그라나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곳에서는 아동이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는 가족상황에서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만이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 쪽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이 겪는 정신적인 외상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회복지 분야에 아동을 격리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다(세인트 빈센트와 그라나다, CRC/C/15/Add.184, paras. 38, 39). 다른 한편으로, 위원회는 슬로베니아와 그 밖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훈련과 전문적 수행의 적절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센터가 아이들과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한 행정적, 또는 다른 여타 지원형태를 제공하는 그들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종종 적용하는 절차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센터와 직원들의 전문적인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국이 사회복지센터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들을 취할 것과 이러한 기관의 모든 활동들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 법적, 실용적인 조치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슬로베니아, CRC/C/15/Add.230, paras. 30, 31)."

국가는 관계 당사국이 진정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고의 고려사항으로 할 수 있는 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선의 이익"을 정의하는 융통성 없는 주장, 예를 들면 아이들은 반드시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적인 태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협약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전신인 아동권리선언 제6조는, 예외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나이 어린"아이들을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보호하는데 우호적인 주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권을 주고자 하는 이러한 경향은, 비록 많은 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도 중요한 보호방안이기도 하지만, 협약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위원회는, 파키스탄의 예와 같이, 어린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주고 큰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주는 몇몇 모슬렘 국가들에 대해 이러한 견해를 표현하였다.

"위원회는 이혼의 경우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 나이 제한을 사용하는 당사국의 법령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러한 허가는 형제간에 떨어져 살 수 있는 것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차별을 하게 되며, 아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그 견해가 고려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게 된다(파키스탄, CRC/C/15/Add.217, para. 44)."

##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이 표현에는 자연적인 정의와 공정한 심문의 원칙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포함한다.

- 재판관이나 중재자들은 사건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
- 그들은 사건의 모든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받는다.
- 그들은 그들이 내린 판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 모든 당사자들은 의견을 말한다.
- 모든 당사자들은 증거를 듣는다(필요하다면 법해석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제9조의 이 부분을 초안으로 만드는 동안 국가 대표들은 “자국의 법령 아래에서 부모와의 분리기간이 최대한 짧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E/1982/12/Add.1,C, pp.49~55; Detrick, p.168). 비록 그 과정을 신속히 해야 할 필요성이 이 조항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8조 2항 (가족과의 연대를 포함한 아동의 정체성을 “빠르게” 재확립 할 의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함은 사법적인 심사의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핀란드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양육권 분쟁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핀란드, CRC/C/15/Add.272, para. 26).

이 조항은 소송 절차에 있어서 사생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4조 1항은 다음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즉, 법적 심문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반인들은 제외되어야 하며, 심문에 대한 판결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재판과정이 부부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권에 관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고 명시한다. 아동최선의 이익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조와 제16조(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제9조 아래의 법적 심문은 사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더 나아가서 소년사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인 “베이징 규칙” 제3조 2항은 규칙의 범위를 보호와 복지 절차까지 확장하였다. “규칙에서 구체화된 원칙들을 복지와 보호 절차과정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이징 규칙“은 관련된 아동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며 “이해의 분위기”속에서 수행되도록 충분히, 융통성 있게, 공정한 심문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 그 규칙은 사생활, 속도, 대리진술과 부모의 출석을 요구할 아동의 권리, 청원절차, 소송절차를 중단시키는 힘, 소송기록의 보존, 그리고 조사에 입각한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어떤 나라들은 제9조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인데, 그러한 나라들은 사회복지 당국이 아동을 법원 청원이나 사법적인 심사 없이 데려가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유보하였다.<sup>4)</sup> 이것은 아동의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베이징 규칙”에서 보호와 복지 절차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것이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절차라는 것, 그리고 자연적인 정의의 규칙 아래 이루어지는 공정한 심문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유보적인 입장을 철회하도록 조직적으로 권고해 왔다. 이러한 심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니카라과에 권장했던 것처럼 법정은 특화되고 기금이 잘 조달되어야 한다.

*“... 당국은 잘 훈련된 재판관과 다른 전문직들이 참여하는 특화된 가정법원을 설립하고, 가정 법원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과 가정 법원 절차가 부당하게 시간이 지연됨 없이 수행되어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니카라과, CRC/C/15/Add.265, para. 37).”*

그리고 레바논의 다음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 사법적 절차 없이... 시설에 배치되는 많은 수의 아동에 대해서...”*

4) 우리나라에서는 일시보호 또는 장기보호를 위한 부모와의 아동분리가 사법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아동 복지법상의 보호조치 조항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 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분리보호가 필요하다더라도 부모의 의사에 반한 분리보호가 불가능하다. 또한 행정적인 보호조치에 의해 분리보호가 이루어져도 부모의 아동권이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법적인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2007.4~2008.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5 쪽 이후 참조 - 번역자 주)

당사국에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관계 당국이 사법적인 심사와 절차를 통하여 부모로부터의 아동분리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양육보호와 관계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 표현은 아동을 격리하거나 부모 중 일방이 자녀 양육권을 갖는 일에 국가가 관계하면서 아동과 부모가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분리되는 어떠한 절차에도 적용이 가능한 법률을 국가가 제정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법이 아동 분리에 대한 기준을 사법적인 재량에 맡겨서 무엇이 아동 최선의 이익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전히 재판관에게 달려 있다면, 국가는 재판관이 그 재량을 객관적으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적절한 사법적인 심사에 대한 이 부분은-모든 관계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성-많은 이유로 인하여 협약 내에서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는 쌍방 부모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심지어 일방 부모가 자녀의 최우선적인 보호를 하지 않았을 때(예를 들어 아이의 엄마가 자녀를 방임한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빠가 그 자녀를 돌볼 수 있거나 기꺼이 돌볼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는 일방 부모가 그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도 그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또한 다른 “이해 관계자들”-예를 들어, 아동의 확대가족 구성원이나, 아동에 대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그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해 관계자들”이란 용어는 협약에서는 정확히 정의되지는 않았고, 그에 관한 해석을 국내법이나 사건 담당 재판관에게 맡기고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바람직한 결정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갖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당연히 사건에 연루된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제12조 2항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어떠한 사법적 이거나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특별히 아동은 직접적으로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 하에서의 소송절차는 명백하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 제12조 2항은 아동이 언제 직접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언제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피력할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제12조 1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일반적인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재판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희망하면 언제든지, 이러한 시간이 조정되어야 하며, 거기에 더하여 아동이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진술할 수 없을 때(아동의 진술능력이 부족하거나 당사자주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하여서), 이를 위한 적절한 준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기회”(제9조 2항)가 주어지거나 “진술한”(제12조 2항)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아동 최선의 이익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은 아동이 생각하는 최선과 상충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협약 아래에서 아동의 견해도 들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스웨덴이 아동의 견해를 듣기 위해 기울인 “괄목할 만한 노력”에 대해 치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표하였다. 위원회는 스웨덴 측에

*“... 관련 아동에 대한 행정적 또는 다른 결정사항에 아동의 견해가 어떻게 조정되었고,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여졌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호과정 중에 갈등을 겪거나 부모 방문과 관련하여 논쟁 중에 있는 아동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스웨덴, CRC/C/15/Add.248, paras. 23, 24).”*

위원회는 또한 아이티에 대해서도,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동의 숫자가 높은 것과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때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위원회는 “... 아동에게 소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함” 을 권장하였다(아이티, CRC/C/15/Add.202, paras. 38, 39).

아동의 복지가 자신의 선택으로 심각하게 해를 입을 수 있다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아동의 결정이 무시될 수 있다는 통고와 함께, 국가는 종종 아동 스스로가 보호나 접근(즉, 거주지나 면접교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를 지정하기도 한다. 그 나이는 7살에서 16살에 걸쳐있다. 그러한 규정은 협약에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동이 몇 살이 되어야 그의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나이를 지정한 법 조항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제12조 아래에서는 모든 나이에 있는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쌍방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아동권리”

이 권리는 “쌍방 부모 모두 자녀 양육과 발달에 대한 책임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제18조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때 취하게 되는 보호방안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한국은 제9조 3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유보적인 입장을 철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CRC/C/2/Rev.8, p.36; 한국, CRC/C/SR.276, para. 14).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보적인 입장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라는 협약의 원칙과 규정과 서로 양립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한국에 공지하였다(한국, CRC/C/15/Add.51, para. 8).

두 번째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녀들과 부모 모두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법개정 과정을 신속히 하도록” 권고를 받았다(한국, CRC/C/15/Add.197, para.10).<sup>5)</sup>

5) 정부는 1991년 협약 비준 시 제9조 3항의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은 민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유보하였



종종 아동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예를 들어, 다른 부모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산다든지) 혹은 부모 사이의 매우 곱끄러운 관계 때문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위원회는 안티구와 바부다와 리히텐슈타인에 대해 이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전제하는 현행 법 규정이 없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국은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현행법을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안티구와 바부다 CRC/C/15/Add.247, paras. 39, 40)."*

*"위원회는 혼외임신으로 태어난 아동의 아버지가 양육권을 주장할 입장이 아니라 는 것과 자동적으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진다 는 사실을 염려한다..."*

*"위원회는 당국이 아버지에게도 혼외임신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머니와 공동으로 양육권을 허용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 것을 권장한다(리히텐슈타인, CRC/C/LIE/CP/2, paras. 18, 19)."*

아동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법원은 부모의 접근을 정확하게 거부할 수 있다. 법령은 종종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반면에, 법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최선의 이익이 쌍방 부모와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언제나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국가는 아동의 부모들이 갈등관계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중립적인 면접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접촉 시 감독을 한다든지 하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12월 민법을 개정하여 아동에게도 부모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17쪽 참조 - 번역자 주)

**국가적인 조치(예를 들어 구금, 투옥, 망명 혹은 보호 도중 사망)로 인하여 분리된 부모나 자녀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자녀의 복지에 해가 되지 않는 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와 자녀의 권리**

부모가 자녀들이 어디에서 보호되고 있는지 듣지 못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행방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수감자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규칙을 되돌아보게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은 희귀하고 예외적이다. 부재중인 가족 구성원의 운명을 발견하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기 는 하지만, 아동이 부모의 거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혹은 동일하게 수감된 아동의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동에게 훨씬 더 큰 상처 입힌다는 것을 가정해 보아야 한다. 오만은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않다면”이라는 문장에 “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라는 말을 덧붙여야 한 다면서 이 단락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CRC/C/2/Rev.8, p.34). 하지만 비록 국가가 극적인 형태의 테러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부모의 거처를 말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어떻게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다.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연합 규칙은 자녀의 구금사실과 그 이유 및 다른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부모들과 친척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장은 “행방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만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특히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충분한 정보일 수도 있다. 국가는 -왜 그 사람이 수감되었고, 강제 추방되었으며, 보호관찰 아래 사망하였는지- 와 같은 그 이유와 다른 관련된 세부사항들(언제 그들이 가족들을 볼 수 있는지, 혹은 그들의 법적인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가족 구성원들이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요청에 따라서”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아동권리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협약 초안을 만든 그룹의 몇몇 국가 대표 자들에 의해서 그 전제조건이 특히 강조되었다(E/CN.4/1983/62, pp.4-8; Detrick, p.175). 정보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과 부모들에게 서로의 행방에 대해

서(그러한 정보가 아동의 복지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이 점을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부모가 범죄로 인하여 노동 교화형이나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자녀에게 부모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9조 단락 3에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부모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북한, CRC/C/15/Add.239, paras. 42, 43)."*

### **관련된 사람(들)에게 “불리한 결과” 를 초래하지 않는 정보 요구의 권리**

이러한 필요조건은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과 정보에서 언급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서, 문서화된 학대사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권리이다. 국가에 의한 정보의 요구가 무의식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불러오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용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친척들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친척들에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9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모든 정부부서 차원에서 책임 부서와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제9조는 법무부(형사와 민사), 사회복지, 보건과 교육부서가 해당됨)
-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정부기구/시민단체 파트너는 확실한가?
- 모든 법률, 정책과 실천이 재판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을 위하여 이 조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필요한 경우 목표를 확실히 하고 과정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가?
- 아동권리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관련이 있는 다른 국제적인 기준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협력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러한 조치들은 협약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정부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

- 예산에 대한 분석과 필요한 자원은 배당되는가?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절차들은 개발되어 있는가?
- 제9조의 내용을 성인과 아동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가?
- 적절한 훈련과 인식증진 활동이 개발되어 있는가?(제9조와 관련하여 판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병원직원, 그리고 소년법정과 이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훈련)

### ● 제9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정부 당국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분리되도록 국가는 보장하고 있는가?
- 아동의 거주지에 대해서, 그리고 일방 부모에 의한 자녀 면접교섭에 있어서 부모들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국내법 상 아동을 대신하여 제 3자의 소송 개입이 가능한가?

- 시설(고아원이나 기숙학교)에 있는 아동이나 또는 다른 곳(위탁보호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에 배치된 아동과 부모와의 면접 교섭이 아동 최선의 이익과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선에서 유지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가?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는 한 노숙하거나 노동하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가?
- 병원은 가능하면 언제든지 부모가 입원한 자녀들과 함께 병원에 있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해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받고 있는가?
- 사법제도는 어머니들이 영유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필요성을 존중하는가?
- 사법제도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필요성을 존중하는가?
- 사법제도는 청소년 범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관계당국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부모와 분리되지 않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짧고 적당한 시기 동안만 부모와 격리되는 것을 보장하는가?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한 이민법 상 부모의 국외추방을 관리하는 법과 절차가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동권리를 고려하는가?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한 이민자와 난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규정들이 부모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동권리를 고려하는가?
- 무력 분쟁이 있을 경우, 민간인의 강제 이동을 피하고 이러한 경우가 일어났을 때 분리된 부모와 자녀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가?
- 국가는 부모와 자녀를 불필요하게 분리하는 전통적인 관습을 타파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예를 들면, 공공 교육 캠페인)를 취하는가?
- 부모와 자녀의 불필요한 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실용적이고 심리학 적인 원조를 국가가 제공하는가?
- 모든 법률은 국가가 차별(예를 들면 빈곤이나 소수민족 가정과 관련된)과는 상관없이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들을 상술하고 있는가?

- 모든 법률은 국가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관한 독단적인 견해(예를 들면 아동은 아빠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더 낫다거나 혹은 그 반대)와는 상관없이 자녀를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들을 상술하고 있는가?
- 아동 최선의 이익 때문에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한 당국의 모든 결정들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졌는가?
- 당국은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모든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이러한 결정은 사법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가?
- 이러한 사건들은 신속하게 처리되는가?
-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사생활 대한 아동권리가 보장되는가?
- 모든 관계자들이, 해당 아동을 포함하여, 직접 참여하여 그러한 사건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가?
- 사건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나이 제한이 없는가?
-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하여 법정에 보고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불일치할 경우, 해당 아동의 견해를 듣는가?
- 그 과정들은 편견이 없고 공정한가?
- 법률은 아동이, 가능하다면 어디에서든지, 쌍방 부모와 정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가?
- 부모들이 갈등관계에 있는 경우에 부모와의 면접교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원이 제공되는가?
-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분리된 부모와 자녀의 행방을 찾는데 있어서 국가는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가?
- 아동의 복지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조치(예를 들면, 구금, 투옥, 국외추방, 혹은 사망)에 의해 격리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아동이나 부모에게(적절한 경우엔 다른 가족구성원들) 언제나 제공하는가?
- 그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결과로부터 보호받는가?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9조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제2조: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별아동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차별 없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

제3(1)조: 아동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서든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제6조: 삶에 대한 그리고 가능한 최대의 생존과 발달을 누릴 권리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 존중;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아동의 견해를 들을 기회를 주는 것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9조의 이행과 특별히 관련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알 권리와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8조: 가족 관계를 포함한 신분을 보존할 권리

제10조: 국제적인 가족 재결합

제11조: 불법 해외이송과 미귀환으로부터 보호

제16조: 사생활, 가족 그리고 가정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

제18조: 부모의 공동 책임

제20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제21조: 입양

제22조: 난민아동

제24조: 보건서비스

제25조: 국가에 의해서 가족으로부터 분리 보호된 경우 치료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

제35조: 아동의 매매, 밀거래와 약취유인의 예방

제37조: 자유의 박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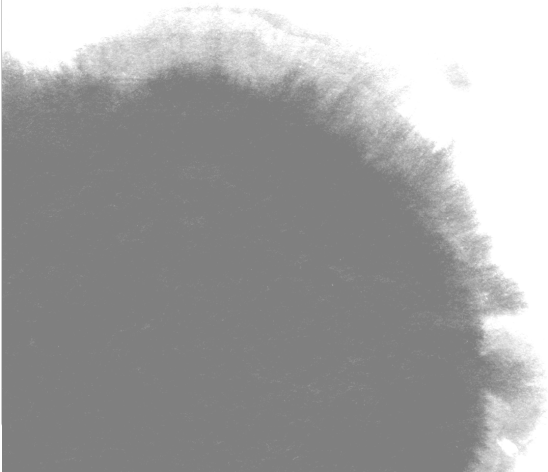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제40조: 소년사법 체계의 행정





# 10

제10조 가족 재결함을 위한  
입국과 출국





## 제10조 가족 재결합을 위한 입국과 출국

1.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applications by a child or his or her parents to enter or leave a State Party for the purpose of family reunification shall be dealt with by States Parties in a positive humane and expeditious manner.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ad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applicants and for the members of their family.
  2. A child whose parents reside in different States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on a regular basi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s with both parents. Towards that end and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and his or her paren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enter their own country.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restric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ordre public), public healthy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 요약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10조는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본국에 입국 또는 출국에 관여되어 있는 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권리 관련 조항이다. 제10조는 당사국에게

가족재결합에 대해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만약 아동과 부모가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경우 상호방문을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 제10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가족은, 난민(난민의 부모나 아동이 가족재결합의 목적으로 보호시설보다 입국을 추구하는 것이 언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부모와 다른 국가에 분리되어 사는 아동인 소위 “경제적 이주자”라고 부른다.

가족결합이 협약의 근본원칙이기는 하나 제9조 보다 가족재결합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제10조의 표현은 현저히 미약하다(제10조가 제9조 1항에 명확한 출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불분명한 표현은 세계 빈곤국가의 대규모 이주 공포에 의해 불안해하는 부유한 국가에 거대한 불안의 원인인 이민 통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제10조는 가족재결합의 목표를 위해 “남아있는” 부모의 국외추방의 전반적 문제 내에서 취해지는 아동이나 그의 부모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함의적으로 국외추방 된 부모가 즉시 국가 재입국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조항에 의해 다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제9조 해설 참조).

국가가 난민과 관련하여 조약을 비준하도록 권장(제22조 참조)하는 것에 부가하여, 위원회는 국가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비준하도록 권고한다. 협약은 2003년 7월에 발효되었다(괄호 내의 2007년 7월 현재 비준한 국가 참조). 협약 제44조는 협약체결국이 “적절한 고려와 그들의 이주노동자가 배우자 및 법적으로 혼인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또는 미혼자 아동 등 관계자들과 법적 권한 내에서 재결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규정한다. 제22조는 대규모의 추방으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보호한다; 제14조는 그들을 “착취 또는 사생활, 가족, 가정에 대한 불법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한다...”

## 당사국에 의해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 되는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청원 을 할 수 있는 이동 또는 부모의 권리

### “긍정적”

제10조의 초안 작성 시 일부 국가 대표자들은 “긍정적인(positive)”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대해 우려하였다. 두개의 대안 즉 “객관적”(objective)과 “호의적(favorable)”이라는 단어가 제시되었지만 부결되었다. “호의적”은 “긍정적”에 비하여 너무 많은 사전 판단의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생각되었고, 반면에 “긍정적”은 “객관적”보다는 강한 표현이지만 국가가 청원에 동의하여야한다는 점을 의무화 하지 않았다(E/CN.4/1989/48, pp.37~40; Detrick, p.2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음과 같은 의견 표명을 위해 애를 썼다. “일본 정부는 이에 더하여 이동권리협약의 제10조 1항에 제시된 가족재결합의 목적을 위해 당사국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 신청을 “긍정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의무는 청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해석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CRC/ C/2/Re v.8).” 본 위원회는 2회에 걸쳐 일본이 그와 같은 의견 표명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일본, CRC/C/15/Add.231, para. 9).

왜냐하면 다수의 부국들이 최근 수십 년간 더욱 더 노동 이주자들에 대해 국경을 폐쇄해 왔기 때문에, 가족재결합은 이주자 정착을 위한 법적 주제가 되어왔다. 이는 차례로 가족재결합에 대한 입법화를 점차 제한하는 상황을 유도해왔다. 일부 국가들은 그와 같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 전에 국적 신분을 요구한다. 이제 다수의 국가들은 공적기금에 의지함이 없이 이주자 가족을 지원하는 충분한 재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주신청자들을 요구한다. 다른 국가들에는 가족재결합을 위해 국가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아동일 때 보다 엄격한 조건이 있다. 모든 국가가 16세에서 18세를 아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는 부모들이 떨어져 있다면 아동들이 “부양 가족”이거나 부모 한 쪽의 독점적 책임이 있는 아동일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가족재결합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그 기간이 할당제도와

15세로 설정된 아동 연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오스트리아, CRC/C/15/Add.251, para. 35).” 그리고, 에스토니아 국가 법원이 이주자 할당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에스토니아 법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였다.

*“... 주 신청자가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도 에스토니아 국외 거주 난민 부양배우자 및 자녀가 1951년 난민협약의 기준에 부응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재결합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부가하여 위원회는 가족이 난민으로 인정된 자녀들과의 재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한다(에스토니아, CRC/C/15/Add.196, para. 34).”*

영국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이민법제정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일괄적 유보를 하였다(CRC/C/2/Rev.8). 위원회는 이 유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국적 및 이민법의 적용에 관련한 영국의 유보는 협약 제2, 3, 9와 10조를 포함한 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영국이 협약 원칙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적 및 이민법과 절차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영국, CRC/C/15/Add.34, paras. 7, 29). 이와 같은 우려는 영국의 제2차 국가보고서 심사에서도 반복되었다(CRC/C/15/Add.188, para. 6).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받을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2007년 7월 현재 다음 국가들은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했다.

알바니아	키르기스스탄
알제리	레소토
아르헨티나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말리
벨리즈	모리타니아

볼리비아	멕시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모로코
부르키나파소	니카라과
카보베르데	페루
칠레	필리핀
콜롬비아	세네갈
에과도르	세이셸
이집트	스리랑카
엘살바도르	시리아
가나	타지키스탄
과테말라	동티모르
기니	터키
온두라스	우간다
	우루과이

리히텐슈타인은 “특정 부류 외국인들의 가족 재결합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리히텐슈타인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권리를 유보한다(CRC/C/2/Rev.8).” 이 유보사항은 여전히 리히텐슈타인 제2차 국가보고서에도 심의되었으며 이를 위원회는 유감으로 생각하며(CRC/C/LIE/CO/2. para.4), 싱가포르는 “때로 필요할 것으로 간주하며” 싱가포르에 입국 및 체재에 관한 자국의 법을 적용할 권리를 유보하였다(CRC/C/2/Rev. 8). 이 또한 위원회의 우려 사항의 하나이다(싱가포르, CRC./C/15/Add.220,para. 6).

요약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10조의 규정들은 부모가 추방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노르웨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경찰은 전 가족이 함께 체재하며 아동에게 과도한 긴장이 가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 가족의 추방 연기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는다." "이는 문제 해결이 가족 분리의 원인이 되는 추방을 회피하기 위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노르웨이, CRC/C/15/Add. 23)."*

한편 위원회가 노르웨이의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시 노르웨이의 “긍정적인” 노력을 권고한 것은, 추방 결정이 내려질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항상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우려였다.

*"위원회는...당사국의 긍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범으로 선고된 외국인의*

추방을 결정할 경우, 그와 같은 결정이 추방되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추방결정이 부모로부터의 아동의 분리를 의도 하는 것인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과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노르웨이, CRC/C/15/Add.126, paras. 30, 31)."

위원회의 노르웨이 제3차 국가보고서 심사 시에, 위원회는 이와 같은 우려를 반복하였고 재차 노르웨이에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부모의 추방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을 보장하라(노르웨이, CRC/C15/Add.263, para. 22)."

#### “인도적(Humane)

“인도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이라는 말의 격을 높이고 의미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불법이민자이나 그 자녀들은 초청국 국적을 획득할 경우에, 비록 아동과 함께 부모를 추방하거나 아동을 부모가 불법 이주 한 국가에 함께 체제하게 하거나 두 경우 모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고는 하여도 부모를 추방하는 것보다 가족 모두가 그 국가에 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인도적이다.

위원회는 호주의 서류 없이 여행하는 아동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임시보호비자가 허가된 아동(어떠한 여행 서류 없이 입국한 아동)은 가족재결합 권리가 없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이나 그의 가족구성원이 임시보호 또는 임시 인도적 비자의 소지자일 경우 가족재결합 허가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호주, CRC/C/15/Add.268, paras. 63, 64)."

결정을 위한 절차 또한 인도적이어야 한다. 이민과정이 아동의 존엄성을 포함하여, 신청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수용소에서의 대우는 신청자를 증명하기 위해 당국에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비인도적일 수 있다. 위



위원회는 신청자의 아동이 호텔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들의 특별한 욕구가 고려되지 않음을 지적하는 제 10조와 제 37조(자유 박탈) 사이의 연계를 강조하여 왔다. 아동은 그들의 건강(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골절 엑스레이 같은)이나 심리적 복리(정신적 충격을 주는 심문)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조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아동 자신이나 적절한 부모의 동의 없이 의료적 검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위원회의 “출신국 외에서 동반자 없이 분리된 아동들의 처우(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에 대한 일반논평 No.6는 가족재결합을 보장하는 것이 난민 아동을 위태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출신국에서의 가족 재결합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그러므로 가령 난민 신분이 출신국으로의 귀환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곳에서의 가족 재결합에 법적인 장애를 야기 시킨다 하여도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위배할지도 모를 “정당한 위험”이 있을 경우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출신국가에서 상황이 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을 포함하고 예를 들어 일반화된 폭력의 무차별적 결과에 영향을 받는 아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향후 분리의 결과를 포함하여 그와 같은 위험에 충분한 배려가 주어져야하고 다른 권리를 중심으로 한 고려 사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의 생존은 다른 어떠한 권리보다 우선적이어야 하며 필수조건이라는 점이 상기되어야 한다. 출신국가에서 가족재결합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이것이 귀환에 대한 법적 장애에 기인하는지 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귀환을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든 지에 상관없이, 협약의 제9조와 10조 상의 의무는 효력을 지니며 그 안에서 가족재결합에 대한 초청국의 결정을 좌우하여야 한다(일반논평 No.6, 2005, CRC/GC/2005/6, paras. 82, 83).”*

### “신속한(Expeditious)”

아동에 관련된 모든 사법 및 행정 절차는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체와 불확실성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인

생의 어떤 시기는 성인의 삶에서보다 아동의 삶에서 심각하게 “더 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민의 경우에 지체는 아동의 기회를 망칠 수 있다 - 예를 들어 일부 아동들은 입국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18세라는 결정적 연령을 초과한다. 위원회는 핀란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동반자 없는 아동의 신청 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의 상당한 감소를 환영한 반면, 가족재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게 남아있다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였다(핀란드, CRC/C/15/Add.273, para. 49)."*

그리고 위원회는 스페인의 가족재결합에 있어서의 지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특히 외교통상부에 의해 필요한 비자와 여행 서류의 발급을 위하여(스페인, CRC/15/ Add.185, para. 34)"*

캐나다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면서, 위원회는 난민과 이주아동의 지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많은 난민과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수년간에 걸친 캐나다의 노력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무차별의 원칙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의 원칙이 난민이나 이주 아동의 상황을 다루는 행정조직에 의해 항상 적절한 비중이 주어지지 않아왔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특히 긍정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재결합을 목적으로 한 충분하지 못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특히 난민이나 캐나다에서 출생한 이주 아동이 추방명령에 직면한 부모로부터 분리될지도 모를 경우뿐만 아니라 캐나다 내에서 가족 중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가족원이 난민 신분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가족 재결합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지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권고하였다.

*"...당사국은 추방절차를 포함하여 난민 및 이주아동의 보호에 관련한 모든 면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견해 존중이라는 협약의 일반적 원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가족원이 캐나다에서 난*

민 신분 자격이 있다고 간주된 경우의 가족재결합을 촉진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해결책은 가족 분리의 원인이 되는 추방을 막기 위해 협약 제9조의 정신 안에서 모색되어야 한다(캐나다, CRC/C/15/Add.37, paras. 13, 24)"

위원회가 캐나다의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 캐나다가 이민 절차에 있어서의 아동의 상황에 다소의 개선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캐나다의 미흡한 가족재결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캐나다, CRC/C/15/Add.215, para. 46; p.126 참조).

위원회는 또한 가족 재결합에 필요한 외국 아동에 대한 독일의 절차와 처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보호시설을 찾는 난민 상황에 있는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권리의 범위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보호시설을 찾는 아동을 관할하는 절차, 특히 가족재결합, 안전한 제3국으로 아동의 추방 및 "공항 규칙"에 관련된 아동은 우려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특히 협약 2, 3, 12, 22 및 37조 4항에 규정된 보장이 배치되지 않을 것과 동시에 협약 9조 및 10조의 이행 보장에 있어서의 불충분한 관심을 지적한다.

"위원회는 보호시설을 찾는 난민아동의 문제는 협약과 위원회의 심의 중에 표현된 관심을 고려하여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의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이런 절차에서 또한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격려했다 (CRC/C/15/Add.43, paras. 19, 33, 29). ("공항 규칙"은 비자나 입국 허가 없이 여행한 승객을 허가한 회사에게 벌칙을 가한 규정과 관련된다.) 독일의 제2차 국가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가족재결합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표명하였다(독일, CRC/C/15/Add.226, para. 54).

## 가족원 누구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 를 얻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입국 또는 출국 신청이 신청자나 신청자의 가족이 기소되거나 차별을 받게 되는 국가에 관련된다. 그와 같은 처우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분명한 인권 침해다. 신청 행위는 신청이 거절 된다 할지라도 절대 신청자를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에는 아동을 받아드리는 국가는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에게 무분별한 조사로 인해 부주의하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호는 위험한 방법으로 비밀 준수의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 부모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양친과 정기적으로 시적관계 유지 및 직접 면접을 지속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예외 상황 제외)

국제아동착취유인에 관한 시민적 측면의 헤이그협약(1980)은 헤이그 협약 국가들에 있어서 부모의 접근권(접촉 또는 방문권)을 위한 법원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협약 제11조 참조). 그러나 외국에서 접근 권리상의 문제를 가진 모든 부모가 법원명령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세계의 약 1/3 에 해당하는 국가가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가입했다. 이와 같은 아동의 권리는 당사국이 접근을 위한 권리 신청과 접촉을 시도하기 위한 출입국 신청 둘다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난민 신분의 아동이 가족 방문을 위해 출신 국으로 귀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시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안전한 임시 방문을 체계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일시적 가족재결합의 목적을 위해 귀가하는 아동의 증명은 그들의 난민 지위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 “국가적 안전보장,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이나 타인의 권리와 자유 및 이 협약에 일치하는 제반 권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제한 만을 전제로 한 어떤 국가(자국을 포함함)를 떠나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

이 규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2항에 내포된 표현을

반영한다. 누구나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나라를 떠나는데 있어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구소련 연방 내 다수 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국민이 국가를 떠나는 것을 허가함에 있어 부당하게 거부했던 시기에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부당한 거부는 현재에도 특정 국가에 여전히 남아있다.

프랑스의 *ordre public* 이란 용어는 다수의 국제협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공공질서(public order)”라는 용어 보다 더 정확하다고 알려지고 있지만(E/CN.4/1986/39, pp.5~8; Detrick, p.200), 현재는 세계 여러 곳에서 *ordre public*에 대한 해석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일부의 해석은 “공공질서”라는 용어에 의해 대체로 이해되던 사회적 문제보다는 경제적 문제에 더 관련되어 있다.

### “자국에 입국하는” 이동과 부모의 권리

이 권리는 어떤 규제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 초기 초안은 아동에게 자신의 나라로 “귀환할” 권리가 주어질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것은 아동이 자신 국적의 국가가 아닌 아동이 태어난 국가의 상황에 적응시키기 위해 “입국”이란 말로 바뀌었다(E/CN.4/1986/39, pp.5~8; Detrick, p.201). 시민,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2조 4항이 출처이다. “누구도 자신의 나라로 입국할 권리가 독단적으로 박탈되지 않아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있어서의 이 권리와 관련된 행동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을 냈으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의 권리는 그 국가에 대한 그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인증한다. 그 권리는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 “자국”의 범위는 “그의 국적이 있는 국가”라는 개념보다 더 광범위하다. 그것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출생 시 또는 수여에 의해 획득된 국적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주어진 국가에 관련된 적어도 특별한 유대나 청구 때문에 개인이 단순한 이방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27, 1999, HRI/ GEN/1/Rev.8, paras. 19, 20, p.217).”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10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의 책임 부서와 기관의 확인과 협력이 이루어지는가?(제10조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관련됨)
- 관련된 비정부기구/시민사회단체의 확인?
- 관할권내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아동을 위해 모든 법률, 정책과 실무가 제10조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검토가 이루어지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필요한 경우 어떤 것이 과정의 목표와 지표에 포함되는가?
  - 어떤 것이 아동권리에 보다 중요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어떤 것이 다른 관련 국제기준을 인정하는가?
  - 필요한 경우 어떤 것이 국제협력을 포함하는가?
- (그와 같은 조치는 전체적인 협약이행을 위한 정부의 전반적 정책의 일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필요 자원의 예산분석과 할당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제도의 개발
  - 성인과 아동에게 제10조의 이행에 대한 홍보
  - 적절한 교육과 인식제고의 개발(제10조와 관련하여, 사법관리, 이민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주로 포함됨)

### ● 제10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가족 재결합의 목적으로 국가로의 출입국을 위한 부모나 아동에 의한 모든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처리되는가?

- 긍정적 방법
- 인도적 방법
- 그런 모든 신청은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되는가?
- 이런 신청에 관련된 아동과 가족은 존중을 받는가?
- 부모나 아동에 의한 추방되지 아니할 요청은 긍정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 되는가?

- 국가는 그 국가의 거주자이지만 국적 신분 또는 체류를 위한 공적 허가증이 없는 아동의 가족재결합에의 권리를 승인 하는가?
- 가족재결합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가?
- 신청자와 그들 가족원들은 가족재결합의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 입국 또는 출국요청을 함에 있어 불리한 결과로부터 보호되는가?
- 아동은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입국 또는 출국이 허용되는가?
- 부모는 자녀를 방문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입국 또는 출국이 허용되는가?
- 제10조 (2)항에 열거된 제외 대상을 전제로, 부모와 아동은 해당 국가를 출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 부모와 아동은 항상 자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 국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하였는가?

###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10조는 따로 분리하여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 일반원칙

제2조: 관할권 내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 없이 각각의 아동에게 승인되어져야 할 모든 권리

제3조(1): 아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우선적 고려가 되어야 할 아동의 최선의 이익

제6조: 생명권과 최대한의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제12조: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 존중;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상 또는 행정적 절차에 대해 의견을 제기 할 수 있는 기회

####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들

제10조의 이행과 관련된 조항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제5조: 부모의 의무와 권리와 아동의 능력 발달

제7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

제8조: 가족 관계를 포함한 신분의 유지

제9조: 최선의 이익이 필요할 경우 외에는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제11조: 해외로부터의 불법 송환과 미귀환으로부터의 보호

제16조: 사생활, 가족과 가정에서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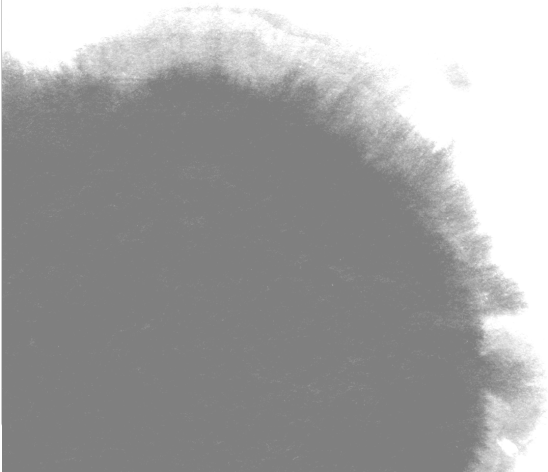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제18조: 공동책임이 있는 부모

제22조: 난민 아동

제35조: 아동 매매, 거래와 약취유인 예방



제1조 불법해외이송 및 미귀환





## 제11조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1.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combat the illicit transfer and non-return of children abroad.
  2.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conclusion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ccession to existing agreements.
-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 요약

비준국기들은 협약 제11조 하에 부당한 대우나 그들의 관할권 밖에 계속 놓아두는 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약취유인 된 아동을 회복시키며 그들의 관할권내로 데려온 아동들을 귀환 시켜야 할 책임을 진다.

제11조는 부모의 약취유인이나 데리고 있는 것에 우선적 관심을 갖는다. 비록 제11조가 범위에 있어서 부모 아닌 이들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아동의 거래, 매춘, 포르노에 대한 아동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협약 제35조가 아동의 거래, 매매, 약취유인을 포함한다는 사실이 특기되어야 한다. 두 조항의 차이가 당장은 분명하지 않으나, ‘불법해외이송 및 미귀환’은 ‘약취유인’(아동이 자의적이고 강제적 힘에 의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과 동일하다. 광의적으로 말하면 이 두 조항의 차이는 첫째로 제11조는 금전적 이득 보다는 부모나 친척에 의한 사적 이유에 의한 약취유인인 반면에, ‘매매’ 와 ‘거래’는 상업적 혹은 성적 동기에 의한 것이

라는 데 있다. 둘째로 협약 제11조는 출신국 밖으로 송치되는 아동들에 전적으로 관심을 둔 반면에 제35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년 인권보고 매뉴얼(The Manual on Human Rights Reporting, 1997)은 " 아동들은 부모 중 한쪽에 의해 유괴될 수 있으며 대체로 귀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동이 함께 살았거나 정기적으로 면접했거나 사적인 관계를 가져온 부모에 영구적으로 접근을 금지하는 경향이 있다. (협약 제9조 3항, 제10조 2항 참조) 그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며 일반적 원칙으로서 비록 별거나 이혼의 상태라 할지라도 친부모 양쪽이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책임을 계속하여 떠맡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11조는 국가가 다자간 합의를 하거나 당사자가 될 것을 권면한다. 이와 같은 합의 가운데 첫 번째가 국제 아동약취유인의 시민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이다.

#### **비준이나 정식 승인의 결과로서(2007년 7월 현재) 국제 아동약취유인의 시민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 적용되는 국가**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특별행정지역과 마카오 특별행정지역, 컬럼비아, 코스타리카,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마케도니아전유고연맹, 트리니다드 토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 국외로의 이동 불법 송출 및 미귀환 이동에 대한 조치

제11조에서 인정 된 바와 같이, 이 규정의 가장 효과적인 이행 수단의 하나는 국제아동약취유인의 시민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1980)과 같은 적절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알제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부모 중 한쪽이 해외에 살고 있는 알제리 아동을 위한 보호감독과 방문에 관한 판결 이행의 어려움에 대하여. 위원회는 아동약취유인이 특히 다인종간 결혼 부부의 자녀들에 매우 흔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불법해외 이송과 미귀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호감독과 방문의 권리에 관한 적절하고 신속한 판결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보호감독이나 방문의 권리 협정서에 서명하고 1980년 국제아동약취유인의 시민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관련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알제리, CRC/C/15/Add. paras 48, 49)."*

헤이그 협약은 전 세계적 법률문서이다. 협약 작성 당시 비록 중동 및 극동지역 국가들이 불참하였지만 다수의 국가들(네모안의 국가들)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요약하면 협약의 규정들은 만일 헤이그 협약이 관련된 양국 간에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부당하게(즉 누군가의 보호감독 권리에 위반하여) 해외로 이송되거나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16세 이하 아동들을 보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아동의 미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낄 경우 아동이 살았던 국가로 시급히 귀환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만일 아동이 반대하거나, 중대한 위협에 처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주하는데 상당기간이 요하는 경우 법원은 그 명령을 거부 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원의 업무는 소송의 사안 본래의 시비에 대한 분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헤이그 협약에 대해 각 당사국은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이라고 명명된 행정기관을 설치하며, 중앙당국의 기능은 협약에 따라 신청서를 주고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헤이그 협약에 부가하여, 국제아동 귀환에 관한 미주 간 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turn of Children), 아동보호감독에 관한 승인 및 결정 집행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Concerning Custody of Children) 등과 같은 협약들이 있다. 이런 협약들은 예를 들어 기존의 법정 명령서의 세칙을 강화함으로써 헤이그 협약의 원칙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몇몇 국가들은 헤이그 협약 가입국에 완전하게 가맹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은 특정 국가들에 관련 있는 규정에만 가입하였다.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라도 양국 사이에 양자협약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위원회는 모리셔스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다.

*"국제아동약취유인의 시민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당사국에 의한 협약 서명과 협약 서명에 이은 국내 입법화를 언급하는 반면에,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에 가입하면 협약에 대한 당사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의 공식적 승인을 신속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는 국제아동약취유인의 경우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저지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헤이그 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1조 및 3조에 따른 유괴된 아동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협약 당사국으로서 동일한 헤이그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모리셔스, CRC/C/MUS/Co/2, paras. 39, 40a)."*

**보호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대책의 존중에 관할, 적용 법률, 인정, 집행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2007년 7월 현재 아래 국가들이 위 협약에 비준하였다: 호주,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모나코, 모로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래 국가들은 2007년 7월 현재 협약에 가입하였다: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이에 부가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부모의 책임과 법안에 관한 관할권내의 헤이그협약, 적용 가능한 법, 협정서, 강화와 협력(1996)이 2002년에 발효되었다(위의 표 참조). 이 협약은 직접적으로 부모에 의한 약취유인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양

국사이의 주거를 이동한 아동의 친권과 보호감독권을 가지는지, 어느 국가가 아동을 대신하여 사법권을 발동할 것인지(예를 들어, 아동의 주 거주지가 있는 국가와 아동의 국적이 있는 국가 사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이 협약에 비준할 것을 또한 권장한다.

국제 협약들을 비준하고, 다른 국가들까지 관련 협약에 비준하도록 돕는 것을 넘어, 당사국은 제11조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수단들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 사항들을 확보해야 한다.

- 아동이 유괴될 것이라고 의심될 경우, 국경에서 조속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법원 명령(예를 들어, 아동의 여권을 압수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 아동의 귀환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부모에게 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제공해야 한다.
- 외교관과 영사관 당국자들과 사법부는 헤이그 협약의 원칙들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유괴 또는 부당하게 이송된 아동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정부 기관이나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캐나다에 아래 사항을 언급하였다.

*"위원회는 캐나다가 국제아동약취유인의 시민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1980)에 가입한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캐나다 내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의 약취유인이 심각한 하나의 점증되는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언급 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캐나다의 모든 유괴된 아동들에게 헤이그 협약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당사국이 아직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필요하다면 국제 아동 약취유인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영사적인 통로를 통해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스웨덴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불법이송이나 미귀환 아동의 귀환 시에는 개인에 의해 발생한 경비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스웨덴, CRC/C/15/Add.248, para. 27).

그리고 위원회는 크로아티아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불법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적절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며 외교적·영사적 통로를 통한 최대한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크로아티아, CRC/C/15/Add.243, para. 46)."

약취유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지역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협약 11조를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들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비교적 침묵을 지켜왔다.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11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모든 정부 수준의 책임 있는 부서와 기관의 확인과 협력을 받는가?  
(협약11조의 유관 부서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 관련 비정부기구나 시민협력단체의 확인을 받는가?
- 모든 법, 정책, 업무절차가 관할 지역 내의 모든 아동들을 위하여 협약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검토를 하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필요한 경우 목표의 확인과 향상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가?
- 아동의 권리를 보다 통제하는 어떤 규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
- 기타 관련 국제 기준을 인정 하는가?
-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을 포함하는가?

(그와 같은 조치는 총괄적으로 협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정부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예산 분석과 필요한 자원의 할당
-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의 개발
- 협약 11조의 이행을 성인과 아동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는가?
- 적합한 훈련과 인식의 개발은? (협약11조에 관련하여 주로 사법관, 사회복지사, 출입국 관리담당관, 경찰이 주로 포함됨.)

### ● 제11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국제아동약취유인의 시민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비준했는가?
- 국가는 부모의 책임과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련한 관할권, 적용 가능한 법, 승인, 강화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 했는가?
- 국가는 아동약취유인에 관한 지역 또는 양자협정을 비준 또는 가입 했는가?
- 사법 관리는 헤이그 협약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 약취유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예를 들어 출입국 감독, 법원 명령, 여권 압수)

필요한 경우 협약 11조와 다자간협정 하에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부모와 아동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가?

국가기관은 유괴된 아동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가?

###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11조는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 일반원칙

제2조: 어떤 배경에도 차별을 함이 없이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을 위한 모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제3조 1항: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생명, 최대한도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

제12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 존중;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의 진술의 기회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11조의 이행과 이하 조항들의 이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5조: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 및 의무와 아동의 능력 발달

제7조: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

제8조: 가족관계를 포함한 국적을 유지할 권리

제9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

제10조: 가족이 재결합 할 수 있는 권리

제16조: 사생활, 가족, 가정에 있어서의 자의적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제18조: 쌍방의 책임을 지는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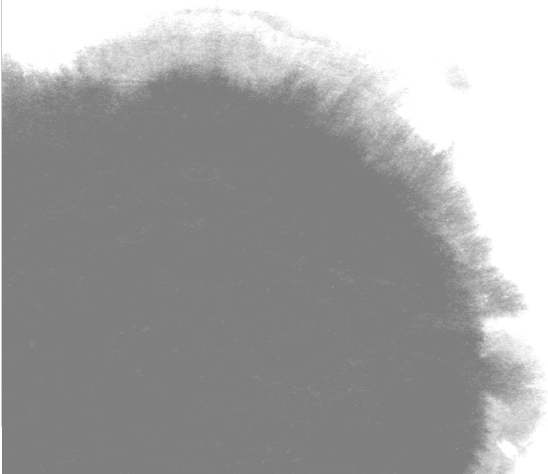
제35조: 아동의 거래, 매매, 약취유인의 예방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12

K  
I  
H  
A  
S  
A

제2조 이동의 관점 존중





## 제12조 아동의 관점 존중

1. States Parties shall assure to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2. For this purpose, the child shall in particular b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be heard in an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fecting the child, either directly, or through a representative or an appropriate bod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law.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지야 한다.

### 요약

아동권리위원회는 일찍이 협약 제12조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기본원칙으로서, 아동 권리협약 이행의 모든 측면과 다른 모든 조항의 해석에 관련된다고 주장했다.

협약 12조 1항은 당사국이 다음 사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
-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소에 따라 상당한 비중을 부여
  - 연령
  - 성숙도

협약 12조 2항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진술할 권리와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될 권리를 아동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광범한 법원 청문은 물론 예를 들어 교육, 보건, 기획, 환경 기타 등등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식 의사결정에 대한 규정이다.

위원회는 아동을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서 볼 것과 아동협정의 주요 목적이 인권이 아동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아동의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같은 다른 시민적 권리(제14조), 그리고 결사의 자유(제15조)와 함께 협약 제12조는 기본권과 스스로의 견해와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아동의 지위에 초석이 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말하는 바 아동문제에 대한 “선심 쓰는 심리와 온정주의적 접근법”을 배척하였다. 위원회는 어김없이 당사국에 협약 제12조 이행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장애요인으로서 전통 관행과 문화 및 자세를 지적하고 있다. 2006년 위원회는 “아동의 진술권”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행사를 거행하고 일반권고(2007년 당시 준비 중)의 채택을 결의하였다. 이 일반권고의 첫 10개 조항은 각기 특별한 상황에서 제12조의 이행에 관한 해설로 이뤄졌다.

협약 제12조 상의 2개항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에의 관여에 관한 것이다. 협약 제5조 및 14조에 규정된 아동의 “능력발달”에 관한 언급은 의사결정에 있어 아동의 능력발달에 대한 존중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협약의 다른 조항은 아동의 참여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 제 9조 2항은 간접적으로 아동의 부모로부터의 격리절차와 관련하여 아동의 진술권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 절차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는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제9조).”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제21조 a는 이해관계자의 “분별 있는 승낙”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누구나 제37조에 의하여 법원 기타 당국에 자유박탈의 적법성을 다룰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바, 이는 단순

진술권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또한 제40조는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및 유죄 판결자”와 관련하여 아동이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되, 형사절차에서 청소년 피의자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협정 제40조 (2)(b)(iv)).

세계인권선언은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규약 제19조 1항).”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의미는 아동이 스스로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보장될 것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진술할 권리와 아동의 견해에 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권리의 주체와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아동

2006년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는데, 그 전문에서 권고안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위원회가 협약 제12조의 해석에 관한 일반논평을 이내 기초하되 그 내용에서는 다음 사항을 강조할 것임을 내비쳤다.

*“실체적 권리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원칙으로서 제12조의 중요성과 이 조항의 아동권리협약 상의 여타 조항과의 연계문제 그리고 아동협약 이행에 관한 지침 제공 등이다. 일반논평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 권리가 일관성 있게 이행될 것인지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권고안에 대한 전문에서 위원회는 기술하고 있다.

*“아동이 스스로의 능력발달에 따라 견해를 발표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해당아동, 가족, 공동체, 학교,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것으로 위원회는 생각한다.

"발언하고 참여하고 자신의 견해가 고려되도록 하는 것: 이 3단계는 참여하는 권리의 향유순서를 기능적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 권리의 새로운 깊은 함의는 이것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 계약에서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일에 참여할 권리의 주체로서 완전히 인정받는 것인데, 이 권리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정을 상징하는 권리로 봐도 좋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 사회, 제도 및 문화구조의 변혁을 뜻하는 것이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전문. 완전한 내용은 [www.ohchr.org/english/bodies/crc/discussion.htm](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discussion.htm) 참조)."

위원회는 권리보유자로서 아동의 인정과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서 협약 제12조의 이행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아동에 대한 전통적 문화적 태도를 들고 있다. 위원회는 친 아동 참여적 사회분위기 고양을 호소하고 있다(권고안 9항).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결론에서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이 나라에 아직 널리 퍼져있는 전통적 및 가부장적 태도 때문에 아동이 스스로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정, 학교, 공동체 그리고 사회일반의 환경에서 아동의 견해가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서 진술되지도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지도 못하는 상황을 우려를 갖고 유의한다 (칠레, CRC/C/15/Add.173, para. 29)."

"어린이 국회의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위원회는 전통적 태도로 인하여, 아동의 관점에 대한 존중이 가정이나, 학교, 행정심판절차 및 사회 일반에서 제한적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브루키나파소 CRC/C/15/Add.193, para. 26)."

"위원회는 어린이 국회의 설립과 어린이 시의회 모델 개발을 환영하면서도,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이 학교, 법원, 행정당국 그리고 특히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전통 사회적 태도 때문에 높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려한다...(모로코, CRC/C/15/Add.211, para. 30)."



"위원회는 몇몇 주와 지역에서 어린이 의회, 단체 및 프로젝트를 설립함으로써 아동의 참여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환영하면서, 사회에서 아동, 특히 여아에 대한 전통적 태도로 인해 가정, 학교, 각종 기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이 낮다는 사실에 우려한다...(인도, CRC/C/15/Add.228, para. 36)."

"알제리 헌법 제36조 및 38조가 지적, 예술적 및 과학적 창조의 자유와 함께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는 데 대해 유의하면서도,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사회 전반에서 아동에 대한 전통적 태도 때문에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아동에 의한 견해와 표현자유의 공개적 행사는 아동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데 특별한 우려를 표한다(알제리, CRC/C/15/Add 269, para. 33)."

"위원회는 아동견해에 대한 존중을 고양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하지만, 사회에는 아동의 견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는 일반적 분위기가 엄존한다(헝가리, CRC/C/HUN/CO/2, para. 24)."

"위원회의 견해로 당사국에는 아직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이 제한적인 바, 이는 부분적으로 전통적 태도에 기인한다(탄자니아, CRC/C/TZA/CO/2, para. 29)."

1997년의 *The Manual on Human Rights Reporting* 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아동권리협약의 근본가치 중 하나이자 아마도 협약의 근본적 애로사항의 하나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아동이 스스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에서 견해를 표현하고 이 견해가 경청되고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을 권리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은 자신에 관해 택해진 결정에 영향을 끼칠 권리는 물론 자신의 삶에 끼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언뜻 보면 협약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13조와 마찬가지로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두 조항이 밀접히 연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규정 모두 협약에 포함되고 각각 독립적으로 공존한다는 사실은, 제1조가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반면, 제12조는 아동의 경청 받을 권리와 아동의 견해가 고려될 권리를 강조하면서 아동에 관련되는 모든 상황을 지배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서에 대한 검토 때마다 위원회는 줄곧 제12조의 이행을 위해 법 개정과 국민의 교육 훈련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기관설립을 권장한다, 정기보고지침(2005년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 단체와 조직의 숫자와 이들 조직의 조직원 수 그리고 독립적 학생회가 있는 학교의 수에 대한 자료제공을 각국에 요청하고 있다 (CRC/C/58/Rev. 1, Annex, paras. 6, 7). 위원회는 각국에 제12조 이행사항의 점검과 정책개발에 아동의 견해가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촉구한다. 사례를 보자.

*"위원회는 아동견해 존중원칙의 이행이 보장되도록 추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아동의 견해에 문제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는 가운데, 모든 아동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자유로이 스스로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일반원칙은 아동관련 모든 법, 사법적 행정적 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하고, 가정, 학교, 공동체 및 아동이 참석하거나 아동과 일하는 모든 기관에서 실행되어야 한다(헝가리, CRC/C/HUN/CO/2, para. 25).*

*"협약 제12조에 비춰,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아동이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자유로이 스스로의 견해를 피력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 권리에 가정은 물론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정당한 비중이 부여받으며, 서로 다른 사회적 지역적 배경을 가진 학생간의 참여기회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할 것.*
- (b) 지역사회에 부모, 교사 및 기타 아동관련 사업 전문가에 대한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에게 올바른 정보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분별 있는 견해와 의견을 표현하도록 장려할 것.*
- (c)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 행정 절차에도 아동에게 진술할 기회가 제공되고 해당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이들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도록 보장할 것.*
- (d) 교육개혁을 포함하여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아동기구의 효과적 참여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것.*
- (e) 차기 정기보고 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리트비아,*

CRC/C/LVA/CO/2, para. 25)."

"협약 제12조에 비춰 아동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가정, 학교 기타 기관에서 아동 특히 여아의 견해를 존중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아동의 참여를 돕는 노력을 강화할 것.
- (b) 민사절차법을 개정하여 아동이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c) 아동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전통적 태도를 바꾸기 위해 전국적 의식고양 운동을 강화할 것
- (d) 국가 및 지방적 차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 개발 및 평가에 아동의 참여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아동의 견해가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멕시코, CRC/C/MEX/CO/3, para. 28)"

위원회는 법에 아동의 권리가 경청되고 이들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도록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알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위원회는 프랑스가 아동의 견해존중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조장하도록 촉구하였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권리로서 아동에게 알려줄 것(프랑스, CRC/C/15/Add.240, para. 22)."

위원회는 아이슬란드에 암시하였다.

"...아동이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법 또는 자신의 표현이 어떻게 고려될 것인가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아이슬란드, CRC/C/15/Add.203, para. 26)."

그리고 벨기에에 대해 암시하기를,

"...아동이 어떻게 스스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그들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자신들의 견해가 요청받고 고려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벨기에, CRC/C/15/Add.178, para. 21)."

2002년 유엔아동특별회의의 결과물인 “아동이 살기 좋은 세계” 에서 각국은 선언을 통해 다음을 약속하였다. “아동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미래 건설을 도울 재주 많은 시민이다. 각국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물에 참여하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국제연합 총회 27차 특별회의 특별전원위원회보고서, 2002, A/S-27/19/Rev.1, 선언 제7.9항).” 그리고 행동계획은 아동은 핵심 동반자로 규정했다.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에게는 변화해가는 능력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존감을 세우며 생애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해줄 갈등해결,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같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청소년을 포함하는 아동의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는 존중되고 촉진되어야 하며, 아동의 견해가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는 가운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에너지와 창조성은 이들이 그들의 환경, 사회 그리고 자신들이 물려받을 세계를 형성하는데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하는 불리한 입장에 선 한계아동은 기본적 서비스를 받고, 자존감을 세우며 스스로의 삶을 위해 책임지도록 자신들을 준비시켜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이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지방과 전국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진력하고자 한다(행동계획, A/S-27/19/Rev.1, para. (1)).

## 유보

아동권리위원회는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을 완전히 인정하는데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각종선언과 유보조치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채택된 권고문에서,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촉구했다.

*“...협약 제12조, 13조, 14조, 15조 및 17조의 적용을 유보한 당사국들은 이의 철회를 고려해줄 것(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 14). "

예를 들어 협약을 비준하면서 폴란드는 선언했다. "폴란드는 가정 내외에서 아동의 지위와 관련된 폴란드의 습관과 전통에 따라, 협약에 규정된 아동권리 특히 제12조에서 제16조에 이르는 조항에서 규정된 아동권리는, 부모의 권한과 관련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CRC/C/2/Rev. 8 p.36)."

위원회는 자국의 선언과 유보의 철회를 염두에 두고, 이를 재검토하려는 폴란드의 의도를 환영하였다. 위원회는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아직 당사국에 만연된 전통적 태도가 협약 일반원칙의 실현, 특히 제2조(차별금지 원칙), 제3조(최선의 아동이익) 및 12조(아동의 견해 존중)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임에 우려하고 있다(폴란드, CRC/C/15/Add.31, para. 12)."

위원회가 2002년 폴란드의 제2차 보고서를 검토할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에 대한 모든 유보조항과 특별선언을 철회하는 것을 "계속해서 완수하도록" 촉구하였다(폴란드 CRC/C/15/Add.194, paras. 9, 10).

### **"스스로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 협약 제12조 1항**

협약 제12조는 자유로이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하한 연령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아동이 아주 어린 나이에 견해를 형성할 수 있고 또 형성한다는 것은 명백하며,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견해 확인이나 고려에 연령하한선을 두려는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어린 아동의 이동권리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에 어린 아동의 권리를 위한 적극적 의제형성을 장려하고 있다.

"어린 아동기를 미성숙 인간이 성인이 되는 사회화 과정으로서만 보는 전통적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정은 아주 어린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은 타고난 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어린 아동은 스스로의 관심, 이해 그리고 관점을 가진 한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 1, para. 5)."

1997년 판 *The Manual on Human Rights Reporting* 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당사국들은 아동에게 아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에 발언권을 보장할 명백하고 엄밀한 의무를 갖게 되었다. 아동은 따라서 스스로의 의사형성 능력이 명백한 결함이 없는 한 수동적 인간으로 간주되거나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권리는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는 있으나 표현을 못하거나, 또는 아동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거나 특정 연령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의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고려되기 때문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아동의 견해 존중권을 얻기 위한 최소연령을, 예를 들어 부모의 별거나 이혼에 따른 양육권 결정절차 같은 경우, 설정했다고 보고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이를 전혀 지지하지 않으며, 당사국들은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을 들어 아동의 견해표현 기회를 막을 수 없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핀란드에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위원회는 특히 12세 이하 아동의 의견이, 양육권 사건이나 접근권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었을 경우 언제나 완전한 고려되지 못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12세 미만 아동의 견해가, 해당 아동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나 경청되도록 보장할 것과 이 과정이 아동에게 우호적 환경에서 이뤄지게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 및 정책결정, 사법적 결정, 프로그램 이행과 아동 자신에 미치는 아동견해의 영향을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핀란드, CRC/C/15/Add.132, paras. 29, 30)."

핀란드의 제3차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 위원회는 추가로 언급했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양육권 또는 아동보호조치와 같은 법적절차에 있어서 아동청문규칙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그러나 15세 이상의 아동만 법관/법원에 대한

진술권이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그 연령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직접 진술을 청취할지 여부가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직접청취 절차가 빠지고 아동의 견해가 제3자를 통하여 법원에 제출되면, 그 제3자는 아동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법 기타 조치를 취해서 아동헌장 제12조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할 것을, 특히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내려질 때는 아동이 법관에게 바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핀란드, CRC/C/15/Add.272, paras. 22, 23)."

위원회는 리투아니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아동의 변화해가는 능력에 맞춰 12세 미만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장려할 것...(리투아니아 CRC/C/LTU/CO/2, para. 32 (C))."

또 알바니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것을 격려했다.

"부모, 교사, 학교장, 정부행정공직자, 사법부, 아동자신 및 사회전반에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10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이 스스로의 견해를 표명하고 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알바니아, CRC/C/125/Add.249, para. 31)."

###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

당사국이 아동에게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에는 그 한계가 없다. 이는 특히 아동의 견해가 무시되는 - 예를 들어 가정이나 학교 - 전통적인 부모나 성인의 권위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협약 제13조에는 이 권리가 재론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권리로 한 걸음 더 발전하였다.

협약 제12조가 아동에게 견해를 표시할 의무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자유롭게”라는 말은 강제나 제한이 없다는 뜻인바, “아동은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아동은 이러한 표시를 막거나 이를 요구할 어떠한 압력, 제한 또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인권보고 매뉴얼, 1997 p.426).”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정, 공동체,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 의사결정에서 아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 아동의 견해를 표시하는 권리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아동권리협약을 기초하는 실무자 그룹에서 처음 거론되었을 때 초안은 아동의 “자신의 신상, 특히 결혼, 직업선택, 의학치료, 교육 및 오락에 관계되는 일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로 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표가 당사국들이 아동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사안에는 “열거되는 사항에 한정될 것이 아니며 따라서 특정사안을 나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E/CN.4/1349 p.3 and E/CN.4/L.1575 pp.13~4).

“모든 문제”라는 말은 참여하는 권리가 협약에 특별히 다룬 문제에 한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1997년의 *The Manual on Human Rights Reporting* 은 밝히고 있다. 협약 제12조에서 인정된 권리는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보장된다. 이는, 같은 문제가 아동에게 특정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동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는 언제나, 이것이 협약에 구체적으로 다루이지 않았어도 모든 문제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아동이 견해를 표시할 권리는 따라서 예를 들어 입양 같은 가정문제, 아동의 퇴학이 논의되는 학교생활, 또는 아동을 위한 놀이터 위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거나 교통 사고 예방이 논의되는 것과 같은 공동체 수준에서 벌어지는 유관 사항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따라서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견해가 관련 요인이 되는 것을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아동의 개입이 없으면 아동권리의 이행이 이뤄진 것이 아니며 효과도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정 일반이행조치(제4조, 42조 및 제44조 6항)”에 관한 일반논평 No.5에서 위원회는 제12조의 원칙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제12조는 아동권리의 진흥, 보호 및 모니터링에 있어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아동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동원하는 모든 수단에 동등하게 적용된다(CRC/GC/2003/5, para. 2).”



## 어린 아동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

“제12조는 아동에게 본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와 이들 견해가 고려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권리는 자신의 권리를 증진, 보호 및 모니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아동의 지위를 든든히 하고 있다. 가정, 공동체 및 사회에서 참여자로서의 아동의 활동에 대한 존중이 자주 간과되거나 연령이나 성숙도를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거부당한다. 수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전통적 믿음은 어린 아동의 훈련과 사회화에 대한 필요만을 강조하였다. 아동은 미성숙하고 심지어 이해, 소통,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능력조차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동은 가정에서 힘이 없었고 사회에서는 발언권이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협약 제12조가 어린 아동이나 나이든 아동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강조되기를 바란다. 권리의 보유자로서, 가장 어린 아동도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고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협약 제12조 1항) 아동은 극도로 환경에 민감하고, 자신의 독특한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신의 생활에서 마주치는 사람, 장소, 일상을 아주 재빨리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아동은 말과 글로 의사를 소통하기도 훨씬 전에, 사물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희망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 (a)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견해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권리를 가진 권리의 보유자로서의 아동개념이, 아동의 능력과 최선의 이익 그리고 해로운 경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걸맞게 아주 초기부터 이행되는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 (b)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 가정(가능하다면 대가족도 포함) 및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법적 절차는 물론 모든 어린 아동의 건강, 수용, 교육시설에서, 또한 조사 및 자문을 포함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서 - 아동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 (c) 당사국들은 필요한 기량을 위한 훈련제공을 포함하여 어린 아동이 일상생활의 모든 관련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점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창출을 위해 부모, 전문가 및 책임 있는 당국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성인은 아동중심의 태도를 취해, 어린 아동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존엄과 개별적 관점을 존중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성인은 인내와 창의력을 보여 어린 아동의 관심, 이해수준 그리고 좋아하는 의사소통방식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어린 아동기 아동권리의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14. 전문참조 [www.ohchr.org/bodies/crc/comments.htm](http://www.ohchr.org/bodies/crc/comments.htm))

## “아동견해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

이 표현은 아동견해를 경청하고 이를 비중 있게 받아들인다는 적극적 의무를 부여한다. 거듭, 이 원칙은 제5조에 규정된 아동의 능력발달 개념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정 사안에서 아동의 견해에 얼마의 비중이 주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연령과 성숙도라는 양대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령 자체만으로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아동권리협정은 의사결정에서 비중 있게 참가하기 위한 특정 연령한도의 설정을 거부하고 있다. 성숙도에 대한 정의는 없다. 성숙도란 문제된 사안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암시한다. 이는 또한 의사결정자가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둔다.

##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제12조 2항

아동권리협약의 기초 때 원래 도입될 당시 아동이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는 제안은, 협약 초안 제3조 2항으로서 최선의 이익원칙과 연계가 되어 있었으나, 제12조 전반적인 참여원칙이라는 좀 더 논리적인 자리로 이동되었다(E/CN.4/1989/48, pp.42-5; Detrick, pp.226-7).

단락간의 연계로 볼 때 제12조 2항은 “의견을 형성할 능력 있는” 아동에게 적용되며, 아주 어린 아동도 경청될 공식적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협정은 최저연령의 설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동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은 - 거듭되지만 아동이 견해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 국가가 아동에게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의무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라는 말은 법원이나 기타 절차가 아동의 견해를 단순히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라는 뜻이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도”라는 표현은 매우 광범위한 법

원의 청문을 망라하고 있다. 이는 이혼, 양육권, 보호 및 입양절차, 이름 변경과 같은 민사절차, 거주지 종교 교육 금전의 처분등과 관련된 사법적용이나 국적, 이민 및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법원의 의사결정 그리고 형사절차를 포함한다. 이는 또한 국제 재판소에서 국가당사자의 개입을 포함한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이는 그 결과가 아동에게 극적효과를 미치는 부모의 형사적 처벌도 포함한다.

“행정절차”라는 표현으로 그 범위는 한층 넓어져 예를 들어 교육, 보건, 기획 및 환경에 관한 결정, 사회보장, 아동보호, 대체적 보호, 고용 및 청소년 사범의 처리 등도 포함한다.

“아동권리협약 이행일반조치(제4조, 42조 및 제44조 6항)”에 관한 일반논평 No.5에서 위원회는 권리가 의미를 가지려면 위반이 있을 때 효과적인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요구는 아동권리협약에 은연중 내포되어 있고 다른 여섯 개의 주요 국제인권 조약에서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다. 아동이 특별하고 의존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구제책을 찾는 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과 아동의 대리자에게 효과적이고 아동만을 위한 특별한 절차를 보장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에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충고, 자기변론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변론이 있고 독립적 제소 절차의 허용, 그리고 필요한 법적 조력 등을 받는 법원에의 접근 보장 등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CRC/GC/2003/5, para. 24)."*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안에서 제12조 2항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 아동의 진술권은 제한이 없이 모든 관련된 상황에 적용된다는 것을 환기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 양육권이나 입양사건, 범법아동, 물리적 폭력, 성적 학대 기타 강력범죄의 피해 아동, 망명신청 및 난민 아동 그리고 군사 분쟁이나 비상사태의 희생이 된 아동 등*

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사법 및 행정절차에 연루된 모든 아동이 자신의 진술권, 진행 양식과 기타 절차상의 문제를 아동의 입장에서 제공받아야 함을 엄숙히 선언한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관여된 모든 전문가 집단에 아동헌장 제12조의 의미에 관해 의무적으로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한다. 법관과 기타 의사결정권자들이, 특히 아동의 견해가 수용되지 못했을 때, 절차의 결과에 대해 명백히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특별법률구조단을 만들어 행정 및 사법절차에 연루된 아동에게 질 높은 지원과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 34~36, 38)."

아동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원과 기타 공식 의사결정 기관을 적응시킬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법원의 청문이라면 이것은 법원의 심리적 설계와 법관과 변호사의 제복에서 격식을 줄인다든지 증거에 대한 동영상촬영, 시야차단막의 설치, 별도의 대기실, 아동증인에 대한 특별한 준비와 같은 혁신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제19조 참조). 2005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아동피해자와 범죄의 증인에 관련된 문제의 사법문제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아동의 참여권을 거듭 역설하고 "아동에 민감한" 것에 대한 정의를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에 균형을 맞추고 아동의 개별적 필요와 견해를 고려하는" 접근법이라고 내렸다. 이 지침은 원칙과 "회원국이 형사절차에서 아동 피해자와 아동증인에 대한 보호를 증대시킬" 기본틀을 제공한다(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 부록). 위원회는 지침으로 회원국의 주의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타이에서의 현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아동견해에 대한 존중이 희생자, 증인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아동이 관련된 법원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는 타이에 권고한다.

지침에 맞춰 "아동에 민감하도록 법원 절차를 개선할 것(태국, CRC/C/THA/CO/2, paras. 29, 30)."

위원회는 아동이나 특정연령 미만의 아동이 법원에 제한 없는 접근권을 갖지 못하는 사태에 우려를 표명한다.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안에서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연령이 사법절차에 완전히 참여할 아동의 권리에 장애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 당사국이 아동의 진술권을 가질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했을 경우, 최소 연령 미만의 아동의 견해가 아동의 성숙도에 맞춰 특별히 훈련된 사회사업가 여타 전문가에 의해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아동의 연령이 사법체계와 행정절차에서 구제절차에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s. 51, 52)."*

위원회는 회원국에 연령장벽 문제를 자주 제기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당사국 법에 아동이 “구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실제 해석에서 아동으로부터 이 권리를 부정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동의 요청을 전제로 함으로써 차별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입법상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위원회는 아동 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에 관한 특별검사관이 보고한 결론, 즉 사실상 아동의 증언을 듣지 않으려는 법관이 대부분이며 이제까지 성적 학대의 아동피해자에 대한 사법구제는 실패했다는 데 대해 우려한다(E/CN.4/2004/9/Add.1, paras. 85, 89)."*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견해의 존중과 관련된 일관성 부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자국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프랑스, CRC/C/15/Add.240, paras. 21, 22)."*

*"위원회는 중국에서는 아동이 16세 이상으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의 동의 없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법원의 직접 자문을 구할 수도 없다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유의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중국에서 당사국이 아동관련 입법을 개정하여 아동이 자신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고,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바"*

다...(중국, CRC/C/CHN/CO/2, paras. 37, 40)."

이와 유사하게 위원회는 벨기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유의하였다.

"아동에 영향을 주는 법원 또는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진술할 권리는 대체적으로 자의적이며 아동에게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위원회는 법원과 행정절차에 관한 입법에서 스스로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이 자기의 견해를 표시할 수 있고 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벨기에, CRC/C/15/Add.178, paras. 21, 22)."

칠레의 제2차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건이 범죄, 위법 또는 경범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년법원 법관은 당사자의 출두를 명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보호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칠레, CRC/C/15/Add.173, para. 29)."

위원회는 협약 제12조 2항의 아동권리가 종교법원에도 똑 같이 적용됨을 강조하면서 레바논에서 종교법원과 샤리아법원이 아동의 의견을 묻지 않고 양육권이나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의하였다. 위원회는 레바논에 권고하였다.

"레바논은 종교법원과 샤리아 법원에서의 절차를 포함하여 사법절차에서 모든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아동의 참여를 조장하려는 노력을 계속 강화할 것...(레바논, CRC/C/LBN/CO/3, paras. 35, 36)."

###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아동의 견해가 진술되느냐하는 문제는 당사국의 재량사항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한다고 절차법이 규정하는 한 아동의 견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이 원칙은 최선의 아동이익이 아동에 관련되는 모든 행위의 최대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보장하라는 협약 제3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동권리협약을 기초하는 실무자 그룹 토론 과정에서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라는 구절을 넣는 이유로 제시된 것은 “아동의견의 청취가 어떤 국제적인 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요청국의 절차도 고려되어야한다”는 취지였다 (E/CN.4/1989/48 pp.42-45; Detrick, p.227).

인권보고 매뉴얼 1997년판은 강조하고 있다. “국내법적 절차” 를 삽입한 것은 협약 제 12조에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한 특별절차를 국내법에 포함하라는 요구를 강조하고자 함이었으며, 따라서 국내법 절차에 포함된 불충분한 조치를 이유로 이 기본적인 권리의 완전한 향유의 방지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이러한 해석은 다시 아동협약 제4조에 위반되는 것이다(매뉴얼 p.429).”

### 이의/소송제기 절차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위한 규정이 있어야 협약 제12조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아동은 가정, 대안가정, 학교, 모든 기관 그리고 아동을 위한 편의 및 시설 등 아동의 모든 생활에서 이의제기 절차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자주 아동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의 부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들에 “아동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의 발전을 촉구해왔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상의 아동권리 위반과 관련하여 아동으로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다루는 독립적인 제도의 부재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제도를 만들어 아동에게 개방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침해 문제를 다루고 이러한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기를 제안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인식제고 운동을 벌여 이러한 제도를 아동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도울 것을 제안한다 (세인트키츠네비스, CRC/C/15/Add.104, para. 13)."*

아동권리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촉구하면서 - 아동옴부즈만, 아동위원회, 인권위원회에 아동권리를 다루는 곳 등 - 위원회는 가능하면 이들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제공할 것과 다른 이의제기 절차에서 아동의 접근권 문제를 점검할 것을 촉구해왔다(제4조).

협약 제19조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가정안팎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아동을 위한 신고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동이 부모와는 독립적으로 신고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음에 유의한다.

"위원회는,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성적 학대, 방임 또는 부당 처우에 희생되는 아동은 적절히 의지할 곳이나 신고할 곳이 없다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부모의 보호 하에 있는 경우의 성적 학대, 방임, 불법처우 또는 착취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나 학대에 희생된 어린이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 아동의 보호와 존중이 보장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에티오피아, CRC/C/15/Add.67, paras. 16, 31)."

“장애아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가정과 시설에서 장애아가 겪을 수 있는 폭력과 방임에의 특별한 취약성에 유의하였다. 논평은 신고접수 및 관찰 체제 미흡이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위원회는 각국에 장애아를 보호하는 모든 시설에 접근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신고체제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s. 42, 43).

## 참여권이행전략

### 참여권을 국내법에 반영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제4조, 42조 및 제44조 6항)”에 관한 제5차 일반논평에서 제12조가, 일반원리로 알려진 다른 조항과 함께, 국내법과 국내법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CRC/GC/2003/5, para. 12). 국내법에 제12조의 2개항 모두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이라는 사적영역, 가정 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을 위한 대안시설, 아동의 학교 및 공동체생활 그리고 특별히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 참여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안에서 위원회는



각국에 촉구하고 있다.

"제12조가 모든 관련 국내법, 규정 및 행정지침에 충분히 포함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법과 규정을 점검할 것(아동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 42)"

국가보고서들을 검토해보면 점차 제12조가, 적어도 아동생활의 일부분과 관련된 국내법과 특정 사법절차에 포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원회는 계속 입법개혁이 제12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예를 들면:

"협약 제12조의 관점에서 볼 때, 위원회는 이 일반원칙이 1996년 아동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우려한다...(아르메니아, CRC/C/15/Add.119, para. 26)."

위원회는 또한 의식제고와 훈련이 법적 개혁에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을 인정하고 유의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실제에 있어 이 권리들이 코스타리카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충분히 이행되지는 못하고 있음에 계속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협약 제12조부터 17조까지 및 기타 관련조항에 비추어 위원회는 아동의 참여권, 특히나 가정, 학교, 다른 기관 그리고 사회일반에서 아동의 참여할 권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할 것을 권장한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목적으로 인식하는 전통을 바꾸기 위해, 이들 원칙의 이행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일반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코스타리카, CRC/C/15/Add.117 para. 16)."

위원회는 코스타리카의 제3차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위원회는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고 자신의 지위와 관련한 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아동의 권리를 이행하고 촉진하는 당사국의 수많은 각종 노력을 인정하여 유의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또한 문화적 문제가 가정에서 이들 권리를 이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의 하나라는 당사국의 우려에 유의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과 쉼터 기타 아동을 위한 시설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

롭게 표시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가일층 의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아동문제를 다루는 어떠한 절차에서도 아동이 가진 견해의 고려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 위원회는 대중매체가 아동의 견해를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기타 기관이나 사회일반에서 아동이 가지는 참여의 권리에 대한 아동과 성인의 의식과 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아동참여의 기회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의식과 양은 이들 원칙의 이행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정보를 가질 권리 -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

1997년의 인권보고 매뉴얼이 명백히 밝히듯이 "...아동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과 이로부터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사실, 어느 결정이나 그것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운 것이다(매뉴얼 p.426).

협약 제13조는 아동의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제17조는 아동의 일반적인 정보를 가질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견해가 표시될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의 장에는 - 가정, 학교, 공동체, 법원 등등 - 아동에게 상황과 선택지에 대해 적절한 정보가 주어질 것을 보장하는 묵시적 의무가 존재한다.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에 채택된 권고에서 위원회는 제12조와 13조간의 연계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다.

"정보를 접수하며 전달하는 권리는 아동의 참여를 구현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이 아동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을 위한 정보개발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 제12항)."

### 차별 없이 참여할 권리

협약 제2조상의 차별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협약 제12조는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

하고 견해가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아동의 평등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참여에 있을 수 있는 차별을 대처하기 위한 특별조치의 필요성이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에 잘 부각되어 있다.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제12조에 새겨진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빈곤이나 무장 분쟁에 영향 받은 아동이나, 시설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부모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장애아동, 피난 및 거주지를 잃은 아동, 거리의 아동 및 토착원시집단 또는 소수집단 소속 아동 등 취약집단 또는 한계집단 아동의 차별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가치가 제12조 상의 권리를 좁혀거나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소녀아동의 권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s. 8, 10)."*

국가보고서에 대한 논평에서, 위원회는 각양각색의 사회적, 지역적 배경을 가진 어린 이들의 참여가, 취약아동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지는 가운데,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전략, 정책, 계획의 기획, 이행 및 평가에서 토착민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성이 위원회의 “토착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에서 강조되고 있다(제34회기 보고서, 2003.9/10, 권고안, para. 8, p.134).

장애아동의 차별 없는 참여를 위해서는 특수 매체에 기사를 게재하고 특수한 기술과 통역(예를 들어 청각 전체 상실아동이나 부분상실아동을 위한 수화)을 제공하고 정상아동을 포함하여, 부모, 다른 가족원, 교사 및 다른 성인에 대한 특별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2006년 12월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제7조 3항)은 요구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장애아동이 스스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에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주어지는 가운데, 자유로이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는 권리를 다른 아동과 동등한 바탕에서 누리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와 연령에 맞춘 조력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표현과 의사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규정한 제21조에서는 장애아가 이들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서 국가가 취해야할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No.9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이점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아동자신들은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채 장애아동에 관련된 정책과 결정들이 장애 또는 비 장애 성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장애아동이 자신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에서 진술권을 갖고 이들의 견해가 이들의 능력발전에 맞춰 존중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장애아동이 의회, 위원회, 포럼 등 다양한 기구에 목소리를 갖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바, 이들 기구에서 장애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일반적으로 아동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장애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은 정책이 이들의 소원과 요구에 맞춰지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함에 따라 귀중한 통합의 도구도 되는 것이다.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표시를 도울 의사소통 방법을 제공받아야 한다. 나아가 당사국들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사결정에 점차 더 많은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아동의 능력발달을 촉진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가족 및 전문가 훈련개발을 지원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GC/9, para. 15)."*

제4차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여아들은 남아들에 비해 이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기능에 대해 참여하고 배우도록 격려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여아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남아들만큼 갖지 못하고 있다(제4차 세계여성대회, 베이징, 1995년, 행동강령, A/CONF.177/20/Rev.1, para. 265).” 이러한 상황은 여아들이 참여와 자신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향해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교육전략 등을 요구하고 있다.

1977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치와 공공생활에 관해 일반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권고는 국가가 정치생활과 공공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하고, 자세한 제안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놀랍게도 교육에의 참여를 포함한 여아들의 참여권 고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있다(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No.23, 1997, HRI/GEN/1/Rev.8, p.318).

### 자원에 좌우되지 않는 이행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12조를 포함한 협약의 일반원칙 이행은 자원에 좌우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협약 제4조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들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이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몇몇 국가에서는 이들 권리가 점진적으로밖에 이행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협약 제12조상의 의무를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아동의 참여촉진을 위한 교육, 훈련 기타 전략

위원회는 법적인 뼈대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정, 학교 또는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태도변화와 실태변화를 얻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협약 제12조 이행을 위해, 특정교육(핵심전략으로 아동협약을 교육과정에서 이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과 정보 프로그램 및 아동관련 종사자의 체계적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들을 장려하고 있다.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에서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상기시키고 있다.

*“... 아동권리와 아동견해의 고려의무에 대한 인식고취를 위해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아동이슈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 29).”*

위원회는 또한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부모교육(제17항)과 참여교육론을 포함하는 교사연수(제24항)를 장려하고 있다.

검토의견에서 위원회는 자주 포괄적 인식제고 및 공공교육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동체 및 마을 지도자를 참여 아래 특히 지방차원과 전통 공동체에서 최선의 아동이익을 위한 아동의 참여의 권리에 대해 공공의 인식제고를 위한 체계적 접근법을 발전시킬 것과, 가정 공동체 학교 보호시설 및 사법 행정체제에서 아동의 견해가 진술되고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고려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이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이 자기견해를 표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전통적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는 운동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말라위, CRC/C/15/Add.174, para. 30)."

"협약 제12조에 비춰, 위원회는 당사국이...

(c) 아동, 부모, 아동관련 전문가 그리고 공공전반에게 아동이 진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착수할 것(아르헨티나, CRC/C/15/Add.187, para. 33)."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의 노력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b) 다른 사람과 함께, 부모, 교사, 정부행정관리, 사법부, 전통사회 지도자 및 사회일반에게 아동이 참여하고 자신의 견해가 고려되도록 할 권리에 대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브루키나파스, CRC/C/15/Add.193, para. 27)."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한다...

(b) 다른 사람과 함께, 부모, 교사, 정부행정관리, 사법부, 기톨릭교회 및 기타 종교집단 그리고 사회일반에게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인에 참여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폴란드, CRC/C/15/Add.184, para. 31)."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한다...

(c) 부모, 교사, 사회사업가, 및 지방공직자에게 지역차원에서, 아동에게 아동의 분별 있는 견해와 의견 발표를 권장하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예를 들면 "이 땅을 물려받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라는 홍보전단 사용)(아이슬란드, CRC/C/15/Add.203, para. 27)."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 방법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린다는 아동협약 제42조 상의 전반적 의무 내에서, 아동권리 위원회는 참여권과 42

조를 완수하기 위한 전략에 아동자신을 적극 관여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 이행여부와 영향의 모니터링

위원회는 각국이 협약 12조의 이행정도를 점검해야한다고 제안하는데, 이는 아동의 견해가 가정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 경청되고 존중되는지 아동에게 물어보라는 뜻이다. 위원회는 어린이 국회나 유사한 기관의 업무가 평가되어 이들이 국가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멕시코에 촉구했다.

*"(d)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의 개발과 평가에 아동이 참여하는 정도를 국가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를 평가할 것(멕시코, CRC/C/MEX/CO/3, para. 28)"*

다음은 리투아니아에 대한 권고다.

*"(e)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이것이 정책, 프로그램 이행 및 아동자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리투아니아, CRC/C/LTU/CO/2, para. 32(e))"*

그리고 알제리에는 촉구하기를: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정책형성, 법원판결 및 시책이행에 대한 이들의 영향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하였다(알제리, CRC/C/15/Add.269, para. 34)."*

##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행의 문제

### 정부내부 및 전반적 정책결정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차원의 정책결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촉구해왔다.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일반 이행조치(협약 제4조, 42조 및 제44조 6항)”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유의하고 있다.

*"협약 제12조는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비중이 부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아동의’ 협약 이행을 포함하는 것이다 (CRC/GC/2003/5, para. 57)."*

의미 있는 참여를 가져올 최선의 방법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어느 나라에나 새로운 문제가 된 바, 실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전체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전반, 의회 및 사법부에 걸쳐 아동권리에 대한 관점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바, 특히 제12조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일반원칙으로 규정한 조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 고취, 보호 및 감시에 있어서 적극적 참여자로서의 아동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 원칙은 아동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채택한 모든 조치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아동에 개방하는 것은 긍정적인 도전인 바, 각국이 점차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위원회는 파악하고 있다. 아직 투표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춘 국가는 거의 없는 만큼, 정부와 의회가 투표권 없는 아동의 견해존중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더 크다 할 것이다. 협의가 의미가 있으려면 과정은 물론 문서에도 접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아동의 견해를 ‘듣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다;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요구한다. 아동의 견해를 듣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고, 아동을 대신하는 국가의 행위를 아동의 권리이행에 더욱 민감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일회성이건 정기적이건 어린이 국회 같은 이벤트는 일반의 인식을 자극하고 높여준다. 그러나 협약 제12조는 끈질긴 계속작업을 요구한다. 아동의 참여와 협의는*



모양새내기여서는 안되고 대표적인 견해를 확인하는데 목표를 두어야한다. 아동협약 제12조 1항에서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특정문제에 대한 특정집단 아동의 견해확인을 암시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소년법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해 소년법 관련제재 경험이 있는 아동이라든가, 입양법이나 입양정책에 관해 입양아나 입양기정의 아동의 견해가 될 것이다. 정부가 아동자신과 직접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비정부기관이나 인권기관이 중재하는 관계로는 부족하다. 아동협약의 초기에 비정부기관은 아동참여를 개척하는 데 유의할 만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정부와 아동 모두를 위하여 적절한 직접 접촉을 갖는 게 맞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5, 2003, CRC/GC/2003/5, para. 12)."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의 일반이행조치에서 아동참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조치에는 아동권리에 책임 있는 항구적인 정부부서가, 국가 인권기구가 해야 하는 것처럼, 아동과 직접접촉을 유지해야한다는 제안도 있고, 아동이 국가계획의 기획, 설계, 이행 및 평가 그리고 감시에도 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자원배분에 아동참여가 고려될 것과 이행도구의 일환으로 아동참여를 촉진하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아동권리 이행의 주무 부서를 명백히 할 것과 이부서가 아동 및 아동주도 기구들과 직접접촉을 통하여 아동의 관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독립된 국가인권기구, 아동 옴부즈맨 또는 아동위원회를 두어, 이들이 아동권리 이행을 감시하는 데 있어, 아동이 아동의 관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손쉬운 길을 열어줄 것과 아동을 관여시키는 데 충분한 자원배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이 아동권리에 관계되는 국가행동계획의 기획, 설계, 이행 및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 분야의 핵심 이해관계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인정받아야 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같은 공개적 협의가 있어야만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아동과 완전한 관련을 맺는 것이 보장될 것이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s. 25~28)."



기구로 창설되면 아동에 관계되는 일에 아동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는 특별자문프로그램과 창의적 의사소통전략을 창출하여 협약 제12조의 완전이행을 보장해야할 것이다. 아동이 인권기구와 통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2, 2002 CRC/GC/2002/2, paras. 16, 17)."

## 아동국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국회를 참여전략의 하나로서 환영했다. 그러나 동시에 협약 제12조의 이행은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에서,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촉구하였다.

"참여권에 대한 행사성 접근에서 탈피하여 정책 사안에 체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견해를 표시하고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할 것(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 para. 25)."

위원회는 이어서 유의하기를.

"위원회는 많은 나라에서 국가적, 지방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아동국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러한 운동은 민주적 과정에 대해 귀중한 안목을 가져다주고 아동과 정책결정자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아동국회 같은 곳에서 아동이 제기한 견해를 공식 정치과정과 정책결정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고, 아동에게 그들의 제안과 관련하여 적절한 반응을 확실히 제공해줄 것을 촉구한다(권고 제30항)."

위원회는 아동국회나 유사한 조직이 가능한 최대한 대표성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정책개발에 대한 이러한 조직의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예로, 위원회는 토고에게 권고했다.

"아동국회의 기능과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 영향을 평가하고 사정하여, 그 활동이 민주적 방식으로 지속되도록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것...(토고, CRC/C/15/Add.255

para. 33)"

그리고 위원회는 그리스, 가봉, 브루키나파소에는 촉구했다:

"아동국회가 반드시 당사국의 특정 종족, 종교, 언어 및 문화집단을 포함한 모든 아동 집단에 대해 대표성을 갖도록 유의할 것(그리스, CRC/C/15/Add.170, para. 39 (b))."

"아동국회활동을 장려하고 이들의 결정에 적절한 고려를 배려할 것이며 모든 아동 집단이 대표되도록 유의할 것(가봉, CRC/C/15/Add.171, para. 28; 브루키나 파소, CRC/C/15/Add.193, para. 27)."

나이지리아의 제2차 보고서 검토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각 부처를 망라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한 것을 긍정적으로 유의하면서 덧붙였다.

"아동국회의장을 참석시킨 것도 당사국의 어린이 상황을 명백히 이해시켜주었다 (나이지리아, CRC/C/15/Add.257, para. 2)."

## 투표권

아동위원회는 아직 협약 제12조와 투표연령의 관련을 검토하지 않았다. 투표연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 또는 그 이상의 나이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이행조치(협정 제4조 42조 및 44조 6항)"에 관한 일반논평 No.5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투표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춘 나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투표권 없는 아동의 견해 존중을 정부와 의회에서 확보할 이유가 더욱 커진다(CRC/GC/2003/5, para. 12)."

그리고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위원회는 권고하고 있다.

"... 당사국은 아동의 참여를 다른 차원들에서 고려해야한다. 어떤 면에서 명백한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18세 미만 아동이 징집대상이면서도 투표권은 없는 사실에서 나타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

고안, para. 38). "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권리, 투표권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은 투표연령의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다만 투표권이 “모든 성인”에게 주어져야 한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제25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행사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은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기초해야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직위에 선출 또는 임명되는 연령을 투표권을 행사하는 연령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투표권은 모든 성인인 시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25, 1996 HRI/GEN/1/Rev.8, para. 4, p.208).”

### 기획, 주거, 환경을 포함하는 기초단체에서

위원회는 아동의 참여를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 지방서비스의 기획, 집행 및 감시 단계부터 장려한다.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에 이어 채택된 권고에서, 위원회는 촉구하고 있다.

*"...아동은 예를 들어 교육, 보건, 청소년 근로조건 및 폭력방지 분야의 예산 배정과 관련된 지방의 정책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다(권고 제31항)."*

1997년의 인권보고 매뉴얼은, 공동체 차원의 협약 제12조 이행 사례로서, 놀이터 위치 선정이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결정에 아동의 관여를 들며, 구체적으로 지방 의회에 아동의 관여를 언급하고 있다(매뉴얼 p.427).

제2차 국제연합 인간주거회의 (Habitat II) 보고서는, “도시, 소도시, 마을의 형성을 다루는 참여과정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여건을 확보하고 환경에 대한 이들의 통찰, 창조성 및 생각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국제연합 인간주거회의 (Habitat II), A/CONF.165/14, p.15).”

위원회는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동대표를 도시차원에서 임명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동의 진술권 등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당사국의 노력을 치하한다. 위원회는 그러나 현실에서 아동의 견해 청취와 이에 대한 고려는 불충분하다는 당사국의 우려표명에 동참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아동협정이나 자국법상의 아동의 권리나 아동의 견해 표명을 위해 마련된 기회에 대해 알고 있는 아동이 많지 않다는 데 우려한다."

"당사국의 최근 노력을 유의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과 부모 및 법 전문가에게 아동의 진술권과 그 원리 및 이를 위해 존재하는 다른 기회 등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이것이 정책, 프로그램 집행 및 아동 자신에 미치는 영향을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도 권고한다(노르웨이, CRC/C/15/Add.126, paras. 24, 25)."

## 아동보호에서

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서는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를 확보하는 다양한 조치를 나열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서, 보호 조치의 이전과 이후 및 아동보호 체제의 기획, 이행 및 감시 기간 중,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동의 견해를 확인하고 여기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한다는 법적 의무가 아동보호 관계법에 포함되어 모든 의사결정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제19조 해당부분 참조).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에서 사법절차상 폭력희생아동의 참여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따라서 성적 학대나 다른 폭력성 범죄를 당한 희생아동의 견해, 소요 및 관심이 이들의 개인적 이해가 영향을 받는 절차에서 제시되고 고려될 것을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에 제시된 피해아동의 권리 외에, 당사국들은 물리적 폭력, 성적 학대 또는 기타 강력범죄의 희생아동을 위하여 규정과 절차를 채택하고 이행하여, 아동이 두 번 고통당하지 않도록 조사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피해자 증인의 되풀이를 방지하고 보호조치, 건강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며, 범인과의 불필요한

접촉방지 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필요 시 일반인과 기자의 법정출입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 48)."

효과적인 신고 절차에의 접근은 아동보호에 필수 요소이며, 부모에 의한 폭력과 아동학대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아동은 부모와 독립하여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의 전화가 활성화되어 아동이 자신의 걱정을 비밀리에 털어놓고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대해 환영한다(필리핀, CRC/C/15/Add.259, para. 31).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 착취 방지 제1차 세계대회(스톡홀름, 스웨덴, 1996년)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은 참여를 촉진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a) 피해 아동, 청소년, 이들의 가족, 친구 기타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시하고,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며, 피해아동이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아동권리의 주창자로서 아동 및 청소년의 모임을 발굴, 설치 및 지원하고, 아동 관련 정부 기타의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에, 아동의 능력발달에 따라, 아동을 포함시킨다(행동계획, A/51/385, para. 6, 또한 2001년 요코하마 세계선언 참조).

아동 대상 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연구보고서는, 전반적인 핵심 권고를 하는 가운데, 각국이 “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아동과 관련을 갖고 아동에 대한 폭력의 방지, 조치, 감시 등 모든 측면에서 아동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아동조직과 폭력에 대처하려는 아동주도의 조치들은, 최선의 아동이익 원칙에 따라, 지원하고 촉진되어야 한다” 고 제안한다(아동폭력에 대한 국제연합연구 관련 독립전문가 보고서, 국제연합, 총회, 제65차 회의, 2006.8, A/61/299, para. 103, 자세한 것은 제19조 관련 부분 참조).

## 가정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 내에서 의사결정에 아동의 참여를 일관되게 주창해왔으며, 부모 기타 후견인의 의무에 대한 정의 속에 아동의 견해를 청취하고 진지하게 받아

들이라는 “제12조 상의 의무”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의 “아동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 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좀 더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협약 상 보장된 권리에 관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확산시킬 것을 권고한다. 특히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는 권리는 가족 전체에 도움이 된다."*

*"위원회는 사회 각계에서 아동참여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의 아동 지지를 촉구한다."*

*"위원회는 아동이 자유로이 견해를 표시하는 참여적 가족구조가 아동이 사회에 나가서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모델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더구나 이것은 가정폭력과 학대에서 보호하는 예방역할까지 해낸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 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s. 17~19)."*

성명권, 국적취득권 및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협약 제7조, 8조)는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1944년 10월, 위원회는 “아동권익 향상을 위한 가정의 역할”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제기된 두개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가정에서 아동의 시민권과 자유문제였다. 토론에 이어 채택된 예비결론에서 위원회는 기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은 의존적이고, 존재가 없으며 수동적인 가족구성원이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아동의 존재가 '인정'되고, 나아가, 아동에게 진술하고 존중받을 공간을 주지는 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 대화, 협상, 참여 같은 것이 아동을 위한 연대운동의 최전선이 되었다. 가족은 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민주생활 체험의 첫 단계가 된다. 이 모든 것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나? 또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하나?(아동권리위원회, 제7회기 보고서, 1994.9/10, CRC/C/34, paras. 192, 193)"*

## 입양과정에서

입양과 관련하여 협약 제12조 2항은 어느 사법 또는 행정절차상에서도 아동의 진술이 보장될 것을 요구하고, 협약 제21조 (a)는 관계자의 “분별 있는 동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협약 제21조 참조).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



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에서 입양과정과 결정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보장이 라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권고 제44항).

## 양육권결정 및 대안보호에서

협약 제20조는 가정환경에서 임시 또는 항구적으로 배제된 아동에게 보호의 대안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 - 양육유탁, 회교법의 카팔라 및 모든 시설 -에서 아동의 참여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강조하는 입법의 필요성과 협약 제12조 상의 아동권리를 반영시키려는 다른 전략들은 대안보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견해를 표시하고 견해가 진지하게 수용된다는 전반적 권리(제12조 1항) 외에 제 12조 2항은 아동이 대안보호에 관련된 어떠한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도 진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협약 제9조 2항에 따르면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 관계자”는 참가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제9조 참조). 협약 제25조에 의하면 국가에 의해 관리, 보호, 치료를 목적으로 배치 조치된 아동은 정기적으로 심사받아야 한다, 협약 제12조에 의하여 아동은 이러한 심사에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협약 제25조 참조).

위원회는 “부모 보호 없는 아동”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에서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격리 및 양육조치 과정에서 아동의 진술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삶과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파트너로서 충분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데에 우려한다."*

*"협약 제12조에 비추어, 위원회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는 노력과 평가, 격리, 양육조치과정, 가정 외 보호, 및 이전과정 등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참여를 돕는 노력을 계속하고 강화해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보호조치 전 과정 - 결정 전, 결정의 집행, 그리고 또한 집행 후까지 - 에서 아동의 진술권이 확보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아동을 동반자*

로 존중하는 특별한 체계를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가족회의는 아동의 견해존중을 보장하는 모델의 하나이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들에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 정책결정, 법원의 심판 및 프로그램 이행에 아동의 견해가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0회기 보고서, 2005.9, CRC/C/153, paras. 663, 664)."

위원회는 가끔 양육권, 대안 양육 배치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이 미흡한 문제를 각국에 제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폴란드에 촉구했다  
 "현재 폐쇄조치가 진행 중인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미래 양육조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것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폴란드, CRC/C/15/Add.184, para. 37(d))"

## 학교에서

2001년 발표한 “교육의 목표”에 관한 일반논평 No.1에서, 위원회는 “아동은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자신의 인권을 잃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학교가 아동의 참여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조문은 교육받을 권리가 장려되는 과정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다른 권리의 향유를 장려하는 노력이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며, 교육과정에서 받은 가치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내용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건 그 어느 곳이건, 교육과정, 교육방법론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아동은 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자신의 인권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교육은 아동 고유의 존엄을 존중하고 협약 제12조 1항과 같이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게 하며,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협약 제 29조 1항에서 인정된 가치에 부합하려면 학교는 협약에 제시된바 그대로 아동 친화적이며 아동의 존엄에 모든 면에서 부합할 것이 명백히 요구된다. 아동의 학교생활 참여, 학교 사회와 학생회의 조직, 또래교육과 또래상담 그리고 학교의 규율 활동 과정에 아동의 참여 등은

이 권리의 실현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장려되어야 한다(아동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1, 2001, CRC/GC/2001/1, para. 8)."

위원회는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에서 이를 재천명하고 계속한다.

"위원회는 방법론 개발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에 아동의 적극적인 협의를 장려한다. 이는 참여폭의 클수록 학습과정에 아동의 관여를 높이기 때문이다. 아동중심의 교육은 아동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에, 일반적으로 인권교육, 특별히 아동권리협약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아동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높일 지식도구를 갖추는 것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당사국에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바이다.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학생은 또한 더욱 효과적으로 학교에서의 차별, 폭력 그리고 체벌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No.8을 참조하여 체벌폐지에 참여전략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각 당사국에 참여교육방법론과 그 장점에 대해,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려는 취약아동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일 것에 대한 교사연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은 특별한 관심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거리낌 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 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s. 17~19)."

협약 제12조의 두 항 모두 관련이 있다.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로이 견해를 표시할 수 있는 아동의 일반적 권리는 학교생활의 모든 측면과 학교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계된다; 이어서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 행정절차”에서 진술할 권리가 온다. 예를 들어 “행정”절차는 학교선택, 학교로부터의 추방, 공식평가 등등에 관여될 것이다. 학생에게 집단으로서 협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교육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개별 아동의 견해를 확인하고 정당한 관심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적 뼈대와 절차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긍정적 발전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각급 학교에서 종합적인 학생대표성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대해 만족스럽게 유의한다(오스트리아, CRC/C/5/Add.98, para. 5)."

"위원회는 학교 환경에서 당사국의 노력을 평가한다. 이 점 위원회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협약 규정을 학생이 뾰도록 조정한 것을 환영한다...(벨리즈 CRC/C/15/Add.99, para. 4)."

"위원회는 학교규율위원회 위원에 학생이 포함된 것을 평가하며 유의한다(말리, CRC/C/15/Add.113, para. 5)."

협약 제12조와 13조에 관련된 특별한 문제는 학교신문과 잡지를 만들고 이에 기고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협정 제13조 관련부분 참조).

## 아동고용에서

고용에서 아동착취를 방지하는 보호입법과 절차(협정 32조 관련부분 참조)에 덧붙여, 제 12조는 아동의 견해 존중을 요구한다, 아동의 고용과 관련한 어떠한 사법 행정 절차에서도 아동은 진술권을 갖는다. 아동은 또한 고용과 관련한 이의제기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노동 착취를 종식시키는 데 어려운 점의 하나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아동의 진지한 입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고려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1999년의 아동노동 금지협정(제182호)을 보강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제190호)는 없애야 할 형태의 아동노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는 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제32조 관련부분 참조).

##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에서

협약 제29조는 아동교육은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개발"을 지향할 것을 요구하고, 제24조는 아동이 인류환경의 현황에 대해 알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위험과 피해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아동의 직접참여는 1992년의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강조되었다.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을 도출했는데 그 제 21 조는 기록하고 있다. “세계 청소년의 창의, 이상 그리고 용기가 동원되어 전 세계적 동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과 모두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의제 21의 “지속가능한 개발에서의 아동과 청소년”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모든 관련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런 과정이 이들의 현재 삶에 영향을 주고 이들의 미래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목표에는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청소년계와 협의하여 모든 차원에서 청소년계와 정부 간의 대화를 진작시킬 과정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고 의제 21의 이행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에 청소년의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각국과 국제연합은 청소년 대표를 관련시켜 모든 국제연합의 과정에 영향을 줄 방안의 진흥과 창안을 지원해야 한다.

“아동은 지구를 돌봐야할 의무를 물려받을 뿐만 아니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들은 거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아동은 환경악화의 결과에 매우 취약하다. 아동은 또한 환경적 사고의 고도의 지식을 갖춘 지원자이기도 하다. 아동의 구체적 관심은 환경과 개발의 참여과정에서 완전히 반영되어야 환경을 개선하려 채택된 어떤 행동이라도 미래의 지속성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활동 중에서, 각 정부는 “아동의 관심을 지방, 지역,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과 개발을 위한 모든 관련 정책과 전략에서 포용하려는 절차의 확립을 위한” 적극적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자연자원, 주택 및 여가수요의 배분과 몫 나누기,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공해와 독성물질의 관리가 포함될 것이다(의제 21, 제25장, 목표).”

### 개인의 의료에 관한 결정 및 의료보험의 계획과 제공에서

위원회는 자신의 건강과 의료보험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지지하며, 또한 아동과 관련된 의료보험의 계획과 제공에서 아동의 권리 또한 지지한다(협약 제1조 및 제 24조의 관련부분 참조). 이 권리의 측면의 하나는 자신의 의료보험을 결정하는 아동의 능력발전이다. “아동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청소년 보건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No.4에서, 위원회는 우선 국가의 일반 의무를 주장한다.

"청소년기 남아아들이 자신의 보건과 발달에 관한 계획과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CRC/GC/2003/4, para. 39(d))"

논평은 이어 치료에 동의하는 권리에 관해 다루고 있다.

"부모가 동의하기 이전에, 청소년은 협약 제 12조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기회를 갖고 이러한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이 충분히 성숙했다면 청소년 자신으로부터 분별 있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부모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아동이익'일 경우 알려야 할 것이다(제3조)."

"프라이버시와 비밀과 관련하여, 그리고 치료에 대한 분별 있는 동의라는 관련문제에 관하여, 당사국들은 (a) 청소년에게 치료와 관련하여 비밀이 보장된 조언이 제공되어 청소년이 분별 있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과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과 규정은 이러한 과정에 연령을 고려하거나 아동의 능력발달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b) 의료요원들을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에 관한 권리, 예정된 치료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치료에 분별 있는 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훈련하여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 4 2003, CRC/DC/203/4, paras. 32, 33)."

어떤 나라는 의료치료에 아동이 스스로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연령을 정하였다; 또 어떤 나라는, 아동의 능력발전이라는 개념에 맞춰, 정해진 연령은 없으나 아동이 "충분한 이해"를 갖췄다고 판정받으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권리를 획득하는 원칙을 세웠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연령의 아동은 충분한 성숙성을 갖춘다는 법적 추정과 연계되어 있다(협약 제1조 관련부분 참조).

아동위원회는 또한 "면역성결핍증과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No.3에서 아동의 참여권을 다룬다.

"아동은 권리보유자이며, 아동의 능력발전에 맞춰, 아동의 삶에 미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영향에 대해 발언함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다. 아동참여는 아동이 단순히 의사결정

의 객체일 때보다는 아동이 소의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며 전략을 형성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능동적으로 관련될 때 아동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안팎에서, 또래 선생으로서 아동의 참여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는 아동이 스스로의 주도권을 발휘하고, 공동체 및 국가 차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정책, 프로그램 개념화, 설계, 이행, 조정, 감시 및 점검하는데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 각계에서 아동의 참여를 확보하려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는 아동의 능력발전에 맞춰 아동의 견해를 표시하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체제도입 등이 포함될 것이다(협약 제12조 1항). 상황에 따라서는 면역결핍증 환자인 아동이 자신들의 경험을 또래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참여행동이 효과적 예방과 지나친 이질감 및 차별감소에 매우 중요하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경각심 제고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이 상담을 거친 후에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이들이 사회적 지원과 법적 보호를 받아 이러한 활동 중이나 이후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3, 2003 CRC/DC/2003/3, para. 12)."

## 언론에서

“아동의 견해 존 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는 언론의 공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견해를 표시하는 권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데 언론의 필수적 역할을 인식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양한 형태의 언론에 프로그램 개발과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아동이 언론활용을 개발하고 선도하도록 더 많은 자원을 할애해줄 것을 촉구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 36)."

“아동과 언론”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에 대한 설명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자기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협약 제17조 참조).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중 하나는 아동의 견해가 진술되고 정당한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다(제12조). 이는 표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3조, 14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아동이 정보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 언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조항의 정신과 부합된다. 이는 아동과 소통할 수 있는 언론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몇몇 나라에서 어린이 위주의 신문을 개발하려는 실험이 있었던 데에 유의했다; 어린이를 위한 특별 면을 발행한 일간지도 있고 젊은 청취자를 위한 특별 순서를 제작한 라디오 텔레비전도 있다. 그러나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하다할 것이다...(아동권리위원회, 제11회기 보고서, 1996.1, CRC/C/50 Annex.IX, p.81)."

### 망명기도 및 기타 이민절차에서

협약 제12조 1항과 2항의 원칙들은 제10조 및 22조와 관련하여 망명기도를 포함한 모든 이민절차에 적용되어야 한다.

“출신국외에 있는 비 동반 및 가족이탈아동 처리”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논평한다.

"협약 제12조에 의거, 비 동반 및 가족과 분리된 아동과 관련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견해와 희망을 들어보고 존중해야 한다(협정 제12조 1항). 이러한 견해와 희망이 분별 있게 표시되려면, 이런 아동에게 예를 들어 자신의 권리, 소식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무슨 방법이 가능한지, 망명과정, 가족 찾기 그리고 출신국의 사정 같은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정 제13조, 17조, 22조 2항). 후견인, 수용, 숙소결정, 법정대리 등에서도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각 아동의 성숙도와 이해도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의 참여가 의사소통의 신뢰성에 좌우되므로, 필요한 경우 통역이 이 모든 절차의 단계에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6, 2005, CRC/GC/2005/6, para. 25)."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1994년 펴낸, 난민아동 - 보호 및 구호



지침은 차별금지, 최선의 아동이익, 아동견해의 존중(협약 제2조, 제3조, 및 제12조) 등 아동권리협약상의 일반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아동의 견해와 감정을 알아보고 이를 존중하여 망명신청이나 난민신분과 관련된 결정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난민아동 - 보호 및 구호지침, UNHCR, 제네바, 1994 pp.23). 난민아동에 대한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정책은 기록하고 있다. "...어리기는 해도, 어린이는 또한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자원이다. 아동의 공헌의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할 말과 의견이 있고,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난민아동을 자신의 세계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먹이고, 예방접종 시키며, 잠자리나 제공해야할 존재로만 인식한다면 난민아동 구제노력은 크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할 수 밖에 없다(UNHCR 집행위원회 문서 EC/SCP/82, 지침서 p.171에서 인용)."

### 소년법 관리과정에서

협약 제12조 1항과 2항에 나타난 일반원칙 이외에, 협약 제37조와 40조는 소년법관리제도에 연루되는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기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협약 제37조 d항에 따라,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누구나 자유박탈의 합법성을 법원 기타 합법적 기관에서 다룰 권리는 물론 신속한 법적 기타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협약 제37조 관련부분 참조). 그리고 협약 제40조 (2)(b)항에 의거, 범법 용의자인 아동은 유사한 법적 기타 조력을 받을 권리와, 필요한 경우 통역의 도움을 받아 공평한 청문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협약 제40조 관련부분 참조).

"소년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No.10에서, 위원회는 협약 제12조 상의 권리가 소년법 사법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존중받고 이행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소년법 사법제도에 연루된 아동의 개선, 개혁 및 권리충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유의한다."*

위원회는 이어 협약 제12조 2항의 의무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그렇다고 인정되는 아동에게 진술권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본적 권리이다.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면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접 진술권을 갖는다는 것은 똑같이 명백하다. 아동의 권리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판 전 단계부터 시작하여 경찰, 검찰 및 법관 앞에서 진술권을 갖는 등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아동권리는 심리, 판결 그리고 선고조치의 이행과정에서도 적용된다."

"...아동은 심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기소사실뿐 아니라 소년재판제도 자체와 활용 가능한 조치에 관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은 내려질 (대체)조치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면 아동이 가질 수 있는 특정 희망이나 선호를 표시할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아동이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아동이 범죄 행위능력이 있고 자신의 형법위반 주장에 가장 적절한 반응에 관한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관련 법관이 결정에 책임이 있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아동을 수동적 객체로 대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도, 아동의 행위에 대한 효과적 반응을 위해 기여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부과된 처분의 집행에도 적용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집행에 아동의 적극적 참여가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 결과에 기여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0, 2007, CRC/C/GC/10, para. 4(d), 23)."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에서, 위원회는 국제연합 청소년범죄행정 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규칙은 절차가 청소년이 참여하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해의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14조 2항). 권고는 또한 국제연합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한 지침(리아드 지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지침은 특별히 방지에 있어서 기획과 이행뿐만 아니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지침의 해석을 위하여, 아동위주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는 사회에서 적극적 역할과 동반자관계를 가져야 하며 단순히 사회화와 통제의 객체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제3항)" 지침은 이어 비행방지 정책 및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와 공동체 업무관리에 있어 청소년 조직이 강화되어 완전한 참여적 지위를 누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협정 제40조 관련부분에 자세한 내용 참조).

위원회는 법에 위배된 행위에 관련된 아동의 견해가 제대로 고려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다음 조건이 제공되어 협정 제12조와 40조에 따른 참여를 보장할 것을 당사국들에 당부하고 있다.

*"...(a) 충분한 법적 기타 적절한 조력제공;*

*(b)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지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하면, 통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c)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 존중*

*(d) 아동이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강요당할 수 없다는 인식*

*(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 48)"*

#### 위원회 업무 및 협약 상 보고과정에서

“아동의 견해 존중권”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어 채택된 권고에서, 위원회는 기술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서 아동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아동 및 청소년 대표가 정기보고서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장려하고, 특별히 국가차원 결론 소견의 이행에 대한 옹호와 감시에 있어서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서 아동의 참여를 고무하는 수단을 발굴하는데 계속 헌신할 것이며, 특히 시민사회 대표에 의한 개별 회원국 사전보고 기간 중 더 많은 아동참여를 권장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토론의 날, 권고안, paras. 57, 58)."*

일반토론의 날 참석한 아동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에 아동위원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와 같이 일할 아동 자문 집단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아동과 더욱 직접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권고에서 위원회는 당사국들에 제안한다.

"위원회에 국가의 사전검토평정에서 적극적으로 아동을 관여시킬 것. 위원회는 또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인권문제를 발굴하는 것과 국가차원의 결론소건의 이행관찰에 아동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권고 제31항)."

위원회는 또한 아동권리국가연대를 포함한 비정부기관들이 아동권리협약 상의 "동시보고" 과정에 아동과 직접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회원국 사전보고 기간 중 아동의 참석을 장려한다(권고 제34항).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12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책임 있는 부처 및 기관이 지정되고 이들 간 협조가 원활한가(아동에 직접 간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부 부처)?
- 관련 비정부기구 또는 시민사회 협력기관이 명시되어 있나?
- 모든 법규, 정책과 관행이 당사국 내의 모든 아동을 위해 협약 제12조와 합치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졌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필요한 곳에 목표가 설정되고 진도가 표시되었나?
- 아동권리를 더 많이 보장하는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 다른 관련 국제 기준을 받아들이는가?
- 필요할 때 국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나?

(상기 조치들은 전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전략의 일부로서 채택될 수도 있다.)

- 예산 분석과 소요자원의 배분
- 감시 및 평가체제의 개발
- 성인과 아동에게 제12조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나?
- 적절한 훈련과 인식제고 방안의 발전은?(제12조와 관련하여 아동관련 모든 종사자에 대한 연수와 부모교육을 포함해야함)

### ● 제12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협약 제12조 1항의 의무사항이 다음 사항에서 존중되고 있나?

- 아동협약의 전반적 이행을 위한 조치에서?
- 아동협약 상 국가의 최초보고 및 정기보고 준비를 위한 조치에서?  
아동에 영향을 미칠 입법, 정책 및 관행의 발전을 위한 조치
  - 중앙정부차원
  - 특별시/광역시/도차원
  - 시군구 차원

다음사항에 적용되는 법규에 협약 제12조의 존중의무가 포함되어있나?

- 가정 내 아동
  - 입양과정과 입양아동
  - 국가에 의한 것이든 기타에 의한 것이든 대체적 수용결정 및 대체 수용중인 아동
  - 모든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및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교육서비스
  - 아동보호
  - 보건서비스 및 보건기관
  - 지역공동체, 의제 21상의 제안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여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환경관련 의사결정
  - 아동고용, 직업연수 및 직업보도
  - 망명추구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이민 절차?
  - 청소년 비행관련 아동
  - 아동에게 견해표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견해가 정당한 비중을 부여받도록 요구하는 법규에 연령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그 제한이 아동협약 제12조 및 협약 기타조항과 합치되는가?
  - 아동협약 제12조에 규정된 모든 권리가, 필요한 경우 통역, 번역, 특별 자료 및 특별기술의 제공과 함께,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는가?
  - 아동희생자 및 범죄증인에 관련 문제 국제연합사법지침상의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제안이 적절히 고려되었나?
  - 민사 및 형사 절차상 아동증인에 대한 특별고려가 발전되었나?
  - 아동의 참여를 가능케 하도록 적응조치가 이루어졌나? 예를 들어 위협적이거나 협박성 언어사용이 금지되고, 아동의 진술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상황과 절차가 제공되나?
- 다음상황으로 아동이 강제되는 일은
- 견해의 표시
  - 법원 기타 절차에서 증거제시
  - 각 사건마다 아동이 분별 있는 견해를 표시하도록 또는 의사결정에서 분별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상황에서 아동이 법규 기타방법으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장하는가?
- 견해의 표시
  - 표시된 견해에 정당한 비중부여

아동협정 제12조 2항과 관련하여 아동이 진술할 권리가 다음과 같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 행정절차에서 제공되고 있는가?

- 형사절차
- 민사절차
- 교육
- 보건
- 아동보호
- 대체수용 결정
- 입양과정
- 아동협정 제25조 상의 점검
- 이민 및 망명신청
- 계획, 주거 및 환경
- 사회보장
- 고용
- 기타
- 아동의 참여와 관련된 법규정의 이행과 활용이 모니터 되고 있나?
-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아동협약 제12조에 규정한 대로 적절한 구제책이 제공되나?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아동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신고절차에 적절한 접근이 보장되나?

- 부당대우를 포함한 가정생활
- 모든 종류의 대체수용
- 학교 및 교육서비스
- 보건 서비스 및 보건기관
- 고용
- 모든 형태의 구금/수용
- 모든 측면의 청소년 사범
- 환경, 계획, 주거 및 교통문제
-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서비스
- 각각의 경우 아동은 적절한 조언과 변호를 받을 수 있나?  
아동이 언론에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고 언론에 참여할 기회가 있나, 특별히
- 라디오
- 인쇄매체

텔레비전

아동에게 언론기술 연수 기회가 주어져 참여를 위해 언론과 관련을 맺고 이용할 수 있나?

가정 내 아동의 참여하는 권리가 부모교육과 예비부모 교육을 통해 고취되고 있나?

다음 사람들에게 아동의 참여를 고취하기 위한 교육이 제공되나?

가정법원 및 소년법원을 포함한 법관

보호관찰 요원

경찰관

교도관

출입국 관리소 직원

교사

보건요원

사회사업요원

타 전문가

###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12조는 아동권리 위원회로부터 전체협약 이행에 관련된 일반원칙으로 인정받았다.

제3조 2항은 당사국들에게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할 일반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 일반원칙

제2조: 자국 내 모든 아동에게 어떠한 사유에서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인정

제3조 1항: 최선의 아동이익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

제6조: 생명에 대한 권리와 가능한 최대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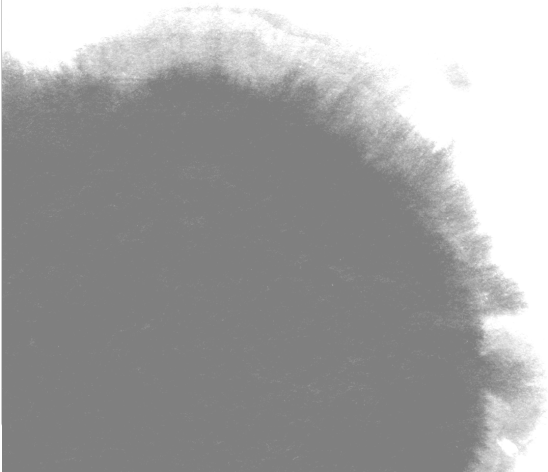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다른 모든 조항은 아동의 진술권과 아동 견해의 진지한 수용이 고려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아동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 협약 제9조, 10조, 21조, 25조, 37조, 40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도 진술할 권리가 있다. 또한 아동의 참여권과 관련된



조항이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4조(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15조(결사의 자유) 등이다.



## 제3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동권리





## 제13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

1. The child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the child's choice.
2. The exercise of this right may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or
  -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또는 인쇄물,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요청하며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 요약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과 “시민과 정치권에 관한 국제협약” 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이” 를 위한 시민권을 어린이에게 적용한다고 확인해 준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 중 하나이다. 1항에 해당하는 첫 문장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 즉 모든 정보와 생각을 찾아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그 권리를 어린이가 행사함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는 의견을 표현할 아동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권리협약 12조 및 그에 따르는 두 가지 항에 의해 신중하게 적용되어왔다. 이 권리란 생각과 양심, 종교, 집회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또한 협약 조항 17조는 적절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며, 권리의 소유자이며, 아동의 시민권은 법 안에서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협약 30조는 소수민족과 원주민 아동들이 그들의 문화와 종교,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역설한다. 31조는 아동의 놀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와 예술 활동을 즐길 권리를 약속하고 있다.

###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19조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의견을 발표하고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와 장벽 없이 모든 매체로부터 정보를 찾고 주고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시민과 정치권에 관한 국제협약 19조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89년 일반논평을 통해 인권위원회는 아동이 시민권을 누림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협약은 어린이를 인정할 뿐 아니라 협약이 선언한 모든 시민권의 혜택을 받는 개인으로서 어린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협약 24조에서 어린이에게 특별히 온전한 시민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7, 1989, HRI/GEN/I/Rev.8, para. 2, p.183).

그러나 1997년도 인권보고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아동의 시민권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견지에서 아동에게 실제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다는 견해가 아직까지는 우세했다. 이제 아동권리협약에 명확하게 명시됨으로써 모두가 인정하게 된 그 조항은 아동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같은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누리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인권보고에 관한 지침서는 어린이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한 13조부터 17조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법 안에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 아동들의 권리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권 안에 아동을 포함시키는 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법 조항들은 어린이에게 세부적으로 이 권리들을 적용하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아동이 폭력을 당했을 때 제공되는 치료 등의 내용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매뉴얼 p.434).”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령 안에 이 원칙들이 반영되는 것만으로는 아동에게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위원회는 법으로 보장되는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원하고 있다(그리고, 그 조항은 그 권리의 제한은 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3조와 14조, 15조와 관련해 위원회는 당사국이 해당 권리의 개선과 이행을 위해 모든 법적조치 및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13, 14, 15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법적인 방법을 비롯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미얀마, CRC/C/15/Add.69, paras. 16, 37).”*

위원회는 13조 및 그와 연관되어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협약의 13, 14, 15, 16, 17조에 언급된 아동의 자유와 시민권의 증진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아동의 역할을 인식함에 있어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통적인 사회 가치를 지적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중요성에 관해 국회의원과 정부 관리와 전문가그룹, 부모와 어린이를 교육하고 민감하게 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모든 아동의 자유와 시민권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만들라고 권고한다(바베이도스, CRC/C/15/Add.103, para. 180).”*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에 관한 협약 13조와 17조의 이행과 관련해 개선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 1차 보고서의 정보들이 이 보고서에 언급된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무엇보다도 이 권리들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다음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이루어진 개선을 보고하고, 일상 속에서 이 권리의 적극적인 행사를 장려함으로써 이 권리들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시리아, CRC/C/15/Add.212, paras. 34, 35)."

위원회는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권을 방해하는 전통적인 가치나 태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제12조).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권을 보장하는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이 권리를 개선하고 존중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을 우려한다. 그리고 어린이의 역할과 관련해 가족이나 다른 집단 안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정보를 찾고 주고받는 일을 방해하는 전통과 사회적 태도가 만연해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과 학교, 사회의 다양한 집단 안에서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권을 개선하고 보장하기 위해 다른 법률 개정을 포함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그루지야, CRC/C/15/Add.222, paras. 28, 29)."

"위원회는 헌법 22조가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보장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언급한 것처럼 아동이 이 권리를 이행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법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덧붙여서 위원회는 가정과 학교, 보다 큰 사회의 다른 집단들의 가치나 태도로 인해 아동이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13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법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소개할 것을 촉구한다(알바니아, CRC/C/15/Add.249, paras. 36, 37)."

위원회는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의 시민권을 어디까지 존중할 것인지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제안해왔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가정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권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관찰할 것을 촉구해왔다.

“아동의 권리 증진에 관한 가정의 역할” 을 다루는 일반 토론의 날을 위한 개요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비평했다.

*“아동의 시민권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은 인권에 대한 인식과 보호가 시작되는 곳이며, 인간의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 전통과 시민의식이 싹트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아동의 권리 존중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아동의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논의되어야 한다(아동권리 위원회 제15회기 보고서, 1994, CRC/C/24, Annex.V, p.63).”*

위원회는 또한 아동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함에 있어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제17조는 아동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접하도록 보장해주는 대중매체의 역할을 언급한 것이다. “어린이와 미디어” 에 관한 일반논평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미디어 대한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장했다(제12조, 제17조).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최첨단의 정보소통기술은 어린이에게 국경을 넘어 제한 없이 정보를 찾고 주고받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위원회가 우려를 표현한 한 사례를 들어본다.

*“...10대들이 자유롭게 만든 인터넷 채팅룸을 정부 당국이 자의적으로 폐쇄한다는 정보들이 있다(한국, CRC/C/15/Add.197, para 36).”*

위원회는 “교육의 목적” 에 관한 첫 번째 일반논평에 포함된 학교 내에서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제 29조에 따른 세부조항은 교육의 권리가 증진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요컨대 다른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 과정이 제공하는 가치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 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교육이 발생하는 모든 환경과 교수법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학교를 거쳐 간 어린이는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게 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2001, CRC/GC/2001/1,para.8)."

학교 내 결사의 자유에 관해 위원회는 일본에게 "...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우려를 표하고 "...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법률과 규칙을 당사국이 재검토하라" 고 권고했다(일본, CRC/C/15/Add.231, paras. 29, 30)."

한국의 2차보고서 검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된다.

"위원회는 학생회 운영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초, 중, 고교생의 외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이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의사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협약의 12조와 17조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 개정과 교육부의 지침 발행, 의사결정과정과 학교안팎의 정치활동에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 모든 아동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하게 누리도록 보장하는 학교 교칙 등을 권고한다 (한국, CRC/C/15/Add.197, paras. 36, 37)."

위원회는 13조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 협약 14조에 의거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교적 상징이나 의복 등의 착용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현해왔다(제14조).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놀이와 여가활동,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이다(제31조).

협약 30조는 소수민족과 원주민 아동이 그들 고유의 문화와 관습을 지키고 고유의 종교를 믿고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특별한 표현의 자유를 역설하고 있다(제30조).

장애아동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는 표현의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해 존중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범세계적인 시민권과 자유권을 강조한다.

*"장애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기 쉬운 영역,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 34)."*

2006년 12월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협약 2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장애인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그들이 선택한 모든 대화채널을 통해 다른 이와 동등하게 정보와 생각을 추구하고 주고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약 2조는 다음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 (a)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필요한 때에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와 기술로 제공한다.
- (b) 공식적인 상호대화에 있어 수화와 점자 뿐 아니라 장애인이 대화를 위해 선택하는 보다 다양한 방법과 형식을 도입해 사용할 것을 장려한다.
- (c) 인터넷과 같은 일반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 (d) 인터넷 정보 공급자를 비롯한 대중매체에게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 (e) 수화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증진한다(제21조).”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엔규칙 1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규칙 13에 명시된 이행을 위해 적절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개선했다.

“자유를 박탈당해 구금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처한 상황과 관련해 자국법과 국제법이 명시하고 있으며, 구금상태에서도 보호될 수 있는 시민권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즉 사회적으로 안전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 법이 정한 혼인가능연령이 되었을 경우 결혼할 권리 등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자유의 박탈과 양립할 수 있다는 관점은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종류의 제한규정 안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 이동권리에 대한 제한: 13조 2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동 권리의 제한은 13조 2항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이는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조에 의한 “모든 사람의” 표현의 권리에 적용되는 제한과 같은 것이다. 어떠한 제한도 13조의 (a)항과 (b)항의 2가지 목적 중 한 가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법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아동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제한의 범위문제를 다루었다.

*"위원회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2002년 4월 벤크 비에르조 델 카르멘(Benque Viejo del Carmen) 마을에서 발생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와 경찰에 의한 무차별적 폭력 진압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여 아동이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벨리즈, CRC/C/15/Add.252, para. 38, 39)."*

*"위원회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실제로는 모호하게 규정된 조항(즉, 이슬람의 원칙에 따라)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이러한 제한은 협약 13조 2항과 15조에 의해 허용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위원회는 아동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행사하고 권장하려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안새리 헤즈볼라와 같은 자경집단에 의한 위협과 폭력 사태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일정 행동과 표현이 이슬람 교리의 해석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윤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하고 균형 있는 조치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이란, CRC/C/15/Add.123, paras. 33, 34)."*

위원회는 이란의 2차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재차 언급하였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어도 이러한 자유와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나 표현이 이슬람의 원칙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초기에 명확히 수립하지 않은 채 이슬람법 해석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는 권고사항 즉 각국 정부는 임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행동이나 표현이 이슬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재차 권고하였다(이란, CRC/C/15/Add.254, paras. 39, 40)."

매스미디어와 기타 정보의 출처에 관한 17조는 아동복지에 해로운 물질과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지침을 13조와 18조를 참고하여 개발할 것을 각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들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와 13조 2항에 의한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정 당시 제기된 문제는 (또한 최근 협약을 인준하는 일부 국가들에 의한 선언과 유보에서 나타난 문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여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관련된 부모의 역할이다. 초안 단계에서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규정한 '만인'에 의한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 아동에게도 적용할 것을 협약에 명백하게 명기하고자 하였고 이는 초기에 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13조의 초기문구는 "본 조항의 어떤 것도 아동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책임, 권한, 권위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토론이 계속되었고 결국은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것이 권리 자체의 내용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고 아동의 권리행사 능력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E/CN.4/CN.4/1988/28, pp 9~13; Detrick, pp.230 이하 참조).

이러한 원칙은 5조에 잘 명시되어 있으며 협약에 의해 인정된 아동권리 행사에

있어 아동의 능력발달에 맞추어 적절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와 보호자들의 책임, 권리, 그리고 의무를 각국 정부가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은 14조(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재차 언급되고 있으나 13조와 15조에는 그렇지 않다.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부모와의 관계성에 대해 그리고 13조에 대해 유보 혹은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초기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위원회는 유보의 철회나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다른 선언문과 유보도 표현의 자유와 다른 시민적 권리의 제한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오스트리아가 취한 유보 내용에 의하면 “협약의 13조와 15조는, 1950년 11월 4일 인권보호와 기본 자유에 대한 유럽협약의 10조와 11조가 규정한 법적 제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전제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협약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항(제10조 2항)에서 제한 가능성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자유의 행사는 의무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절차, 조건, 제한 혹은 처벌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제한은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 무질서와 범죄의 예방, 공중보건 혹은 공공윤리의 보호,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보호, 비밀 정보의 유출 예방,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해 민주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2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하였다.

“... 13조, 15조, 17조의 유보 철회저지를 위한 대표단의 설명, 그러나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 의해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강령(the Vienna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에 비추어볼 때 유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남아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기존의 유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를 재검토하고 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에 따라 유보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권고한다(오스트리아, CRC/C/15/Add.251, paras. 6, 7).”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는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관련 규정인 19조에 대한논평을 통해 표현의 자유 원칙과 이에 대한 구속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개인 권리의 실질적 범위가 결정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19조 3항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하며 단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a)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 (b) 국가의 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사회적 윤리의 보호를 위해

또한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3항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타인 혹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일정한 제한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제재를 가할 때는 표현의 자유 권리자체를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항은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와 (b)항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정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몇몇 나라는 국가보고서에 표현의 자유의 모든 측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3항의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미디어의 통제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등한시되었다.

“많은 국가보고서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상 그리고 실천면에서 표현의 자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범위와 제한에 대한 규정 혹은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조건 등에 대한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인권위원회, 총평 No. 10, 1983, HUI/GEN/1/Rev. paras. 8, 3, p.171).”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13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 관련 부서와 기관의 지정과 조정(13조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식경제부와 관련됨)이 이루어졌는가?
- 관련 민간단체와 시민단체가 있는가?
- 관할권의 모든 어린이를 위해 어떤 법률, 정책과 관습도 13조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목표의 수립과 이행상황에 대한 지수가 있는가?
- 아동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어떤 규정에도 상응하는가?
- 다른 관련 국제 기준을 인정하는가?
-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가?

(이와 같은 조치는 협약전체를 이행하는 정부의 종합적 전략의 일부가 될 수도 있음. )

- 재정분석과 필요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졌는가?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체계가 개발되었는가?
- 13조의 취지를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널리 알리는가?
- 적절한 훈련과 인식 제고(13조와 관련하여 아동 및 그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훈련과 부모교육을 포함)가 추진되는가?

### ● 제13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13조에 규정된 아동의 표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고 있는가?
- 정책이나 관습이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가?  
법률, 정책 그리고 관습이 13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다음과 같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가?
  - 가족
  - 대체 양육
  - 학교



- 소년원
- 지역사회
- 미디어
- 표현의 자유에 허용된 제한은 13조 2항에 의한 경우와 일치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한 것인가?
- 아동이 기고를 하거나 출판을 할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2항에 의한 조건과 일치하는가?
- 장애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가?
- 정부는 아동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심의와 처리를 규정한 조항이 있는가.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13조는 따로 분리하여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일반원칙**

2조: 모든 권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차별 없이 관할권의 모든 아동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3조 1항: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6조: 삶의 권리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

12조: 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아동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법적 그리고 행정적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13조의 이행과 긴밀하게 연관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5조: 부모의 책임과 아동의 발전하는 역량

15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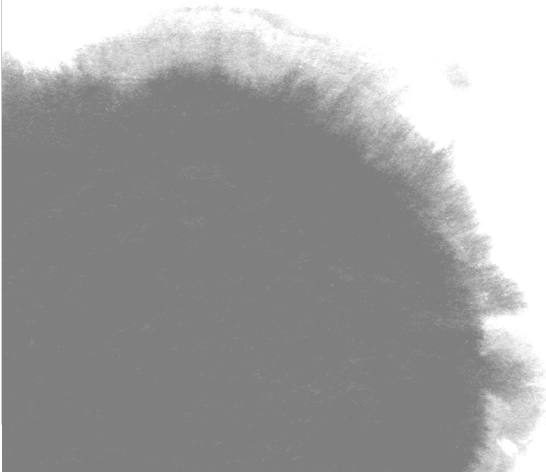
17조: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매스미디어의 역할

29조: 교육의 목적

30조: 소수민족 아동과 원주민 아동이 고유한 문화, 종교와 언어를 누릴 수 있는 권리

31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

## 제4조 이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에 관한 권리





## 제14조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에 관한 권리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child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provide direction to the child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righ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 요약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4조는 세계인권선언문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지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국제적 약속이므로 아동에게도 시민이 누리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 시민권이 있음을 확인 한다.

협약 제5조의 내용을 되풀이하며 강조하는 협약 제14조의 2항은 부모가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아동을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존중하도록 요청 한다.

국제규약은 부모가 그들의 신념에 따라 아동의 종교와 도덕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부모의 자유가 있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능력이 적절히 개발되는 방향으로 부모가 그 방향을 제시하되, 아동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제14조의 3항은 아동이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표현할 자유를 허용하며 한정적으로만 제한을 두고 있다.

많은 당사국들이 그들의 초기 보고서에는 단순히 이러한 권리가 그들의 헌법에 반영되어있고 아동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기록했다. 몇몇 당사국들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선언의 범주에서 이해되는 것이 분명하고, 또 이 권리가 그 당사국의 전통과 충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의 법률과도 상충 되므로 유보조항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몇 개의 당사국들은 이 권리를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당사국들에서 아동의 종교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이다. 위원회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학교의 종교교육의 배치에 각별한 우려를 표해 왔다.

## 사상의 자유

아동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위원회로부터 또는 당사국들이 연속적으로 보내온 국가보고서에서도 논쟁이나 논평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개념은 협약 제12조의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권리와 연결된다. 사상의 자유의 실질적 수행은 제13조에서 아동의 모든 아이디어와 정보를 찾고, 주고, 나누는 권리와 관련되며, 특히 아동이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협약 제17조 관련된다. 아동의 교육과 관련 하여는 협약 제28조와 29조 와 관련 된다. 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협약 제16조에 “아동은 그들의 사상을 밝히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고 언급되어 있다.

사상의 자유의 권리에 관한 규제는 없다. 제 2항은 부모나 다른 사람들 이 아동의 발달능력에 부합하는 권리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 양심의 자유

협약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서도 역시 어떠한 규제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제14조의 2항은 부모의 지도를 허용한다. 양심 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예를 들어, 채식주의 같은 식이요법 이거나, 혹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권고된, 그러나 세계인권선언문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국제규약, 혹은 아동권리협약에도 명확히 언급 되어있지 않은 양심의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이다. 협약 제38조에서 15세 이하의 아동에 병역소집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무력분쟁 지역의 아동을 위한 선택의정서 당사국이 18세 미만 아동의 강제징집을 금하는 것은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양심적거부가 15세에서 18세이 이르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게다가 어떤 나라에서는 군국주의적 청년 조직을 가지고 있고 교육제도 안에 군사훈련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활동들이 강제성을 갖는 것일 경우 협약 제14조와 충돌할 수 있다.

인권보고 매뉴얼 초판 (Manual on Human Rights Reporting, 1991) 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관한 논평에서 “양심적 거부자의 위신과 지위가 이 조항 하에서 다루어 져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자를 가진 자로서 인정된 사람의 수 에 대한 통계정보가 제공 되어야 한다. 즉 양심적 거부가 정당화 된 이유와 정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양심적 거부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통계정보가 요청됨”을 제안한다(인권보고 매뉴얼 초판, 1991, p.108).

## 종교의 자유

협약 제 14조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며, 제3항에 약속된 매우 제한된 규제를 받기 쉬운 아동들이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표명할 권리 이다. 더구나 협약의 제 30조는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

혹은 원주민 아동이 그들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할”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 협약 제20조는 보호의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당사국의 아동의 종교적 배경에 정당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종교의 자유가 의미 하는 것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항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와 믿음을 선택할 자유를 포함한다. 이 권리는 개인적으로 혹은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종교나 믿음을 예배하고, 지키고, 준수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항은 “어떤 사람도 그가 가질, 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종교와 신념을 받아들일 자유가 손상되게 억압해서는 안된다” 고 언급한다.

인권위원회는 협약 제18조에 관한 장문의 일반 논평을 발행했다. 그것은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를 막론하고 그들의 신념을 보호할 뿐 아니라, 어떠한 종교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권리 까지도 강조했다. 동 조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종교와 믿음을 갖거나 받아들일 자유에 대해서도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종교나 믿음에 대한 그의 신실함을 드러내도록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협약 제18조에 의해서, 또 협약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22, 1993, HRI/GEN/1/Rev.8, para. 2, p.195). 사생활에 관한 아동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6조에 언급 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종교의자유권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다양한 국제규약들과 TB (Treaty Bodies) 의 권고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위원회는 아동의 인권이 부모의 인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더 나아가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별도로 인식될 수 없다고 강조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조와, 1981년 종교와 믿음에 기반 한 모든 형태의 편협함과 차별 철폐에 관한 1981년 선언(General Assembly resolution 36155), 인권결의에 관한 위원회 2000/33,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22, 그리고 인권위원회 (CCPR/C/79/Add.25)의 동의를 표하는 결과물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E/C.12/1993/7) 등에 비추어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종교적 자유에 관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종교적 개인의 종교를 표현할 자유의 규제는 제14조 제 3항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특히 바하이(Baha'is)교를 포함한 인정받지 못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한 차별들, 무엇보다도 교육, 고용, 여행, 주택 문제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는 활동과 관련하여 경험한 차별받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인식하고 행사하며 향유함에 있어서 종교나 믿음의 문제로 인해 받는 차별을 예방하고 철폐하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기위해 필요에 따라 법을 제정하거나 폐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종교나 믿음으로 인한 불관용과 투쟁하기위해 공교육 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 위원회는 종교적 불관용의 문제에 관해 특별조사관(special rapporteur) 이당사국(E/추.4/1996/95/Add.2)을 방문했을 때 작성한 권고사항을 지지하고 그 사항들을 완전하게 이행 할 것을 권고했다(이란, CRC/C/15/Add.123, paras. 35~36)."

위원회는 이란의 두 번째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위원회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부분에서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란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종교 신봉자들이 계속해서 차별받을 것이라 언급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란사회에서 인정받는 종교 신봉자들이 누리는 권리들, 즉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것들을 누릴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소수자들인 바하이교도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 괴롭힘, 위협 뿐 아니라 때로는 투옥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을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종교나 신앙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소수종교의 교도들이 그들의 종교로 인해 투옥되어서는 안되고, 학대받아서는 안되며 특히 그들의 자녀들의 교육접근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이란, CRC/C15/Add.254, paras. 41, 42)."

"2002년 특별조사관의 알제리 방문에서 (E/CN.4/2003/66/Add.1 참조) 그의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관한 조사와 협약 제14조에 대한 당사국의 해설적 선언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보호되고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협약 제14조의 관점에서 당사국이 종교나 신앙을 문제 삼아 비롯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사회에서 종교적 관용과 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권을 존중해야한다고 권고했다(알제리, CRC/C15/Add.269, paras. 37, 38)."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수민족들을 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2001 지역민족자치권법(Regional Ethnic Autonomy)의 채택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특히 티베트인 불교도 아동들, 위구르족과 회족 아동들이 그들의 종교를 배우고 실천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온 것과 몇몇 사례에서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보류되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들의 유명한 종교인 파룬궁(Falungong)을 실천하는 가정의 아동들이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포함하여, 학대, 위협과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Gedhun Choekyi Nyima 에 관하여 제공된 정보에 주목했지만 아직은 이러한 정보가 독립적인 전문가(Independent Expert)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역민족자치권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에 아래 사항을 권고했다 ;

(a) 다수인의 신도를 가진 널리 인정받는 신앙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18세미만 아

동들의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그리고 부모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방법으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아동을 지도할 권리, 의무를 존중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b) 티베트 종교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교육을 받는 아동들에 대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지역당국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어떠한 금지사항도 폐지되어야 한다.
- (c) 이슬람교 사원에 다니거나 중국 내에서 종교교육을 받는 모든 아동은 연령에 상관없이 당국에 의해 제한되는 어떠한 금지사항도 폐지되어야 한다.
- (d) 아동들이 종교교육을 받을지 아니면 불신양자가 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 (e) 독립전문가로 하여금 Gedhun Choekyi Nyima를 방문하여 그의 복지와 사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그의 부모의 사생활 보장도 확인해 줄 것을 권고한다(중국, CRC/C/CHN/CO/2, paras. 44, 45)."

"위원회는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학교나 이슬람 사원에서 종교적 소수인들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협약 제14조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예방하고 제거하기위해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또 사회에서 종교적 관용과 대화를 증진시킴으로써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한다고 권고 했다(사우디아라비아, CRC/C/SAU/CO 2, paras. 40, 41)."

"위원회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종교단체들이 그들의 종교를 등록하는 절차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활동과 행사에 대한 당국에 의한 제약에 직면한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그 외에도, 종교적인 모임에 불법으로 침입하고, 예배처를 파괴하는 등에 대한 사례가 있음을 보고받고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존중할 것을 권장했다. 위원회는 협약 제14조가 제시하는 제한만을 조건으로 하여, 종교단체들이 종교와 신앙에 대한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예배처의 파괴를 포함한 종교 활동을 반대하는 어떠한 폭력적인 공격도 예방하고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투르크메니스탄, CRC/C/TK/CO/1, paras. 34, 35)."

##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지도 : 제14조 2항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아동의 부모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명해온 다른 국제조약들과는 다르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제18조 4항은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부모의 자유를 존중할 것과 가능하면 아동의 법적 후견인들도 그들의 신념에 맞는 도덕적 및 종교적 교육의 보장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 제14조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제2항은 부모의 “자유” 보다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협약 제5조에 진술된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제14조는 당사국이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아동들의 발달 능력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아동들에게 맞는 지도를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부모와 법적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아동이다. 부모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이러한 지도는 반드시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절해야 하며, 협약 전체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지도는 그 어떤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 그 어떤 형태의 폭력도 포함 되어서는 안된다(제19조).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진지하게 수용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협약 제12조는 종교나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그들의 관점을 표현하기 위한 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13조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비록 협약 제9조(정체성 보존), 제20조(가정환경박탈시 종교의 보존), 제30조(아동의 지역사회 내 아동그룹 구성원들과 종교행사의 권리) 등이 아동이 그들의 부모의 종교를 따를 권리를 지지하고 있으나, 협약 제14조와 일반원칙에 입각한 협약에 의하면 18세가 되기까지 아동이 자동적으로 그들 부모의 종교를 따르는 개념을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다.

많은 당사국들이 협약의 다른 어떤 조항보다 제14조에 관해 유보를 하거나 선언을 하였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협약의 제13조, 14조 15조 등으로 확대하여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관련한 어른의 권리를 지지하는 유보와 선언을 한 당사국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알제리는 해설적인 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은 알제리 법체계의 기본토대에 따라 알제리 정부에 의해 해석될 것이다.

- 이슬람이 알제리의 국교임을 구명하는 헌법 제2조와, 의견표명의 자유에 대한 불가침성과 신념의 자유에 대한 불가침성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제35조의 내용에 따르며,
- 아버지의 종교에 따라 아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는 가족 규범을 구성하는 1984년 6월 9일 법령 제 84-11번에 따른다(CRC/C/2/Rev.8, p.32).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의 선언은 “협약 제 14조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 18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조항은 아동이 아동의 나이나 발달의 관점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즉시 스스로 종교나 신념을 선택하거나 가질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할 것이다”라고 언급한다(CRC/C/2/Rev.8, p.32).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다른 국가들은 아동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특히 초점을 맞추는 유보조항을 두었다. 예를 들어 “이라크가 협약을 받아들이면서 아동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제 14조의 1항과 관련하여 유보조항들 두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아동이 자신의 종교를 바꾸는 것은 이슬람 성법(Islamic Shariah)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몰디브 공화국 정부는 제 14조 1항을 유보조항으로 두었다. 왜냐하면 몰디브의 헌법과 국내법이 모두 몰디브인은 반드시 무슬림 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개인의 종교적인 모든 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모로코 왕국은 아동의 종교적 자유에 동의하는 제 14조에 대해 이슬람이 국교라는 이유로 유보했다.”

“오만(Oman)의 술탄은 아동이 개인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 14조, 또 종교적 소수에 속하는 아동이 아동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 30조에 구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CRC/C/2/Rev.8,p26,29,30,35).”

아동권리협약의 제51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현재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10개 당사국은 제 14조에 이러한 특정 유보

에 대해 반대를 기록했다(CRC/C/2/Rev.8, pp.48 이하 참조). 위원회는 당사국들의 유보조항에 대하여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과 정책의 일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유보조항을 검토하고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있다(제4조).

몇몇 국가에서는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그들의 아동들에게 특정한 의료치료를 거부하는 부모를 제재할 힘을 가지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국가는 중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협약 제3조 2항에서는 “당사국들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혹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의 복지를 위해 보호와 보살핌 등이 필수적인 것이 되도록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적합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되었다. 협약 제12조에서는 아동의 견해가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하게 보호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아동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치료거부에 대한 존중은 그들의 발달 능력과 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한다.

### 부모가 아동의 종교에 동의하지 않을 때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 는 원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제18조). 이것은 제14조가 아동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행사를 인정해 줄 자격이 있는 부모의 지도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부모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 “권한(Authority)” 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 그 문제는 협약 제14조 하에서 아동의 연령 성숙도에 따라 진지하게 고려된 아동의 관점과 함께 아동권리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아동의 차선적 보살핌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아동이 그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국가나 다른 곳에 의해 제공되는 차선적 보살핌을 받게 될 때 협약 제14조는 아동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종교단체들은 아동을 위한 차선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0조 2항은 아동의 차선적 보살핌을 고려할 때 “아동의 양육과 아동의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배경의 연속성의 바람(desirability of continuity)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다(제20조). 그러나 아동은 자신의 부모의 종교 테두리 안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완고한 법은 협약 제 14조에 의해 보장된 아동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 종교공동체

협약 제 14조에서 아동이 종교공동체에 합류하거나 그곳을 떠나기를 결정하는 능력은 부모가 아동의 발달능력에 맞게 지도한다. 그러나 제 3항에 대한 특정한 제한을 두기도 한다. 몇몇 당사국은 이 문제를 국내법으로 법제화 했다.

## 학교생활과 종교의 자유

학교생활위원회는 의무교육 현장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안에 매우 큰 관심을 가져왔다. 2001년에 발행된 첫 번째 논평에서 위원회는 “교육의 목표”에 관하여 아동은 학교생활의 미덕인 아동의 권리를 잃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동의 참여권을 존중하는 학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아동권리협약, 일반 논평 No.1, 2001, CRC/GC/2001/1, para. 8).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의 신념에 일치하여 아동의 종교와 도덕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 또는 가능하면 법적 후견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조항에 관한 일반 논평에서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정받는 일반 종교나 윤리의 역사와 같은 과목들이 만약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공교육의 과목들을 인정한다는 협약 제18조 4항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협약 제18조 4항에 설명된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그들의 아동들이 자신의 신념에 일치하는 종교나 도덕 교육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자유는 제18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 종교나 신념을 가르치는 자유의 보장과 관련되어있다.

위원회는 특정 종교나 신념의 교육을 포함하는 공교육은 만약 조항이 부모나 보호자의 희망을 수용하는 비 차별적 면제 나 대안을 위해 만들어진 것 이 아니라면, 제 18조 4항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22, 1993, HRI/GEN/Rev.8, para. 6, p.196).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발달능력” 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부모의 지도와 함께, 아동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덕적, 종교적 교육을 위한 조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몇몇 국가는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육장 에서는 종교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한 두 개의 종교에 대한 교육, 예배, 참관 등이 있을 수 있다. 비록 협약 제5조와 제14조에서 “발달능력” 의 개념이 많은 융통성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몇몇 국가들은 아동의 종교 표명이 어른으로부터 아동에게 옮겨가는 시기를 정해 놓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의 의무교과 과정 안에 아동의 종교적 자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2002년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Armenian Apostolic Church) 의 역사 연구가 학교에서 의무교과목으로 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제14조 규명에 따라서, 위에 언급된 의무교과목은 종교적 소수민에 속한 아동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아르메니아, CRC/C/15/Add.225, paras. 31, 32)."

"당사국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만, 위원회는 비카톨릭 아동에게 카톨릭 주의에 관한 수업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에 우려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종교적 자유가 아무런 차별 없이 교육 체계 안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교육과정을 고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코스타리카, CRC/C/15/Add.266, paras. 25 ,26)."



위원회는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강제로 시키지 않는 곳이나, 종교교육이 면제되는 곳에서 과연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성취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부모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종교수업 대신에 윤리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기회를 보장해야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들이 그러한 선택을 허용하는 윤리수업을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학생들이 윤리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는데 우려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공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발달능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부모의 지도에 따라, 아동이 종교수업에 참여할지, 윤리수업에 참여할 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한다(폴란드, CRC/C/15/Add,194, paras. 32, 33)."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제147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특히 초등학교 아동들이 만일 그들이 카톨릭교와 관련된 종교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고통을 받을 것이고, 특히 부모가 외국계 혈통인 경우 항상 종교교육이 강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려했다. 협약 제2조, 14조, 19조의 견지에서 볼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부모가 외국인 혈통일 경우 그들이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때 카톨릭 교육이 강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이탈리아, CRC/C/15/Add. 198, paras. 29, 30)."

노르웨이의 두 번째 보고서에 논평을 한 위원회는 종교지식 교과과정에서 부분적인 면제 해 주는 새로운 시스템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종교, 지식과 윤리교육에 관한 새로운 교과과정을 도입한 1998년 7월 17일 당사국의 법령 제 61조에 의해 취해진 접근이 차별적임을 우려 했다. 위원회는 특히 교육의 어떤 부분에 있어 참여를 원치 않는 아동과 부모에게 면제를 제공하는 과정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실행을 검토하고 대안 면제 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노르웨이, CRC/C/15/Add.126, paras. 26, 27)."

노르웨이 의 세 번째 보고서 심의 때, 이 권고가 이행되었다.

"위원회는 학교에서 기독교의 지식과 종교 와 윤리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관해 2004년 11월 3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에 관한 인

권위원회의 관점에 주목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국의 교육법령의 계획된 변화가 그리스도교적 지식과 종교 그리고 윤리교육이 협약 제 14조에 제시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완전히 일치하도록 한다는 정보에 환영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변화를 채택하여 신속히 실행할 것을 장려한다(노르웨이, CRC/C/15/Add.263, para. 20)."

위원회는 노르웨이 부모들과 아동들 그룹에서의 개별의사소통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관점을 언급했다. 노르웨이는 국가의 종교로 국가교회(State Church)가 있으며 국민의 86 퍼센트가 교회의 구성원이다. 1997년 8월 노르웨이 정부는 그동안 시행된 “기독교(Christianity)” 과목과 “삶의 자세(Life Stance)” 과목 대신에 “기독교 지식과 종교, 그리고 윤리” 라는 새로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노르웨이 학교 시스템에 도입했다. 이 새로운 과목은 매우 제한된 부분에서만 면제를 허용한다. 지원자들은 당사국이 그들의 종교의 자유, 예를 들면, 그들의 아동들이 받을 “삶의 자세” 교육과 훈육을 결정할 권리와 사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부분적인 면제 절차는 차별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인권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4항에 대한 침해상황을 발견했다. 즉 “당사국은 본 규약이 아동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여 그들의 종교, 도덕적 교육을 보장할 법정 후견인 과 부모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책임지고 있다.” 위원회는 노르웨이가 입안자에게 부모, 학생과 같은 지원자들이 그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여 교육받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를 존중할 효율적이고 적합한 요법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사국은 앞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의 의무가 있다(인권위원회, Communication No. 1155/2003; 노르웨이, 23/11/2004, CCPR/C/82/D/1155/2003).

학교종교와 관련된 다른 형태의 차별은 당사국이 다른 종교를 배제한 특정 종교에 관련된 학교에 자금지원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협약 제14조, 제13조(표현의 자유), 그리고 제29조(교육의 목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 하면서 아동 또는 교사가 종교적 상징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유를 규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특히 학교에서 소녀들이 머리에 스카프를 쓰는 것을 금지 하는 것과 관련하여, 완전하게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정보에 우려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보장 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튀니지, CRC/C/15/Add.181, paras. 29, 30)."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2003년 9월 24일의 판결에 주목하면서, 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이 머리에 스카프를 쓰는 것을 금지할 목적으로 현재 Lander에서 논의 중인 법에 우려를 표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이해, 또 협약 제 29조의 교육 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관용의 태도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특정 종교집단을 단독으로 추출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특히 종교, 양심 그리고 사상의 분야에서 이해와 관용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동과 부모, 그 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조치들, 그리고 그 외 다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독일, CRC/C/15/Add.226, paras. 30, 31)."

"위원회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공하며 1905년 정교분리 법이 신앙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그와 동시에 당사국이 종교적 입장을 표하지 않는 공립학교도 인정하는 것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협약 제14조와 29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종교에 따른 차별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과 종교적인 의상을 입는 것에 관한 새로운 법률(2004년 3월 15일 의 법 No. 2004-228)이 아동최선의 이익의 원칙과 교육의 접근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비생산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예상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우려 했다. 위원회는 법률의 효과를 그 시행으로부터 일 년 뒤에 평가할 것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위원회는 법률의 효과를 평가할 때 당사국이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리고 평가과정에서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아동권리의 효용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그리고 개인이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아동이 그러한 법률의 결과로 학교 시스템이나

다른 환경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 되지 않도록 보장 하는 동시에 중재를 포함한 공립학교의 비종교적 특징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학교의 복장 규정은 공립학교 자체 내에 잘 언급되어 아동의 참여를 고무시키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새로운 법률의 결과로 학교에서 추방 되는 소녀들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일을 계속 할 것과 그들이 교육의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 했다(프랑스, CRC/C/15/Add.240, paras. 25, 26)."

게다가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종교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인식했다. 종교교육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노르웨이에서의 조정을 고려해 볼 때 위원회는 아동의 신앙에 관련한 그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제기 했다.

"위원회는 강제성이 있는 종교교육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위하여 비록 선택시스템 (opting-out) 이 있으나 이것은 그들의 부모가 아동의 신앙을 기재하는 정식 요구서의 제출을 요구하며 그로인해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느낄지도 모른다는 것에 주목했다(노르웨이, CRC/C/15/Add.23, para. 9)."

이것은 그리스에서도 비슷한 차별과 사생활의 문제를 야기했다 :

"위원회는 그리스 정교회를 신봉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중학교 졸업증명서에 그 내용을 기입하는 등의 사회적, 행정적 조치를 중학교 학생에게 취하고 있다는 보고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이 종교에 입회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다 해도, 아동의 비차별의 권리, 사생활 보장 등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 졸업증명서의 기록과 같은 정보에 아동의 사생활이 노출 되지 않도록 아동의 권리존중이 방해받지 않게 보장 할 것을 권장 했다(그리스, CRC/C15/Add.170, paras. 44, 45)."

## 종교 표명에 대한 제한: 제14조 3항

“개인의 종교나 신앙을 표명할 자유”를 명시하는 제3항에 의한 제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8조 3항의 제약과 동일하다. 앞서 언급된 일반 논평에서 인권위원회는 “제18조는 사상, 양심,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종교와 신앙을 표명할 자유와는 구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 했다”: 그것은 사상, 양심, 개인 선택의 종교나 신앙을 가질 자유에 관하여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떠한 제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유는 제19.1조에서의 어떤 저촉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가질 권리처럼 무조건 적으로 보호 된다.

종교와 신앙을 표명할 자유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는 제한하는 것이 오직 법에 의해 기술되고 공공안보, 질서, 건강, 도덕 그리고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일 때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허용되는 제한 조항의 범위를 해설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국제규약에서 보장된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에 따라서 시행되어 나아가야 한다. 부과된 제한은 반드시 법에 의해 확립되어야 하고 제 18조에 보장된 권리를 손상시키는 일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제18조 3항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항목임을 주시 한다. 즉 규제는 그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규제는 반드시 그것이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적용 되어야 하며, 반드시 규정된 특정 요구와 관련하여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규제는 차별적 목적으로, 혹은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22, 1993, HRI/GEN/1/REV.8, paras. 3~8, p.196).

### 종교로 인한 차별

아동권리협약에서 제2조는 당사국이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차별로부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청 하고 있다. 즉 아동 그리고 아동의 부모, 혹은 법정후견인 이 어떤 종교를 가지든 간에 종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 따라서 협약 제2조와 제14조 하에서 아동은 종교를 가질 권리,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또 그 종교를 표현할 권리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게다가 협약에 의하면 아동이나 부모가 가진 종교로 인해 아동의 권리향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협약 제2조 2항은 당사국이 아동은 그 아동의 신분, 활동들, 아동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혹은 가족들에 의하여 표현된 의견이나 신앙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 받는 것을 보장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제18조에 관한 일반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협약에 따르면 어떤 한 종교가 국교로 인정되거나, 그 종교가 공식적 혹은 전통적으로 확립되어서 그 종교를 따른 사람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권리 향유에 손상을 주거나, 또는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이나 비 신앙자에 대한 그 어떤 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22, 1993, HRI/GEN/I/Rev.8, para. 9, p.196).”

협약 제24조 3항은 당사국이 “아동의 건강에 침해 되는 전통적 관습을 폐지하는 관점으로 모든 효율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제19조는 당사국이 “모든 육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종교의 표명과 준수와 연계되어 있거나, 종교로부터 기인한 관습은 협약 의 그 어떤 조항이 규명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

### 장애를 가진 아동들과 종교의 자유

장애우의 동등한 기회에 관한 표준 규칙(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들 사회의 종교적 삶에서 동등한 참여를 위한 조치를 장려하는 항을 포함한다(규칙 12). 이 규칙은 또한 “국가가 종교적 기관, 조직에 장애에 관련한 정보의 배포를 장려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종교 당국이 종교교육 프로그램 뿐 만아니라 종교전문가를 훈련시키는데 있어서도 장애 정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 을 장려할 것을 제안했다.

## 종교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당사국들에 위탁한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보호를 위한 유엔규칙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소년의 종교적, 문화적 신념, 관습, 그리고 도덕적 개념은 존중되어야 한다(rule 4).”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모든 소년은 구금시설에서 제공되는 예배나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또는 그들 자신이 예배를 드리거나 그들의 교파의 종교적 활동이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유함으로써 그들의 종교적, 영적인 삶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만약 구금시설에서 한 종교를 믿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을 경우 자격을 갖춘 종교지도자 한명 혹은 그 이상을 지정하여 시설 안에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집행하도록 하거나,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전문 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양을 할 수 있게 허용하여야 한다. 모든 청소년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와 종교교육, 상담, 교화 등을 자유롭게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자격을 갖춘 종교지도자들의 방문을 받을 권리도 가진다(rule 48).”

위에서 인용한대로, 일반논평에서 인권위원회는 이미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구금시설의 수용자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법적인 제재내용에 어긋남이 없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종교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22, 1993, HRI/GEN/I/Rev.8, para. 8, p.196).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14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의 모든 수준의 책임 있는 부서와 기관들의 확인 및 조정이 이루어져 왔는가? (제14조는 사회복지부, 교육부, 공인된 종교와 국가와의 관계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관련됨)
-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 파트너들의 확인이 이루어 졌는가?
- 사법권에 관련된 아동들을 위해 법률, 정책, 관습 등이 양립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 졌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목표의 확인과 진전을 측정할 지표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 관련된 다른 국제기준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 어떤 부분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러한 측정은 전체적으로 협약을 이행하는 정부의 전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 예산분석과 필요한 자원 배치
-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의 발달
- 제14조의 함의를 성인과 아동들에게 널리 알리는 문제는 ?
- 적절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식증진은? (제14조와 관련하여 종교집단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아동을 위해/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를 위한 교육 등)

### ● 제14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협약 제14조에 보장된 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가?
  - 아동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존중하는 법적조치나 다른 조정장치가 있는가?
  - 제14조 3항에서 제시하는 것과 일치하는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그것들은 법률로 정의되어있는가?
- 제14조에 명시된 법, 정책, 관습 등이 아래의 사항과 관련하여 아동의



사상, 양심, 종교에 대한 자유를 증진시키는가?

- 아동/부모의 관계
  - 모든 형태의 차선적 아동 보살핌
  - 학교
  - 법, 정책, 그리고 관습이 협약 제 14조에 제시된 대로 아동에 의한 권리 행사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는가?
  - 만약 당사국이 법으로 인정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종교 가지고 있다면 법률은 아동이 국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행사하거나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가?
  - 아동이 어떤 종교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나올 권리에 대한 규제가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능력을 존중하는가?
- 법률은 아동이 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예배를 거부하는 것을 누구의 요청으로 허용하게 되어있는가?
- 아동의 요청
  - 부모의 요청
- 그러한 경우 아동이 믿는 종교의 교육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수 있는가
  - 당사국이 아동이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교육의 제공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이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협약 제14조와 관련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의 고충처리를 위한 결의나 고려를 위한 법률조항이 있는가?
  - 장애아동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특별조치들이 있는가?
  - 자유가 제한된 아동들과 관련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보호를 위한 유엔규칙 제48항이 이행되는가?

### ● 주의사항

협약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협약의 모든 조항들은 상호의존 한다. 협약 제14조 역시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 일반원칙

제2조: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인식되는 권리

제3조: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아동최선의 원칙

제6조: 삶에 대한 권리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

제12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14조의 실행과 밀접하게 관령되어 있는 조항들:

제5조: 부모의 책임과 아동의 발달능력

제8조: 정체성 보존

제13/15조: 표현의 자유와 모임의 자유

제17조: 적절한 정보 접근

제20조: 차선적 보살핌 - 종교와 문화의 지속성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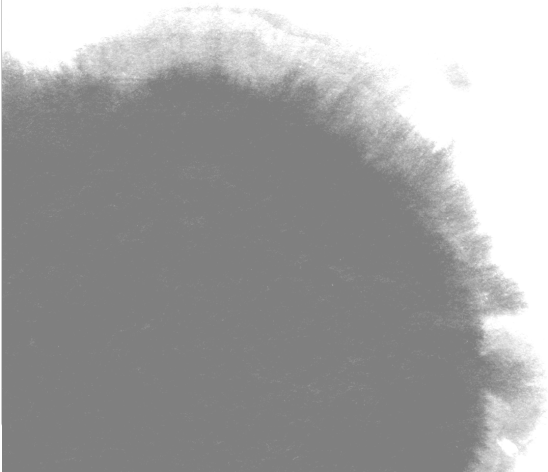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제28/29조: 교육의 권리와 목표

제30조: 소수민족 혹은 토착민 아동의 권리

제37조: 자유의 제한과 종교자유

제38조: 무력분쟁과 양심적 거부

## 제5조 결산 및 집회의 자유





## 제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s of the child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민주사회의 법체계 안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 요약

아동의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3조와 함께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12조는 각각의 아동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집단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덧붙여 언급하고 있다.

이전의 인권협약들은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권리를 증진시켜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시민들의 다른 권리처럼 이러한 권리를 특히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각 당사국의 법에 포함시킬 것을 장려해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15조 2항에 제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

## 아동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모든 사람들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그 누구도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1조와 제22조는 이러한 권리들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 2항에 제시되어 있듯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약을 가하고 있다. 많은 국가의 헌법 원칙이 국제적인 협약을 반영하여 “모든 사람”에게 결사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인식하는 함축적인 의미는 아직 널리 검토되고 있지 않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법률 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해 왔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단체와의 결사뿐만 아니라 보호받을 권리 등 아동의 다른 권리를 위협하지 않는 개인과의 결사도 포함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권리뿐만이 아니라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의견을 알릴 아동의 권리(the rights of the child to be heard)”에 대한 2006년 일반논평의 날(2006 Day of General Discussion) 이후 채택된 권고문에서 국가적 · 국제적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비정부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세계의 다양한 부문에서 청소년들이 이끄는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협약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당사국들에게 상기시키는 바이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논평의 날, 권고안, para. 33)."*

<보고서 작성 지침(Guidelines for Periodic Reports, 2005년 개정판)>은 당사국이 아동 · 청소년 조직 및 집회의 수와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회원의 수, 독립된 학생회

가 있는 학교의 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CRC/C/58/Rev.1, paras. 6~7).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 학생조직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아동조직을 설립할 것을 특별히 권고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보고서에 학생회를 규정한 법률과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들이 설명되어 있다(제12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1년 발표된 첫 번째 일반논평에서 “교육의 목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

*“아동들은 학교 교문을 통과함으로써 인해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잃지 않는다.”(CRC/GC/2001/1, para. 8).*

그리고 학교가 아동의 참여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온두라스의 두 번째 보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교육개혁법을 제정하여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를 장려하고 증진시킨 것에 대해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당사국에서 아동의 참여의 권리가 충분히 계발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는 바이다. 또한 결사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반하여 중등학교에서 학생조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협약 제15조와 제16조 및 다른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의 권리를 증진하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표현할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개혁을 포함한 보다 심화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권고한다(온두라스, CRC/C/15/Add.105, para. 2).”*

일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 미만의 아동이나 공적인 모임의 이사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을 가진 연령이 되지 않은 아동들에게, 조직의 계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은 장애가 된다는 것을 언급해야만 한다. 협약 제15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러한 점을 검토해온 나라는 아직까지 거의 없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정치적 조직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조직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학생들이 학교 교정 안팎에서 하는 정치적 활동에 대해 제약이 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 교정 안팎에서 행해지는 학생들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일본, CRC/C/15/Add.231, paras. 29~30)."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에서 학생들이 정당에 참여할 권리 등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교육부의 정보와, 18세 미만의 사람은 정치적 활동이나 수 익활동을 제외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정한 아동청소년법(Childhood and Adolescence Code)제18조가 서로 상반된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18세 미만의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법률이 일관성을 갖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코스타리카, CRC/C/15/Add.266. paras. 23~24)."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조지아에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과 이러한 금지가 청소년들이 정치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정치적 리더십의 준비를 늦추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려하며 특별히 언급하는 바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에 비추어볼 때,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정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당사국이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그루지야, CRC/C/15/Add.124, paras. 30~31)."

조지아의 두 번째 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발전상황을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에 아동·청소년 결사법(Children's and Youth Associations Act)의 조항뿐만 아니라 아동 의회, 아동 포럼, 조지아 아동연맹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아동의회의 결의문이 장애 아동과 시설아동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그들을 대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들의 이런 활동과 다른 활동을 증진하고 지원하려는 노력, 특히 장애아동과 시설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그루지야, CRC/C/15/Add.222, paras. 30~31)."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 1항]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권리는 결사의 자유에 내포되어 있으며, 제15조 2항의 제약이 아동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제32조는 아동이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나 다른 측면에서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 평화적인 집회를 자유롭게 가질 아동의 권리

제15조는 아동을 평화적인 활동에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기본적인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약은 법률로 한정되어야 하며 제15조 2항에서 허용한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하단 참조).

그러므로 예를 들어, 위원회는 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벨리즈의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아동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특히 2002년 4월 24일 Benque Viejo del Carmen 마을에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 중 폭력사건이 일어난 것과 경찰당국이 폭력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하며 유념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장려하고 촉진하여 아동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참여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그들의 견해와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한다(벨리즈, CRC/C/15/Add.252, paras. 38~39)."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약 제15조 2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15조 2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15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 제약은 법률에 의해 한정되어야 하며 조항에 명시된 특정한 사유 중 한 가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위원회는 비록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동들이 이런 권리를 누리는 것이 모호하게 언급된 제약 조항(다시 말해 '이슬람의 규범에 따라')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와 제15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제약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 위원회는 Ansari-Hezbollah와 같은 보복집단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누리려 하거나 이러한 권리의 증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협과 폭력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어떤 행동이나 표현이 이슬람의 성구의 해설에 부합하는 것인지 평가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모든 아동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면서 공중도덕을 지킬 수 있는 적절하고 균형 잡힌 조치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이란, CRC/C/15/Add.123, paras. 33~34)."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란의 두 번째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 계속 아래와 같이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비록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행동이나 표현이 이슬람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초기에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이러한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이슬람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해석해야할 필요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여전히 우려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문에 제시되었던 권고사항, 즉 당사국이 자의적인 해석을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표현이 이슬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하는 바이다(이란, CRC/C/15/Add.254, paras. 39~40)."

몇몇 국가에서는 특정 시간 동안- 저녁 몇 시 이후에 아동이 어른을 동반하지 않고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종종 아동의 나이와 관련된 통행금지 시간 등- 아동의 결사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 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제한은 협약 제15조 2항이 허용하고 있는 매우 제한된 제약에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파나마에게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위원회는 아동의 시민권(제13조~17조)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또한 소외되고 가난한 청소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분명한 법적 근거 없이 체포되고 학대받고(학대받거나) 감금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권리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을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 학대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파나마, CRC/C/15/Add.233, paras. 31, 32)."*

제15조는 제14조와 달리 아동이 발달하는 능력에 맞추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모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5조에 이러한 원칙이 전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몇몇 국가들은 1차 보고서에서 몇 살 미만의 아동들은 단체에 가입할 수 없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약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본이 아래와 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당사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4조, 제15조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들을 검토해야 한다...(일본, CRC/C/15/Add.231, paras. 29, 30)."*

## 장애아동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은 장애자들의 단체 설립 및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2조에서 금하고 있는 차별의 이유 중 하나로 “장애”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제23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장애아동들이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 모든 시민적 권리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2006년 12월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당사국이 장애자가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하고 국제적 · 지역적 · 국내적 차원에서 장애인단체를 결성하고 참여하는 등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정치적 · 공적 생활에 효과적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을 위해 제15조에 제시된 권리는,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에 강조되어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 규칙을 널리 알려왔다. 일반적으로, 이 규칙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그들의 신분과 관련된 어떠한 이유로 인해, 국내법이나 국제법이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고 자유에 대한 제약과도 상충되지 않는 시민적 ·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를 부여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rule 13)”는 것을 명하고 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명하고 있다. “아동이 외부세계와 적절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는 공정하고 인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아동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아동들이 가족과 친구, 다른 사람들 또는 평판이

좋은 외부조직의 대표와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집과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감금시설을 떠날 수 있고, 교육적 · 직업적인 이유나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감금시설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rule 59).”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15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모든 수준의 정부에 있는 담당 부처와 기관을 확인하고 조정(제15조는 법무부, 사회복지부, 교육부와 관련되어 있다.
- 관련된 비정부기구/시민사회 협력자들을 확인
- 관할지역의 모든 아동을 위해 모든 법률과 정책, 관습이 이 조항과 양립하는 지 포괄적으로 검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진보의 목적과 지표의 확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 아동의 권리에 더 도움이 되는 규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 다른 관련 국제기준을 인지하고 있는가?
- 필요한 경우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조치들은 협약을 총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전체적인 전략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 예산분석과 필요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였는가?
- 제15조의 의미가 어른과 아동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가?
- 적절한 훈련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가?(제15조와 관련하여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거나 양육 교육이 포함될 수 있다)

### ● 제15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제15조에 보장된 아동의 결사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승인되어 있는가?
- 아동이 결사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왔는가?
- 이러한 권리에 대해 허용되는 제약이 제15조 2항에 명시된 것과 일치하는가?
- 이러한 권리에 대해 허용되는 제약이 법률로 정의되고 한정되어 있는가?

- 고용되어 있는 아동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아동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참여하고 탈퇴할 권리가 제한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장애아동의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왔는가?
- 자유를 제약받고 있는 아동과 관련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유엔 규칙(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의 규칙 13과 규칙 59가 지켜지고 있는가?
- 제15조의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가?

● **주의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나눌 수 없으며 각 조항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15조는 따로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제2조: 모든 권리는 그 어떠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을 위해 인정되어야 한다.

제3조 1항: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아동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아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15조의 이행과 특히 관련되어있는 조항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4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29조: 교육의 목표

제31조: 놀이, 레크리에이션,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여할 권리

제32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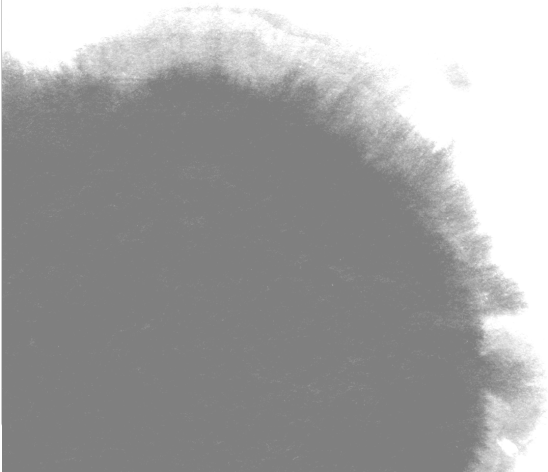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제37조: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6

## 제6조 사생활의 보호





##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1.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or her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or her honour and reputation.
  2. The child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요약

제16조는 모든 아동이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한다.

앞서의 3가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제16조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 제정된 기본적 시민 권리를 특별히 아동에게 적용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간섭”과 “공격”이라는 단어 앞에 “위법적인”이라는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아무도”이러한 간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17조의 표현은 아동권리협약과 일치한다.

제16조는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 아동의 사생활은 가족, 대안적 보호 및 모든 기관, 시설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상황 속에서 보호된다. 더불어, 본 조항은 아동의 가족과 집을 자의적 혹은 위법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한다. 본 조항은 아동이 사는 물리적 환경, 타인과의 관계, 비밀스런 상담과 조언을 포함한 의사소통, 아동에 대한 문서나 서류에 저장된 정보의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쟁점을 제시한다. 불가피하게, 아동의 사생활 보호 권리는 가족 내의 가족구조, 생활형편, 경제 그리고 아동의 사생활을 결정짓는 다른 요소들에 따라 변화한다.

제16조와 더불어, 제40조 2항 (b)(vii)은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되거나, 고발된 아동은 “...모든 절차상의 단계에서 충분히 사생활을 존중받아야만 한다.”고 요구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존중은 또한 가족 소송절차와 아동이 폭력의 희생자일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위원회는 아동사생활을 존중하는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16조 초안 작성 중에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가 조사위원회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능력개발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아동에 의한 권리 실현을 위해 지도와 감독을 제공하는 부모 및 합법적 후견인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협약 5조가 포함됨으로써 최종 해결되었다(E/CN.4/1987/25, pp.26~27; Detrick, p.258).

많은 당사국은 제16조를 언급하며 부모와 아동의 시민적 권리의 관계에 대하여 선언하거나 유보하였다. 초기 보고서를 심사할 때 위원회는 계속해서 선언과 유보의 검토와 철회를 요구하였다. 특히, 권리의 주체자로서 아동에 대한 충분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제시된 유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국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함께 본 조항이 적게 반영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적절한 법률 제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생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특수상황을 통제하는 부차적인 법률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위원회의 권고(니카라과, CRC/C/15/Add.36, para. 34)에 대하여, 국내법을 제정(아동과 청소년 규약)이 아동의 사생활 권리를 보호, 보장한다는 사실을 환영한다(제16조).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권리의 실제적 이행을 통제할 부차적인 법률이 부족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아동의 사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절차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법적 개혁과 적절한 자원 분배를 계속할 것을 격려한다...(니카라과, CRC/C/15/Add.108, para. 28)."

아동권리위원회는 제16조에 제기된 특별한 상황을 확인했다. 한 가지 예는 학교에서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아동 혹은 그의 부모의 종교 기록을 요구하는 한 당사국의 규정과 또 다른 당사국은 아동의 졸업증명서, 신분증과 여권을 요구하는 규정이 다(인종출신 또한 기록 됨).

"위원회는 비록 아동이 강제 종교교육을 거절하기를 원하는 체제가 존재할 지라도, 그들의 부모가 제출하는 믿음에 대한 형식적인 요구는 아동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은 비차별의 일반원칙과 사생활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의 종교교육에 대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노르웨이, CRC/C/15/Add.23, paras. 9, 23)."

"위원회는... 더 나아가 여권에 인종출신을 기록하라는 요구를 우려한다."

"시민 권리의 영역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은 제2조(비차별의 원칙)과 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와 관련하여, 아동을 포함하여 국적 신분증에 제기된 종교, 인종출신뿐만 아니라 시민의 범주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부정하거나 비난할 만한 모든 가능성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미얀마, CRC/C/15/Add.69, para. 34)."

"위원회는 예를 들어, 학생의 중학교 졸업증명서가 그리스 정교회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 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가해지는

행정상의 보고와 사회적 압력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종교가입을 보장하며 예를 들어, 학교 졸업증명서에 포함된 정보 및 내용으로 비차별과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동권리가 침해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라고 권고한다(그리스, CR/C/15/ Add.170, paras. 44 , 45)."

"...더 나아가 위원회는 여권에 인종출신을 기록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거듭 지적하였다(라트비아, CRC/C/15/Add.142, paras. 23, 24)."

위원회가 라트비아의 두 번째 보고서를 심사할 때,

"..."여권에 인종출신을 기록하는 의무 요구사항을 없애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라고 했다(라트비아, CRC/C/LVA/CO/2, para. 28)."

## 아동에 대한 비밀보장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내용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일반논평 No.4에서, 청소년 건강과 관련하여 비밀보장과 사생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청소년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조언과 상담을 존중 할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엄격하게 존중할 것을 격려한다(제16조). 건강관리제공자는 협약의 기본 원칙을 명심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의료처치에 대한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오직 청소년의 동의하에 공개되거나 혹은, 성인의 비밀유지에 위반되는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어 공개된다. 부모나 다른 성인의 참여 없이 상담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다고 여겨지는 청소년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치료 등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3, CRC/GC/2003/4, para. 11)."

일반논평은 또한 사생활, 비밀보장, 의료치료 과정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한 동의과정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언급한다:

"사생활, 비밀보장 그리고 의료치료에 대해 정보를 근거로 한 동의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a) 청소년이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 혹은 규정은 연령을 명시하

거나 혹은, 아동의 발달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b) 조항은 청소년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권리를 위하여 건강 담당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치료계획을 알려주고,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치료에 동의한다(CRC/GC/2003/4, para. 33)."

제1조(아동의 정의)에 대한 보고지침서는 아동이 “부모의 동의 없이 법적, 의료적 상담”과 “부모의 동의 없이 의료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최소 연령에 대한 정의를 찾았다. 이것은 사생활 문제와 관계있다. 예를 들어, 피임 그리고 낙태가 허용되는 곳에서 낙태(제1조)등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구할 아동의 권리가 있다. 협약은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5조는 아동 역량발달에 맞도록 부모의 감독과 지도가 제공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의료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은 종종 환자나 내담자의 사적 비밀을 존중하는 윤리 규약을 가지고 있다. 환자 혹은 내담자가 아동일 때, 협약의 원칙과 조항은 특별히 부모와 관련한 아동권리의 범주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회는 때때로 아동의 관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밀보장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된 HIV/AIDS 검사와 같은 의료상담 및 치료에 대한 서비스 청구서가 부모에게 발송될 경우, 의사와 아동의 비밀을 유지하는 관계가 위배되고, 아동의 권리가 손상될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제12조, 16조에 따라 당사국이 의료 조연과 치료를 아동이 적절한 연령이 되고, 성숙하였을 때 비밀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다(네덜란드, CRC/C/15/Add.114, para. 19)."

위원회는 남아프리카의 순결검사 실행에 대한 사생활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또한 소녀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순결검사의 전통적 실행에 대하여 우려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은 순결검사가 신

체적, 정신적으로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면에서 위원회는 협약의 제16조와 24조 3항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전통방식을 바꾸고 순결검사 실행을 단념할 수 있도록 대중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인식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소개할 것을 권고한다(서아프리카, CRC/C/15/Add.122, para. 33)."

##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1998년 인권위원회는 사생활 권리를 우려하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17조에 관한 상세한 일반논평을 발간했다.

- 개인은 국가 뿐 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 국가는 이러한 간섭을 막기 위하여 법률적 조치 및 다른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 간섭은 오직 법에서 정의된 방법으로만 발생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의적이지 않아야 하고, 협약의 조항, 목적,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합당한 특수 상황이어야 한다.
-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절한 치료 방안을 제공한다.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은 제17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사국은 제17조에서 다루고 있는 비합법적이며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에 관해 관심이 거의 없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부의 법률 그중에서도 규정은 권리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위법”이라는 표현은 어떤 간섭도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 의해 인정된 간섭은 오직 법을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하며 그 자체는 협약의 조항, 목적 및 목표와 일치하여야 한다.”

“자의적 간섭이라는 표현은 또한 제17조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와 연관이 있다. 위원회의 관점에서, ‘자의적 간섭’이라는 표현은 또한 법아래 규정된 간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자의적 개념의 도입은 법에 규정된 간섭이라도 조항, 목적 및 목표와 일치하여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합법적 간섭”인 국가의 합법적 체제 하에 설립된 당국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함을 제안했다.

“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가적 간섭을 통제할 권리가 주어진 당국에 관하여, 협약의 17조에 제공된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당사국은 실제 아동권리에 위배되는 실행이 법의 범주의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보고서 내에 명확히 언급해야 한다. 당사국 보고서는 또한 자의적이거나 위협적인 간섭에 대해 제기된 불평에 대한 정보와 그런 경우에 제공되는 대책 뿐 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통계자료들을 포함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사생활 보호는 부득이하게 상대적이다. 하지만, 합법적인 공공당국은 협약에서 인정되는 사회의 이익에 핵심이 되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6, 1988, HRI/GEN/1/Rev.8, para. 7, p.182).”

## 기관에서 사생활

기관, 특히 거주기관과 보호기관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물리적 환경, 복잡함, 적절한 관리 부족 등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사실, 코스타리카 초기 보고서는 큰 기관과 고아원의 폐쇄를 아동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명시했다 (코스타리카, CRC/C/65/Add.7, paras. 122~124).) 또한, 감시 비디오 사용은 아동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제16조는 아동의 사생활 권리가 법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관에는 개인 공간, 화장실과 욕실의 디자인 등을 포함한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사안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국제규칙 (아래 참조)에서 다루고 있으며, 모든 기관의 배치와 동등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 3항은 아동의 돌봄과 보호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서비스 시설이 합법적 당국에 의해 수립된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을 요구한다. 기준은 협약의 조항을 반영하며,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신과 전화 대화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협약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반면, 위원*

회는 기관에서 이동을 위한 규칙, 규정과 실행에 대한 정보의 부족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러한 규칙, 규정과 실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출할 것과 사생활 권리 침해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다루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 할 것을 권고한다(우즈베키스탄, CRC/C/URB/CO/2, paras. 34, 35)."

2006년 12월에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사생활 권리를 강조 한다. "어떤 장애인도 거주지나 생활환경에 대하여 그들의 사생활, 가족, 집, 통신, 의사소통의 다른 형태, 명예나 신망을 공격당하는 것과 같이 자의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간섭당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사국은 장애인의 사생활, 건강 그리고 재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보호해야만 한다(제22조)."

위원회는 아동 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대안적 양육에 관련된 사람들과 아동이 소유한 물건들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고 아동이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뉴질랜드, CRC/C/15/Add.216, para. 31)."

"위원회는 아동의 소유물을 조사함에 있어서, 아동의 사생활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지 않는 것과 기관의 직원이 아동의 시적인 통신을 간섭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권고 한다:

- (a) 시적인 통신과 개인 소유품의 조사에 있어서 존중을 가지고 완전히 아동의 사생활 권리 이행을 보장하라.
- (b) 아동복지기관이 협약 16조항에 부합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최소기준을 개정 하라(일본, CRC/C/15/Add.231, paras. 33, 34)."

### 자유가 제한된 아동들을 위한 사생활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유엔의 조항은 다양하다. 첫째, 자유를 박

탈당한 청소년은 국가나 국제법 하에 자유의 박탈과 양립하는 시민권 혹은 다른 권리, 어떠한 권리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 13의 일반원칙이 있다. 또한, 문서, 디자인과 물리적 환경, 개인소지품, 방문, 통신 그리고 직원의 행동과 관련된 특정한 조항이 있다.

청소년 활동 및 생활시설의 디자인과 물리적 환경을 구성할 때 청소년의 사생활을 위한 요구(rule 32)가 고려되어야 한다. 화장실은 사생활, 청결, 품위가 확보된 상태에서 모든 청소년이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이에 걸 맞는 충분한 규격이어야만 한다(rule 34). 규칙 35는 “개인소지품의 소유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며, 사생활 권리의 기본 요소이다. 모든 청소년은 개인소지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개인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충분히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사생활, 연락, 가족 및 변호사와 제한되지 않은 교류가 존중되어야 한다(rule 60). 모든 직원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특히 자신의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ule 87(e)).

## 청소년 재판에서의 사생활, 이동보호와 다른 절차

제16조와 더불어 제40조는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거나 기소된 아동의 경우, “모든 절차에서 아동의 사생활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반논평 No.10, “청소년 재판에서 아동의 권리”에서 위원회는 개인 사생활 권리에 대해 언급한다.”

*“아동의 사생활 권리는 제16조항에 있는 사생활 보호권을 반영하여 모든 절차에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절차상의 단계” 는 법 집행(예를 들어, 정보와 신분확인 요구)의 초기 접촉으로부터 당국에 의한 최종 결정 혹은 보호 및 감독으로부터 해방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 특정한 문맥은 부당한 공표 혹은 꼬리표로 인한*

아동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낙인 될 수 있고, 교육 혹은 일할 기회를 얻을 때, 혹은 아동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범죄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어떠한 정보도 출판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당국은 아동에 의한 범죄와 관련한 보도 자료의 출판을 자제해야 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당국은 이러한 보도 자료를 통해 아동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 보도기자는 규율로 처벌받아야 하고, 필요시에는 형법처벌을 받아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0, 2007 CRC/C/GC/10, para. 23I)."

위원회는 아동의 사생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법원이나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동의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특별한 경우의 제외 가능성을 두고)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 규칙은 법원의 특별 배려로 전문가를 배석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청소년 재판의 공공청문회는 법원의 서면결정과 함께 특정 사건에서만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아동의 항소에 의해서만 공개된다.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아동과 관련된 재판과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이 규칙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 이 규칙의 예외는 아주 제한적이어야 하며, 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판결은 아동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채, 법 심의과정에서 공포되어야 한다.

"사생활 권리(제16조)는 법정 혹은 다른 권력을 가진 당국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의 이행과정에서 아동의 신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참여를 요구한다. 또한 사생활 권리는 아동범죄자의 기록이 엄격하게 기밀로 보관되어야 하고 사건의 조사, 판결과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3자를 제외하고는 비공개이어야 한다. 낙인이나 편견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동범죄자의 기록이 성인 소송절차('베이징 규칙', 규칙 21.1과 21.2 참조)나 추후 판결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아동이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아동 이름의 범죄 기록이 삭제되거나 혹은 가능하다면, 특정 조건 아래(예를 들어, 마지막 유죄 후 2년 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 어떤 특정 제한이 되면 아동의 요청 하에 심각한

범죄를 삭제해 주는 규칙을 소개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0, 2007, CRC/C/GC/10, para. 23, 협약 제40조 참조)."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연합최저기준규칙인 “베이징 규칙”은 협약 제40조의 조항을 확대하였다. 규칙 8.1은 “청소년의 사생활 권리가 부당한 공표나 꼬리표에 의해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진술한다. 원칙적으로, 청소년 범죄자의 신분이 드러나는 어떠한 정보도 출판되어서는 안된다.

이 규칙에 대해 공식 논평은 설명한다. “규칙 8은 청소년의 사생활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은 특히 낙인화에 영향을 받는다. 범죄학 연구는 청소년의 꼬리표 과정에 관하여 “범법자” 혹은 “범죄자”로서의 고정된 신분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규칙8 또한 사건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범죄임이 주장되거나, 유죄가 입증된 젊은이의 이름)를 대중매체에서 공표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는 최소한의 원칙에서 보호되고 지지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사생활 특별보호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에 규정된다. “범죄사건이나 법적 소송에서 내려진 어떤 판결이라도 공표되어야 하는데 청소년의 권리와 관계되는 것 혹은, 부부간의 논쟁 혹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제14조 1항).”

“아동과 대중매체”에 관한 일반논평의 날의 개요에서 위원회는 청소년 재판 사례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및 가족 문제에 관한 보도를 다루는 대중매체에서 아동의 사생활 권리의 중요함을 언급했다(제17조).

*“대중매체 자체가 아동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은 범죄적 행위, 성 학대 그리고 가족문제에 관한 보도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몇몇 국가의 대중매체에서 자발적으로 아동의 사생활 권리 보호 가이드를 존중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적 기준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아동권리위*

원회, 제17회기 보고서, 1996.1, CRC/C/50, Annex.IX, p.80)."

일반논평의 권고 중 하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도를 위한 특정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존엄성을 보호하면서, 아동학대를 보도하는 방법, 특별히 아동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13회기 보고서, 1996.9/10, CRC/C/57, para. 256)."

이러한 사안은 개별 국가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위원회는 협약 16조의 명백한 위반인 '아동범죄자, 강간 희생자나 어려운 환경의 아동신분이 대중매체에 노출 될 것'을 계속해서 우려했다(para. 124)."

"위원회는 네팔의 모든 방송매체들이 아동의 사생활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규약 혹은 자율통제와 같은 절차를 설립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방송전문가들에게 적절한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아동의 사생활 권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네팔, CRC/C/15/Add.261, paras. 45, 46)."

"위원회는 특정 신문이 아동의 사진과 이름을 출판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학대상황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아동의 신분을 쉽게 알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도하는 것과 같이, 아동이 학대의 희생자이며, 언론에 의해 언제나 존중받지 못하고, 아동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하여 당사국의 관심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중매체에 의한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할 법률이 없다고 언급한다."

"위원회는 아동의 사생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윤리규범 초안 작성을 포함하여,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고충처리위원회)의 창설을 지원하도록 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편집장과 보도기자에게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모리셔스, CRC/C/MUS/CO/2, paras. 35, 36)."

"아동의 사생활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 법률제정에 대한 언급과 당사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협약 16조항과 아동의 사생활 존중에 대한 국내법의 명백

한 위반인 아동피해자의 신분과 사진이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태국의 모든 방송매체들이 아동의 사생활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규약 혹은 자율통제와 같은 절차를 설립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방송전문가들에게 적절한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아동의 사생활 권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태국, CRC/C/THA/CO/2, paras. 35, 36)."

양육이나 입양을 위한 아동의 공공광고는 정보에 입각한 아동의 동의 없이 그들의 사진이나 자세한 설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사생활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이동에 대한 기록

대부분의 아동은 자신의 건강, 교육, 사회서비스와 청소년 재판에 대한 기록이나 보고서를 가지고 있다(제8조). 사생활 권리는 아동이 다음과 사항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 자신에 대하여 저장된 정보의 존재에 대하여 아는 것.
- 왜 이러한 정보가 저장되고, 누구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가를 아는 것.
- 이러한 기록이 사람의 손으로 혹은 전자방식으로 저장되었던지 간에 접근 할 수 있는 것.
- 필요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독립체로서 의지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것.

법률은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협약전체와 일치해야 한다. 아동은 자신 외에 누가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국제규약의 사생활 권리와 비슷한 조항에 대해 그것의 일반논평에서 언급했다. "공공당국, 개인 혹은 조직에 의해 취합되고 컴퓨터, 데이터 뱅크 그리고 다른 장치에 저장된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조치는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가 법적권한을 갖지 않은 다른 사람에 의해 접근 및 이용되지 않고, 규약에 모순되는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도록 당국의 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개인은 어떤 데이터

가 무슨 목적으로 저장되었던지 간에, 알기 쉬운 형태로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모든 개인은 공공당국, 개인 혹은 조직이 자신의 자료를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아동관련 기록이 부정확한 자료를 포함, 수집하거나 법의 조항에 거스른다면 모든 개인은 교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인권 위원회, 일반논평 No.16, 1988, HRI/GEN/1/Rev.8, para. 10, p.183).”

소년사법제도에서 사용되는 문서와 관련하여, “베이징 규칙(적절한 최소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위원회가 추천함)”은 규칙21(1)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청소년 범죄자의 기록은 제 3자에게 엄격하게 기밀로, 비공개로 보관되어야 한다. 기록의 접근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과 정식으로 위임된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 규칙 21(2): “청소년 범죄자의 기록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연 관되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공식 논평은 다음과 같이 언급 한다. “규칙은 기록 이나 문서와 관련된 이익 간의 충돌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경찰, 기소자 측과 다른 권한자들의 이익 대 청소년 범죄자의 이익 조정(rule 8 참조). “정식으 로 위임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중에 일반적으로 연구자를 포함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유엔규칙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다. “법적 기록, 의료기록 그리고 징계와 관련된 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들 그리고 양 식, 내용 및 세부사항이 연관된 모든 기록들은 최근까지 계속해서 보관되어야 하며, 오직 위임받은 사람에게만 접근 가능해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류 된 비밀 개인파일에 보관되어야 한다. 모든 청소년은 부정확하고 근거가 없거나, 부 당한 진술을 수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파일에 담겨있는 사실이나 의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3자의 요 청에 의해 파일에 접근하고 상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양도에 대해서 청소년의 기록은 봉인되어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삭제되어야 한다(rule 19).”



## “가족(Family)”

“가족”이라는 용어는 아동권리협약에서 부모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광범위한 해석을 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 심사에서 이 해석을 강조해왔다(제5조).

위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인권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사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 한다. “가족”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당사국의 사회에서 이해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규약은 17조항의 광범위한 해석을 요구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6, 1988, HRI/GEN/1/Rev.8, para. 5, p.182).

아동의 가족 간섭을 허락하는 협정은 모두 법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자의적이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협약의 다른 원칙 및 조항들과 일치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상황 시 합당해야만 한다. 제9조는 특별히 부모로부터 아동의 격리 조건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제16조는 아동에게 중요할 수 있는 형제, 조부모와 같은 더 광범위한 가족으로 확대한다. 아동은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이의절차와 적절한 개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협약 37조 c항은 특히, 자유가 박탈된 아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 “가정(Home)”

인권위원회는 “가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영어에서 “home”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보통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가정”을 조사하는 것은 필요한 증거를 위한 조사로 제한되어야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6, 1988, HRI/GEN/1/Rev.8, para. 8, p.182).

따라서 “가정”은 어떤 아동들에게는 다양한 범주의 거주기관, 기숙학교, 유치장, 장기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대안적 양육 장소가 될 것이다.

아동의 가정에 간섭할 수 있도록 허가된 협정(예를 들어, 조사)은 법에 제시되어야 하고,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규약의 다른 원칙 및 조항들과 일치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합당해야만 한다. 아동의 가정을 빼앗는 것은 이러한 기준에 일치해야만 한다. 대안적인 양육시설에 사는 아동에게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다른 가정으로 옮겨야 하거나, 시설의 폐쇄와 같이 불합리하게 아동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아동은 권리가 침해당할 경우 이의절차와 적절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 “통신”

모든 아동은 어느 곳에 있든지 편지, 전화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의사 전달체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위원회는 오스트리아에게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사생활 권리가 존중되지 않음으로 우려한다. 예를 들어, 사적인 통신이 매일의 생활에서 충분히 존중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은 부모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생활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캠페인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오스트리아, CRC/C/15/Add.251, paras. 33, 34)."*

예를 들어, 아동통신의 공개, 해독,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은 법에 제시되어야 하고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며 규약의 다른 원칙 및 조항들과 일치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합당해야만 한다.

인권위원회는 사생활 관련 조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17조에 순응한다는 것은 완전함과 기밀성이 합법적으로 사실상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은 간섭, 개방

혹은, 읽혀지지 않은 채 수신인에게 전해져야만 한다. 전자 혹은, 다른 방법에서의 감독이나 전화 및 전보와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의 차단, 전화 도청과 대화의 녹음은 금지되어야 한다.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6, HRI/GEN/1/Rev.8, para. 8, p.182).”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동권리협약 제37조 하에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예외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에 대해 유엔규칙은 언급한다. “모든 청소년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서면이나 전화로 의사소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원되어야 한다. 모든 청소년은 통신을 받을 권리가 있다(rule 61).”

###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하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국가는 언어적 공격(욕설), 서면 공격 혹은 대중매체 공격(문서 비방죄)으로부터 성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이 법 아래에 평등하게 보호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법은 보호를 해야 하고, 아동은 이러한 책임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동일하게 표현된 조항을 언급한다. “17조는 국가는 개인의 명예와 신망을 보호할 충분한 법률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조항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법적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6, 1998, HRI/GEN/1/Rev.8, para. 11, p.183).”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6년 “아동과 대중매체”에 대한 일반논평(General Discussion)의 날에 아동권리위원회는 대중매체에 의해 묘사되는 아동의 개별적이고 집합적인 이미지 모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제17조).

*“대중매체가 아동의 “이미지” 를 부여한다는 보고서에서; 대중매체는 아동이 누구이며,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미지*

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알려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대중과 정치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유익한 정보를 알리는 것은 아동권리에 이익이 된다.(아동권리위원회, 제17회기 보고서, 1996.1, CRC/C/50, Annex.IX, p.80, 81)."

위원회는 니카라과에서의 아동에 대한 대중매체의 공격에 대해 언급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성년자로서 아동의 인성과 신분에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이 종종 대중매체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협약의 16조, 17조와 관련하여 해로운 정보와 매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사생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한 원칙과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한다(니카라과, CRC/C/15/Add.36, paras. 17, 34)."

##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제16조 2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사생활 권리의 간섭은 오직 법에서 정의된 방법, 즉 자의적이지 않아야 하며, 협약의 조항 및 목적, 목표를 따라야 하고(간섭은 아동권리협약 제16조와 관련하여 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따라야만 한다.) 그리고 특수 상황에서 합리적이어야만 한다고 언급한다. 더불어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구제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6, 1988, HRI/GEN/1/Rev.8, para. 6, p.182).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16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책임 있는 부서와 기관의 확인과 협조가 이루어지는가?(제16조는 사회복지, 사법, 교육 그리고 대중매체 부서와 특히 관련이 있음)
- 관련된 비정부 기구/시민사회 협력자의 확인?
- 사법권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아동을 위해 법률, 정책과 관습이 조항과 양립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전반적인 검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목표의 확인과 과정의 지표가 필요한 곳을 포함하는가?
- 아동의 권리에 더 도움이 되는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다른 적절한 국제 기준을 승인하는가?
-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곳을 포함하는가?

(이런 기준들은 규약을 전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부의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필수적인 자원의 예산 분석과 배분
- 감독과 평가를 위한 체계의 개발
- 성인과 아동들에게 제5조의 적용을 널리 알리는 것
- 적절한 교육의 개발과 인식의 증가(16조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 교육 혹은 아동, 가족 그리고 부모교육을 포함 함)

### ● 제16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법률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인지하는가?

- 사생활
- 가족
- 가정
- 통신

- 법률은 협약의 다른 모든 원칙 및 조항과 일치하는가?
- 법률은 이러한 간섭을 예방하는가?
  - 국가 기관에 의해
  - 민간 조직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 의해
- 법률에 명시된 아동의 사생활, 가족, 집 그리고 통신에 대한 간섭이 법률에서 허락된 유일한 간섭인가?
- 각각의 경우, 법률은 이러한 간섭이 다음과 같음을 보장하는가?
  - 자의적이지 않은가?
  - 협약의 모든 다른 원칙과 조항을 따르고 있는가?
  - 특수한 상황에서 합당한가?
  - 이러한 법률 보호는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가능한가?
- 아동의 사생활에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다음기관에서 이루어지는가?
  - 집
  - 대안적 양육의 모든 형태
  - 학교
  - 국가 혹은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기관
- 거주지와 유치시설에 있는 아동과 관련하여, 아동의 사생활 권리보호에 특별한 보호책이 있는가?
  - 물리적 환경과 디자인
  - 방문과 통신
  - 개인소유물
  - 직원의 품행과 교육
- 아동은 부모의 동의 없이 비밀상담을 받을 권리를 갖는가?
-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 어떠한 연령에서도 가능한가?
  - 특정 연령으로부터 가능한가?
  - 아동의 성숙과 능력과 연관하여 제한된 기준 하에 가능한가?
- 의료문제와 관련하여
  - 어떠한 연령에서도 가능한가?
  - 특정 연령으로부터 가능한가?
  - 아동의 성숙과 능력과 연관하여 제한된 기준 하에 가능한가?

법률은 아동의 확대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가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가?

법률은 아동의 집 외의 대안적인 양육 장소를 포함한 그들의 집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가?

아동의 편지, 전화 그리고 모든 다른 수단을 포함한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협약의 원칙을 따르는가?

아동의 집

대안적 보호

시설보호

유치시설

아동은 수작업이나 전자방식을 통하여 저장된 자신에 대한 문서 혹은 기록된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지는가?

정보의 존재를 아는가?

정보의 수집과 저장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가?

필요시 이의를 할 수 있고, 정보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가?

각각의 경우에 정보에 접근통제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정보접근권을 가진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며 그 목적을 아는가?

정보접근권을 가진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가?

권리 실현에 있어 어떠한 논쟁에서도 독립된 인격체로 호소할 수 있는가?

이러한 권리의 위반 상황 시, 아동은 적절한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

위반 상황에서 아동은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책을 갖는가?

이러한 권리 실행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과 성숙, 이해도에 근거한 제한이 있는가?

법률은 아동의 신분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공표하지 않는다는 아동의 사생활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 보장하는가?

아동이 형사법 위반으로 주장, 인지되어지고, 기소된 경우

아동보호조사와 절차에 관계된 아동의 경우

가족소송 과정에 개입된 아동의 경우

- 16조 하에, 아동이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 시, 이를 재검토하고 재판결할 조항이 있는가?
- 법률은 아동의 명예나 신상에 대한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가?
- 본 조항 하에, 대중매체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고무하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 ● 주의사항

협정은 분리될 수 없고, 그 조항들은 상호의존적이다. 제16조는 단독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제2조: 사법권 내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 없이 각각의 아동을 위해 인식되는 모든 권리

제3조 1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제6조: 생명과 가능한 최대한도의 생존과 발전보장 권리

제12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 존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서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질 기회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16조의 실행과 특별히 관련된 조항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제8조: 신분의 유지

제9조: 가족 소송절차에서의 사생활

제17조: 미디어의 역할

제19조: 폭력의 희생자를 위한 사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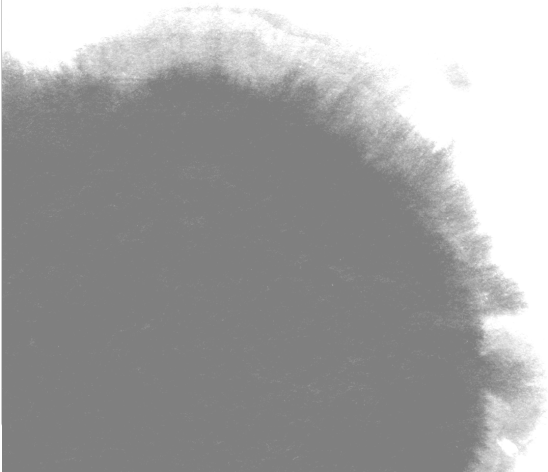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제20조: 대안적 양육에서의 사생활

제40조: 청소년재판 과정에 관련된 아동의 신분노출 금지



# 17

## 제17조 정보접근권





## 제17조 정보접근권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t function performed by the mass media and shall ensure that the child has access to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especially those aimed at the promotion of his or her social, spiritual and moral well-being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 (a) Encourage the mass media to disseminate information and material of social and cultural benefit to the child and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article 29;
- (b)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oduction,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cultu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 (c) Encourage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children's books;
- (d) Encourage the mass media to have particular regard to the linguistic needs of the child who belongs to a minority group or who is indigenous;
- (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from information and material injurious to his or her well-being,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13 and 18.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 및 국제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리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리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요약

제17조항은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대중매체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보장하는 당사국의 일반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제13조)와 최대한 발달(제6조)의 아동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중매체는 제29조에서 제시한 교육의 세부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아동에게 유익하고, 긍정적인 자료들이 보급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대중매체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동의 참여할 권리를 격려, 존중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언급하고 있다. 대중매체는 원칙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협약 42조의 충분한 이행을 통해서 아동권리협약을 아동과 성인에게 널리 보급한다. 대중매체는 또한, 아동권리의 침해를 폭로하고,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17조항은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인쇄물 그리고 전시품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적, 도덕적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대중매체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간단한 조치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초기 토론에서 한 구성원이 대중매체는 해악보다 이익이 더 많으며, 본 조항은 긍정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E/CN.4/L/1575, pp.19, 20, Detrick, p.279). 본 조항의 마지막 버전은 조항의 전체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5가지의 행동지침을 제안한다. 비록 이 행동이 당사국의 보고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에서 주목을 받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유해한 매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최종 관심사이다.

## 아동과 대중매체

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 일반논평의 날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다음의 권고사항은 일반논평의 날의 총회가 열리는 동안에 작성되었다.

1. 아동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아동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수집해야만 한다.
2. 인터넷 내에서의 아동포럼: 컴퓨터의 광범위한 정보공간의 이용. 유니세프 최초의 “청소년의 목소리(voice of youth)”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국제 토론을 위한 실용적인 장소로 홍보되어야 한다.
3. 아동도서관: 이동 아동도서관의 활성화와 공공도서관 내의 아동 관련 자료가 문서화되어야 하고, 확대 배치되어야 한다.
4. 대중매체 교육: 학교는 대중매체에 대한 지식, 대중매체의 영향과 기능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은 광고를 포함한 대중매체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 가뿐 만 아니라, 대중매체 활용방법을 참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5. 아동 대중매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아동 중심의 영화와 비디오 뿐 만 아니라 아동을 위한 책, 잡지, 간행물, 음악, 영화 그리고 다른 예술적 표현의 생산과 확산을 위하여 예산상의 지원 확보가 필요하다.
6. 대중매체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기업의 건설적인 합의: 특정시간동안 폭력적인 프로그램 방영금지, 프로그램 방영 전 그것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소개, 소비자들이 특정유형의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V-chip”과 같은 기술의 개발 등과 같은 관련 기업의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자발적인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기구를 설립하고 도입하는 등의 활동들이 수집, 소개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행동규범 존재의 효율성 분석, 직업지침, 언론 협의회, 방송 협의회, 언론 옴부즈맨과 비슷한 기구들이 포함된다.
7. 미디어 시장에서 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국가계획: 정부는 미디어 시장의 부정적인 경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처방안을 조성하고, 미디어에 대한 지식 확산, 전자 혹은 다른 형태의 미디어와 관련하여 자녀를 지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지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워크숍이 조직되어야 한다.
8. 아동권리협약 제 17조항의 이행에 대한 권고: “아동복지에 대한 정보와 중대한 해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서”의 개발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또한 아동권리위원회의 보조수단으로 제17조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제공된다.

9. 아동학대 보도에 관한 구체적 지침: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편집을 통해 어떻게 아동학대를 보도하면서 동시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여야 한다.
10. 아동권리에 대한 편집교육을 위한 자료: 아동권리 기준에 대한 자료를 대중매체 기관 및 학교에게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관련 자료가 출간되어야 한다. 아동발달을 지원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해 일하는 국제, 지역 그리고 국내 기구가 있어야 한다.
11. 미디어 감시단체를 위한 네트워크: 다양한 국가에서 대중매체 감시기구의 긍정적인 역할이 장려되어야 하고, 국가 간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 단체의 목적은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미디어 윤리와 아동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12. “아동권리 통신”에 대한 편익: 관심이 있는 보도기자들은 “아동권리 통신” 목록에 서명을 받아 초대한다. 그들은 중요한 아동이슈나 다른 사람에 의한 흥미로운 보도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국제적 아동권리 공동체에 미디어 조연자로 활동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제13회기 보고서, 1996.9/10, CRC/C/57, paras. 242 이하 참조)

##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아동과 대중매체”에 대한 일반논평의 날의 보고서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제17조, 아니 그 이상의 범위를 포함한 아동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관련된 대중매체의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대중매체가 협약의 원칙과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많은 국가에서 대중매체는 이미 협약과 그 내용을 알리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대중매체는 또한 아동 권리의 실제적 실행을 모니터링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이 대중매체에 접근 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대중매체는 아동에게 그들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협약의 한 가지 원칙은 아동의 견해를 진술할 수 있고, 존중받아

야 한다는 것이다(제12조). 이것은 또한 표현, 사고,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들을 반영한다(제13~14조). 아동이 정보 자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 대중매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조항들의 정신이다. 이것은 아동과 소통하는 대중매체가 존재하는 것을 요구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몇몇 국가에서 아동중심의 대중매체의 개발을 실제로 시도해 보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몇몇 일간신문은 아동을 위한 특별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시 어린 청취자를 위한 방송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아동권리위원회, 제17회기 보고서, 1996.1, CRC/C/50, Annex IS, pp.80, 81. 미디어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위원회 논평, 하단 참조).”

위원회는 “아동의 진술할 권리” 에 대한 2006년 일반논평의 날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다시 논의했다.

*“위원회는 대중매체의 핵심 역할은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권리의 인식을 활성화시키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대중매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자원들을 사용하도록 격려하며, 아동이 프로그램의 개발, 자신의 권리의 시적을 대중매체가 이끌어 가도록 하였다(아동권리위원회, 제43회기 보고서, 2006.9, 일반논평의 날, 권고안, para. 36).”*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 을 보장-특히 아동의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위원회는 제17조를 아동의 시민 권리로 여기며 제13조, 14조, 15조, 16조, 그리고 17조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의 시민권리 그리고, 자유의 이행에 대한 부족한 관심에 대하여 자주 우려를 표하였다.

제17조는 (a)와 (e)단락 내에 다섯 가지 세부 전략으로 그려진 전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그들은 제12조에 아동의 참여권 그리고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제13조 1항에 표현에 대한 자유권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제6조의 아동의 최대한도 발달, 또한 교육의 목표(제29조), 건강교육의 필요성(제24조)을 장려하는 미디어의 역할과 연관이 있다. 더불어, 제 31조는 아동이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고 완전하게 참여할 권리와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는 국가의 의무를 진술한다. 이것 또한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유아기의 권리 실행”에 대한 일반논평 No.7에서 위원회는 어린 아동을 위한 정보의 필요성(그리고 또한 해로운 정보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유아기는 어린 아동의 능력과 흥미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보급하고 사회적, 교육적으로 아동에게 유익하며 아동의 환경, 문화, 언어와 같은 국가적,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장려되어야 하는 출판사와 대중매체 생산자를 위한 전문가의 시장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35).”*

위원회는 정보 및 다양성의 한계를 통제하는 것과 적절한 정보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의 차이가 나는 것-때때로 특정 지역 예를 들어, 시골-에 대하여 주목하였으며 해결책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아동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Sango 언어로 된 자료를 포함하여 신문, 도서관 그리고 라디오에 대하여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제안하였다(중앙아프리카공화국, CRC/C/15/Add.138, para, 42, 43).”*

*“위원회는 섬 밖에 살고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및 국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도서를 생산하고 국내, 특히 섬 지역*



에 보급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이 조치에 대하여 학교에 컴퓨터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마셜 아일랜드, CRC/C/Add.139, para, 32, 35)."

"위원회는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어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아동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당사국의 몇몇 고립된 지역의 아동들, 그리고 특정 민족이나 종교의 언어 혹은 문화 단체들이 복지 혹은 법적 보조, 그리고 다문화주의적 본질을 충분히 반영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권고 한다:

- (a) 모든 아동과 가족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보장하고, 그리스어로 쉽게 의사소통 하지 못하는 고립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추가적인 노력을 해라.
- (b)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당사국 국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라(그리스, CRC/C/15/ Add.170, paras, 46, 47)."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 한다:

- (a) 아동이 적절한 정보에 대하여 불충분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
- (b)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특별히 불리하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 (a) 모든 아동이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을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정교화, 학교와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디오와 신문의 설비, 예를 들어 순회 영화 보기(모잠비크, CRC/C/15/Add.172, paras, 36, 37)."

"위원회는 정보에의 접근성과 관계있으나 멀리 떨어져있고 변두리 지역에 사는 많은 아동들에 대한 우려를 낳은 1993년 아동법 제22조는 적합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제17조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아동 특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변두리 지역에 사는 아동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미얀마, CRC/C/15/Add. 237, paras, 36, 37)."

"위원회는 정보의 모든 원천이(특히, 미디어) 정부의 지배를 받으며, 다양성이 허락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게다가, 위원회는 최근 인종차별철폐 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점을 상기하면서, 인터넷을 포함하여 외국 문화와 대중매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협약 제13조, 제17조와 함께 아동이 다양한 국내 및 국제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당사국은 인터넷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투르크메니스탄, CRC/C/TKM/CO/1. paras, 32, 33)."

## 건강증진

아동권리협약에서 정보에 대한 아동의 필요와 관계있는 또 다른 부분이 제24조에 나타난다. 이는 당사국은 부모와 아동에게 건강한 발달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제24조 2항 (e)). 대중매체는 역시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두 가지 일반논평을 언급하였다. "아동권리협약 내용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일반논평 No.4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청소년은 자신의 건강과 발달에 핵심이 되며, 사회에 중요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적합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사국의 의무는 청소년이 남학생이거나 여학생이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구별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발달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담배, 술 그리고 다른 물질 등의 이용과 남용,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성적 행동, 다이어트와 신체활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3, CRC/GC/2003/4, para. 26)."

"HIV/AIDS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No.3에서 위원회는 비정규채널(거리의 아동, 공공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 혹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함)뿐만 아니라 정규 방송채널을 통하여 예방과 주의 그리고 무시 및 낙

인, 차별과 투쟁하는 것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일반논평 No.3, 2003, CRC/GC/2003/3, paras. 16, 17). 더 많은 건강 정보에 대한 논의는 협약 제24조를 참고해라.

## 자유가 제한된 아동들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보호에 관한 국제규칙은 미디어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은 신문, 정기 간행물 혹은 다른 출판물을 읽음으로써 혹은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영화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rule 62). 시설에 배치되거나 다른 특수 상황에 있는 아동의 대중매체 접근권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 (a)

제29조 1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제17조는 정보와 자료의 내용을 제29조의 목적에 부합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급할 것을 제안 한다.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에 대한 존중의 진전 :
  - 아동의 부모
  - 아동의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 국가적 가치
    - 아동의 현 거주국
    - 아동의 출신국
  - 아동이 소유한 문명과 다른 문명
-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교육의 목표”에 대한 첫 번째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언급했다.

"대중매체는 제29조 1항을 반영하여 가치와 목적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활동이 이러한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협약 17조에 준하여,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 유익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대중매체를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 2001, CRC/GC/2001/1, para, 21. 협약 제29조 참조)."

위원회는 “이해, 평화, 관용 등”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29조 1항 (d)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 간의 치유와 신뢰형성에 대한 관심과 협약 17조의 정신 아래 국가가 통제하는 대중매체는 다른 민족 집단들 사이에서 관용과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 목표를 거스르는 프로그램 방송은 진퇴양란에 빠질 것이라고 권고했다(크로아티아, CRC/C/15/Add.52. para. 20)."

크로아티아의 두 번째 보고서를 심사할 때, 위원회는 재차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 미디어 그리고 법 등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사회전체에서 문화적 관용이 발전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반복해서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차이'를 이해하는 정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보를 보급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를 장려하는 조치가 부족함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17조와 29조의 정신에 부합하여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 유익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당사국은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적,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에 접근권을 제공해야만 하며, 특히 소수집단에 속한 아동의 언어상 혹은 다른 곤란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크로아티아, CRC/C/15/Add. 243. paras. 22, 35, 36)."

1978년, 유네스코 총회는 국제이해와 평화 증진, 인간의 권리 향상 및 인종차별

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한 기본원칙을 선언하였다.

편협과 관계된 인종주의 체계,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사상에 대항하는 세계 협의(Durban South Africa, 2001년 9월)는 선언에서 인터넷과 같이 인간의 가치, 동등, 비차별,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용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편협과 관계된 인종주의 체계,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사상을 전파하는 새로운 정보통신의 사용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러한 자료에 아동과 청소년이 접근권을 갖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A/CONF. 189/12, Declaration, para. 91).

제29조에서 설명하는 또 다른 목표는 성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여성, 아동”에 대한 일반논평의 위원회 날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언급 한다.

*“...미디어와 광고에서 소녀와 여성을 모욕하고, 착취하는 이미지의 근절이 중요하다. 묘사되는 행동의 가치와 모델이 불평등과 열등함을 만드는데 기여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8회기 보고서, 1995.1, CRC/C/38, paras. 291).”*

2006년 12월에 채택된 장애인 권리협약 하에, 당사국은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기관에 대하여 권장해야 할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의무를 갖는다. 장애인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의 규범1, “인식향상”은 제안 한다. “당사국은 대중매체에서 장애인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도록 권장한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 조직과 협의를 한다.” 더불어, 규범9는 언론매체가 “특히, 장애를 가진 소녀나 여성에 대하여 사회에 보편화 되어 있는 장애인과의 결혼, 장애인의 부모 되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제안한다.

더 나아가 아동의 긍정적 사회화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권고사항은 아동 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을 위한 적절한 기준으로써 Riyadh의 청소년 비행 방지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에 나타나 있다. 다음은 “사회화 과정”에 관한 분야에, 대중매체에 관한 세부 분야이다.

40. 대중매체는 청소년이 다양한 국내 및 국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와 자료에 대

한 접근권을 갖도록 보장한다.

41.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42. 대중매체는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시설, 기회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
43. 대중매체-특히, 텔레비전과 영화는 일반적으로 포르노, 약물 및 폭력을 묘사하는 장면과 폭력과 착취를 보여주는 장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특히 아동과 여성, 대인관계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비하하는 장면을 피하며, 평등의 원칙과 역할을 증진시켜야 한다.
44. 대중매체는 청소년의 약물과 알코올 남용에 관련된 대중매체의 영향력 뿐 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중매체는 균형감을 갖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약물남용 예방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약물복용에 대한 캠페인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7조 (b)**

이 조항은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협약 전체에서 발견된다. 이 조항은 또한 아동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현대 기술은 정보의 즉각적 보급에 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몇몇 정보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과 동시에 교육과 발달을 위한 미디어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7조 (c)**

제17조의 초안 작성 후반기에, 비정부조직이 아동의 독서를 촉진시킬 수 있는 특별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소년 국제 도서위원회는 새로운 세부단락을 제안하였다. “모든 수준에서 아동의 도서 제작과 보급을 통하여 문학과 도서습관을 장려해라(E/CN.4/1987/25, p.7; Detrick, p.287).” 이 제안을 통해 본 조항의 세부

단락(c)이 개발되었다.

유네스코는 수 년 동안 전문조직과 NGO단체들과 함께 아동도서를 출판해 왔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마다가스카르가 아동도서의 접근성을 확보한 것을 격려했다.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립하였다(마다가스카르, CRC/C/15/Add.218, para. 36)."

그리고 라트비아에는

"...당사국에 의해서 특히, 교육적인 도서관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동들 사이에 독서가 장려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트비아, CRC/C/LVA/CO/2, paras. 28 , 29)."

그러나 때때로 우려 또한 표명되었다. 예를 들어:

"협약의 제13조와 17조에서, 위원회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도서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고 있고, 인쇄된 정보의 질과 양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아동의 복지에 해를 끼치는 자료와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기구가 적다는 데 대해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필요하다면, 법률의 입법화 및 재심을 포함하며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카자흐스탄, CRC/C/15/Add.213, paras. 34, 35)."

###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제17조 (d)**

제30조는 종교적 혹은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신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고백,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제29조의 교육목적은 또한 국가적 가치, 문화 그리고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제17조는 대중매체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는데, 예를 들어 소수민족의 언어로 된 자료와 프로그램의 제작 등이다.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제42조)에 대한 논평에서, 위원회는 소수 및 원주민 언어로의 통역의 중요성과 이 일에 대한

대중매체가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어떤 특별하고 추가의 준비가 가능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장애아동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알릴 수 있다.

2006년에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a)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 (b) 공식적인 회의 등에서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 (c)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 (d) 언론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자를 포함한 언론매체를 장려할 것
- (e)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제21조)

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No.9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정보와 통신기술과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와 통신에 접근하는 것은 장애아동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 충분히 참여하면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장애아동과 그들의 양육자들은 장애의 원인, 처리 그리고 예측, 과정을 포함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정보의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아동이 자신의 장애에 잘 적응하도록 할 뿐 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있어 참여하고, 정보로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장애아동은 또한 적절한 기술과 점자와 수화 같은 다른 서비스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장애아동이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와 통신기술 그리고 시스템 뿐 만



아니라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No.9, 2006, CRC/C/GC/9, para, 37. 협약 제23조 참조)."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7조 (e)**

많은 국가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장면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아동발달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아동과 대중매체”에 대한 일반논의의 보고서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미디어의 이러  
한 점과 다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표출되고 있다.  
우선, 프로그램들이 잔인한 폭력과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어떻게 아동을 텔레비전, 영화 그리고 다른 형태의 미디어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다시 한번 자발적인 합의가 시도되었다. 이 특수한 문제는  
아동의 복지에 해를 끼치는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서  
'가 개발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는 협약 17조에서 제기되었다(아동권리위원회, 제17  
회기 보고서, 1996.1, CRC/C/50, Annex IX, p.88)."

“유아기의 아동권리 실행”에 대한 일반논평 No.7에서 위원회는 유아기 아동에  
대한 특별한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기술의 다양함과 접근 가능성 내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들의  
급격한 증가는 특별한 우려를 낳았다. 만일 유아가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인 자료에  
노출되었을 때, 이들이 처하게 될 위험은 더 높다. 당사국은 이러한 면에서, 아동의  
양육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모나 보호자 지원뿐만 아니라 어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디어 제작과 보급을 통제할 것을 권고 받았다(아동권리위원회, 일  
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35)."

제17조는 법률적 통제보다는 자발성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두 가지 조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아동권리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됨.
- 부모의 일차적 책임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이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다. 당사국의 의무는 적절한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다(제18조).

아동의 역량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부모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제5조 또한 관련 있다. 궁극적으로, 아동의 대중매체 사용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 및 양육자에게 있다. 당사국은 부모를 보조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컴퓨터 게임의 내용이나 인터넷과 무선기술 등의 사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동과 미디어”에 대한 일반논의 위원회의 날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은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미디어 회사들과 건설적인 합의, 미디어 시장에서 부모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괄적 계획, 보도기자들의 훈련 그리고 아동학대 보도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의 보고서 내에 폭력, 인종차별주의, 포르노그래피 등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자료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자주 언급한다. 그리고 부모교육 뿐 만 아니라 법률화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우려는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포함한 현대 정보와 통신기술의 확산으로 확대되었다.

*"위원회는 아동이 지역에서 판매하는 포르노그래피 DVD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다."*

*"협약의 제17조 (e)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하여 해로운 정보에의 노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상투메프린시페, CRC/C/15/Add.235, paras. 31, 32)."*

*"위원회는 CD-ROMs, 비디오카세트 그리고 게임의 판매와 접근성, 아동의 포*

르노그래피 출판물 접근 용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나 자료에 대한 적절한 법률과 가이드라인이 부재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쇄화 된 미디어와 전자 및 시청각적 미디어 내의 폭력과 포르노그래피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프랑스, CRC/C/15/Add.240, paras. 27-28)."

"위원회는 당사국의 이러한 측면에서의 조치를 환영하는 동시에... 여전히 인터넷을 통한 폭력, 인종차별 그리고 포르노그래피의 아동의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터넷을 포함한 이동기술, 비디오 영화, 게임 그리고 다른 기술들을 통한 폭력, 인종차별, 포르노그래피에의 노출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당사국이 관련 정보와 자료가 아동복지에 해로움을 끼칠 수 있음을 부모와 아동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동기술, 미디어 광고 및 인터넷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당사국은 또한 미디어의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보도기자들과 언론매체들이 언급하는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도기자들과 언론매체들과 함께 합의를 개발하도록 권고 받는다(호주, CRC/C/15/Add.268, paras. 33, 34)."

"위원회는 미디어 의회에 의한 아동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연구와 '도로의 규칙'을 개발하는 일을 수행하는 데 대해 환영을 포함과 동시에,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부적당하고 불법적인 자료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7조 (e)에 순응하며 아동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다(덴마크, CRC/C/DNK/CO/3, paras. 29, 30)."

"...위원회는 자극적인 자료 출판금지법에 대한 조치의 초안이 의회 전에 해결되지 않고, 동시에 대중매체에 등장한 몇몇 자료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들이 아동에게 해롭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더불어, 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부의 노력을 주목하면서,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폭력과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해로운 정보에 노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혹은 하위 정부수준의 체계적인 미디어 모니터링 기구의 부재함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제작자들의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 기구를 설립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제작된 미디어 프로그램의 질과 적합성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

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협약 17조에 따라, 당사국이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폭력과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해로운 자료에 아동이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모와 후견인 그리고 교사 자문 캠페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 등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 및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태국, CRC/C/THA/CO/2, paras. 37, 38)."

## 아동과 대중매체의 사생활

아동복지를 위협하는 대중매체의 한 가지 잠재된 위험은 아동의 사생활 권리와 관계있다(제16조). 더불어, 제40조 2항 (b)(vii)은 대중매체 보도가 청소년 사법제도에 연루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40조). 위원회는 가족 문제의 학대 아동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다.

##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지침

아동 피해자와 증인이 연루된 범죄 재판문제에 관한 가이드리인은 사생활 부분을 강조한다. “아동 피해자와 증인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만 한다.”

“재판과정에 연루된 아동에 관계된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은 재판과정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증인인지 아동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비밀보장이 되어야 한다.”

“대중에게 부당하게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는 취해져야만 한다. 예를 들어, 법이 허락하는 곳에서 아동의 진술 동안에 법정으로부터 대중과 미디어를 배제시킨다(경제사회이사회결의, 2005/20, 2005.7, section X, paras. 26 - 28).”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17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책임 있는 부서와 기관의 확인과 협조가 이루어지는가? (17조는 미디어와 통신, 사회복지 및 교육부서와 연관이 있음)
- 관련된 비정부 기구/시민사회 협력자의 확인
- 사법권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아동을 위해 법률, 정책과 관습이 조항과 양립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전반적인 검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목표의 확인과 과정의 달성지표가 포함되는가?
- 아동의 권리에 더 도움이 되는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다른 관련된 국제 기준을 만족시키는가?
-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곳을 포함하는가?

(이런 기준들은 규약을 전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부의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자원의 예산 분석과 배분
- 감독과 평가를 위한 체계 개발
- 성인과 아동들에게 제26조의 적용을 널리 알리는 것?
- 적절한 훈련과 경각심의 발전(제17조는 저널리스트와 인터넷, 미디어 교육을 포함한 대중매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적절한 부모교육을 포함 함)

### ● 제17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정부는 모든 아동이 사법권 내에서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는가?

이러한 접근은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는가?

- 소수민족의 아동이나 원주민 아동
- 장애아동
- 보호관리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범주에 있는 아동

정부는 제2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한 자료와 정보를 보급하도록 하는 것을 장려하는가?

- 아동의 잠재적 역량의 발달
- 인권권리와 기본적인 자유 존중 발달

존중의 진전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존중
- 아동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와 가치에 대한 존중

국가적 가치

-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현거주국에 대한 존중
- 아동이 태어난 출신국에 대한 존중
-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
-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특별히, 대중매체는 다음을 촉진할 것이 장려되는가?

- 소수단체와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우정
- 4차 세계여성대회와 제언에 따른 성평등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가?
- 청소년 비행 방지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른 아동의 긍정적 사회화
- 정부는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는가?
- 정부는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는가?
- 대중매체는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되는가?
- 대중매체는 건강촉진과 교육을 돕도록 장려되는가?
- 대중매체는 성인과 아동에게 협약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도록 장려되는가?
- 정부는 라디오, 인쇄미디어, 영화 및 비디오, 인터넷 그리고 다른 미디어와 관련하여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장려하는가?

정부는 아동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절차 개발을 장려하는가?

- 텔레비전
- 라디오
- 영화와 비디오
- 인터넷
- 다른 미디어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구성되어 있는가?

- 제13조 하의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권리와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된 권리의 일정한 제한
- 제18조에 제시되어 있는 부모, 다른 사람, 정부의 책임
- 정부는 부모와 다른 보호자가 아동의 복지를 위한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미디어 프로그램, 비디오, 컴퓨터 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보장하는가?
- 정부는 아동을 위한 적절한 미디어교육 개발을 장려하는가?
- 정부는 해가 되는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보호와 관련된 부모교육을 개발할 것을 장려하는가?
- 아동의 사생활과 학대, 가족문제 그리고 청소년 사법제도의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훈련을 포함하여 미디어의 존중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과 다른 보호책이 있는가?

###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17조는 단독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 일반원칙

제2조: 각 아동들의 관할권에 있어서 모든 권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차별 없이 인식되어야 한다.

제3조 1항: 아동들에 관한 모든 행동들에 있어 아동의 최대 이익이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

제6조: 삶과 최대한으로 가능한 생존, 성장에 대한 권리

제12조: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이들의 견해를 존

중하는 것;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혹은 행정상의 과정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17조의 실행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부모의 책임과 아동의 능력발달

제9조: 가족절차에서 보도-아동의 사생활

제13조: 표현의 자유 권리

제16조: 아동의 사생활 권리

제18조: 부모의 기본적 책임

제19조: 폭력과 학대에 대한 보도-아동피해자의 사생활

제24조: 건강교육과 촉진

제29조: 교육의 목표

제30조: 소수집단과 원주민 집단의 아동이 자신의 문화, 종교, 언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제31조: 아동의 놀 권리 촉진,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와 예술에의 참여

제34조: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성착취에 도전하는 미디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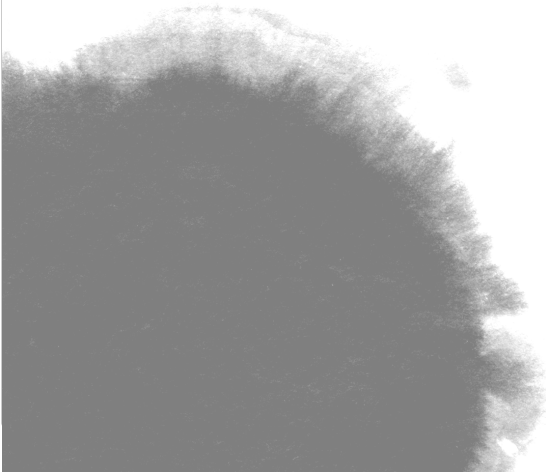
제36조: 미디어에 의한 착취의 다른 형태

제40조: 소년사법에 대한 보도-아동의 사생활

제42조: 아동과 성인에게 협약을 널리 알리기



## 제8조 국가의 부모공동책임 원칙





## 제18조 국가의 부모공동책임 원칙

1. States Parties shall use their best efforts to ensure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that both parents have common responsibilities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Parents or, as the case may be, legal guardian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will be their basic concern.
2.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and promoting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render appropriate assistance to parents and legal guardian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and shall ensure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the care of children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of working parents have the right to benefit from child-care services and facilities for which they are eligible.

1. 당사국은 양 쪽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지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자녀들이 아동보호시설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요약

제18조는 아동의 부모와 국가 간의 책임의 균형에 관계된 조항이며, 특히 부모들의 책임 수행에 있어서의 부모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제18조는 제5조(부모와 가족의 의무와 권리, 아동의 발달 능력), 제3조 2항, 및 제27조(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양육, 적절한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부모

를 지원하는 국가의 책임)와 공동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약의 4개 조항(제18조, 5조, 제3조 2항, 제27조)은 공히 부모가 그들의 “기본적 관심사”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우선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협약 하에 있는 아동의 권리로 인해 제한되고 확대 가족 구성원과 같은 다른 이들과 공유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가는 그들의 책임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일 부모가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국가가 아동의 권리와 욕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의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능한 최대의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가족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특히 사회의 기반을 위한 가족은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사회적 집단이며, 동시에 가족은 부양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보호와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가 차별 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신하여 취해져야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의 제23, 24조는 이러한 원칙들을 반복하고 있고, 덧붙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한다: “어떠한 사람도 그의 사생활, 가족, 가정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을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제17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일반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와 같은 그리고 여타의 문맥상, “가족”이라는 용어는 광의적으로, 적절한 지역적 관용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일반논평 No.5, 1994, HRI/GEN/1/Rev.8, para. 30).”

인권 위원회의 요구는 보다 상세하다: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를 보장할 책임은 가족, 사회, 국가에게 있다. 비록 협약이 그러한 책임이 어떻게 할당되어지는지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책임은 관련 당사국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기 위하여 광의적으로 해석되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있으며, 특히 협약에서 승인된 아동 성격의 조화로운 발달을 촉진하고 권리의 향유를 권장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부모에게 있다. 그러나 부나 모가 집 밖에서 돈을 벌기 위해 취업하는 것이 매우 흔함으로 당사국의 보고는 사회, 사회적 제도와 국가가 어떻게 아동의 보호를 책임지는데 있어서 가

죽을 지원하는 그들의 책임을 면하고 있는지를 알려야만 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7, 1989, HRI/GEN/1/Rev.8, para. 6).”

### “부모 또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후견인이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우선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제18조는 비록 다른 조항에서(제5조, 30조), 협약이 가족 구조가 다양하다는 것과 아동의 확대가족, 부족, 지역사회 또는 문화가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부모의 역할이 아동에게 손해를 줄 수 있을 만큼 축소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예를 들어 콩고 민주 공화국에 대해서:

*“위원회는, 지역사회 지도자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떠맡으며, 이러한 관행이 부모를 대신하고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쌍방적(bi-linear)”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 우려한다(콩고, CRC/C/15/Add.143, para. 36).”*

위원회는 또한 아프리카와 중동의 일부 국가들에게 아동에 관한 일부다처제의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어 예멘에:

*“위원회는... 당사국이 일부다처제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기 위한 조치를 전개하기 위하여, 일부다처제에 대한 심도 있고 포괄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예멘, CRC/C/15/Add.267, para. 48).”*

어떤 의미에서 제18조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것 보다는 부모의 권리에 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모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아동이 아닌, 국가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제18조는 권리 보다는 부모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아동의 ‘발달’에 대한 책임은 부모의 책임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적 객관적인 측정을 제시한다. 발달은 극도로 넓은 개념이다(제6조, 제27조, 제24조). 만약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지적 발달이 부모의 피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해 손상되었다면, 부모는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제18조의 초안이 작성되고 있을 때, 미국 대표는 협약은 다만 이를 승인한 국가들에게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적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논평하였다(E/CN.4/1989/48, pp.50-52; Detcik, p.270).

여기에서 사용된 명령적 시제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른다. 어떻게 국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부모의 기본적 관심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원칙은 그것들이 부모의 권리에 대한 모든 법률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오직 부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하나의 전체 즉 부모의 아동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법과 관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과 관습들은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재고되고 있다. 협약은 부모의 권리에 대한 현재의 법적 원칙이 그들 자녀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부모의 법적 책임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종종 부모나 당국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아동에 대한 전통적 또는 가부장적인 견해에 관하여 논평한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소유권에 대한 극심한 예는 모잠비크에 의해서 주어졌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1차 국가보고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종종 그들의 책임 하에 있는 미성년자들을 지도하는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며’ 가족구조의 허약성이 더 많은 아동의 취약성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아동은 때로, 가족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의 자녀를 일터로 보내는 것처럼, 재정적인 것을 포함한 여타의 분쟁을 잠식시키기 위해 이용된다(모잠비크, CRC/C/15/Add.172, para. 40).”*

때로 국가는 부모를 조종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한편 다른 경우에는 국가의 법은 부모의 태만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수단에서는:

"위원회는 혼외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처벌이 너무 무거워서 많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임신을 숨기려고 하며 신생아들을 유기하고, 유기된 신생아들의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수단, CRC/C/15/Add.190, para. 37)."

제3조와 제9조에 관련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돌에 쓰인 서판처럼 확고부동한 것은 아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개개 아동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부모들은 무엇이 특정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가에 대해 매우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협약상의 아동의 권리는 그러한 개념을 보다 덜 주관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권리의 어떠한 위반(아동의 발달 능력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여)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되기 쉽다.

위원회는 "아동 권리 협약상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No.4와 "유아기의 아동 권리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No.7에서 권리를 중심으로 한 부모의 아동양육을 언급해왔다. 부모의 영유아 양육에 관하여, 위원회는 국가가 다음과 같이 할 것을 권장한다.

"...유년기에 권리에 대한 긍정적인 의제(*agenda*)를 구축할 것을 권장한다. 유년기를 주로 성숙한 성인신분으로 가는 미성숙한 인간의 사회화 과정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신념으로부터의 변화가 요구된다. 협약은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들이 그들 자신의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존중받을 것을 요구한다. 유아들도 그들 자신들의 관심, 이익, 관점을 가진, 가족, 지역사회, 사회의 주도적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들의 권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린 아동은 사회적 놀이, 탐험과 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 발육, 정서적 보호, 감각적 지도를 위한 특별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

"...영유아들에게 부정적으로 가장 영향을 주기 쉬운 상황은 적절한 양육의 방임과 박탈, 중대한 물질적 혹은 심리적 스트레스나 손상된 정신 건강하에서의 양육, 소외된 상태에서의 양육, 부부갈등 또는 아동 학대를 포함한 일관성 없는 양육,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하는 상황(강제적 별거를 포함하여)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자원과 기술 그리고 나이 어린 미혼부모의 높은 발생률 뿐 만 아니라 조혼과 나이 어린 부모역할이 여전히 허용되는 사회에서 영유아에 대한 부모와 다른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다. 영유아기는 생존, 건강,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 생활과 보호의 기준, 놀이와 학습의 기회, 표현의 자유 등 협약에서 다루어지는 아동 복리의 모든 측면과 관계된, 가장 광범위한(그리고 집중적인) 부모 책임의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권리의 실현은 대부분 아동 복리와 아동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능한 자원에 달려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s. 5, 18, 20)."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부모 또는 아동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닌 사람들은 양육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수행하며 청소년들이 점차 그들의 권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청소년들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들의 견해를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발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적절한 지도와 진로 지도를 받으며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충분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능동적 권리 보유자로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CRC/GC/2003/4, para. 7)."

## 부모 교육

국가는 그들의 책임에 대하여 부모에게 조언하고 부모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의무적이 아닌 부모 교육에의 투자는 예를 들면 아동의 범죄율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 점차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유엔 지침서(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긍정적인 부모-아동 관계를 촉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에 부모를 민감하게 하며, 가족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그들의 참여를 권장하면서, 가족에게 아동 발달, 아동 교육에 관한 부모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16항)."



분리 예방과 규정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 논의에 있어서, 위원회는

"...분리에 안주하기 보다는 양육 기술을 위한 자원을 할당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또한 가족과 다른 가족들을 위한 그들의 매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하는 가족연대를 상기시킨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동일 수준의 동료 집단에 있어서의 아동양육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보다 쉬울 수 있다. 위원회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학교 교과과정 내에서의 부모기술 훈련의 도입을 포함하여, 부모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을 것을 권장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회기 보고서, 2005.9, CRC/C/153, para. 646)."

위원회는 다수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심의 권고에서 부모 교육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예를 들면:

"...가정생활교육을 제공하고 부모의 책임 인식을 계발시키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한다. 위원회는 비정부기구와 아동 및 청소년 단체들이 그들의 옹호활동의 일부로서 태도를 변화시킬 필요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장한다(필리핀, CRC/C/15/Add.29, para.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육, 상담, 부모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부모 및 아동 양육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법적 후견인에게 적절한 도움과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가족 환경으로부터의 아동 분리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한다(레바논, CRC/C/LBN/CO/3, para. 44)."

위원회는 부모 교육의 지원을 경제적 변화 혹은 무력분쟁에 뒤따른 사회 혼란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질병을 다루는 효과적인 도구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선진 복지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스웨덴 국가보고서에 대해 관찰하였다.

"어떤 시 당국은 가족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요금이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용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위원회는 상당수의 가족들이 그러한 요금이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찾는데 있어서 의욕을 꺾는 것이라는 사실

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보다 취약한 집단을 위해, 가족 상담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스웨덴, CRC/C/15/Add.101, para. 16)."

스웨덴 제3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위원회는 이러한 권고사항이 “불충분하게 언급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스웨덴, CRC/C/15/Add.248, para. 4).

“영유아기의 아동 권리의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 No.7번에서, 위원회는 국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c) 부모에 대한 지원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조부모, 때때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있어 책임을 질지도 모를 여타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 교육, 부모 상담, 다른 질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할 것이다;

(d) 지원은 또한 어린 아동과 긍정적 및 민감한 관계형성을 장려하고,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모(그리고 다른 주요 아동양육자)가 아동의 최초의 교육자라는 원칙은 잘 정립되어 있다... 그들은 그들의 권리 수행에 있어서 영유아에게 적절한 방향과 지도를 제공하고,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신뢰할만한 사랑의 관계형성을 맺는 환경의 제공이 기대 된다(art 5). 위원회는 당사국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조기 교육 계획의 시발점으로 만들기를 요구한다:

(a) 아동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 부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art 18.2), 당사국은 아동의 조기 교육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동 중심의 아동 양육 훈련을 권장하며, 아동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권장하고, 이해와 자긍심과 자신감의 계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영유아기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항상,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고, 아동의 품성, 지능, 정신적 및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킴에 있어서 부모, 전문가 및 관계자들 간의 철저한 적극적 협력을 포함하여 부모들과의

모든 가능한 협력관계가 개발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art 29.1(a)*)(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s. 20, 29*)."

**국가는 “양친부모 모두가 아동양육과 아동발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원칙의 인식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을 활용해야만 한다.**

부모 모두가 아동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는 최근에서야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들 자녀의 매일 매일의 보육을 맡을 수 있고, 또한 맡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책임과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은, “아동의 이익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근본적인 고려사항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지면서, 아동양육과 발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공동된 책임” 이 당사국에 의한 승인이 요구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1979)*)의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이를 하나의 아동의 인권으로 본 첫 번째 협약들 중의 하나이다(제5조).

국가들은 부모 교육 조치뿐만 아니라 그들 국가의 법과 서비스 규정에도 이 원칙이 강조될 것을 권고 받는다:

*"위원회는 양친부모 모두의 동등한 책임을 강조하는 가정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그들의 자녀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부모를 교육시키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영국, CRC/C/15/Add.34, para. 30)."*

위원회는 제2차 국가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진전이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영국, *CRC/C/15/Add.188, para. 4*).

*"위원회는 그들 부친들에 의해 시인되지 않는 많은 아동들과, 아버지가 그들 아동의 복지를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 교육과 가정 상담을 증진하고, 양친부모 모두가 아동 양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갖는 원칙의 고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한다(파라과이, CRC/C/15/Add.75, paras. 19, 39)."

## 한부모(편부/편모) 가족

제27조는 부양이 책임을 지닌 부모(일반적으로 아버지)로부터 회복될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조항상의 "공동의 책임"은 경제적 책임을 넘어선다. 목적은 혼외 출생 아동의 부를 포함하여, 아동 양육에 있어서 양친부모 모두가 능동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데 있다.

"위원회는 초기 양육과 편친 양육의 위험성, 아동 양육과 발달에 있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부의 개입 증진과, 이러한 경우에 처한 아동들에게 필요로 하는 지원 제공의 욕구에 지속적인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을 권고한다(비베이도스, CRC/C/15/Add.103, para. 20)."

다수 국가들은 주로 친모와 생활하는 한 부모 가족에서 살아가는 많은 아동들을 상술하고 있다. 위원회는 결혼의 상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아동양육에 있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양친부모를 가질 아동의 욕구와 한 부모 가정의 빈곤의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같은 현상에 대해 종종 우려를 표명하여왔다. 그와 같은 원인들은 자메이카 사례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다양하다.

"...어려운 국내 취업 환경과 그로 인해 가정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예를 들어 "아동 거래"와 아동을 뒤로한 채 부모 한쪽이나 모두가 이민을 가는 상황...(자메이카, CRC/C/15/Add.210, para. 34)."

또는 적도 기니에서는:

"위원회는 도시화, 광범위한 빈곤, 에이즈의 증가, 전통적 연대성의 약화, 높은 수준의 난혼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양친부모 모두와 생활하는 아동이 50퍼센트도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적도기니, CRC/C/15/Add.245, para. 36)."

혼외 출생 아동의 부가 부모의 책임을 떠맡을 수 없는 국가들은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제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모와 아동이 분리를 허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위원회는 몽골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한 부모 가정과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부모와 경제적 및 여타의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 양육과 발달을 위해 부모 모두가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원칙에 관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 공동 책임의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증진하는 법, 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는, 200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2001)에 의해 채택된 권고사항을 승인한다(몽골, CRC/C/15/Add.264, para. 32)."

국가는 혼외 출생 아동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라도 종식 시킬 법적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당사국이 교제중이나 내연관계에서 태어난 아동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 자체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이 유니세프 및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을 제안하였다(세인트키츠네비스, CRC/C/15/Add.104, para. 21)."

국가는 또한 아동 양육에 있어서 양친부모 모두의 능동적인 개입을 권장하기 위한 취업, 세금, 복지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아이슬란드 제1차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그것은 특히 편모가 가장인 가정의 아동에게 해로울지도 모르기 때문에, 급료와 관련해서 남녀 간의 불평등에 반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아이슬란드, CRC/C/15/Add.50, para. 25)."

아이슬란드가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위원회는 아이슬란드가 모와 부의 권리평등법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환영했다(아이슬란드, CRC/C/15/Add.203, para. 30).

위원회는 십대모에 관한 특별한 우려를 분명히 하였다. 종종 고독한 한부모 양육의 결과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십대 임신은 협약 상 그 역시 아동인 십대모의 건강과 사회적 기대를 파멸시킬 수 있다(제24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높은 십대 임신 발생률과 여성가장가정은 때로 아동을 법에 저촉되는 행동에 개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아동을 특히 성적 학대, 가정 폭력, 방임과 유기 등에 취약하도록 만든다(자메이카, CRC/C/15/Add.32, para. 13)."*

## 부모가 헤어질 때

다수 국가에서의 부모 책임의 불평등성은 종종 부모가 헤어질 때 강조된다. 다수 국가들의 제1차 및 제2차 국가보고서는 부모가 헤어질 때 아동 양육의 책임을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에 융통성 없이 할당하는 법적, 사회적 관습을 드러냈다. 때로 그 공식은 모에게 영아, 유아, 어린 아동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주어지지만, 부는 아동의 삶의 상태를 결정하는 부차적인 책임을 지며 일반적인 주도권을 갖는다. 그러한 조치는 흔히 완전한 부계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난 어느 정도의 끊어지면 해로울 수 있는 모와 어린 아동간의 강한 애착을 인식한 진전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을 융통성 없는 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 위반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여성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는 제 52조에 이를 지적한다.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아동양육과 발달에 있어서의 부와 모의 공동의 책임을 인정함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제16조는 계속하여 언급한: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반 하에 그들 자녀들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결혼 상태에 관계없이 부모로서의 동일한 책임과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이 되어야 함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제18조에 의거하여, 법은 부모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 제18조 2항에서 인지된 바와 같이 정부 조치는 부모공동 양육의 실현 가능성

을 지지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헤어지거나, 또는 전혀 동거하지 않아왔다면, 법원이 양육권을 한 쪽 또는 다른 부모 쪽에 할당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9조에서 논의되었듯이, 그런 상황 하에서 법은 어느 부모 쪽이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융통성 없는 가정을 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종종 그런 가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예를 들어 니제르와 파키스탄에 대해:

“위원회는 아동의 모로부터 아동의 분리를 유도할 수 있는 여성이 자녀를 버리는 관습과 아동의 견해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함이 없이 아동의 나이가 7세 이전에는 모에게 맡겨졌다가 그 이후에는 부에게 맡겨지는 이혼의 경우에 적용되는 관습에 대해 우려한다(니제르, CRC/C/15/Add.179, para. 38).”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이 이혼의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보다는, 아동의 연령제한을 양육권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우려를 표명한다. 그러한 허용은 형제자매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에 더하여, 성차별을 하는 것이며, 아동의 견해 표현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며 그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파키스탄, CRC/C/15/Add.217, para. 44).”*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23조 4항은 당사국이 “결혼, 혼인 기간 그리고 이혼에 대하여 배우자들의 권리와 책임의 평등을 보장하는 적절한 단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인권위원회는 일반적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들은 가족 내에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평등은 그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로 확장된다... 그러한 평등은 법적 별거나 파혼과 관련된 조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별거나 이혼, 아동 양육... 방문의 권리나 친권의 상실과 회복을 위한 근거와 절차에 대한 어떤 차별적 대우도 금지되어야만 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19, 1990, HRI/GEN/1/Rev.8, paras. 8, 9).”

독일은 이러한 규정이 부모가 미혼이거나 결별 중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함이 없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18조 1항에 대하여 선언서를 신청하였다. 그러한 해석은 협약 제3조 1항에 일치하지 않는다 (CRC/C/2/Rev.8,

p.22). 이것은 제9조에 의해 명시된 바와 같이 의심할 여지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부모 모두와 사적 관계와 직접적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 한쪽이나 양쪽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제3조 9항에 나타내고 있는가를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제7조(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와 제18조와 함께, 만일 위반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법은 아동의 생활에 있어서 그와 같은 양친부모의 지속적인 참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독일은 위원회에 선언서가 불필요하다고 믿으며, 부모가 별거하거나 혹은 미혼인 경우에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였다(독일, CRC/C/15/Add.226, paras. 7, 34).

### 아동이 국가 보호 하에 들어가게 될 때

위원회는 비록 아동의 보호가 국가의 보호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룩셈부르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가 그들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자동적으로 상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명시하였다.

*"위원회는 그와 같은 자동적인 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결정함이 없이 법원에 의해 아동이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배치될 경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권한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친권과 부모 아동 관계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수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과, 친권의 양도는 오직 예외적인 상황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하에 사용되어야 할 것을 권고한다(룩셈부르크 CRC/C/15/Add.250, paras. 34, 35)."*

**“현재 협약에 설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은 아동 양육의 책임 수행에 있어 부모와 법적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8조 2항은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그것은 제3조 2항의 조항의 규정을 반영한다.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아



동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다른 개인들의 의무와 권리를 고려하면서, 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보호와 양육을 아동에게 보장할 것을 책임지며, 이를 위해 제27조 3항의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당사국은, 국가적 상황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다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제35조).”

부모의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부모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 지원은 분명히 적절하다. 국가는 심리적, 전문가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수혜, 주택, 탁아, 가정 도움, 장비 등과 같은 실제적 조치로서 붕괴 위험이 확인되는 가족들을 지원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보고서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가보고서에서 나타나있듯이, 높은 이혼율, 증가하는 한 부모가족과 부모의 방임을 포함한 가족해체가 증가하는 현상이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최저빈곤선 하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대해 우려하며,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공동 양육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양친 부모 둘 다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취할 것에 대한 이전의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더군다나 가족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감소되었다.

제18조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 한다.

- “(a) 가정환경의 안전에 대한 아동권리의 보호를 위한 노력의 강화와 이점에 있어서 포괄적인 개정 아동법을 통하여 아동의 효율적인 보호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과 부모들의 용이한 접근의 보장
- (b) 사회보장 수혜 제도 개혁을 위해 기획된 최근의 사회적 지원 초안에 대한 행동을 취할 것
- (c) 긍정적인 아동-부모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조언과 교육을 통한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를 향상시킬 것;
- (d) 사회복지사들에게 적절한 훈련 기회 제공;
- (e) 비행, 범죄, 약물중독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사회적 상황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

(f) 빈곤 속에 사는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를 고려할 것(우크라이나, CRC/C/15/Add.191, paras. 40, 41)"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가정 지원의 목적을 넘어서, 제18조는 국가가 모든 부모를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보편적 서비스와 자산조사에 의해 제한하지 않는 재정적 수혜는 책임 있는 국가에 의한 승인이며, 그러한 서비스와 수혜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이에 부가하여 보편적 규정은 무지, 인지된 낙인 또는 청구에 있어서의 까다로움을 이유로 하여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해 목표로 설정된 지원이 달성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자동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예방책이다.

**“현재 협약에 설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은 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 기관 및 서비스의 개발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제20조는 적합한 시설의 마련을 포함하여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18조 3항은 부모의 직장에서의 아동서비스(영아를 위한 어린이집 보호 및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서비스)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고 있으며, 제24조, 28조 및 23조가 보건 및 교육 서비스와 장애아를 위한 서비스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리의 범위 내에는 상대적으로 다만 소수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18조 2항에 부가적으로 내포된 서비스의 종류는, 추정 하자면, 영아와 어린 아동을 둔 어머니를 위한 센터, 놀이집단, 장난감 도서관 또는 유스클럽과 같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설들을 포함한다. 부가하여 이러한 시설들은 종종 비권위적 기반으로 부모 교육에 기여할지도 모르며, 따라서 아동에게 두 배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아동 지도 또는 학교 의료진과 상담센터와 같은 다양한 전문직종 서비스들 또한 아동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

정부는 비록 지역적으로 개발된 서비스가 부모와 아동들의 욕구충족에 있어 보다

경제적이고 보다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소규모의 지역적으로 개발된 서비스 비용으로 비싼 공공시설에 투자한다. 국가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를 개발하기 위한 자원을 가진 그들 서비스 이용자들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제18조 하에 놓인 국가의 의무가, 국가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절대 무관심하거나 완고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설, 설비, 서비스의 개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어린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특히 맞벌이 부모를 위한 어린이집 보호뿐만 아니라, “아동권리협약의 문맥상에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4는 국가가 나이 많은 아동을 둔 부모의 욕구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청소년의 능력 개발에 대한 일관된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과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 (a) 필요할 경우 물질적 지원과 영양, 의류와 주택에 관한 지원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복리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시설, 설비와 서비스의 개발을 통하여 부모(혹은 법적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 제공(art 27(3));
- (b) 예를 들어, 성과, 성적 행동, 위험한 생활 형태와 관련된 이슈들이 공개적으로 토론되고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수용적인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는, 신뢰와 혁신 관계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와 부모 지원의 제공(art 27(3));
- (c) 청소년 부모에게 그들 자신과 그들 아동의 행복 모두를 위한 지원과 지도 제공(art 24(f), 27(2-3));
- (d) 민족과 여타 소수민족의 가치와 규범을 존중하는 한편, 그들의 전통과 규범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그것들과 상이한 청소년과 부모(혹은 법적 후견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 지도, 지원;
- (e) 청소년을 보호하고,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학대나 방임의 경우, 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가정에 대한 개입의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른 보장, 그와 같은 법과 절차는 협약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3, CRC/GC/2003/4, para. 16).”

**맞벌이 부모에 대한 국가 지원:****인구와 개발에 대한 유엔국제회의 (카이로, 1994)**

"...전 세계에 걸친 급속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의 과정은, 가족 구성과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오면서, 가정 형성과 가정생활의 패턴에 영향을 끼쳐왔다.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가정 밖 일터에 고용 취업을 하기 때문에 부모 역할과 가사기능 및 참여에 있어 성별을 기반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 전통적 개념은 현실성과 기대를 반영하지 않는다. 동시에, 확대가족 지원 연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적 투쟁이나 전쟁, 도시화, 빈곤, 자연재해 및 다른 이주의 원인들에 의해 야기된 보편적 이주와 강요된 이주는 가정 내에 보다 큰 긴장을 가져왔다. 부모는 일과 가정의 책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전 세대에 비해 제3자로부터의 도움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이것은 특히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현재의 가정 형태의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여성과 아동의 욕구와 권리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경우이다...

"정부는 고용주와 협력하여, 특히 어린 아동을 둔 한 부모 가정을 위하여, 노동력 참여와 부모의 책임 간의 양립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안은 건강 보험, 사회 보장, 어린이집과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를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 유치원, 파트타임 일자리, 유급 부모 휴가, 유급 출산 휴가, 융통성 있는 업무 스케줄, 아동 보건 서비스를 포함한다 (A/CONF.171/13)."

**“국가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이 적절한 양육 보호 서비스와 시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탁아 서비스**

맞벌이 부모 아동들의 욕구 충족의 중요성은 과대평가 하지 않을 수 없다. 제3조 3항(아동을 위한 모든 시설의 질적 기준 보장)은 특히 아동보호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별히 초안으로 작성 된 것이었다. 이것은 발달적 욕구가 안전, 지속적인 개인적 관계 맺기, 일대일 자극을 필요로 하는 매우 어린 아동들을 위한 아동보호에 대한 보편화된 관심을 반영한다. 높은 수준의 탁아 시설은 국가의 책임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초기 유년기의 아동 권리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 No.7에서 국가의 책

임을 기술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그리고 다른 돌보는 이들)의 임파워먼트와 교육이 주요 특징을 이루는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취학 전 프로그램을 포함한 초기 아동 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당사국은 질이 높고, 적절하고 자원이 풍부한 서비스의 제공과, 영아에서 학령기로 변화할 때까지 특정 집단과 개인의 상황 및 특정 연령집단의 발달적 우선순위에 알맞도록 만들어진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질이 높고, 발달적으로 적절하며, 문화적으로 타당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이러한 것을 초기 아동 보호와 교육에 표준화된 접근방식을 부과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일함으로써 성취할 것을 권고 받는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31)."

맞벌이 부모의 더 나이 많은 아동의 욕구 또한 관심사이다.

"위원회는 부모들이 직장에 있거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동안, 가정에 방치된 채로 버려진 도시지역의 많은 아동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최근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확대가족 지원 연계로부터의 도움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정에 사회적 지원을 제공 또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아동 보호 서비스와 시설을 보장함으로써, 책임 있는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 양육 책임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포괄적 조치의 개발을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마셜 아일랜드, CRC/C/15/Add.139, paras. 38, 39)."

영유아를 탁아소에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은 현대 생활의 현실성에 대항하여 확립된 것임에 틀림없다 - 종종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일을 하도록 요청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요구, 여성이 좁은 가사 영역의 밖으로 나와 일을 하는 새로운 기회, 대가족의 해체(조부모라는 전통적 아동보호의 자원을 제거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저비용 또는 무료 탁아와 방과 후 보호는, 예를 들어 위원회가 나이지리아에 지적한 바처럼, 아동의 욕구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당사국에 아동보호를 요구하는 어머니들의 수가 많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시립 및 공립 탁아시설에서 제공하는 아동보호의 질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부모를 지원할 조치가 없다는 데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지적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에 있어서의 자원의 부족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과 확대가족을 포함한 기존 체제 강화를 통하여, 아동 보호 시설의 능력을 강화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아동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훈련이 주어지고, 공립 아동 보호 시설에 충분한 자원이 할당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보건, 교육, 안전 분야와 협약의 원칙과 규정 에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대안적 보호를 위한 법에 보장된 기준과 절차를 확립할 것을 주장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에 관련하여 유니세프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나이지리아, CRC/C/15/Add.257, paras. 40, 41)."

비록 취학 전 아동들의 욕구는 엄밀히 말해서 교육적인 것이 아닐지 몰라도, 이와 같은 권고사항은 단순한 수용 이상의 보다 취학 전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유아의 발달은 유아학교 직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의 국가행동계획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저소득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질적인 개입을 포함하여, 초기 유년기 발달 행동의 확대(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 선언과 국가 행동 계획, 부록, 2, E(i))". "초기 유년기의 아동 권리의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 No.7에서, 위원회는 나이 든 많은 유아와 미취학 아동을 위한 타아가 그들 교육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지적한다.

"조사 결과는 유아의 초등학교의 성공적인 입학, 그들의 교육적 향상, 그들의 장기적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질적 교육 프로그램의 잠재력을 입증 하였다. 많은 국가들과 여러 지역에서 현재 4세부터 시작하는 포괄적 조기 교육을 제공하는데,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것이 맛벌이 부모를 위한 아동보호와 통합 된다. '보육'과 '교육' 서비스 간의 전통적 구분이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에듀케어(Educare)" 라는 개념이, 때때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향한 전환의 신호와, 협력적 전체적 다면적인 초기 유년기에 대한 접근을 위한 필요성의 인식 강화를 위해 사용되어 진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30)."

모든 아동보육의 중심에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들 부모의 권리와 이익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북한의 탁아에 대한 실용본위의 접근에 대해 비난하였다:

"위원회는 초기 아동보육에 대한 당사국의 공약에 감사를 표하나 아동의 심리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저해하며, 부모의 개입에 손상을 주는, 아동보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우려한다. 특별한 우려 중에는, 아동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탁아소에 맡기는 보편화된 관행이다... 더군다나 위원회는 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탁아소에 대한 가능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초기 유년기 발달에 대한 당사국의 공약과 탁아소와 유치원의 높은 취원율을 특별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보육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왔고, 그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 없다는 데 대해 우려한다."

"협약 제18조 1문단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의 우선적 책임에 대한 정책을 보다 강조하고, 국가의 역할을 보조적인 주요 역할이 아닌 것으로 감소시키면서, 아동의 보육과 양육에 부모의 더 많은 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부모를 격려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증진시키고, 부모들에 의해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 지도록 24시간 탁아와 유치원 시스템(종종 일주일에 5일)의 이용을 단념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보육 시설에 가능한 재정적 인적 자원을 증가시키고, 특히 영양, 난방, 급수, 깨끗한 화장실, 위생과 관련하여 모든 시설을 위한 서비스의 기본적 최저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북한, CRC/C/15/Add.239, paras. 38, 40, 39, 41)."

## 고용 수당

상당기간의 산모와 부의 출산 휴가, 높은 임금 및 "가족 친화적" 근로조건은 분명히 아동과 맞벌이 부모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국제노동기구는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이러한 원칙들에 오랜 기간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 2000년도 국제노동기구의 모성 보호 협약에 보충적인 권고사항 191번은 제18조의 원칙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것은 국가가 출산 휴가의 만료에 뒤따르는 일정 기간, 양쪽 부모 중 한명에게 주어지는 부모 휴가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그것은 친부모에게 자격이 주어진 근로 수당의 권리를 양부모가 가질 수 있으며, 출산 휴가가 만료되기 전에 어머니의 질병이나 사망의 경우 고용된 아버지에게 아동을 보육하기 위한 휴가가 주어질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와 같이, 부모에게 주어지는 부적절한 휴가와 수당 또는 현존하는 제공에 대한 삭감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어린 아동을 둔 여성에게 많은 수당을 지불하는 것을 폐지하거나 실수로 지급하지 않는 것 뿐 아니라, 출산 휴가 기간의 제한, 가족 휴가의 폐지가 가족에게 특별한 긴장을 준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제18조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을 위한 최상의 환경으로서의 가정을 증진시키고, 아동을 집에 두고 있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별히 빈곤 가정에 있어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다른 수당을 증가시키도록... 권고한다(카자흐스탄, CRC/C/15/Add.213, paras. 40, 41)."

위원회는 또한 이런 점에 반하여 차별받는 특정 집단의 부모들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 예를 들면 그리스의 로마 부모나 스리랑카의 이주민 부모:

"위원회는 저임금 가족과 같이 특정 상황하의 아동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재정적 "수당" 제도와... 그러한 재정적 수당의 액수가 극도로 낮으며, 더군다나 많은 로마 가족들은 이러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려한다."

"제18조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극빈자의 수를 감소하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동과 부모를 위한 지원의 보장과, 로마 지역사회 출신의 아동과 부모들에 관하여 이런 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포함하는 가정환경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그리스, CRC/C/15/Add.170,



paras. 48, 49)"

"위원회는 외국인 고용 부서에 의해 수행되는 이주 노동자 이동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 가족이 그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그들의 아동 양육 책임에 대한 지원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양육 책임을 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 이주 노동자 가족과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스리랑카, CRC/C/15/Add.207, paras. 30, 31)."

### 초기 아동기의 아동 권리 이행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 요약

일반논평 NO.7은 국가보고서에 초기 아동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제기한다. 그것은 어린 아동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이해 강화와 정책, 법, 사업, 실무, 훈련, 조사를 통하여 이런 권리들의 국가적 실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초기 아동기"의 실무적 정의를 출생으로부터 8세까지로 제한한다(입학 아동을 포함하기 위하여).이 시기의 아동들은 :

- 가장 급격한 신체적, 지적 성장을 경험한다;
-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화적, 성격적 정체성, 발달 능력을 위한 기초를 쌓는다;
- 부모나 보육자에게 강한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는데, 그들은 부모나 보육자들로 부터 양육, 보호, 지도를 요구한다;
- 다른 아동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들은 아동들로부터 사회적 행동을 학습한다.

성장과 발달은 그들의 성별, 생활 조건, 보육설비, 교육 제도 뿐만 아니라 아동의 개별적 본성에 따라 다양할 것이며, 문화적 믿음과 가족,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따라 강하게 형성될 것이다. 증가하는 조사 기관들은 아동의 타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하지만, 또한 초기 아동기 아동들의 기대에 있어서 문화 간의 심각한 다양성을 드러낸다. 국가는 전통적인 가치들이 아동의 권리를 수호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그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을 존중할 것이 권장 된다. 초기 아동기의 이와 같은 권리의 이행은 아동기 이후의 어려움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일반적 원칙들**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제6조).** 국가는 임신을 전후로 한 관리를 향상시키고, 아동의 사망률을 줄이며, 영양결핍과 예방가능한 질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는다. 건강과 복리는 상호의존적이다: 양쪽 모두 빈곤, 방임, 학대, 기회의 결핍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다. 생존과 발달의 권리는 전체적인 협약 실행을 통해, 전체론적인 방식으로만 이행될 수 있다.

**무차별의 권리(제2조).** 어린 아동은 특히 줄어든 영양, 부적절한 보호, 놀이 및 학습 또는 감정 표현의 제한된 기회, 가혹하거나 착취적인 대우, 또는 비합리적 기대와 같은 형태의 차별의 위험에 놓여있다.

예를 들면, 소녀들은 선택적 낙태 또는 유아살해, 성기 불구 또는 신체적 방임의 피해자일 수 있다; 그들은 과도한 책임을 수행해야 할지도 모르며 또는 학습의 기회를 박탈당할 지도 모른다. 장애 아동은 비록 그들이 종종 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부가적인 지원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아동들보다 좋지 못한 대우를 받을지도 모른다. 에이즈 바이러스 또는 에이즈가 있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는 아동 또한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으로부터의 차별로 고통 받을 수 있다. 아동은 또한 그들 부모의 출신 민족, 사회적 계급 또는 카스트, 신앙 때문에 혹은 그들이 서출로 태어났거나 그들의 부모가 난민이기 때문에 차별의 대상이 된다. 국가는 특히 건강, 교육, 복지 서비스 전달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과 맞서 싸워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는 모든 어린 아동들에 대한 이와 같은 서비스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접근의 평등성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상대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어린 아동들은 종종 그들의 최선의 이익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모와 당국에 의존한다. 개별 아동에 관련한 법적 결정의 경우 국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독립적 대리인을 확보할 것을 요구 받는다. 부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 정책, 행정 및 서비스 제공은 아동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어린 아동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존중(제12조).** 가정, 지역사회 및 일반 사회의 참여자로서 어린 아동의 대리권에 대한 존중은 빈번히 경시되거나 거부된다. 많은 곳에서 전통적인 신념은, 그들이 이해, 대화 또는 선택을 하는 기본적인 능력조차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무력하고, 의견을 말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게 제쳐두면서, 어린 아동들의 사회화 요구를 강조한다. 위원회는 글을 쓰거나 말을 배우기 전에도 여러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유아들에게 제12조가 바로 적용됨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견해를 표명하고 가장 어린 나이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권리는 일상적 가정생활과 아동의 지역사회 내에 정착되어야 한다. 관련 있는 성인들은 어린 아동에 경청하고 어린 아동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의사소통 방법을 찾는 일에

있어 인내심과 창의력을 보여주기 위한 아동중심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 부모와 국가

핵가족과 대가족을 포함하여 어린 아동의 양육을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가정은 그들 복지의 기초가 된다. 영아와 어린 아동은 그들의 부모(또는 주 양육자)에게 강한 상호 애착을 형성하고, 이런 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익히며 그들의 권리를 깨우친다. 어린 아동의 발달 능력을 존중하는 것은 결정적이며 특히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기에 매우 중요하다. 지도에 대한 더 어린 아동의 더 큰 요구가 자율과 자기표현을 제한하는 권위적 행위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는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부모의 우선권을 존중하고 부모들의 책임 충족을 저해하는 상황을 줄임으로써 부모들을 지원해야 한다. 부모 됨은 부모가 물질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하에 있고, 방임적이고 학대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다거나 또는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만약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어 질이 낮은 시설 보호 하에 있다면, 발달은 또한 위협받는다. 비록 가족 구성과 규모가 다양하겠지만 모든 아동은 적은 수의 일관적이고 돌보아주는 관계 안에서 최상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가족 붕괴, 부모들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게 강요하는 경제적 압박, 질병이나 죽음은 이런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다. 부모들 특히 젊은 부모들은 과제에 도전함에 있어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가 지원의 예는 적절한 세금과 수당, 적절한 주택, 합리적인 근무 시간, 출산을 전후로 한 건강 서비스, 부모 교육, 순회 보건원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 국가 서비스

매우 자주 초기 아동기는 서비스가 계획되지 않고 조정되지 않으며 책임이 여러 정부 부서로 나누어지고, 대부분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의해 제공되면서 정부의 낮은 우선순위에 처해 있다. 국가는 특정 연령 집단을 위해 변화하는 발달적우선순위를 인식하는 권리 중심의 조정 통합되는 다면적인 전략 개발을 요구 받는다. 직원들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며 적절하게 임금을 받으면서 적절한 아동 중심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모든 아동들, 특히 차별의 가장 큰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들이, 이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접근을 보장하는 첫 번째 단계는 보편적 출생 등록인데, 이것은 유연한 제도(우선전화 등록 또는 사후 등록)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절대적 또는 상대적 빈곤 하에서 성장하는 것은 복리와 발달에 있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필수적인 전략은 빈곤의 축소이다.

국가는 특히 깨끗한 식수, 적절한 위생, 면역, 충분한 영양(비만의 절감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 보장을 통하여, 모든 아동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 보호에 접근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부모는 모유수유, 영양, 위생의 이점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육시설 아동들을 위한 대안적 보호뿐만 아니라, 부모와 유아들 간의 에이즈 바이러스/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된 부모와 아동을 위한 정확한 진단, 효과적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가 취해져야 한다.

위원회는 몇몇 국가들이 모든 아동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일 년간의 미취학 교육을 하고 있음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이런 교육은 교육의 목적(제29조)에 맞게 조정되고, 아동 중심적이며,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모는 물론 그들 아동의 최초의 교육자이며, 국가는 이와 같은 부모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부모들의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와 파트너십 관계 속에서 실시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미취학 교육이 성공적인 학교예로의 전환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편, 미취학 교육은 가장 넓은 의미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많은 맞벌이 부모에 의해 이용되는 아동보호 규정에 보다 통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부모의 임파워먼트가 주요 특징이 되는, 초기 아동기의 지역사회중심의 프로그램 지원을 권고한다. 국가는 아동의 학습에 대한 신뢰와 열정을 주는 고품질의 문화적으로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일할 것을 권고 받는다.

위원회는 정부가 비정부단체의 "영리"와 "비영리"부분 모두의 초년기 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이 협약의 원칙들을 존중하는 것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는 주요 책임을 가지고 있고 시민 사회의 역할은 국가 역할의 보충적인 것이어야 하며 대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국가가, 이런 연령 집단의 이익과 능력 개발에 적합 시킨 초기 아동기 교육과 보호에 있어서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휴식, 여가, 놀이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31조의 이행에는 충분한 관심이 없었다. 놀이를 통해 아동은 즐기며 그들의 능력을 확대한다. 그러나 특히 도시 환경에서는 어린 아동들이 아동 중심의, 안전하고, 지지적이고 자극적이고 긴장이 없는 환경 속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회가 종종 부족하다. 주택의 구조 산업과 운송, 소음, 공해, 안전 위험은 종종 방해요소이다; 아동의 놀 수 있는 권리는 또한 그들의 지나친 가사 일이나 경쟁적인 학업으로 인해 좌절될 수 있다. 국가는 이런 권리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고 적절한 자원을 할당할 것을 권고 받는다.

초기 아동기는 출판자와 미디어제작자들을 위한 전문 시장인데, 그들은 특히 소수 집단을 고려하여 국가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유익한 자료를 배포하도록 권고 받아야 한다. 제17조는 국가가 아동을 위해 매체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 기술은 이런 점에서 우려에 대한 새로운 근거이다. 국가는 어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디어 제작과 전달을 규제할 것을 권고 받는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 아동들

위원회는 다수의 어린 아동들이 그들의 권리에 반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어린 아동들은 특히 그들의 부모가 적절한 보호를 해줄 수 없을 경우 위험을 잘 인지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어린 아동들은 그들의 급속한 발달 때문에 그러한 위험의 영향에 더욱 취약하다. 위원회는 초기 아동기의 권리에 대한 분명한 관련이 있는 몇몇 주요한 어려움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유도한다.

- 어린 아동들은 종종 그들의 가족 내에서 학대와 방임의 빈번한 피해자이다. 이것은 어린 아동의 뇌 성장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는 모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낙인을 찍지 않도록 피학대자를 도와야 한다.

- 아동의 발달은 또한 그들이 고아가 되거나, 기아가 되거나 아니면 가족 보호를 박탈당했을 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질이 낮은 시설 보호가 어린 아동들 특히 3세 이하의 유아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 중심의 또는 가정과 같은 보호에의 조기 배치는 최선이며, 국가는 어린 아동들이 예를 들면 대가족 내에서의 양육이나 지지적 배치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 보장에 투자할 것을 권고 받는다. 입양을 원할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려되어야 한다.
  - 난민인 어린 아동은 친숙했던 많은 것을 상실함으로써 가장 혼란스러워지기 쉽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일반적 논평 6번에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 초기 아동기는 장애가 확인되어지는 시기이다. 어린 아동들은 장애를 이유로 절대로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되고 국가는 우선적으로 장애아들에게(그리고 그들 부모에게) 적절한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하면서 이런 아동들이 교육과 지역사회 생활에 충분히 참여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은 항상 위엄 있게 그리고 그들의 자립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이 종종 가사의 일부로써, 잠재적으로 위해하거나 착취적인 노동을 포함하여 어린 연령부터 일을 하기 위해 사회화된다. 어린 영아들 까지도 그들이 구걸에 이용되면서 위해나 착취적인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유흥산업에서의 어린 아동의 착취 또한 우려의 근거가 된다. 국가는 국제노동기구 협약(182번)하의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과 관련하여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 어린 아동들은 중독성 물질 남용자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반면에, 어린 아동들이 약물중독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을 때 전문가의 보호를 필요로 할지 모르며, 또는 가족 구성원이 약물남용자일 경우 보호를 필요로 할 수 있다.
  - 어린 아동들, 특히 소녀들(예를 들어 가사 노동자로 고용된 자들)은 일찍이 성적 학대를 받기 쉽고 또한 포르노 제작자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 위원회는 빈번히, 입양, 아동 매춘, 아동 노동을 포함한 목적을 위한, 버려지고 분리된 아동의 매매와 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국가는 아동 판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대한 선택적 의정서와 아동의 보호와 국가 간 입양에 대한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승인하도록 요구받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 아동은 형사적 책임의 법적 규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법을 위반한 아동들은 자아 통제, 사회적 공감,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배양할 목적을 가진 동정적인 지원과 이해를 요구한다.
- 이와 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국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 능력 배양

국가는 유년기를 위한 포괄적, 전략적, 시한적 계획을 채택할 것을 요구 받는다. 이는 인적, 재정적 자원의 증가를 요구한다. 위원회는 일부 국가들이

이점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언급된 이유들 때문에 유년기에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는 공적 서비스, 비정부 기구, 민간단체와 가정들과의 파트너십을 개발할 것을 권장 받는다. 서비스가 분산될 경우 이것이 유아들의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국가가 적절한 국가적 자료수집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료수집체계가 성별, 연령, 가족 구조, 도시와 농촌 주거에 따라 세분화된 지표를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책과 실무의 개발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됨에 따라 유년기에 대한 보다 많은 조사연구를 할 것을 격려한다. 실시 가능한 조사가 어떤 특정지역과 상황에만 한정되어 있고, 아동의 권리 특히 아동의 참여의 권리를 충분히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당사국은 아동, 그들의 부모 또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와 관리자를 위해 체계화된 아동 권리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 받는다. 국가는 또한 대중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요구받는다.

위원회는 세계은행, 여타 유엔 기구들을 포함한 기부단체들이 유년기 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년기 발달 프로그램 지원을 국제적 지원의 주요 목표로 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유아기의 아동 권리 이행", 2005, CRC/C/GC/7/Rev.1. 전체 문서를 위해서는, 다음 사이트 참조: [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18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모든 정부 수준의 책임 있는 부서들과 기관들의 확인과 조정(제18조는 조세 및 재정, 사회 보장, 사회 복지, 고용과 교육 부서에 관련됨)
- 관련 비정부 기구/시민사회단체들의 확인
- 관할권 내의 모든 분야의 모든 아동들을 위해서, 모든 법, 정책과 실무가 제18조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검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필요할 경우 증진을 위한 목표와 지표의 확인을 포함하고 있는가?
- 아동의 권리에 보다 도움이 되는 어떤 규정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어떤 것이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인지하고 있는가?
- 필요할 경우 어떤 것이 국제적 협력을 포함하는가?

(이런 조치들은 협약을 전체적으로 이행하려는 전반적인 정부 전략의 부분일 수도 있다.)

- 예산의 분석과 필요한 자원의 할당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
- 제18조의 이행을 성인과 아동들에게 홍보하는가?
- 적합한 훈련과 인식제고 개발(제18조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지도사, 지역사회 사업가, 사회 보장 담당 공무원, 부모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됨)

### ● 제18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법률이 아동 양육과 발달에 대한 부모 책임의 주요성을 지지하는가?
- 부모의 책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가?
- 법률이 부모 책임의 이행이 기본적 관심으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담고 있음을 명시 하는가?
- 부모는 그들의 책임 수행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가?
- 법, 행정 제도, 세금과 복지 조치, 공교육이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의 공동 책임과 아동 양육에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 법이 혼외로 태어난 아동의 아버지가 부모 권리와 책임(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양립하는)을 가질 수 있게 하는가?
- 반대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부모 양쪽 모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법 내에 추정하고 있는가?
- 부모가 헤어질 때, 법률은 부모 책임의 할당 이유가 개별적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장하는가?

모든 부모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은 제공받는가?

- 재정적 지원
- 주택
- 적절한 아동 보호 장비
- 어린이 집과 일시 보호
- 조연과 상담
- 모든 맞벌이 부모에게 양질의 어린이집 시설 이용이 가능한가?
- 장애 아동의 부모는 적절한 부가적 형태의 지원을 제공받는가?
- 어머니들은 출산 휴가를 할 수 있는가?
- 아버지들은 출산 휴가를 할 수 있는가?
- 만약 산모가 출산 휴가가 종료 전에 아프거나 또는 사망을 한다면, 아버지가 대신 휴가를 할 수 있는가?
- 입양부모는 입양 초기에 부모 휴가를 할 수 있는가?
- 필요할 경우 국가가 부모 휴가비를 지불하는가?
- 국가는 부모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맞벌이 부모들을 지원하는 취업 조건을 촉진하는가?

###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18조는 분리하여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 일반원칙

제2조: 어떤 근거로도 차별 없이 관할권 내에 있는 각각의 아동들을 위해 인정되어지는 모든 권리들



제3조 1항: 아동에 관련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아동의 최선의 이익

제6조: 생명과 가능한 최대화된 생존과 발달의 권리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에 대한 존중;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경청되어야 할 기회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이행에 있어 특별히 제18조에 관련된 조항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제5조: 부모의 책임과 아동의 능력 개발

제7조: 아동의 알 권리와 부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제9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제10조: 가족 재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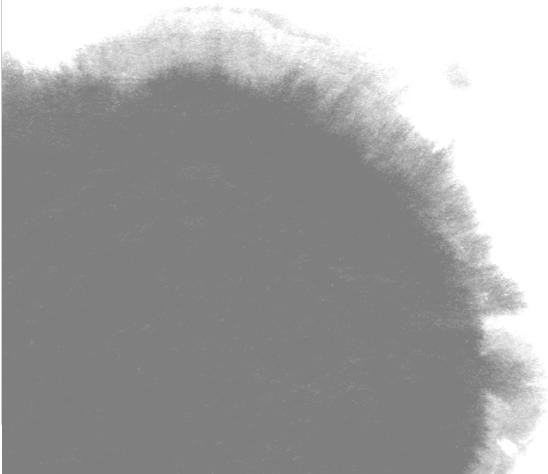
제16조: 사생활, 가족, 가정과 관계하여 자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

제27조: 아동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부모와 국가의 의무



## 19

제9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including sexual abuse, while in the care of parent(s), legal guardian(s) or any other person who has the care of the child.
  2. Such protective measures should, as appropriate, include effective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grammes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the child and for those who have the care of the child, as well as for other forms of prevention and for identification, reporting, referral, investigation, treatment and follow-up of instances of child maltreatment described heretofore, and, as appropriate, for judicial involvement.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치나 방치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화·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 요약

협약 제19조는 다양한 사회에서 “학대”로 정의되는 것으로부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 보호받도록 협약 제37조 하에서 보장받은 아동의 권리 그 이상을 의미한다. 제19조는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제19조는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적·개인적인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존중받는 동등한 인권을 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조항의 원칙은 제6조 하에서 보장된 생명에 대한 권리와 최

상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권리와 관련이 있다.

제19조는 국가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항은 가능한 보호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적·교육적 조치와 함께 특히 아동과 가족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폭력, 학대와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과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과 다양한 조치들과 관련하여 협약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2006년에 발행한 일반논평에서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위원회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CRC/C/GC/8).

가정,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아동 대상 폭력의 정도에 대한 인식이 모든 나라들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모나 다른 양육자에 의해서 아동대상으로 교묘하게 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된 것은 단지 지난 수십 년 내의 일이다. 좀 더 최근에 “발견된” 사실은 가족과 기관 내에서 아동성학대가, 그리고 “섹스 관광”이나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를 포함한 조직화된 성학대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는 제34조에서, 그리고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아동폭력이 만연한 것을 점차 알게 되다 동시에, 폭력의 위험성과 아동기에 경험한 폭력과 아동기와 그 이후 삶에 있어서의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과의 연관성도 연구를 통하여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이틀간의 일반토론의 날에 아동폭력에 대해서만 회의를 갖기로 결정하였고, 2000년 9월에는 “국가에 의한 아동폭력”에 대해, 2001년 9월에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폭력”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아동폭력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총회를 통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하지는 한 가지 주요한 권고안이 제안되었다. 그 제안은 2001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그

연구가 종료되어 2006년 10월에는 결과보고서가 총회에 제출되었다.

##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

아동권리협약 하에서, 국가는 정부 관리에 의해서, 혹은 부모, 다른 양육자, 교사 또는 다른 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예방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초창기부터 아동폭력에 대응하는 일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문제에 대한 2000년과 2001년도 일반토론의 날 이후에 위원회는 아주 상세한 권고들을 채택하였다([www.ohchr.org/english/bodies/crc/discussion.htm](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discussion.htm) 참조). 아무리 가벼운 폭력이라도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은 금지되어야 하며, 인식증진, 민감한 대응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원회는 가장 강조하였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폭력”에 대하여 2001년도 일반토론의 날 이후 채택한 권고 중에서 위원회는 아동폭력 예방이 인권적인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며, 가정과 학교 내에서 모든 구성원과 인권에 기초한 비폭력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아동, 부모와 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받는 학교와 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이 비전이 아동폭력 문제에 대한 모든 행동전략들을 주장해 나갈 것을 위원회는 권고한다. 징벌적인 조치를 사용하지 말고 이러한 비전을 중심으로 행동전략들을 활성화시켜나가는 것이 가장 주된 전략이다. 이 비전 아래에서 아동과 부모 혹은 교사와의 사이나(다른 가족 구성원들이나 학생들) 그 집단 내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며, 모두의 안전과 안녕이 증진된다."*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규정에 따라서 아동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28회기 보고서, 2001. 9, CRC/C/111, paras, 2, 3)."*

또한 위원회는 아동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폭력을 개념화함에 있어서 아동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결정적인 출발지점과 좌표를 삼을 것을 위원회는 권고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이 아동폭력에 대한 행동전략을 향*

상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CRC/C/111, para.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여러 가지 형태의 아동폭력(체벌, 욕박지름, 성추행과 성학대, 언어적, 정서적 학대 등)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가정과 학교 환경에서의 폭력은 서로 강화된다.

따라서 아동폭력에 대한 행동전략은 총체적인 접근을 하여야 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일상적인 괴롭힘이 허용되는 곳에서 신체적인 폭력이나 좀 더 심각한 형태의 폭력이 일어나기 쉽다. 한 지역에서 폭력을 허용하면 다른 지역에서 폭력에 대해 저항하는 일이 어려워진다(CRC/C/111, para. 6)."

일반토론의 날 후에 위원회는 총회를 통하여 아동폭력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유엔사무총장에게 요청할 것을 제안하였다. 총회는 그 제안을 2001년도에 받아들였고(결의서 56/138에서), 2003년에 유엔사무총장에 의해서 파울로 세르지오 피네이로 교수(Prof. Paulo Sergio Pinheiro)가 아동폭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임명되었다. 2006년 총회에 제출된 그의 보고서와 뒤이어 나온 좀 더 포괄적인 책인 '아동폭력에 대한 국제 보고서'는 위원회의 아동폭력에 대한 "허용-제로"작전을 반영하고 있다. 그 연구과정중에 실질적인 지역회의가 2005년에 아홉 번 개최되었고, 전문가 세미나가 있었고, 피네이로 교수가 각 나라에 보낸 후 130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회신을 받은 상세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기관이나 아동을 포함한 개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들이 포함되었다(설문지회신은 [www.ohchr.org/english/bodies/crc/study.htm](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study.htm) 참조).

###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연구 독립전문가 보고서 - 원칙과 제언

독립전문가인 파울로 세르지오 피네이로 교수의 포괄적인 제언은 일련의 다음과 같은 원칙들로 시작된다.

- (a)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하지 못하다. 아동은 성인보다 결코 보호를 덜 받아서는 안 된다.
- (b)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이 가능하다. 국가들은 아동에 대한 폭력을 야기하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일에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도록 예산을 투자하여야 한다.

- (c)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함양하고, 또한 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가족의 능력을 지지하는 모든 일들의 주된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 (d) 모든 폭력사태에 있어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다.
- (e) 폭력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은 나이와 발달 능력과 관련이 있다. 어떤 아이들은 성, 인종, 인종적 출신, 장애나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특별히 취약하다;
- (f)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의사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포괄적인 일련의 제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황별 상세한 권고사항들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 포괄적인 제언

#### 1. 국가 및 지방의 약속과 행동 강화

- 모든 국가들이 아동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개발하고 그것이 국가행동계획 절차에 통합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한 국가의 전략, 정책, 행동계획은 현실감이 있어야 하며, 기한 안에 시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광범위한 시행전략안에서 다양한 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 기관과 협조하면서 체계화시켜야 한다...

#### 2.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금지

-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 모든 장소에서의 폭력들, 즉 차별이나 조기결혼, 여성 성기절단 같은 해로운 전통적 관습들, 그리고 소위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범죄, 성폭력, 고문을 비롯하여, 다른 형태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할 것을 모든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 18세 미만의 어떠한 아동도 사형제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국가들이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 3. 예방 우선

- 국가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 그 근본원인을 다루면서 미연에 방지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고한다. 폭력이 발생한 후 개입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국가는 위험한 요소들을 찾아내어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일에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 4. 비폭력 가치와 인식 증진

- 국가와 시민단체들은 일반화 되어 있는 성역할과 차별, 체벌의 수용, 그리고 해로운 전통관습 등을 포함하는 아동폭력을 눈감아 주거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들을 변화시키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국가는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홍보와 캠페인을 하여야 한다...

#### 5. 아동과 함께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역량 강화

- 아동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과 함께 또는 아동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역량이 개발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업무 초기에, 그리고 이후 실무연수를 통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지식과 권리 존중에 대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과 가족들을 위하여 일하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가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여야 한다...

#### 6. 회복과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

- 폭력이 보고되거나 적발될 때에 국가는 아동에게, 필요에 따라서는 그 가족들에게, 입원 전 간호와 긴급보호, 그리고 법률지원을 포함하는 접근가능하고, 아동에게 민감한, 보편적인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보건, 범죄 재판 그리고 복지 서비스 제도는 아동의 특별한 요구에 맞추어서 고안되어야 한다.

#### 7. 아동 참여 보장

- 국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고려하여 아동폭력의 예방, 대응, 모니터링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아동과 함께 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에 대응하는 아동기구와 아동이 주축이 된 활동들은 지원을 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 8. 접근가능하고 아동친화적인 신고 체계와 서비스 수립

- 아동폭력을 신고하기 위해서 국가는 아동, 그들의 대변자 및 다른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널리 홍보되고, 비밀이 보장되고, 접근이 가능한 방안들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보호시설에 있거나 사법기관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동이 학대를 신고하고, 전문상담가에게 비밀리에 지원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상담전화 서비스와 같은 방법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기술을 이용하여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의 수립도 고려되어야 한다.

#### 9. 책임성 보장과 면책 폐지

- 국가는 모든 아동폭력범에게 범죄에 합당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및 전문적인 절차와 제재를 통하여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사법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형성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폭력이나 성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아동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10. 성별적 차원의 아동폭력에 대한 대응

- 폭력상황에서 여아와 남아가 겪게 되는 다른 위험요소들을 고려하여 국가는 비폭력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성별인지적인 차원에서 고안되고 시행될 것을 권고한다....

#### 11. 체계적인 국가 자료수집과 조사의 개발 및 시행

- 취약그룹을 찾아내고, 모든 단계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목표달성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정보체계를 개선할 것을 모든 국가에게 권고한다. 현재 자료 수집과 정보체계가 개선되어 있지 못한 국가들은, 출생, 사망과 결혼에 관한 자료등록을 전체 국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는 또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과 범죄재판 과정에 있는 아동의 자료도 생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는 분석되어야 하며... 또한 국가는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망라하여 아동폭력에 관한 국가 연구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 연구계획에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면접조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 12. 국제적 약속 강화

- 국가는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력 분쟁관여와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목적 및 동기에 모순되는 모든 유보사항들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관련된 국제 및 지역 인권협약들을 비준하여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시행하여야 하고, 협정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국가는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수립된 폭력예방을 위한 약속들을 준수할 것과, ‘폭력과 보건에 관한 세계보고서’ 제안사항 실행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보건총회 결의서 76과 그 외 본 결의안을 지지하는 지역공공보건 결의안들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폭력연구에 관한 유엔연구 독립전문가 보고서, 유엔, 총회, 제61회기, 2006. 8, A/61/299, paras. 93, 96~109)*

이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는 “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아동폭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결과는 폭력은 문화, 계급, 교육, 소득 그리고 민족적인 출신을 망라하여 세계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모든 지역에서 인권에 관한 의무와 아동발달 상의 욕구와는 정반대로 아동폭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종종 법적으로,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 “전통” 이란 명목 하에 인정되거나 “훈육” 으로 위장된 채로 아동폭력을 정당화하는 성인들의 행태를 중지부 꺾는 -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아동폭력에 대항하는데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아동의 고유성 - 그들의 잠재성과 취약성, 성인에의 의존성 - 으로 인하여 그들이 폭력으로부터, 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사회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불문하고, 아동폭력을 멈출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긴급한 문제이다. 수 세기동안 보이지 않게, 알려지지 않은 채 아이들은 성인의 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다. 이제는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에 대한 규모와 영향을 더 잘 알게 되었으므로, 실추된 아동의 권리를 위해 효과적인 방지책과 보호가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아동폭력에 관한 유엔연구 독립전문가 보고서, 총회 제61회기, 2006.8, A/61/299, paras.1~3, 6. 전체 보고서를 보려면 [www.violencestudy.org/IMG/pdf/English.pdf](http://www.violencestudy.org/IMG/pdf/English.pdf); 아동폭력에 관한 세계 보고서를 보려면, [www.violencestudy.org](http://www.violencestudy.org) 참조).”

보고서는 일련의 포괄적인 원칙과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앞의 박스 참조). 또한 상황 별 특수한 제언들은 가정, 가족, 학교, 보호 및 사법 체계, 직업장 그리고 지역 사회 등 아동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다른 환경에서의 아동폭력에 대한 세계적인 보고서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하는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는 2009년까지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중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의 이 연구가 각 국가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제안한 권고사항들에 대해 2006년 9월부터 일관되게 사후 점검을 해 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동폭력 문제에 대한 사무총장의 심도 깊은 연구와 이와 관련하여 각 정부에 보낸 설문조사에 대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답변과 또한 2005년 5월 30일에서 6월1월에 걸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지역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역회의 결과를 활용하여서 시민사회 단체와 협력하면서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그러한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기한을 정한 조치들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권고한다(콜롬비아, CRC/C/COL/CO/3, para. 60)."*

일반토론의 날 이후에 위원회는 아동폭력에 관한 일련의 일반논평을 채택할 것을

제언하였다. 2006년에 첫 번째 논평인 “체벌을 비롯한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제19조, 제28조 2항, 제37조 등)”가 발표되었고,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에 관한 협약 조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일반논평은 체벌을 비롯한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태의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처벌들은 현재 아동폭력의 형태로서 널리 용인되고, 자행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과 그 밖에 다른 국제적 인권 조약들은 아동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적 고결성, 법 아래에서 동등한 보호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위원회는 이 일반논평을 공표하면서, 협약당사국들이 아동에 대한 체벌이나 다른 형태의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태의 처벌을 금지하고 폐지하도록 신속하게 움직일 것과, 법률적 조치, 인식증진과 교육적 조치를 국가가 신속히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강조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2회기 보고서, 2006, 5/6, CRC/C/GC/8, paras. 1, 2. 요약문 참조)."*

그 밖의 다른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폭력에 취약한 특정한 아동 집단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폭력에 관한 제언**

유엔아동특별총회의 결과문서인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에서, 아동폭력을 종식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구체적인 약속을 체결하였다 (아래 참조)(제27회기, 유엔특별총회, 특별위원회 보고서, 2002, A/S-27/19/Rev.1; [www.unicef.org/specialsession/docs\\_new/documents/A-RES-S27-2E.pdf](http://www.unicef.org/specialsession/docs_new/documents/A-RES-S27-2E.pdf) 참조).

##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 폭력이 없는 세상

###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문서의 행동계획에서 발췌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는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근절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a)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 (b) 무력 분쟁의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법의 준수를 보장한다.
- (c) 소아기호증, 밀매와 유괴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 (d) 국제노동기구 조약 제182항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채택된 국제 기준에 반하는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상세하게 수립하여 실행한다.
- (e)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수백만 아동의 곤궁한 상황을 개선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전략과 행동을 실천한다."

### 일반적인 보호

1. 출생당시 혹은 출생 후 즉시 모든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발하고, 태어난 아동은 국내법과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이름과 국적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한다.
2. 가정, 학교 혹은 다른 기관, 노동현장 또는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형태의 폭력, 방임, 학대와 착취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은 법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아동을 보호할 정책과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한다.
3.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다른 의견, 국가적, 민족적, 사회적 배경, 자산, 장애, 출생 또는 다른 지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고, 교육, 보건, 기초적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공표함으로써 아동대상의 모든 범죄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한다.
5.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어긋나면서 제재대상 국가의 국민, 특히 아동과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 실현을 저해하고, 그들의 복지를 방해하며,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식량과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어렵게 하는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억제하고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 식량과 의약품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6. 폭력과 학대, 착취로부터의 아동보호에 실패할 때 불법적이고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 다는 점을 널리 인식시킨다.

7.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원칙을 영두에 두고, 아동에게 적합한 특별사법제도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및 지원, 보호 서비스를 수립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아동의 사회재통합을 촉진시키도록 특별히 훈련된 직원을 양성한다.
8. 고문과 기타 잔인한,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모든 국가의 정부, 특히 사형제도가 아직 폐지되지 않은 국가의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제37조와 40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와 14조를 포함하는 국제인권조약 관련 조항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9. 조혼이나 강제결혼, 여성의 할례 등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로운 전통과 관습을 철폐한다.
10. 주 양육자가 없는 아동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11. 고아, 기아, 이주노동자의 자녀, 취업아동, 거리의 아동, 극심한 빈곤을 겪는 아동을 포함하여 불우한 사회 환경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의 범죄예방과 보호, 재활, 재통합을 위한 정책을 채택, 이행하고, 이들 아동들이 적절한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2. 불법적이거나 착취목적, 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닌 입양과 위탁양육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13. 부모 중 일방에 의한 아동의 국제적인 납치사건들을 다룬다.
14.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생산과 밀매에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철폐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5.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과 밀매에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들이 이용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16. 청소년을 포함하여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 흡입제, 술에 의존적인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혜택을 제공한다.
17. 대다수가 여성과 아동인 난민과 국내강제이주자들에게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보호와 원조를 제공한다.
18. 위기대처방안 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가능한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과 보호를 받게 한다.
19. 가정, 부모, 법적 후견인과 양육자들의 책임을 고려하면서, 아동의 심리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웹사이트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게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권장한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행동계획, 전략과 행동계획들, 제27회기, 유엔특별총회, 특별위원회 보고서 2002, A/S-27/19/Rev.1, paras. 43, 44)

##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들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조사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법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아동에 대한 체벌을 용납하거나 인정하는 조항들에 대해 비판하였다. “정신적 폭력”은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는 수치심, 희롱, 언어 학대, 격리의 결과,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폭력행사를 포함한다. 가정 내에서의 가족폭력,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그리고 무력분쟁 상황아래에서 아동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폭력을 목격하는 것도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조사 결과가 말해 준다.

협약의 다른 조항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와 더 넓은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보호 (제17조)
- 건강에 해로운 전통적 관습으로부터 아동보호 (제24조 3항)
- 인간으로서의 아동 존엄성에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되는 학교 규율 (제28조 2항)
- “조직화 된” 학대와 아동 매춘 및 포르노그래피에의 아동 관여를 포함하는 성 착취와 성학대 (제34조, 선택 의정서)
- 매매, 밀거래와 유괴로부터 아동보호(제35조)
- 다른 형태의 착취(제36조)
- 고문이나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와 처벌로부터 보호(제37조)
- 무력 분쟁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제38조, 선택 의정서)

위원회는 가정 내에서 그리고 가정 밖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의 수위에 염려를 제기하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추천한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와 아동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사례들을 예방하고 그에 대응하는 당사국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생각*



한다. 가정 안팎에서 발생하는 성학대를 포함한 아동방임과 학대가 가져오는 해로운 결과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또한 그러한 학대를 예방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잘 훈련된 직원들이 부족한 것과 함께 재정적,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피해자를 위한 재활 조치와 시설의 부족과, 사법제도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된 것도 우려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협약 제19조와 39조 차원에서, 위원회는 가정과 학교, 크게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가동되고 있는 다체계 간의 협동적인 프로그램들과 재활조치들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그러한 범죄와 관련한 법 집행은 더욱 강화할 것과, 아이들이 사법체계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가해자들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않도록 아동학대를 고발하는 절차와 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이 문제에 관한 사회내의 전통적 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적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UNICEF와 국제 NGO들과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권장한다(코스타리카, CRC/C/15/Add.117, para. 20)."

위원회는 코스타리카의 제3차 보고서를 심의할 때에 더욱 자세한 권고들을 제시하였다.

"지난번에 제시한 권고와 관련하여...위원회는 아동학대와 방임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당사국이 기울인 노력을 주목한다. 특히 의심되는 아동학대 사례의 신고가 향상되었고, 확신을 가지고 신고한 사례에 있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는 절차가 수립되었고, 신고전화 911이 작동하게 된 것은 괄목할만하다. 그러나 위원회는 아동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의 큰 부분이 NGO에게 넘겨지고, 포괄적인 예방정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점을 염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911이나 Linea cuenta conmig와 같은 신고전화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NGO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고, PANI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아동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와 상담이나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기존 법률을 점검함으로써,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는 법적 조치들이 아동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고, 특히 아동 피해자의 증언을 비디오 녹화한 자료가 증거로서 채택됨으로써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우선적으로 권고한다(코스타리카, CRC/C/15/Add.266, paras. 37, 38)."

### “상해나 학대, 방임이나 유기적 대우”

지난 수 세기에 걸쳐 겨우 가시화되기 시작한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은 아동 사망이나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야기한다.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연구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 더 크게 가시화되었고, 향후 더 깊은 연구와 체계적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A/61/299).

방임은 고의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모/가족/지역사회/국가가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무능력에 의해 야기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동방임은 모든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여성고용이 남성고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달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체계가 고도로 발전한 국가들이 요즘 맞벌이 부모에 의한 어린 자녀의 방임문제와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외로움” 문제로 골몰하고 있다.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아동의 생존과 발달(제6조)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포괄적인 의무와 의료적인 보호권(제24조)과 함께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특별한 의무(제18조), 사회보장 혜택(제26조), 적절한 생활수준(제27조)과 교육(제28조)은 모두 방임예방과 특별히 관계가 있다.

“유기적 대우”에 대한 언급은 아동에게 일어나는 사고의 문제를 제기한다(제24조 2항 (e) 참조). 발달 상태와 신체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은 특히 사고를 당하기 쉽다. 주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하나, 여러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의 행동지침도 또한 필요하다. 제3조 2항은 아동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필요한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여야 하는 포괄적인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다.

## “성학대를 포함하는 학대 또는 착취”

이러한 단어들이 포함된 것과 또 성적 착취나 다른 형태의 착취까지 그 영역을 넓은 추가적인 조항들이 포함된 것은(특히 제32조의 경제적 착취, 제34조의 성적 착취,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36조의 다른 형태의 착취) 포괄적인 보호를 만들고자 한 협약 초안자들의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학대 또는 착취는 반드시 신체적·정신적 폭력일 필요도 없거니와 학대로 정의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불리한 대우 모두를 포괄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학대를 난폭한 성적 폭행뿐 아니라, 합의여부를 떠나서, 미성숙하거나 성적 동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특정 연령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갖는 모든 성적 활동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위원회는 가정 내를 포함하여, 성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행동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위원회는 가족 내에서 높은 수준의 난혼을 허용하는 정보에 대해, 가정 내 아동학대에 관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의 부족에 대해, 그리고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이 가해자의 서출 자녀들과 갖는 상관계를 단호하게 금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와 학대 (가정 내 성학대 포함)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고 효과적인 법,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채택하여 모든 형태의 학대에 대응한다.*
- (b) 고충을 접수하고, 모니터하고,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필요할 경우 사례를 기소할 때에 아동을 배려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기소한다.*
- (c) 성학대를 단호하게 금지하기 위하여 가정 내의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 (d) 단순한 개입이나 처벌보다는, 필요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지원하고 도움을 제공하도록 디자인된 포괄적이고 전국적인 대응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낙인찍히는 것을 예방하면서 모든 폭력 피해자들이 상담과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원조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e)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과 UNICEF로부터 기술적인 도움을 요청한다  
(적도기니아, CRC/C15/Add.245, paras. 44, 45)."

위원회는 또한 성별과 연령을 구실로 하여 보호 시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 염려를 제기한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아동폭력에 관한 법률에 나이제한을 둔 것을 우려한다. 14세 혹은 16세 이상(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의 아이들은 같은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약 제19조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c)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으로부터 특별보호를 함에 있어서 현재 두고 있는 나이 제한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라...(이탈리아, CRC/C15/Add.198, paras. 37, 38)."

"...위원회는 또한 형법은 소녀 강간만 유죄로 다스리고, 소년들이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점을 우려한다(레바논, CRC/C/LBN/CO/3, para. 47)."

### “부모, 법정 후견인 및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제19조의 범주는 가정 내에서와 그 밖의 다른 돌봄 환경 - 위탁보호와 탁아, 학교, 모든 종류의 수용시설 등 - 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을 포함한다. 협약 제3조 3항에서 모든 기관, 서비스와 시설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만들고 감독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동폭력 예방과 관련되어 있다.

위원회는 또한 가족 내 폭력이 종종 아이들을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거리로 내모는 것을 주목해 왔다.

"위원회는 가정 내 아동학대(성학대 포함)와 방임이 발생하고, 그 결과 종종 아동이 버려지거나 도주하게 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그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추가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에 심히 놀랐다(필리핀, CRC/C/15/Add.29, para. 13)."

### 폭력에 특히 취약한 아동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연구 보고서는 어린 아이들은 신체적 폭력의 위

험에 좀 더 처해 있고, 반면에 성적 폭력은 사춘기나, 청년기에 도달한 아동들에게 널리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신체적 폭력 위험에 좀 더 노출되어 있고, 반면에 소녀들은 성폭력, 방임과 강요된 매춘의 위험해 직면해있다. 보고서는 몇몇 아동 집단이 특별히 폭력에 취약한 것을 밝히고 있다. “이들 중에는 장애아동, 소수민족이나 다른 소외계층 아동, “길거리 아동” 과 법적 공방에 처한 아동, 난민과 기타 추방된 아동이 포함된다(A/61/299, paras. 30, 31).”

다섯 가지 일반논평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아주 어린 아동, 장애아동, 청소년, HIV와 에이즈에 감염된 아동 및 동반자가 없고 가족과 격리된 아동들의 취약성을 확실하게 밝혔다.

### 초기 아동기

*"어린 아이들은 종종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 방임, 학대와 학대의 희생양이 된다. 학대는 흔히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특히 파괴적일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학대를 피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호를 요청하지도 못한다. 방임과 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뇌의 성숙 과정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초기 아동기의 학대와 방임의 만연, 그리고 그 후유증이 장기간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를 인식하면서, 당사국은 위기에 처한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그들이 겪은 폭력에 대해 낙인을 받지 않으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초기 아동기 아동권리 실천"에 관한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36 (a))..."*

### 장애 아동

*"장애 아동은 대안적 보호, 노동 환경과 넓게는 지역사회까지 포함하여 가족, 학교, 공사립시설 등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정신적·신체적·성적 학대에 더욱 취약하다. 장애 아동은 5배 정도 더 학대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것으로 종종 인용된다.*

가정과 시설 내에서, 장애 아동은 종종 정신적·신체적 폭력과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특히 방임이나 유기적 대우를 받기 쉬운데, 이는 그들이 종종 가족에게 육체적, 경제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능적인 고충수리 모니터 시스템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게 만든다. 학교 내에서의 괴롭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특정 형태의 폭력이며, 이러한 형태의 학대는 너무나 자주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특별히 그들이 취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a) 그들이 독립적으로 듣고, 움직이고, 옷 입고, 용변을 보고, 샤워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도를 넘는 사적인 보호나 학대로의 취약성을 증가 시킨다.
- (b) 부모와 형제, 학대가족과 친구로부터 고립되어 생활한다는 점이 학대의 가능성을 높인다.
- (c) 그들이 의사소통과 지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학대에 관해 말하려고 하여도 무시당하고, 신임을 받지 못하고, 오해 받게 된다.
- (d)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아동을 돌보면서 육체적, 경제적,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학대를 자행하기 더 쉽다는 것을 연구결과가 말해준다.
- (e) 장애 아동은 종종 성에 대해 잘 모르며, 그들은 몸에 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서, 특히 성적 학대를 자행하는 이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폭력과 학대 문제를 언급하면서, 당사국은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하여야 한다:

주:

- (a)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다른 양육자들을 아동학대의 위험과 징후를 이해하도록 훈련하고 교육한다.
- (b) 자녀를 위한 양육자나 시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모는 매우 주의하여야 하며, 학대를 발견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 (c)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형제나 다른 양육자들을 지원하는 집단들을 마련하고 격려하면서 양육자들이 아동을 보살피고 장애에 대처하는 일을 돕게 한다.
- (d) 아동과 양육자들로 하여금, 아동이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대우받을 권리를 부

여 받았다는 것과, 그러한 권리가 침해 받았을 때에, 적절한 기관에 고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 (e) 학교는 교내에서의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 장애아동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그들이 교육과정에 잘 순응할 수 있게 한다.
- (f)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들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특수 훈련을 받은 직원들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에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한다.
- (g) 아동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고충처리 절차를 설치하고, 파리 원칙에 근거한 모니터 체계를 가동한다.
- (h) 가해자를 처벌하고 가정으로부터 격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서 아동이 그들 가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계속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 (i) 집중적인 회복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학대와 폭력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게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s. 43, 44)."

2006년 12월에 채택된 장애인 권리협약 제16조는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1. 당사국들은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기타 조치들을 취하여서, 가정 내외에서 성적인 측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2. 당사국들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과 그들 가족과 돌보는 사람들에게 성별과 나이를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원조와 지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착취와 폭력과 학대를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나이, 성별 그리고 장애 정도를 감안한 보호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주기위해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독립적인 정부당국에 의해 효과적으로 모니터 받게 하여야 한다...
5. 당사국들은, 여성과 아동 대상의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착취, 폭력, 학대 사례들을 발견하고,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기소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협약은 모든 장애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결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청소년기

“아동권리협약 상에서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 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 연령 집단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형태의 학대, 방임, 폭력과 착취에 국가들이 관심을 증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국가들은 특별히 취약한 계층인 장애 청소년의 신체적, 성적, 정신적 고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발달하는 청소년의 역량을 고려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들과 조치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또래 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특히나 예술, 연예, 스포츠 분야에서의 적절한 역할모델이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강조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3, CRC/GC/2003/4, para.19)."*

일반논평은 또 다른 취약한 청소년 집단을 확인한다.

*"폭력은 개인, 가족, 공동체, 사회적 요소가 상호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집이 없거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폭력 집단에 속해 있거나 소년병으로 징집된 취약한 청소년들은 특히 시설이나 개인 간의 폭력 모두에 노출되어 있다. 협약 제19조 하에서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청소년을 위한 공적, 사적 기관들(학교, 장애 청소년을 위한 시설, 청소년 교정 시설 등)에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청소년 대상 시설 폭력 예방 및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을 보살피는 직원들과, 그 밖에 경찰을 포함하여 업무상 아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과 모니터링; 그리고
- (b) 적절한 부모교육과 초기 아동기에 사회적, 교육적으로 발달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 개인 간의 폭력 예방, 비폭력적인 문화적 규범과 가치관 양성(협약 제 29조에서 제시된), 엄격한 무기 통제와 알코올과 마약에의 접근 제한(아동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3, CRC/GC/2003/4, para. 23)."

## HIV/에이즈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HIV/에이즈에 감염되거나 영향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간이나 다른 형태의 성학대를 포함하는 폭력은 가정 내에서나 위탁보호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감옥이나 정신건강 또는 장애와 관계된 시설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는 교사나 직원들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특히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하는 그들의 능력, 개인적 역량 및 자율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전쟁이나 무력 분쟁 중에 아동이 겪는 폭력과 학대는 HIV/에이즈와 상관관계가 있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력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은 매우 중요하며, 군대에 의해 이용되거나,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가정 도우미로 이용되거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거나, 국내 난민이 되거나 난민캠프에서 살고 있는 소년 소녀들을 찾아내고 지원함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HIV/에이즈와 아동권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아동권위원회, "HIV/에이즈와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No.3, 2003, CRC/GC/2003/3, paras. 37, 38)."

## 동반자가 없거나 격리된 아동

위원회는 고국을 떠나서 동반자 없이 홀로 되거나 가족과 격리된 아이들이 특히 성적 착취와 매매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국을 떠나서 동반자 없이 홀로 되거나 격리된 아동의 대우에 관한 일반논평 No.6, 2005, CRC/GC/2005/6, paras. 50~53. 및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34조, 제35조 참조).

##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권리

아동권리위원회는 보고서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아동에 대한 체벌의 합법성과 사회적 인정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위원회는 각 개별 국가에 대해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차원의 체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종종 강조한다.

위원회는 2006년에 “체벌이나 다른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태의 처벌”에 관한 일반논평 No.8을 채택하였다.(하단 박스 속의 요약본 참조)

위원회는 일반논평 No.8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로, 위원회는 모든 대륙의 130개가 넘는 국가들에 대해 가정이나 다른 환경 내에서 모든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위원회는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고결성을 존중하고, 법아래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및 기타 조치들을 취하는 국가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에 고무되었다. 위원회는 2006년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학교 내에서도 아동 대상 벌칙에서 체벌을 금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정과 가족 내, 그리고 모든 형태의 대안적 양육환경에서 체벌을 완전히 금지한 국가들도 증가하고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8, 2006, CRC/C/GC/8, para.5).”*

교육의 목적에 관한 첫 번째 일반논평에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상기한다.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례로, 교육은 아동이 가진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협약 제12조 1항에 따라 그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교내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은 또한 제28조 2항에서 반영되었듯이 규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존중하고, 교내에서의 비폭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검토 결과보고서에서 체벌의 사용뿐 아니라 학교규율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는 아동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밝혀왔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 2001, CRC/GC/2001/1, para. 8)."

"위원회가 영국의 최초 보고서에 관해 정부 대표자들과 가진 회의의 요약 기록문은 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이 말 한 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당사국의 국내법 아래에서 "적당한" 수준의 체벌이 허용될 때마나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위원회는 경험하였다. 유추해 보면, 어느 누구도 "적당한" 수준의 아내 구타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쟁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국의 견해는 어느 의미에서 아동을 부모의 자산으로 보는 낡은 시각의 자취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법률을 제정한 결과 영국에서보다 더 적은 사건들이, 그 반대가 아니라, 재판에 회부되었다. 더군다나, 그는 몇몇 법관들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최근의 언론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일례로, 가족벨트로 15번 채찍질한 것이 과도한 처벌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허용 가능한 수준의 체벌에 대한 개념은 최우선적으로 회피되었다(영국, CRC/C/SR.205, para. 63)."

영국은 최초의 보고서에서 "합당한 징벌"의 개념을 옹호하였다. "영국 정부의 견해는 현재의 협약에서 인정된 아동의 권리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는 적절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부모의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는 제5조와 연관해서 제19조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방향과 지침 속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합당하고, 절제된 육체적 징벌의 행사가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이다... 물론 학대나 다름없는 과도한 처벌이 범죄 행위인 것은 변함이 없다(영국, CRC/C/11/Add.1, paras. 335, 336)."

그러나 영국 정부 대표자들과의 회의에서, 한 위원회 일원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가정 내의 체벌과 관련하여 영국 대표단은 사적 영역의 문제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협약 제19조는 아동을 특히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의 책임과, 협약 제5조에 합의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발달 역량 간에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모들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5조에서 허용된 재량의 범위 안에 체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른 국가들은 민법 내에 범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영국, CRC/C/SR.205, para. 72)."

영국의 두 번째 보고서를 검토할 때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전히 '합당한 체벌'을 계속 옹호하며,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기 위하여 신중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당사국 정부가 '합당한 체벌'에 대한 옹호를 철회하기 보다는 제한하고자 하는 제안은 협약의 원칙과 규정들과 전술한 권고사항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회의 견해이다. 특히 그러한 제안은 아동의 존엄성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E/C. 12/1/Add.79, para. 36). 더욱이 그들은 몇 가지 형태의 체벌은 허용되는 것으로 제안하였는데, 그럼으로써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훈육을 촉진하고자 하는 교육적 조치들을 훼손시키고 있다."

위원회는 영국에 대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a) 당사국은 '합당한 체벌'에 대한 옹호를 전국적으로 철회하고, 기존의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가정 내와 기타 모든 상황에서의 모든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긴급히 채택한다;

(b) 긍정적이고 참여적이고 비폭력인 형태의 훈육을 촉진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적 고결성에 대한 아동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과 부모와 아동관련 업무 종사자를 교육에 포함시키고, 처벌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관한 공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영국, CRC/C/15/Add.188, paras. 36~38)."

위원회는 종종 어떠한 수준의 체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위원회는 아무리 가볍더라도 학교 내, 가정 내와 시설 내에서의 체벌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국내법에 결여되어 있는 것을 염려한다. 위원회의 견해로는 이것은 협약의 원칙과 조항들, 특히 제3조, 제5조, 제6조, 제19조, 제28조 2항, 제37(a)과 (c) 조, 제3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호주, CRC/C/15/Add.79, para. 15). "

### 체벌이나 다른 잔인하고 모욕적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특히 제19조, 제28조 2항, 제37조)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8, 2006:

#### 요약

아동폭력에 대한 일련의 논평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논평인 일반논평 No.8의 목적은, "모든 당사국들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이나 모든 형태의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벌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과, 또한 당사국이 채택해야 할 법적, 교육적 조치와 인식개선의 윤곽을 그릴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하에서의 당사국들의 의무사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이 널리 용인되고 관용을 베푸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가족 내에서도 학교 내에서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 체벌을 근절하는 것만이 아니다. 사회 내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당사국들의 주요 전략이다.

#### 정의

위원회는 체벌 혹은 신체적 처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무리 가볍더라도 신체적 힘이 사용되고, 어느 정도의 고통과 불쾌감을 주고자 의도된 어떠한 형태의 처벌을 의미한다. 대부분 손이나 다른 도구-채찍, 몽둥이, 벨트, 신발, 나무 주걱-등을 사용한 구타("주먹으로 치기", "따귀나 등을 철썩 때리기", "불기짖을 심하게 때리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예를 들면, 발로 걷어차기, 흔들기, 아동을 집어 던지기, 핥기, 꼬집기, 화상 입히기, 끓는 물에 데기 혹은 강제로 먹이기(예를 들면, 아동의 입을 비누로 씻기거나, 매운 음식을 삼키게 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위원회의 관점에서는, 체벌은 언제나 모욕적이다. 거기에 더하여, 비신체적인 다른 형태의 처벌도 또한 잔인하고, 모욕적이어서 협약에 상충된다. 예를 들면, 아동을 과소평가하고, 굴욕을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왕따 시키거나, 헐박하고, 겁주거나, 조롱하는 것 등이 이러한 형태의 처벌에 포함된다."

체벌이나 잔인하고 모욕을 주는 다른 형태의 아동처벌은 가정과 가족 내에서, 모든 형태의 대안적 양육환경에서, 학교나 그 밖의 다른 교육시설이나 사법 체계

- 법원 판결로서 그리고 교도기관이나 다른 기관 내에서의 형벌로서, 아동노동 현장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많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가 반대하는 처벌의 형태로써 폭력과 모욕은, “필요한 조언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형태의 훈육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훈육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인 신체적 행동과 아동을 위해로부터 보호할 목적의 신체적인 개입과는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한다.

### 인권 기준들

모든 체벌이나 다른 형태의 모욕적 처벌을 금지하거나 근절하고자 하는 인권의무의 근본은 자신의 존엄성과 신체적 고결성을 존중받고, 법 아래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자취는 국제인권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모든 개인의 존엄성은 국제인권법의 기본이 되는 안내수칙이다.” - 또한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이 어떻게 이러한 원칙위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협약 제19조는, 전혀 애매모호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아동대상의 어떠한 수준의 합법화된 폭력도 허용하지 않는다. 체벌이나 다른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태의 처벌은 폭력이며, 국가는 그러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여러 국제적, 지역적 인권협약 기구와 많은 국가의 헌법과 고등 법원에서 체벌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알고 있다.

제19조와 제28조 3항이 학교에서의 훈육과 관련하여 특별히 체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체벌을 금지하고 제거하는 의무를 어떤 면으로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권협약과 마찬가지로 협약도 살아있는 조약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협약에 대한 해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여야 한다. 협약을 채택하고 16년이 경과하면서 가정, 학교 그리고 다른 시설에서의 아동대상 체벌의 발생은 훨씬 더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협약에 근거한 신고절차와 조사연구와 전국적인 인권기관이나 비영리기관들에 의한 옹호활동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일단 가시화되기만 하면, 협약의 실천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적 고결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아동이 가진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직접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자명해진다. 명백한 아동의 본성, 그들의 원초적이고 의존적인 발달 상태, 그들의 취약성 뿐 아니라 고유한 인간적 잠재력 등 모든 것이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이거나 다른 보호를 더욱 더 필요하게 한다.”

어느 정도의 “합당하거나”, “적당한” 체벌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동최선의 이익에

대한 해석은 협약의 전체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의무와 아동의 견해에 당연히 비중을 두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한다: 체벌이나 다른 형태의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벌을 포함하는 실천들을 정당화하는데 아동최선의 이익이 사용될 수는 없다. 이는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신체적 고결성에 대한 권리와 상충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체벌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을 위원회는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는데 "종교나 신념의 실천은 다른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과 신체적 고결성을 존중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교와 신념을 실천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 **체벌이나 다른 잔인하고 모욕적 형태의 처벌 근절에 필요한 조치와 방안들**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어느 정도의 체벌을 허용하는 모든 조항들은- "합당한" 처벌, "합법적인" 징계 등- 제정법에 있건, 일반법에 있건 간에-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법은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한다: "형법이 아동폭력에 완전하게 적용된다면, 아동은 그들이 어디에 있건, 가해자가 누구이던 간에 체벌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견해로는, 체벌이 전통적으로 용인되는 한, 적용 가능한 분야의 법률이 - 예를 들면, 가족법, 교육법, 모든 형태의 대안적 양육과 관련된 법 및 사법 체계, 고용법 - 해당 환경에서의 체벌 사용을 명백하게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전문적인 도덕규범이나, 교사 및 양육자 등을 위한 지침이나 또는 기관의 규칙이나 선언서 등이 체벌이나 다른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태의 처벌의 불법성을 강조하면 더욱 가치가 있다."

법 개정은 인식증진, 안내와 훈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위원회는 강조하는데, 이는 그러한 개정의 주된 목적이 예방이기 때문이다.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 부모에 의한 자녀 체벌의 모든 사례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효과적인 금지를 위해서는 아동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 비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 협약이 부모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정 내에서, 그리고 교사 및 양육자와 아동 간의 관계를 안내해주는 원칙의 틀은 제공한다(para. 46)." 예를 들면, 아동의 성장을 위한 욕구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들의 최선의 이익은 기본적인 것이며, 그들의 의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국들은 체벌이나 다른 잔인하고 모욕적 형태의 처벌을 근절하는 과정들을 모니터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은 아동을 포함하는 조사 인터뷰와 독립적인 모니터 기구의 설립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그동안 채택한 모든 조치들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례 보고서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8, "체벌이나 다른 잔인하고 모욕적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9조, 제28조 2항, 제37조)", 2006, CRC/C/GC/8. 원문 보기는 다음 참조: [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

"아무리 가벼운 벌일지라도 가정 내에서의 체벌 사용을 지방법에서 금지하는 조항이 부족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심려를 표한다. 위원회의 견해로는, 이것은 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리비아 이람 자마히리아; CRC/C/15 Add.84, para. 14)."

## 학교, 양육환경 및 사법 체계에서의 폭력

여러 국가로부터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시설 내에서의 아동폭력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폭력은 두 가지 특별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 “합법적”인 폭력 사용(혹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거나)과 체벌, 이유에 맞지 않는 신체적 구속, 독방 감금이나 다른 형태의 고립, 특정 의상을 입어야 하는 의무, 식사 제한, 가족 구성원과 친구간의 연락 제한이나 거부, 욕설과 비꼼 등과 같은 모욕적인 훈육이나 취급.
- 폭력 또는 폭력적 위협, 몇몇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에 의한 아동대상의 소위 “집단 괴롭힘” 또는 “몰려다님”, 이러한 것은 놀리기와 희롱부터 (일반적으로 인종과 성 희롱을 포함)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다양하다.

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아동폭력”에 관한 2000년도 일반토론의 날 이후에 시설 내 아동폭력에 관하여 상세한 권고들을 채택하였다.

협약 제3조 3항은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 서비스, 시설들은 관계 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와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요청한다.”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법률로 제정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한다.

- 체벌이나 다른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와 처벌 금지(여기에 더하여 규칙들은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훈육과 대우에 대해 명확히 금지한다.):
- 시설 내에서 아동에 의한 아동대상의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필요:



- 아이들은 비밀리에 조언을 구하거나, 조사와 권고사항을 실행할만한 적절한 권한을 가진 독립된 기구를 통해 그들이 당하는 대우에 대한 불만을 항의할 수 있는 명백하고 널리 홍보된 절차를 확립. 그러한 절차들은 필요한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독립 변호사 또는 대변자들과 접촉 할 수 있어야 함. 장애 아동과 어린 아동을 보호하는 특별한 장치가 요구됨.

학교와 관련하여, 제28조 2항은 “당사국은 학교에서의 훈육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또한 현재의 협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실시되는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 을 요구한다. 위원회가 “교육의 목적” 에 관한 일반논평 No.1(29장 참조)에서, 그리고 일반논평 No.8에서 강조해왔듯이, 이 조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제19조와 일치한다. 체벌이나 정신적 폭력에 해당하는 다른 모욕적인 처벌은 그래서 법에 어긋난다.

위원회는 몇몇 국가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교 내에서의 집단 괴롭힘을 강조하였다(“가정과 학교 내에서의 아동폭력” 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 이후 채택한 권고사항에서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함께’ (틸사만스)로 명명된 2001-2002의 집단 괴롭힘 저항 운동이나, 교육법으로의 통합이나 집단 괴롭힘 반대 실천을 전국적인 활동계획 규칙으로 통합하는 등 당사국이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하여 취한 노력들을 환영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그 규칙들이 완전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며, 장애 아동이나 외국태생 아동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여전히 염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집단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서 장애아동과 외국태생 아동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괴롭힘 반대 규칙이 모든 학교나 다른 아동관련 시설에서 완전하게 이행될 것을 권고한다(스웨덴, CRC/C/15/Add.248, paras. 35, 36).”*

보고서 검토를 통하여 몇몇 국가에서는 체벌이 교도소 내에서의 형벌로서 사용될 뿐 아니라,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 판결로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

는 발견하였다. 이것은 제19조나 협약의 다른 조항뿐 아니라, 위원회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소년사법에 관한 유엔 규칙 및 지침과도 마찰을 빚는다(박스 참조). 노숙하거나 노동하는 아동 대상의 폭력을 포함하여 경찰과 같은 정부 관리들에 의한 폭력이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 체벌과 소년사법 기준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 “베이징 규칙” : 규칙 제17.3 (판결과 처분에 관한 지침 원칙들) : “청소년은 체벌을 당해서는 안 된다.”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엔 규칙: 규칙 제27번: “...체벌을 포함하여 잔인하고, 비인격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하는 모든 징계 조치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유엔 지침서인 리야드 지침서: 21(h) 문단에는 교육 체계는 “혹독한 징계 조치, 특히 체벌을 피할 것” 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54 문단은 “어떠한 아동이나 청소년도 가정, 학교, 그리고 다른 기관 내에서 혹독하고, 모욕적인 교정이나 처벌 조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다.

### 폭력이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포함한 전통적인 관습

전통적 관습으로부터 아동보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약 제24조 3항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건강에 해로운 전통적인 관습을 폐지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국가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관습은 제19조하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신체적, 정신적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 자살과 자해

자살과 자살미수를 포함한 자해로부터의 아동보호는 명백히 제19조와 제6조의 영역 내에 포함된다. 위원회는 몇몇 산업화된 국가에서 특정한 연령집단 아동들의 자

살률 증가를 문제로 삼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사연구와 더 발전된 행동지침을 제안하게 되었다(논의는 제6조 참조).

## 폭력적 영상들

서구 사회의 개인 간의 폭력 수위에 대한 걱정은 TV, 비디오, 컴퓨터를 포함한 미디어의 폭력적 영상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영상에 자주 노출되는 아이들은 폭력에 둔감해지고, 어떤 특정한 폭력 행위를 모방하게 복돋는다는 두 가지 모두가 염려사항이다. 협약 제17조 (e)조는 당사국들이 “협약 제13조와 18조를 염두에 두고서 아동에게 해가 되는 정보나 소재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적절한 지침서 개발을 권장한다(제17조).”

## 보호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들: 협약 제19조 2항

협약 제19조의 두 번째 문단은 국가들이 아동보호와 폭력 예방을 위해 택해야 할 끝없는 조치들을 제공한다.

### "...아동과 아동양육자 지원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 설치 절차 및 기타 예방 등..."

위의 말들은 사회적 환경과 폭력으로부터, 특히 방임과 유기적 대우로부터 아동 보호와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또한, 그 말들은 협약 제19조를 아동권리협약상의 다른 관련 조항들과 연관을 짓게 하는데, 이를테면, 협약 제4조의 포괄적인 의무(“최대한도의 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 제18조(아동양육에 책임이 있는 부모에 대해 적절한 원조 제공과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서비스 개발을 보장하는 당사국의 의무), 협약 제26조(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아동권리)와 협약 제27조(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아동권리) 등이 해당된다.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위원회가 특별히 권장한 사회 프로그램들에는 아동과의 적극적이고 비폭력적인 관계나 성학대와 성착취 예방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캠페인이 포함된다.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들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반적 요청과 더불어서(협약 제 42조), 위원회는 아동보호와 관련한 특별 훈련을 제안하였고, 성 빈센트와 그라나다에 대해 말하길,

"...부당하게 취급된 사례들에 대한 발견과 신고 및 관리에 대해 교사, 법 집행 공무원, 보호 담당자, 판사들과 보건전문가를 훈련시킨다...(세인트 빈센트와 그라나다, CRC/C/15/ Add. 184, para. 39)."

또한 예를 들면, 모리셔스에 대해 권고하기를,

"다학문적, 다체계간의 접근을 사용하여 폭력과 학대사례에 대한 발견, 신고 및 관리에 대해서 부모, 교사, 법 집행 공무원, 보호 담당자, 판사, 보건전문가 및 아동 자신들을 훈련시킨다(모리셔스, CRC/C/MUS/CO/2, para. 48(c))."

체벌이나 다른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태의 처벌 사용의 근절과 관련하여 일반논평 No.8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와 이러한 권리를 반영하는 법률에 관해 포괄적인 인식증진이 필요하다. 협약 제42조에 의하면, 국가들은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협약의 원칙과 조항들을 널리 알릴 책임이 있다... 이제는 부모나 다른 양육자들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유엔기관, 비정부기관 등에 의해 개발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육아와 교육을 지향하는 자료들과 프로그램의 좋은 예들이 많이 있는 것을 위원회는 인정한다. 이러한 예들은 다른 국가나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적절히 채택할 수 있다. 미디어는 인식증진과 대중교육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체벌이나 다른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태의 훈육에 의존하는 전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비폭력 형태의 육아와 교육의 증진은 보건과 복지 그리고 초기 영아기 시설이나 탁아센터 및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서비스 현장에서 국가와 부모 그리고 아동간의 모든 접촉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또한 교사나 아동을 보호하거나 사법체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초기교육 및 직무훈련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8, 2006, CRC/C/GC/9, paras. 45, 48)."

## “발견”

오랜 세월동안 어른 중심 사회에 의한 아동폭력의 범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효과적인 폭력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과 또한 폭력의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협약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동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이 필수적이며, 위원회에 의해서 많은 당사국들에게 제안되었다. 국가가 가정 내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 발생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아동폭력 근절에 대한 진전 상황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비밀이 보장되고 신뢰가 구축된 상황에서 적절한 윤리적인 보호 아래에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인터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조사 없이는 아동보호 체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 “신고”

위원회는 아동폭력이 종종 신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주 걱정을 표한다.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연구의 독립전문가 보고서의 서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많은 아동폭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은폐되어 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다. 많은 아이들은 그들에게 발생한 폭력을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많은 경우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또는 고용주, 경찰, 지역사회 지도자와 같은 더 힘이 있는 사회구성원에 의해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에 자신의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부모들이 침묵을 지킨다. 특히 가족의 “명예”가 아동의 안전과 안녕에 우선시 되는 곳에서는 두려움은 폭력신고에 종종 붙어 다니는 낙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강간이나 다른 형태의 성폭력은 추방으로, 또 다른 폭력이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A/61/299, para. 25).”

위원회는 레바논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동학대, 방임 및 폭력은 여전히 당사국에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아동권리 침해를 개인들이 폭로하게 북돋우는 ‘모래 속에 머리를 박는 일을 그만두자’라는 캠페*

페인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회적, 문화적 금기들 때문에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거의 사건들을 신고하지 않는다(레바논, CRC/C/LBN/CO/3, para. 47)."

예를 들면, 의심되는 아동학대 사례의 신고를 촉진하고, 좋은 의도로 신고한 사람들에게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한 코스타리카의 노력에 대해 위원회는 기뻐하였다(코스타리카, CRC/C/15/Add. 266, paras. 37, 38).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 위원회가 촉구하길,

"...모든 기관에서 - 가정 외 배치, 고아원, 정신치료 병원, 학교와 소년원 포함- 아동학대 사례의 신고를 독려한다(투르크메니스탄, CRC/C/TKM/CO/1, para. 45)."

많은 국가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아동학대 사례를 적정한 사회서비스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을 가지고 있다. 몇몇 사회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특정 직업(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교사, 의사, 보건 관련 담당자 등)에 적용된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원회는 전문가들에 의한 신고의무를 권고해 왔으며, 예를 들어 가나에 대해 말하길,

"...아동학대와 관련한 전문가들에 대해 의무적인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당사국은 그들에게 신고의무를 소개할 것을 권고한다(가나, CRC/C/GHA/CO/2, paras. 44, 45).

위원회는 벨리스에 대해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다.

"...당사국은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도입하라는 위원회의 제안을 이행한다(벨리스, CRC/C/15/Add.99, para. 22)."

신고의무는 의사나 그 밖의 사람들로부터 은밀하게 조언을 듣거나 상담을 받는 아동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협약 제1조 및 제12조 참조). 아동에게는 예를 들어, 그들의 의사, 변호사, 목사나 종교적인 연장자들과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는가? 협약 제12조는 아동은 그들의 의사를 표

명할 권리를 가져야 하고, 그들에 가해진 폭력과 관련하여 제안되고, 취해지는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도 그들의 의견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공식적 권리를 가져야 함을 말해 준다. 협약 제16조는 아동에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는 비밀이 보장된 조언과 상담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연구의 독립전문가 보고서는 “국가들은 아동이나 그들의 대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동폭력을 신고하기에 안전하고, 잘 알려지고, 비밀이 보장되고, 접근이 가능한 절차들을 확립할 것” 을 권고한다(A/61/299, 일반권고, para. 104).

*아동 폭력에 관한 세계 보고서*는 이것을 더 확대한다. “청년기 사람들의 어린 시절 경험을 설문조사한 회상적인 연구는 고도로 발달된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조차 대부분의 아동 피해자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아동보호 서비스에도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거나,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서비스 체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특정 전문가 집단이 신고의무제도에 의하여 아동폭력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신고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유엔연구 시에 신고의무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들었다. 모든 정부는 현재의 신고체계를 검토하고, 검토과정에 최근에 아동보호 서비스를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을 참여시켜야 한다.”

“아동이 있는 모든 지역사회나 모든 환경에는 아동폭력에 관한 신고와 그 징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잘 알려지고, 쉽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 체계가 있어야 한다. 아동이 걱정거리가 있거나 그들을 다치게 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비밀리에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서비스 체계가 있어야 한다. 아동에게 비밀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아동이 즉각적인 죽음의 위협이나 심각한 해에 처해 있지 않는 한, 아동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서비스 - 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폭력에 가장 취약한 아동을 포함하는

아동대상 비밀보장 서비스를 만드는 일은 자신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구시대적인 소유권 개념과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가정 내 폭력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성인 가족구성원들이 비밀이 보장되는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파울로 서지오 피네이로, 아동폭력에 관한 세계보고서, 유엔, 제네바, 2006, 제1장, para. 8, p.21).”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연구보고서 뿐 아니라, 위원회는 폭력이나 다른 이슈에 관해 비밀이 보장되는 조언과 상담을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아동 전화상담 번호를 개설할 것을 명령한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콜롬비아, 가나, 라트비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국적인 아동전화상담 무료서비스인 텔레포노 아미고(Telefono Amigo)를 지원하여 국가 전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아이들까지도 연결이 되게 한다(콜롬비아, CRC/C/COL/CO/3, para. 59).”

“잘 훈련된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적인 무료 아동전화 상담망을 설립한다(가나, CRC/C/GHA/CO/2, para. 45).”

“...전국적인 무료 상담전화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매일 24시간 작동하게 하고,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단위의 무료 전화번호를 정하여서 휴대폰이나 멀리 떨어진 시골지역에서도 똑 같이 연결가능하게 하며, 비 정부기관의 직통 전화선과도 협력하여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라트비아, CRC/C/LVA/CO/2, para.37).”

위원회는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공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예를 들면, 모잠비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록 아이들이 학대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직통 전화선이 존재하지만, 단지 소수의 아이들만 이용가능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를 계속하였다.

“...전화에 접속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아동을 포함하여 아이들이 성적 학대 발생을



신고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방안을 개발한다(모잠비크, CRC/C/C/15/Add. 172, paras. 38, 39)."

## “의뢰”

의뢰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아동폭력을 조사하고 다루는 일이 전문화되고, 잘 훈련된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폭력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 체계에서는 특정 기관으로의 의뢰는 대개 전문화되어 있고, 많은 국가에서 이제는 기관(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경찰과 검찰 당국, 그리고 자원봉사나 사적 기관)간의 협력에 대한 상세한 행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한 의뢰 절차들은 협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특히 협약 제12조와 - 아동의 견해에 귀 기울이고 정당한 비중을 둔다. - 부합되어야 한다.

## “조사”

협약의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는 아동폭력 사건이나 의심되는 사례가 신고될 때에 하나 이상의 기관들을 통하여 조사하는 공식적 의무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예를 들면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반복해서 면접 조사"는 피하면서, "아동 친화적인"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체코, CRC/C/15/Add.210, para. 41)."

협약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모든 아동사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조사에 관해 엄격한 절차를 수행해온 국가들에서는 예방이 가능한 아동폭력이 발견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다(제6조).

## “처우와 추적”

또 다시, 이 말들은 적절한 훈련과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화된 기능들이다. 의료적인 보호와 관련 서비스를 받을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서 협약의 다른 두 가지 조항이 이와 관련이 있다.

- 협약 제25조에 따라 보장된 보호와 처우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 받을 권리.  
“당사국들은 양육, 보호 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치료할 목적으로 관계 당사국에 의해서 배치된 아동은 배치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제공된 처우나 모든 환경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다.”
- 협약 제39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당사국들은 아동 피해자들이 방임, 착취, 학대, 고문이나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형태의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 분쟁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아동의 건강과 자기존중 그리고 존엄성을 길러주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

아동폭력 사례에 대해서 사법적인 개입이 적절 한가 아닌가는 폭력의 종류와 그 심각성과,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위원회가 확인한 협약 조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특히나 피해를 입은 그 아동이 표시한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둘 것(제12조)과,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다(제3(1)조).

사법적 개입에는 두 가지 분명한 형태가 있다. 형법으로 가해자를 기소하는 것과 다양한 형태의 지도, 가해자 격리와 가정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해 보호하는 방법이다. 후자에 관해서 협약 제9조 1항은 “사법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 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분리가 아동최선의 이익상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협약 제9조는 첫 번째 문단에서 그러한 분리가 필요한 상황 중 하나는 부모로부터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경우임을 시사한다. 일방의 부모가 의심되는 학대행위자라면 다른 일방의 부모가 학대에 연루되지 않은 한 그 일방의 부모로부터 아동의 분리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협약 제9조는 요구한다.

위원회는 아동이 사법적 개입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세인트 빈센트와 그라나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하였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아닌, 단지 경찰들이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더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

"...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 담당자에게 필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세인트 빈센트와 그라나다, CRC/C/15/Add.184, paras. 38, 39)."

우크라이나의 최초 보고서를 논의하는 동안 위원회의 한 일원은, 자녀를 학사하고 체벌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한 것에 관한 보고서를 주목하였다. "사실 모든 경우에 그러한 극적인 해결책을 채택할 필요는 없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위원회가 염두에 두는 비는 아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률로부터 명확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정말 발생하였다면, 모든 사례의 해결책이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오히려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했다(우크라이나, CRC/C/8/Add.10, para. 65; 우크라이나, CRC/C/SR.240, para. 65)."

위원회는, 예를 들면, 폴란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단순한 개입이나 처벌보다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지원하고 원조하도록 고안된 포괄적이고 전국적인 대응 체계를 세운다(폴란드, CRC/C/15/Add.194, para. 35(b))."

위원회와 아동권리는 어떤 사례에 있어서 기소를 하지 않아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경찰이나 군인에 의한 사례를 포함하여 폭력의 정도와 아동학사와 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에 깊이 마음 쓰인다.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않은 것을 위원회는 염려한다. 그러한 폭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하거나, 소아기호증을 포함하여 이러

한 문제에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효과적인 절차를 채택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분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결과적으로 관계 당국에 고충을 토로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로 느끼게 할 수 있다(필리핀, CRC/C/15/Add. 29, para. 14)."

협약 제39조의 중요성을 인용하면서 위원회는 특히나 폭력과 착취로 인한 아동 피해자들은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제34조).

최근 많은 국가에서 성인 폭력 가해자 기소를 포함하는 사건에서 아동목격자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일에 진전이 있었다. 여기에는 그다지 공식적이지 않은 법정에서 아동의 증언을 미리 녹음하거나, 스크린 뒤에서 또는 비디오를 연결하여 아동이 증언을 한다든지 반대신문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러한 조항들은 아동의 복지와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정당화되지만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인 피고인의 권리와도 부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종종 "아동에게 민감한 사법절차" 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며,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는 법적 절차는 아동에게 민감하여야 하고,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특히 비디오로 녹화한 아동 피해자의 진술을 허용 가능한 증거로 받아 들여서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한다...(코스타리카, CRC/C/15/Add.266, para. 38)."

협약 제12조에서 명시한대로, 2005년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는 아동 피해자와 범죄 목격자가 관련된 사건의 공정성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아동에게 민감한" 이란 말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와 균형을 이루면서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견해를 고려하는" 접근으로 정의된다(para. 9(d)). 이 지침서는 "범죄재판 과정에서 아동피해자와 목격자 보호를 강화하는 협약 당사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원칙들과 틀을 제공해 준다(경제사회이사회, 2005/20 결의서, 부록)." 위원회는 국가들의 관심을 이 지침서로 이끈다. 위원회는 태국에 대해 이 지침서대로 "아동에게 민감한

법원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태국, CRC/C/THA/CO/2, para. 30).

위원회는 협약 제19조나 다른 협약 조항 하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군사 법정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언급하였다:

"...인권과 아동권리 침해사례는 군사 법정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민사 법정에서 언제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후의 범죄를 막고 그 결과 죄를 면할 수 있다는 생각들과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와 판결사례의 결과는 널리 공표되어야 한다(콜롬비아 CRC/C/15/Add.30, para.17)."

위원회가 콜롬비아의 세 번째 보고서를 검토하였을 때 이 문제에 다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였다:

"...면죄부를 주는 방식이 없어지지 않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를 군사 법정에 의뢰하는 경향이 있다."

위원회가 콜롬비아에 요청하길, "...공정한 재판과 관련한 국제법 의무조항을 존중하고, 모든 조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확고히 하라(콜롬비아, CRC/C/COL/CO/3, paras. 44, 45)."

### 아동권리위원회: 아동폭력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 이후 채택된 제언

#### 국가에 의한 아동폭력

2000년 9월 "국가에 의한 아동 폭력"에 관한 일반논의 첫날 이후, 아동권리위원회는 상세한 제언들을 채택하였다. 다음은 주요 부분에서 요약 발췌한 것이다:

#### (a) "법률 검토"

6. 위원회는, 긴급 사안으로서, 당사국들이 협약 제37(a)조의 규정에 반하는 18세 미만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판결(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언도를 허용하는 어떠한 법률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7.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18세 미만 아동을 다루는 형법 절차를 포함한 형법 조항들(군대에 적용하는 모든 특별법 포함)을 검토하고, 아동권리협약

조항들(협약 제37조, 40조)을 적절히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들이 모든 관련된 국내법과 규정들과(적절한 경우에는 보호 중인 아동 관련법 포함),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 규칙', 1985년 11월 29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안 40/30으로 채택),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국제연합 지침서(리아드 지침서, 199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안 45/112로 채택), 자유가 박탈된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제연합 규칙(199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안 45/113으로 채택), 형사재판제도 내의 아동에 관한 행동지침서(비엔나 지침서, 1997년 7월 21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997/30에 첨부) 조항들의 통합을 고려해볼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청소년에 적용되는 처벌조항들이 검토되고, 그로 인하여 법원들이 범죄에 어울리지 않는 구류적 판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8.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모든 관련법들을 검토하여, 아동사법제도가 어떠한 다른 환경에서도 처벌이나 훈육의 목적으로 고문의 사용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태형, 체벌이나 다른 폭력적 방법과 같은)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은 아무리 가볍더라도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법률이 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피해자의 사회복귀 조항들과 통합될 것을 권고한다.
9.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이들(유기, 탈선, 매춘, 떠돌이, 무단결석, 가출 등 포함)이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고 아동보호 체계 하에서 다루어지도록 모든 관련된 법률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10.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긴급 상황이나 국가 보안법을 검토하여서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적절히 보장하고 아동폭력을 예방하며, 그러한 법이 대상 아동들에게 부적절하게 사용(예를 들어, 노숙하거나 길거리에서 노동하는 아동들에게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 등으로)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11.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공판 전 구금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통하여 구금상태에 있는 아동의 수를 줄이는 등, 보호 중인 아동의 안전, 보호, 사회복귀를 적절하게 보장할 필요성을 시급히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한다.
12.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가족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아동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서 배치결정이 아동 자신의 요청에 의해서, 정기적인 사법 심사의 구속을 받게 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한 법률은 관련 규칙과 규정들이 아동을 돌보는 모든 기관(공·사립)에 대해 폭력의 사용 금지를 포함하여, 보호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13. 위원회는 필요한 자원의 공급을 포함한 모든 그러한 법률들이 효율적으로 이행되는지 신중하게 검토될 것을 권고한다.

#### 인식 증진, 민감한 대응과 훈련

14. 위원회는 당사국들, 비정부기관들, 유엔인권기구들과 유엔기관들이나 다른 단체들이 아동폭력 문제에 관한 인식 증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장한다.
  - (a) 위원회는 이 분야에서의 인권침해 심각성과 아동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인식을 증진시키고 국민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또한 아동폭력을 문화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밝혀내고, 대신 폭력에 대해 '허용-제로'를

촉진하는 등과 같은 공공 캠페인에 착수 할 것을 촉구한다.

- (b) 미디어는 대중 교육과 인식 증진에 활발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부정적인 보고(개인적인 사고에 대해 아동을 비난)는 피해야 하고, 긍정적인 보고(폭력에 대한 관심 촉구)가 장려되어야 한다.
- (c) 인식 증진에 있어서 폭력에 대한 아동의 견해와 경험은 널리 알려져야 하고,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d) 공판 전 구류 또는 경찰서 내에서 구속 판결을 이행하거나, 다양하고 대안적 조치 등에 따라 시설에서 살고 있거나 국가의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수와 그 상태에 관해 정확하고, 최신의, 분석된 자료들이 수집되어야 한다.
- (e) 당사국들은 아동폭력에 관한 적절한 정보들을 각 국가, 지역 언어로 번역하고, 모든 관련 전문가 집단들과 아동들, 그리고 일반적 대중에 확실히 보급하여야 한다.
15. 위원회는 아동을 돌보는 시설, 대안적인 체계, 경찰서, 청소년 교도시설 등에서 일하는 개인에 대해, 이전에 폭력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건을 포함하여, 그들의 전문적인 자격과 훈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한 담당자들에 대한 전문적 지위, 보상, 직업 장려금은 전문가 집단에 대해 적절한 자격을 확실히 요구할 수 있게 한다.
16.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관련 비정부기관과 협력하거나, 필요할 경우 국제적 기술지원을 받아서 모든 관련 전문가 집단에 대해 아동권리 교육을 확실하게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단순히 아동보호나 사회복지 담당자, 의료 전문가, 변호사, 판사, 경찰이나 다른 치안부대, 교도시설 직원 등에만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한 훈련은 관련 인권 기준과 비폭력적인 훈육방법을 포함한 협력적 접근을 촉진하는 다학제적인 방법을 따라야 하고, 시설화에 대한 대안을 촉진하고, 아동발달과 그 배경에 대해, 특히 취약한 아동 집단(소수 집단이나 장애 아동 등)의 권리와 필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연구 제안서나 관련 유엔 인권조치 강화에 관한 워크샵에 관한 국제적인 조치들; 시설화에 대한 대안 및 모니터링과 고충처리기구 등에 대한 예방; 비정부기관의 역할 등 자원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다룬다. (제25회기 보고서, 2000.9/10, CRC/C/100, paras. 688 이하 참조)*

####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폭력

2001년 9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폭력”에 관한 일반토론 둘째 날 이후 아동권리위원회는 상세한 제언들을 채택하였다. 다음은 주요 부분에서 요약 발췌한 것이다:

##### “지침이 되는 원칙들”

701. 위원회는 “가정”과 “학교”와 관련한 언급이 좁은 범위로 이해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가족”(또는 “부모”)에 대한 언급은 지역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핵가족”뿐만 아니라, 확대가족 혹은 조부모, 형제자매, 다른 친척, 후견인이나 양육 제공자, 이웃 등을 포함하는 더욱 넓은 공동체적 정의를

의미한다. “학교”(또는 “교사”)에 대한 언급은 학교, 교육기관, 다른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 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 702. 위원회는 아동, 부모, 교사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학교와 가정에 대한 대안적인 비전이 아동폭력 문제에 관한 모든 행동지침들을 선도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주요 전략은 징벌적 조치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비전을 중심으로 행동지침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 안에서 아동과 부모 또는 교사들(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과의 관계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상호 존중하게 되고, 모두의 안전과 보안이 촉진된다.
- 703.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조항에 따라 아동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704. 폭력을 개명화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아동 자신들의 경험이 핵심적인 출발점과 참조의 틀이 되게 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므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아동폭력에 관한 행동을 촉진하고, 전략을 만드는 일에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705. 위원회는 지역사회와 가족 간의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부모, 아동과 교사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잘 제공받아야 하고, 학교 관리를 포함한 교내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706. 위원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아동폭력(체벌, 집단 괴롭힘, 성희롱과 학대, 언어적 그리고 정서적 학대)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가정과 학교 내의 폭력은 서로 강화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폭력에 대한 행동지침은 전체적인 접근을 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신체적 폭력이나 더 심각한 다른 형태의 폭력들은 희롱이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곳에서 더욱 더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한 분야에서 폭력을 허용하면 다른 분야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한다.

### 국내법의 검토

- 715.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훈육의 형태로서 아무리 가볍더라도 가정과 교내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기 위하여, 특히 협약 제19, 28, 37(a)조 조항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리고 협약 제4, 5, 9, 18, 24, 27, 29 및 39조 뿐 아니라 제2, 3, 6, 12조를 고려하여, 긴급한 사안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 716. 위원회는 법률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피해자 보상에 대한 조항들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 717.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모든 아동보호 관련법규들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한편, 개입은 개인적 맥락과 환경에 적절하게 맞추고, 간섭적인 방법은 최소화하고, 추가적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가족적 환경에서 벗어난 아동을 다루는 법률을 검토하여 아동 개인의 요구와, 가족



재결합을 우선하는 결과를 목표로 하고서, 협약 제3, 9, 19, 39조의 요구조건 내에서 모든 배치결정에 대한 정기적 사법심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718. 위원회는 특히 교육, 훈련 및 자원 제공을 통하여 그러한 법률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모니터할 것을 권고한다.

**예방: 인식증진, 민감한 대응 및 훈련**

719.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가정과 학교 내에서의 아동폭력에 관한 국가정책에 대하여 확실하게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이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도구로 이용되게 하고, 국가 전역에 널리 알릴 것을 권고한다.

720.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이 아동폭력의 범주, 성질, 원인과 결과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연구는 널리 보급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721. 위원회는 당사국, 비정부기구, 유엔인권기구, 유엔기관들과 타 단체들이 아동을 권리 소유자로서 인식하도록 더욱 적극적인 접근을 촉진하고, 인식을 증진하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더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훈육 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문화적인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접근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a)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이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대중이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식을 증진하고,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수용할 수 없음을 권장하면서 아동폭력에 대한 문화적인 허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종교적, 전통적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공공 캠페인에 착수하여야 한다.
- (b) 또래에 의한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아동과 부모들은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모든 면에 당연히 참여하여야 한다.
- (c) 미디어는 대중교육과 인식증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보고는 침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의 견해와 폭력 경험을 반영함과 동시에, 선정성을 피하고, 아동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미디어와 연예산업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보급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d) 당사국들은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각 국가나 지방언어로 번역하고, 풀뿌리 집단을 포함한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모든 관련 전문가나 다른 신고자 집단, 아동, 부모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조치들 - 국제적인 연구를 위한 위원회의 제안서에 관한 자세한 세부내용; 예방과 보호에 대한 다른 전략들, 모니터링, 고충구제 절차; 협력, 자원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다룬다.(아동권리위원회, 제28회기 보고서, 2001.9/10, CRC/C/111, paras. 701 이하 참조)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19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모든 정부부서 차원에서 책임 부서와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제19조는 사회복지, 법무부, 보건과 교육부서가 해당됨)
- 업무와 관련된 비정부 기구/시민단체 파트너는 확실한가?
- 모든 법률, 정책과 실천이 재판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을 위하여 이 조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필요한 경우 목표와 과정에 대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아동권리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어떤 규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
- 관련이 있는 다른 국제적인 기준을 인식하고 있는가?
-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협력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러한 조치들은 협약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부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

- 예산에 대한 분석과 필요한 자원은 배당되는가?
- 모니터와 평가를 위한 절차들은 개발되어 있는가?
- 제19조의 내용을 성인과 아동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가?
- 적절한 훈련과 인식증진 활동이 개발되어 있는가?(제19조와 관련하여 아동보호 업무나 아동과 가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훈련)

### ● 제19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국가의 법률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가?
- 아동폭력에 관계한 부모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허용치 않거나 방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가?

법률은 체벌이나 모든 형태의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벌과 취급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가?

집에서

학교에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아동보호기관

국영기관

사립기관

위탁보호 중

다른 형태의 대안적 보호 중

탁아시설

국영시설

사립시설

다른 형태의 보육(예: 아이 돌보기 등)

형사체계

법원의 판결

교도시설에서의 처벌

법률, 정책과 실천은 다음 사항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가?

학교나 다른 모든 시설에서 다른 아동에 의한 폭력을 포함한 학사와 폭력으로부터?

건강에 해로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 전통적인 관행들로부터?

국가는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국가는 긍정적,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과 대우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적 또는 다른 조치들을 취했는가?

가정에서

대안적인 양육에서

아동 관련한 모든 시설에서

국가의 모든 아동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절차에 접근이 가능한가?

부모의 양육이나 법적으로 양육책임이 있는 사람의 보호 중에

모든 형태의 대안적인 보호 중에

- 학교나 보호시설 내에서
- 부당한 대우의 경우, 아동은 예를 들어 보상을 포함하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국가의 법률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아동학대를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는가?
  - 특정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 모든 시민에 의해서
- 협약 제12조(아동의 의사 존중)와 제16조(아동의 사생활 보호권)를 포함하는 협약 원칙 관점에서 모든 신고 장치/요구사항들은 검토되고 있는가?  
국가는 다음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설립했는가?
  - 폭력, 학대 등의 발
  - 신고
  - 의뢰
  - 조사
  - 처우와 추적
  - 적절한 사법적 개입
- 국가는 가정과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성학대를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특정조치를 취해왔는가?
- 국가는 아동보호 절차와 이행 중에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해왔는가?
- 국가는 대중 매체에 의한 아동학대의 책임 있는 보고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왔는가?
- 국가는 아동폭력, 학대나 방임피해자를 위해 비밀이 보장된 전화망, 조언과 상담 시스템을 확립하고 지원해왔는가?
- 국가는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연구의 권고에 비추어서 법, 정책 그리고 실천을 고려해왔는가?(A/61/299).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19조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 일반원칙

제2조: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별아동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차별 없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

제3조 1항: 아동과 관련한 어떤 조치에서든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제6조: 삶에 대한 그리고 가능한 최대의 생존과 발달을 누릴 권리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 존중;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서도 아동의 견해를 들을 기회를 주는 것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19조의 이행과 특별히 관련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부모의 책임과 아동의 발달 역량

제9조: 학대와 방임에 의한 부모와의 분리

제18조: 부모의 책임

제20조: 대안적 양육

제24조 3항: 전통적 관습으로부터 아동 보호

제25조: 배치와 처우에 관한 정기적 검토

제28조 2항: 폭력 없는 학교 규율

제34조: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

제37조: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모욕감을 주는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

제38조: 무력 분쟁

제39조: 폭력 피해자들의 재활을 위한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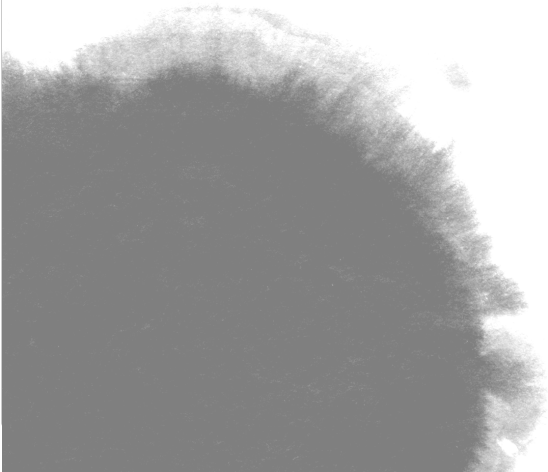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들



20

K  
I  
H  
A  
S  
A

제20조 가정환경을 비롯당한 이동







## 제20조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1. A child temporarily or permanent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or in whose own best interests cannot be allowed to remain in that environment, shall b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2.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ensure alternative care for such a child.
  3. Such care could include, inter alia, foster placement, kafalah of Islamic law, adoption or, if necessary, placement in suitable institutions for the care of children. When considering solutions,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desirability of continuity in a child's upbringing and to the child's ethnic, religious,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
1.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자신의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이 자신에게 최선의 환경이 아닌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돌봄은 특히 위탁양육,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양육 방법을 모색할 때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양육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언어적 배경을 중시하여야 한다.

### 요약

제20조는 죽음, 유기, 이동, 그리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판단을 사유로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가족과 분리되어야 하는 아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아동은 “특별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을 돌보는 방법은 국내 전통에 따르나(예를 들어 이슬람법은 입양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후견인 제도는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서 흔하다), 반드시 협약에 의거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언어를 포함하여 양육의 바람직한 지속성에 대해서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제21, 8, 30조 참조). 본 조

항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위탁부모 및 입양부모에게 적용한다. 1986년 총회에서는 이 분야와 관련된 원칙을 담은 국제적·국내적 위탁보호와 입양 아동의 보호 및 복지의 사회적·법률적 원칙에 관한 선언문에 합의하였다. 2005년 아동권리위원회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하여 UN에 본 안전에 대한 지침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위한 UN 지침의 초안은 인터네셔널 소셜서비스(International Social Service)와 유니세프(UNICEF)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NGO 특별 조사 위원회와 협력하여 준비하였고, 2006년 5월 제 42회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개정되었다. 본 초안은 UN회원국들에 의해 검토되고 수정될 것이다.

위원회 위원들은 UN의 출판물인 *인권과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학과와 사회복지사업 전문직에 관한 매뉴얼(Human Rights and Social Work: A Manual for Schools of Social Work and the Social Work Profession)*을 국가들이 참조할 것을 또한 권장하였다. 본 매뉴얼은 관련된 모든 국제적, 지역적인 권리 기구를 참조하도록 신고 있으며, 기본 원칙과 이슈와 함께 시험 질문과 사례와 관련한 훈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일시적,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격리된 아동**

이 조항은 부모가 아닌, 가족을 언급한 것이 중요한 특징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고 하더라도(제9조 참조), 국가는 다른 대안을 찾기 전에, 제5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배치의 우선순위를 아동의 확대가족 내에서 찾아야 한다. 국내적·국제적 위탁보호와 입양에 대해 특별히 다른 아동 보호와 복지의 사회적·법률적 원칙에 관한 1986년 유엔선언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부모로부터의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때, 아동 부모의 친척으로부터의 보호나 다른 대안가정 - 위탁이나 입양 - 에 의한 보호 또는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설에서의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제안에는 선택의 단계가 있다. 첫째, 친척과 좀 큰 아이들(예를 들어 AIDS 전염병 때문에 고아가 된 아동 세대주 가족); 두 번째, 위탁보호나 입양을 통한 대안가정; 그리고 세 번째가 적당한 시설이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가 시설들을 마지막 수단으로 쓰도록 일관되게 독려해 온 위원회의 언급들과 마찬가지로, 제20조 조항과 협약의 나머지에 반영되어 있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관한 일반토론 박스 참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 중에서도 특히 (a) HIV/AIDS에 감염된 가정, 한부모 가정, 빈곤으로 고통 받는 가정 등과 같이 취약한 가정의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 (b) AIDS로 사망한 부모의 아이를 돌보는 확대가족과 아동 가구주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c) 거주보호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의 보호를 박탈당한 아동을 위해 대안적 보호를 하는 가족 유형 형태에 대한 촉진과 지원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한다.(우간다, CRC/C/UGA/CO2, para. 42).”*

그리고 위원회는 파나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아동권리를 보호하도록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발달시키고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부모의 자격을 강화하고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하며, 가난한 가정과 여성 가구주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는 정책;*
- (b) 아버지들이 부모의 책임감을 더욱 인식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확실하게 제공하게 하는 정책;*
- (c) 친부모에 의해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친인척 위탁보호와 같은 질 높고 효과적인 위탁보호제도를 확립하여서 대안적 가족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파나마 CRC/C/15/ Add.233, para. 36).”*

제9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최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빈곤은 결코 아동에게 그들의 가정환경을 박탈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들 중 가난하게 생활하는 아동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대개 사회적, 경제적인 압력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것임을 알고 있다. 또한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아동을 유기하게 하고 거리의 아이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 가난은 악순환을 만든다. 가난하게 사는 부모는 자녀를 잃을까 두려워서 감히 관계 당국에 도움을 요청할 시도도 하지 않는다. 외부의 원조와 도움 없는 상황은 결국 아동과 부모를 갈라놓게 할지도 모른다. 더불어 위원회는 사회적 그리고/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기회도 갖지 못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 40회기 보고서, 2005.9, CRC/C/153, para.658)."

위원회는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게 하고 자녀가 국가의 보호를 받게 하는 법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왔다. 예를 들어 벨리즈는:

"...위원회는 "제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부모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자녀에 대해 시설보호를 고려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와 아동에게 적합한 지식, 기술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제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개념과 표현을 없애면서 점진적으로 '탈시설화'에 대해 준비를 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당사국의 법률조항, 실천방안 및 사회서비스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벨리즈, CRC/C/15/Add.252, paras. 42, 43)."

이런 종류의 법률은 또한, 그와 같은 보호조치에 대해 독자적인 법률의 검토를 요구하는 협약 제9조의 불이행을 의미한다.

2006년 12월에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협약 역시 부모나 아동의 장애가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당사국은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격 있는 관계당국이 적합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와 같은 분리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록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 부모(한 쪽 혹은 두 쪽 다)의 장애를 원인으로 아동이 부모에게서 분리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제23(4)조).”

###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아동권리위원회, 2005년 일반토론의 날:  
발췌

위원회는 아동의 시설보호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가족적인 환경이 아동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최상의 가능성들을 제공한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합의해 온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본래의 가족과 시설보호 간에 선택은 필요하다. 이러한 선택들에는 가족이나 확대가족 내에서의 전통적인 보호, 개방센터에서의 낮이나 밤에만 보호, 응급보호, 일시보호 등이 포함된다. 이중 많은 것들이 이미 존재한다. 위원회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연대를 중요시 하는 문화적 가치를 가진 많은 나라들을 언급하고자 하며, 당사국들이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고무적 예들과 가능성들을 실험해 볼 것을 권장한다.

아동이 부모와 분리된 상황에서, 위원회는 개별화의 원리를 강조하고자 한다. 모든 아동은 각각 특별하다. 그리고 부모와의 분리와 가정 외 보호는 언제나 각각의 사안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하나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화된 해결책은 아동의 개인적, 가족적 및 사회적 상황을 포함하는 아동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맞춘 해결책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장기적 발달 측면에서 더 나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 아동에게 실질적인 욕구는 무엇이며, 생물학적 가족들과 밀접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 인지 하는 등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존중한다.

하지만, 개별화로 가는 이상적인 길에는 실제 상황에 대해 사정할 시간의 부족, 인력 부족, 일시적이고 응급한 조치에서 아동을 맞이할 가정이나 가족 내 공간의 부족 등과 같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장애물은 창조성의 부족, 오랜 습관과 관습 및 기존의 자원을 훈련하거나 지식에 대한 차이를 바꾸어 보려는 의지의 부족과 같은 우리 생각의 패턴인 점을 주목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제20회기 보고서, 2005.9. CRC/C/153, paras. 665, 667, 668)

## 이와 같은 아이들은 “특별한 보호와 도움의 자격을 부여” 받아야만 한다.

“자격을 부여받은”이라는 용어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이는 모든 사회가 아이들에게 갖는 의무의 핵심이다. 만약 부모가 그들 자녀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아동은 우리 모두에게 도덕적인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협약 제3조 2항은 이러한 일반적 의무를 확립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동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할 때 나서야한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일반토론의 날에 위원회는 “개별화”의 원칙 - 각각의 아이들은 특별하며 모든 보호조치는 그들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한다. - 을 강조하였다(박스 참조).

가족을 박탈당한 아이들은 단순히 대안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욕구를 종종 가지고 있다. 새로운 보호조치에 대한 불안정 및 혼란과 더불어 가족과의 애착과 정체성 상실은 아동의 육체적, 지적, 감정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한 아동들은 학대나 착취당하기 쉽다. 2000년 9월, “국가에 의한 아동 폭력”에 관해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을 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불행하게도, 가정을 박탈당한 아동들이 최악의 형태의 학대와 착취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너무 빈번하게 그와 같은 학대는 국가기관이나 그들의 승인, 관용이나 태만에 의해 발생하곤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25회기 보고서, 2000년 9월, 10월, CRC/C/100, para. 668).”*

위원회는 부룬디의 예와 같이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당사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많은 숫자의 고아들을 염두에 두고 위원회는 대안적 보호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권리의 위반을 깊이 염려한다. 시설이나 비공식적인 위탁가정에서의 아동의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부족과, 비공식적인 위탁가정에서 아동에게 노동을 시키거나 이러한 아동들 중 많은 숫자가 적절한 정서적 지원이나 건강과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보고에 대해 위원회는 심히 우려한다(부룬디 CRC/C/15/Add.133, para. 50).”*

심지어 복지 시스템이 발달한 부유한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 또한 겪

고 있을지도 모른다. 위원회는 덴마크에 대해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아동의 수치 증가”에 대해 염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특별히 우려한다.

- (a) 가정 외 보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 (b) 심각한 숫자의 어린 아동들이(0-7세) 세 곳 이상의 보호조치를 경험하였다;
- (c) 소수 민족의 아동들이 대안적 보호시설에 너무 많이 있다;
- (d) 아동과 부모들 간의 접촉이 매우 제한적이다(덴마크, CRC/C/DNK/CO/3, para.33).”

**“...그들 국가의 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대안적 보호를 보장하도록... 특히 그러한 보호에는 위탁보호, 회교법의 카펠라, 입양, 혹은 필요하다면 아동 보호를 위한 적합한 시설에 보호조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정례보고서 작성지침(2005년 개정)은 국가가 그들의 책임성에 관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부모와 분리된 아동들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 수치에 대한 원인별 분류(예를 들어, 무력 분쟁, 가난, 차별에 기인한 유기 등과 같은 이유);
- (b) 법원의 판결 결과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 수치(그 중에서도 특히 구금, 수감, 국외 추방이나 강제 이송과 같은 상황과 관련);
- (c) 이러한 아동들을 위하여 지역별로 분류된 시설 수, 이러한 시설 중에서 이용 가능한 장소 수,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비율과 위탁가정 수;
- (d) 보호조치 기간과 그에 대한 평가의 빈도와 더불어서 시설이나 위탁부모와 살고 있는 부모와 분리된 아동 수치와 비율;
- (e) 보호조치 후에 부모와 재결합 하는 아동의 수치와 비율;
- (f) 연령별로 분류된 국내(공식적, 비공식적으로)와 국가 간 입양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아동 수와 함께 해당 아동의 조국과 입양국가와 관련한 정보(CRC/C/58/Rev.1, para. 12, p.12, 13)”

제20조의 초안을 만드는 중에 미국 대표는 국가는 보호 중인 아동의 “영구적 입양을 촉진” 해야만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은 아동이 그들의 가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경우 입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근거 하에 반려되었다. 심지어 아동은 “안정적 가족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더 온건한 제안도 최종 문서에 쓰이지는 않았다(E/1982/12/Add.1, C, p.56~59; Detrick, p.299).

입양은 회교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신에 카팔라 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 이는 일반적으로 아동이 그 가족의 성을 따르지 못하고 상속권한도 갖지 못하면서 영구적으로 위탁보호를 받는 형태이다. 자연스런 다양한 보호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랍 국가들(부르나이, 이집트, 요르단과 시리아 아랍 공화국)은 입양이 이슬람의 원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근거로 협약 제20조를 강력하게 유보를 해왔다 (CRC/C/2/Rev.8, p. 16, 21, 26, 39).

회교법의 카팔라의 실행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위원회는 이렇게 보호받는 아이들에 대한 대처에 의문을 가져 왔다.

"위원회는 카팔라 제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의 수립을 환영한다. 하지만 그것의 실행은 어려움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려된다. 게다가, 위원회는 카팔라에서 실제로 남아보다 여아가 더 이익을 본다는 것을 염려한다."

"위원회는 카팔라 제도에 대해 새로운 [법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다음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 (a) 법적인 결정이 아동 보호조치의 출발점이다;
- (b) 모든 복지혜택은 다른 아이들과 똑 같이 이 아이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 (c) 아동이 불만을 토로하고 접수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호의 기준을 모니터하고, 보호조치는 정기적으로 재검토 된다.
- (d) 카팔라 하에서 남아와 여아는 같은 기회를 부여받는다(모로코, CRC/C/15/Add.211, paras. 38 and 39)."

"카팔라 제도를 인정하지만, 위원회는 그것의 적용이 협약에 의해 제공된 모든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이 가급적이면 직계가족이나 확대가족 또는 카팔라에서 적절한 대안적 보호를 받게 하고, 특히 협약 제20조와 21조 조항들을 충실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법과 기타 조치, 정책과 절차들을 발전시키고 수행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사우디아라비아, CRC/C/SAU/CO/2, paras. 48, 49)."

아동권리협약은 다음 조항인 제21조에서 특별히 입양에 대해 논의한다. 위탁보호와 관련하여 1986년 선언문은 이렇게 명시한다.

- “6. 위탁보호 혹은 입양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은 전문적이고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10. 아동의 위탁보호는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야만 한다.
11. 위탁가정에서의 보호는 그 성격상 일시적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동이 친부모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입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2.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에 있어서 예비 위탁부모와 아동 그리고 친부모는 적절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관계 당국 혹은 관련 기관은 아동의 복지가 보장되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가져야한다.”

아동은 시설에서 폭력이나 방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기는 하지만 위탁가정에서의 아동의 취약성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위탁보호는 아직 제도화 혹은 표준화되지 않았고, 관련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모니터링과 채용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개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회는 염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탁보호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재의 위탁보호 프로그램 하에서 채용,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하여 표준화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말티, CRC/C/15/Add.113, para.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적절하고 잘 지원받는 위탁보호 제도(예를 들면, 위탁부모에 대한 특별 기금을 통한)와 같이, 대안적 보호 시설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레소토, CRC/C/15/Add.147, para. 38)."

위탁보호는 또한 아동학대의 숨겨진 이면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거의 노예와 같은 상황으로 집안에 갇혀서 가사노동을 하는 아동(제32조 참조) 또는 부자가족의 하인으로 보내지는 것이 일상적인 부르키나파소의 “쿤휘이지” 또는 아이티 섬의 “테스타베크” 와 같은 제도 부모가 위탁을 주선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특별히 시골 출신의 아동들을 교육하고자 비공식적인 위탁보호에 아이들을 보호 조치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가사노동자로서 아이들을 학대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체제가 없는 것을 염려한다. 위원회는 아동이 위탁가족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당사국은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해 외부의 감독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코모로, CRC/C/15/Add.141, paras. 29, 30).”*

위탁 양육자에 대한 훈련과 위탁보호에 대한 감독을 통해 위탁아동이 그 가정 내 다른 아동보다 열등한 대우를 받거나 가사노동자로 착취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양육, 보호, 혹은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치료할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보호 조치된 아동과 관련하여, 제25조는 “아동에게 제공된 치료와 아동의 보호조치과 관련된 모든 다른 상황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의 직무는 아동이 대안가정 보호나 시설에 일단 보호조치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한 보호조치 후에 매우 많은 아동들이 잘 성장하지 못하거나 혹은 심지어 학대를 경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개별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덧붙여서 시설들이나 위탁 양육지는 반드시 독립적인 감독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제3조(3)는 “아동을 양육하거나 보호할 책임을 가진 기관, 사업 또는 시설들이 자격 있는 사람으로부터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 안전이나 건강 측면에서, 직원 수나 적절성 면에서 관계 당국이 설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리투아니아에 대한 논평에서 위원회는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한 대안적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권고를 요약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a) 시설보호는 오직 최후의 조치로 사용될 것을 보장하는데,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가에 의해 지적된 경우를 의미한다;

- (b) 협약 제25조에 따라서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 (c) 대안적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그 제도에 대한 적합한 기능과 모니터링을 담당할 충분히 자격 있는 슈퍼바이저들과 적절한 자원을 확실하게 마련한다;
- (d) 만약 아동이 시설에서 자라는 경우, 작은 그룹을 이루어 살면서 개별적으로 보호를 받을 것과, 부모-자녀 관계가 대안적 보호조치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과, 그리고 가족재통합이나 가정환경을 확립하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e) 곧 성인이 되어 시설을 떠나서 살게 되는 아동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에 재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f) 위탁양육 제도의 지원을 강화하고, 위탁양육에 대한 수준 높은 기준을 만들며,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시설에서 머무는 시간을 현저히 줄어 들게 한다.
- (g)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족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확립과 취업기회의 창출을 통하여 이러한 가족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h)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한다. 그리고
- (i) 국가 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지역 모니터링 보고서인 유니세프 인노센티 연구소의 ‘10년의 변화 (A Decade of Transition)’ (2001)의 권고 사항들을 채택하고 시행한다(리투아니아, CRC/C/LTU/CO/2, para. 42).”

## 시설 보호

제20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으나, “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시설”에서의 보호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며, 대안가정에서의 보호조치가 두 번째 최선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만일 필요하다면”이라는 문장은, 시설보호가 때때로 몇몇 아이들에게는 최선의 보호조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 예를 들면, 만약 어떤 아동이 여러 번 위탁양육에 실패를 하였거나,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 떨어

치지 않고 함께 있기를 바라거나, 독립할 때가 가까운 좀 큰 아동들의 경우와 같은 때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동의 시설보호는 최후의 조치이며, 이는 가정-형태의 조치가 어떤 특정 아동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해야 하며, 시설보호는 가족 재결합의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관점을 가지고 정기적인 심사를 받게 할 것을 보장한다(리트비아, CRC/C/LVA/CO/2, para. 33)."

시설보호는 특히 어린 아동들에게 부적절하다. “유년기 아동의 권리 이행”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7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연구결과, 질이 낮은 시설보호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건강하게 촉진시키는 것 같지 않으며 장기간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특히 3세 이하뿐만 아니라 5세 이하 아동들에게 그 영향은 심각하다. 대안적 보호가 요구되는 한, 가족을 기반으로 하거나 가정과 같은 보호에 일찍 위탁할수록 어린 아동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 당사국은 안전과 지속적 보호가 보장되는 대안적 양육형태에 투자하고 지원할 것 권고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위탁보호, 입양, 확대가족 구성원에 의한 지원을 통하여 어린 아동들이 상호 신뢰와 존경에 기초한 장기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36)."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에, 위원회는 다음에 주위를 환기시켰다.

"...예를 들면 장애아동, 약물 남용과 관련된 아동, 거리의 아동, 난민 아동 혹은 피난처를 찾는 아동과 HIV/AIDS에 감염된 아동과 같이 특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아동그룹들이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종종 개개의 실제 상황에 대한 평가 없이 그들의 사회적, 건강상태별로 큰 시설에 보호조치 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0회기 보고서, 2005.9, CRC/C/153, para. 670)."

“HIV/AIDS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No. 3에서, 때때로 시설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한 시설들이 특정한 보호기준을 만족시키고 법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시설에서 보내는 기간을 제한하여야 하고, HIV/AIDS에 의한 감염되었거나 혹은 영향을 받은 아동들까지, 그들의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적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들에 있는 모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3, 2003, CRC/GC/2003/3, para. 35)."

예를 들어, 위원회는 네팔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최근 당사국에서의 무력 분쟁으로 인하여 가족 붕괴와 분리에 직면하는 위기가 정과 아동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양부모 또는 한 부모 또는 가까운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분쟁의 결과만이 아니라 HIV/AIDS를 가지고 있어서 거주형 보호시설에 배치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동일하게 염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이러한 거주형 보호시설이 당사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시설이 많은 것을 염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시설의 질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한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분리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 ... 그리고 적절하게 훈련된 직원과 잘 구비된 위탁양육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실시할 것과, ...거주형 보호시설이 규약에 따른 질적 기준에 부합하고, 등록이 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 받고, 이러한 시설에서의 아동의 보호조치가 주기적으로 심사받을 것과, ... 이러한 보호조치는 가능한 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네팔, CRC/C/15/Add.261, paras. 49, 50)."

폭력과 시설보호 사이의 연관성 때문에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다음의 권고사항을 만들게 되었다.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위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 (a) 가정-형태의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작은 규모의 시설들은 아동 보호에 있어서 종종 더 나은 기록을 갖고 있다.

(b) 더 작은 규모의 시설 환경, 또는 아동에 대한 양육과 원조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규모 시설 또는 비인간적인 시설에서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c) 적은 수의 잘 훈련된 전문가들이 훈련이 부족하거나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보다 아동을 더 적절하게 잘 양육할 수 있다.

(d) 아동과 그의 가족 사이에 접촉(그것이 적절할 경우)을 보장하는 것과 시설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예를 들어, 교육, 레크리에이션, 혹은 보건 서비스는 시설 밖에서 제공되도록 보장한다든지)이 이뤄져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시설에서 아동을 돌보기 위한 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 비폭력적 훈육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의 역량을 보장할 필요성에 당연히 관심을 갖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들은 집단 괴롭힘과 폭력에 반대하는 전략과 정책을 채택하고, 이러한 전략과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직원들을 훈련하여야 한다(제25회기 보고서, 2000.9/10, CRC/C/100, 688.22, 688.24)."

이러한 우려는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연구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는 아동들이 폭력의 높은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에 대한 대안들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 아동의 8백 만 명가량이 거주형 보호 하에 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보호 받는 아동은 비교적 소수이며, 보호받은 아동의 대부분은 장애, 가족 붕괴, 가정 폭력, 그리고 빈곤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사정 때문이다.”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직원들의 폭력은 손이나 막대와 호스로 때리기, 아동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기, 옷 자루에 가두기, 가구에 묶어두기, 몹시 추운 방에 며칠 동안 가두기, 배설물에 누운 채로 두기 등이 있다.”

“거주형 시설에서, 장애 아동은 치료를 가장한 폭력을 접하기 쉬울지도 모른다. 몇몇 사건들에서 9살 정도의 어린이가 근육 완화제나 마취제 사용 없이 전기 경련을 수반하는 치료(ECT)를 받았다. 전기 쇼크는 또한 아동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협오치료”로써 쓰일지도 모른다. 약물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 아동이 폭력에 대

해 저항하지 못하고 더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될지도 모른다.”

“방임 또한, 상황이 너무 열악하여서 아동의 건강과 삶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많은 거주형 시설의 한 특징이다. 장애 아동을 위한 많은 시설에서, 아동은 교육, 레크리에이션, 재활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 접근할 수 없다. 장애 아동은 종종 사람과의 접촉이나 자극 없이 오랜 시간 침대에 누운 채로 있다. 이것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거주형 보호에 있는 아동들은 다른 아동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기 쉽다. 특히 환경과 직원의 감독이 열악하고 오래된 시설일 때, 더욱 공격적인 아동이 어린 아동이나 더 상처받기 쉬운 아동과 분리되지 않고 있다. 직원은 때때로 또래간의 학대를 묵인하고 장려하기도 한다(아동폭력에 관한 유엔연구 독립전문가 보고서, 제61회기, 2006.8, A/61/299, paras. 55~59).”

만약 아동이 시설에 거처한다면, 당사국은 잘 훈련된 직원을 배치하고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하고,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조 3항 참조).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이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규범을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를 포함하여 시설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훈련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과; 시설에서의 보호 조치에 대해 주기적으로 심사할 것과; 그리고 대안적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이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독립적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보호하며, 이러한 시설들이 보다 아동친화적인 시설이 되기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은 또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의 보호와 돌봄에 배분되는 자원의 수준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그루지야; CRC/C/15/Add.124, para. 35).”*

모든 시설은 반드시 최소한의 보호에 대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당사국은 국가나, 비영리기관이나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서 아동의 복지를 점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사 메커니즘을 확보하여야 한다(제3조 참조). 예를 들어, 위원회는 가이아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객원 위원회 설립을 환영하는 반면, 특별히 사립시설의 최소한의 보호와 체계적인 감독에 관한 기준이 부족한 것을 유념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한다:

- (a) 객원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라, 예를 들면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충분한 인적 및 재정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 (b) NGO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에 재정적이나 다른 지원을 적절하게 하면서 객원 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하고 설정된 기준의 역할을 하게 한다(가이아나, CRC/C/15/Add.224, paras. 35 and 36)."

아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시설들은 제12조의 원칙을 이행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대화하고, 특히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공식적인 거주 시설에서는 결코 쉽게 따라할 수는 없다.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아동의 말을 듣고, 아이들의 관점과 권리를 적절하게 존중하는 신중한 조치들이 이뤄져야만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핀란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위원회는 종종 아동의 의사가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고 대안적 보호시설에 보내지는 것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대안적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아동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핀란드, CRC/C/15/Add.272, paras. 28, 30)."

그리고 폴란드에 대해 권고하기를:

"...곧 폐쇄될 시설에 현재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향후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들을 확립한다...(폴란드, CRC/C/15/Add.194, para. 37)."

아동기를 시설에서 보냄으로 발생하는 좋지 않은 결과중 하나는 아동이 일반 세상에서 독립하여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때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위원회는 극단적으로 열악한 상태의 많은 시설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그리고 노숙자들 가운데 이전에 그런 시설에 있었던 아동들이 지나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려한다."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동안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가족과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시설의 질은 향상되어야 하며, 직원들은 부가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고, 아동들에게는 심리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독립적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 질병에 감염된 아동은 반드시 시설보호를 받는 전 기간에 걸쳐서 직접 상담을 받아야 한다(헝가리, CRC/C/HUN/CO/2, paras 31, 33)."

위원회는 아르메니아에 대해 권고하기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무상으로 원룸 아파트를 제공하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아르메니아, CRC/C/15/Add.225, para. 36)."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대해

"... 시설보호를 떠난 아동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카자흐스탄, CRC/C/15/Add.213, para. 44)."

예를 들어 제2조(차별로부터 보호),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6조(사생활 보호), 제19조(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은 협약의 다른 조항들은 시설에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과 사회화에 불리한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유니폼을 입게 한다거나, 아동의 사적 기록을 학교나 다른 원생들에게 들어낸다거나, 부적절한 통제나 제재(체벌, 자유의 제한, 안정제의 사용, 음식이나 잠 또는 가족과의 접촉을 박탈하는 것)와 같은 것이다.

## 자유 박탈

제37조는 “체포, 구금, 수감”을 포함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제연합 규칙은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제공한다. “자유 박탈은 법적, 행정적 또는 다른 공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대

로 이탈할 수 없도록 구금 혹은 수감되거나, 공공 혹은 시설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형태를 의미한다.” 정신보건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그 시설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규칙과 행정명령에 구속을 받는데, 이러한 규칙은 자신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가정형태의 것들과는 거리가 있다(예를 들어, 밤에 늦게 외출하는 것을 금한다든지). 아동이 시설에서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경우, 비록 이러한 시설들을 형사상의 제도 밖에서 운영하더라도 협약 제37조 조항들과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제연합 규칙(위원회에 의해 보증된)은 적용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분리하는 것에 실패한 많은 국가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와 안티구아 바부다에 대해:

“...위원회는 [아르헨티나 법]이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법을 어긴 아동들 사이를 구분하지 않는, ‘불규칙적인 환경’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아르헨티나, CRC/C/15/Add.187, para. 40).”

“위원회는 부모로부터 방임되거나 가정환경에서 격리가 필요한 소년들을 위한 대안적 보호를 위해 안전한 집이나 장소가 없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법을 어긴 소년들을 위한 시설에 가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안티구아 바부다 CRC/C/15/Add.247, para. 41).”

## 장애 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 혹은 그들이 더 커서도, 부모에 의해 유기당하기가 쉬우며, 이는 종종 부모가 적절히 부양할 수 없거나, 또는 자신들이 잘 대처하지 못할 거라고 겁을 먹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과 문화는 때때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나 적대감을 갖게 하고, 부모가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도록 부추긴다. 사회복지사는 위탁양육자들이 장애를 가진 아동을 받아드리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과 가정과 같은 작은 시설들은 직원이나 그들을 수용할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아동은 규모가 크거나 잘 보호받지 못하는 시설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협약 제23조 참조).

2006년 10월에 채택된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 부모가 있는 아동까지 포괄하는 가정생활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 협약은, 어느 경우라도 장애는 아동을 분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장애 아동을 국가에서 보호하게 될 때에 시설보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당사국은 장애 아동이 가정생활을 하게 하는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을 인식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은폐, 유기, 방임과 격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장애 아동과 그 가정에 포괄적인 정보, 서비스, 지원을 조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사법 심사의 구속을 받는 자격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 적법한 법과 절차에 따라 분리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의 장애,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의 장애에 근거해서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5) 당사국은, 직계가족이 장애 아동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확대가족 내에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지역사회 내의 가족적인 환경 내에서 대안적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협약 제23조).”

장애인을 위한 동등한 기회에 관한 보완적인 기준규칙 9(1)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가족 상담 속에 장애와 그것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한 모듈을 포함 시키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일시적 보호와 집중적인 보호 서비스는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성인을 위탁보호하거나 입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 점은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9에서 재차 부연되었다(CRC/C/GC/9, paras. 47, 49).

그러므로 당사국은 장애 아동이 그들의 가정에 머물도록 지원하는 모든 조치를 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위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비용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회적 보호 서비스는 위탁양육자를 훈련하고 장애아동의 위탁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은 “가족”시설들은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장애아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과 직원들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을 염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치료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상황에 대해 염려한다. 시설보호에 대한 대안들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집에 데리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부적당하다(우크라이나, CRC/C/15/Add.42, para. 13).”*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국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더 나빠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부연하였는데;

*“...거주형 보호를 제공하는 가정에 할당된 자원이 상당히 삭감되었다...(우크라이나, CRC/C/15/Add.191, paras. 46~48, 53,54).”*

*“위원회는... 장애 아동이 너무 많이 보호시설로 보내지는 것과 장애 전문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과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보호를 포함하여 대안적인 조치를 확립하고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투르크메니스탄, CRC/C/TKM/CO/1, paras. 49, 50).”*

## 거리에서 살거나/노동하는 아동

“거리의 아동” 현상(제2조 참조)은 아동권리협약에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리에서 살거나 노동하는 아동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권리위원회에게는 큰 걱정거리이며, 최종논평에서 그것을 분리된 주제로 내놓기 시작하였다. 위원회는 이제 거의 모든 가난한 국가에 대해 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부유한 나라의 도시들에도 집이 없거나 가출한 아동 인구

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 예를 들면, 독일에는 외국 아동들이 거리에서 사는 비율이 높으며 (독일, CRC/C/15/Add.226, para. 59),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특히 주거,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집 없는 아동들의 긴급한 욕구와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노력을 강화한다. 더욱이, 당사국은 집 없는 아이들이 신체적, 성적 학대와 악물남용을 회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현 가능하다면, 그들의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오스트레일리아, CRC/C/15/Add.268, para. 66)."*

흔히들 믿는 것처럼 거리에 살고 있는 아동들은 제20조의 범주에 자동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가족환경에서 박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리의 아동” 나미비아 515 조사 결과 다음 사항이 밝혀졌다. “조사대상이 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귀가할 수 있는 가족이 있었으며, 대부분 다섯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 출신이었다. 아동의 절반 정도는 한 부모 가정이었으며, 이런 경우 주로 어머니가 가장인 가족이며, 아버지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실업일 가능성이 높았다.(나미비아, CRC/C/3/Add.12, paras. 190~192).” 이러한 경우에, 경제적인 결핍이 그들을 길거리로 나가게 만드는데,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동은 당연히 영구적인 대안가정으로 격리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여서 때때로 국가나 NGO의 개입이 오히려 피해를 낳기도 한다. 반면에, 만약 아동이 가족에 의해 학대 받거나 거부당한 경우라면, 때때로 가족 재결합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다. 위원회가 지적하는 것처럼, 아동의 개인적 내력이나 의견에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러시아 연방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거리의 아동이 그들의 가족이나 다른 친척들과 재결합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거나, 아동 자신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대안적 양육을 제공한다(러시아 연방국, CRC/C/RUS/CO/3, para. 75)."*

그리고 위원회는 우간다가 아동의 의견 반영된 일반 전략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면서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거리의 아동 자신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특히 그 정책은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하여 그 근본원인을 밝혀야 하며, 거리의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적절한 보건 서비스, 교육과 그 밖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CRC/C/UGA/CO/2, para. 72)."

오늘날 “거리의 아동”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아동 스스로의 독립심과 자립의 의지를 검토하면서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점차 협약의 원칙을 옹호하고 지원하게 되며, 개인으로써의 아동의 자율과 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며 또한 아동의 가족도 지원한다. 프로젝트는 아동이 현재 살고 있는 그 거리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자 하며,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아동의 능력을 지원하면서, 그리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재통합 하도록 격려하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레바논에 권고한 것처럼 위원회는 국가가 동등하고 민감하게 대응을 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고 그 숫자를 감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리의 아동 문제를 제기하는데 계속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 (a) 거리의 아동 상황을 알리고 이 아동들에게 공식 문서와 적절한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설정하는데, 그 전략에는 그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과 생존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함께 신체적, 성적 학대와 약물남용으로부터 회복하고 사회로의 재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할 것과;
- (b) 정책의 문제로서,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동에 대한 구금을 자제하고, 협약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는 대안적 구금형태를 찾을 것과;
- (c) 이러한 현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거리의 아동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근본원인과 사인의 중대성을 찾아내기 위한 행동지향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그들 가족들과 재결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 (d) 당사국내에서 거리의 아동과 함께 일하는 NGO들과 아동 자신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리고 적절한 UN기구나 다른 국제적인 기구로부터 기술적인 지

원을 구할 것을 권고한다(레바논 CRC/C/LBN/CO/3, para. 78)."

이러한 일련의 권고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들이 당면한 도전은 두 가지이다. 거리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음으로써 거리의 아동 수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리에서 살면서 노동하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들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 한다. 건강관리나 복지혜택과 같은 국가 공공 서비스는 그들의 신원이나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종 거부당한다, 그들은 다른 시민들에게 종종 괴롭힘을 당하거나 차별당하며, 때로는 법 집행관에 의해 공공연하게 폭력을 당한다, 그들은 성적 착취나 약물남용에 쉽게 빠지기도 한다.; 그들은 거리 갱단이나 범죄 집단에 가담하기도 한다. 위원회는 국가가 가혹한 정책에 관련된 것을 발견할 때마나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예를 들어:

"구결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원회는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붙들린 아이들이 법원의 소송절차나 구치소 또는 고아원에 보내지는 위협에 처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한다(요르단, CRC/15/Add.125, para 51)."

"...거리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사회청소'란 목적으로 살인을 포함한 강간, 학대와 고문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과테말라, CRC/C/15/Add.154, paras. 54)."

"위원회는 다음에 관해서 심각하게 걱정한다:... 거리의 아동 수치의 증가와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는 서비스 기관에 의해 실행된 용납하기 힘든 정책과 프로그램들... "Lesson", "Street children", "Railway station" 과 "Holiday" 와 같은 특별한 예방책과, 유기와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아동에 관한 정보를 특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것...(우크라이나, CRC/C/15/Add.191, para. 69)."

"1994년 7월에 채택된 감독 없이 아동을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법률에 따르면, 기출 아동은 일주일까지 감금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런 법과 관련하여...기출아동을 감금하는 정책을 그만두라고 권고한다(몽골, CRC/C/15/Add.264, para. 62)."

그리고 위원회는 일련의 보호 조치들을 권고해 왔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경찰에 제공하여 경찰들이 길거리 아이들이 폭력행위나 그 밖의 다른 학대로부터 보호받는데 일조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한다(부룬디, CRC/C/15/Add.133, para. 70)."

"...길거리 아이들의 상황을 청소년 문제처원이 아니라 청소년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내에서 보는 것을 고려해보라(우크라이나, CRC/C/15/Add.191, para.70)."

"...특히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길거리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기 위해 거리의 아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라...(탄자니아, CRC/C/TZA/CO/2, para. 62)."

"...학대와 폭력 사례에 대해 거리의 아동들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매커니즘을 확립하라(트리니다드 토바고, CRC/C/TTO/CO/2, para.66)."

“아동권리협약 맥락에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 4는 노숙아들에게 관심을 끌어 모았다:

"노숙아들은 특히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폭력, 학대와 성적 착취에 취약하고 자멸적 행동, 약물 남용, 정신질환을 경험하기 쉽다. 이런 면에서 당사국들에게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 (a) 예를 들어,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법을 만들어서 집행한다;
- (b)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관리와 생활기술을 증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 4, 2003, CRC/GC/2003/4, para. 36)."

## 동반자 없는 난민과 이민 아동

“모국 밖에서, 동반자 없이 분리된 아동에 대한 조치”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6 은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적 보호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보호와 주거환경은 다음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 "일반 규칙으로서 아동은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 보호의 지속을 보장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동반자가 없고 분리된 아동의 거주를 옮기는 것은 그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일 경우로만 제한되어야 한다;
- 가족 통합의 원칙에 따라서 형제자매는 함께 있어야 한다;
- 함께 도착한 성인 친척이 있거나 이미 그 나라의 수용시설에 들어와 살고 있는 친척이 있는 아동은 그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거주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특히 아이들이 피해 받기 쉬우므로 아이들은 사회 복지사에 의해, 정기적인 진단이 실시되어야 한다;
- 동반자가 없거나 분리된 아동을 위한 보호 조치와 관계없이, 전문 인력에 의한 정기적 감독과 평가가 지속되어야만 한다. 이는 아동의 육체적, 심리사회적 건강을 보장하고, 가정 내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이나 직업 기술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국가와 다른 기관들은 반드시, 분리되거나 동반자 없이 아동이 가장인 가구의 아동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 대규모의 비상사태에서는, 동반자가 없는 아동에게 적합한 짧은 시간동안의 임시 보호가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임시보호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에서의 신체적, 정서적인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아동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 6, 2005, CRC/GC/2005/6, para. 40)."

### 해결책을 강구할 때 “비람직한 양육의 지속성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 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제7조(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8조(아동의 신분유지) 및 제30조와 관련이 있다. 제30조는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출신의 아동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누리고, 종교를 유지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유감스럽게도 몇몇 나라들이 이러한 권리를 위반하고, 강제적으로 아동을 고유의 혹은 소수의 그룹에서 격리시키고는, 그들을 자녀가 없는 부유한 집에 거처하

게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록 좋은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행  
들은 심각한 인종주의를 드러내고 많은 아동과 어른들에게 피해를 입혀 왔다.

위원회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관한 일반토론의 날에 이러한 문  
제들을 제기하였다.

*“아동은 그들 고유의 환경에서 더 편안해 하고 이는 그들이 가정 밖 보호에 처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 전제는 아동은 그들 고유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고유의 공동체는 종종 매우 밀접한 가족 시  
스템을 갖고 있어서 아동 보호 시스템은 고유의 문화, 가치관 및 고유의 정체성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여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0회기 보고서, 2005.  
9, CRC/C/153, para. 673).”*

양육의 지속성은 가능할 때는 어디서든지 부모,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와 접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심지어 아동이 입양되었을 때도 가능한  
(제21조 하에서 심화된 논의 참조). 양육의 지속성은 또한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위탁 가정 혹은 입양 가정을 찾는 것과, 시설의 모든 스태프 혹은 몇몇 구성원이 같  
은 문화 출신이고, 그리고 더 바람직하기로는, 시설 자체가 그런 공동체 안에 위치  
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배경”에 대해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최  
고이며 - 그리고 대개는 오직 - 유년 시절에만 획득이 되므로, 심지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되더라도, 아동이 모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아동이 오직 같은 인종적 혹은 종교를 갖은 사람들과 살게 하는 포괄적  
정책은, “당연한 고려”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유연성과 양립할 수 없다. 제3조  
1항에 의한 아동 최선의 이익은 종교나 문화의 지속성에 배치될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만약 아동이 해로운 종교나 문화적 관례 때문에 부모로부터 격리된 것이라면,  
혹은 만약 아동이 부모의 신념이나 관례 때문에 가출한 경우라면. 그리고 아동이 충

분히 발달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종교를 선택할 스스로의 권리는 협약 제13조부터 제15조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양육의 지속성은 또한 국가가 아동의 보호를 위해 여러 번 거처를 옮겨다니는 것을 지양하도록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그들의 가족을 잃는 것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때, 아동은 더 심각한 행동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한 위탁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혹은 그들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욱 구속적인 시설들로 옮겨지고 더 큰 행동적 문제를 불러 올 수도 있다. 아동의 삶에 이런 파괴적 상황이 오지 않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20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모든 정부부처 차원에서 책임 부서와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고 조정 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제20조는 사회복지, 교육과 보건부서가 해당)?
-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정부 기구/시민사회 파트너는 확실한가?
- 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을 위하여 모든 법률, 정책과 실천이 협약 조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목표와 과정에 대한 지표를 필요에 따라 명확하게 포함하는가?
- 아동권리에 더욱 도움이 되는 모든 조항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관련이 있는 다른 국제적인 기준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에 따라 포함되어 있는가?

(이러한 조치들은 협약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정부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

- 예산에 대한 분석과 필요한 자원은 배당되어 있는가?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절차들은 개발되어 있는가?
- 제20조의 내용을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가?
- 적절한 훈련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제20조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입양기관 직원, 시설관계자, 위탁부모, 교사, 경찰 및 의료인에 대한 훈련)?

### ● 제20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아동을 위한 대안적인 보호를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모든 부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가?
- 아동이 부모에 의해서 보호되지 못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면서 아동의 확대가족에게 아동을 보호조치 하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하는가?
- 아동이 가장인 가족이 발생할 때, 국가는 그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가?

가족 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을 위해서 국가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가?

가족이 없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건강, 교육과 그 밖에 다른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조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훈련되는가?

아동의 의견은 다음의 경우에 반영되는가?

그들을 위한 대안적 보호조치가 고려될 때?

대안적 보호조치를 선택할 때?

대안적 보호조치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때?

가족 환경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아동친화적인 고충처리 제도가 이용가능한가?

보호조치 되기 전에 위탁부모가 적절한지 충분히 조사되고 인정을 받는가?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위탁부모가 모집되고 장려되는가?

위탁보호는 정기적으로 모니터 되고 있는가?

위탁부모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고 아동의 의견에 비중을 두도록 요청받는가?

국가는 부모에 의해서 사적으로 위탁 보호된 아동의 복지를 모니터 하는가?

아동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시설에 보호조치 되는가?

시설보호는 정기적으로 모니터 되는가?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시설들에는 충분한 숫자의, 적합하고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가?

직원들은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훈련되는가?

그러한 시설들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아동이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하며, 아동이 사회와 통합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가?

예를 들어, 그러한 시설들은 다음 사항들을 금지하는가?

강제적인 유니폼 착용

아동 노동 (일반적 가내의 허드렛일을 넘어서는)

체벌

자유의 제한

감독을 목적으로 한 약물 사용

음식 빼앗기

- 잠 안 재우기
- 감독을 목적으로 하여 가족들과의 접촉 박탈
- 이러한 시설들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아동의 의견을 확인하고 그 의견에 비중을 두도록 요청되는가?
- 가능하다면, 모든 시설들이 장애 아동을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수용하는가?
- 가능하다면, 아동의 거처를 바꾸는 것을 지양하는가?
- 국가는 거리에서 살거나/노동하는 집 없는 아이들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과 아동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의논하고 전략을 채택하였는가?
- 이런 아이들은, 그들의 즉각적인 보호와 사회적 재통합을 위해서, 공식적 문서와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는가?
- 이런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청소년 사법기관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당국이 맡고 있는가?
-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프로젝트는, 가능할 경우 그리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이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도록 하는가?

보호조치할 거처를 선택하거나 지원할 때에, 사회사업 당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아동 양육의 바람직한 지속성을 당연히 고려하는가?

- 아동의 인종적 배경?
- 아동의 종교적 배경?
- 아동의 문화적 배경?
- 아동의 언어적 배경?

(예를 들어, 아동의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연락을 유지함으로써, 혹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조정을 통하여서)

### ● 주의사항

본 협약은 분할할 수 없으며 각 조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 제20조를 따로 분리하여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 일반원칙

제2조: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별아동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차별

없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

제3조(1)조: 아동과 관련한 모든 조치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제6조: 삶에 대한 권리와 가능한 최대의 생존과 발달을 누릴 권리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3조(2)와 (3): 아동을 위한 모든 보호조치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보장하고,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는 국가의 의무

제7조: 부모를 알 권리와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8조: 아동 신분의 유지

제9조: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분리되지 않는 것

제16조: 사생활, 가족, 가정에 대해 임의로 간섭당하는 것으로 부터 보호

제18조: 주된 책임을 갖거나 적절한 국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동 책임을 갖는 부모들

제21조: 입양

제22조: 난민 아동

제25조: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제30조: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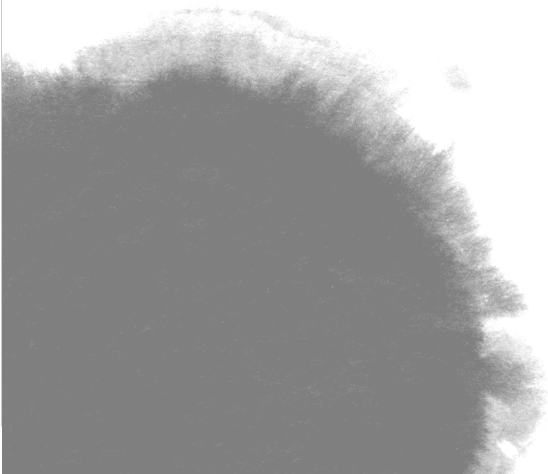




21

K  
I  
H  
A  
S  
A

제21조 입양





## 제21조 입양

States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 (a)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in view of the child's status concerning parents, relatives and legal guardians and that, if required,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informed consent to the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ling as may be necessary;
- (b) Recognize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child's care, if the child cannot be placed in a foster or an adoptive family or cannot in any suitable manner be cared for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 (c) Ensure that the child concerned by inter-country adoption enjoys safeguards and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existing in the case of national adoption;
- (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placement does not result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ose involved in it;
- (e) Promote, where appropriat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article by co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or agreements, and endeavor, within this framework, to ensure that the placement of the child in another country is carried out by competent authorities of organs.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법적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합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정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항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요약

21조는 입양아동들의 권리를 말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 국가가 입양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입양절차를 위한 모든 입양 제도와 상세한 최저 요건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입양은 아동이 출신국내에서 적합한 양육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과 안전감과 영속적 관계성에 대한 모든 어린 아동들의 욕구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 집단이며 모든 가족원 특히 아동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한 자연적 환경”이며 “충분하고 조화로운 성격발달을 위해 아동은 가정환경에서, 행복과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협약 전문에 공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영구적 문제 해결인 입양은 그러나 더욱 논쟁적이다.

아동의 권리 협약은 입양의 바람직함에 대하여 중립적이다. 제20조는 입양은 가정이 없는 아동들의 보호를 위한 하나의 가능한 선택임을 언급한다. 영속적이고 개별적인 애착을 위한 아동의 심리적 욕구는 입양의 형식을 제외하고도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입양을 할 경우에 입양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

입양을 가정이 없는 아동들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협약초안 실무단 대표는 “아동이 부모나 친가족원들에 의해 보호될 수 없을 경우 당사국의 관계당국은 아동의 영구적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E/1981/12/Add.1,C, p.56~59; Detrick, p.299).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이슬람법에 의한 국가들에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입양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입양남용에 관한 다른 보고서 - 예를 들면, 계약아동노동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 입양”에 관한 보고가 있다(경제사회이사회, 최근 노예 형태의 노동집단에 관한 제18차 보고서, E/CN.4/Sub.2/1993/30, p33. 협약 제32조 참조).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입양남용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밀매,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성적착취를 위한 밀매를 목적으로 한 국제 입양의 악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러시아 연방, CRC/CI15/Add.110, para, 43).”*

러시아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시에 위원회는 국제입양의 감독이 부족한데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러시아 연방, CRC/C/RUS/CO/3, para. 42).

*“외국인에 의해 입양된 아동들과 당사국의 최근의 무력분쟁에 관련된 상당수의 네 팔아동들에 관한 보고에 대해 위원회는 영아 밀매와 밀수출과 같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는 분명한 정책과 적합한 법 규정의 결여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하 인과 같은 아동 착취를 유발할 수도 있는 소위 비밀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네팔, CRC/C/15/Add.261, para. 53).”*

이슬람법은 아동의 근본 출신과 혈연관계를 바꾸는 입양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정이 없는 아동들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에서 성을 가질 수 없거나 상속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카팔라(kafalah) 하에 영구적 형태의 위탁가정에서 살 수 있다(제20조 참조). 레바논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무슬림에게는 입양을 허용하지 않으나 비무슬림에게는 입양을 허용한다(레바논, CRC/C/8/Add.23, paras. 46, 47). 조항의 조심스러운 표현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다루살렘, 인도네시아, 요르단, 쿠웨이트, 몰디브와 시리아 등 상당수의 이슬람 국가들은 협약 제21조를 유보하였다(CRC/C/Rev.8, p.14~39). 위원회는 요르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 20조와 21조에 대한 유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협약 제20조 3항은 대안적 보호로서 이슬람의 카팔라를 명백하게 인정하며, 21조는 어떤 경우에도 요르단에 적용되지 않는, 입양제도를 ‘승인 또는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요르단, CRC/C/15/Add.125. paras. 10~11).”*

국가가 보장하는 입양의 전통적인 관례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협약에 모순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캐나다가 21조의 유보를 철회할 것을 권유한다. “...캐나다 원주민들의 관습적 형태의 아동보호에 상반될 수도 있을 범위까지(CRS/C/Rev.8, p.16; 캐나다, CRC/C/15/Add.37, para. 10).” 제2차 심의에 따라 캐나다는 “유보의 철회를 목적으로 원주민들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요구 받았다(캐나다, CRC/C/15/Add.215, para. 7).

무슬림이 많지 않은 한국은 “범위 자체의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21조 (a)를 유보하였다. 위원회의 일관된 우려:

*“보편화된 부정적 문화관습으로 인해 국내입양은 허가나 관계당국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그와 같은 제도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나 타당할 경우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협약에 일치하도록 제정된 법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의 포괄적 검토를 요청한다(한국, CRC/C/15/Add.197, paras. 42, 43).”*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가하여 제3조에서와 같이 단순히 “중요한” 고려보다는 “가장 중요한 고려”가 되어야만 한다. 이 조항은 그것이 경제적, 정치적, 신분보장 혹은 양부모의 것이건 간에 어떤 다른 이익보다도 아동의 이익이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다. 페루가 제2차 국가보고서에 포함한 바처럼 “가정은 아동을 위해 만들어 지며, 가정을 위해 아동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페루, CRC/C/65/Add.8, para. 179).”

최우선의 원칙은 법에 명시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연령의 제한이나 혹은 아동에 관하여 기아가 입양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요구하는 것 등과 같은 완고한 법규정과 같은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구속하는 어떤 규정도 협약을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최선의 이익”에 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제3조, 제9조, 제18조 참조).

'아동'이라 함은 물론 입양 신청 대상 아동을 말한다. 그러나 최선의 이익 고려는

그 아동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아동들이 입양 절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는 10세 이상 아동의 입양에 있어서는 아동의 입양 동의를 받아야 한다(필리핀, CRC/C/3/Add.23, para. 52). 가정 내 다른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는 입양은 협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입양절차는 또한 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레나다, 헝가리, 멕시코의 경우 "위원회는 입양 과정에 있어서 여아를 선호하는 분명한 성 편견에 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제입양의 상황에 대한 평가와 국제입양의 효과 그리고 국제입양 과정에서 남아 대신 여아만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그레나다, CRC/C/15/Add.121, para. 19)."

"위원회는 비록 그들 중 몇몇 아동들이 입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대다수의 이태리 아동들에 대해 우려를 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을 확인하고 입양 과정을 주도하기 위해 협약 제20조에 따른 아동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헝가리, CRC/HUN/CO12, paras. 34, 35)."

"위원회는 부유한 가정에 의한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문화적 태생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멕시코, CRC/C/MEX/CO/3 para. 41)."

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로서 국가에 의한 모든 형태의 입양에 대한 중앙부서의 모니터링을 확인한다.

###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른 관계당국에 의하면” 허가된 입양**

입양이 허용된 모든 국가에서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입양을 규정하는 법률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관계당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입양 가능성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전문적 기관을 포함하며, 타당한 동의의 획득과 제반 관련 정보의 고려를 보장 한다. 이를 위해 훈련된 사회복지사와 심판관들이 시행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모리셔스의 이와 같은 관점에 있어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 판결을 돕기 위한 사회적 보고(social report)에 대한 구체적 요청의 결여에 대하여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사후지도 제도의 결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입양 판정 결정은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됨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과 입양부모에 관련된 정보가 입증된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법률제정을 권고한다(모리셔스, CRC/C/MUS/CO/2, paras. 45, 46)."

위원회는 또한 결정된 입양의 지연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손상을 가져오기 쉬우며, 사회복지서비스가 입양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스위스와 필리핀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왜냐하면: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들은 공식적으로 입양이 되기 전에 2년간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은 차별과 무국적 상태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가하여 위원회는 부적절한 사후지도 때문에 입양부모에 의한 불량양육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스위스, CRC/C/15/Add.182, para. 36)."

"위원회는 아동의 입양을 선고함에 있어 소요되는 장기간의 과정이 입양대상 아동의 시설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대해 우려한다(필리핀, CRC/C/15/Add.259, para. 48)."

**“아동의 입양은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과 법적 후견인과 요구되는 경우 동의된 입양상담 정보를 제공한 관계지들에 대한 아동의 상태를 고려하여 허용될 수 있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될 수 있도록 보장됨을” 선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동 입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과 동시



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가능한 부모에 의해 제공되며(협약 제7조 및 제9조) 부모는 “아동 양육의 ‘기본적 책임’이 있으며 부모들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협약상의 그들의 권리와 능력의 개발(협약 제5조 및 제18조)이라는 틀 안에서 그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입양은 부모가 이와 같은 책임 수행을 원치 않거나 혹은 법률상 부모의 책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 엄격하지 않은 조건하에 입양을 허용하는 법은 협약 하에 아동과 부모의 권리 불이행을 상당한 정도 가져올 수도 있다. 입양에 있어서의 타당한 아동의 동의 요구가 아동이 그들 부모들로부터 부당하게 분리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된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아동의 출생 전에 입양 지정을 하는 헝가리의 관습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헝가리, CRC/C/15/Add.87, paras. 17, 33). 헝가리가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 위원회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생모가 동의를 철회 할 수도 있을 출생 후의 단기간에 걸쳐.(헝가리, CRC/C/HUN/CO/2, para. 34)."*

그것은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제기되었다.

*"비록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후에 시설에 보내기 위해 자녀들을 포기하는데 동의하기 위하여 서류에 서명하도록 부모들을 격려하는 키르기스스탄의 관습은 위원회의 관심사이다(키르기스스탄, CRC/C/15/Add.244, para. 41)."*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가장 중요함”은 법적 근거와 동의 획득을 충족시키는 법적 필요성에 의해 선이 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절차가 따르지 않는다면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에 관계없이 입양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협약 규정은 각각의 가능한 입양이 입양신청서를 고려하여 관계당국에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제출된 충분한 보고서를 통해 타당한 조사를 요구할 것을 의미한다. 협약 21조는 어떤 동의가 반드시 획득되어야 함을 상세히 설명 하지는 않는다. 비록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아동이나 친부모 권리의 상당부분의 침해가 결국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요구된다면”을 국내입양법에 남겨둔다(협약 제7조 및 제9조 참조).

예를 들어 입양절차에 있어 어떤 가능한 권리를 갖기 위해 혼외관계에 의해 출생된 아동의 생부를 허용하지 않는 법과 같이 신분은 고려되어야 한다. 동의를 요구되는 경우 협약은 “필요할 수도 있는 상담을 기반으로 하여” 이런 동의를 주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규정한다.

## 아동의 견해

아동의 견해는 동의에 관련된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협약 제12조의 요구를 포함하여 요건에 대한 타당한 고려는 의심할 바 없이 함축되어있다. 아동의 확인할 수 있는 견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어떤 고려보다도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7조와 8조에 언급 되었듯이 협약은 입양아들이 입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친부모의 정체성을 알아야 할 것을 명시하며, 그리고 그것은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입양의 분명하고도 접근 가능한 기록을 간직할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견해에 부가하여 입양법은 아동의 공식적 합의가 획득되었음을 또한 요구할 수도 있다. 몇몇 나라의 국가보고서는 입양을 위한 법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연령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바스코티아는 12세 이상(캐나다, CRC/C/11/Add.3, para. 1129), 크로아티아는 10세 이상(크로아티아, CRC/C/8/Add.19, para. 103), 몽골리아는 9세 이상(몽골, CRC/C/3/Add.32, paras. 135~139). 다른 가능성은 아동들에게 그들의 입양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이다. 입양은 결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며(이슬람의 경험은 영속적인 것은 입양 없이 성취될 수 있다) 입양은 대체로 취소할 수 없다. 입양에 대한 동의는 그러므로 보다 위험을 수반하며, 입양 동의를 거부하는 것 보다 결정하는 것에 보다 무게를 둔다. 능동적으로 동의를 언급하는 것보다 거부권 행사를 수동적으로 자제 하는 것이 그들 친부모들에 대한 아동의 죄의식을 덜게 하지 않으며 아동이 그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는 제12조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어떤 연령의 아동이 그가 원하는 바에 반하여 입양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매우 어린 아동이 동의를 반대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그의 희망을 수

용하고 후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국제입양에 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은 그와 같은 입양은 만일 출신국 관계당국이 “아동의 성숙도와 연령에 관하여 보증하고 아동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아동이 상담을 받고 입양의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었으며” 그와 같은 고려에 아동의 소원과 의견이 반영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제4조 4항). 헤이그협약은 또한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동의는 설득에 의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한다.

위원회는 입양에 대해 고려된 아동의 소원에 대한 협약 12조하의 아동의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입양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고려가 협약 12조의 규정에 기술되어야 한다(멕시코, CRC/C/15/Add.13, para. 18).”

*“위원회는 고려가 가족의 재결합과 입양에 관련된 절차에 포함하여, 가정과 사회 생활에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아동의 참여를 확장하고 확대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독일, CRC/C/15/Add.43, para. 29).”*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입양에 대한 아동의 특정한 동의 연령을 요구할 것을 권고한다(뉴질랜드, CRC/C/15/Add.216, para. 34).”*

**“국제입양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의 아동 양육의 하나의 대안적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국가들이 가정이 없는 아동들을 위한 하나의 양육선택으로서 국제입양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말은 의도적인 표현이며, 다음에서 논의할 내용과 같이 제21조는 국제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수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입양의 증가는 많은 관심을 야기 시키고 있다. 입양을 위한 아동의 공급이 제한된 저출산과 사생아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갖는 나라들에 있어서 아동들은 매우 바람직한 상품이다. 이런 것이 상업적 이유나 불법적 수단에 의한 입양의 수를 분명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매우 엄격한 규정과 감독 없이는 아동은 입양을 위해 매매되거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됨이 없이 입양 될 수 있다; 어떤 아동들은 아동매춘이나 노예와 같은 사악한 목적으로 입양되기도 한다. 이것이 아동매매, 아동매춘과 아동포르노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선택의정서에 언급되어 있다. 협약선택의정서는 국가가 “적용 가능한 입양관련 국내법의 위반으로서 입양을 위한 하나의 매개로서 부당하게 설득한 동의를” 포함하여 어떤 유형의 아동매매도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인도되어야 할 범죄로 유죄화하기 위한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한다(제2조, 3조, 5조).

위원회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현상에 대해 반복하여 우려를 표명해왔다.

*"위원회는 협약의 규정과 원칙에 위반하는 국제입양에 있어서의 의심스러운 정보에 대해 지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그것이 주로 협약 제3조, 12조, 21조에 비추어, 국제입양 분야에 있어서의 하나의 표준적 틀의 부재에 대해 우려한다(파라과이, CRC/C/15/Add.27, para. 11)."*

*"위원회는 불법입양 네트워크가 드러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아동권리의 침해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부족하고 비효과적이라는 국가당사국에 의한 보고에 우려를 표명한다(파테말라, CRC/C/15/Add.58, para. 21)."*

비록 국제입양이 관리되고 있다 하여도 위원회는 국제입양 건수가 많은 나라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을 받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입양된 아동들에 대한 아동의 복지를 모니터할 것을 권장한다.

아르헨티나는 협약 21조의 (b), (c), (d)와 (e)항을 유보하였으나 그것은 국제입양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은 아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이와 같은 규정들이 자국 관할권내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으로는 규정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법적 보호를 위한 엄밀한 장치가 아동의 매매나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마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아르헨티나, CRC/C/2/Rev.8, CRC/C/8/Add.2, para. 62).” 위원회는 아르헨티나의 협약 21조의 일부조항의 유보에 대한 이유에 대해 납

득할 수 없으며 유보사항 철회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아르헨티나, CRC/C/15/Add.187, paras. 8, 14; 아르헨티나, CRC/C/15/Add.187. para. 14).

## “이동이 아동의 출신국 내에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 또는 다른 어떤 적합한 형태의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만의” 국제입양

다른 말로 말하면 국제입양은 반드시 문제해결의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 국가는 출신국내에서의 이동을 위한 적합한 양육을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음을 입증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최후 수단”의 규정은 제7조의 아동의 알 권리와 부모에 의한 양육, 제8조의 아동이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 “아동 양육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아동양육의 일관성과 아동의 인종, 종교, 문화, 언어적 배경에 정당한 고려”를 요구하는 협약 제20조 3항에 일치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제입양은 “아동의 출신국내에서 아동양육을 위한 적합한 고려가 취해진 후에”에만 국제입양을 할 수 있다는 “국제입양의 부차적 원칙”을 설정한 국제입양에 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서 확인 되고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시설보호의 연장은 아동의 출신국내에서의 “적합한” 보호가 될 수 없기 쉽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 볼리비아나 라트비아와 같이 국제입양 건수가 매우 많은 국가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입양이 국제입양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과 수용, 바람직한 입양부모를 알선하기 위한 제도의 결여,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지도와 입양아동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 제도의 결핍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볼리비아, CRC/C/15/Add.256, para. 41).”*

*“위원회는 국제입양아동 수 보다 현저히 적은 국내입양 건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라트비아, CRC/C/LVA/CO/2, para. 34).”*

위원회는 라트비아가

*“입양 조건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며,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과 입양부모들을 위*

해 일하는 집단들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입양을 권장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국제입양보다 국내입양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할 것을 권고한다(라트비아, CRC/C/LVA/CO/2, para. 35)."

## 동반자 없는 난민아동이나 이민아동

세계 부유한 국가들에 수많은 동반자 없는 아동들이 입국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동반자 없는 아동들과 출신국으로부터 해외로 분리된 아동들의 처우”에 관한 일반논평 No.6에서 위원회는 비록 그런 아동을 위한 하나의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입양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 거기에는 많은 가능한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동반자 없는 아동이나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입양은 아동이 입양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전에 인정된 경우에만 고려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이것은 특히 가족을 찾아 재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패했거나 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 입양에 필요한 부모의 동의와 다른 사람들의 동의, 시설과 당국의 동의는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알려져야 한다. 이는 그와 같은 동의는 어떤 유형의 금전적 지불이나 보상에 의해 설득되지 않으며 철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정한다.
- 동반자 없는 아동이나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매우 긴급한 상태에서 서둘러 입양되어서는 안된다.
- 어떤 입양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적용 가능한 국내법, 국제법, 관습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연령과 성숙도에 의해 결정되는 아동의 견해는 모든 입양과정에서 추구되어야 하고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는 아동이 상담을 받고, 그런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아동이 입양과 입양에 대한 동의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동의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유형의 금전적 지불이나 보상에 의해 설득되지 않아야 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친척에게 입양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져야만 한다. 이것

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우선권은 아동의 출신국 교포사회나 최소한 동일문화권의 지역사회에 주어져야 한다.

- 입양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 성공적으로 가족을 찾아 재결합시키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희망이 있는 경우
  - 입양이 아동이나 부모의 표명된 의사에 위배되는 경우
  - 부모나 다른 생존해 있는 가족원을 찾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경주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소요기간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소요기간은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매우 다를 것이다. 그러나 찾는 과정은 합당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만 한다.
- 시설보호 아동의 입양은 가까운 미래에 안전하고 품위 있는 조건하에 자발적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6, 2005, CRC/GC/2005/6)."

### **“국제입양에 관련된 아동이 자국의 국내입양의 경우와 동등한 안전보호와 기준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할” 의무**

따라서 모든 국제입양은 적합한 조사와 정보 그리고 적합한 동의(필요할 경우 상담을 포함한)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 출신국의 관계당국에 의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허가되어야만 한다. 헤이그 협약은 이런 기반이 되는 규칙을 규정하고 국제입양에 대한 세칙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물론 모든 국가들이 입양법, 전문적 훈련과 행정제도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을 포함한다.

### **국제입양이 “부당한 금전적 이득” 의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국가보고서와 위원회 심의는 입양을 위한 아동의 매매에 관한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강조한다. 입양부모에 의한 금전적 지불은 신뢰를 조성하며 아동에게 해롭지 않을 수 있는 반면에, 아동 두당 값을 매기는 제도는 범죄와 부패와 착취를 조장할한 우려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5조는 당사국이 어떤 목적으로도 아동의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헤이그 협약 32조는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 “1. 국제입양에 관련된 행위로부터 누구도 금전적 혹은 여타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 입양 관련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업무상의 비용을 포함한 경비나 지출만 지불될 수 있다.
3. 입양에 관련된 기관장, 부서장, 직원들은 제공된 서비스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아동거래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춘과 아동포르노는 인도처분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아동의 입양으로부터 얻은 어떤 부당한 금전적 이득도 범죄화 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협약 제2, 3, 5조).

이 분야에 있어서 위원회의 관심은 매매되는 아동의 위험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국제입양으로부터의 어떤 형태의 폭리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와 러시아 연방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회는 사실 ‘입양의 집(Adoption Houses)’이 입양에 관련된 이득을 창출할 위험을 증가시키며 협약 21조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특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국제입양은 국가중앙기관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콜롬비아, CRC/C/COL/C/3, paras. 56, 57).”*

#### 국제입양에 대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국가(2007년 7월 현재)

알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사이프러스,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인도, 이스라엘, 이태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위원회는 러시아연방 당국이 입양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 부적절한 금전 지불과 예비 입양부모가 원하는 이동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관련하여 해외입양기관이 전적으로 통제 하지 않도록 할 것을 특히 언급 한다(러시아 연방, CRC/C/RUS/CO/3, para. 42)."

**국가는 "이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타국에 이동을 보내는 것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보장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과 노력"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국으로 참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협정은 국제입양에 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 헤이그 협약이다. 이 협약은 상세하게 법적으로 국제적 기준의 의무를 구속하며, 동의된 감독제도와 의사소통의 통로와 입양아의 출신국 당국과 입양부모 사이의 효율적인 관계를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초안으로 작성되었다. 헤이그 협약은 유엔아동권리협약 21조와 여타 조항들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국내 및 국제 가정위탁보호와 입양에 특별히 관련을 가진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련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1996년 유엔선언의 규정을 반영한다. 헤이그협약의 첫 번째 목표는 "국제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국제법상 인정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존중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수단을 만드는" 것이다 (협약 제1조 가항).

위원회는 괄호 속에 기록된 국가들이 협약 당사국이 되도록 노고를 다하며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강력하게 이를 권고함으로써 이 협약에 서명할 것을 체계적으로 통보해왔다. 그러나 프랑스에는 그것에 대한 불찬성을 언급하였다.

"대다수의 국제입양 대상 아동 출신국이 1993년 헤이그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며 인가받은 기관이 아닌 시설 통로를 통한 국제입양의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이 우려된다(프랑스, CRC/C/15/Add.240, para. 33)."

부유한 국가들 - 헤이그협약의 "수혜국"들은 협약의 모든 규정들이 준수 되도록 입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 협약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21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모든 정부 수준의 책임 있는 부서와 기관의 확인과 협력을 받았는가?  
(협약 21조의 유관 부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와 관련됨)
- 관련 비정부기구나 시민협력단체의 확인을 받는가?
- 모든 법, 정책, 업무절차가 관할 지역 내의 모든 아동들을 위하여 협약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검토를 하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필요한 경우 목표의 확인과 향상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가?
- 아동의 권리를 보다 통제하는 어떤 규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
- 기타 관련 국제 기준을 인정 하는가?
-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을 포함하는가?

(그와 같은 평가는 총괄적으로 협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정부 조치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예산 분석과 필요한 자원의 할당?
-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의 개발?
- 협약 21조의 이행을 성인과 아동들에게 홍보하고 있는가?
- 적합한 훈련과 인식의 개발은? (협약 21조에 관련하여 주로 사회복지사, 사법관, 출입국 관리담당관, 입양기관 직원과 입양부모를 위한 교육담당자가 주로 포함된다.)

### ● 제21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국가는 아동입양제도를 승인 또는 허용하는가?  
만약 승인 또는 한다면:  
법과 제도는 모든 입양절차를 보장하는가?(국내, “관습법” 과 국가 간의)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가?
  - 입양은 관계당국에 위해서만 허가 되는가?
  - 허가는 적합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되는가?
- 이 정보는 확인할 수 있는 아동의 견해를 포함하는가?

- 그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주어지는가?
- 입양신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아동들(입양 예정 부모의 친자녀들과 같은)의 견해와 최선의 이익이 관계당국에 의해 고려되는가?
- 이 과정에서 부모를 알며 부모에 의해 양육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정당한 주의가 기울여졌는가?
- 이 과정에서 아동의 정체성과 아동의 배경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지속성의 유지와 아동의 인종, 종교, 문화, 언어적 배경에 대해 정당한 주의가 기울여졌는가?

입양에 동의하기 전에 당국은 아래 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 부모와 친척 그리고 법적 후견인에 관련된 아동 신분의 관점에서 입양이 허용 될 수 있는가?
  - 법에 의해 요청되는 모든 동의가 관계자들에게 주어졌는가?
  - 법에 의해 동의가 요청될 경우, 관계자들은 상담을 받았는가?
- 아동들에게 입양 동의권이 있는 경우
- 몇 세?
  - 어떤 특정 나이?
  -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르는가?
- 모든 아동들이 입양 거부권을 갖는가?
  - 입양아동의 상태는 당국에 의한 중앙본부의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보고를 받는가?
  - 국제입양은 아동의 관할지역 내에서 가정위탁보호나 입양가정 혹은 다른 어떤 적합한 방법으로도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허가 되는가?
  - 국제입양이 된 모든 아동들이(입국이나 출국의 경우) 출신국의 국내 입양에 동등한 규정과 보호를 받는가?
  - 국경선 통제국이 부모가 아닌 성인들과 여행하는 영아나 아동들에 대한 출입국 모니터링 하는가?
  - 국제입양으로부터의 부당한 금전적 이득이 법에 의해 금지되는가?
  - 국제입양에 대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수용 하였는가?
    -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관련법이나 행정절차에 관련된 모든 규정이 이행되고 있는가?
  - 아동 거래,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비준하였는가?

-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모든 규정이 이행되고 있는가?
- 입양에 관한 어떤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이 결정되었는가?

● 주의사항

협약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협약의 모든 조항들은 상호의존 한다. 협약 제21조 역시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일반원칙

제2조: 어떤 배경에도 차별을 함이 없이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을 위한 모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제3조 1항: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생명, 최대한도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

제12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 존중;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의 진술의 기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협약 이행이 21조에 특별히 관련된 조항들은:

제5조: 부모 지도와 아동의 능력 개발

제7조: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될 아동의 권리

제8조: 아동의 정체성 보존

제9조: 최선의 이익이 필요한 경우 외의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제10조: 가족 재결함

제11조: 불법해외이송과 미귀환으로부터의 보호

제16조: 사생활, 가족, 가정에 대한 자의적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제18조: 부모의 공동책임

제20조: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

제25조: 양육조치에 대한 정기적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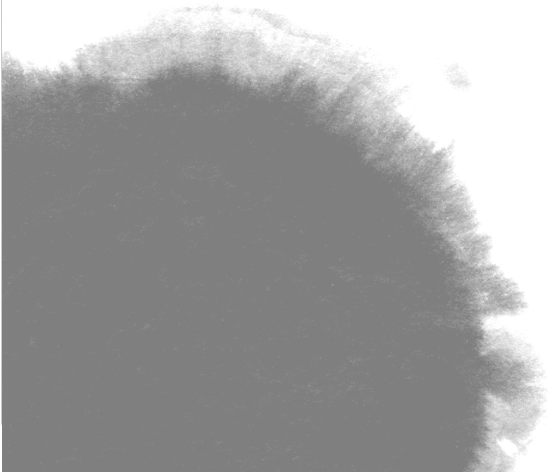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제35조: 거래, 매매, 약취유인 예방

아동의 거래, 매춘, 포르노에 대한 아동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

22

K  
I  
H  
A  
S  
A

제22조 난민이동





## 제22조 난민아동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a child who is seeking refugee status or who is considered a refuge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or domestic law and procedures shall, whether unaccompanied or accompanied by his or her parents or by any other person, receive appropriate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enjoyment of applicabl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nd in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instruments to which the said States are Parties.
  2. For this purpose,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co-operation in any efforts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compete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perating with the United Nations to protect and assist such a child and to trace the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of any refugee child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for reunification with his or her family. In cases where no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can be found, the child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any other child permanently or temporari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for any reason , a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 간 또는 비정부 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 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여하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요약

제22조는 적절한 보호와 가족 추적과 같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난민 아동 및

비호 요청 아동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다. 이 조항은 일반적 인권 조약 중 유일하게 난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1951년의 난민 지위 관련 조약과 그에 따른 1967년의 의정서를 아직 승인하지 않은 국가에 체류하는 난민 아동에게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UHCR)은 전 세계 1000만 명의 난민 중 절반가량이 아동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아동 권리 위원회가 내는 거의 모든 최종 보고서에는 국가별 아동 난민에 대한 대우를 다루는 부분이 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난민 아동들이 (자신의 국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국가 사법권이 미치는 모든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아동 권리 조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가질 자격이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제22조는 제7조와 제8조(국적과 가족 관계에 대한 권리) 그리고 제9조(아동의 최선의 이익 시 부모와의 분리), 제10조(공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가족 재결합을 할 권리), 제20조(가족이 없는 아동), 제35조(아동 인신 매매), 제37조(최후 수단으로서의 자유 박탈), 그리고 제39조(무력 분쟁, 고문 및 다른 종류의 학대 경험 이후 회복)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와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 역시 이 조항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출신국에서 이동한 아동에 대한 대우 부분에서 그러하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국가들에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가이드라인(아래 박스 참조)과 더불어 이러한 조약들을 받아들일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에 관한 일반 논평을 내린 바 있다(CRC/GC/2005/6).

## 배경

제22조의 초안은 난민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특별한”이 “적절한”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초안 작성자들이 이러한 필요성은 아동 권리 협약이 난민 아동에게 적절히 적용되면 충족될 부분이라 여긴 이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주 혹은 국적에 대한 아동의 특별 권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나, 가족 구성원 추적에 필요한 비용 지불을 꺼리는 국가들의 압력 때문이기도 했다



(E/1982/12/Add1,C, p.64~68; Detrick, p.320~329). 그럼에도 이 조항이 중요한 것은 난민 아동과 비호 요청 아동들이 특정한 형태의 보호와 지원을 요구 한다는 것에 대해 국가가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집행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다수의 견해를 내렸는데, 예를 들면, 난민 아동에 관한 47번 견해(1987), 난민 아동에 관한 59번 견해(1989), 난민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84번 견해(1997), 난민 가족 보호에 관한 88번 견해(1999), 위험에 처한 여성 및 소녀에 관한 105번 견해(2006)가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이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No.6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에 포함되어 있다(CRC/GC/2005/6, 요약은 아래 박스 참조).

**관련 국제 조약 및 지침 사항**

위원회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국제 협정들을 회원국들이 비준하도록 장려한다.

-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두 개의 선택 의정서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난민 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 국제 입양에서의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 부모 책임 및 아동 보호 조치에 관하여 관할, 적용 법률,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 1949년 8월 12일 4개의 제네바 협약, 1977년 6월 8일 국제적 무력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제 1 의정서), 위원회는 협약 회원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4)과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기관 간 지침 원칙들(ICRC, 2004)’을 참고하도록 장려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6, “출신국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은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2005, CRC/GC/2005/6, para. 15)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이에 대한 1967년 의정서는 이 이슈에 대한 핵심적 국제 장치이다. 5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는데, 아동권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들 국가들에게 회원국이 될 것을 권유하며, 국가들이 난민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 난민 지위를 요청하거나 “적용 가능한 국제적 혹은 국내법과 절차” 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는 아동

제22조는 “난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지만 적용 가능한 국제적 혹은 국내적 법과 절차를 언급한다. 난민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서 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은 난민에 대한 국제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협정 하에서 정의되는 성인 및 아동은 넓은 범위에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한 사회 집단의 소속 혹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생기는 박해의 위협으로 인해 자신의 출신국(국적이 없더라도) 밖에 있으며, 이 위협으로 인해 출신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 난민 지위를 가지는 아동이나 성인은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자신의 출신국으로 강제 송환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송환을 강제하는 타국으로 이송될 수도 없다(강제 송환 금지 의무). 난민 지위 결정을 위한 절차와 범위에 대한 유엔고등판무관실의 핸드북은 1951년 협약에 대한 또 다른 기초적 해석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절차가 부재하거나 불충분한 지시가 있더라도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이 임무에 따라 난민 지위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국가의 비호 법령을 제정하고 이행하는 주체는 국가이다. 이러한 국내 법령은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해 해당 국가가 당사국으로 있는 어떠한 국제적 의무에도 부합해야 하지만, 이 의무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 이 중요한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 여겨지고 있어, 1951년 협약이나 1967년 의정서의 비 당사국에게도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은 부모와 동반하는 아동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보통 부모의 난민 지위를 따른다. 그러나 부모와 동반하지 못하거나 분리된 아동의 경우 난민 지위를 증명해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미성숙과 더불어 난

민 지위 요구 시 아동 본인 보다 아동의 가족이나 친척과 관련된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사실에서 야기되는 어려움 때문이다.

“출신국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대우”에 관한 일반 논평 6 에서 위원회는 국가의 강제송환 금지 의무가 본 협약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라 확인시킨다.

*“나아가, 동 협약 하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은 동 협약 제 6조와 제37조에 고려된 위협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의, 즉 아동의 이송이 실행되거나 그 후 이송될 국가이든,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해의 실질적 위협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아동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강제송환금지 의무는 동 협약 하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비국가행위자에 기인한 것이거나, 혹은 그러한 침해가 직접 의도되었거나 작위나 부작위의 간접적 결과에 의한 것이든 지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러한 심각한 침해의 위협을 측정하는 것은 연령 및 성인지적 (gender-sensitive)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예를 들면, 불충분한 식량이나 보건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아동에게 미칠 심각한 결과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

*“... 특히 1951년 난민협약 상의 난민의 정의는 연령과 성(gender)인지적 방식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며, 아동이 경험한 박해의 특정한 동기와 형태, 발현을 고려해야만 한다. 친족의 박해, 미성년 징집, 매춘을 목적으로 한 아동의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나 여성 할례로 인한 피해 등은 그러한 행위가 1951년 난민협약 상의 이유 중 하나와 관련되었다면, 아동에 대한 난민 지위의 부여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아동에게 특유한 형태의 박해와 박해의 발현 중 일부이다. 따라서 당사국은 국내 난민 지위 결정 절차에 있어서 성(gender)에 근거한 폭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동에게 특유한 박해의 형태와 발현에 대하여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6, 2005, CRC/GC/2005/6, paras. 27, 74).”*

예를 들어 위원회는 독일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독일이 비호 절차에서 소년병 징집을 “아동에 한정된 박해 형태의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독

일, CRC/C/15/Add.226. para. 54).

난민 지위 설정을 위한 체계가 부적절할 경우 아동의 상황은 긴박해지는데 이는 위원회가 중국에 지적한 바와 같다.

"위원회는 북한에서 중국 본토로 넘어오는 아동들이 경제적 이주민으로 분류되어 아동 송환 시 뒤따르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중국, CRC/C/CHN/C12, para. 80)."

아동 복지에 직접적 위기가 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열악한 체계로 인한 지연은 필연적으로 아동의 복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위원회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우려한다: (가) 아동권리 존중에 영향을 미치는 가압국 국경에서 최초의 요청이 거절되어 지연되고 구금되는 수많은 비호 요청자들, (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재결합 지연을 포함해, 비호나 난민 요청과 관련된 행정적이며 혹은 사법적 절차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지연, (다) 비호 요청자와 난민들의 법적 지원에 대한 적절한 공적 자금 지원 부재, (라) 동반되지 않은 아동 난민의 상황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세부적 요구 사항에 대한 관심 부족 (그리스, CRC/C/15/Add.170, para. 68)."

"위원회는 매우 긴 비호 요청 진행 기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데 이는 아동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스웨덴, CRC/C/15/Add.248, para. 39)."

반면, 아동의 비호 요청이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급속히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절차가 가속화 되면 아동의 발언을 편견 없이 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동반되지 않은 미성년 비호 요청자에 대한 네덜란드의 정의가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48시간의 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 요청자의 확실하게 증가하는 부분의 결정 및 거절 과정이 본 협약 제 22조 및 국제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우려한다(네덜란드, CRC/C/15/Add.227, para. 53)."

## 난민 지위를 요청하는 “동반되지 않았거나 동반된” 아동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대우”에 대한 위원회의 일 반논평 No.6은 혼자 이동하거나 부모 혹은 보호자가 아닌 성인과 함께 이동하는 아동에 대한 필수적 보호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아래 박스의 요약 참고). 일반 논평은 면담과 심문이 아동 친화적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소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결정이 보호자나 조연자가 지정되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통역사도 지정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보호 장치들이 수용국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주로 감독한다.

"위원회는 동반되지 않은 아동들이 비호 절차 중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이러한 아동들을 위한 법적 후견인 지명 역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한다(슬로베니아, CRC/C/15/Add.230, para. 56)."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 동반 미성년자가 대기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법적 대리인을 대신하여 “특별 행정 담당”을 그들에게 지원하며 그들의 상황을 언급하려는 노력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상황에 있는 미성년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령 실행에 난점이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동반되지 않은 아동이 공항에 도착하여 사법적 개입이나 가족 상황에 대한 평가 없이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덧붙여, 연령을 결정하는 과정 중 아동이 미땅히 보장 받아야 하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도 우려를 표명한다(프랑스, CRC/C/15/Add.240, para. 50)."

"위원회는 동반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보호자 부재의 이유로 국가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러시아 연방, CRC/C/RUS/CO/3, para. 66 )."

인접 국가들에서 대량의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많은 국가들도 있다. 위원회는 보호자 지정이나 심지어 난민 지위 평가도 긴급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개개인과 수용국의 가능 자원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최종 견해에서 위원회는 이러한 국가들의 관용에 특별히 감사를 표하며 난민 캠프의 기초 조건 향상에 논평의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 논평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개인별 난민 지위 결정이 불가능한 광범위한 난민 이동의 경우 당사국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모든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특정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6, CRC/GC/2005/6. Para. 73)."*

### 출신국의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아동권리 위원회, 2005년 일반논평 No.6: 요약

“동반 되지 않은” 아동이란 책임을 가진 성인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분리된” 아동은 일차 보호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과 함께인 아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에는 우선적으로 난민, 인신매매된 아동,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는 아동이 해당되며 이들은 자주 착취, 학대, 박해, 차별에 노출된다.

협약에 대한 일반적 의무

협약의 권리는 아동의 국적이나 이민 지위와 상관없이 당사국 영토 내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권리는 국내 법령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관련된 그 외 국제조약들을 승인하도록 장려 받는다(아래 박스 참고, p.306).

**제2조:** 당사국은 차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취해야 한다. 어떠한 공적 지시 혹은 정책적 조치도 집단이 아닌 개별적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3조:** 무엇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체성, 양육, 문화적 배경, 특별한 취약성과 요구되는 사항이 포괄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이는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 우호적 분위기에서 수행되어야만 한다. 후견인 지명 및 필요시 법적 대리인 지명은 양육 장소에 대한 정기 보고와 함께 필수적인 안전 책이다.

**제6조:** 국가는 이를테면 인신매매 된 아동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고 즉각적으로 후견인을 지명하는 등 이러한 아동들과 연관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국가는 “강제 송환 금지”-생명이나 자유가 위협 받거나 박해의 위험이 있을 때 사람들을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원칙-이라는 국제법 원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심각한 어떠한 종류의 피해라도 입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는 보내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아동은 그들의 권리부여, 비호 과정, 출신국의 상황 등에 대한 모든 관련된 정보를 연령에 맞게 제공 받아야 한다.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아동의 비밀권은 존중 되어야 하며, 아동의 출신국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특별한 돌봄이 있어야 한다.

### 세부적 조치

입국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아동의 신분이 증명되어야 한다. 연령을 평가할 때는 아동의 인간적 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연령이 불분명한 경우, 아동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전문가가 면담을 수행해야 하는데, 연령에 적절하고 성 인지적 방식으로, 아동이 이해하는 언어로 수행해야 한다. 아동과 양 쪽 부모 및 형제자매의 신분과 시민권, 분리되거나 동반되지 못한 이유, 특정 취약성 및 보호에 대한 필요 측정, 박해의 증거, 출신국에서의 분쟁 혹은 폭력 사태 등의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아동은 개인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자격을 갖춘 후견인이 지명되어 아동이 성인 연령에 될 때까지 아동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분리된 아동의 경우 동반하는 성인 가족 구성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있지 않은 이상, 이들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양육과 거주 배정은 가능한 친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대안적 양육 장소 배정에는 아동의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제자매들은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거주지 변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일 때만 가능하고, 양육 장소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교육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학교 당국에 등록되어야만 하며 귀환되거나 혹은 재정착과 같은 경우 그들의 교육 수준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공 받아야 한다. 모든 아동은 적절한 삶의 수준을 누리고 내국인 아동과 동등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귀 서비스는 어떤 특정한 학대나 외상의 피해를 입었던 아동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을 인신매매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가해자에게 법령을 강제하되 아동을 처벌하지 않으며, 아동이 비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또한 군대에 아동을 징집(혹은 재 징집)하지 않아야 하며, 이전에 소년병이었던 아동은 심각한 안보 상 위험이 있지 않는 한 강제 수용되지 않고 사회 복귀를 위한 원조 조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 구금은 단순히 아동의 이민

지위 혹은 그들이 동반되지 않았거나 분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정당화 되는 경우, 구금은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아동은 친척이나 대리인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하고 이상적으로는 구금 시설 외부에서 행하는 교육을 포함한 모든 기초적 필수품을 제공받아야 한다.

### 비호 요청 절차 중 권리

국가는 아동이 구체적 박해의 공포를 표현해내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연령과 무관하게 비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강제하고 이행해야 한다. 아동은 그들의 보호자와 무료의 법적 대리인, 그리고 통역사에 의해 대변되어야 하며, 비호 결정은 개별 아동에 의해 제시되는 요소들의 특별한 조합을 고려하여 내려져야 한다. 친족의 박해, 미성년 징집, 인신 매매 및 성적 착취, 여성 할례 피해 등은 난민 지위의 부여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예들이다. 아동은 비호 심사 과정에서 언제나 불려가서는 안되며 비호권을 받지 못한 아동이라도 당사국에 머무는 다른 아동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가족 재결합

국가는 가능한 빨리 이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동반되지 않았거나 분리된 아동의 가족을 추적하고 그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우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는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 가족과 재결합 하는데 조금이라도 위험이 되는 요소가 있다면 난민 아동은 출신국으로 송환되지 않아야 한다. 가족 재결합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신청은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출신국으로의 귀환

출신국으로의 귀환이 아동의 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이는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위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안보와 사회적 경제적 조건, 아동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 수용국에서의 통합에 대한 아동의 시각과 수준, 정체성의 유지와 지속적 양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지역적 통합

귀환이 불가능하다면 지역적 통합이 우선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는 거주 지위를 포함한 안정적인 법적 지위에 기반 하여야만 하며 그 이후 적절한 장기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3국 재정착이 일부 아동들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 국가 간 입양

추적 및 가족 재결합에 대한 노력이 실패한 경우, 입양이 아동이나 가족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만 수행되어야 하며, 이때도 모든 국제법,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비호국 내의 입양은 가까운 미래에 안전한 자발적 본국 송환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 훈련, 자료 및 통계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게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해,



출신국, 적절한 면담 기술, 문화적 민감성,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구체적이며 통합된 자료는 보관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각 아동의 법적 지위, 거주 배정, 교육, 대리인 지명을 비롯해 가족의 재결합 시도 등의 기본적 정보와, 아동의 입국 횟수, 혹은 입국 거부된수, 출신국에서의 비호의 부여 건수 및 출신국으로 귀환된 횟수, 지명된 보호자와 변호사의 수 등이 포함된다. 보호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져야하며 이는 출신국에 아직 남아있는 아동의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6 “출신국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 2005, CRC/GC/2005/6)*

## 22조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국내 유랑과 이민

아동과 그 가족은 그들의 출신국 내에서의 박해나 무력 분쟁을 피해 피난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는 난민이라는 정의의 범주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종종 난민의 경험과 같다. 실제로, 아동의 가족들은 조국의 국경을 넘어갔다가 다시 조국의 국경을 넘어오면서 난민과 국내 유랑민 사이에서 불분명한 입장이 된다.

국내 유랑민 담당 사무총장 대리인은 국내 유랑민들이 인종 청소나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며 정당화되지 않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와 같은 임의적 유랑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국내 유민의 상황을 설명하는 국내유랑에 대한 지침적원칙들(1998)을 발간했다. 이 원칙들은 특히 가족이나 법적, 관습적 일차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포함해 아동이 가지는 특정 요구 사항들을 인식하며 기초 서비스, 교육, 시민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회원국들을 언급하며 국내 아동 유랑민의 이탈에 대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위원회는 국가 내에서 강제적으로 재편성된 대규모의 사람들과, 매우 빈곤하여 유랑민 캠프 및 재편성된 사람들을 위한 캠프에서 생명에 위협이 갈 정도의 심각한 조건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난민촌에서 제공되는 열악한 보건의 교육 서비스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시민들이 정착하지 못하여 (displacement)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보호하고 동반되지 않은 아동의 상황과 효과적 가족 추적의 필요성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재편성 종결 계획을 이행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더욱이 당사국이 재편성 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유랑민의 아동과 그 가족들이 필수적인 보건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출신 공동체로 귀환되는 느린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귀환하는 아동과 그 가족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당사국이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덧붙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안전하며 영속성 있는 해결책으로 난민 귀환에 도움이 될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밀접히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브룬디, CRC/C/15/Add.133, paras. 67, 68)."

"위원회는 국내 아동 유랑민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증가시키려는 당사국의 의도는 높이 평가하지만, 콜롬비아 내에서 매년 더 많은 수의 아동이 이동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국내 유민이 있는 국가이며, 이 중 아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 유민 아동의 신체적 보호와 유랑에 의한 외상 극복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속적으로 유민 지원을 위한 자원을 증대시키고 아동에게 적절한 식량, 쉼터, 교육,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목표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유랑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 사회적 지원에 추가적인 관심을 쏟고, 성 폭행의 위험에 있는 소녀들에게 더 폭넓은 보호책을 제공하고, 시민 당국에 의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콜롬비아, CRC/C/COL/CO/3, paras. 78, 79)."

출신국 외부에 있는 세계의 많은 동반되지 않은 아동들은 자국에서의 박해 때문이 아닌 빈곤과 기회의 부재로 인해 자국을 떠나는 소위 경제적 이주민 (모든 이주노동자 협약에서 다루는)에 해당하지만, 제22조는 난민이 아닌 이주 아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외국에 있는 아동은 매춘이나 가정부로 착취될 목적으로 그곳으로 인신매매되었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No.6에서 이러한 아동이 자동적으

로 비호 경로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송환 처리 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이며 긍정적인  
으로 대우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태국과 같은 상황에 처한 여러  
국가의 아동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당사국이 이주 가정 아동의 등록을 위해 노력함을 인식하는 한편, 위원회는 태국  
에서 아동이 가지는 취약점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지방 경찰에 의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처럼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근거 없는 인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  
가 될 수 있다. 위원회는 많은 가족들은 물론 심지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임신  
부까지 그들이 맞이할 박해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송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HIV/AIDS 예방과 관리에 관련된 보  
건, 교육 서비스 범주에 접근할 수 없으며, 아동의 생활 조건이 극심히 빈곤하고, 열  
악한 환경에서 많은 아동이 장시간 노동한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 노동자의 자녀 혹은 그 가족 구성원들, 특히 미등록 이  
주민들이 함부로 체포되거나 구금 혹은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이 조국으로 귀환  
될 경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다. 위원회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보건,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비차별의 원칙에 입  
각한 교육 서비스를 분명히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태국, CRC/C/THA/CO/2,  
paras. 68, 69)."

### 출신국 혹은 경유국의 책임 및 양자 협정

난민 아동들이 피난해 나온 국가는 무력 분쟁, 인종 청소 혹은 정치적 박해와 같  
은 그들의 처지로 인해 아동이 처한 상황을 구제할 수 없거나 구제할 의지가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국가들이 구제책을 취하도록 촉구한다. 각  
국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대규모 아동 이주가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는 국가가 그 원  
인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아동 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위원회는 알바니아에서 근접한 나라로 떠나는 아동의 문제가 심각하며, 대략 4000명의 아동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채 알바니아를 떠났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별히 다음의 분야에서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 (a) 이렇게 대규모로 부모가 동반되지 않은 아동이 이동하는 원인을 밝히고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한 안전책을 도입하며, 특히 이러한 아동들이 불법적 연결망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
- (b) 정보와 통계 수집에 있어 통합적 접근법을 취하며 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허용한다.
- (c) 이러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교육과 더불어 그들의 권리를 확실히 존중하기 위해 근접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협정을 체결하는데 힘을 쏟는다(알바니아, CRC/C/15/Add.249, paras. 66, 67)."

위원회는 또한 수용 국 들이 수많은 아동들을 그들의 출신국이나 경유국으로 송환시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모로코는 미국 혹은 스페인에서 송환된 많은 수의 아동을 수용하는 국가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국가들이 본 협약 하에서 송환된 아동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위원회는 많은 수의 동반되지 않은 아동이 멕시코에서 아동의 출신 국으로 송환되며 동반되지 않은 이주 아동과 난민 아동을 보호할 조치가 부재 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멕시코로 많은 수의 동반되지 않은 아동이 송환되었으며 당사국은 이러한 아동들을 재통합하고 보호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외국의 동반되지 않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행정적 체계가 발달되도록 보장한다.
- (b) 세부적인 지역 단체들이 동반되지 않은 이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신장시킨다. 여기에는 특정한 권리를 비롯해 동반되지 않은 미성년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 증대 프로그램 및 훈련 구성이 포함된다.
- (c) 당사국으로 송환되어 온 모든 동반되지 않은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반도록 보장하며 특히 사회적 재통합 조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d) 근접 당사국들과 더 많은 양자 혹은 다자 협약을 맺어 지역의 동반되지 않은 아동에게 적절한 대우를 제공한다.

(e) 기타 행위자 중에서는 이 분야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기술적 지원을 구한다(멕시코, CRC/C/MEXICO/3, paras. 60, 61)."

미국이 아직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는 미국에 멕시코와 같은 우려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스페인과 모로코 간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양 국가에 우려를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시도 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세우타와 멜리아 도시에 있는 모로코 출신의 동반되지 않은 아동들의 상황에 대해 깊이 주의를 요한다. 특히, 몇몇 경우에서 법적지원이나 통역이 없는 상태에서 출신국으로 강제 송환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우려를 표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아동들이 효과적으로 출신국의 가족 혹은 사회 복지 기관에 보내질 것이라는 확정도 없이 간단히 송환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아동이 스페인에서 모로코로 송환될 때, 아동이 아동을 돌보기를 원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적절한 사회 서비스 기관에 보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이 모로코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동반되지 않은 외국 아동을 추방할 때 부적절한 절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스페인, CRC/C/15/Add.185, paras. 45, 46)."

"위원회는 스페인의 Ceuta와 Melilla 도시에 거주하는 송환된 모로코 아동의 상황에 깊이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러한 아동을 대하는 경찰의 가혹함에 우려를 표하며, 또한 이러한 아동이 일단 당사국의 영토로 송환되어 오면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며 그들의 상황을 모니터링 받지 못하는 것에 우려한다."

"스페인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회원국이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되지 않은 아동들이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것을 막고, 스페인 정부와 협력해 아동들이 스페인에서 모로코로 귀환될 때, 그들이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 혹은 아동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줄 사회 서비스 기관에 보내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귀환된 아동을 냉대하는 사례들을 효과적 방법으로 조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하도록 권고한다(모로코, CRC/C/15/Add.211, paras. 58, 59)."

이듬해에 모로코는 위원회에 다음의 최종 견해를 공식적 “답변”으로 전하며,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이주 아동에 대한 보다 나은 대우를 위해 스페인과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다는 세부적 각서를 체결하였다(CRC/C15/Add.211).

위원회는 귀환된 난민 아동이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가 단지 무시당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에서처럼 범죄 화 되는 경우에 대해 더 깊이 우려한다.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서 국경을 건너 국경 근처의 중국 몇몇 도시의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귀환하거나 송환되는 아동과 그들의 가족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간주되는 점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a) 아동이 다른 국가로 국경을 건너 이동하는 이유를 평가하고 분석한다.
- (b) 당사국으로 되돌아온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간주한다.
- (c) 중국 당국과 해당 아동의 안전한 송환을 협상한다.
- (d) 아동에게 재통합에 필요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한다(북한, CRC/C/15/Add.239, paras. 58, 59)."

## 본 협약 및 다른 국제 인권, 인도적 협정과 관련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난민 아동의 권리

난민 아동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그러한 아동들이 성 학대나 군 징집의 희생자로 널리 분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이러한 이슈들을 계속하여 제기해왔다. 수용국에 어떠한 압력이 가해지든지 난민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당사국의 법적, 도덕적 의무는 불변한 것이다. 2005년에 갱신된 난민아동에대한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전략과 활동 - 요약 노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난민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세부적 사항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행동에 옮겨야 할 핵심분야로 다음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부모 및 보호자와의 분리관련 활동, 성적 착취 분야, 군 징집 및 교육 분야와 관련된 다른 인권 및 인도주의적 조약으로는 1951년 협약 조항 23조 “체결국은 합법적으로 자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적 구호와 공적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 한다” 가 있다. 제22조는 난민 아동과 난민 지위 획득 과정 중인 아동 모두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협약의 조항들은 국가의 사법권이 미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 된다(제2조). 그렇기 때문에 난민 지위 부여가 거부된 아동이라 할지라도 그 국가에 남아 있는 한 보호를 받게 된다. 연령이나 민족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예를 들어, 위원회는 독일이 16세, 17세 난민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로마 아동들이 강제로 추방당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독일, CRC/C/15/Add.226, para. 54)). 국가가 지방 행정의 권력과 책임성 증대를 이유로 차별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그때 그때 바뀌는 것은 분산화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지만, 국가는 지방 정부가 본 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적절한 교육, 건강, 복지 서비스

난민 아동은 생존을 위한 기초 필수 조건들을 반드시 제공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수용 국이 부유하지 않다면 상황은 특히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차이로 인한 공동체 간 충돌이 당사국에서 대규모 국내 유랑민을 낳았으며, 나이지리아가 차드,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와 같은 근접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난민들의 수용 국임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 및 국내 유민 아동들의 상황을 우려하며, 당사국 보고서와 나이지리아에서 비호요청 아동에게 무관심한 당사국의 상황에서 이러한 아동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강제적으로 매춘에 내몰리는 십*

대 여자 아이를 포함해 난민촌 안팎의 난민 여아와 여성에게 발생하는 성 착취에 특히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난민촌에서 십대의 임신이 증가한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나이지리아, CRC/C/15/Add.257, para. 63)."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 연방의 체첸 난민 아동을 포함한 난민들을 보호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00명의 국내 유민들 중의 35 퍼센트와 200,000명의 난민이 아동이며 그들이 기본적으로 수도와 위생 시설, 마실 수 있는 식수 및 교육 시설이 부족한 매우 빈곤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에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아제르바이잔, CRC/C/AZE/CO/2, para.59)."

"위원회는 난민촌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난민 아동들의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생활환경 및 사회적 서비스, 보건 서비스,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 가정, 학교, 공동체에서 맞는 폭력적 상황 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레바논, CRC/C/LBN/CO/3, para.73)."

위원회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호 요청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카자흐스탄도 그 예에 속한다.

"위원회는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서류들을 보유하지 못한 아동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며.... 일거리를 찾아 서부 카자흐스탄으로 이민 온, 아동을 포함한 불법 체류 이주자들에 대한 영양적, 의료적 지원 등의 대우가 부적절하고... 동반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한 여타 아동들과 같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카자흐스탄, CRC/C/15/Add.213, para. 63)."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미성년자를 포함한 난민들이 정부나 자선적 원조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들이 노동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제32조의 보호 절차).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난민들이 스스로 지탱할 역량을 저해하는 요르단의 고용 정책에 우려를 표한다(요르단, CRC/15/Add.125, para. 56).

난민 아동의 사회 통합 역시 이러한 서비스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난민 아동들의 일반 학교 포함, 필요하다면 이들의 불가피한 정신적 외상 경험의 치유를 위한 치료법도 의미한다. 그렇기에 위원회는 노르웨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수용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지원 및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화하고, 또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비호 요청 아동을 적절하게 심리적, 정신의학적으로 관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동반되지 않은 비호 요청 아동 수용 시설의 자원을 향상 시키고 적절히 훈련되고 능력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이러한 아동을 위한 지원과 관리가 아동 복지 체계 내의 다른 기관들과 같은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권고한다(노르웨이, CRC/C/15/Add.263, para. 42)."

덧붙여 위원회는 선진국의 비호 요청자 수용 시설에서 실종되는 동반되지 않은 아동의 수에 우려한다. 이러한 상황은 가끔 송환을 피하려고 아동 스스로 선택하여 발생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러한 아동들은 학대와 착취에 그대로 노출된다.

위원회는 덴마크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수용 시설에서 실종된 동반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며, 그 연구 결과가 당사국이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더 존중하는데 지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덴마크, CRC/C/DNK/CO/3, para. 52)."

## 아동의 구금

늘어나는 보호 요청자와 이주민으로 인해 몇몇 국가들은 통제의 수단으로 감금을 행하고 있다. 협약에 의하면 난민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이루어져야 한다(제37조(b)). 일반 논평에서는 아동이 일상적 문제로 구금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이 이주민 이거나 혹은 동반되지 않은 지위만을 이유로 구금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동 구금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아동권리협약의 조항 및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국제연합최저기준규칙(북경 규칙) 모두에 따라야 하며, 아동의 구금 조건도 마찬가지로 본 협약의 조항들(제37조, 제39조)과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국제연합 규칙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호주에 다음의 이슈를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불법적으로 호주 영토에 있는 아동들이 그들의 상황이 평가될 때까지는 자동적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행정적 구금 시설로 이동되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행정적 구금이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민 수용소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전반적 발달에 유해한 결과를 이끈다는 점, 그리고 구금 상황에 대한 독립적 정기 모니터링 체계가 없다는 점에 특히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자국의 이민법과 망명법을 본 협약 및 기타 관련된 국제 기준에 따라 당사국이 출신국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의 대우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6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 (a) 아동이 이민 과정 중에 당연히 구금되지 않고,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에만 이뤄져야 한다.
- (b) 아동이 이민의 과정 중 구금되었을 때 아동에 대한 구금이 정말로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48시간 내에 독립된 사법 재판소나 법정의 평가를 받는다.
- (c) 아동 구금이 필요하며 그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면 이민 수용소에 구금된 아동의 상태를 상당히 향상 시켜 국제 기준에 맞도록 한다.
- (d) 이민 과정 중 구금된 아동의 구금에 대해 정기적 검토를 보장한다(호주, CRC/C/15/Add.268, paras. 62, 64)."

또한 캐나다에도 다음을 권고하였다

"정책상의 문제로 동반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구금하는 행위를 삼가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구금의 법적 의도를 명확히 하며, 협약의 제37조와 양립하는 범위에서 구금의 합법 여부를 신속히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캐나다, CRC/C/15/Add.215, para. 47)."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 간 또는 비정부 간 기구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초고 작업을 하면서 실무 그룹의 몇몇 대표자들은 자신의 국가가 비정부 기구 혹은 정부 간 기구와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이의를 가졌고, 이에 따라 협조가 의미하는 자유 재량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이라는 부분이 추가 되었다. 정부 간 기구나 비정부간 기구들이 “국제연합과 협력 관계에 있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설정 되었는데, 이는 몇몇 대표들이 지적해 냈듯이 테러리스트 조직들도 이론적으로는 비정부 기구라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연합과 협력하지 않는 몇몇 권위 있는 비정부 기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E/CN.4/1989/48, pp.63~66; Detrick, p.325).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독특하고도 중요한 임무는 협약의 초고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강조되었다. 1950년에 총회에 의해 만들어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유엔의 원조 하에 국제적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정부기관들과 난민의 어려운 상황의 항구적인 해결책을 찾아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난민과 관련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활동의 가치는 주로위원회를 통해 가입국에게 강하게 전달된다.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에 관한 일반논평 No.6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유엔에이즈계획,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에도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국제이주기구에 접근해 볼 것도 제안해왔다.

**“가족 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 것”**

아동의 가족을 보존하고 재결합하게 하는 것은 난민 아동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 마련에 최우선 순위이며, 따라서 ‘출신 국 외부에 있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에 대한 대우’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6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더 이상의 분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이 그의 부모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CRC/GC/2005/6, para. 81)."

출신국에서 가족 재결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동이 비호 요청을 하거나 재정착을 하는 제3국이 가족 재결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제10조의 원칙들이 난민 아동의 가족 재결합에 해당되는데 특히 그 적용은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추적의 성공 여부는 대부분 난민 아동이 수용 국이 가지는 역량과 의무감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과제는 통합적 등록 및 추적 체계의 마련인데 이는 주로 국제 적십자사에 의해 관리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족 재결합을 보장하고 이행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인 틀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남아프리카, CRC/C/15/Add.122, para. 35)."

많은 난민 아동들은 신속한 진행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호 요청자들, 특히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게 비호 절차와 아동의 문서 소지 중요성에 대해 효과적 대중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여 알리도록 권고한다. 모든 아동들이 출생증명서를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분실한 신분증과 여행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적절한 과정을 지원하여 난민 아동과 비호 요청 아동이 증명서를 소지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다(키르기스스탄 CRC/C/15/Add.127, para. 54)."

키르기스스탄의 두 번째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위원회는,

"위원회는 당사국의 어떤 관례로 인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문서를 소지할 수 없다는 점에 우려한다(키르기스스탄, CRC/C/15/Add.244, para. 57)."

그러나 가족 재결합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아동이 자신의 가족과 재결합 되지 않기를 원할 수 있으며 또는 가족이 아동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제9조에서 인정하듯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예외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인권 이사회는 일반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당사국이 본국 송환, 추방, 강제 송환으로 돌려보내질 때 개인을 위험한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보고서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인권위원회, 일반논평 No.20, 1992, HRI/GEN/1/Rev.8. para. 9, p.191).”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 행위가 부적절하게 비밀을 폭로하면서 본의 아니게 아동이나 그 가족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가족이 재결합되었을 때, 사회 복지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오랜 기간 보지 못했고 그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외상적 경험을 겪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나 다른 가족 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이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빼앗긴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보호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난민 및 비호 요청 아동이 가정환경을 빼앗긴 여타 아동과 마찬가지로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제20조는 이러한 아동들이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이들이 가능한 한 가족구성원이 그들을 돌볼 수 없다면, 가족에 기반 한 차선적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난민 아동들은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했다고” 정의 되는데 당사국은 아동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게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난민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광범위한데 그들이 안전하고 익숙한 거주 가능한 환경에서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거주하며, 문화적 언어적 배

경이 존중되고, 교육에 접근 가능하며, 아동이 겪었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학대에 대한 반응을 포함해 아동의 감정적 요구가 인식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조(비차별)와 제12조(아동의 견해 존중)의 일반적 원칙들은 언제나 고려되어야 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난민아동: 보호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더 실질적 조언을 제공한다.

## 국적

제7조는 모든 아동이 “국적 취득 권”을 부여 받았음을 알리며 당사국들에게 특히 “아동이 무국적이 되는 경우”의 중요성을 상기 시킨다(제7조). 일반적으로 아동을 포함한 난민의 피난은 본인의 국적 지위와 무관하다. 그러나 종종 난민들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고 비호 국에서 태어난 난민 아동은 (출생지에 따라 국적이 부여되는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의 국적을 얻지 못하며 또한 아동의 부모가 피난해 온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칠레나 레바논과 같은 국가들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칠레에서 입법의 부재로 아동이 무국적으로 남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칠레, CRC/C/15/Add.173, para.47)."*

*"위원회는 난민 아동을 보호할 법률적 혹은 행정적 제도의 부재에 우려를 표한다. 여기에는 남성만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레바논, CRC/C/15/Add.169, para.52)."*

위의 사항은 레바논이 세 번째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도 여전히 우려점으로 남아 있었다.

## 청소년 난민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항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어린 아동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욕구는 적절한 영양섭취 및 건강관리와 지원임이 명백하다. 청소년, 특히 아동기와 성숙기의 중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욕구는 아동기 보다 덜 드러나긴 하지만 똑같이 중요하다.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청소년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가족을 부양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 더욱이 이들은 어린 아동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다. 정규교육에 대한 접근, 직업 훈련과 수입 창출 기회들은 청소년이 생활 기술을 발달시키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와 역량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다. 이러한 활동의 예로는 아제르바이잔의 직업 기술 훈련 프로그램, 부르키나파소의 소규모 사업 관리 프로젝트, 귀환한 청소년이 토지와 주택(house kit)을 제공받고 집을 세우도록 원조 받는 부르나이의 귀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얀마에서는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이 자조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이 제공된다.

(요약 노트 - 난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전략 및 활동, 2000년 9월)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22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책임 있는 부처와 기관을 규명 및 조정(제22조는 사법, 외교, 국내, 사회 복지, 건강, 사회 안보 및 교육부와 관련됨.)
- 관련 있는 비정부 기구/시민 사회 파트너 규명
- 사법권이 미치는 모든 아동들을 위해 모든 법령, 정책 및 이행이 조항과 양립하도록 종합적 검토

###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어디에서 목표와 과정의 지표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가?
- 아동 권리에 이바지하는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다른 관련 국제 기준을 인지하는가?
- 필요한 국제 협력을 취하는가?

(이러한 조치들은 협약 전체의 실행을 위한 전반적 정부 차원의 전략 일부가 될 수 있다.)

### 예산 분석 및 필요한 자원 배분

-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체계의 개발
- 성인과 아동 사이에 제22조의 함의에 대한 광범위한 인지
- 적절한 훈련 개발 및 인식 재고 (제22조와 관련해 사회 복지사, 교사, 항구 및 국경 관리 사무관, 변호사, 통역사, 아동 발달 전문가, 정신 건강 담당자 및 아동 옹호자들의 훈련 포함)

### ● 제22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국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에서 개정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을 비준하였는가?
- 국가가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1954)과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1961)을 비준하였는가?
- 국가가 비호 국에 난민 아동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는가?
- 국가가 난민 지위 부여를 위한 절차(필요할 때 유엔난민고등판무관



- 실이 결정하도록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를 포함하여)를 세웠는가?
- 아동이 그들의 연령과 동반이나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
  - 난민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동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며 특히 아동이 법적 혹은 관습적 일차 보호자로부터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되었을 때에도 적용되는가?
  - 면담이나 심문이 아동에게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가?
  - 아동의 견해가 이 과정에서 반영되었는가?
-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비호 신청 아동들이
- 법적 대리인을 지정 받았는가?
  - 보호자를 지정 받았는가?
  - 전문 통역사를 지정 받았는가?
  - 아동 발달 분야에 경험 있는 의사결정자를 지정 받았는가?
  - 본인의 난민 지위 요청에 대해 유리하게 받아들여졌는가?
- 가족 재결합 위한 과정에서 난민 아동 또는 그 가족들이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한 절차로 대우 받았는가?
  - 수용 국에 남아 있는 것이 난민 지위 부여가 거절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들의 최선의 이익일 때 그렇게 하도록 허락되었는가?
  - 난민 아동이나 난민 지위 요청 아동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적절하고, 협약에서 보장하는 그들의 권리에 적합한 특별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받았는가?
  - 난민 지위 부여가 거절되었으나 해당국에 체류하는 것이 허락된 아동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 받은 아동과 같은 지원 및 시설 이용의 자격이 주어지는가?
  - 이러한 아동이 이러한 권리에 대해 그들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 받는가?
  - 이러한 아동이 그들의 자유를 제한 받을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그러한가?
  - 아동들이 공정한 심문을 통해 이러한 자유 박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 구금 조건이 인도적이며 아동의 건강, 자존, 존엄,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방향인가?
- 난민 아동 및 비호 요청 아동이
- 가능한 그들의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환경에서 생

활하는가?

- 그들의 문화, 언어, 사회 통합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가?
- 그들이 겪은 정신적 외상에 대해 적절한 지원과 사회 복귀 서비스를 제공 받는가?
- 필요한 모든 건강 지원을 제공 받는가?
- 청소년 난민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항들이 고려되는가? (예, 그들의 자족을 돕는 기술 개발)
- 국가가 난민 및 비호 요청 아동과 관련해 국제연합과 협력하거나 특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나 국제적십자사와 협력하는 비정부기구나 정부 간 기구에 협조하는가?
- 아동의 가족을 추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이 기울여지는가?
-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아동과 그 가족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가?

### ● 주의사항

협약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협약의 모든 조항들은 상호의존 한다. 협약 제22조 역시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 일반원칙

제2조: 관할권 안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가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생명에 관한 권리 및 최대한도의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장

제12조: 아동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 존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진술할 기회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22조와 특별히 관련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아동의 국적 취득 권 과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

제8조: 아동의 신분 회복

제9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비분리

제10조: 국제적 가족 재결합

제16조: 사생활, 가족, 가정에 대한 자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

제20조: 가정 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제21조: 입양

제30조: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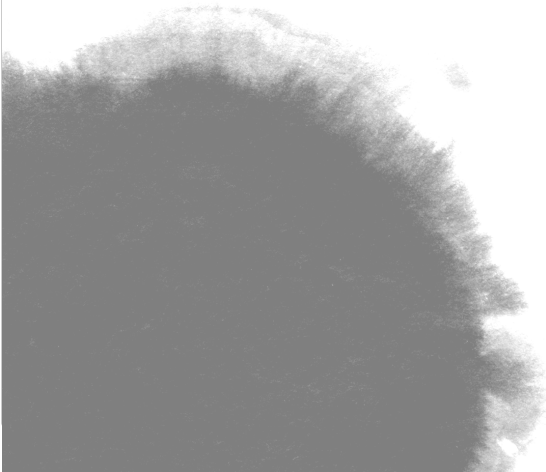
제37조: 최후의 수단으로서 자유의 박탈

제38조: 무력 분쟁에 관련된 아동

제39조: 희생된 아동을 위한 회복 조치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제23조 장애인동의 권리





## 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a mentally or physically disabled child should enjoy a full and decent life, in conditions which ensure dignity, promote self-reliance and facilitate the child'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2.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disabled child to special care and shall encourage and ensure the extension,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to the eligible child and those responsible for his or her care, of assistance for which application is made and which is appropriate to the child's condition an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3. Recognizing the special needs of a disabled child, assistance exten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whenever possible,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and shall b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disabled child has effective access to and receives education, training, health care services, rehabilitation services, preparation for employment and recreation opportunities in a manner conducive to the child's achieving the fullest possible social integration and individual development, including his or her cultural and spiritual development.
4.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in the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xchange of appropriate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reventive health care and of medical, psychological and functional treatment of disabled children, including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information concerning methods of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vocational services, with the aim of enabling States Partie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and skills and to widen their experience in these area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1. 당사국은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 받고, 자립심을 키우며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가 용이한 조건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의 권리를 인지하고, 가능한 수단을 통해, 대상아동과 아동 치료의 책임자에게, 신청이 이뤄지고 아동의 상태와 부모 혹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의 환경에 적합한 원조의 확장을 고양하고 확실히 해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인정하면서, 위 두 번째 단락에서 다룬 확대된 조력 정책은 아이의 부모나 그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가능한 한 언제나, 무료로 지원할 것이며, 이 정책은 장애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취업 준비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제공받도록 설계되어 어느 정도는 아동의 최대한으로 가능한 사회적 통합과 아동의 문화적 정신적 계발을 포함한, 자기 계발의 성취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다.
  4. 당사국은, 국제적 협력 정신에 입각하여, 예방적 건강관리 분야와 장애아동의 의학, 심리학, 기능적 치료에 관한 분야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해야 하는데, 재사회화, 교육과 직업서비스의 보급과 정보를 포함하며, 그들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이 분야에서의 경험치를 넓히기 위해, 가능한 당사국의 목적과 부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요구에 대한 특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요약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에 제시된 모든 권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2번째 조항에서는, 차별을 위한 분야의 독점적이지 않은(공개적인) 리스트 가운데, 아동이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장애를 포함한다. 23조에서는 장애 아동들의 권리를 이해하는데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장애아동들은 “자립심을 키우고”, “커뮤니티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 받아야 한다. 2번째와 3번째 문단에서는 장애 아동들의 “특별한 치료”에 관한 권리를 제시하며, 원조는 여러 가지 서비스 “어느 정도는 아동의 최대한으로 가능한 사회적 통합과 자기개발 등”의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4번째 문단은 국제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국가들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을 조성하고 있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협정을 채택하였다.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장애인의 기회평등을 위한 표준 규정이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재확인한 최소의 세부적 규정이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1997년에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토론의 날을 개최하여 자세한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 2006년에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9번을 제정하였다. 이 조항은 5억에서 6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장애를 가졌고 이는 세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며 그 중 1억 5천만 명이 아이들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UN의 평가서를 인용하였다.

## 장애아동 인권의 인지

### 배경

2006년 12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정 채택은 인권의 동등한 소유자로서의 장애



인의 충분하고 명백한 인식을 확인시켜준 오랜 투쟁의 결과였다. 인권과 관련한 국제법에서 장애에 대한 유일한 조항은 세계인권선언 25장이며, 이 조항은 모든 인간은 실업, 질병, 장애, 미망인, 노화 또는 그 밖의 인간의 통제하의 환경에서의 생계의 어려움 등에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인지된다. 시민,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과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는 장애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 유엔총회는 정신 지체인의 권리 선언(1971년 12월 20일)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선언(1975년 12월 9일)을 채택하였는데, 장애인도 다른 인간과 같이 동등한 사회적 정치적인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1981년은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주제 아래 국제적인 장애인의 해가 되었다. 1982년에 총회는 장애인을 위한 세계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하였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세계 5억이 넘는 사람들이 정신, 육체, 감각기관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겪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들은 너무나 자주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 사회적 장애물에 의해 완전한 사회적 참여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 수많은 아동과 성인은 종종 차별받고 뒤떨어진 삶에 직면한다.”

유엔 인권위원회 내의 인권향상과 보호에 대한 분과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광범위한 인권을 누리는 데 있어 장애인이 당면한 어려움과 그들이 그들의 그러한 불만을 실행하기 위한 권력과 더불어 충분히 보호받는 몸체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권고를 채택하였다(결의안 1982/1). 1984년에는 인권과 장애에 관한 특별 보고관이 임명되었다. 그에 의해 1991년에 작성된 최종 보고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10명 중 1명은 육체적, 정신적, 혹은 감각기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전체인구의 25%의 사람들은 장애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사회 통합과 참여를 막는 육체적, 사회적 걸림돌로 인해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그 결과 전세계의 수백만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그들의

인권을 박탈당하고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다 (E/CN.4/Sub2/1991/32, para. 3).

1987년, 스톡홀름에서 이루어진 장애인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고 모임은 유엔총회가 10년 안에 장애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를 위한 협정 기준을 위해 특별한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한 초안은 이탈리아에 의해 작성되었고 1987년 총회에 발표하였다. 1989년에 몇 번의 프레젠테이션이 더 이루어졌으나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많은 대표자들은 그 당시 인권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총회에서의 이러한 논쟁에 뒤따라, 경제 사회 위원회는 1990년 이들의 첫 정기회의에서 다른 종류의 국제적 방법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사회개발 위원회는 전문 기관들과 그 밖의 정부 간 조직들, 비정부 기구들, 특별히 장애인 조직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표준 규칙을 정교히 할 특별한 제한 없는 정부 전문기관 설립을 허가하였다.

장애인들의 평등 기회 부여에 관한 표준 규칙이 1993년 12월 20일 48번째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결의안 48/96). 이 규칙의 서문은 이 규칙들이 10년간의 유엔 장애인의 기간 동안 얻어진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세계 장애인에 관한 행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들이 이루어진 국제 인권 법안은 장애인들의 평등 기회 부여에 관한 규칙들의 정치적, 도덕적 기반이 되고 있다.”

1994년에 있었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장애인에 관한 장황한 일반논평은 규칙의 중요함과 또한 장애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끌어내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의 명백한 장애관련 조항의 부재는 25년 전 규약 초안에 이 이슈에 관한 암시적 조항만 두었을 뿐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 주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최근의 국제 인권 관련 기구들은 이

주제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기구들은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제23조)과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제18조 4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국 협약에 대한 부가적 프로토콜(제18조)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인권이 특별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법률, 정치, 계획에 의해 지켜져야 하고 촉진시켜져야 한다는 견해가 현재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5, HRI/GEN/1/Rev.8, para. 6, p.26).

하지만 협약을 위한 제안은 계속해서 지지되고 있으며, 2001년 12월 19일 56/168결의안에서 총회는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장애인 권리와 존엄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국제협약을 위한 제안들을 다루기 위한 이 위원회는 사회 발전, 인권과 비차별에 관한 포괄적인 시각에 근거하며, 인권위원회와 사회개발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다.” 특별위원회는 2006년에 그 임무를 완성하였고, 2006년 12월에 협약이 채택되었으며, 2007년 3월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협약은 20개국에 의해 비준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2006년 9월의 인권 위원회에 대한 성명서에서, 사회개발위원회의 장애에 관한 특별 기록관은 협약의 채택은 장애인과 그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위한 투쟁의 시대를 종결시켰으며, 이때는 “인권이 도덕적인 의무 뿐 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로써, 가입국이 맡길 수 있는 강력하고 법적인 규제 장치를 통한 보호를 요구받았을 경우였다.”(특별보고관이라는 직책은 1994년 표준 규칙 실행을 모니터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2년 보고서에서는 특별보고관이 표준규칙에 추가항목을 제안하였는데(E/CN./2002/4, Annex), 이는 사회개발위원회에 대한 이전 보고서에서 발견된 몇몇 지역의 본문에서의 내용을 완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E/CN.5/2000/3, annex). 이 부분들은 성차별, 주거와 의사소통 문제, 아이들과 노인의 요구,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의 요구, 빈곤한 환경하의 장애인의 요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특별보고관의 관점에서, 협약이 법적 문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반면, 추가항목과 더불어 표준규칙은 “본문과 협약의 정신을 실행시킬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E/CN.5/200/5).” 2006년의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가입국의 표준규칙 실행에 관한 자세한 설문 응답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 3월부터, 장애에 관한 유엔 프로그램은 장애인 인권 협약 사무국에 통합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유엔 조직 안에서 앞서가는 프로그램이며, 사회 정책부와 경제 사회 유엔 사무국에서 관여하고 있다. 사무국의 주요 목표는 사회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며, 취업, 교육, 정보, 상품,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 장애인 권리에 대한 협약

이 협약의 목적은 제1조에 명시되었듯이,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이 완전하고 평등하게 모든 인권의 향유와 기본적인 자유를 촉진하고 보호하며 확신시키기 위함이다. 미합중국 헌법 전문은 장애아동들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평등하게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누리며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신장하기 위함이다.” 서문에서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함께 동등한 조건하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가져야 함을 명시하고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가입국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관련 의무들을 상기시켰다. 제7조는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가입국에게 요구한 서문을 반영한다.

이 협약은 특별히 아동을 언급하는 많은 조항을 포함한다. 그중 몇몇 조항은 단순히 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을 반영하는데, 예를 들면 장애아동 발달능력의 존중을 위한 언급(제3조(h)), 최선 이익 원칙과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주어진 적당한 무게감을 가지기 위한 권리(제7조 2항, 3항)이다. 다른 조항에선 보다 더 나아가, 예를 들면 모든 계층에서 포괄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제24조),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아동이나 부모 중 한사람, 혹은 부모 모두의 장애를 이유로 아동과 그 부모가 분리되지 않아야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제23조 4항), 자세한 의무사항을 명시하였다. 아동권리협약 제41조는 협약에는, 아동의 권리 인지의 실현에 더욱 도움이 되고, 가입국에 의해 비준된 다른 법적 장치에도 포함된 어떤 조항도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의 실행을 감시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협약의 선택적 프로토콜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협약 위반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의 호소를 받아 다루는 위원회의 권한을 가입국이 인지하도록 하였다 (전체 본문은 [www.ohchr.org/english/law/](http://www.ohchr.org/english/law/) 참조).

## 아동권리와 장애인권리 협약

이 요약은 이 협약의 목적, 정의, 원리를 포함하며, 특별히 장애아동의 권리와 관련 있는 조항을 나타낸다.; 이 요약은 협약의 전체적인 요약이 아니다. (전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www.ohchr.org/english/law/disabilities-convention.htm](http://www.ohchr.org/english/law/disabilities-convention.htm). 참조)

협약에 관한 전문은 장애가 발달된 개념임을 명시한다: 장애는 신체적 손상을 지닌 사람과 태도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막는 환경적인 장벽의 결과이다. 전문은 또한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기초 하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누려야 함을 인지하였고, 아동권리협약에 의거, 가입국에 의해 지켜져 왔던 의무들을 상기시킨다.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누리는 것을 신장시키고 보호하며 확실히 하는데 있다." 협약에서는 "장애"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장애인은 오랜 기간 동안의 육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지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장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위치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협약은 "장애에 기초한 차별"을 "다른 사람과의 동등한 기초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혹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지나 향유 활동을 손상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장애의 기본조건에서 어떤 식으로든 구분되거나 제외, 제한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수용"의 거부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하에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나 활동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인상적인 불균형이나 부당한 짐이 아니라, 필요와 적합한 제한과 조절로써 정의한다(제2조항).

협약은 또한 "보편적 디자인"이라는 관련 개념을 정의하는데, 이 개념은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특별한 수정이나 조절이 필요 없이 모든 사람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상품,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의 디자인을 뜻한다. 그리고 "보편적

디자인"이 필요한 곳에서 장애인의 특별한 그룹을 위한 원조 기구가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한다(제2조항). 이 개념은 제 4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가입국은 "국가들은 차별에 기초를 둔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의무를 가졌다고 언급한다. 제 4조항은 가입국의 의무들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는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가능한 조절과 최소한의 경비가 요구되어야 하는, 보편적으로 디자인된 상품, 서비스, 장치, 설비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거나 촉진시키는 것이며 그들의 가능성과 사용을 촉진시키고, 표준과 지침의 개발에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

협약의 원칙(제3조항)은 다음과 같다.:

- (a) "존엄성과 자신의 고유한 결정에 대한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가치,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존중;
- (b) 비차별;
-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진입과 참여
- (d)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종의 다양성과 인류애의 일부로서 장애인용인;
- (e) 기회의 평등;
- (f) 접근성;
- (g)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
- (h) 장애아동들의 성장 능력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자아형성을 위해 장애아동들의 권리의 존중"

당사국의 일반적인 의무는, 4항에 명시되었듯이, 그들의 대표기구를 통해, 협약의 실행과 다른 장애인과 관련된 주제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과의 밀접한 상담과 적극적인 필요를 포함한다.

제5항에서는 당사국이 "장애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에게 모든 종류의 차별에 대항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평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당사국은 "합리적인 수용"의 제공을 확산시키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실상의 평등을 가속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방법은 차별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제7조항은 구체적으로 장애아동을 주목한다:

1. 당사국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권리를 보자하고,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장애와 적합한 자원을 제공한다.

제8조항에서는 인식 확장의 일환으로 당사국은 “어린 나이의 아동부터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권리의 존중에 대한 태도를 키워주는” 것을 포함한 방법들을 수용할 의무가 있다. 제 16조항은 “장애인들을 가정의 안과 밖 모두에서, 모든 종류의 착취, 폭력, 학대와 성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적합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혹은 장애인을 보호할 다른 조치들”을 요구한다. 보호 서비스는 나이, 성, 장애의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초점을 둔 입법과 정책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착취와 폭력, 학대의 사례가 확인되고, 조사되고 적절한 경우 기소될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효과적인 입법과 정책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제18조 2항은 장애아동이 그들의 출생 즉시 등록되어 출생부터 그들의 이름에 대한 권리, 국적에 대한 권리와, 가능한 한 알 권리와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제23조항 아래, 당사국은 다음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결혼, 가족, 부모자식 관계,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앨 효과적이고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 (a) 장애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혼 적령기의 모든 장애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 (b) 장애인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수와 나이 터울을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와 출산 및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접근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권리들을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제공된다.
- (c)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임신 능력을 유지한다.

추가로, “당사국은 보호자, 후견인, 신탁, 아동 입양 혹은 이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이러한 개념이 국내법으로 명시된 곳에서 장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권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아이들을 양육 책임을 실행 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족생활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권리를 실현시키고, 장애아동들의 은폐, 방치, 소외, 차별을 막기 위한 관점에서,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초기에 포괄적인 정보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법정의 재판결과를 기다리면서 아이들의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관련

법을 혹은 과정상, 이러한 분리가 아동에게 최선이어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나 부모 개인, 혹은 부모 모두의 장애라는 조건 아래 아동은 부모와 분리 될 수 없다.

“당사국은 육친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도 불가능할 경우, 공동체 안에서 가족적인 분위기 아래 돌보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 2~25항)

장애인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바탕으로, 당사국은 “모든 단계의 교육과정에 포괄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 제24조항은 당사국이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장애아동들이 장애를 이유로 무상이고 의무적인 교육이나 중등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포괄적,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요구에 대한 합리적 수용이 이뤄진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 시스템 안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제24조항은 또한 그들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가능하게 할 생활과 사회 개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조치의 건설적인 명단을 제시했다.(제28조항).

제25조항아래서, 장애인들은 장애에 대한 차별 없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지닌다. 당사국은 특별한 방법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장애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범위, 질, 무상이거나 감당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프로그램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공하는 것이며 산부인과와 인구에 기반 한 공공 건강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들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하게 장애인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서비스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장애의 진행을 최소화하거나 막는 조치를 포함 하며 아동과 노인을 포함한다...”

제26조항 아래서, 당사국은 또한 장애인으로 하여금 최대의 독립심,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과 삶의 모든 방면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에는 동료의 지지를 통한 방법을 포함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당사국은 “특별히 건강, 직업, 교육과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포괄적인 사회복귀와 재사회복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강화, 확대할 것이 요구된다...”

제28조항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의식주에 관한 적당한 삶의 수준 보장, 지속적인 생활 조건의 향상에 대한 권리와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였는데, 두 경우 모두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 안된다.



제30조항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그들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그들 취미로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화와 귀머거리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별한 문화와 언어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지지를 위해 부여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오락, 여가,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당사국은 최대한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장애인 특화 스포츠와 오락 활동을 조직, 발전시키고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의 주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아동들이 학교 조직을 포함하여 놀이, 오락, 여가와 스포츠 활동에서 다른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 “장애아동 권리” 에 대한 일반논평

2006년, 아동권리 위원회는 “장애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No.9를 채택했다. 그 목적은 당사국에게 “협약의 모든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장애아동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 권고는 협약의 제2조항 (비차별)과 제23조항 (요약을 위해서 앞의 박스 안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은 [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 참조)에 기재된 의무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9번은 당사국이 받아들인 이행의 일반적인 방법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에 주목한다. 그리고 장애아동들을 위하여 모든 다른 조항의 의미와 실행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일반 권고는 “장애아동의 권리” 위원회의 실무급 회담에 따라 채택된 권고가 발의된 것이다(제16회기 보고서, 1997. 9, 10, CRC/C/69, paras. 338, 339).

위원회에서는 장애 문제를 다른 두 일반논평에서도 언급하였다. “유아기 아동권리 실행”에 관한 일반논평 No.7에서, 위원회는 이시기에 장애가 일반적으로 확인 되며, 아동의 행복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인식된다고 말한다.

*“어린 아이들은 단지 장애를 근거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교육과 공동체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 우선이며, 이에 그들의 권리 인지를 방해하는 장벽의 제거를 통한 것을 포함한다. 어린 장애아동들은, 그들의 부모나(혹은 조력자)의 도움을 포함하여, 적합한 전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장애아동의 존엄성은 항상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독립심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6, CRC/C/IGC/7/Rev.1, para. 36(d))."

아동권리 협약 상의 청소년 건강과 성장'에 대한 일반권고 No.4에서, 위원회는 장애 청소년들의 교육, 건강의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장애청소년들의 특별한 권리는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청소년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도움이 주어져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정규학교에서 가능한 경우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지해야 한다.."

"제23조항에서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혹은 동시에 두 장애를 모두 가진 청소년들은 최대한 가능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기준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당사국은 장애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다음을 해야 한다.

- (a) 장애 청소년들에게 의료 시설,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의 용이함과 접근의 가능함과 더불어, 그러한 시설과 서비스가 그들의 독립심과 활발한 공동체 활동 참여의 촉진을 보장해야 한다;
- (b) 이동, 사회생활 참여, 의사소통에 필요한 장치와 인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 (c) 장애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특별한 요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d) 장애 청소년들의 권리 실현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4, CRC/GC/2003/4, paras. 19, 35)."

2006년 9/10월의 43번째 회의를 포함하는 그간의 국가 보고서를 점검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은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일반 원칙과 1997년 총회의 날 다음에 채택된, 권고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최종의견서에서 제안하였다(아래 참고). 위원회는 다양한 국가관련 주제들을 제시하였는데, 이에는 국가 정책 혹은 전략의 부족, 부족한 정보 수집, 차별 제거를 위한 인식의 확대와 장애아동들의 교육과 정규 교육에의 참여에 대한 권리의 충족의 중요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국가에게 유엔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일반 원칙(총회 결의 문 48/96), 그리고 1997년 10월 6일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실무회의 (CRC/C/69 참조)를 통해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권고하였다.

- (a) 장애인에 관한 설문 완결;
- (b) 특별히 장애아동에 주의를 기울인, 장애인을 위한 국가 정책 혹은 전략의 개발과 채택에 대한 고려;
- (c) 지방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상호 제도적 계획의 작성을 고려하고, 교사, 학교 관계자, 부모, 아동, 그리고 사회의 전체적인 협동의 강화;
- (d) 모든 장애아동에게 사회 서비스와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이에 는 공동체에 기반 한 원조와 서비스, 물리적 환경,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되며, 서비스 규정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의 지속;
- (e) 특별히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 아동들을 고려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품, 훈련 받은 스태프, 여러 다른 시설들을 위한 자원 할당
- (f)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 더 나아가 정규 교육 제도와 사회의 참여를 돕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 제공
- (g) 장애 아동에 관한 제대로 된 통계적 자료의 수집과, 그 자료를, 특별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주의를 기울인, 평등한 권리 신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발 정책,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
- (h) 공동체를 통해 장애아동에 관한 인식을 확장시키고 유아 살해와 같은 전통적인 관습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들을 제공 한다(베냉, CRC/C/BEN/CO/2, para. 50)."

## 장애아동의 권리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요약

이 일반 논평의 목적은 장애아동 권리의 당사국에게 지침과 원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정치적 의지의 창출과 장애의 발생 연구와 장애 예방의 효과적 실행 조치의 위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아동이 협약에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데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과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장벽은 장애 때문이 아니라, 장애아동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신체적 장벽의 결합 때문임을 강조한다. 실행을 위한 전략으로, 이러한 장벽을 없애는 실행이 필요한 것이다.

제2조와 23조: 첫 번째로 일반논평은 제2조와 제23조의 주요 조항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제 2조에 관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안 한다:

- 헌법 그리고/또는 특정한 비차별 법안에 차별로 언급되지 않아야 될 내용으로써 장애를 포함시킬 것.
- 장애아동의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 아동, 그들의 부모 그리고/ 또는 아동의 다른 양육자가 이용하기 쉽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 할 것.
- 차별을 제거하고 막기 위해 특정 전문가 집단과 대중과 함께, 인식을 고양하고 교육적 캠페인을 이끌 것.

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장애 여아들에게 특별한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23조의 1단락 - 존엄, 독립독행(자기의존)의 조장과 공동체에서 활동적인 참여의 촉진을 보장하는 조건 안에서 전체적이고 적절한 삶의 향유 보장-은 장애아동을 위한 협약 이행의 “주요 원칙”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보건과 교육에서 명백한 목적으로 지역 사회 내에 장애아동을 포함시키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실행계획의 보편적 정책을 발전시켜 효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것은 차별 없는 협약의 완전한 향유가 목적이 되어야 하며, 또한 장애아동과 그/그녀의 부모님이나 다른 양육자가 가능한 언제든지 무료로, 그들이 원하는 특별한 보호와 조력을 받는 것을 보장해야한다. 제 23조의 2와 3조항을 참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은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조력, 차별을 없애기 위한 최대한도의 가용자원, 최대한도의 포함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교육의 효과적인 평가, 훈련, 건강관리와 회복, 기회의 창출과 향유 준비를 위한 특별한 보호와 조력을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4조항에 관하여, 위원회는 더욱 활동적인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보 교환을 주장한다. 또한 당사국은 쌍방적이거나 다각적인 성장 원조의 구조 내에서 장애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이행의 일반 조치:** 위원회는 장애 아동의 특별한 권리의 실행과 보호를 위한 명백하고 뚜렷한 입법 조항의 필요성과, 측정 가능한 결과로 장애아동을 위한 계획과 전략이 국내 계획의 실행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동의 권리를 위한 광범위한 연합 체계나 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연합 체제의 일부로써, 장애아동을 위한 연합체가 있어야 한다. 당사국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엄격한 지침과 더불어, 충분한 자원이 장애아동에게 할당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당사국의 궁극적인 책임이다. 정보 수집은 장애아동의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독립적 모니터링을 위한 필요에 대하여, 위원회는 일반 논평 2의 “국제 인권 기구의 역할”을 언급하며, 기구는 신체적 감각뿐만 아니라, 이 아동이 불만이나 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에 대한 접근이 용의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장애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들에 협력하고 지원해야한다. 협약의 42조항을 참조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고양하기 위해, 조직적인 인식의 향상과 점자법(Braille)과 적절한 형식을 포함한 훈련과 미디어의 사용을 수행해야 한다.

#### **협약의 다른 권리**

일반 논평은 보고서 확인을 위해, 조항의 집단을 사용하여 아동권리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의 장애아동의 권리를 재고한다. 실행안내서에서, 일반 논평의 이행은 각 관련 조항 하에 다루어졌다.

#### **일반적 원칙:**

- 비차별, 조항 8-10;
- 아동의 최선의 이익, 조항 29와 30;
- 생명을 위한 권리, 생존과 발달, 조항 31;
-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조항 32와 33.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일반적, 조항 34;
- 출생등록, 조항 35-36;
- 적절한 정보와 대중매체의 접근, 조항 37과 38;
- 대중교통수단과 시설 접근용이성, 조항 39와 40;
- 가정환경과 대안적 보호:
- 가족 지지와 부모적 의무, 조항 41;
- 폭력, 학대와 방임, 조항 42-44;
- 가족-유형의 대안적 보호, 조항 45와 46;
- 기관, 조항 47-49;
- 배치의 정기적 검토, 조항 50;

**기초적 건강과 복지:**

건강에 대한 권리, 조항 51과 52;  
 예방, 조항 53-55;  
 조기 발견, 56-57;  
 여러 분야에 걸친 보호, 조항 58;  
 청소년 건강과 발달, 조항 59와 60;  
 조사, 조항 61;

**교육과 여가:**

질적인 교육, 조항 62와 63;  
 자기-존중감과 자립심, 조항 64;  
 학교체계내의 교육, 조항 65;  
 포괄적 교육, 조항 66과 67;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 조항 68과 69;  
 레크리에이션과 문화적 활동, 조항 70과 71;  
 스포츠, 조항 72.

**특별 보호 조치**

소년 사법 체계, 조항 73과 74;  
 경제적 착취, 조항 75;  
 거리 아동, 조항 76;  
 성적 착취, 조항 77;  
 무력 충돌의 아동, 조항 78;  
 피난자와 이주민 아동, 소수에 속한 아동, 토착 아동, 조항 79와 80.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장애아동 권리”, 2006, CRC/C/GC/9, 전문은 [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

*“위원회는 당사국이 UN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유념하여 (유엔 총회 결의 48/96 참조) 아래 권고들이 위원회의 장애아동 권리 일반토론의 날에 채택되었다(see CRC/C/69):*

- (a) 장애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예방과 금지와, 장애인 권리 원칙의 2000의 법률 제220번의 이행 내용에 따라, 그들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동등한 기회와 정책 제정과 국제 계획 과 관련된 모든 측면의 장애의 통합을 통한 동등한 권리의 보증;
- (b)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통계적 데이터의 수집과 사회 공동체내의 동등한 기

회 보장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해체된 데이터의 사용과 더불어, 낙후된 지역과, 팔레스타인 피난자 장애아동, 특히 소녀와 같은 매우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장애아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 (c)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사회 서비스와 건강 서비스, 물리적 환경과 정보와 의사소통을 이용 하도록 제공;
- (d) 공공 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의 장애아동의 모든 부분에서의 완전한 참여와 동등함이라는 원칙의 반영과 가능한 한 최대한 일반 학교 시스템에 장애아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확신시키고,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맞추어진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립;
- (e) 사회 공동체에 기초를 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도화에 대한 대안을 촉진하고, 장애아동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달시킬 것;
- (f) 장애 사무를 위한 국가 위원회의 조직화와 활동과 장애 쟁점 분야에서 비정부기구와의 협조 강화 ;
- (g) 다른 기구들, UNICEF와 WHO와의 기술 협력의 추구(레바논, LBN/CO/3, para. 51).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에 일치되는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 채택;
- (b) 장애아동들의 요구에 일치하고 완전히 가능한 사회적 통합과 개인 발전에 대한 아동의 성취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과 일반학교의 교사를 포함한, 장애아동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 감독과 훈련의 방법으로, 주류 교육 기관에서 바람직하게, 장애아동의 유아기 교육과 초중등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 (c) 지역 사회에 기초한 사회복귀 프로그램과 가정 기반 관리를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제도화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할 것;
- (d)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에 대한 투쟁 뿐 만 아니라 장애아동 권리의 신장과 가족 보호와 교육을 포함하여 예방에 초점 맞춰진 의식 고취 캠페인의 착수;
- (e) 장애 아동이 학교와 다른 시설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물리적

### 장벽의 제거.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게 장애아동과 관련된 현존하는 정책과 수행을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유엔의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일반원칙(General Assembly resolution 28/96)과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 토의에서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권고들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다(리트비아, CRC/C/LVA/CO/2, paras. 40, 41)."

## “장애”의 정의

아동권리 위원회가 경우에 따라 장애에 대한 “협약”의 정의를 비판했음에도(중국, CRC/C/CHN/Co/2, paras. 60, 61), 그 또한 스스로 정의하려는 시도를 피해왔다. 이것은 일반논평 No.9에 정확한 통계를 얻는 데 장애가 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 장애에 대한 널리 용인된 명확한 정의의 부족.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보호와 그들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장애 아동의 포괄을 보장하는 적절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 19)."

이 일반논평은 또한 장애인권 협약 1조와 다르지 않는 정의를 인용(7항)한다; “장애인은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손상은 다양한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기반에서는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려움이 있고, 지역사회 효과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의 승인을 위한 서문은 “장애는 변화되는 개념이고, 장애는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초래되는 태도적,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결과이며, 이것이 그들이 동등한 기반에서 효과적으로 완전히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된다.”

표준규칙(The Standard Rules)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애’라는 용어는 세계 여러 나라에 따라,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다른 기능적 제한들을 요약한 것이다. 사람들은 아마도 신체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되었거나, 의학적 상태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손상은 상태나 질병이 원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것이다(서론, 17항).”



##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의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의 정의(p.324 박스 참조)다른 협약의 정의를 반영한다(제2조): “어떠한 차별, 장애라는 이유로 제외나 제약, 소외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동등함을 기초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본적 자유와 다른 어떤 영역에서의 모든 인권의 실행이나 향유를 파기하는 것...”

일반논평 No.9의 “장애아동의 권리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을 주목한다.

*“... 장애아동의 발달과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은 발생된다 - 사실상 빈번히 현존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차별과 낙인은 그들을 사회적 주류에서 소외시키고 제외하며, 폭력의 형태로 발달과 생존을 위협하기조차 할 것이다. 서비스 조항의 차별은 그들을 교육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질적인 건강과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 적절한 교육과 직업 훈련의 결핍은 미래의 그들이 직업을 얻기 힘들게 함으로써 차별을 일으킨다. 사회적 낙인, 두려움, 괴양보호, 부정적인 태도, 잘못된 믿음과 일반적인 편견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 이는 장애아동의 무시와 소외를 이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 8).”*

위원회는 장애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고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별을 금하는 근간으로써, 장애 비차별에 대한 헌법 조항을 분명히 포함하고/ 또는 장애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나 법률조항에 차별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금지를 포함하라; 장애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라, 이것은 장애아동과 그들의 부모 또는 다른 양육자가 이용하기 쉬워야 한다; 장애아동에게 행해지는 차별의 제거와 예방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 그룹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인식증진 및 교육 캠페인을 하라(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 9).”*

위원회는 장애 여아에 대한 차별에 추가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들은

*“... 그들은 성차별로 인해 사회 내에서 차별에 대해 더욱 취약해지기도 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장애여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리고 추가적인 요구 때, 그들이 잘 보호받고,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여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받았다(CRC/C/GC/9, para. 10)."

위원회는 국가의 보고서 심의 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명시하였다. 다음은 일반적인 중요성이다. 예컨대;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과 당사국의 직, 간접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국가 복지 조치를 통한 장애아동들의 지원에 대한 노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존속하는 실제적인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어 공공건물, 정부 서비스와 대중교통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동등한 권리는 위협에 빠지게 되고, 사회적 낙인, 두려움, 지역사회 내 강하게 남아있는 장애를 둘러싼 오해가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이끈다는 점을 강조한다(알제리, CRC/C/15/Add. 269, para. 53)."

그러나 위원회는 또한 국가 특유한 형태의 차별을 지적한다. 중국의 두 번째 보고서를 심의 할 때, 위원회는 "한아이 정책(one-child policy)"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두 번째 아이를 갖는 것이 허락되는데, 이는 장애아동에게 행해지는 차별을 촉진하는 것이다(중국, CRC/C/CHN/CO/2, para. 60).

위원회는 헝가리에게 장애아동과 장애인 부모를 가진 아동 모두에 대한 사회적 무시를 지적한다;

"위원회는 통합정책과 통합기구의 결여 그리고 장애인 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에 대해 염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한다; ...장애아동과 장애인 부모님을 가진 아동들의 사회적 소외와 배제를 막기 위한 노력을 더욱 촉구할 것을 권고한다(헝가리, CRC/C/HUN/CO/2, paras. 39, 40)."

## 장애의 원인

아동권리협약의 많은 조항들은 장애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고, 아동권리협약이행은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항은 무력분쟁에 참가하지 않도록 아동을 보호하고, 폭력과 다양한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데 관계가 있다. 6조(생명을 지키고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받을 권리)와 24조(건강과 건강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장애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할 뿐 만 아니라 장애를 예방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1991년의 ‘인권과 장애’ 특별보고관(rapporteur)의 최종 보고는 다음의 원인을 열거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보고관 정부와 비정부 출처로부터 얻은 응답에서 나타났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아동기 장애의 원인이다. “유전, 선천적 결함, 임신과 분만 기간 동안의 주의의 부족, 준비의 부족이나 무지의 원인, 건강에 좋지 못한 주거, 자연재해, 무지와 이용 가능한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부족 결과, 열악한 공중위생 그리고 위생건강, 선천적 질병, 영양실조, 교통사고, 일과 관련된 사고와 질병, 스포츠 사고, 이른바 ‘문명’ 질병(diseases of "civilization")(심장질환, 정신적 그리고 신경 장애, 어떤 화학물질의 사용, 음식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 직계가족 사이의 결혼, 가정 내에서의 사고, 호흡기 질환, 대사 질환(당뇨, 신장 질환 등), 약물, 알코올, 흡연, 고혈압, 고령, 사카스병(chagas' disease), 소아마비, 홍역 등.” 비정부 출처는 또한 환경과 관련된 요인, 공기와 물 오염, 일반적인 인도주의의 법과 인권의 침해 뿐 만 아니라 조난, 테러리스트 폭력, 계획적인 물리적 손상이 되는 특정 실험의 동의 없는 수행, 인간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보전을 위협하는 권위나 어떠한 위협의 수행의 요인을 특별한 강조점으로 놓았다(E/CN.4/Sub.2/1991/31, para. 109).

인권과 장애의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장애를 유발시키는 체벌과 또 다른 형태의 처벌행위를 언급 한다. 처벌로서의 절단(amputation); 장애인 시설수용화, 제도적인 학대, 약물의 사용 포함; 강제불임, 거세와 여성할례(생식기 절단); 그리고 구금의 대안으로 구류자 눈멀게 하기(E/CN.4/Sub.2/1001/31, para. 174). 이러한 모든 관

행은 신체적 장애 뿐 만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별 보고관은 또한 가족 내에서 또는 밖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학대를 받는 아동들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에서 매우 심각한 장애의 원인이다. 그들의 부모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때리는 것, 모욕하기, 굶욕, 학대로 아동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너무 심한 경우에 정신적 질병, 사회적 부적응, 학교나 일에서의 어려움, 성적 손상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E/CN.4/Sub.2/1991/31, 139항).”

협약의 여러 조항에서 강조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의 예방은 장애의 예방과 관계된다. 특히 19조(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 32조(경제적 착취), 34조(성적 착취), 36조(다른 형태의 착취) 그리고 37조(고문과 기타 잔인한,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

위원회의 일반논평 No.9의 “장애아동의 권리”는 또한 장애의 원인과 예방을 강조한다.

*“장애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예방도 여러 가지이다. 유전적 질병으로 야기된 장애는 사회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동족간의 혼인방지에 대한 대중적인 자각과 적절한 편견 테스트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전염병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많은 장애를 야기 시키고, 예방주사(면역) 프로그램은 모든 예방 가능한 전염병에 대한 보편적인 예방(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접근될 필요가 있다.”*

*“영양실조는 아동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비타민 A 결핍으로 야기되는 맹인과 같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태아기 보호를 알리고 강화해야 하며 출산 동안 적절한 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당사국은 적절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와 다른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아동 건강관리와 영양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캠페인을 펼칠 것을 권고한다. 이점에 있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WHO와 UNICEF, 다른 기관들과 함께 기술적인 도움을 얻고 협력을 지속 할 것을 권고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국내 도로교통 사고가 장애를 야기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며 이것을 막기 위해 안전벨트 법과 같은 정책이 확립되고 이행될 필요가 있다. 임신 중*

알코올 및 마약중독과 같은 생활양식 쟁점 또한 장애를 막을 수 있고, 일부 나라에서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암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공교육에서, 이러한 약물남용 임신부들을 위한 지원과 발견, 그리고 대중교육은 장애예방을 위한 조치의 일부이지만, 아동들 사이의 장애 발생을 막는 것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유해한 환경 독소는 또한 많은 장애를 유발하는데 기여한다. 납, 수은, 석면 등과 같은 독소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자국은 유해물질과 다른 환경 오염 물질의 축적을 막기 위한 정책의 확립과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방사능 사고를 막기 위한 엄격한 지침과 보호조약 또한 확립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s. 53, 54)."

일반논평은 무력분쟁의 영향과 지뢰나 기타 폭발되지 않은 포탄 인한 특정 위험의 영향에 대해 강조해왔다(제38조, p.55):

"유효하고 접근이 용이한 작은 병기와 가벼운 무기를 포함하여 무력분쟁과 그 여파는 또 다른 장애의 주요원인이다. 당사국은 전쟁과 무력분쟁의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무력분쟁으로 피해를 받은 아동들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복구를 포함한 적절한 건강 및 사회적 서비스를 필히 제공해야만 하도록 요구받는다. 특히, 위원회는 상해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뢰 및 폭발되지 않은 포탄의 위험성에 대해 아동, 부모, 그리고 일반인들 교육의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지뢰와 폭발되지 않은 포탄 지역으로 의심되는 곳으로부터 아동을 멀리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UN 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협력 틀 안에서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여 채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CRC/C/GC/9, paras. 53, 54, 23, 78)."

Graca Machel의 ‘무력분쟁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는 수백만의 아동들이 무력분쟁으로 죽는데, “그것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나 영구적 장애가 3배 늘었다. WHO에 따르면, 무력분쟁과 정치적 폭력은 상해, 손상과 신체적 장애를 발생시키고, 주요한 책임으로 4백만 명이 넘는 아동이 현재 장애를 가진 채 살고 있다.. 무장

충돌 동안의 기초적인 서비스의 부족과 위생 시설의 파괴는 장애로 살고 있는 아동들이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51/306, 1996, para. 145. 협약 제38조).”

위원회의 일반논평은 또한 장애의 원인, 예방과 관리가 국가와 국제적 연구 기관의 필요한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당사국은 장애에 대한 자금지원과 모니터링, 그리고 윤리적인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이러한 이슈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만 함에 신경 써야 한다 (CRC/C/GC/9, para. 61)."*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은 장애와 빈곤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확립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손상의 위험은 가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크다는 명제는 사실이다. 장애가 있는 아동의 출생이나 가족 내 장애의 출현은 종종 가족의 제한된 자원에 무리한 요구가 되고, 가족을 더욱 가난의 수렁으로 빠뜨린다.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은 사회의 최저소득층 장애인 비율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이유로 빈곤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발달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한다(World Programme of Action, 41항).”

장애인권 협약 서문은 또한 “다수의 장애인이 가난한 조건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장애인에게 미치는 가난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립심을 강화하며 이동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는 조건에 맞는 적절한 삶”**

위원회는 일반논평 No.9의 “장애아동 인권에서 제23조의 첫 번째 논평에서 다음을 진술한다.

*"...위원회의 장애아동을 위한 이행의 우선 원칙(leading principles)은 고려되어야만 한다: 존엄성 보장, 자립심의 강화와 공동체의 활동 참여 촉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완전하고 관철은 인생의 향유. 당사국은 장애아동 권리실현이 이러한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논평의 핵심 메시지는 장애아동은 지역 사회에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협약에서 권리이행을 위해 채택된 도구들은, 교육과 건강의 영역을 예를 들어봐도, 장애아동들이 사회로의 최대한 통합되는 것을 명확하게 지향해야만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 11)."

## 장애아동의 참여권

장애아동은 제12조 항목 하에 다른 아동들처럼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참여에 대한 그들의 기회를 동등하게 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적절한 기술적인 조항의 적용 뿐 아니라, 특별 교육과 전략이 요구 된다. 장애인 권리 위원회는 이것을 7조에서 강조한다.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그들의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그들의 연령과 성숙에 일치하는 수준으로 주어져야 할 권리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연령에 맞는 도움을 제공 할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의 보편적인 의무는 새로운 협약의 4조에 장애인과 관련된 논점의 의사결정에 그들의 대표자 조직(기구)을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엄중한 자문과 적극적인 참여의 포함이 열거되었다.

일반논평 No.9의 “장애아동 권리”에서, 위원회는 다음을 지적 한다.

"대체로, 장애가 있거나 없는 성인이 장애아동과 관련된 정책과 의견을 결정하는 동안, 아동 스스로는 그 과정에 배제 된다. 장애 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를 듣는 것과 그들의 관점은 그들의 발전되는 능력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의회, 위원회 그리고 다른 포럼과 같은 다양한 부에 그들의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그들의 의견, 일반적으로 그리고 장애아동으로서 특별히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 정책이 그들의 요구와 욕구가 목표로 보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한 의사결정 과정이 참여적인 것으로 보장되는 포함의 가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아동은 그들의 관점 표현을 더 잘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당사국은 아동들의 삶의 의사결정 책임을 증가시키기 위해 아동의 변화하는 능력(Evolving Capacity)을 존중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가족전문가를 위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 32, 협약 제12조)."

일반 논평은 또한 장애아동이 분리 혹은 배치 결정 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는 사실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은 그것이 비록 그 의사가 아동의 인생과 미래에 원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라도 아동을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충분한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아동의 관점을 고려하고 평가, 분리와 배치과정 과, 집 밖에서와 이동 과정에서의 보호과정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다(CRC/C/GC/9, para. 48)."

###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교육

아동권리 위원회는 장애아동을 위한 기본 적인 교육의 실현(28조)과 전 세계적으로 장애아동들의 낮은 취학률에 대한 염려를 표현해왔다. 당사국 심의와 일반논평 No.9의 “장애아동 권리”에서 위원회는 장애아동들이 정규 학급에 통합되는 권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의 권리에 대한 일방적인 관심을 넘어.

장애인권 위원회는 통합교육의 지지에 분명한 입장을 표한다. 차별 없는 인권교육의 실현을 위한 관점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기본입장에서 “당사국은 모든 수준에서 통합교육 체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생애 학습은 아래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a) 인간의 잠재력과 존엄성,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완전한 개발, 그리고 인권존중의 강화, 기본적인 자유와 인종의 다양함,



- (b) 장애인 그들의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능력 뿐 만 아니라, 그들의 개성과 재능과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 때까지 개발시킨다.
- (c)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자유 사회에서 참여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장애아동이 무상 의무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지 않음;
- 장애아동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통합교육, 질적인 교육, 그리고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이용 할 수 있음;
- 개인적인 요구에 맞는 “합당한 편의”가 제공 됨;
- 장애인은 일반교육 제도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을 받음;
- 완전 통합의 목적과 일치되게 학업적, 사회적 발달을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개별지원 체계가 제공됨
- 추가적으로, 당사국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충분하고 동등한 교육에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삶의 기술과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함;

(a) 점자(Braille)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것, 대안적 필기, 대체의사소통기법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의사소통의 수단과 형식, 적응과 이동능력, 또래 지원과 멘토링을 강화함.

(b) 수화의 학습과 청각장애 집단의 언어적 일치를 조장하기 위한 학습의 촉진;

(c) 시각장애, 청각장애, 사-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 특히 아동의 교육 개별화를 위해 가장 적절한 언어와 양식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루어 질 것, 그리고 이것은 학업적 사회적 발달을 최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증.

- 당사국은 장애가 있는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또는 점자 사용 자격이 있는 교사를 고용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와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장애에 대한 인식교육과 함께 장애인을 돕기 위한 대체의사소통기법, 의사소통수단과 양식, 교육 기술과 자료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당사국은 또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제 3의 교육, 직업 훈련, 성인 교육과 평생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 권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통합교육제도의 개발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장애아동들이 대개 구제 수단으로 '보조 학급'이나 '징계학급'으로 보내지는 것보다 일반교육체계(Main stream system)에 장애아동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한다:

(a)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의 쟁점을 설명 할 것;

(b) 장애아동이 서비스의 동등한 이용,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의견 참조를 보장할 것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96);

(c) 제한의 관점이 있는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으로 주간학교 장애아동의 배치를 고찰 할 것;

(d)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일반학급에서 장애아동을 교육하기 위해 훈련된 교사를 배치함으로써 교정(Corrective)이나 '보조 학급'의 관행을 폐지하고 장애아동에게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 할 것(러시아 연방, CRC/C/RUS/CO/3, paras. 49, 50)."

위원회는 통합을 촉진하지 않았던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에서의 "강력한 의학 적 접근"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위원회는 Persons with Special Health Needs Act의 채택을 포함하여 이 분야에서 당사국에 채택된 협약들을 주목할 만 한 점으로 보는 반면에,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을 위한 불충분한 지원과 장애아동에 대한 고정관념, 사회적 차별, 그리고 장애아동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이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아동이 일반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고, 이 문제를 위한 강력한 의학 적 접근이 그들의 통합을 촉진하지 못한 다는 것을 염려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하였다... 장애아동이 교육현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수행 해보고, 일반교육체계에 통합을 촉진 시킬 것을 확실히 한다; 필요한 전문가(i.e., 장애전문가) 그리고 재정적 자원, 특히 지역 수준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 복귀 프로그램(부모지지그룹을 포함하여)의 확대와 증진; 장애아동의 배제와 사회적 소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아제르바이잔, CRC/C/AZE/CO/2, paras. 46~48)."

1994년, 5개 지역 세미나 개최 이후, 92개의 정부와 25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한 특수교육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Special Needs Education)는 "특수교육 실행을 위한 Salamanca 성명서와 기본틀"이 채택되었다(300개 이상이 스페인정부와 유네스코와 함께 동의하였다). 그 성명서는 "특수 교육 요구와 함께 일반 학교를 이용 할 수 있어야하고, 일반학교는 이러한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아동중심 교육법 내에서 장애아동들을 수용해야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일반 학교는 차별적 태도를 없애고, 장애아동들을 환영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며, 통합적인 사회를 만들어 장애아동들이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더구나, 그들은 대다수 아동의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전체 교육 제도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이 성명서는 모든 정부에서 "개인적인 차이나 어려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통합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최상의 정책과 예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요구한다(The Salamanca Statement and Framework for Action on Special Needs Education, UNESCO ED-94/WS/18, 1994).

## 가능한 최대한 사회적 통합과 개인적 발달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고안된 특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의 권리

제23조의 2와 3조항은 장애아동의 동등한 기회제공에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No.9의 "장애아동의 권리"에서 이 조항과의 관련성을 주목하였다.

"...(a) 특별 보호와 지원의 조항은, 가능할 때는 언제나 가용자원과 무상지원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은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 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장애아동의 특별보호와 지원을 최우선순위 문제로 취급할 것을 권고한다.

(b)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와 지원은 장애아동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건강 보호 서비스, 사회복귀 서비스, 고용을 위한 준비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차후 협약의 특정영역들을 다룰 때,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상세 화할 것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 14)."

“가용자원의 대상”은 제4조에 있는 일반 원칙을 반영한 것인데, 제27조의 조항과 유사하다. 지원은 필요하고, 아동과 아동의 부모나 기타 양육자 환경조건에 적절해야만 한다. 또한 이것은 무료로 제공 되어야 한다. “아동의 부모나 기타 양육자의 재정적 자원의 지원고려도 언제나 가능하다(23(3)조).”

지원의 목적은 아동이 “문화적, 정신적인 발달을 포함하여 가능한 완전한 사회적 통합과 개인적 발달을 최대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 장애아동의 시설 수용화 막기

장애 권리 위원회는 아동권리 협약 제9조에 반영하였다.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하고,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와 관련하여 사법적 결정을 위한 유능한 권위자가 부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의 분리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다.” 그리고 추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하여 아동이나 부모 둘 중 하나 또는 부모 둘 모두로부터 분리 되지 않아야 한다.” 친가족이 장애 아동을 돌 볼 수 없는 곳에서 당사국은 확대 가족 내에서 돌보아야 한다.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사회공동체 내에서 대안적 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행해야 한다(23(4)와 (5)조).” 아동

인권 협약의 제23조 “가능한 완전한 사회통합”에서의 강조점은 장애아동의 시설 수용화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또한 제20조는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을 위한 비-시설 수용화를 지지하며, 제2조에 비추어볼 때도 이것은 장애아동에게도 동등하게 적용 되어야만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No.9의 “장애아동의 권리”에서 비-시설수용화를 권고한다.

“위원회는 많은 수의 장애아동이 시설에 배치되는데 그러한 시설수용은 많은 나라에서 더 선호하는 배치 선택임을 자주 표현하였다. 시설보호의 질은, 교육적, 의학적이거나, 또는 사회복귀적이던 아니던 간에, 확실한 기준의 부족과 기준의 이행과 모니터링 부족의 원인으로 장애아동 보호에 필요 되는 기준보다도 훨씬 열등하다. 또한 시설은 방임이나 부주의한 치료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성적, 그리고 다른 형태의 학대에 더욱 취약한 특수 환경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원칙이 적용될 때, 시설배치를 최후의 선택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것이 꼭 필요하고 아동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때를 의미한다. 이것은 당사국이 아동의 자유권과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시설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요구에 맞는 작은 거주시설 형태 중심으로 현존하는 시설을 바꾸는 것, 시설 보호에 대한 국가기준을 만드는 것, 또한 이러한 기준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검토와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시설수용을 배치 결정함에 있어, 당사국은 장애아동을 위한 비-시설수용회를 위한 프로그램, 가족과 확대가족 또는 위탁가정의 보호체계에서 장애아동들을 재배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함을 권고 받았다. 부모와 다른 확대 가족 구성원은 그들의 아동이 그들의 가정환경으로 되돌아가 통합되기 위해 필수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훈련을 제공 받아야만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s. 47, 49).”

## 장애아동 자유의 제약

정신 질환을 이유로 수용된 아동은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UN규칙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다양한 보호를 받는다. 협약 제37조 하에, 자유권의 어떤 제약은 법에 의해 보장

되어야 하고, 자의적이지 않아야만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만하고, 적정시간동안만 최소한으로 이용 되어야만 한다. 제37(c)조는 자유를 빼앗긴 모든 아동이 “만약 그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간주 된다면 성인으로부터 분리 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자유를 빼앗긴 소년범을 보호하기 위한 UN규칙도 이와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제29조는 정신 질환으로 수용된 아동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아동권리협약의 제25조 하에는 어떤 시설 배치에서나 장애아동은 성인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배치와 치료의 정기적인 검토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제37조).

자유를 빼앗긴 소년범을 보호하기 위한 UN규칙은 제532에 나타나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소년범들은 독립적인 의학적 관리가 있는 특성화된 시설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기관의 배치로, 시설수용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신건강보호를 받아야 될 것이다.” 이 규칙은 또한 “신체적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보이는 소년범은 즉각적으로 의료진에게 진찰 받아야 함”을 지적한다(rule.51).”

## 국제적 협력: 제 23조 4항

제 23조 4항은 당사국이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개도국의 요구에 맞는, 그리고 장애아동과 관련된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위원회의 일반논평 No.9 “장애아동의 권리”에서는 예방과 치료 분야에서 당사국 사이의 국제적 정보교환이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곳에 적합하게 맞춰진 조치를 취해야함을 권고한다. 당사국의 장애아동 예방과 치료 분야에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23조 4항에 명시된 것처럼 정보의 적극적인 증진활동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제23조 4항에 요구된 것처럼, 개도국의 요구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이행 되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양자간, 다자간 개발원조의 틀 안에서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생존 및 발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CRC 조항과 일치되게 사회에 통합되고 그 효과로 지정된 예산이 할당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함으로써 강력하게 권고한다. 당사국은 그*

들의 보고서 위원회의 활동과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결과에 대한 그들의 보고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s. 15, 16)."

장애인 인권 위원회는 광범위한(Extensive) 국제적 협력을 제안하는데, 이는 국가가 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인에 접근 하는 일을 보장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당사국은 현재 CRC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함께 국제적 협력과 그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도구를 찾아낼 것이다. 이 조치는 무엇보다도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a) 장애인이 통합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국제적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적 협력을 보장,
- (b) 정보경험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실천사례(Best Practices)들의 교환과 공유를 통한 능력 신장의 촉진과 지원,
- (c)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의 활용과 연구를 위한 협력의 촉진,
- (d) 기술의 전수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적, 경제적 자원을 제공.

“이러한 조의 조항은 현 조항의 의무 실현을 위한 의무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23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의 모든 수준에 책임 있는 부처와 기관의 지정과 조정(23조는 모든 정부부처 그리고 장애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정기구의 설립과 관련됨)
- 관련 비정부기구/시민사회 파트너의 확인?
- 사법권의 모든 부분에 있는 모든 아동을 위한 모든 법령, 정책과 실행이 조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목적의 확인과 과정상의 지표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
- 아동권리에 더 잘 맞는 어떤 조항들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
- 기타 관계된 국제기준을 인식하고 있는가?
- 필요한 국제적 협력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러한 조치는 아마도 협약 전체의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정부 전략의 부분 일 것이다.)

- 예산 분석과 필요한 자원의 분배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
- 23조의 이행을 성인과 아동에게 널리 알리기
- 적절한 훈련과 인식증진활동의 개발 (23조와 관련하여 장애 아동을 위해 또는 장애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관련된 모든 형태의 교육, 그리고 부모교육을 포함함)

### ● 제23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당사국은 장애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국가조정위원회나 비슷한 부처를 가지고 있는가?
- 당사국은 장애인권위원회에 비추어 법률, 정책 및 실행을 검토하였나?
- 당사국은 협약과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였나(2007년 4월 서명이후로 발표)
-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한 기회균등 표준 규칙에 비추어 입법, 정책 및 실행을 검토하였나?
- 장애아동 차별에 대항하는 비-차별에 관한 법령이 있는가?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협약의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령이 있는가?

모든 장애아동과 그들의 대리인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관계된 고충을 다루기 위한 독립된 메커니즘을 이용하기 쉬운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모든 장애 아동들 및 그/그녀의 양육자를 위한 적용에서 이용가능한가?

이러한 특별 보호와 지원은 다음처럼 제공 되는가

모든 경우에 무료로?

자산 조사를 기초로?

부모에게 권고된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데 조언, 재정적 지원, 실제적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사회기관이 있는가?

모든 장애아동이 문화적, 정신적 발달을 포함하여 가능한 최대의 사회적 통합과 개인적 발달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가?

취학 전 보호와 교육

교육

훈련

건강 보호 서비스

사회 복귀 서비스

레크리에이션과 놀이(유희)기회

문화적 및 예술적 기회

고용을 위한 준비

향유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장애가 없는 아동과 함께 하는 통합적 환경에서도 장애아동을 위해 제공되는가?

교육

훈련

공공 보호기관을 포함한 대안적 양육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당사국에는 제 12, 13, 14 및 15조항 하에서 장애아동의 참여권을 존중해주기 위한 특별한 조정(장치)이 있는가?

장애아동의 삶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의 생존 및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입법적 및 기타 조치가 있는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장애아동이 보호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나

가족(정) 안에?

대안적인 보호에?

공동체 안에?

당사국은 정부의 계획, 정책수립 및 평가 모든 수준에서 장애아동의 참여를 보장하였는가?

당사국은 장애아동을 위한 정보의 교환과 서비스 조항과 관련된 능력 및 기술의 향상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적 조정애 관여하였나?

● 주의사항

협약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협약의 모든 조항들은 상호의존 한다. 협약 제 23조 역시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일반원칙**

제2조: 사법권 내의 각 아동은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 없음을 인지

제3조 1항: 아동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실행에 우선시 고려

제6조: 생명과 최대 가능한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에 아동의 관점을 존중;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관할권이나 행정적인 절차에서 들어 줄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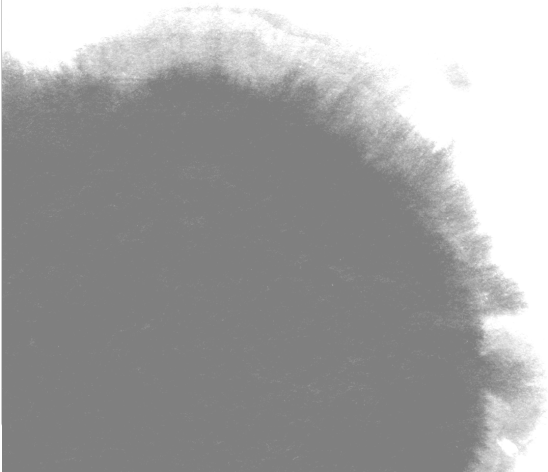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본 협약의 모든 조항은 그들 권리 실행에 대하여 장애아동의 기회가 동등하기 위한 관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24

K  
I  
H  
A  
S  
A

제24주 보건의서비스





## 제24조 보건서비스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nd to facilities for the treatment of illness and rehabilitation of health. States Parties shall strive to ensure that no child is deprived of his or her right of access to such health care services.
  2. States Parties shall pursue full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and, in particula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 (a) To diminish infant and child mortality;
    - (b) To ensure the provision of necessary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care to all children with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primary health care;
    - (c) To combat disease and malnutrition,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primary health care, through, inter alia, the application of readily available technology and through the provision of adequate nutritious foods and clean drinking wa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angers and risk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d) To ensure appropriate prenatal and postnatal health care for mothers;
    - (e) To ensure that all segments of society, in particular parents and children, are informed, have access to education and are supported in the use of basic knowledge of child health and nutrition, the advantages of breastfeeding, hygiene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 (f) To develop preventive health care, guidance for parents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and services.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with a view to abolishing traditional practices prejudicial to the health of children.
  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recognized in the present article.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주요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고려하며, 주요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

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식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 요약

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제6조에서 다른 생존 및 삶에 대한 권리를 토대로 수립·발전되었다. 또한 본 협약의 무차별 원칙(제2조)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 뿐만 아니라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며, 당사국이 이를 인정하도록 요청한다.

2항에서는 “주요 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해야 함”을 포함하여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한다. 본 협약은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제19조), 교육(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27조)와 아동 이 건강할 권리의 실현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아동의 관점에 맞는 건강관리와 보건서비스 관리(제12조), 청소년의 보건 문제를 포함한 아동 발달에 관한 요구사항(제5조)을 강조한다.

제 24조 3항에서는, 여성의 음핵 절제 의식 및 잠재적 유해 규약 검토와 같은 특정 관습사에 기초한 것으로, “아동 건강에 대한 편견적인” 전통 규약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항에서는 (제4조의 일반 조치에 반영된)건강권과 보건서비스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본 협약의 보건 조항은 국제 인권선언과 두 개의 국제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제공받은 것으로부터 발전하였으며, 유니세프(UNICEF)나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공식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보건의 광범위한 정의는 WHO가 채택한 것-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허약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로, 본 협약의 증진을 위하여 아동발달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본 위원회는 2003년 “아동 권리협약을 기반을 둔 청소년 건강과 발달”, “HIV/AIDS와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을 채택 했다. 그 밖의 다른 일반 논평에서도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국제 인권 장전의 보건 권리

세계 인권 선언은 모두를 위한 권리의 하나로써 “가족 내 또는 스스로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영유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태어난 모든 아동은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제 25조).”는 것이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 12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b) 환경 및 산업위생 관련 모든 부문의 개선
  -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d) 질병 발생 시 모든 의료적인 서비스와 관심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0년 ‘도달가능한 한 최상의 건강 권리

기준(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2조)’에 대한 일반 논평을 채택했다. 본 위원회는 또한 ‘식수에 대한 권리,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 적절한 주거 공간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도 채택하였다.; 규약 제11조에서는, “누구나” 의식주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 기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7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과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이 가진 고유의 생명권도 주장하고 있다(제6조). 아동인권협약은 보다 나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정하고 배제되는 것 없이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 기준에 대한 논평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논의하고 건강권과 건강할 권리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규약의 제12조 초안에서 유엔 이사회 세 번째 위원회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세계보건기구(WHO)의 헌법에 전문에 포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허약하지 않고 질병이 없는 상태’로 채택하지 않았다. 규약 제 12조 1항에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이 건강에 대한 권리로 한정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제12조 2항에서는 건강에 대한 권리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음식, 영양, 주거, 안전, 식수, 위생 시설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 상태 및 환경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사회·경제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을 언급하였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2000, 일반논평 No.14, 높은 수준의 성취 가능한 건강 기준에 대한 권리) [제12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국제 규약, HRI/GEN/1/Rev.8, para. 4].”

“건강권은 건강해지기 위한 권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건강권은 자유와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자유는 성, 출산의 자유, 신체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동의가 없는 의학 치료 및 고문 행위와 같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다. 반면에 그 권리는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보건을 누릴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보호 시스템을 포함한다.



“제12조 1항,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에 대한 개념은 개인의 생물학적, 사회경제학적 전제조건과 당사국이 활용 가능한 자원 모두를 고려하여 정의된다. 당사국과 개인 사이에 관계에는 혼자서 다룰 수 없는 많은 면들이 있다; 특히, 당사국은 최상의 보건을 보장 할 수도 없고, 매년 인간 질병에 대항해 보호책을 제공할 수도 없기도 어렵다. 또한 유전적 요소, 질병에 대한 개인적 민감 정도 및 비위생 척도 또는 생활 위험도는 개인 보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건강권은 가장 높은 수준의 보건 기준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며, 다양한 시설, 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로써 이해가 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제12조 1항에서 건강권을 시기적절한 보건 관리뿐만 아니라, 건강의 결정적 요소는 안전하고 식용에 적합한 식수, 적합한 위생, 안전한 식품, 영양 공급, 주거 공간, 건강한 직업 및 환경 조건에 대한 권리, 성적 및 출산 보건을 포함한 정보, 보건 관련 교육의 이용을 확대하는 포괄적인 권리로 해석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국가적·국제적 수준의 시민사회에서 보건 관련 결정을 하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은 시민의 참여이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14, 2000, HRI/GEN/1/Rev.8. paras. 8, 9, 11).”

‘건강권’의 정의에서 아동 관련 요소를 확대하면, 본 위원회는: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제12조 2항 (a))’, 가족계획, 출산 전후 관리, 정보의 이용과 긴급 산부인과 서비스를 포함한 모자보건, 성과 출생 보건서비스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한다(HRI/GEN/1/Rev.8. para 14, 일반논평에 실린 청소년의 건강권에 대한 참조).”

## 주요 보건 의료관리 선언(Declaration on Primary Health Care)

세계 보건 기구는 “건강”에 대해 폭넓은 정의를 WHO의 헌법(1946년 뉴욕, 국제 보건 회의에서 채택)에 의해 내렸으며, 주요건강관리에 관한 알마-아타 선언에서도 동일한 정의로 사용되었다. -1978년 알마-아타에서 내린 주요보건관리 국제회의

결과(WHO와 UNICEF가 공동 후원했음), 알마-아타 선언은 아동 권리 협약의 제 24조에 준하여 주요건강관리(일차보건의료<sup>6)</sup>) 증진을 위한 는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라 선언하였다. 이는 실제적이고 과학적이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 및 기술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방식과 기술은 자기 신뢰와 자기 결정의 정신에 준하여 발전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며, 개인과 지역사회 가정이 충분히 참여함으로써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주요 건강관리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의 전반적 사회경제적 발전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주요 건강관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접하는 첫 접촉점을 말한다. 주요 건강관리는 또한 이후에 지속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의 첫 단계이다(알마-아타 선언.I와 VI단락. 자세사항은 하단 부를 참조).

이 선언은 주요 건강관리에 관하여 모든 정부기관이 국가 정책, 전략 및 행동 계획으로 공식화하고 포괄적인 국가 보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써 주요 건강관리를 지속하도록 촉구한다(1978년, 알마-아타 선언, I, VI, VII, VIII 단락). 이 선언은 WHO가 국제 사회에 “모두를 위한 보건 수준을 성취하기 위한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전략 수행 및 공식화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발달에 매우 필수적인 부분인 보건’-를 목표로 한다(1979년 11월 29일, 유엔 총회 결의 34/58).

최근 1998년, 세계 보건 위원회는 알마-아타 원칙의 정책문서인 21세기 모두를 위한 보건에 대해 재확인했다(52번째 세계 보건 총회, A51/5).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문에서 주요 건강관리부분을 강조하고, 당사국으로부터 보고서 검증을 받을 것을 강화했다.

6) primary health care는 아동권리협약의 해석상 “기초건강관리 체계”로 되어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해석상 일차보건의료라 하고 있음.

## 알마-아타 선언문

다음은 주요건강관리 부문 알마-아타 선언문의 본문에서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주요건강관리 :

1. 한 국가와 지역사회는 경제적 상태, 사회문화적, 정치적 특징을 반영하여, 서서히 발전한다. 그리고 사회학, 생의학, 보건의로 서비스에 대한 타당한 연구 결과와 공중보건의 경험을 적용하도록 한다.
2. 1차 보건의로는 지역사회의 주요 건강문제를 다루며,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중요한 건강문제 및 문제예방-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음식 공급과 적절한 영양의 증진,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의 충분한 공급,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성보호와 아동건강관리, 주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지역 유행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 잦은 질병과 외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 필수 의약품 제공.
4. 보건의로 부문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 축산업, 식품, 산업, 교육, 주택, 공공사업, 등과 같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모든 부문과 양상을 포함하고, 이 모든 부문의 조화로운 노력이 요구된다.
5. 지역사회, 국가, 혹은 다른 사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주요건강관리의 계획,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와 개인의 자기신뢰 및 참여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참여 능력을 발전시킨다.
6. 통합적이고 기능적이며 상호 보완적 전달체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이들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7. 전통 의료 시술자를 포함하여 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보조원 등의 보건 의료 종사자와 사회사업가에 의존한다. 이들은 보건의로 조직에서 일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로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훈련되어야 한다(1978년 알마-아타 선언문, VII 항목).”

##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1990년 세계 아동 정상 회담 소식

아동의 생존, 보호와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1990년 9월 30일 아동을 위한 세계 회담에서 채택되었다. 이 행동강령은 당사국의 협약기준과 관계된 아동보건을 위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제공하고 있다.

2002년 5월 유엔총회의 아동에 대한 특별 회기를 개최하였고(박스 참조), 1990

년 사회적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회담과 행동강령을 세우고 검토하였으며(1995년 코펜하겐), 2000년 유엔 이사회에서 사회적 발달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언급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과정을 검토하여 결론을 내렸다.

2000년 9월 8일, 밀레니엄 선언은 개발에 대한 8가지 목표 - 밀레니엄 개발 목표 - 를 제공하였다(유엔 총회 결의안 55/2). 이것은 또한 2005년 세계 정상 회담에서 재언급 되었다(2005년 10월, A/RES/60/1). 인구 발달 국제회의(ICPD)(1994년, 카이로)는 4번째 세계 여성대회(1995년, 베이징)와 2000과 2005년 회의에서 청소년기 건강권을 포함한 보전에 관한 자세한 추천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사회는 당사국들에게 아래와 같은 목표의 수행을 촉구한다(아래 박스 참조).

### 밀레니엄 개발 목표

(2000년 9월 18일 유엔총회, 새천년개발목표결의안 55/2, A/RES/55/2, [www.un.org/millenniumgoals/documents.html](http://www.un.org/millenniumgoals/documents.html)).

-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율,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 및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을 수 없는 인구의 비율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 전 세계 모든 아동이 초등 교육을 받고,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산모 사망률을 현재 비율에서 4분의 3을 줄이고,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3분의 2로 줄인다.
- 에이즈나 말라리아와 같은 유행성 질병률을 낮춘다.
- 에이즈에 전염된 신생 아동을 위한 특별 지원을 제공한다.
- “빈민가 없는 도시” 발의안에 따라, 2020년까지 빈민가에 거주하는 최소 1억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남녀평등과 빈곤, 기아,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여성 경제능력을 향상시키고 발달을 촉진시킨다.
-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완전하고 생산적인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한다.
- 제약 회사와 협력하여 필수 의약품 개발도상국에 적정가격으로 제공한다.
- 지역 사회 기구와 민간 부문이 강한 연계를 이루어, 기아를 근절하고 개발을 위해 협동한다.
- ECOSOC 2000 각료 선언에서 말하고 있는 추천사항을 준수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이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 아동에 대한 유엔 총회 특별 회기

#### 행동강령에서 발췌: 건강한 삶 증진하기

“빈곤과 기초 생활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5세 이하 아동의 과반수인, 천만 명이상이 예방가능한 질병과 영양실조로 매년 죽어가고 있다. 임신과 분만, 산모 빈혈 그리고 영양실조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매년 50만 명 이상의 여성과 아동이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장애인이 되고 있다. 10억 이상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5세 이하 아동 중 1억 5천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20억의 인구가 적절치 못한 위생상황에 노출되어있다.

“우리는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생활과 안전을 제공하여 영양실조와 빈곤의 세대 간 전이를 깨트리기로 결심을 했다; 모든 지역 사회에 효율적이고 적절하며 지속가능한 주요건강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정보와 전문적인 도움 서비스의 이용방법을 보장한다.; 식수와 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과 청소년들 사이에 건강한 삶의 양식을 고취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최근 유엔 총회, 회담 및 이사회의 특별 회기의 결과에 따라, 다음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 (a)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을 2015년까지 3분의 2의 감소를 목표로 하며, 최소 3분의 1을 줄인다.
- (b) 산모 사망률을 2015년까지 4분의 3의 감소를 목표로 하며, 최소 3분의 1을 줄인다.
- (c) 5세 이하 아동 중에서 영양실조의 비율을 최소 3분의 1을 감소시키며, 2세 이하의 아동에게 특별한 보살핌을 제공하고, 저체중 신생아의 비율을 현재의 비율에서 최소 3분의 1을 줄인다.
- (d) 별도의 위생 시설과 식용 가능한 식수를 얻지 못하는 가정의 비율을 최소 3분의 1 감소시킨다.
- (e) 아동의 신체적·사회적·감성적·정신적·지적 발달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국가차원의 유년기 정책 개발을 수행한다.
- (f)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국가 차원의 보건 정책의 개발을 수행한다.
- (g) 적절한 연령의 개인들의 출생보건을 위한 주요건강관리 시스템을 2015년 전까지 접근한다.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의 지역적, 도덕적 가치와 문화적 배경 및 국가법과 일치하며,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맞는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과 조치를 취한다.:

1. 사망률과 신생아 질병 및 사산아 감소를 위한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여성, 특히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산모관리와 숙련된 직원들로부터 보건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긴급 산모 관리와 필요시 이용 가능한 효율적이고 높은

- 수준의 서비스, 출산 후 관리와 가족계획을 순서대로 받도록 한다.
2. 적절하고 사용하기 쉬운 우수한 질의 보건 관리 서비스와 교육 및 정보를 모든 아동이 제공 받을 수 있게 한다.
  3. 세계 아동 정상 회담, 유엔 환경과 개발 회담, 국제 인구 발달 회담, 세계 사회 발달 회담, 4번째 세계 여성 대회를 포함한 최근 UN회담에서 제안된 결과들은 적정 연령의 모든 개개인을 위해 효과적으로, 그들의 출산, 성적 보건 등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4. 아동 보건과 생존을 증진하고 여자 신생아와 아동의 사망률 감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가능한 신속하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괴리를 줄인다.
  5. 6개월 된 신생아에게는 모유수유를 지원하고, 2세 이상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이유식을 지원, 증진하고 보호한다.
  6. 출산 전후 관리, 필수적 조산 관리 및 신생아 관리, 특히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신생아를 위한 대책에 중시한다.
  7. 전 지역 또는 동등한 행정 구역에 있으며, 국가 구성원 중 90%를 차지하는 있는 1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최소 80%이상 예방주사를 접종하도록 한다.; 2005년까지 홍역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2005년까지 산모와 신생아 파상풍 발병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향상된 성능의 최신 백신과 다른 보건 예방 혜택을 전 세계의 아동에게로 확대 한다.
  8. 세계적으로 소아마비를 2005년까지 근절한다.
  9. 기니벌레 병을 박멸한다.
  10. 장애가 있는 부모 및 가정, 법적 후견인을 포함한 부모, 특히 임신, 출산, 유아기 아동을 지원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지적 발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11. 유아사망률과 질병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과 영양실조를 3분의 1로 줄인다.; 5세 이하 아동 중에서 죽음을 불러오는 설사병을 2분의 1로 감소한다; 유행성 질병 및 결핵 사망률을 1/2로 줄인다; 장 아메바증, 콜레라, 성감염증, HIV/AIDS 및 모든 종류의 간염을 감소시키고, 특히 소외지역이나 소외 계층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강화한다.
  12. 말라리아와 관련된 질병을 2분의 1로 줄이고, 특히 아동과 여성이 말라리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한다.
  13.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 어머니의 영양 상태에 대해 가정의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을 개선시키고,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와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14. 극심한 식량부족과 기근으로 고통 받는 인구와 국가를 지원한다.
  15. 보건과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정, 지역사회, 학교, 주요 보건 기관에서의 소외계층 소년, 소녀에게 관심을 갖으며, 보건, 영양, 아동관리 이용을 증가시키고 통합적인 사회 보장 제도를 확장한다.
  16. 적절한 예방책 수행과 개발을 통해, 사고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아동의 부상을 감소시킨다.
  17. 장애가 있는 아동과 사회 재활 훈련이나 보건 관리 같은 통합된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아동이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관리증진, 부모, 가족, 법적 보호자, 이러한 아동의 도우미를 위한 적절한 지원 시스템을 조성한다.
  18. 정신병이나 심리적 장애로부터 고통 받는 아동에게 특별한 도움을 제공한다.

19. 놀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표현을 통해서 청소년 및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보건을 증진한다.
20. 의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마취성약품, 향정신성 물질이나 흡입물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아동용 프로그램, 특히 담배나 술의 오남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수행한다.
21. 자살 또는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수립한다.
22. 요오드 결핍증을 2005년까지 감소시키고, 비타민 A 결핍증을 2010년까지 감소시킨다; 철분 부족, 빈혈예방을 2010년까지 3분의 1로 감소시킨다.; 식이요법의 다양화, 영양 강화 및 공급을 통해 미량의 영양소 결핍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 적절한 위생시설과 안전한 식수를 보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 시스템을 관리하기위해서 가족과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관심을 갖으며, 학교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보건과 위생교육을 통해 행동변화를 증진해야 한다.
24. 소외 계층 아동들을 위한 보건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이용에 중점을 둔다.
25. 국가적 수준의 적절한 프로그램과 정책, 법률을 발전시키고, 그 중에서 음식, 토양, 식수, 공기에 함유된 유해 환경물질로부터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 한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제27특별회기에 대한 특별위원회보고, 2002, A/S-27/19/Rev.1, paras. 35~37)

세계보건기구에서는 0세부터 19세 연령 그룹의 건강보호와 발달을 증진하기위해 새롭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국제적인 요구에 응답할 목적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증진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UN의 아동을 위한 특별 회기 준비는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 목표성취를 위한 평범하지 않는 진전이라고 명하였다. 2000년,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의 채택은 “법적조치를 위한 로드맵” 발달을 촉진하였다. 2003년 5월, 56번째 세계 보건 총회 기간에 전략적 방향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2005년, WHO는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아동에 대한 **세계 보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보고서의 개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해마다 330만—또는 그 이상—의 신생아가 사산아로 태어나거나, 4백만 명 이상이 태어 난지 28일 이내 죽는다. 그리고 660만 명의 어린 아동이 그들의 5번째 생일을 맞이하기도 전에 죽는다. 또한 산모의 사망 역시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으며—현재 기준으로 해마다 총 529,000명이 임신기간 중, 분만 중, 또는 아이를 낳고 나서—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

이하거나, 종종 빈곤한 상황 때문에 보건 관리를 제때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기도 한다(그 중 68,000명은 안전하지 못한 낙태시술로 목숨을 잃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산모, 신생아, 아동의 보건을 강조하는 것은 유엔국제 인구발달 회의에서 출산 보건관리를 위한 아젠다가 이루어진 10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일인가?(세계보건보고서- 모자보건 주제, 2005, WHO, 제네바, p.4).”

2005년 9월, 산모, 신생아, 아동보건을 위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회의의 도움을 받아 산모, 신생아, 아동보건을 위한 파트너십을 출범하였다(4번째, 5번째 목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산모사망률의 4분의 3을 줄이고, 아동사망률의 3분의 2를 줄인다). 이전 세 개의 파트너십—어머니와 신생아 보건을 위한 파트너십, 아동 보호 파트너십, 건강한 신생아를 위한 파트너십—을 합친 것이다. 80명의 유엔 대표 회원들과 다국적 기관, 협력 국가, NGOs, 전문 의료 기구, 기증자 및 학술 리서치 기관이 파트너십에 참여하였다([www.pmnch.org](http://www.pmnch.org) 참조).

## 건강권의 점진적 수행

제24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아동 권리 협약문의 4조항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따라 “국제협력 틀에서 적절한 시기에 활용 할 수 있는 최대범위의 자원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생존권(제6조 1항)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시민, 정치권 협약문에 포함되어 있다. 제24조항에는 점진적인 실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은 보건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이 권리의 완벽한 수행을 추구해야한다. 또한 본 권리는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해야 한다(para. 4).

아동권리위원회는 아직 제24조항과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와 국제협약의 주요 일반논평에서 점진적 실현이라는 개념은 당사국 의무 성격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필수적



이고 융통적인 방법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이 문구는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권리로 보아야 하며, 협약의 존재이유(raison d'etre)는 현실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의무가 명확하게 설립되어 있다. 게다가 오래된 방법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최대 활용 가능한 자원 사용문과 서약서에 기재된 권리 전체를 참고하기 위한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최소한의 주요 권리를 모든 당사국에 부여하고, 이를 최대한 성취하기 위해 핵심 의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수 식료품이나 필수적인 주요건강관리, 기본적인 주거 공간, 또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의 경우, 언뜻 보기에는 협약에서 주어진 의무에 대해 실패한 듯하다. 그러나 비록 활용 가능한 자원이 부적격한 지역일지라도, 당사국에 부여된 의무는 적절한 권리를 향유할 가능성을 널리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것을 확대하고, 경제·사회·문화 권리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창안하는 것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3, 1990, HRI/GEN/1/Rev.8, p.17,18, paras, 9~11, 더 자세한 논의 사항은 제 4조항 참고).

높은 수준의 성취 가능한 보건기준 권리에 대한 가장 최근 일반논평을 살펴보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보건권을 수행하기위한 핵심의무를 정의하였다(아래 박스 참조).

아동권리 위원회는 특히 장애그룹을 위한 보건서비스가 자유로운 접근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 중에서도 의약품의 높은 가격과 의약품의 부족, 낮은 투자에 대해 언급을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본 위원회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캠프(장소)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낮은 면역율과 높은 영양부족 및 미세 영양소 결핍, 극도로 빈곤한 상태의 보건상황에 대해 심히 염려하는 바이다. 그리고 아동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의 증가, 보건관리에 대한 저조한 투자, 제한된 수의 병원과 보건센터, 부족한 의약품 공급 및 높은 가격 책정, 부줌부라(bujumbura)시내에 집중된 전문 의료진에 대해 걱정을 표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 보건 예산을 상당수 증가 시키고 주요 보건 관리와 함께 공중 보건 개선에 힘을 쏟으며 특히,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이 쉽게 보건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직화된 정책, 아동질병 관리 프로그램의 수행, 아동 및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 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의 원조를 구할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브룬디, CRC/C/15/Add.133, paras, 54~5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항의 보건권 수행을 위한 당사국의 핵심 의무**

2000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14에서 일부 발췌

“국제인구개발 회의 조치 프로그램과 같은 동시대적인 기관과 결합하고, 알마아타선언은 제12조항으로부터 핵심의무에 대한 지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최소의무를 핵심의무에 포함하는 것이다.

- (a) 보건시설,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 특히 취약집단이나 주변화된 집단을 위해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 (b) 모든 사람이 기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안전한 최소한의 필수적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c) 기본적인 안식처, 주거 및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한다.
- (d) 필수약품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행동계획에 포함된 필수약품을 제공해야 한다.
- (e) 모든 보건 시설, 재화 및 서비스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한다.
- (f) 유행병에 관한 근거를 기초로, 인구전체의 보건문제를 다루는 국가 공중보건전략 침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 및 행동계획은 참여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바탕으로 고안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교 가능한 우선사항의 의무들을 확인한다.”

- (a) 출산, 산모(출산 전후) 및 아동 보건 관리를 강화한다.
- (b)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마련한다.
- (c) 전염병과 풍토병을 통제하고 치료,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d) 질병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방법과 같이 지역사회 내의 주요 보건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고 교육을 제공한다.
- (e) 인권과 보건교육을 포함한 개인 보건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한다.

“본 위원회는 상위 43, 44번째 단락에서 지시하고 있는 핵심의무와 기타의무를 개발도상국이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특히 경제 및 기술 분야의 국제적 원조와 협동”을 제공하고, 조력자의 위치에 있는 다른 당사국에 특별히 의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바란다.”  
 (200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14, "높은 수준의 성취 가능 한 보건기준(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12조항)", HRI/GEN/1/Rev.8, p.97~98, paras, 43~45).

"본 위원회는 당사국의 발전된 보건관리 시스템을 추천하고 신생아와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감소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유의해야 할 점을 명심해야 한다:

- (a) 장애가족이 똑같은 품질의 보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 (b) 보건 서비스와 국가 면역 프로그램에 지역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 보건 분야 개혁과 특히 공중보건분야의 역량을 키우는데 힘을 쏟을 것을 충고하고 있다. 협약문 특히 제 4조항, 6조항 및 24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공중보건 분야에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고 당사국이 아동보건상황을 개선하기위해, 프로그램 및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 수행을 계속 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보건관리 조항의 지역적 불균형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 전 지역에서 산모와 아동을 위한 주요 보건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이 촉진할 것을 권고 하는 바이다(레바논, CRC/C/LBN/CO/3, paras. 52~53)."

"당사국이 출산 전후 관리 및 보건관리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남기고 있다."

- (a) 보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역적 불균형
- (b) 높은 신생아 사망률
- (c) 신생아와 산모의 영양불량
- (d) 모유 수유의 급격한 감소세
- (e) 로드리게즈(Rodrigues) 내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의 제한적 공급 상태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하고 있다:

- (a) 모든 국가의 아동이 동등한 보건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 분야에 재정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 (b) 산파와 조산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출산 전 관리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특히 시골지역의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 (c) 산모, 아동 및 신생아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킨다.
- (d) 모든 국가, 지역, 특히 로드리게즈(Rodrigues)지역의 위생 상태와 안전한 식수 공급에 힘쓴다.
- (e) 출생 후 6개월 동안 독점적인 모유수유를 권장하며, 그 이후에도 적절한 유아 이유식을 권장한다(모리셔스, CRC/C/MUS/CO/2, paras. 52~53)."

## 보건 및 보건관리 이용에 대한 비차별

제24조항에서 당사국은 성취 가능한 높은 수준의 보건기준에 대한 아동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보건관리 서비스 이용에 차별받는 아동이 없도록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24조항과 2조에서는 사법권이 미치는 구역 내에서 차별로 인해 고통 받는 아동이 없도록 요구한다. —“아동, 또는 그/그녀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지역, 정치 또는 다른 견해, 국가적, 민족적, 사회적 기원, 자산, 태생 및 신분지위에 개의치 않는다.”—. 알마아타 선언에 따르면, “국가 내에서도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람사이에서 일어나는 현 보건상황의 심각한 불평등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이 같은 사안에 관심을 가진다(선언문 II단락).

본 위원회는 다양한 경우의 차별적 문제를 보건과 관련해서도 연관 짓고 있다. 특히 가난한 아동의 생활, 장애를 가진 소녀와 아동들의 생활, 시골 지역 내 아동들의 생활, 소수민족, 토착민사회, 망명요청, 아동피난민 및 불법이민자에 대한 비차별을 강조해 왔다(제2조항 참고). 예를 들어;

*"본 위원회는 국가의 복잡한 정치적 구조와 통합되지 못한 법률 및 정책으로 인해, 모두를 위한 보건 관리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바이다 ..."*

"본 위원회는 90% 이상 국민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실상 보건관리 비용을 배제시킨 결과를 가져온 로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특히 로마지역의 피해계층에 속한 아동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보건관리를 받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CRC/C/15/Add.260, paras 47~49)."

"본 위원회는 피해계층 아동이 속해있는, 특히 원거리 지역 내의 아동과 토착민족의 아동의 생활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보건관리를 받고 이를 보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국가적으로 본 위원회는 토착아동과 비토착 아동 사이의 영양학적 상태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호주, CRC/C/15/Add.268, para 48)."

"본 위원회는 이전 권고사항(CRC/C/15/Add.12, paras. 26~27참고)을 반복한다. 당사국은 보건서비스 이용에 지역불균형, 취약연령 및 5세 이하 아동의 영양실조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멕시코, CRC/C/MEX/CO/3, para. 49)."

## 장애

아동권리 협약 제 23조항에서는 “장애아동의 특별 관리를 위한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보건관리서비스와 재활서비스가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달을 최대한 성취 가능하게 하도록 고안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06년 12월 채택된 장애인권리에 대한 신탁약서에 보건에 관한 자세한 조항들이 담겨있다(제25조항):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바탕으로 차별 없이 성취 가능한 높은 수준의 보건기준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한다. 당사국은 재활관련 보건을 포함한 성별 인지 같은 보건 서비스를 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행해야한다,

- (a)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성, 출산보건, 공중보건을 포함한 동일한 기준과 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b) 아동과 유아를 포함하여 장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장애를 조기에 식별하고 중재하기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c) 보건서비스는 시골지역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 (d) 자유와 잘 알려진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도 다른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질의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전문가가 필요하다. 보건전문가는 인권에 대한 자각을 고취시키고, 공적, 사적인 보건관리를 위해 기준을 세우고 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자주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 (e) 국내법에 의한 건강보험 및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장애인에게 차별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 (f) 장애인을 식수, 음식 또는 보건 관리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차별로부터 보호한다.

일반논평 No.9 “장애아동의 권리”에서 위원회는 장애아동이 종종 그들의 건강과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을 알리고 있다.

*"장애인은 정보와 재정적 자원의 부족, 이동수단 및 지리적인 불편, 신체적인 불편과 보건관리시설에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또 다른 요소로는 장애아동을 위한 구체적 요구에 맞는 보건 관리 프로그램의 부재를 말할 수 있다. 보건정책은 이해하기 쉬어야 하며, 장애 조기 진단,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야 하며, 의치, 이동수단보조, 보청장치, 시각장치와 같은 신체적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 서비스는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공공보건 서비스를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될 수 있어야하고, 가능한 업데이트하여 현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조와 재활전략은 장애아동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성취 가능한 높은 수준의 보건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아동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훈련된 보건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많은 당사국이 국제적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2006, 일반논평 No.9, CRC/C/GC/9, paras. 44~45)."

## 여아

“여아”에 대한 종합토론의 날 보고서에 의하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알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부장적 시스템에 뿌리 깊게 내린 남아선호 사상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조혼, 빠른 임신과 관련된 문제와 함께 종종 가족 내에서 폭력이나 성폭행을 일으키기도 한다...(아동권리위원회, 1995.1, 제8회기 보고서, CRC/C/38. p.49).”

4번째 세계여성회의 대책위에서 다음을 언급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보건 서비스와 영양학적 접근에 대해 여성과 소녀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차별은 그녀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대략 450만 명의 개발도상국 성인 여성이 유년기 시절에 단백질 영양 불량으로 성장발육 저해를 입고 있다...(para 266).” 대책위에서는 “영양적, 신체적, 정신적 보건관리 및 관련 정보” 및 동등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소녀의 발달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도록 제안하고 있다(para. 272).”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증진을 위한 계획과 정치적 선언 및 더 나은 조치에서 는 이사회는 특별회기(2000)를 채택하였으며, 1995년부터 성취한 업적과 장애물에 대한 요약한 부분을 수행(paras. 11, 12)하고 일반적인 보건서비스(para. 72)와 청소년을 위한 것(para. 79)을 구체적으로 권고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9년에 여성과 건강에 대한 일반 권고(여성차별철폐협약 제12조와 관련)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여성의 건강권에 생식 및 성적 건강 권리에 대해 상세한 권고를 제공하고, 그 권고의 목적을 강조하며, ““여성”에 소녀와 청소년.”을 포함하였다. 위원회는 “가정과 직장 내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여성의 영양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또한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력의 다른 형태로 보여 질 수 있다. 여아와 여자 청소년 종종 성인 남성과 가족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며, 원치 않

는 임신과 육체적 및 심리적인 상처에 노출된다. 또한 여성 성기 훼손과 같은 몇몇 전통 관습의 문화는 사망과 장애의 높은 위험을 초래한다.” 당국은 국가가 “여성의 삶에서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킬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권고한다(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No.24, 1999, HRI/GEN/1/Rev.8, pp.331 이하 참조).

## 건강권과 관련된 참여

제12조는 사법 혹은 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가 건강 및 보건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행되도록 요구한다. 아동의 권리에는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계획·수행·모니터링하고, 개별 아동이 치료 참여에 대해 동의·거절할 권리를 포함한다(상세 토론을 위해 제12조 참조).

###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4조 2항

본 위원회는 “아동 초기의 아동권리 실행”의 일반논평에서 삶의 건강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아동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제24조), 모든 아동들이 건강관리와 영양에 가장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 (a) 해당 국가는 어린 아동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깨끗한 식수, 적절한 공중 위생, 적절한 면역, 우수한 영양과 보건서비스,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 대한 접근에 책임이 있다. 영양결핍과 질병은 아동의 육체 건강과 발달에 장기적 영향력을 미친다. 이는 배움과 사회적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며 아동의 잠재력 실행을 위한 가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동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비만과 건강하지 않은 생활방식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 (b) 해당 국가는 아동 건강과 발달, 모유수유, 영양, 위생 및 공중위생에 대한 것을 포함한 교육을 장려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건강한 가족-아동 관계, 특히 아동과 어머니(또는 다른 중요한 보호자)간의 관계를 촉진하기위해 어머니와 유아를 위한 적절한 출산 전후 건강관리가 제공되어야 한다(제24조 2항). 예를 들어, 어린 아동을 위한 적절한 아동중심적인 건강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또래관계에서 개인적인 건강을 보장하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장려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27)."

### “(a) 유아와 아동 사망률 감소하기”

제6조는 “모든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요구한다. 국가는 아동의 생존에 “최대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유아 사망률은 출생 천명대비 0~1세 사이의 유아의 사망가능성을 의미하며, 5세 이하 사망률은 출생 천명 대비 0~5세 사이의 아동의 사망 가능성을 의미한다.

5세 이하 사망률은 아동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지표 중 하나로써 유엔아동기금에 의해 선택된다. 2005년에 5세 이하 사망률은 출생 천 명당 282명(시에라리온)에서 천 명당 3명 혹은 4명(안도라, 체코 공화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와 스웨덴)으로 다양하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대한 비율은 1990년에는 천 명당 199명에서 169명으로 감소; 남아시아는 1990년에 천 명당 129명에서 84명으로 감소; 그리고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1990년에 천 명당 10명에서 6명으로 낮아졌다. 세계비율은 1990년에 천 명당 95명에서 76명으로 20% 낮아졌다(세계아동현황 2007, 국제아동기금). 국제적인 목표는 유아와 5세 이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본 협약에서는 아동기에서 18세까지 동안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해 고려한다.

아동 권리 협약은 사망률이 낮아진 국가를 격려하고, 사망률이 상승하거나 차별적인 방법의 다양한 비율이 증가하는 국가에게는 우려를 표현해 왔다.

예를 들어: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극도로 높은 유아 사망률과 낮은 기대수명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빈약한 보건 사회기반시설, 말라리아와 결핵의 높은 발생과 아동에게의 영향을 주는 제한적인 공중보건, 1993년 보건정책과 1994년 사회정책의 제한적인 실행이 특히 우려된다. 본 위원회는 보건 정책이 지연되고, 단지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성취된다는 것에도 염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주요 건강 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국가적 보건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하고, 공중보건 교육프로그램은 당사국의 영아사망률을 낮추고 기대수명을 높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이런 점에 대해 당사국이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과 유엔개발계획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라고 권고한다(에티오피아, CRC/C/15/Add.144, paras. 52, 53)."

본 위원회는 에티오피아의 3번째 보고서를 심사할 때 거듭 우려를 표했다.

"본 위원회는, 보건부문개발계획의 채택을 긍정적으로 평하였지만, 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과 필요한 보건서비스 시설이 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본 위원회는 5세 이하의 아동과 산모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심각히 염려한다. 본 위원회는 백신의 예방접종이 적고, 말라리아 전파, 낮은 모유수유와 높은 영양실조 발생도 또한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사망률, 백신예방, 영양상태, 모유수유율, 전염병, 말라리아의 관리에 특별하고 긴급한 주의를 기울이며, 지역적으로 적절하게 배분되어 지원함으로써, 건강관리 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도시/지방지역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에티오피아, CRC/C/ETH/CO/3, paras. 53, 54)."

유아와 아동 사망률에 다양한 원인과 이것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제24조 2항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유아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제18조)하고 폭력, 착취와 학대의 다양한 형태로부터 아동을 보호(제19조, 제32~38조)한다.

**“(b) 주요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 제공보장하기”**

다시, “모든 아동”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본 위원회는 얼마아타 선언을 반영하는 주요건강관리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본 위원회는 성교육, 가족계획과 면역 프로그램을 포함한 건강관리 시스템, 특히 출생 관리, 건강 교육의 효과에 관한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러시아 연방, CRC /C/15/ Add.4, para. 20).”*

위원회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두 번째 보고서를 심사할 때, 유아의 높은 사망률의 지속과 보건 사회기반시설 서비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주요건강관리가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러시아 연방, CRC/C/15/Add.110, para. 46).”*

세 번째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위원회는 건강의 기준에 대한 우려를 계속 했다.

*“본 위원회는 개선된 시스템에 의해 설립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주요건강관리의 발달과 관련된 협약 제 24조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려했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의 것을 장려한다.*

- (a) 주요보건관리에 예방적인 개입을 강화하고;*
- (b) 의료에 공공 지출을 증가하고;*
- (c) 일반적인 염분의 요오드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것의 충분한 실행을 보장하고;*
- (d) 결핵 사망률을 감소시킬 노력을 계속하고;*
- (e) 의료 전문가들을 훈련시키고 모유수유 실행을 개선시킬 국가모유위원회 설립을 고려하라(러시아 연방, CRC/C/RUS/CO/3, paras. 52, 53).*

“(c)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고려하며, 주요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식수 제공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다시, 주요건강관리를 강조한다.; 본 위원회의 논평은 영양, 깨끗한 식수와 환경오염의 위험에 관한 기본적인 이슈를 강조한다. 주요건강관리로 접근하고 제공하는 것은 종종 지방지역의 아동과 빈곤 속의 아동에게 부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자주 언급되었다.

## 영양

영양은 또한 제24조 2항의 하위 문단에서도 언급된다. 국가는 특히 부모와 아동에게 영양의 기초 지식 보급을 보장해야 한다. 협약 제27조(생활의 적절한 기초)는 특히, 영양, 의복과 주거와 관련하여 물질적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당국가에게 요구한다.

1969년 사회진보와 개발에 관한 선언에서, “기아와 영양부족을 없애고 적절한 영양에 대한 권리 보장”(제 10조 (b))의 “주요 목표”에 열거돼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음식, 의복, 주거, 보건관리 및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의 기준에 대한 권리가 있다...(제25조)”고 명시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생활의 적절한 기준으로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동일하게 인식한다... “적절한 음식”과 기아로부터의 해방은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권리에 포함된다(제11조 1항).

영양에 관한 국제의회(로마, 1992년 12월)는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안전한 음식의 접근은 각 개인의 권리이다”라고 인식하는 세계 영양 선언과 실행의 계획을 준비했다. 선언은 “국제 인도주의법과 관련하여 음식이 정치적 압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음식 원조는 정치적 제휴, 지리적 위치, 성별, 연령, 인종, 종족이나 종교적 신분 때문에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선언. paras. 1, 15).

1999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 -“모든 권리를 누리기 위한 중대한”- 것에 관한 일반 논평을 발간했다. “근본적으로, 기아와 영양부족 문제의 근원은 음식의 부족이 아니라, 음식의 접근 부족이다. 즉, 그 중에서 빈곤, 넓은 세계, 많은 인구로 인해 식량의 접근이 힘들기 때문이다.”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의 “핵심 내용”은 “개인적인 식사 공급의 양적, 질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으며, 부적합한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문화적으로 접근가능성 있는 음식”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간섭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적절한 음식의 권리가 “모든 남성, 여성과 아동, 개인 혹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음식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때” 실현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적절한 음식의 권리는 칼로리와 단백질, 다른 특정 영양소의 최소 패키지의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 적절한 음식의 권리는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당사국은 자연 혹은 다른 재해의 상황에서라도 기아를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핵심 의무를 가진다.

일반논평은 “적절한 음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희생자는 국내적, 국제적인 수준에서 효과적인 사법적인 절차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폭력의 모든 희생자는 상환, 보상, 만족에 대해 적절한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국내 옴부즈맨과 인권 위원회는 음식의 권리에 대한 위반을 다루어야 한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12, 1999, HRI/GEN/1/Rev.8, p.65 이하 참조).”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양실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그것을 종결하는데 다방면 접근을 위한 필요를 강조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비만과 섭식 장애(거식증과 폭식증)를 언급해왔다.

*“...위원회는 도시지역의 아이들 중에서 과체중과 비만뿐만 아니라, 학교 점심 프로그램을 포함한 음식의 선택에서 부족한 영양 실행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과체중과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하고 영양적인 실행을 증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필라우, CRC/C/15/ Add.149, paras. 46, 47).”*

"위원회는 거식증과 폭식증의 높은 발생과 청소년의 알코올 소비의 유행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거식증과 폭식증의 사례에서 의료와 심리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도록 장려한다(노르웨이, CRC/C/15/Add.126, paras. 36, 37)."

위원회는 노르웨이의 세 번째 보고서를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위원회는 섭식 장애(폭식증과 거식증)의 높은 발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부적절한 식이요법과 신체적 활동의 부족의 결과로 아동의 과체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 논평 No.4(2003)를 고려하여 아동과 청소년 건강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당사국이 섭식 장애의 발생에 대해 다루고 청소년 사이에 건강한 생활방식을 증진할 조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한다(노르웨이, CRC/C/15/Add.263, paras. 31, 32)."

### 깨끗한 식수

2002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 조약 제11조와 12조를 참조하여 식수의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을 채택했다. "식수의 권리는 인간 존엄성에서 생명을 이끄는 데 필요불가결하다. 그것은 다른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식수의 권리의 요소는 인간 존엄성,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적절해야 한다. "식수의 적절성은 용적 측정의 양과 기술에 대한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식수는 경제적 상품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식수의 권리의 실현의 방법은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실현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 위원회는 유효성, 질, 물리적, 경제적 접근가능성, 물의 이슈에 대한 정보의 비차별성과 접근성을 강조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교육기관과 가정 내에서의 적절한 식수의 부족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것"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식수가 없는 교육기관에 적절한 식수의 제공은 위급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15, 2002, HRI/GEN/1/Rev.8, paras. 1, 10~12, 16(b), pp.105 이하 참조). 위원회는 37단락에서 국가의 핵심 의무로 제시한다.

## 환경오염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적이고 특별한 사건으로부터 환경오염이 아동권리실천에 손상시키는 영향에 대해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물 공급, 해양 오염, 그리고 공기 오염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사법적 및 다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공기와 수질 오염과 환경 퇴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련하여, 위원회는 지역 불균형에 대해 우려한다. 더불어, 아동과 부모들이 위생실행에 관하여 부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생태학적 고품폐기물 관리법(Republic Act No. 9003)과 대기오염방지법(Republic Act No.8749)을 포함하여 국내 환경법의 실행을 강화함으로써 인구와 환경 퇴화를 감소하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하고;

(b) 학교에서 환경적 보건 교육을 소개함으로써 환경적 건강 사안에 대한 아동의 지식을 증가하고;

(c)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인식의 접근을 증진시키고, 특히 주변의 지역, 부모와 아동에게 위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필리핀, CRC/C/15/Add.259, paras. 60~61)."

"위원회는 특히 아마존의 유전 개발 지역에서 아동의 건강 및 환경적인 위협의 높은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협약의 제24조 2항 (C)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오염을 포함하여 환경 퇴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다(에콰도르, CRC/C/15/Add.93, para. 24)."

위원회는 에콰도르의 두 번째, 세 번째 연합 보고서를 심사할 때 이런 우려를 반복 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적인 협력과 쌍방합의를 통해 환경퇴화와 오염문제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환경적인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에콰도르, CRC/C/15/Add.262, para. 54)."

**“(d) 산모를 위한 출산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 보장하기”**

1990년 아동 행동실행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은 ”...유아사망률 특히 영아사망률의 높은 원인은 조기 임신, 저체중아 및 조숙아, 안전하지 않은 출산, 신생아 파상풍 등과 연관돼 있다...”라고 언급했다(para 16). 5세 이하 아동의 사망의 1/5는 거의 출산전후에 원인에 있다.

유엔총회의 아동에 관한 특별한 회기의 결과 문서는 당사국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모자사망률의 감소는 보건의 우선사항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여성 특히 예비 어머니가 될 청소년에게 강조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산과관리를 준비시키고, 산모보건 관리를 잘 정비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 높은 수준으로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며, 산후 관리 및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행동 강령은 “출산 전후 관리, 조산 관리, 신생아 관리 서비스에 접근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강조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para. 37(1), (6)).

위에 언급한 것처럼 2005년에 착수된 산모와 영아, 아동을 위한 새로운 국제 파트너십은 산모와 아동보건에 초점을 두어 중요성을 강조한다. 임신기에서부터 출산까지 산모와 아동을 관리하는 것은 출산이 어머니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위원회는 전통적인 출산을 포함하여 출산을 지원하는데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위원회는 사망률과 이른 시기의 임신보건에 대한 해결을 강조했다(추가 토론을 위해 제24조 2항 (f)참조-가족계획 교육과 서비스).

**“(e) 모든 사회구성원은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환경위생시설과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받기”**

제24조의 이번 문단은 세계정상회담의 행동강령 및 4번째 여성의 세계회담에서 보건교육과 정보의 중요성과 지원, 아동의 보건과 보건관리서비스의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강조된다. 보건과 기초 교육, 교육의 달성은 다른 계획의 목표가 인정되고 반영하는데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7조는 대중매체의 잠재적인 역할을 증진한다(제17조 참조). 제18조는 당사국이 부모에게 아동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하고, 아동권리위원회는 자주적 양육과 가족교육을 요구했다(제18조 참조).

## 모유수유

모유수유 증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긍정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그것의 장점에 관한 교육을 하고 상업적 대체품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도전적인 것이 그 관점이다. 긍정적인 교육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준은 1989년 성공적인 모유 수유로의 WHO/UNICEF 10단계이다.

1981년 모유 대체식품에 관한 마케팅 국제 규약은 세계건강총회에 의해 채택되었다(WHA Resolution 34.22, 1981). 규약은 “유아를 위한 안전하고 적절한 영양을 제공하는 것, 모유 수유의 보호와 증진, 그리고 적절한 마케팅과 분배, 적절한 정보에 기초하여 모유대체식품이 필요할 때, 그것들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함”을 목표로 한다(규약, para 1).”

1990년에, 모유수유의 지원, 보호, 증진에 관한 이노센티 서약에서 1995년 4가지 행동 목표의 하나로서 국가적인 행동을 포함했다. 세계건강총회(WHA)는 당사국에 반복적으로 규약과 세계건강총회(WHA) 결의를 채택하라는 권고를 반복했다. 규약은 당사국에 “원칙과 목적에 영향을 주는 행동강령의 정보를 사무총장과 매년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명기한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세계보건총회에게 2년마다 규약의 실행 상태에 대해 보고하고, 당사국에게 요청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paras. 11.6, 11.7).

2002년에 55번째 세계보건총회(WHA55/2002/REC/1, Annex. 2)와 유니세프(UNICEF) 이사회에 의해 추천된 유아와 어린 아동 모유를 위한 세계적 전략은 유아와 어린 아동 모유를 보호, 증진하기 위한 행동을 위한 적절한 틀을 제공했다. 세

계적 전략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정의하였다, 어머니와 가족이 6개월 동안 유아에게 모유 수유하는 것을 보장하고, 계속된 모유수유와 함께 그 후 6개월 동안 적절한 보완음식을 소개하고 특별한 환경을 위해 최고의 이유식을 실행하기, 출생 시 저체중 유아나 HIV와 비상상태에 노출된 어머니의 유아와 가족들 포함. 세계적 전략은 산모의 영양과 아동의 건강간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인식하고 산모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증진시켜야 한다.

2005년 이노센티 선언을 추적하면, 15년 동안 유아와 어린 아동 이유에 대한 놀랄만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당사국은 부적절한 이유 실행(대체 모유수유를 하거나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보건과 생존에 큰 의미를 갖는다. 어떤 다른 예방적인 개입보다 모유수유만으로 매일 3,500명 이상의 아동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다.” 2005 이노센티 선언은 1990년 선언과 2002년 세계적 전략이 행동을 위한 기초로 남아있다고 언급한다. 그것은 “우리의 아동을 위한 인생에서 최고 시작을 위해,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달성과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권의 실현을 위해” 긴급하다고 언급하며 행동을 위한 상세한 것을 제공하였다.

국제유아식네트워크(IBFAN)는 유아와 어린 아동의 질병률과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며 공공이익집단을 형성했다. 국제유아식네트워크(IBFAN)는 최상의 유아 모유수유 실행의 보호, 증진, 지지하고 그들의 어머니와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유아식네트워크(IBFAN)는 국제규약과 세계보건기구결의의 보편적이고 충분한 실행을 위해 활동한다([www.ibfan.org](http://www.ibfan.org) 참조).

위원회는 당사국에 의한 규약의 실행이 모유수유의 이익에 대한 객관적 정보로의 부모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임을 인식하며, 24조의 의무를 실행한다. 그것은 일관적으로 규약을 따르는 것을 장려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유아용 유동식의 상업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보건 시설에 있는 산모들에게 모유수유를 증진할 것을 권고한다...(레바논, CRC/C/15/Add.54, para. 34)."*

레바논의 두 번째 보고서를 심사할 때, 위원회는

"...당사국에 의해서 우유 대체품의 무료 배급을 금지하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언급하고 유아용 유동식의 상업적 마케팅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언급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유수유를 증진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권고한다...(레바논, CRC/C/15/Add.169, paras. 44, 45)."

그리고 세 번째 보고서 심사에서, 위원회는

"...개선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의 비율은 여전히 비교적 낮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유아 식이요법의 추가와 함께, 출생 후 6개월 동안 모유수유를 권장하며, 교육을 통해 아동의 영양 상태와 건강한 모유수유실행의 증진을 개선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다...(레바논, CRC/C/LBN/CO/3, paras. 52, 53)."

위원회는 HIV 보균 어머니로부터 아동에게 전염되는 것을 우려한다. 2000년에 세계보건기구는 HIV 보균 어머니로부터 아동에게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TF를 대신하여 HIV와 유아 모유수유에 대한 토론을 포함한 기술적 자문을 개최하였다. 자문으로부터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개정된 새로운 지시는 HIV와 유아 모유수유를 포함하여 발전 되었다. 기초적인 행동은 위한 틀(모든 중요 UN 단체에 의해 추천된)은 모유수유를 통한 HIV 전파의 리뷰, 의사 결정자들을 위한 지침, 건강관리 책임자와 관리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매뉴얼 및 연구자와 보건관리 상담을 위한 훈련매뉴얼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안내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다. 2006년에 기술적 자문은 인권의 기준을 반영하여 공중보건을 광범위한 동의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재정의 하였다.

"HIV/AIDS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총평 No.3, 위원회는 유아와 어린 아동들에 대한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엔 기관들에 의해 권고된 전략들의 이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들은: (a)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한 HIV 감염의 일차적 예방, (b) HIV 감염 여성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임신의 예방, (c) HIV 감염 여성으로부터 그들의 아기들에게로 HIV가 유전되는 것을 예방하고; (d) HIV 감염 여성,

그들의 아기 그리고 가족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기를 포함한다. 어머니로부터 아동에게로의 HIV 유전을 예방하기 위해, 당국은 필수적 약품들, 즉 항바이러스 약품들, 적절한 분만과 산후 관리 그리고 임신부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에게 자발적 상담 및 테스트 서비스들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가들은 유아의 모유 선택권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높은 HIV감염 빈도를 보이는 집단에서일지라도 다수의 유아는 HIV에 감염되지 않은 여성으로부터 태어난다. HIV음성인 여성의 영아와 그들의 HIV상태를 알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 본 위원회는 모유수유가 최선의 양육방법이며 동 협약 제6조 및 24조와 일치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HIV에 양성인 어머니를 가진 영아의 경우 모유수유가 HIV전염 위험성을 10~20%정도 높일 위험이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나, 모유수유가 부족한 경우 아동이 HIV가 아닌 전염성 질병이나 영양실조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진다. 유엔 전문기관은 대체 수유방법이 가능하고, 실행가능하며, 받아들일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경우에 HIV에 감염된 어머니로부터의 모유수유를 전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출생 후 첫 달 동안은 전적인 모유수유를 하고, 대체 수유가 가능해지는 대로 이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3, 2003, CRC/GC/2003/3, para. 27)."

## 사고 예방

국가들로부터의 보고서들은 사고 예방에 대해 많은 정보를 거의 주지 않으며, 위원회로부터의 논평도 거의 없어 왔다. 제3(2)항에서, 국가들은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 및 관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고 예방이 부모의 책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것들 중에서는 국가의 방책(교통 및 환경 정책들, 적절한 진찰의 제공, 가정의 안전 원조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충분히 증진될 수 있는 점들이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사고는 아동사망 및 상해의 주요원인이 된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아동 및 청소년 상해 예방: 행동에 대한 세계적 법률(Child and adolescent injury prevention: a global

call to action)을 발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아동 및 청소년 상해 예방영역에서 그들의 임무를 증대시키고 있다. 세계 보고서와 아동과 청소년 상해 예방을 위한 5-10년간의 세계적 전략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일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들이 채택하고 따라야하는 권고사항과 시행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상해에 대해서 세계적인 패턴을 제공할 것이다. “행동강령에 대한 필요”는 매년, 전 세계의 수백만의 아동들이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해 죽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상해와 폭력은 중요한 공헌 요소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2년 18세 이하의 아동 중 875,000명 상해로 사망하였다고 추산하였고, 최근 유엔아동기금(UNICEF)에 의해 수행된 공동 연구에서는 이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생애 첫해를 지나서 생존한 아동 중에서 사망의 원인은 상해라 할 수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상해는 높은 사망률과 연관 된다. 일부는 상해로 인해 사망하기도 하고, 몇 천 명의 아동은 장애를 가지게 된다. 사회에 대한 이러한 상해의 영향은 엄청나다. 매일, 수 천 명의 가족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으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아동들이 그들의 상해의 결과들에 대처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와 익사가 아동들 사이에 가장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원인들이며, 화상과 추락이 그 뒤를 따르며, 고의적 폭력 또한 상당한 타격을 준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국가 아동의 95퍼센트 이상이 고의적이지 않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다. 가난한 가정에 있는 아동이 좀 더 유복한 가정의 아동보다 상해를 더 많이 입는 것에 대해 사회경제학적 차이를 나타냈다.

행동에 대한 요구는 다음을 강조 한다. “아동의 상해는 순전히 ‘우발적’이거나 무작위한 사건들은 아니다, 상해는 예측 가능하며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상해는 공공의 건강 문제이며, 더 이상 무시될 수 없고 실로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현재 상해에 대한 주의는 불가피하며, 상해로 인한 사망을 세계적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예방적 접근에 대한 개념에 이의를 제기할 때이다... 유엔은 2000년 5세 이하의 아동 사망률을 2015년까지 천 백만에서 3분의 2로 줄이기로 결의했다(밀레니엄 개발 목

표 제4번). 1세 이후의 아동들의 사망원인인 상해와 폭력을 줄이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한 조력이 될 것이다.”

## HIV/AIDS의 과제

UN에이즈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에이즈 발병 상태에 대한 전 세계적 개괄을 전한다; 2006년 12월, 0세에서 15세 사이 230만 명의 아동들이 에이즈와 가까이 생활하고 있다(170만 명에서 350만 명 사이). 530,000명은 새로 최근에 전염되었다(410,000명과 660,000명 사이). 그리고 380,000명은 에이즈로 사망했다(290,000명에서 500,000명 사이). 위원회는 HIV/AIDS가 아동 권리의 실현을 막는 심각한 위협이라 강조하며, 1998년 “에이즈와 함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총회의 날을 개최했다(CRC/C/80). 총회에 뒤이어, 위원회는 권고안들을 상세히 체계화했고, 2003년, “HIV/AIDS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No.3을 공표했다(원문은 [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 참조).

1996년 설립된 HIV/AIDS에 대한 공동 유엔 프로그램(UNAIDS)은 10개의 기관들을 함께 모으는 공동 후원 프로그램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마약통제프로그램(UNODC),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세계은행. 공동 유엔 프로그램(UNAIDS)은 국가 정책에서 추구될 우선순위들을 개발했다. 2001년 6월, UN 총회의 특별 회의는 HIV/AIDS와 맞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노력의 협조와 강화를 고양시키기 위한 전 세계의 가입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HIV/AIDS의 모든 양상에서 문제를 비판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의를 열었다(2001년 6월 27일 유엔 총회 결의 S-26/2 참조).

위원회는 최종 견해에서의 “기초보건 및 복지”로 분리된 보고서를 검토하고자 하며, HIV/AIDS에 더 큰 관심을 쏟는다. 예를 들어:

*“의장에 의해 취임된 국가 에이즈 위원회, 국가 에이즈 조정 위원회는 HIV/AIDS에*

관한 국가 정책, 어머니에서 아동으로의 전이 예방 프로그램 및 에이즈 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립을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여전히 매우 높은 HIV/AIDS 발병률, 특히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전통적 관행과 예방 조치하는 정보가 부족한 가임여성들 사이에 발병률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HIV/AIDS와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NO.3 (CRC/GC/2003/3)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을 훈련시키고, 예방에 관한 교육 캠페인 수행, 어머니에서 아동으로의 전이 예방 프로그램 강화, 보편적인 항바이러스 약물 제공, AIDS 고아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개선함으로써 HIV/AIDS의 확산과 영향에 맞서 싸우는 데에 조직적 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보츠와나, CRC/C/15/Add.242, paras. 50, 51)."

위원회는 또한 보츠와나에 아동, 특히 HIV/AIDS에 의해 영향 받은 아동들과 가족들을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들을 더 할당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역 및 다른 자유무역협정은 아동 권리의 이행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보장하며, 더 구체적으로 아동과 다른 HIV/AIDS 희생자들에게 효과적인 약을 무상으로 혹은 최소한의 값에 살 수 있게 제공하도록 실현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보츠와나, CRC/C/15/Add.242, para. 20)."

"국가 에이즈퇴치지원 정책(2005~2008)의 착수와 2002년 11월 30일 국가 에이즈퇴치 위원회의 2002/360 법령의 채택을 환영하지만, 위원회는 HIV에 양성인 아동들이 거의 항바이러스 약을 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소아 HIV/AIDS에 관한 포괄적인 데이터와 정책이 부족하며, 어머니로부터 아동의 HIV/AIDS가 높은 수준으로 전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예방이 적절히 필요한 지식습득과 위험성을 낮추는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청소년과 아동에게 충분히 강화시키지 못한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것들을 권고한다:

- (a) HIV 양성인 아동에게 항바이러스 치료를 제공하고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무료 HIV 테스트의 범위를 확대하라;

(b) HIV/AIDS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시설과 의료적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라;

(c) HIV/AIDS에 감염되고 영향 받은 아동들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에이즈 걸릴 위험이 높고 취약 계층에 속한 청소년들 사이에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HIV/AIDS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방안을 강화하라;

(d) 에이즈 퇴치지원 국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정책(2005~2008)을 충분히 이행하라.;

(e) 더욱이 HIV/AIDS에 관한 유엔 공동 프로그램과 유엔아동기금으로부터의 더 나은 기술적 자문을 구하라."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HIV/AIDS 및 아동 권리, 그리고 HIV/AIDS와 인권에 대한 국제적 지침들에 관한 일반적 논평 No.3(2003)에 주의를 기울어주길 바란다(E/CN,4/1997/37)(공고, CRC/C/COG/CO/1, paras. 60~63)."

#### "(f)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들을 위한 지도 그리고 가족계획 교육 개발하기"

예방적 건강관리, 건강 증진 및 지침에 관한 정책은 모든 국가들에 존재하며 세계 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및 다른 기관들에 의해 장려된다.

위원회는 보건 교육과 더불어 부모교육을 장려해왔다. 제18조는 국가들에 대해 "당사국이 아동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 양육을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제18항 참조).

####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예방적 건강관리의 한 부분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예방접종비율이 떨어질 경우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비율을 상당히 높인 국가에겐 축사를 전 해오고 있다. 여기에 다시, 차별이 이슈화 된다.

2000년 백신 및 예방접종을 위한 새로운 전 세계적 동맹(GAVI)을 시작하였다(www.gavialliance.org). 그것은 GAVI 동맹 자원들이 최빈민국들에게 2006년까지



새로운 백신(B형 간염, 뇌수막염, 그리고 황열)을 소개하고 기본적 아동 백신(소아마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그리고 홍역을 포함한)에 대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고했다. 추가적으로 대략 1억 3천 8백만의 아동들이 새로운 백신을 통해 보호되었고, 약 2천 8백만의 추가적인 아동들이 기본적 백신(2006년 11월, 2006년 세계보건기구 면역 조치, 백신 및 생물학적 약제 기획부)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 가족계획 교육 및 서비스들

몇몇 당사국들은 제 24조 2항 (f)에 관하여 유보나 철회를 했다. 예를 들어, “... 아르헨티나 공화국은 가족계획과 관련된 문제들이 윤리적 도덕적 원칙들과 부합하여 부모들의 고유 영역의 관심사라고 생각하며, 이 조항 내에 책임 있는 부모를 위한 교육 및 부모들을 위한 지도를 제공하는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이해한다.” 교황청의 유보는 교황청은 제 24조 2항에서 그 구절인 “가족계획 교육 및 서비스들”을 교황청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즉,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가족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폴란드는 “협약 제 24조 2항 (f)에 관하여, 폴란드 공화국은 가족계획 및 부모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들이 도덕성의 원칙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유보하였다(CRC/C/2/Rev.8, p.13, 23, 36). 각각의 경우에서, 위원회는 그 선언들이나 유보들의 철회를 요구한다 (더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제1조 참조).

“HIV/AIDS와 아동 권리”에 관한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 건강 및 발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적 논평은 성에 관해 정확하고 꾸밈없는 정보와 적절한 서비스들의 이용에 대한 청소년들의 권리들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십대의 높은 임신 비율에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보건 교육 및 가족계획 정책들을 제안해왔다.

가족계획은 초기 혹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를 제한하고 자녀 사이 터울을 둘 수 있게 하고, 어머니들이 현재 있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며, 산모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가족계획 문제들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의 관심만큼 소년들과 젊은 남성들에게 공동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인구 및 발달에 관한 국제회의 보고서(카이로, 1994년)는 하나의 원칙으로서 “출산 보건 관리는 강제 없이 넓은 범위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A/CONF.171/13, 원칙 8). 당사국은 특별히 남성의 책임을 강조하고, 가족계획, 태아, 산모, 아동보건을 포함한 성과 출산의 활발한 참여, 원치 않는 임신과 고위험성임신의 예방, HIV를 포함한 성병의 예방을 강조한다(A/CONF.171/13, 제4.26 및 4.27절).

### HIV/AIDS와 아동 권리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 3, 2003년: 요약.

“HIV/AIDS의 전염병은 아동이 살고 있는 세계를 변화시켰다. 수백만의 아동이 질병에 감염되었고, 사망하였으며, 그들의 가족과 사회에 HIV가 만연함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아동에 대한 HIV/AIDS의 영향을 통제하는 것은 발달 단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조화롭고 제대로 설정된 노력을 할 것이 필요하다. 아동 및 HIV/AIDS의 문제는 주로 의학적이거나 건강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그리고 문화적 권리. 협약은 특히 네 개의 일반적 원칙들은, 행동에 대한 강력한 틀을 제공한다.

차별: 위원회는 제2조 하의 차별의 근거들의 목록 중에서, “다른 상태”는 아동이나 그들의 부모의 HIV/AIDS 감염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사회적,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차별은 아동의 HIV/AIDS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차별은 정보, 교육, 건강 혹은 사회 보호 서비스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막는다.

최선의 이익: HIV/AIDS 정책들은 최우선적 고려사항으로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들의 원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성인들을 위해 설계되었다. 아동의 권리와 욕구는 HIV/AIDS에 대한 국가 의무 이행의 충점으로 두어야 한다.

삶 그리고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권리: 아동들은 그들이 생존하고 발달하도록 하는 경제 및 사회적 정책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효과적인 예방 정책들은 청소년들의 삶을 현실로 인정하며, 국가는 청소년들의 삶이 지배적인 문화적 규범들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성을 포함한 아동의 행동 및 생활방식들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참여할 권리: 중재개입은 그들의 결정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아동들이 그들의 필요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고안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그들에게 더욱 이익이 된다.

애로사항: “문제의 존재 자체의 부정이나, 금기와 낙인 등의 문화적 관행과 빈곤과 아동을 위하는척하는 태도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치적, 개인적 참여에 대한 애로사항 중 일부이다.” 당사국은 이러한 장애물을 충분히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화의 이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에 대한 권리: 아동들은 공식적인 교육과 비공식적인 경로(예, 거리의 아이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를 통해서 HIV/AIDS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적절하고 시기에 맞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검열, 보류 또는 의도적으로 성교육 및 정보를 포함한 보건관련 정보를 잘못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한다. 교육은 아동에게 적절한 정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력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태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에 민감한 보건 서비스들: 아동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려한 지지적인 서비스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동의 보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가가기 편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판단적이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

HIV 상담 및 검사: 당사국들은 모든 아동들을 위한 자발적이고, 비공개적인 HIV 상담과 검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만 한다. 아동의 발달능력이 아동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동의를 요하는 것인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제 16조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에 따라, HIV 검사결과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의 HIV 상태에 대한 정보는 동의 없이 부모를 포함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머니에서 아동으로의 전염: 영아와 유아는 임신, 출산, 분만 및 수유를 통해 HIV에 감염될 수 있다. 당사국은 유엔 기관들에 의해 필수 의약품들을 지급하고, 임신한 여성과 그들의 배우자에게 항바이러스 약품의 준비, 적절한 출산 전, 출산 혹은 분만 후 관리 및 자발적인 상담 및 검사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들을 이행해야 한다. HIV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들에 대한 상담은 다양한 수유의 선택의 위험성과 이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치료에 대한 접근: 당사국은 아동에게 필요한 HIV 관련 약품,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총체적인 치료와 관리가 차별적이지 않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필수약품이 최저비용으로 지역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약 산업과 협상해야 한다.

연구에서의 아동의 참여: 당사국은 HIV/AIDS 연구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치료와 아동에의 영향을 감소를 위한 연구를 포함해야 한다. 당사국은 성인에 대한 충분한 실험이 실행되어야 하며, 아동에 대한 위험성 및 장점을 공개해야하고 아동이나 부모 모두의 적절한 동의가 얻을 때까지 연구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동들: 위원회는 극빈층 아동, 무력충돌의 상황에 놓인 아동,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아동, 장애아동, 이주민, 소수민족, 거리의 아동뿐만 아니라, 난민상태, 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HIV/AIDS에 취약성이 높음을 강조한다. 취약성 감소는 아동, 그들의 가족 및 공동체가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자력화 할 것을 요구한다.

HIV/AIDS에 의해 영향 받아 고아가 된 아동들: 이러한 아동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생등록 및 신원의 보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당사국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고아의 유산 및 재산권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아이들은 친척이나 가족 구성원의 보호 하에서 형제자매가 함께 생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체의 지원을 받은 확대가족의 경우 고아들을 위한 최상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국가는 가능한 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관리의 제공해야 한다. 아동은 가정에서 지원받아야 하며, 수용시설은 마지막의 의존 조치가 되어야 한다.

성적 및 경제적 착취에의 취약성: 국가들은 성적·경제적 착취, 인신매매로부터 HIV/AIDS에 영향 받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들은 또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 학대는 HIV에 감염된 아이들에게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HIV/AIDS에 감염되거나 영향 받는 것의 결과로서 폭력을 받기 쉬울지도 모른다. 무장 충돌의 상황 속에서 아동의 HIV/AIDS감염과 학대 사이의 관계는 구체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중독성 물질 남용: 술과 마약을 포함한 중독성 물질의 사용은 그들의 성적 행위에 대한 아동의 통제를 행사할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아동의 감염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살균되지 않은 장기로 주사하는 관행은 더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국가들은 중독성 물질들을 남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중독성 물질에 노출시키는 요소들을 다루어야 한다.

권고안들: 위원회는 “AIDS와 함께 세상에 사는 아동들”에 대한 그 총회의 날에 나타난 권고안들을 재차 단언한다(CRC/C/80). 총회는 또한 국가들에 다음의 것들을 요구한다:

- (a) 이 총평의 권고안들은 아동에 관한 유엔 총회의 특별 회의(2002)에서 채택된 것들의 고려와 아동 중심의 권리에 근거하여 아동권리를 조화시키는 효과적인 전략들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가적, 지역적 HIV/AIDS와 관련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라;

- (b) 재정적, 기술적 및 인적 자원을 국내, 공동체 기반의 행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제적 협력의 맥락에서 최대한으로 배분하라;
- (c) 현행법들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반차별적인 법안을 제정하고, 특히 실제 혹은 인식된 HIV/AIDS 상태에 근거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라;
- (d) 아동의 권리들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것에 책임이 있는 국가적 메커니즘의 임무 속에 HIV/AIDS 전략들을 포함시키고 HIV/AIDS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 위반에 관한 고소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검토 절차의 설립을 고려하라;
- (e) 그것들이 아동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성별과 나이를 세분화되고, 가능한 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포함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HIV관련 데이터 수집과 평가를 재평가하라.
- (f) 협약 하의 그들의 보고서에서, 국가 HIV/AIDS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들은 아동과 그들의 권리를 명백히 인정하는 범위를 포함시켜라; 또한 다음 5년 동안의 그들의 계획된 행동 프로그램들의 윤곽을 그려라.

위원회는 관련 유엔 기관들과 다른 관련 국제기구들에 국가적 수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와 계속해서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한다. 개발 협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은 HIV/AIDS 전략들이 아동의 권리들을 완전히 고려하도록 설계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촉구 받는다. 국가들은 HIV/AIDS 서비스의 준비 속에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HIV/AIDS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민 사회 집단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3, “HIV/AIDS와 아동의 권리”, 2003, CRC/GC/2003/3. 전체 원문은 [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 참조.)

보고서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의 반영, 교육,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조기임신을 보호하고, 성교육과 HIV/AIDS와 다른 성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출산과 성적인 건강서비스를 강조한다. 또한 서비스는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지원하고 지도하며,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게다가 인생설계기술과, 건강한 생활방식, 중독성 물질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para. 6.15).”

보고서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그들의 부모의 지원 및 지도와 더불어 그들의 성적 건강 및 임신에 대한 남성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들이 그러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위한 통합적인 성교육 및 서비스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도록 했다.

카이로 회의의 동의된 목표들 중 하나는 실질적으로 모든 청소년 임신을 줄이는 것이었다(A/CONF.171/13, paras. 7.37, 7.45).

제4차 여성 세계 회의의 행동 강령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5세에서 19세 사이 천오백 만 명이상의 소녀들이 매년 출산한다. 매우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되는 것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합병증 및 산모 사망의 높은 위험성을 수반한다. 어린 어머니들로부터 출산된 아동들은 더 높은 수준의 질병률 및 사망률을 가진다. 빠른 시기의 출산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여성들의 교육, 경제 및 사회적 향상에 대한 방해가 된다..” 더욱이: “성폭력 및 HIV/AIDS를 포함한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들은 아동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며, 여자아이들은 보호되지 않은 조숙한 성관계에 남자아이들보다 더 취약하다..(행동강령, paras. 268, 269).”

베이징(2000)에 대한 후속 유엔 총회의 특별 회의는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들의 개발에 대한 비슷하고 상세한 제안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청소년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해야 한다. 교육과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특별하고 친근감 있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출산과 성적인 보건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사생활에 대한 권리, 기밀성, 의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아동권리협약이행에서 아동의 권리에 실행에 방향과 지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A/RES/S-23/3, para 79(f)).

### 청소년 보건서비스

국제회의와 유엔기구들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는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보건서비스의 개발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해왔다. 2003년 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청소년 보건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No.4를 채택했다(요약문은 아래박스 참조 전문은 [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매번 변함없이 청소년 보건 문제를 상세히 평가했다. 출산, 성 보건과 HIV/AIDS의 위험, 성 관계로 전염되는 질병에 과도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위원회는 흔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률(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제2조 참조)과 담배, 술과 마약 사용의 증가 또한 우려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낙태를 무죄로 인정하는 2006년 5월 10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했는데, 그 경우는 10대 소녀들 사이에 산모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10대 임신율의 증가, 성과 출산에 대한 적합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의 부족과 이 부분에 대한 자원의 부적합한 배치 또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협 요인은 소녀들의 자신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청소년 임신사고로도 개개인의 인성발달을 제한하여 해로운 영향을 끼치며, 사회에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난의 덫을 만든다. 더욱이 위원회는 청소년의 자살률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에서 성과 출산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청소년의 감성에 맞는 비밀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는, 위원회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 논평 제4호를 고려해 모든 청소년을 위한 출산 보건 서비스를 장려하고 확보할 것을 권고를 받아들이고(CRC/GC/2003/4), 모든 청소년을 위한 출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조장하고,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정 경우의 낙태를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2006년 5월 10일의 판례를 받아들였고, 위원회는 당사국이 안전히 의료기관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적합한 전략이 인식을 고양시키는 원천으로 기여할 것이며 상담 서비스와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대책들을 권고하고 있다 (콜롬비아, CRC/C/COL/CO/3, paras. 70, 71)"

"유엔인구활동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세계보건기구(WHO), 에이즈에 대한 유엔 공동 프로그램(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같은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청소년 보건 문제를 다루려는 당사국의 활동방안을 언급하는 반면, 위원회는 십대들의 출산과 관련한 보건 교육과 서비스를 이용의 제한성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불충분하다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시험 프로젝트로 '친-청소년' 센터의 설립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새로운 대책들을 반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에이즈에 대해 2003~2006 국가적인 정책계획을 완성한 것과 당사국내의 HIV 발생률이 낮게 지속해 온 것을 감사를 전한다.

위원회는 알제리에서의 긴 기간의 정치적 폭력의 여파에 관하여 정신적 상처 입은 아이들에 대해 응해준, 예를 들어 정신 건강의 국가적 프로그램을 이용한 당사국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청소년들 사이에 자살률의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청소년 건강과 발달에 관한 일반논평 No.4(2003)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에서의 성과 임신에 대한 보건 교육과 같은 청소년 보건서비스를 청소년 감성에 맞고, 비밀유지를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방안을 강화하길 권고한다. 또, 위원회는 그 이상의 재정과 인적 자원 모두 더 많은 노력을 권하며,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치료와 예방을 보장하기를 권고한다(알제리, CRC/C/15/Add.269, paras. 58, 59)."

"술과 담배 소비를 다루기 위한 높은 수준의 대책들과 새 법률을 인정하는 반면, 위원회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담배와 술 소비 수준에 대해 우려하고, 당사국은 영양, 흡연, 술, 운동, 그리고 개인위생과 같은 건강한 생활의 활동지침이 부족하다고 언급한다."

"위원회는 또한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정보, 특히 임신과 출산 보건에 관련하여 부족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피임약이 재정의 범위에 있지 않아 당사국의 피임 사용에 제한이 생기고 10대 임신과 낙태의 높은 발생률이 있는 것을 우려했다."

####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3: 요약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의 주체이다. 청소년은 능력발달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받으며, 발전하는 그들의 역량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유권자로서의 청소년의 특정 관심사와 청소년의 보건과 발전을 장려하는 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언급한다. 일반논평은 인식 고양과 국가로의 지도와 후원 제공을 목표로 삼는다.

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는 자들은 신중히 그들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가정환경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관리를 받았을 때 완전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될 능력을 가진 능동적인 유권자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참여에 권리를 행사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부모, 아동과 함께 또는 아동 관련 종사자는 '신뢰, 정보공유, 경청하는 능력을 키우고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청소년의 보건과 발전의 권리에 따라 당사국은 성적 동의와 혼인에 대하여 남, 여 동일한 최저 연령을 정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개인의 의사표명체계와 공정한 소송절차를 보장하는 사법적인 혹은 적절한 비사법적인 교정기구로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당사국은 청소년의 보건 문제에 관련된 충고와 상담에 관한 권리를 포함해,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엄격히 지켜주길 장려한다.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동행 없이 상담을 받기에 충분히 성숙하다고 간주되는 청소년들은 사생활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으며 치료를 포함하여 비밀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모든 종류의 차별, 폭력, 무시,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이 연령대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특히 장애가 있는 취약한 청소년에게); 보호조치는 협약과 부합해야만 한다.

체계적이고 각 분야로 분류된 자료 수집은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을 관찰하는 데 필요하다; 정보가 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해되고 적합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이 분석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입법, 정책,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의 성장에 일치되도록 발전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적절한 도움과 정보, 진실한 관계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성적인 행동과 위험성 있는 삶의 양식을 해결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열린 토론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소년의 부모는 자신과 자녀의 안녕을 위해 후원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은 그들의 건강과 발달을 지키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는 담배, 술, 다른 물질의 사용과 남용, 안전한 성적행동과 사회적 행동, 식이요법과 신체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소년의 취약함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개인적인 행동과 환경적 요소-예를 들어, 빈곤 무장분쟁 혹은 사회의 배제,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모든 종류의 이민-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한 강조한다. 예방적인 정책에 많이 투자함으로써 당사국은 취약성과 위험을 과감히 줄일 수 있으며, 청소년이 조화롭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발달할 수 있도록 비용효율이 높은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다.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a) 가정, 교내, 청소년이 거주하는 모든 형태의 시설, 청소년의 일터 그리고 넓게는 사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b)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그들의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특히 정보에 동의하고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삶의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적절하고 연령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적절한 건강 행동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 (c) 정서적 성적, 출산보건을 포함한 보건서비스는 청소년의 욕구에 적절하고 민감하여야 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d) 소년과 소녀들이 자신의 보건과 발달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에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
- (e)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폐지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근무 환경과 조건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그들의 인권향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노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f) 청소년을 폭력이나 도로교통사고와 같은 고의적인 혹은 비 고의적인 상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g) 청소년을 조흔, 명예살인, 여성 성의식과 같은 모든 해로운 전통적인 관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h) 특별히 취약한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에게는 충분히 고려됨을 보장해야 한다.
- (i) 정신질환의 예방과 청소년의 정신보건의 촉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국은 모든 청소년의 특정 욕구와 권리에 민감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a) **가능성:** 기초적인 보건 관리는 성보건과 출산보건, 정신보건에 특별 관심을 기울이며 청소년의 욕구에 민감한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 (b) **접근가능성:** 모든 청소년들은 차별 없이 보건 시설, 재화와 서비스를 알아야 하며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비밀은 보장되어야만 한다.
- (c) **수용가능성:** 협약의 조항과 원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동시에, 모든 보건 시설, 재화와 서비스는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성에 민감해야 하며, 의학윤리를 존중하고 청소년과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 수용적이어야 한다.
- (d) **질:** 보건서비스와 재화는 과학적, 의학적으로 적절해야 하며, 이는 청소년을 돌보기 위해 훈련된 직원, 충분한 시설과 과학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을 필요로 한다.

당사국은 정부 내의 조직적인 협조와 공동 작업을 요구하는 다분야적 접근을 채택하길 권유한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중보건과 다른 서비스는 특히, 개인 혹은 전통적인 전문직 종사자, 전문단체, 제약업과 취약한 청소년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장려 받고 도움 받는다. 다분야적 접근은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비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적절할 때에 국제연합의 전문기관, 단체, 국제적인 비정부기구, 양자 간 원조 기관, 국제전문단체와 다른 비국가적행위자와의 협력을 추구하도록 장려 받는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청소년 보건과 발전", 2003, CRC/GC/2003/4. For full text see [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http://www.ohchr.org/english/bodies/crc/comments.htm).)

"위원회는 당사국이 청소년의 보건에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청소년 보건과 발전에 관한 일반논평 제4항을 고려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성과 출산보건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청소년에 민감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과 보호를 포함한 청소년 보건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길 권유한다. 위원회는 청소년의 담배 흡연과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건강한 습관 선택을 위해 고안된 캠페인을 시작하길 권유한다(러시아 연방, CRC/C/RUS/CO/3, paras. 54~56)."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사고, 자살, 폭력에 관한 청소년 보건 정책을 장려하고 출산 보건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이길 권유한다. 이 점에 있어서 위원회는 또한 출산 보건에 대한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남성을 포함시킬 것을 권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청소년 임신의 부정적 영향과 HIV/AIDS나 성병(STD)에 감염되거나, HIV/AIDS 혹은 성병(STD)에 취약한 아동의 특정 상황과 같은 청소년 보건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연구가 행해져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당사국은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적 자원의 배치, 청소년 친화적인 상담,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개발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유 받는다.(베냉, CRC/C/15/Add.106, para. 25)."

위원회는 베냉의 두 번째 보고서를 검토할 때 이러한 권고사항들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발달보건, 정신보건, 출생보건문제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정신과 보건문제에 충분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음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특히 원하지 않는 임신의 높은 발생률로 인한 여성청소년의 상황, 안전하지 않는 낙태로 인한 합병증, 이러한 것을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 내의 약물남용과 술 소비 정도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며, 이러한 관습들이 금지되지 않음에 대해 우려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청소년 보건과 발전에 관한 일반논평 No.4(2003)를 고려하여 다음을 이행하기를 권고한다.

- (a) 청소년 보건문제의 본질과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특히, 출산보건교육을 통해 청소년 임신과 성적 접촉으로 감염되는 병(STI)을 예방하는 청소년 보건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식화 하여야 한다.

- (b) 청소년에 민감한 정신보건과 출산보건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알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c) 청소년의 술 소비와 약물남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약물 남용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보장한다.
- (d)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으로부터 기술적 원조를 추구한다(베냉, CRC/C/BEN/CO/2, paras. 55, 56)."

### 정신보건

위원회는 여러 국가내의 정신보건서비스의 부족 -긴 대기자 명부, 아동 전문 정신과 의사의 부족, 심리학자의 부족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청소년 보건과 발전에 관한 일반논평 No.4”에서도 언급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정신보건도움의 부족과 특히 널리 퍼진 가족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발달적 욕구를 고려하며, 특히 가정의 불안정성과 HIV/AIDS에 영향을 받은 아동에 초점을 맞춰 아동의 정신보건도움을 보장해야 함을 권유한다(중앙아프리카공화국, CRC/C/15/Add.138, paras. 62, 63)."

노르웨이의 두 번째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위원회는 다양한 청소년 정신보건 문제와 적절한 서비스의 부족에 대해 우려했다.

"위원회는 대기자 명단이 길고, 정신과 의사 및 심리학자의 부족으로 인한 아동 정신보건서비스와 전문가의 접근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에게 정신건강서비스의 적절한 접근 방법을 조사하고, 특히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의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를 권유한다(노르웨이, CRC/C/15/Add.126, paras. 40, 41)."

위원회는 노르웨이의 세 번째 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려했다.

"위원회는 아동과 젊은이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반기는

반면, 도움과 보호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의 연장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 및 청소년 전문 정신과의사와 심리학자의 부족에 대해 우려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지연되지 않게 제공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신보건보호의 발전을 가속하기를 장려했다."

"젊은 여성과 남성의 죽음 중 25%를 차지하는 청소년의 높은 자살 발생률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건서비스자원을 강화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노르웨이, CR/C/15/Add.263, paras. 33~36)."

위원회는 아동의 '주의력결핍장애와 과잉행동'의 진단에 관해 약물을 과잉 처방하는 데에 염려하며 여러 국가들에게 다른 형태의 치료 혹은 관리가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주의력결핍장애(ADD)는 오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각성약물이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과잉 처방되고 있음에 우려했다."

"위원회는 정신각성제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인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포함하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주의력결핍장애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하고, 행동장애를 다루기 위해 다른 형태의 관리와 치료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호주, CRC/C/15/Add.268, paras. 49, 50. ; 핀란드, CRC/C/15/Add.272, paras. 38, 39)."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 협약 제24조 3항**

본 협약의 제19조(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함)와 제2조의 비차별의 원칙과 더불어 제24조 3항은 당사국이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전통관습을 검토하길 요구한다. 아동의 신체를 변형시키는 관습 등 건강의 위협요인은 의학적으로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과 비위생적인 상황으로 인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아동은 마취제의 부족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제24조 3항은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한다. 설령 성인이 건강에 해로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폭력적 관습을 용인하는 사회의 법률 하에 있다면, 성숙한 아동도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초안에서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안은 NGO 집단이 하였다(E/CN.4/1986/39, pp.10, 11; Detrick, p.350). 여러 국가의 대표들은 여아와 젊은 여성의 성기를 절단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관습인 남아에게만 차별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본 협약의 실무집단의 초안에서 논의된 바 있다(E/CN.4/1987/25, pp. 8~10; Detrick, p.351).

여러 대표들은 '전통관습'이라는 용어가 '여성과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 관습에 관한 실무그룹 보고서(1986)'에 명시된 모든 관습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했다(E/CN.4/1986/42). 보고서는 여성의식, 얼굴흉터나 그 밖의 형태의 절제, 양육의 강요, 조혼, 여성 스스로 자신의 수정 능력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금기와 관습을 '전통관습'으로 정의하였다. 일부 국가의 신부지참금, 명예범죄, 남아 차별적 대우와 같은 전통관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본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조혼과 법적혼인연령의 차별을 반대해왔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률과 관습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부모의 동의유무와 관계없이 혼인 최저연령을 남, 여 모두 18세로 설정하길 강력하게 권고하였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2003, the HG H2003/4. para. 1).

실무집단은 양수천자검사법 또는 태아 성별 검사법은 몇몇 국가에서 성별을 근거로 낙태를 하게끔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성별에 따른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para. 164; 제6조).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0년 일반권고에서 ‘여성할례 등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이 지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며, 당사국이 ‘여성할례의 근절을 목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일반권고는 또한 당사국이 ‘국가보건정책 중 공중보건관리에서 여성할례를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략에는 전통적 출산보조원 등 보건 종사자에게 여성할례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특별 책임 부여 등이 있다(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No.14, 1990, HRI/GEN/1/Rev.8, p. 298).

2001년 총회는 여성이나 여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혹은 통례적인 관습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국가들에게 다음의 상세한 사항들을 권고한다.

“여성 성기절제 등 여성이나 여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이고 통례적인 관습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모으고 이를 배포할 것;

여성 성기절제 등 여성이나 여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이고 통례적인 관습들을 금지하는 국가의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러한 관습의 가해자를 기소할 것;

만약 지금까지 관련 법률 및 국가정책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기구를 설립할 것;

특히 포괄적이고 이용가능한 성보건, 출산보건 서비스를 만들고 이와 같은 관습의 위험정도를 보건보호 제공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희생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지원서비스를 설립하고 강화할 것;

보건과 관련된 직원을 교육 하는데 있어서 여성과 여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전통적이고 통례적인 관습, 여성의 HIV/AIDS에 대한 취약성, 또한 이러한 관습으로 발생하는 성 접촉성 감염에 명확히 초점을 맞출 것...(유엔총회결의문, A/RES/56/128, 2001/12/19).”

1994년 인구 및 발달에 대한 국제회의의 행동계획은 다음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상당수 국가에서 여성의 성행위를 억제하는 관습은 엄청난 고통을 초래해왔다. 관

습 중 하나는 여성성기절제이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para. 7.35; [www.unfpa.org/index.htm](http://www.unfpa.org/index.htm) 보라).” 행동계획은 “정부와 지역사회가 여성성기절제의 관습을 중단시키고, 이와 비슷한 불필요하고 위험한 관습들로부터 여성을 보호조치하기”를 촉구한다. 관습을 없애기 위한 조치들로는 지역지도자와 종교지도자가 참여하는 강력한 지역사회프로그램, 관습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담, 성기절제를 당한 여성을 위한 적절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관습을 없애기 위해 여성과 남성을 위한 상담도 제공되어야 한다(para. 7.40).”

세계 아동 폭력 실태를 담은 아동폭력 보고서(2006)는 10억에서 14억에 이르는 여성이 성기절제 혹은 절단을 받았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정을 인용한다. 2006년 10월에 총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해로운 전통관습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며, 정부가 2009년 달성목표를 세웠다(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의 독립전문가의 보고서, 유엔 총회, 61차 회의, 2006. 8, A/61/299, paras. 98, 116). “여성 성기절제(FGM)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관계자에게 이를 금지시키고 이들에게 교육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이들이 인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회의 지식, 신념, 태도와 관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다. 종교와 지역사회 지도자, 보건전문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부모 혹은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고서는 또한 그 외의 많은 관습이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고 해를 끼치는 관습으로부터 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아동폭력에 관한 세계보고서, 국제연합, 제네바, 2006, Chapter 3, pp.88~90).

본 협약의 대원칙적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관습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종류의 생식기 절단 의식;
- 속박, 상처내기, 화상 입히기, 낙인찍기, 문신, 피어싱;
- 물속에서 숨을 참도록 강요되는 것을 일례로 하는 통과 의례들
- 아동에게 폭력이나 건강에 해로운 것을 행하는 아동에 대한 고의적 차별 대우 — 예를 들어, 남자 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급식; 장애아동이나 특정한 날에 태



어난 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 식품 금기 등—

- 아동들이 마녀 또는 악마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들
- 폭력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원칙들
- 조혼과 지참금

본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여성 생식기의 손상 및 절단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외에 계속되고 있는 해로운 전통 관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해 왔다. 일련의 보고서의 최종 견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동들을 추천해왔다. 예를 들어:

"본 위원회는 여성 생식기 손상을 금지하는 제98조-196조 법률을 공포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아동 특히 여아의 건강을 해치는 강요된 혼인이나 조혼, 지참금 분쟁, 방혈과 같은 성인 의식 그리고 부두교 성직자로 훈련받는 여아의 의식 등 여러 관습이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해로운 전통 관습을 근절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여성 인권 신장부서와 유니세프(UNICEF)의 협력 하에 1998년에 단행된 여성 생식기 손상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평가하라;
- (b) 현존하는 조치들을 강화하고, 타 국가와의 협정 및 국가 간 공동프로그램을 설립하라. 해로운 전통 관습을 효과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
- (c) 대중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가족과 광범위한 혈족 그리고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여성 생식기 손상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여아뿐만 아니라 미래 가족들에 대한 심리학적, 물리적 건강과 복지에 해로운 전통 관습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라;
- (d) 여성 생식기 손상을 시행하는 자들이 다른 대체적인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보조하고 허용하라;
- (e) 여아들의 최대 이익이 언제나 보호될 수 있도록 부두교 사제들과의 토론을 계속하라;
- (f) 무엇보다도, 유니세프(UNICEF)와 여성 인권 신장부서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라(토고, CRC/C/15/Add.244, paras.56, 57)."

"본 위원회는 2003년 5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의회에서 해로운 전통 관습과 부부 강간을 포함한 가정 폭력 금지에 대한 법안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당사국에서 만연하고 지속되고 있는 해로운 전통 관습, 특히 여성 생식기 손상에 관한 관습뿐만 아니라 방혈과 아동, 특히 여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아동의 영적 살해에 관하여 우려스럽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해로운 전통 관습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금지조항과 충분한 개입이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여성 생식기 손상을 거부하는 여아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고, 관습의 희생양인 여아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서비스도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함으로써, 신체정신적으로 아동 행복에 해로운 모든 전통 관습을 근절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러한 관습을 금지하는 연방 입법을 채택하고, 특히 여성 생식기 손상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뿐만 아니라 위협에 처해 있는 여아와 여성 생식기 손상을 거부하는 여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 같은 해로운 전통 관습의 희생양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나이지리아, CRC/C/15/Add.257, paras. 56~58)."

"본 위원회는 여아에게 불안, 보건의 위험, 잔인함을 야기하는 카스트 제도, 듀키(Deuki), 큐마리(Kumari), 주마(Jhuma), 바디(Badi), 캄라리(Kamlari), 차우파디(Chaupadi)와 같은 해로운 전통관습이 팽배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법적 금지조항이 없고 전통관습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를 알리고 개입하는 당사국의 부서가 부재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체정신적으로 아동의 행복에 해로운 모든 전통 관습을 근절하는 모든 조치를 가능한 빨리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러한 관습을 금지하는 입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네팔, CRC/C/15/Add.261, paras. 67, 68)."

"본 위원회는 UNFPA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진 수많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여성 생식기 손상의 관습을 철폐하기 위해 취한 노력들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여성 생식기 손상이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여전히 당사국 내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려된다. 또한 조혼을 포함한 다른 해로운 전통 관습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도 우려를 표명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여성 생식기 손상을 금지할 수 있는 입법상의 조치를 취하고 아동의, 특히 여아의 발달과 건강에 해로운 전통 관습들을 없애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광범위한 혈족과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연계하여 관습의 시행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해로운 관습을 없애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관습시행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대체적인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우간다, CRC/C/UGA/Co/2, paras. 55, 56)."

본 위원회는 여성 생식기 손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여성 생식기 손상 문제를 금지하고 기소하는 법적 조치들을 환영하는 한편, 이민 공동체인 오스트리아와 해외국가에서는 여아와 젊은 여성들과 연계된 관습들을 행하기 위해 그 과정들을 실행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진 후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종교 공동체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 캠페인을 수행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영토 외에서도 여성 생식기 손상을 법에 의해 처벌 가능하도록 만들어, 이러한 관습들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오스트리아, CRC/C/15/Add.251, paras. 43, 44)."

본 위원회는 영토 밖에서도 적용 가능한 입법을 제안해 왔다.

"본 위원회는 국가에 의해 행해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영토 바깥에서 실행되는 여성 생식기 손상으로부터 사법권 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해 강하고 효과적인 캠페인에 착수하고, 이러한 해로운 전통 관습으로부터 아동 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영토 바깥에 적용 가능한 입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네덜란드, CRC/C/15/Add.114, para. 18)."

본 위원회는 남성할례가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조건 하에서 시행되는 것에도 우려를 표해왔다.

"본 위원회는 위험한 의학 조건 하에서 남성포경시술이 시행되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시행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교육을 시키고, 위험한 의학 조건에서의 남성포경시술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남아프리카, CRC/C/15/Add.122, para. 33)."

"본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남성포경시술과 관련된 보건의 위험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레소토, CRC/C/15/Add.147, para. 44)."

본 위원회는 남아프리카에서의 처녀성 시험에도 우려를 표해왔다.

"본 위원회는 또한 건강을 위협하고 여아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처녀성 시험의 전통 관습에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처녀성 시험이 소녀들에게 미치는 신체정신적 영향에 대한 연구 착수를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협정의 제16조와 제24조 3항의 관점에서 당사국이 관습의 시행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전통적인 태도의 변화를 장려하고, 처녀성 시험의 관습을 없앨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남아프리카, CRC/C/15/Add.122, para. 33)."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4조 4항**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EF) 그리고 많은 다른 국제연합(UN)과 UN 연관 기구들은 특히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도록 연계되어 있다. 협력은 원조, 조언 그리고 기술적 보조, 연구에서의 협력 등을 포함한다(제4조).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24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책임 있는 모든 단계의 정부 부서와 기관들과의 협력? (제24조는 특히 보건, 복지, 교육, 계획과 환경부서가 연관되어 있다)
- 관계있는 비정부 기구/시민 사회 파트너들을 확인하였는가?
- 모든 아동들에 대해 사법권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법률, 정책 그리고 관습들이 본 조항과 모순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검토하였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의 확인과 진보의 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 아동권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어떠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가?
- 다른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인식하고 있는가?
-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러한 조치들은 전체적으로 협정을 이행하려는 전반적인 정부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예산 분석과 필요한 자원의 할당?
- 감시와 평가에 관한 절차의 개발?
- 제24조의 의미를 성인과 아동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는가?
- 적절한 교육과 경각심 각성에 있어서의 진전(제24조와 관련해서는 보건노동자, 사회노동자 그리고 교사들, 또한 부모교육과 아동과 청소년에 있어 보건적인 증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다)

### ● 제14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당사국이 제24조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가용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왔는가?

당사국의 법률이 다음과 관련하여 제12조 1항과 2항(아동의 관점에서)을 존중하고 있는가.

- 모든 복지 관리 서비스의 계획과 발전?
- 아동의 개별적 건강관리와 연관된 의사결정?

사법권 내의 모든 아동들이

-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가?
- 질병의 관리와 건강의 원상회복에 관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가?
- 모든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같은 체계의 같은 수준의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 소녀들도 건강관리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다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가 수집되었는가.

- 유아 사망률?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 나이 많은 아동의 사망률?
- 차별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해체된 자료를 제공하는가?
- 국가 내에서 유아와 아동 사망률에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감소가 있는가?
- 국가가 필수적인 의학적 보조와 아동의 보건관리에 관한 정의를 내려 왔는가?
- 사법권 내의 모든 아동들이 필수적인 의학적 보조와 보건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 아동들이 정보, 상담 그리고 지원을 포함하는 친숙한 복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청소년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보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는가?
- 기본적인 보건관리의 증진이 우선적으로 채택되고 있는가?
- 제24조 하에서 국가가 다음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관해서 적절한 설정을 해오고 있는가?
  - 유아, 5세 이하, 18세 이하 그리고 어머니의 사망률?
  - 모든 여성이 태아기와 출산 도중에 숙련된 보조원의 지원을 받고 고위험의 출산과 응급상황에 의료지원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지?
  - 모든 부부들이 임신이 너무 이르지는 않는지, 너무 촉박하거나,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 아동 중에서 심각하거나 보통정도의 영양실조의 감소?
  - 저체중 출산율의 감소?
  - 철 결핍 빈혈의 감소?
  - 비타민 A 결핍의 근절?
  - 안전한 식수에의 접근?
  - 배설물 폐기의 위생적인 수단에서의 접근?

- 기니벌레 증후군(guinea worm disease)의 근절?
- 환경오염으로부터의 보호?
- 급성 회백수염의 근절?
- 신생아 파상풍의 근절?
- 홍역의 근절?
- 높은 수준의 예방주사 적용범위의 유지?
- 수다병으로 인한 죽음과 수다병 발병률의 감소?
-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죽음의 감소?

국가가 보건 교육, 보건 증진에 관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고 대중과 특히 부모와 아이들에게 다음과 관련해 지원을 보장해왔는지

- 아동 건강과 영양?
- 모유수유의 장점?
- 위생과 환경적 공중위생?
- 사고의 예방?
- 예방적인 보건관리?
-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포함한 가족계획 교육과 지원?
- HIV/AIDS 와 관련한 예방 교육과 정보?
- 국가는 HIV/AIDS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모유수유에 관한 지침의 이행을 보장하는 적절한 행동을 취해 왔는가?
- 국가는 모유수유 대체품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코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해 왔는가?
- 국가는 모든 집단의 아동들이 어떠한 것도 건강에 해롭지 않거나, 모든 전통 관습을 협정의 다른 조항들과 양립 가능하도록 검토하였는가? (특히 제3조, 제6조, 제19조)
- 국가는 아동의 건강에 해로운 모든 전통 관습을 폐지하거나 협정의 다른 조항들과 양립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는가?
- 국가는 아동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 문제에 연관되어 있는가?

● **주의사항**

협약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협약의 모든 조항들은 상호의존 한다. 협약 제 14조 역시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일반원칙**

제2조: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개별아동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차별 없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

제3(1)조항: 아동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서든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제6조: 삶에 대한 그리고 가능한 최대의 생존과 발달을 누릴 권리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 존중: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아동의 견해를 들을 기회를 주는 것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24조의 실행과 특별히 관련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부모 지침과 아동들의 진화하는 능력들

제17조: 적절한 정보에 관한 접근과 매체의 역할

제18조: 부모 공동의 책임, 당국의 부모에 대한 지원

제19조: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

제25조: 대우에 관한 주기적인 검토의 권리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

제28조: 교육의 권리

제29조: 교육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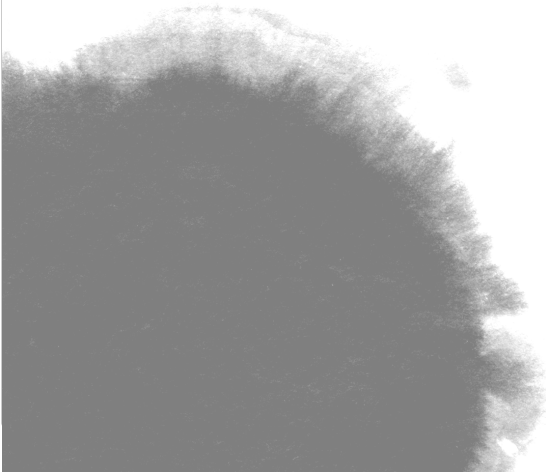
제32조-36조: 다양한 종류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제39조: 아동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통합



# 25

## 제25조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정기조사





## 제25조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정기조사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a child who has been plac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care, protection or treatment of his or her physical or mental health to a periodic review of the treatment provided to the child and all other circumstances relevant to his or her placement.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요약

제25조는 아동 건강의 관리, 보호, 치료를 위하여, 관계 당국이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의 상황 및 치료를 정기적으로 심사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가정 외에서 생활하는 아동, 장애아동, 난민아동, 기숙학교에 거주하는 아동,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 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 소년원 거주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 심사는 양육지정의 적합성과 치료 및 돌봄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는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형태 중 하나인, 국가에 의한 아동 학대를 예방하도록 돕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국가는 양육 배치 할 곳이 아동에게 세상의 모든 곳 중 최상이라는 진실 된 믿음으로 아동을 배치하지만, 그러한 주거 공간에서 아동은 무시당하고 학대를 당한다.

제25조는 실행가능 한 법적 권리와 보호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항이

기도 하다. ‘관리, 보호, 치료에 대한 정기적 심사’에 대한 규정은 아동이 양육 지정된 곳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높은 수준의 기준, 목표, 실천을 확립하도록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양육 지정된 아동이 외부와의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 효과적인 건의 시스템 등이 보장·마련된다.

##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이 양육 지정 조치한 아동

양육지정 조치를 하는 ‘관계 당국’은 행동을 취할 적절한 자격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전문적 지식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 25조와 관련된 양육지정 조치는 국가 또는 사설기관에 의해 행해진다. ‘민간 영역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아동권리 수행자로서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정기 회의에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본 협약의 제 25조는 아동 건강의 관리, 보호, 치료를 위해 관계 당국이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의 상황 및 치료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민간영역에 대한 기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31회기 보고서, 2002.9,10, CRC/C/121, para. 653)."*

양육지정 조치는 위탁가정, 입양가정, 그룹홈, 아동시설, 이주난민 수용소, 병원, 소년원, 치료원, 기숙학교 등에 배정된 것을 의미한다. 제25조에는 양육지정 조치에 교육이라는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숙학교도 양육지정 조치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기숙학교가 아동의 교육뿐만 아니라 보호도 보장하기 때문이다. 소년원 등 범죄로 인해 지정된 곳도 제25조에 포함하였는데, ‘처벌’도 제25조에 제시된 목표가 아니지만, 소년원 등이 처벌뿐 아니라 아동의 보호까지도 보장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제25조는 민간 기관에서의 양육지정 조치도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민간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한 본 협약의 제정과정에서 부모의 판단으로 인한 양육지정 조치는 정기조사에서 제외하도록 제안

되었다. 비록 이에 대한 내용이 최종 원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부모에 의한 양육지정 조치는 배제된다는 전체적 합의가 있었다(E/CN.4/1986/39, pp.11~13; Detrick, p.360). 그러나 부모에 의해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정기조사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다. 이는 부모에 의해 양육 지정된 아동이 정부에 의해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보다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개인적으로 지정된 아동의 복지도 조사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한다.

*"공적·민간 돌봄 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제 25조 내 용에 따라,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공식적 형태로 양육 지정된 아동의 상태도 체계적으로 심사할 것을 제안한다(기니, CRC/C/15/Add.100, para. 22)."*

*"본 위원회는 제25조의 내용에 따라 비공식적 형태로 양육 지정되어 정기 조사를 받지 못하는 아동(가족 내에서의 입양)의 상태가 염려스럽다. 제 25조에 따라,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공식적 형태로 배치된 아동의 상태를 살펴 보기위한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차드, CRC/C/15/Add.107, para. 22)."*

제3조 3항은 당사국이 모든 기관, 서비스, 시설의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제 3조 3항과 제 25조는 모두 모니터링에 관한 것이다. 다만, 제3조 3항은 기관과 기관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심을 두지만, 제25조는 기관 내 아동의 개별적 발달에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다르다. 즉, 본 위원회는 협약에서 개별 아동과 시설, 기관 등 체계 모두에 대해 모니터링 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한다.

제12조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기 심사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연관된 내용이다. 본 위원회는 정기회를 통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의견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위원회는 분리 및 양육지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정책결정이 아동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파트너로 여겨지지 않는다."*

*아동권리협약의 제 12조에 따라, 본 위원회는 정책결정권자들이 가정 외 돌봄, 양육 장소 변경과정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고 아동의 참여를 촉진시켜 아동의 영향력을 높일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정책 결정 및 수행 전후과정동안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본 위원회는 아동을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특별체계를 확립할 것을 제안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0회기 보고서, 2005.9, CRC/C/153, paras. 663, 664)."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맥락 하에서 해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다. 폴란드에 대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견해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고, 가능하다면 적절한 상담, 지지를 통해 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거나 시설입소보다 다른 형태의 양육기관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관에서 아동 양육지정 조치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라(폴란드, CRC/C/15/Add.194, para. 37)."

본 위원회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의 필수적 요인으로 효과적인 건의시스템을 추천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관을 지정하여 양육지정 조치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며, 가정 외 돌봄 기관에서 독립적인 건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이 자신의 불만을 기관에 말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건의시스템의 확립을 권고한다(그레나다, CRC/C/15/Add.121, para. 18)."

본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시설입소 아동의 양육지정 조치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를 강조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시설입소 양육지정 조치는 자격을 갖춘 다학문적 위원회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양육지정 조치는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사법적 심사뿐만 아니라 아동권리협약 제 25조에 따른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다(몽골, CRC/C/15/Add.264, para. 34)."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탈시설화와 대안적 돌봄 방법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을 채택 실시하고 시설화에 대한 대안적 돌봄 방법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또한 시설 내 아동이 협약의 모든 권리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특히, 시설입소 양육지정 조치는 친가족으로의 복귀 또는 대안적 돌봄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정기 조사 되어야 한다(아제르바이잔, CRC/C/15/Add.100, para. 10)."

이전, CRC/C/AZE/CO/2, para. 39)."

가정위탁 양육도 반드시 정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본 위원회가 제25조에 따라 권고한 정기 조사는 양육지정 결정에 대한 평가보다는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의 질에 초점을 맞춘다. 본 위원회는 위탁아동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때때로는 가족의 재통합을 어렵게 불가능하게 하는 미숙한 결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바버도스, CRC/C/15/Add.103, para. 21)."

"본 위원회는 또한 슈퍼바이저의 훈련 부족, 슈퍼바이저 수의 부족으로 가정위탁으로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에 대한 정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노르웨이, CRC/C/15/Add.263, para. 26)."

## 아동의 양육지정 조치와 관련된 아동의 상황 및 아동에게 제공되는 관리, 치료에 대한 정기 조사

정기 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상이해야 하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규정을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관한 정기회의에서 '개별화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본 위원회는 부모와 분리된 아동의 경우, 개별화의 원칙을 준수하길 바란다. 모든 아동은 특별하며, 부모와의 분리와 시설입소 양육지정 조치는 항상 사례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 해결방법의 개별화란, 아동, 가족, 사회 등 아동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아동에게 맞춤형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결방법의 개별화는 아동의 장기적 발달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아동의 실제적 욕구 파악, 아동과 생물학적 가족과의 관계유지 방법 등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중시하는 방안이다."

"본 위원회는 양육지정 조치에 대한 정기 조사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분리, 시설입소가 항상 '해결방법의 개별화'라는 원칙에 준하여 이루어질 것을 권고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0회기 보고서, 2005.9, CRC/C/153, paras. 667, 669)."

아동의 관리, 치료는 건강을 위한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규제, 아동의 시설 외 세상과의 접근, 교육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아동이 시설 내에서 하는 모든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아동의 양육지정 조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양육지정의 정당성 및 사유를 반드시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위원회는 ‘소년법 운영’에 관한 정기회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본 위원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권 전 양육지정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아동에 대한 관리, 치료 및 양육지정 조치에 대해 정기 조사를 할 권리, 불만사항을 건의할 권리 등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인정된 기본적인 보호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복지라는 구실로 아동을 시설 입소시키는 양육지정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10회기 보고서, 1995.10.11, CRC/C/46, para. 228)."*

다른 종류의 조사도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강제적 양육지정 조치의 적합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본 위원회는 불가리아 정부에게 시설 내 아동을 위한 ‘Guardian ad litem’ 시스템 확립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불가리아, CRC/C/15/Add.66, para. 27). 제37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유의 박탈은 최후의 조치이며 가장 단기간동안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가 박탈된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UN규정의 제2원칙에 따르면, 법적 제재는 반드시 사법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조기석방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아동이 조기 석방에 대한 결정이 논의되고 있다면, 조기 석방이 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한 정기 심사가 필요하다.
- 본 위원회는 ‘코스타리카 최종 견해’ 등에서 임시적 양육지정 조치도 적절한 승인과 정기 조사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위원회는 임시적 양육지정 조치의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이 우려된다. 일부 경우에는 양육지정 조치의 최종 결정을 위한 판결 전에 3년 동안 임시적 양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본 위원회는 임시적 양육배치는 반드시 최단기간동안에만 행해져야 하며, 아동*



권리협약 제 25조에 준하여 정기 조사를 받아야 함을 권고한다. 또한 임시적 양육조치는 부모로부터의 아동분리에 대해 판단하는 초기 단계에서만 이루어질 것을 권고한다(코스타리카, CRC/C/15/Add.266, paras. 33~34)."

- 본 위원회는 아동의 관리, 치료과정에 대해 심사하는 전문가는 다학문적 집단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아동학대의 보호조치이자 아동의 전반적 복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독립된 전문가들이 이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반드시 아동에게 자신에 대한 관리 및 치료에 대해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이를 위한 시스템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기관은 아동의 불만사항을 듣고, 조사하며, 이에 대해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 기관은 아동 중심적 사고태도를 가져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40회기 보고서, 2005. 9, CRC/C/153, para. 684)."

정기 조사는 얼마를 주기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는 당사국의 재량이다. 그러나 강제적 양육지정이거나 매우 엄격하고 극단적인 관리 및 치료가 있을수록, 정기 조사를 더 자주 요구된다. 본 위원회는 룩셈부르크의 불명확한 양육지정 조치와 긴 조사주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본 위원회는 양육지정 조치에 대한 정기 심사가 매 3년마다 이루어지고 소년부 판사가 자주 시설 내 아동을 방문하고 있지만, 아동을 개방형 기관(국가사회교육기관)에 배치할 지 폐쇄형 기관(룩셈부르크 소년원)에 배치할 지를 결정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평가주기도 매우 길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위탁, 시설로의 양육지정은 기간을 고정하여 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한다. 또한 연장이 허용되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양육지정의 상황 및 필요성에 대한 정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룩셈부르크, CRC/C/15/Add.250, paras. 36~37)."

본 위원회는 아동에 따라 개별화된 접근방법을 추천하지만, 모든 아동은 양육지정 조치와 무관하게 정기 조사를 받는 기관에 양육 지정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

“본 위원회는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에 대한 정기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아동의 변화가 뚜렷하게 발생할 때만 아동의 심리검사를 행한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정기 조사 시스템의 구축을 권고한다(모리셔스, CRC/C/MUS/CO/2, paras. 43~44).”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25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모든 정부 부처 중 협약이행과 관련한 부서 및 기관 명단 작성과 그들의 상호협력 (제25조는 사법부, 사회복지, 교육 및 보건부서와 관련됨)
- 협약이행 관련 NGO 및 시민단체 명단 작성
- 모든 법안, 정책, 관행이 본 협약에 부합하여 모든 사법권에 속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 검토.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목표 및 과정지표의 설정이 필요할 때는 이를 포함하는가?
- 아동권리에 도움이 되는 모든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기타 관련 국제기준을 고려하였는가?
- 국제협력이 필요할 때는 이를 포함하는가?

(위의 4가지 전략은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총체적 전략 중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

- 예산분석과 필요한 자원의 할당
-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메커니즘 개발
- 본 협약의 제 25조의 함의를 아동, 성인이 모두 알도록 하기
- 적정 수준의 교육 및 인식제고 방안 마련 (제 25조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법률가, 법관, 아동옹호가, 선생님, 시설종사자, 정신건강 등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포함)

### ● 제25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보호, 돌봄을 위해 다음의 장소로 양육 지정된 각 아동에 대한 정기 조사를 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이행하였는가?
  - 가정위탁
  - 입양
  - 아동보호기관
  - 기숙학교
  - 감옥 및 소년원

- 아동의 신체·정신건강을 위한 장소에서의 관리, 치료에 대한 정기 심사는?
  - 병원
  - 보건소
  - 정신병원
  - 치료센터
- 심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아동의 관리 및 치료 (아동 돌봄의 모든 면을 고려해야함)
  - 아동의 양육지정 조치 (연장의 필요여부 포함)
  - 아동의 견해 (개인적 확인 필요)
- 정기 조사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을 주기로 이루어지는가?

### ● 주의사항

협약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협약의 모든 조항들은 상호의존 한다. 협약 제25조 역시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 일반원칙

제2조: 어떤 배경에도 차별을 함이 없이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을 위한 모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제3조 1항: 아동의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제12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 존중;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의 진술의 기회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 25조의 이행과 이하 조항들의 이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20조: 가정환경이 박탈된 아동

제21조: 입양

제22조: 난민 아동

제23조: 장애 아동

제24조: 보건 서비스

제28조: 교육 서비스

제37조: 자유의 박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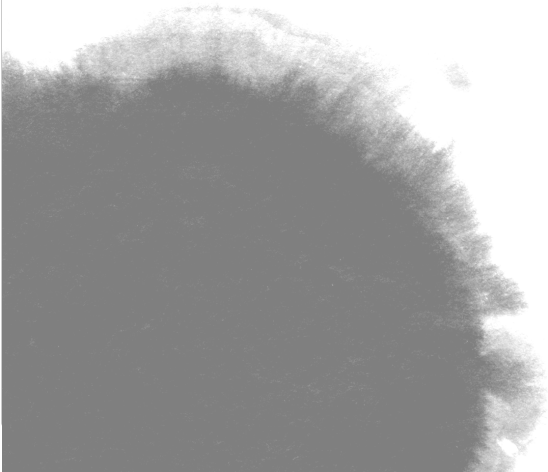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제39조: 건강을 원상태로 돌리는 조치

제40조: 청소년 처벌 시스템



# 26

## 제26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제26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1.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for every child the right to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and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2. The benefits should, where appropriate, be granted, taking into account the resources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child and persons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the child, as well as any other consideration relevant to an application for benefits made by or on behalf of the child.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 요약

제26조는 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다루고 있다.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아동을 책임지는 성인이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일자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을 때(질병, 장애, 양육, 연로 등), 당국은 아동에게 직접 지불되거나 아동을 책임지는 성인을 통해 받도록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는 제26조를 보장하게 한다.

제26조는 제4조의 단서에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입안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명백히 국가 자원의 가용성 내에서 만들자는 제안이 만들어졌으나 이는 제4

조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지각되었다(E/CN.4/1984/71, pp.16~18; Detrick, pp.364~36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보다는 사회보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단어들을 변경했다. 이는 아동의 경제적 안정이 통상은 그들의 성인 양육자의 경제적 안정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또한 이 내용은 제26조 2항의 입안을 이끌어 냈는데, 자력이 부족한 양육자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준국들은 부유한 부모의 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우려가 표현되었다. 그러나 입안자들은 아동이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명백히 동의했다(E/Cn.4/1984/71, pp.16~18; Detrick, p.367).

###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아동의 권리

ILO(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조약(No.102)은 출산, 질병, 실업, 고용 재해 그리고 폐질(장애)로 인해 성인이 근로하지 못할 때, 가족과 노인들에 대한 의료보장과 급여를 포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요소들을 설정한다.

1990년대의 전반, 협약의 시행 초장기에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두드러졌다. 엄청난 국가 부채와 사회보장 지출의 제한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경제 철학과 더불어, 종종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원조와 연관된 경제침체는 다수의 비준국들이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을 동결시키거나 삭감하도록 이끌었다. 이 기간에 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종종 아동들에 대한 이러한 삭감의 파국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 이후 정부, 기여국과 국제 금융 기구들은 국가가 모든 인구에게 기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으면 시장 전략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1995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는 강력한 사회보장 안 전망을 권고했다. 5년 후 코펜하겐 회의의 후속 특별총회에서 빈곤퇴치에 관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다국 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보고하였지만 그것은 마치 다국적 기업의 권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위협으로 특징 지워 질 것이다(국제연합총회 결의, 제24회기, 2000.12.05, A/RES/S-24/2). 같은 해, UN(국제연합)은 시급한 목표를 담고 있는 새천년 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절대빈곤 및 기아 근절”이었다. 이 목표의 구체적인 대상은 전면적인 근절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야심을 품고 있다. “2015년까지 1일 수입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과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의 비율을 절반으로...(결의안, 제55회기, 2000.9, A/RES/55/2, para. 19, p.5)” 2006년에 UN(국제연합)은 목표에 있어 진보를 다룬 보고서를 발행했다. 첫 번째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90년에 12억이 넘는 사람들이 - 개발도상국 인구의 28퍼센트 - 절대빈곤 속에서 살았다. 2002년에는 그 비율이 19퍼센트까지 감소했다. 그 기간 동안 절대빈곤율은 대부분의 아시아에서 급속히 감소했는데 아시아에서는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2억 5천만 명 가량 줄어들었다. 진보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에서는 그다지 빠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동남아시아나 오세아니아보다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빈곤율은 1990년과 2002년 사이에 거의 변하지 않았고, 동남 유럽과 독립국 연합의 전환경제 에서는 증가했다. 이 두 지역은 이전에는 최악의 빈곤형태를 거의 근절했고, 최근의 서베이 데이터에서는 그들의 빈곤율이 다시 감소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빈곤율이 근소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1억 4천만 명 가량 증가했다. 많은 사하라이남 국가들은 현재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기적인 성장에 관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아를 줄이겠다는 목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만성 기아 - 그들의 일용한 양식의 수요충족인 음식이 부족한 사람의 비율에 의해 측정된 - 는 개발도상국에서 감소되어졌다. 그러나 전반적인 진보는 기아를 겪는

사람들의 수를 감소시킬 만큼 빠르지 못해, 1995년과 1997년 사이 그리고 2001년과 2003년 사이에는 증가했다. 개발도상국의 약8억 2천 4백만 명의 사람들이 2003년에 만성 기아의 영향을 받았다.

“최악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부 아시아 - 은 최근 들어 진보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들의 진전은 1990년대 초반에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했고 기아를 겪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하고 있다. 동부 아시아는 특별한 경우이다. 1990년 초반에 기아를 겪는 사람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시 상승세에 있다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06, UN 경제사회부(DESA), 뉴욕, 2006.06, pp.4, 5).”

2002년에 UN 총회는 아동과 관련된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보고에서 - A World Fit For Children(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 총회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난의 전면적인 근절을 포함하여 여러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세계적인 운동에 가담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아동에 대한 투자와 그들의 권리의 실현이 가난을 근절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확신으로 단결하여, 단일 세대 내에서 가난의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는 우리의 맹세를 재확인한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고질적인 가난은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어 최대의 장애물로 남아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고용기회의 창출, 가내부업 실시를 위한 소규모융자금 대출 사업에서부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까지, 그리고 외채 탕감에서부터 공정한 세계 무역거래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이다. 왜냐하면, 가난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한 잠재력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난 퇴치와 불균형의 완화는 개발을 위한 노력의 중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최근 개최된 주요 유엔회의, 특히 새천년 정상회담 등에서 합

의한 목표와 전략 및 후속조치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가난 극복의 국가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세계적인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와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무역, 투자, 자본 유치, 정보 기술을 포함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 전세계 생활수준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동시에 사회 내부적으로 그리고 사회 각 계층 간에는 심각한 재정 위기, 사회 불안정, 가난, 배제, 불평등을 포함한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에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촉진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충분한 참여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특히 개발이 가장 부진한 국가들과 과도기의 경제체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심각하다. 사회, 경제 발전의 혜택이 모든 국가로 확대되지 않는 한, 세계경제로부터 소외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몇 개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전체가 세계경제로부터 소외당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동의 유익을 위해 제공된 여건 기회의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공평하고, 법에 근거를 두고, 예측가능하고, 차별이 없는 다국간의 무역체도와 금융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 특히,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는 아동으로 하여금 정보와 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세계화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도전이 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들과 경제가 과도체제에 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는데 있어 특별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세계화의 과정 속에는 모든 국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각 국가 간에 동등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들과 경제가 과도체제에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발달을 이룩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들 국가들이 빠짐없이 효과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국가적,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책과 실행방안이 수립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아동에 관한 국제연합총회 결과문서, 제27특별회기에 대한 특별위원회보고, 2002, A/S-27/19/Rev.1, paras. 7, 18, 19).”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몇몇 국가들은 사회 보장에 관한 아동의 접근성을 보호하려

고 시도했다. 위원회는 그것에 대해 환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의 아동이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낙오 된다 것을 우려로 제한하였다. 그들의 사회 보장 체계에 만족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아동 빈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환영하였으나,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지방분권화가 복지 혜택의 불공정한 분배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새로운 우려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비록 당사국이 포괄적인 공공 지원 체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들 간의 그리고 사회 계층 간의 불균형이 커질 수도 있게 보인다. 이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에게 사회적인 소외와 긴장과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위원회는 특히, 가난한 가족들에 있어서 사회적인 혜택으로의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대중이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의 권리를 더욱 정통하도록 협약의 제2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권고한다(스웨덴, CRC/C/15/Add.101, para. 18)."*

그리고 스웨덴의 세 번째 보고서를 검토할 때 위원회는 이러한 우려가 여전히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유감을 표했다(스웨덴, CRC/C/15/Add.248, para. 4).

부국의 아동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빈곤을 경험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심지어 최빈국도 제26조의 의무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네팔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만연한 빈곤의 높은 수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데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존중과 실현을 힘들게 하며 특히, 시골 지역과 빈곤굴, 불법 거주지에 살고 낮은 카스트와 소수 민족인 아동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며, 그들의 부모가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심각한 비율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사회 보장 제도로부터 혜택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보의 결핍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협약의 제26조와 완전한 호응이 되는 광범위한 입법과 행정상의 사회 보장 체제의*

부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협약의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빈곤퇴치를 위한 전략 강화는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 전략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포함하여 인적, 경제적인 자원을 충분하게 할당하는지도 모니터링 하라;
- (b) 경제적으로 불리한 가족들, 특히 시골 지역, 빈민굴, 불법 점유지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라;
- (c) 당사국은 빈곤의 범위를 정의하고, 빈곤을 경감하기 위해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당사국의 아동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빈곤 지표와 공식적인 빈곤선을 설립하라;
- (d)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회 보장 체계의 경제적인 자원을 적절하게 제공 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 뿐 만 아니라 분명하고 일관적인 가족 정책과 함께 사회 보장 정책을 수립하라."

"그러므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 뿐 만 아니라 빈곤 감소 전략 체제 내에서 분명하고 일관적인 가족 정책과 함께 수립하도록 사회보장 정책을 개정하는 노력을 할 것을 권고한다(네팔, CRC/C/15/Add.261, paras 71~74)."

###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

사회 보장 법률은 많은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이 배부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계획이 이 난점을 극복하는데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나이지리아의 약점인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당사국의 빈곤 지역 아동의 높은 비율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아동과 그 가족들의 필요에 비하여 사회 보장 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신빙성 있는 정보의 부족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자료가 아동중심 정책의 성취된 진전과 영향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반복해서 언급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의 현재 적절한 사회보장 체제가 협약 제26조와 완전히 호응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현재의 적절한 사회 보장 제도의 적용범위에 관한 자료 수집 체계를 개량하고, 모든 자료와 지표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제도를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확보하라; 그리고
- (b)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 뿐 만 아니라 빈곤 감소 전략 체제 내에서 분명하고 일관적인 가족 정책과 함께 수립하도록 사회보장 정책을 개정하도록 노력하라(나이지리아, CRC/C/15/Add.257, paras. 59, 60)."

국가는 또한 순환하는 경기후퇴나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내어야 한다. 제26조는 또한 당사국이 아동의 원조를 적절하거나 아동을 수급권자로 사회 보장을 완전히 응하도록 보장하는 능동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러므로 자원들은 혜택 수급권, 효율적인 행정 체계와 "applicant-friendly(신청자-친화적)" 관공서들, 지원 양식들, 절차들에 관한 공공 정보 캠페인에 배부되어야 한다. 제26조는 사회 보장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모두가 차별이나 사회적 낙인 혹은 다른 어떤 권리의 손실 없이 사회 보장을 제공 받아야 하고 사생활에 관한 존중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26조의 국가 이행에 관한 위원회의 검토는 종종 사회 보장 전달에 있어서 차별을 발견하는데, 예를 들어:

"위원회는 아동의 사회 혜택 수여에 관한 한계가 정규교육(full-time education)에 참여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아동들에게 연장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 나이가 남성과 여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소녀와 소년들에게 동일한 사회적 혜택을 보장이 하기 위해서 고등 교육과 관련한 그들의 결정에 있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키프로스, CRC/C/15/Add.205, paras. 49, 50)."

"위원회는 아동을 위한 명확한 혜택의 증가를 포함하여 가족 수당 체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빈곤 지역 가족의 높은 숫자에 여전히 우려하고, 심지어 더 많은 숫자의 편부모 가정, 세 명 또는 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 심각한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높은 숫자에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가난한 이들 중에 로마 인구가 압도적인 것을 우려하며 이 인구들이 대부분 차별에 의해 야기된 실직, 인종차별적 거주 그리고 교육적인 결핍 때문에 경제적인 곤란에서 빠져나오는 어려움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새로운 가족 수당 체제를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관점에서 철저히 검토하라;
- (b) 필요하다면, 특히 편부모 가정, 아이가 셋이나 혹은 더 많은 가정 그리고 심각한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아동과 같이 불리한 조건을 가진 아동들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라; 그리고
- (c) 불충분한 생활 조건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물질적인 지원과 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을 제공하라(헝가리, CRC/C/HUN/CO/2, paras. 45, 46)."

"위원회는 ... 실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부모의 아동과 같이, 사회 보장으로부터 혜택 받지 못한 아동들의 많은 수위에 대해 우려한다(멕시코, CRC/C/MEX/CO/3, para. 54)."

게다가, 아동들이 "나이가 너무 많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제1조, 아동의 정의 참조). 위원회는 이 문제를 아이슬란드와 그루지아에서 제기했다.

"아동이 아이슬란드 법률에서 (예를 들어, 1997 Majority Act) 18세 이하의 사

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원회는 이러한 정의가 다른 법률에서(예를 들어 아동 수당은 16세까지 지급 가능하다) 불일치가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아이슬란드, CRC/C/15/Add.203, para. 20)."

"위원회는... 장애아동 대한 사회적 혜택이 그들이 16세가 되었을 때 중단된다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그루지야, CRC/C/15/Add.222, para. 52)."

### “...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을 참작하여”

협약은 부모와 부양책임자의 양육 책임 뿐 만 아니라 경제적인 사정도 중시한다. 제27조 4항은 특별히 당국이 필요한 경우에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아동 사회 보장에서 자산 조사는 일반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주기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의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일정한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이 가해지는 것은 비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당국은 아동을 투자하는데 좋은 구실이 되어 왔는데, 이는 아동들이 미래의 안전을 대표하기에 아동이 있는 가족들은 세금 환급이나 직접적인 혜택으로 지원받거나 장려될 수 있다.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혜택은 적은 행정비용으로 완전한 수급율을 보장할 수 있는 가산된 장점이 있는데, 이는 자산 조사 과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혜택이 자산 조사되어진다는 점에 최선의 주의는 처우 용어가 가족들과 관련하여 비차별적이고 비계층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장받아야 한다.

###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

이 권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는데, 아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가 아동을 대신하여 혜택을 주장할 권리가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동시에 아동

들이 그들의 권리를 필요한 곳에 직접 신청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네덜란드는 제26조를 유보하기로 했는데, 다음과 같은 측면과 관련해서이다. “네덜란드 왕국은 협약의 제26조 조항을 유보조항과 함께 수용하는데 이 조항들은 아동의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 보장에의 독립적인 권리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CRC/C/2/Rev. 8, p.31).” 초기 보고서에서, 네덜란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비록, 네덜란드에서 아동이 특정한 상황에서(종업원으로서 혹은 거주민으로서의 능력의 경우) 사회 보장 혜택에 관한 개인적인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은 사회보장에 관한 아동의 권리는 부모의 권리로부터 유래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유보조항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네덜란드, CRC/C/51/Add.1, para. 2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 유보조항의 철회를 촉구했다(네덜란드, CRC/C/15/Add.114, para. 7 and CRC/C/15/Add.227, paras. 10, 11).

아동의 자발적인 주장에 관한 요구는 부모가 몇 가지 이유로 이를 주장하는 것에 자격을 빼앗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문제를 레바논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주목했다.

“...건강 보험증은 그들의 부모가 사회 보장 혜택에 관한 권리가 없더라도 발급된다(레바논, CRC/C/15/Add.54, para. 34).”

위원회는 그리스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우려했다.

“...이들테면 낮은 가족 수입과 같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아동의 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당국에서 제공되는 경제적인 ‘수당’ 체제는 아동 자신들보다는 어머니들에게 지급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에는 관계없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경제적인 지원이 현재 그 수당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도록 가족 수당 지급 과정을 개정하라(그리스, CRC/C/715/Add.170, paras. 48, 49)...”

혜택에 관한 아동의 접근성은 그들의 성인 양육자에게만 의존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틀림없이, 그래서 안된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아동을 포함해서 누군가가 사회

부조가 필요하다면 “관공서나 공공 서비스에 근무하는 사람”이 관계 당국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여한다(덴마크, CRC/C/8/Add.8, para. 50). 노르웨이는 나이 많은 아동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특별한 경우에 사회 부조를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고했다(노르웨이, CRC/C/70/Add.2, para. 273).

성인들에게 부족한 사회적 혜택 체제가 아동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주목되어야 하는데, 위원회가 그 초기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중국에게 지적했던 것과 같다:

*"사회 보장 영역에서 부적절한 조치는 부모들에게 장래 양육과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아동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위원회의 견해이다. 이는 해로운 전통 관습과 편견의 영속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남아선호 사상, 소녀들과 장애아동의 권리 보호와 신장의 결핍 등과 같은 것이다 ..."*

*"특히 그들의 노후에 아동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해 가족들이 아동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조치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견해이다 (중국, CRC/C/15/Add.56, paras. 12, 32)."*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26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하고 보편적인 조치가 취해졌는가:

-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의 책임 있는 부서와 기관의 확인과 협조? (제26 조는 사회보장부, 재무부, 노동부, 법무부, 주택부, 사회복지부와 관련됨)
- 관련된 비정부 기구/시민사회 협력자들의 확인?
- 사법권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아동을 위해 법률, 정책과 관습이 조항과 양립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

###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목표의 확인과 과정의 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하는가?
  - 아동의 권리에 더 도움이 되는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다른 적절한 국제 기준을 승인하는가?
  - 국제적 협력이 필요시 포함하는가?
- (이런 기준들은 협약을 전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부의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 필수적인 자원의 예산상 분석과 배분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기구의 조성
  - 성인과 아동들에게 제26조의 적용을 널리 알리는 것
  - 적절한 훈련과 인식 증진의 발전(제26조는 행정가,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법부 직원을 포함한다.)

### ● 제26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이 사회 보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잠재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사회 보험을 포함해서)
- 사회 보장에 관한 법적 권리가 아동과 그들의 가족에게 인식되도록 조치가 취해졌는가?
- 혜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한 한 용이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는가? (예를 들어 자동지급, 간단한 지원서, 접근 가능한 복지 사무실과 공무원들)

- 혜택을 요청하는 과정이 어떠한 아동도 차별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는가? (예를 들어 외딴 지역에 살거나 문맹인 부모의 아이들)
- 사회 보장 혜택의 교부의 체제가 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는가?
- 아동들은 그들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사회 보장에 관련된 지원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 아동 부양 책임자는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가?
- 제3자(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아동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없는 자)가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가?

### ● 주의사항

협약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협약의 모든 조항들은 상호의존 한다. 협약 제 26조 역시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 일반원칙

제2조: 관할권 안에서 각 아동의 모든 권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차별 없이 인식되어야 한다.

제3조 1항: 아동들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생명과 생존권, 발달에 관한 권리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있어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진술할 기회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26조의 이행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2항: 당사국은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

제18조: 부모 공동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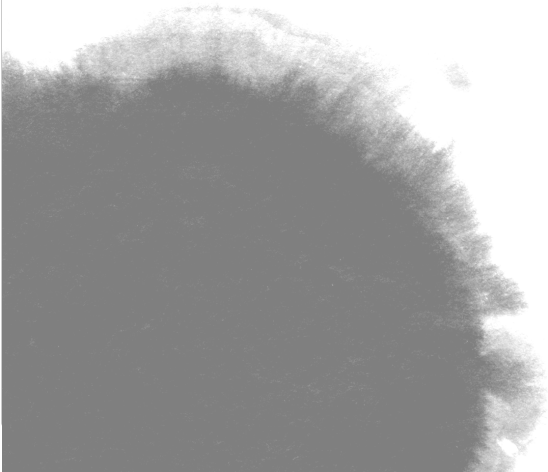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제23조: 장애아동의 권리

제24조: 건강관리지원에 대한 권리

제27조: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부모와 다른 이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

제28조: 교육에 관한 권리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제27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child's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and social development.
2. The parent(s) or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secure, within their abilities and financial capacities, the conditions of living necessary for the child's development.
3.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within their mean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ssist parents and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implement this right and shall in case of need provide material assistance and support programm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nutrition, clothing and housing.
4.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secure the recovery of maintenance for the child from the parents or other persons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both within the State Party and from abroad. In particular, where the person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lives in a Sta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accession to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he conclusion of such agreements, as well as the making of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753

제 27 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요약

제27조는 각자의 충분한 발달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아동에게

제시하고 있다. 부모는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는 일차적 책임을 진다. 국가는 필요하다면 부모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아동에게 식량, 의복 그리고 주거와 같은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또한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는 또한 다른 조항들에서도 발견되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두 가지 기초적인 원칙을 연결한다. 제27조 1항에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는 “발달”에 관한 아동 각자의 권리인데, 이는 협약의 다른 곳에서도 명백히 하고 있듯 “최대한도(제6조)”이거나 “최대한의 능력(제29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제27조의 2항과 4항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두 번째는 부모가 국가의 보조를 비롯하여 이러한 발달을 확보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제5조, 제7조 그리고 제18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제27조는 아동의 발달이 그 생활여건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충분한 발달의 상이한 요소들을-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 열거함으로써 제27조는 적절한 생활수준이 기본적으로 식량, 의복, 주거가 중요하지만 이것들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위원회에 보고한 국가들 중 아동의 필요를 완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국가는 극소수이다 -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일부 국가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빈곤을 겪고 있는 아동이 있다.

## 배경

세계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 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5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이렇게 심화시켜 말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제11조 1항).”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이라는 특정한 언급이 있는 규약의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국가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 지난 5년 혹은 10년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회 집단의 생활수준 향상에 관한 것을 보고하기를 요구했다.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또한 가장 가난한 이들 40%의 1인당 GNP에 관한 보고와 인구의 “식량 안보”와 국가의 주택 공급 상황에 대한 엄청난 양의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빈곤선의 정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인권보고 매뉴얼, 1997, p.120).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제4조에 상세히 인용되어 있는 당사국 의무의 본질과 관련하여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했다(인권보고 매뉴얼, 1997, p.52). 이것은 아동권리협약에서 명백히 인정된 사실인, 모든 국가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수용한다. 그러나 완전한 이행이라는 목적은 수립되었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가능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어떠한 의도적인 역행적 조치도 가장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조치들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의 전체성에 비추어 또한, 최대 가용자원의 완전한 사용의 맥락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적어도 각 권리의 최소 필요수준을 충족시킬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필수 의무가 모든 당사국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국민이 필수적인 식량이나 필수적 기본 의료, 주거, 가장 기초적 행태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당사국은 일견 동 규약에 명시되

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3, 1990, HRI/GEN/1/Rev.8, para. 10, p.17).

국가 보고서를 검토하면, 아동 권리 위원회는 자원 분배의 불균형과 빈곤의 단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특정한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때때로 그들의 특정한 조사 결과에 지지를 표명한다.

###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협약의 보편적인 원리 중 하나로 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제6조는 당사국에게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제27조 3항은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필수적으로 기여하는 세 가지를 언급한다. - 영양, 의복 그리고 주거. 제24조는 이를 확대하는데, 예를 들어 깨끗한 음료수, 보건 교육, 개인위생과 공중위생, 모유 수유의 필요와 환경오염, 아동 사고 및 유해한 관습에 관한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29조와 제31조는 아동이 무엇보다도 스포츠와 놀이를 통해 그들의 체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아마도 특히 도시지역 아동에게 중요할 것이다.

제12조부터 제17조 하의 아동의 시민적 권리, 가족과 공동체의 보호 안에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누릴 수 있는 권리(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30조) 그리고 제29조의 교육의 목적은 모두 아동의 사회적, 도덕적, 지적 그리고 정신적 발달에 기여한다.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No.7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본 위원회는 빈곤의 악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유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생활수준마저 보장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상대적 빈곤에서의 성장은 아동의 복지, 사회통합, 자기 존중을 저해하고, 학습과 발달*

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절대빈곤에서의 성장은 심지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삶의 기본적인 질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한다. 당사국은 아동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악영향에 맞서야 하며 이뿐만 아니라 초기 유년기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과 가족을 위한 ‘물질적인 보조 및 지원 계획’(제27조 3항)을 포함한 유아의 권리에 부합하는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아동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체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이행은 모든 전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 26)."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모와 다른 보호자들의 기본적인 책임은 제3조 2항, 제5조 그리고 제18조에서 언급된 원리를 반영한다. 제27조 이하에서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규정이 다루어지는데, 부모의 책임은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에서 충족된다. “그들의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이것은 부모가 필요한 기술과 자원이 결여되어있을 때 국가가 부모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같은 물질적 조력을 포함하는 보조를 해야 한다는 중요한 점을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콩고 민주 공화국에게 다음과 같은 논평을 했다:

"위원회는 국가가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법적, 효과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과 부모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당사국의 깊은 우려에 동의한다..(콩고, CRC/C/15/Add.153, para. 36)."

아래에서 논의되듯이, 제27조 4항의 양육비 회부와 관련하여 아동의 물질적, 감성적, 발달적 그리고 지적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부모의 책임”을 법으로 정의한다면 부모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률은 매우 정확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이 강요하기 힘들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그 법은 중요한 교육적인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적합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을 때 국가는 개입해야 한다. 제27조 또한 국가의 의무에 명료한 조건을 언급한다 -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이 어구는 재정적 책임과 정부 지출의 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우려를 반영한다(부유한 정부를 포함해서 - 미국 총회에서 “국내 여건과 일치하는 내에서”라는 어구를 도입했으며 그리고 영국 총회가 “그들 재정의 범위 내에서”를 도입하였다(E/CN.4/1985/64, pp.8 그림 10; Detrick, pp.374, 375)).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한 제4조의 “가용 자원의 최대한도” 로 아동의 경제적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의무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가용한”은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를 의미한다. 분명히 어떠한 국가도 아직 제4조의 규정이 제27조 하의 권리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위원회에 항의한 바 없다.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국가들의 구조적인 적응과 더불어 1990년대 초반의 경기후퇴는 모든 부문에서의 공공 지출에 제한을 초래했다.

그 결과는 그들의 생존을 국가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는 인구 집단 출신 아동의 증가하는 빈곤이었다. 더욱 극단적인 몇몇 경제 정책은 현재 국제적인 지원국들과 재정 기구들에 의해 재고되고 있다.

2002년 UN 총회의 아동에 관한 특별 회의(special session)는 국내적, 국제적 경제 조치가 빈곤 감퇴에 초점을 맞출 것과 시장이 아동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될 것을 확고히 했다. 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적, 국제적 수준으로 사회 발전을 위한 상당한 양의 새로운 추가적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자원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해야한다. 나아가 장단기적

인 경제적·재정적 위기 동안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복지지출을 보호하고 우선시해야 한다(국제연합, 제27특별회기에 대한 특별위원회보고, 2002, A/S-27/19/Rev.1, para. 52).”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도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반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브라질과 콜롬비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다.

*“당사국이 기아와 빈곤에 맞서 싸우는 시각에서 정책과 프로그램 이행에 부여한 높은 우선권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발전을 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부와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불변하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불균등에 관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우려를 공유한다... 위원회는 수많은 아동의 삶이 가난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어려운 접근, 그 질의 저하로 점철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브라질, CRC/C/15/Add.241, para. 56).”*

*“위원회는 증가하는 생활수준 격차와 극단적인 혹은 일반적인 빈곤에서 살고 있는 아동의 증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되며,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인 Gini(기니)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이는 증명되었다 ... 이러한 생활수준의 불평등은 본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동등하게 향유하는 데 중대한 장애물임이 드러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증가하는 불평등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을 배정하고 우선시하며 도시와 시골 지역 간의 생활수준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을 권고한다..(콜롬비아, CRC/C/COL/CO/3, paras. 65, 66)”*

제27조와 관련된 위원회 권고의 중요한 요소는 국가들이 - 부유하고 가난한 국가 모두 - 범위, 기원 그리고 교차관계(crossrelationship)라는 아동 빈곤의 모든 형태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은 측정되어야 하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소외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하고, 취약 계층 아동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발할 수 있는 사회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NGO, 특히 가족과 아동 문제, 일반적인 시민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기관들과 대*

화로써 연계할 것을 권고했다(헝가리, CRC/C/HUN/CO/2, para. 47)."

협약의 제27조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인구 사이에서(among its population)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개발을 강화하고 빈곤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time-bound) 국가 개발 전략과 사회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통해, 가난 속에 살아가는 특정한 시골 인구와 도시의 '빈곤 지구'(poverty pockets)에 살아가는 인구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b) 취약 계층의 아동과 가족을 특별히 유념하여 빈곤 근절 전략을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적 수준에서의 빈곤 감소를 위해 아동의 참여를 포함한 공동체의 결집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 (c) 불리한 아동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물질적 보조와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레바논, CRC/C/LBN/CO/3, para. 62).

정부는 또한 부패나 기업의 이해관계가 효과적인 사회 서비스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우려를 공유한다 ... 구조조정과 민영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의 부족이 가장 불리하고 소외된 집단에게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불균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민영화 과정에 있어서 협약의 규정들을 고려해야 하며 당사국의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사회적 혜택을 누릴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체코, CRC/C/15/Add.201, paras. 52, 53)."

"위원회는 또한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자원의 수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는 만연한 부패의 관행에 대한 보고에도 또한 염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부패 관행의 혐의를 조사하고 부패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우즈베키스탄, CRC/C/UZB/CO/2, paras. 52, 53)."



위원회는 기부자 공동체의 책임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데, 볼리비아와 관련된 예도 그러하다. 초기 보고서에 대한 대답으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부채를 포함한 경제적인 요소들이 협약의 완전한 적용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언급한다. 이런 관점에서, 위원회는 많은 구조조정 정책에 구현된 장기적인 고려사항들이 구조적으로 오늘날 아동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우려한다. 국가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책임을 지는 한편, 위원회는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상황을 향상시킬 의욕을 더욱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제적 보조가 특히, 국가의 시골지역에 있어서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볼리비아, CRC/C/15/Add.1, para. 5)."

볼리비아가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을 무렵에 국제 금융 기구들은 몇몇 최빈국들에게 부채 감쇄를 제공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위원회가 아동의 혜택을 위한 실제적인 재정 자원을 할당하려는 국가 당국의 노력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려를 되풀이하게 한다 ... 일반적인 빈곤의 지속성과 불공평한 수입 분배 뿐 만 아니라 긴박한 예산상의 조치들과 외부적 부채가 여전히 당사국의 아동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 위원회는 당사국이 ... 충분한 예산상의 할당액이 아동을 위한 사회 서비스로 제공되고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에 속한 아동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지속하도록 촉구했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의 '외채과다 빈곤국' 전략의 구조적 틀 안에서 취해지는 조치들을 포함하여 외부적 부채의 부담을 덜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촉구했다(볼리비아, CRC/C/15/Add.95, para. 15)."

위원회는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부유한 국가들의 활동적인 조치를 권하는 한편,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여전히 더 많은 조치를 환영한다.

"위원회는 특히, 취약계층에서의 부상하는 아동 빈곤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편부모 가정이나 여타의 문제 있는 환경에서 양육된 아동 수의 증가에도 우려한다. 이와 관련된 계획들이 이미 수립된 것을 평가하는 반면에, 위원회는 그러한 아동에게 특히 교육, 주거 그리고 영양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특별한 계획과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미 취해진 단계들을 인정하는 한편, 위원회는 주거와 교육에의 접근을 포함한 그들의 기초적인 권리 향유에 있어 원주민 아동과 같이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불리한 계층의 아동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우려한다(캐나다, CRC/C/15/Add.37, paras. 12, 17)."

**“당사국은 ...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27조의 아동의 생활조건을 확보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부모를 돕는 국가에 대한 강조는 직접적으로 아동을 돕는 것보다 자기 방어적이고 동시에 자기 규율적이다. 자기 방어적인 것은 왜냐하면 해당되는 국가들은(drafting nations) 부유한 부모의 아동을 지지하는 의무 하에 놓이지 않고 싶어 하거나,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국가에게로 전가하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기규율적인 것은 왜냐하면-협약에서 중시하고 있듯 - 아동은 가능한 어디서든 그들의 부모에 의해 돌보아질 수 있고, 가족 환경 내에서 보호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27 조는 제18조에서 확립된 양 부모가 그들의 아동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그들 아동의 안녕을 추구하고 보호 하는 역할로서 부모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정 부모들은 그들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출해 왔다.

"... 특히, 협약 제18조와 제27조의 관점에서 양 부모들에게는 그들의 아동양육의 무의 이행에 있어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나아가 편부모들의 특정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련된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하고, 편부모 가정의 문제들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안 받고 있다(폴란드, CRC/C/15/Add.31, para. 33)."

"위원회는 2002년 4월의 예비 빈곤 퇴치 계획의 채택과 가족을 지원하는 다른 시도들을 환영하나, 특정 가족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수준의 격차와 불충분

한 사회 보장 체제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다수의 부모 숫자를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 (a) 아동과 가정을 위한 국가 전략의 완전한 이행의 일환으로 부모의 아동 양육 책임에 있어 편부모 가정을 포함한 부모와 가정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 (b) 특히, 위험에 처한 아동들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식량 안보와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수당의 지급을 투명하게 하고 증진한다는 관점에서 예비 빈곤 퇴치 계획을 완벽히 이행하라(물도바, CRC/C/15/Add.192, paras. 39, 40)."

부모에 대한 지지는 또한 제18조와 제26조 하에서 논의된다.

### “특히 영양의 관점에서”

1999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적절한 음식을 섭취할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발행했다. 이것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에 명시된 적절한 음식에 대한 권리가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에 명시되어 있는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인간 개인의 고유한 존엄과 별개로 연관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적절한 식량 공급에 대한 권리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어진 사회 안에서 수용 가능하고 여타의 조건들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식단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게 식량의 가용성; 그러한 음식을 지속가능하고 다른 인권의 향유를 방해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의 접근가능성.” 일반논평은 이행의 적용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제공한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12, 1999, HRI/GEN/1/Rev.8, p.65).

코펜하겐에서 1995년에 열린 사회개발 세계정상회담(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은 다음의 목적에 동의했다.

“모두에게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식량에 관한 충분한 접근뿐만 아니라 국내적, 국제적인 수준에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적절한 식량을 보장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획득하는 것은 식량 공급에 합리적인 안정성 정도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식량이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Programme of Action, A/CONF.166/9, p. 51).” 세계정상회담특별총회(The World Summit follow-up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에서는 5년 후에, 2000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를 감소시키는 목표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국제연합총회, 제24특별회기, 2000, A/RES/S24/2, p.5).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관한 2006 보고서에서는 또한 기아를 퇴치하는 데 실질적인 진보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했다(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보고서, 국제연합 경제사회부(DESA), 뉴욕, 2006.06, pp. 4, 5).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는 저체중 출산과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비율을 2010년 이전에 최소한 1/3으로 감소시키기로 결의했다(국제연합총회, 제27특별회기에 대한 특별위원회보고, 2002, A/S-27/19/Rev.1, para. 36).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영양실조의 조짐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 아동은 영양이 부족하면 그들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을 하는 데 실패하게 되므로, 영양물 섭취는 언제나 아동에 관해서는 어떤 목록에서도 최우선 순위에 속해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이 영양실조로 위협받고 있는 곳에 “아동을 위한 국가 영양 정책(National Nutritional Policy for children)”을 권고하였다. 예를 들어:

*“보건과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후속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특히, 영양실조를 퇴치하고 아동을 위한 국가 영양 정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된 노력들이 요구된다(방글라데시, CRC/C/15/Add.74, para. 41).”*

그러나 위원회는 가난한 집단의 아동과 연관해서 종종 영양실조를 “빈곤”과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 하에 포함시킨다(제24조 2항 참조). 이는 아마도 아동 영

양실조에 관해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 국가는 이를 테면, 저체중 출산이나 영아 영양실조에 관한 자료를 집계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위원회는 과테말라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위원회는 당사국의 대표가 언급한 민연해 있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영양을 관리 감독하는 통계와 자료의 불충분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과테말라, CRC/C/15/Add. 58, para. 17)."*

## 주거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충분한 주거시설은 가정의 통합을 이룩하고, 사회적 공평성을 조성하고, 소속감과 안정감과 인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 복지에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특별히 도시주변지역과 오지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주택 부족난을 극복하고 기타 인프라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자 한다(A/S-27/19/Rev.1, para. 27).”

같은 해에 인권 위원회는 국가를 방문하고, 정부와 다른 주체들과 함께 일하며 위원회에 주거의 권리에 관해 보고하는 적절한 주거에 관한 특별 보고관을 임명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협정의 제11조 하에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해 예를 들어, 소유권의 보장, 기초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주거의 접근성과 구입 능력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일반논평을 발행했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4, 1991, HRI/GEN/1/Rev.8, para. 8, p.20). 위원회는 또한 그들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종종 침해하고 특히, 아동과 기타 취약한 개인들에게 불공평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제퇴거에 관해 특화된 일반논평을 발행했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No.7, 1997, HRI/GEN/1/REV. 8, para. 10, p.48). 일반논평 No.4는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해 아동의 권리와 주거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지원하는 국제연합 인간주거회의(Habitat II, Istanbul, 1996)의 선언문에 의해 승인되었다(아래박스 참조). 위원회는 권고했다.

## 아동권리와 주거

1996년 2월, UNICEF, 국제연합인간거주센터와 기타의 전문가들은 아동권리협약과 Habitat II 목표의 관련성을 수립하기 위해 만났다. 그들의 선언은 다음을 포함한다:

### ● 가정환경 내에서

- 확고한, 안전한, 건강한 환경에 대한 아동의 필요성은 태아기에 시작된다.
- 건강한 가정은 안전하고 충분한 식수 공급,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위생과 오수 관리를 포함한다; 또한, 교통과 기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공해, 방사능 그리고 전염병에의 노출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과도한 소음과 번잡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한다.
- 가정환경은 양육을 용이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아동의 기초적인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학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양성의 아동은 놀이의 기회와 가정과 그 직접적인 주변 환경에서의 학습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 장애가 있거나 다른 취약한 아동의 가정에 관한 요구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 ●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 아동에 관한 협력적인 환경은 건강하고, 범죄 없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포함한다. 사회 정의, 양성평등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를 증진하는 환경은 필수적이다.
-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인간의 문화적 발달에 있어서 공동체와 사회의 존중과 이해를 요구하는 독특한 단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거리의 아동과 다른 위험한 환경 하의 아동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 고품질의 의료 복지, 교육 그리고 보육 서비스는 공동체 내에서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
- 아동이 놀고, 참여하고, 그들의 사회적·자연적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동체 내에서 안전하고, 확고하고 그리고 보호되는 환경을 가지는 것은 필수적이다. 청소년들도 역시 그들이 함께하고 자치를 경험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한다.
- 아동은 그들 자신과 미래 세대의 삶을 오랫동안 만족스럽게 지원할 지속 가능한 인간 거주 건설에 특별한 권리가 있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에 기여하고 참여할 기회를 요구한다.

(아동의 권리와 주거, 유니세프 전문가세미나에 대한 보고, UNICEF, UNCHS/Habitat, 1996)

"위원회는 ... 주거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제한된 시각에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존엄한 어딘가에서 살 권리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아동의 거주에 관한 권리가 협약에 명시된 거의 모든 권리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이행과 감독의 과정뿐만 아니라 협약의 포괄적이고도 전체적인 취지를 나타낸다(아동권리위원회, 제17회기 보고서, 1996.1, CRC/C/50, pp.77, 79)."

위원회는 때때로 국가들로 하여금 Habitat II 하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보고하기를 요청해 왔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강제퇴거에 관한 우려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빈민굴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높은 비율과 그들의 부적절한 영양 상태 그리고 식수와 위생에 관한 불충분한 권리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구조조정계획에서 가족과 아동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우려한다."

"협약의 제27조의 맥락과 더불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1996년 Habitat II에서 주거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해 맺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933/77의 강제퇴거에 관한 인권위원회 결의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강제 재배치, 퇴거 그리고 다른 방식의 비자발적인 인구 이동의 발생을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재거주 절차와 계획이 등록을 포함하고, 포괄적인 가정의 원상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기초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인도, CRC/C/15/Add.115, paras. 52, 53)."

위원회는 인도가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러한 우려를 반복했다.

"GDP(국내총생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에 고질적 빈곤과 깨끗한 식수, 적절한 주거와 화장실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아동의 숫자가 여전히 높은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강제퇴거의 부정적인 결과와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의도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계획에서 그들의 주거지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아동을 이동시킬 때 아동의 요구에 종종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에도 우려한다."

"협약의 제27조의 맥락에서, 위원회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가족에게 지원과 물질적인 보조를 제공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의 권리를 아동에게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그 이전 권고의 관점에서(*ibid*, para. 53),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강제 재배치, 퇴거 그리고 다른 형태의 비자발적인 인구 이동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인도, CRC/C/15/Add.228, paras. 62, 63*)."

Habitat II의 선언문에서, 위원회는 거주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언급한다(제12조). 비록 "거주"라는 말이 제27조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주에 관한 여러 고려사항은 마련된 환경의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아동의 요구와 시가는 일차적으로 그들에 의해 이용되는 학교, 놀이터, 주거 기구, 보건소 그리고 병원과 같은 영역과 관련해서 동등하게 중요하다.

Habitat II는 선언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요구는, 특히 그들의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는 완벽히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 마을 그리고 지역의 형성을 다루는 참여 과정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 조건을 확보하고 그들의 통찰력, 창의력 그리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고려한다. 길거리 아동, 난민 아동 그리고 성적 학대의 희생이 된 아동과 같이 취약 아동에 대한 보호처 요구에는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국제연합회의, 인간 주거정책(Habitat II), A/CONF.165/14, p.15*)."

국가가 아동 거주 환경에 대해 상세한 정보나 위원회에 의한 상세한 언급은 드물지만 때때로 실시된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과 라트비아를 들 수 있다.

"위원회는 ... 공식적인 거주 허용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또한 기초적인 시설이 없고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불확실한 거주 조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키르기스스탄, CRC/C/15/Add.244, para. 63*)."

"위원회는 아동과 그 가족들이 라트비아가 독립을 재획득한 후 촉발된 경제적, 사회적 변형 과정에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특히 아동과 그들 가족들의 생활 조건을 격하시키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그들의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아동이 있는 가족들과 관련된 상황을 예방하기에 가정에 대한 보



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 "

"위원회는 당사국이... 혜택 받지 못하는 가정들은 적절하고 구입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고, 적절한 대안적인 주거 계획이 그들의 강제퇴거에서 보장받을 것을 권고한다(라트비아, CRC/C/LVA/CO/2, paras. 48, 49)."

게다가, 위원회는 인권위원회(resolution 1994/93)의 권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용어인 “길거리 아동”이라 불리는 집단의 아동에게 지속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살거나 일하도록 강요된 아동들” 많은 이러한 아동이 연락 가능한(in touch)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우에 그들과 함께 살지 않으며 길거리에서 자거나 용인 불가능한 형태의 시설에서 숙박하도록 강요된다. 이 문제는 제20조에서 논의된다.

가난한 나라에서 노숙이 흔한 반면, 캐나다와 같이 번영한 나라들에서도 만연하다.

"위원회는 자료의 출처가 제한되어 있기에 캐나다가 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에서 노숙은 우선순위 연구과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배우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 캐나다 10개 대도시의 시장들이 노숙이 국내적인 재앙이 되었다고 선언하며 정부가 노숙과 빈곤의 감소를 위한 국가 전략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경제적, 물질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우려를 공유했다(캐나다, CRC/C/15/Add.215, para. 40)."

## 양육에 관한 아동의 권리: 제27조 4항

부모와 기타 법적으로 책임 있는 자의 경제적인 양육과 관련해서 제27조 4항의 규정은 부재한 부모(일반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의 회부에 의해 그들의 생활조건이 월등히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아동에게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양육은 선명치 않은 문제이다 - “아동권리”는 반드시 아동 이익의 관점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들은 아동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확

보호거나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더 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엄마들은 단순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권을 유지할 수 있다. 재혼 가정의 아동은 때때로 양육비 문제에 있어 눈에 띄지 않는 희생자가 된다. 국가 또한 단순히 공공 지출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양육비를 생각하기에 별다른 의도 없이 부도덕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양육 관련 법률과 절차가 만들어질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적으로는 최고의 배려) 제3조의 원칙을 강조하는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양육비는 종종 단순히 아동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넓은 사회적 혜택을 동반한다. 특히 그것은 제18조에서 다루어지는데, 아버지의 부재 증가 문제와 여성이 이끄는 한부모 가정(미혼이든 이혼이든)의 세계적인 증가추세와 관련되어 있다. 만족스러운 양육비 회부 절차는 남자가 가족계획과 부성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아동의 양육에서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위원회는 코트 디 부아르와 잠비아에서 양육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관한 만연한 무지가 있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양육비에 관련된 국내적인 법률의 규정들을 특히 문맹인 어머니에게 널리 알리고,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 법정은 특히, 지불능력이 있는 부모가 이를 지불하기를 거부할 때 양육비 회부에 관한 법률을 더욱 엄격히 이행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유한다(코트디부아르, CRC/C/15/Add.155, para. 33)."

"국내 법률이 양육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반면에 ... 위원회는 법률에 대한 무지와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강제되는 경우가 적으므로 규정들의 적용이 부족한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한다:

- (a) 양육비에 관련된 국내적인 법률의 규정들을 널리 알리라. 특히 문맹인 어머니에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행동을 이해하도록 지원하라; 그리고
- (b)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 충분히 훈련되어 있고 법원은 특히 지불

능력이 있는 부모가 이를 지불하기를 거부할 때 양육비 회부에 관한 법률을 더욱 엄격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라...(잠비아, CRC/C/15/Add.206, paras. 40, 41)."

게다가 위원회는 양육비 관련 체계의 결합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 CRC/C/15/Add.191, para. 42)에서 발생하는 “때때로 수년씩이나 지속되는” 긴 지연시간과 나이 많은 아동을 둔 어머니에 대한 차별 혹은 세인트 빈센트와 그라나다의 미혼모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 유감스러워 한다.

“어머니들은 5세 이상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4살 이전에 신청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에만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고, 미혼모의 아동과(가정 법원에 의한) 결혼한 어머니의 아동에(치안 법원에 의한) 대한 양육비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세인트 빈센트와 그라나다, CRC/C/15/Add.184, para. 30).”

절차들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양육비가 요구되는 동안 그 국가가 재정적인 안전망을 공급하고 또한, 책임 있는 부모의 급여로부터 생활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여야만 함을 권고했다.

“제27조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원 명령, 또는 그 아동 또는 친권자(custodial parent)에게 오명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에 기반을 두어 양육비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모든 효율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예컨대, 당사국은 강제조치가 법제화되는 동안 관리부모(친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 의무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기금을 설립하는 것, 또는 양육비 의무를 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로부터 자동적으로 아동지원금을 공제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한국, CRC/C/15/Add.197, para. 47).”

‘양육비’의 법적 정의는 부모 그리고 가족의 책임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나가는 방식일 수도 있다. 예컨대, 위원회는 아르헨티나의 부모들이 생계, 교육, 여가, 의복, 주거, 부양, 질병 비용의 명목으로 그들의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킬 법적 의무 아래 있음을 보고 받았다(아르헨티나, CRC/C/9/Add.2, paras.56-58). 볼리비아에서 부모들의 제반 의무에 관한 법은 한층 더 나아가는데, 그 훈련비용을 떠맡는 데 필요하

다면, 아동이 미래를 위한 거래 또는 직업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있다(볼리비아, CRC/C/3/Add.2, para.99). 코스타리카의 입법은 가족 - 부모, 더 나이 많은 동기, 조부모, 증조부모 순으로 - 안의 아동을 위한 재정적인 책임의 절차를 구축하고 있다(코스타리카, CRC/C/3/Add.8, Para.155).

### 외국으로부터의 양육비의 회부(recovery)

제27조 4항은 협약의 초안을 작성 시 핀란드 대표에 의하여 아동과 국가들 모두가 이 영역에서 경험하였던 어려움들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의 효율적인 양육비의 회부를 참조하여 도입되었다. 당사국의 양육비 회부는 나중에서야 생각된 것이다(E/CN.4/1988/28, p.17; Detrick, p.378).

국제협약들은 아동이 일상적인 거주지가 있는 그들의 국가를 바꾸거나, 또는 양부모들이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이동하는 곳이라는 상황들 속에서(생활비의 해외 회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뉴욕, 1956) 그리고 the Reciprocal Enforcement of Maintenance Orders, Hague Convention Countries Order 1993이 이들을 포함), 누구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아동이 양육비를 주장할 수 있는가를 규율하는 규칙들을 구축하여왔다. 게다가, 양육비 명령에 관련된 다수의 양자 간의 그리고 지역적인 조약들, 또한 상호적인 이행협약들이 존재한다. 국경들 사이에 많은 유동성이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협약들이 비준되고 쉽게 집행 가능해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일 자리를 찾기 위하여 고국으로부터의 여성 이주 숫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벨리즈와 필리핀의 경우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집행 가능한 국제적인 양육비 협약들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위원회는 양육비의 회부가 실제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을 우려한다. 그것은 실제적인 이행에서 우려되고, 그리고 어떤 사례들에서는 양육비 명령의 상호적인 강제를 위한 양자협약의 부재에서 우려된다..."*

*"협약의 제27조 4항의 관점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양육비 명령의 상호적인 강제를 위한 양자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결론지을 것, 그리고 그들의 아동의 양육비에 관한 결정을 기다리는 부모들에 대한 지원을 보조하기 위한 기금*

을 설치하는 것을 재고할 것을 추천하였다(벨리즈, CRC/C/15/Add.252, paras.44, 45)."

"외국에서 일하는 부모 또는 부모들과 함께 있는 필리핀 아동의 높은 수치와 외국 이주 동안 외국에서 태어난 필리핀 아동과 부성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례들의 증가하는 수치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실제로 양육비의 회부를 충분히 보장해오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양육비 명령의 상호적 강제를 위한 양자협약의 실제의 이행, 그리고 어떤 사례에서는 그것의 부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외국에서 일하는 부모에 관하여, 위원회는 양육비 명령의 상호적 이행을 위한 양자협약들을 결론짓도록, 그리고 양육비 회부 실패 사례에서 생활비 지불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을 구축하도록 당사국을 고무하고 있다(필리핀, CRC/C/15/Add.259, paras. 46, 47)."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27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의 책임 있는 부서와 기관의 확인과 협조?  
(제27조는 법무부, 내무부, 주택부, 사회복지부와 관련이 있다)
- 관련된 비정부 기구/시민사회 협력자들의 확인?
- 사법권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아동을 위해 법률, 정책과 관습이 조항과 양립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

완전한 이행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의 도입

- 목표의 확인과 과정의 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하는가?
- 아동의 권리에 더 도움이 되는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다른 적절한 국제 기준을 승인하는가?
- 국제적 협력이 필요시 포함하는가?

(이런 기준들은 협약을 전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

- 필수적인 자원의 예산상 분석과 배분?
-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기구의 조성?
- 성인과 아동들에게 제27조의 적용을 널리 알리는 것?
- 적절한 훈련과 인식 증진의 발전? (제27조는 공동체 활동가, 환경 계획가, 긴급 구조대원, 법원 직원, 사회복지사, 의료 요원들 그리고 부모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의 훈련을 포함한다.)

### ● 제27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당국이 아동의 발달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확인했는가?

부모와 기타 아동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인 생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하는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가?

- 신체적 발달?
- 지적 발달?
- 정신적 발달?
- 도덕적 발달?

- 사회적 발달?
- 이러한 책임에 대해 부모들이 완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는가?
- 부모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 할 능력과 경제적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법적 혹은 행정상의 기준이 적절한가?
- 부모가 아동들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없어서 당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을 확인할 수단과 절차가 취해졌는가?
- 아동의 생활 조건이 그들의 적절한 성장을 위해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었는가?
- 아동이 부모나 보호자와 있든 없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그들의 알맞은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보조와 지원 계획이 제공되어 있는가?
- 당국은 (예산상 할당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영양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장할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당국은 모든 아동이 이러한 시설에서 주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보안
- 편의가 잘 제공되어 있는가?(특히 물, 위생, 연료에 관하여)
- 안전
- 건강
- 적절한 위치(특히 병원, 학교, 그리고 놀이시설에 관하여)
- Habitat II에서 권고한 조치와 일치하는가?
- 아동이 사는 환경을 조성할 때 그들의 견해도 고려되는가?
- 당국은 모든 아동이 적절히 의복을 취하도록 조치를 취하는가?
- 당국은 아동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가용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경제 계획은 명확한 목표와 같은 기준들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는가?
- 아동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자원이 있는 곳에서 국제적 원조와 기술적 조력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시행되는가?
- 양육비
- 아동이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생존조건에 책임지는 기타 사람들로부터 양육비를 회부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되는가?
- 그러한 법률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근본적이고 중요한 고려 사항으

로 되는가?

- 그러한 법률이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를 강요하기에 쉽고 간단한가?
- 그들의 양육비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산과 소득을 획득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는가?
- 당국은 모든 적절한 국제적 혹은 양측의 동의와 외국에서의 양육비를 회부하는데 관련된 조약에 응했는가?

● 주의사항

협약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협약의 모든 조항들은 상호의존 한다. 협약 제14조 역시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일반원칙**

제2조: 관할권 안에서 각 아동의 모든 권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차별 없이 인식되어야 한다.

제3조 1항: 아동들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생명과 최대한도로 생존과 발전에 대한 권리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있어서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진술할 기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27조의 이행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2항: 부모의 권리를 고려하여 당국이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보살핌을 보장하는 것

제5조: 부모의 책임들과 아동들의 성장 능력

제18조: 부모 공동의 책임, 당국의 부모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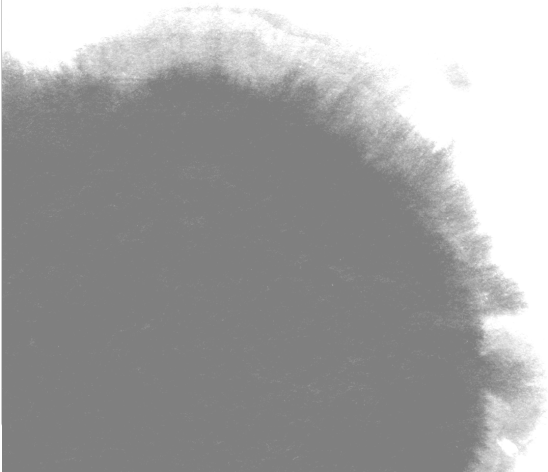
제24조: 건강과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

제26조: 사회적 안전에 대한 권리



# 28

## 제28조 교육에 대한 권리





## 제28조 교육에 대한 권리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education, and with a view to achieving this right progressively and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y, they shall, in particular:
    - (a) Make primary education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 (b)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forms of secondary education, including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make them available and accessible to every child,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and offering financial assistance in case of need;
    - (c) Make higher education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 (d) Make educational and vocational information and guidanc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children;
    - (e) Take measures to encourage regular attendance at schools and the reduction of drop-out rate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school discipline is administer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hild's human dignity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nvention.
  3.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tters relating to education,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elimination of ignorance and illiteracy throughout the world and facilitating access to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nd modern teaching method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

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워져야 한다.

## 요약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많은 아동들 특히, 여성, 장애아동, 소수아동 그리고 농촌지역 출신의 아동들이 교육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교육권은 동등한 기회의 토대 위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교육은 고비용의 기본적 권리라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약 제28조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모든 아동들을 위한 무상의 의무적인 초등교육과 서로 다른 형태의 중등교육 그리고 모든 아동들이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진로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등교육은 반드시 능력에 따라 개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와 함께 학교의 교칙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형식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은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을 꾸준히 준비하여 교육이 핵심적인 인권이자 경제성장의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배경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다음과 같은 선언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선언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강조되었다.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

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이 국제규약은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모든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28조의 초안을 만드는 동안, 협약 당사국의 대표들은 아동권리협약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보다도 약하지도 그렇다고 강하지도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1999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두 번째 일반논평 즉, 초등교육 행동계획에 관한 일반논평 No.11(규약 제14조)과 교육권에 관한 일반논평 No.13(협약 제13조)을 채택하였다.

1990년 세계아동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선언했다. 현재 1억 이상의 아동들이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2/3이 여자 아동들이다. 모든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 문해를 제공하는 것은 세계 아동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이다. 세계정상들은 2000년까지 기본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최소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80%까지 초등교육의 성취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못했다. 10년 후, 최소 1억 1천 3백만 명의 아동들이 그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한 채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세계 정상들은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달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유엔은 2006년 밀레니엄 개발목표 관련 보고서에서 전술한 목표들이 일정부분 진척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95%에서 사하라 이남의 65%에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의 순입학률은 86%까지 증가했다. 비록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1990/1991년부터 상당한 진척이 있기는 했지만, 부르키나파소, 디지보우티, 에리트레아, 말리 그리고 나이지 지역은 기초교육에 입학한 학생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도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초교육에 대한 신속한 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전술한 지역과는 달리 남아시아는 주로 인도의 증가로 인해 1999년-2004년에 입학률이 72%에서 89%로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1990년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학습욕구의 충족을 위해 동등한 교육기회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기본적인 학습 욕구는 생존, 완전한 자기개발, 존엄한 생활과 노동, 삶의 질 개선, 확고한 결정,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문해, 구두표현, 산수, 그리고 문제 해결 등의 기본적인 학습 수단과 지식, 기술, 가치 그리고 태도와 같은 기본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카르에서 개최된 2000년 세계교육포럼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의 달성에 관한 국가행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다카르에서 승인된 2002년 아동관련 유엔특별총회는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정했다.

세계선언의 결과문서인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은 통합적인 기본교육의 이정표로 무상의, 의무적인 그리고 양질의 보편적인 기초교육을 요청하였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27차 총회 특별회의의 전체 위원회는 진일보한 이 같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인간의 권리이자 빈곤감소와 아동노동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 관용과 개발을 증진하는 핵심적 요인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1억 명 이상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대다수의 여성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있다. 10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은 과밀 학급에다 비위생적이며 열악한 시설의 교실에서 박봉의 교사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아동들의 2/3가 기본적인 문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기간인 5년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교육권 관련 특별 서기를 임명했다. 이 서기의 가장 주된 권한은 세계 전역의 교육권 관련 실태와 특별히 성평등을 강조한 교육권 이행상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교육권의 점진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국제기구들과의 공조나 원조를 위한 기금원의 발굴 등을 통해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별서기는 연간보고서 즉, 여성 아동의 교육이나 민영화, 국제무역 그리고 교육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등을 포함한 이전보고서를 매년 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초안을 작성동안, 초안 작업의 구성원들은 자녀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는 자신의 종교적·도덕적 신념과 일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원칙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부모의 전반적 권리와 책임은 협약의 다른 곳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거절되었다.

교황청(The holy See)은 유보로 인해 “협약의 조항들은, 특별히 그 조항의 권리가 교육에 관련된 것이라면 일정정도 부모의 중요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규정이 생략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협약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중요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교육권은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능력개발(제5조, 제12조, 제18조)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증진하는 교육의 권리를 포함하는 협약상의 아동 본인의 권리에 종속된다. 그러나 협약 제29조는 국가 체제 이외의 학교 설치에 관한 부모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제30조는 소수문화의 아동들에게 자신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실천할 권리가 부정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황청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완전하게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려를 표명한 유보를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아동 교육권의 점진적 실현

아동의 기본적인 교육권은 협약 제28조의 첫 단락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한 당사국의 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위 단락의 (a)에서 (e)까지는 당사국이 교육권을 점진적이면서도 동등한 기회의 토대위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규정된 첫 번째 규정에 종속된다. 일부 국가들은 아동의 교육에 관한 특수한 권리를 자신의 헌법이나 교육법에 포함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들은 아동의 교육에 관한 특수한 권

리를 아동의 교육을 보장해야 할 부모의 의무를 규정함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도가 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헌법이 제정된 이후 10년 내에, 국가는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의 의무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교육 없이는 존엄하게 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권리가 개인적 자유에 있어 근본적 권리의 일부라는 점을 선언하였다. 인도의 두 번째 보고서를 검토할 때, 위원회는 6-14세의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의 의무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2002년 헌법의 개정을 환영하였다.

## 교육

협약에서 교육은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수업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가정이나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행되는 비공식적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의 하위 단락의 (a) 학교의 출석과 협약 제 29조의 민간 교육기관의 출석은 아동들이 정상적으로는 학교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협약 제28조는 직업교육과 문맹의 퇴치 그리고 과학적·기술적 지식을 기술하고 있고, 협약 제29조는 교육의 광범위한 목적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은 기본 교과과정을 세부적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위원회는 기본적인 문해 기술과 산수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 대해서

*"높은 출석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읽거나 쓸 수 없고 기본적인 산수를 하지 못하는 많은 아동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낮은 교육의 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브라질, CRC/C/15/Add. 241, para. 58)."*

최근 정기보고서의 지침에 따른 교육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일한 정보는 아동과 성인을 위한 당사국의 문맹률이다. 즉 위원회는 적절한 과학수업이나 기술수업 등을 포함한 아동의 교과목에 대한 평가보다는 아동의 생활과 교과목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협약 제28조는 당사국이 교육의 내용과 전달을 고민해



야 한다는 의미에서 당사국에게 중도탈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교육의 보편적 이용가능성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할당해야 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의 질이 모니터 되고 감독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르메니아, CRC/C/15/Add. 225, para. 55)."*

협약은 얼마나 많은 시간의 교육이 아동의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무상의 의무교육 6년을 포함하여 최소 9년 교육(초등과 중등)과 국제기준인 년 간 180일 수업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개별 학생들의 수업시간이 불가피하게 줄일 수 있는 유동적인 체계의 교육운영도 중요하다.

## 점진적으로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은 자원의 부족으로 중등교육이나 심지어는 초등교육까지 모든 학생들이 접근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부자국가도 능력에 따라 모든 청소년들의 고등교육의 이용을 보장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준 국가들은 점진적인 교육제공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가용가능한 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교육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권리의 수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999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의무의 무상 초등교육을 보장할 수 없다면, 당사국은 모든 아동들을 위해 규정된 무상의 의무교육 연수 범위 안에서 점진적 이행을 위한 세부 행동계획을 2년 내에 개발하고 채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논평은 협약 제14조에 의한 명백하고 절대적인 의무가 세밀하게 감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접근과 유사하게, 점진적이라는 개념에서 내포된 기대를 실현코자 모든 교육예산이 어떤 이유에서든 감소하지 않고 증가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중국은 교육법의 규정처럼, GDP의 증가에 발맞추어 교육에 대한 자원 배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여기서 교육자원은 모든 아동, 특별히 여성, 학습장애아동, 소수민족과 이주아동들이 의무교육인 9학년을 마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하고 초기아동기의 교육과 개발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

- (a) 당사국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매우 낮고 최근 급속하게 감소해왔다.
- (b) 교육증진을 목적으로 당사국에게 투자된 국제원조의 많은 예산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못했다.
- (c) 취학률과 문해율이 매우 낮다.
- (d)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고 중등교육 취학률이 감소하였다.
- (e) 성간 불평등과 지역 간 불평등이 여전히 매우 높다.
- (f) 교육의 질이 열악하다.

‘점진적’이라는 개념은 재정지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과도 관련된 것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수한 영역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교육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당사국은 2년 이내에 모두의 노력으로 합리적인 무상 의무교육 연수 범위 내에서 점진적 이행을 위한 세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채택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육체계를 연구하여 모든

수준의 체계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여성의 취학을 특히 중등학교의 취학을 증가시키며, 부가적인 강의 교재로서 지역의 언어 도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권고한다. 아울러 교육체계를 연구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교육의 중요성을 증진시키고 교육에 관한 문화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무상의 초등교육에 관한 권리를 명백하게 반영하도록 국내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 (a) 국가예산에서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공공부문의 기금 비율을 높게 증가시킨다.*
- (b) 권리중심의 국가 교육전략을 개발한다.*
- (c) 제공되는 교육의 질 특히, 농촌지역의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다.*
- (d) 높은 중도탈락율과 낮은 학업성취율을 해소하기 위해 입학료와 기타 비용의 실효적 폐지를 모니터링으로써 교육접근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는 농촌지역의 아동, 국내 난민 아동, 아프리카 콜롬비아 그리고 토착 아동 등과 같은 취약집단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드러나지 않은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의 지원과 같은 예방적 조치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육의 책임자로서 핵심적인 권한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고 아이티처럼, 국가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교육이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네트워크 위원회를 통한 국가의 감독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우려한다(아이티, CRC/C/15/Add. 202, para. 52)."*

2002년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민간 부문과 아동권리 수행에 있어 민간 부

문의 역할에 관한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혜택과 특별히 이동에 대하여 가지는 정치적·재정적·경제적 의미와 가능한 한계를 포괄적이면서도 분명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 같은 평가는 특별한 방식 즉 영향을 받게 될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접근성, 수용성 그리고 질로 결정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제35회기 보고서, 2002.9.10, CRC/C/121, para. 11)."

또한 위원회는 지역의 교육 제공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갈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농촌지역의 교장과 교사 그리고 부모들에게 교육 개선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와 적절한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고 교장과 교사 그리고 부모와 학생이 참여하여 교육개혁의 이행을 모니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참여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스리랑카, CRC/C/15/Add. 207, para. 43)."

## 교육권은 '평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평등한 기회에 기초하여"는 비차별에 관한 협약 제2조의 일반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 기회의 평등은 자원의 부족에 의해서 주로 침해된다.

교육에 있어 동등한 기회는 정부의 적은 예산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 아동들이 교육을 연기 혹은 포기하는 등의 주로 자원의 부족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에 덧붙여,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차별 해소를 위한 유네스코의 1960년 협약에 따라,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어떤 형태나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을 박탈당하는 아동 집단 혹은 열악한 교육수준과 간접적인 차별로 교육을 제한당하는 특수한 아동집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교육에 있어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기 쉬운 다양한 집단을 중국에 대한 최종검토를 통해 다

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중국 영토에서 당사국이 행한 노력들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여자 아동,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 소수민족 아동, 농촌지역과 서부지역의 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 그리고 이용에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중국, CRC/C/CHN/CO/2, para. 75)."

차별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였다.

## 여아

1990년 아동정상회담은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는 세계 1억 명의 아동들 중 2/3가 여자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여자 아동의 교육 확대를 그 목표로 세웠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에서는 너무 많은 여자 아동들이 전통적인 태도, 아동노동, 조혼, 예산부족과 충분한 학교시설의 부족, 10대 미혼모와 사회와 가족의 성불평등으로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자 아동의 교육확대가 그 목표로 승인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교사의 부족으로 여자 아이들의 입학이 금지되었다. 많은 경우, 여자 아동들은 매우 이른 나이에 과중한 가사를 부담하여 교육에 대한 책임과 가정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이로 인해 여자 아동들의 낮은 학성성취와 조기 중퇴가 초래되었다. 세계여성회의는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예산의 배분과 캠페인, 유연한 학업과정, 인센티브, 장학금,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그리고 기타 방법들을 이용한 지역사회와 부모의 지원을 통해 여자 아동들의 입학률을 증가시키고 재학율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5년 후 유엔총회는 베이징 회의의 사후조치로 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특별회의에서는 약간의 진척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면서도, 여자 아동의 교육 개선을 계속해서 가로막는 장애물을 도표로 함께 제시하였다. 교육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는 부족한 자원, 충분치 못한 정치적 의지, 계속되는 성차별, 성에 대한 고정관념, 아동보호시설의 부족, 교육과 여성노동시장간의 불평등한 연계, 교사의 낮은 급여 등이 제시되었다. 사후조치는 10년 후 2005년 여성지위에 관한 유엔위원회 주관으로 개

최되었고 이 사후조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관한 베이징 선언과 연계되었다.

신밀레니엄의 첫 10년 중 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여성 아동 입학률이 일부 국가에서 증가했지만, 여타 국가의 경우 여자 아동의 입학률은 여전히 남자 아동의 입학률보다도 낮았고 중퇴율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중 남자 아동은 6명 중 1명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데 비해 여자아동은 4명의 한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 오세아니아와 서아시아 그리고 남아시아는 성별 교육격차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사하라 이남지역 아프리카와 남부 아시아는 광범위한 성별 격차로 인해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 지역은 전 세계 중퇴아동의 약 80%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다.

교육권에 관한 특별서기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2005년이 끝날 무렵, 우리는 밀레니엄개발 목표에서 수립된 성평등에 관한 목표가 정보 활용이 가능한 149개 국가 중 94개 국가에서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2015년까지 성평등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국가는 86개 국가에 이르고, 여기서 76개 국가는 초등교육에서조차도 성평등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국가라는 점에서 여자 아동들은 이 같은 불평등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현재 1400만 명 이상의 여자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41개 국가에서 성별 격차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거나 격차가 더디게 좁혀지고 있어 2040년이 되기 전까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172개 국가 중 115개 국가들은 여전히 중등교육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평등의 개념은 단순히 여자 아동의 학교 등록률의 수치만을 의미하고 있어 1995년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에서 숙고된 성평등의 실제적 사고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등의 개념이 교육의 질에 대한 개선을 평가하는데 유용하지 못하다.

위원회는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교육권에 관한 쟁점을 다루어 왔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와 이란회교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즉, 여자 아동도 정규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남자 아동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자 아동에 대한 교육이 부모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남자 아동에 대한 교육과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당사국은 교육이 모든 아동의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여자 아동의 정규 교육 출석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가사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하며 임신이 여자 아동의 학교출석을 금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여성 교사들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고등교육을 원하는 여자 아동들에 대한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사국은 국가 고유의 정책을 이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교육과 관련하여 유니세프로부터 기술적인 원조를 구해야 한다(모잠비크, CRC/C/15/Add. 172, para. 57)."

"위원회는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즉 농촌 지역 여자 아동의 높은 중도탈락률과 농촌지역 여성교사의 부족,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이후 여자 아동들을 집에만 있게 하는 가정과 학교간의 먼 거리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성, 종교, 민족, 국적 혹은 무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체계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것, 모든 지역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제공되는 자원의 불평등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에 공책 등 여타의 교재, 훌륭한 교사 특히 여성교사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지식기반 경제와 사회에서 아동의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면서도 창조적이며 협동적인 학습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이란, CRC/C/15/Add. 254, paras. 60, 61)."

위원회는 높은 조기임신을 혹은 조혼이 여자 아동들의 낮은 학교 출석과 높은 중

도탈락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당사국이 임신부 학생의 퇴학 금지를 법률로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여자 아동들이 교사에 의한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이것이 여자 아동들의 중퇴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변화하는 노동양상과 사회적 태도로 인해, 남자 아동들의 중도탈락율과 낮은 학업성취율 등의 교육문제가 21세기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모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로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 특히 남자 아동들의 무단결석을 차단하고, 이들이 의무교육기간 동안 중퇴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카리브해 지역과 포클랜드 제도가 남자아동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문제의 범위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남자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특별히 중도탈락하고 있는 남자 아동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세인트루시아, CRC/C/15/Add. 258, para. 61)."*

## 농촌 아이들

농촌아동과 도시아동의 교육간 상당한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개발 도상국가들의 경우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노동에 대한 수요,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그리고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의 부족에 따른 농촌지역의 높은 빈곤율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한다. 80개의 개발도상국가의 가계 조사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18%만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데 반해, 농촌지역은 30%에 이르는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아동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도상국가의 전체 아동의 82%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촌지역 아동의 열악한 교육기회는 다양한 요인들 이를테면, 행정비용, 산간지역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어려움, 분산된 농장과 마을, 농촌지역에서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사의 부족, 열악한 농업공동체의 아동노동에 대한 의존, 학교 및 교과목과 농촌 생활간의 선명한 괴리 등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에 목화를 수확하는 일이 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요청하였다(우즈베키스탄, CRC/C/UZB/CO/2, para. 58)."*

그리고 몽골에도 다음과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아동, 특히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교육에 대한 접근이나 학교 출석에 있어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입학률에 있어 성별 불평등 그리고 지역별 불평등을 포함하여, 특별히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적령기의 아동들의 높은 미등록률과 높은 문맹률 그리고 높은 중도탈락률은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위원회는 목축업을 하는 가정의 남자 아동과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는 남자 아동들이 중도탈락의 고위험집단이자 아동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표한다(몽골, CRC/C/15/Add. 264, paras. 51)."*

위원회는 유목 가정을 위해 이동학교와 통신교육의 도입하고 농촌지역을 위해 소규모 근린학교를 확대할 것을 권고해 왔다.

### 소수집단(Minority groups)

소수문화 아동, 원주민 아동, 집시 아동, 이주민 아동, 난민 아동 등 국민들 중 특수한 집단도 교육기회의 차별로부터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세계인종차별 철폐회의는 선언에서 교육의 권리를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그리고 관련 인종적 편협에 대한 투쟁과 연계시킬 것을 강조하였고, 인권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본질적 역할과 함께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의 예방과 철폐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세계회의의 행동프로그램은 교육을 위한 세부적인 권고를 채택하여 당사국으로 하여금 모든 아동들을 위한 무상의 초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차별 없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당사국은 법률과 실천에서 모든 아동들이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에서 인종적 분리가 초래하는 모든 법적 조치와 여타의 조치들을 차단해야 한다.

교육기회의 보장은 가령, 집단이 소수언어로 대화를 하거나 유목민의 생활을 추구하는 경우처럼, 집단 그 자체의 요인으로도 침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차별적 설명을 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아동이 가진 배경에 관계없이 교육이 모든 아동들의 권리로 인정될 때만이 달성될 수 있다. 위원회는 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아에서 로마 아동의 33%만이 초등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유럽의 로마 아동들과 독립국가 아동들의 교육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리고 체코 공화국과 헝가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로마 아동의 중등학교가 로마인 본인의 제도를 수립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육체계의 개혁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이 교육개혁과 관련된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로마 아동들이 소위 특수학교라 불리우는 학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불법이주민과 망명을 거 부당한 난민의 교육의 접근에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체코, CRC/C/15/Add.201, Para. 54)"*

*"정부가 로마 아동의 더 나은 학업수행을 위해 프로그램과 학제를 수립했음에 불구하고, 비등록 아동의 수가 적절하게 통제되거나 예방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로마 아동들이 졸업도 하지 못하고 학교체계를 떠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분리교육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인정하지만, 많은 로마 아동들이 여전히 특수 기관과 특수 교실에 독단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더 나*

아가 위원회는 학교의 질이 지역 간 불균형에 의해서 저해되고 있고 전언에 따르면, 유치원에 대한 접근이 빈곤율이 높고 로마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헝가리, CRC/C/HUN/CO/2, paras. 48, 49)."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는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인의 차별에 대한 일반 권고를 채택하였다.

- 로마 국적의 모든 아동들이 교육체계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로마의 여자 아동의 중도탈락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위해 로마 부모와 연대 기구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
- 2개 국어 강의와 모국의 강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되, 가능한 한 로마 학생들의 분리를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학교에서 교육의 질과 소수공동체가 운영하는 학교의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로마 공동체의 구성원 출신을 선발하고 서로간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증진해야 한다.
- 로마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의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 로마 학생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종적 괴롭힘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 지역학교에 로마 아동들의 임시 입학을 허가하거나 로마인의 야영지에 임시교실을 운영하거나 혹은 통신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여행 공동체인 로마 아동들의 기본교육 과정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 분야의 프로그램과 과제 그리고 캠페인이 로마의 여자 아동과 로마 여성의 불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로마 출신의 보다 많은 보조자를 활용하여 교사와 로마 아동, 로마 공동체와 부모간의 대화와 의사소통을 개선해야 한다.
- 로마인들의 성인 문맹률을 개선하기 위해, 학령기를 지난 로마 공동체 구성원의 적절한 교육 형태와 교육체계를 보장해야 한다.
- 모든 적절한 수준에서 로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부분을 교과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모국어와 함께 로마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한 책과 여타의 인쇄 매체의 출판이나 배포를 지원해야 하고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영도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교육기회의 평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관계없이 교육이 모든 아동들의 권리로 인정될 때만이 달성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주민과 난민 아동들이 자국의 다른 아동들처럼 동등하게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는 다음과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그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이주아동이 특정지역의 학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들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에 다시금 우려를 표한다(캐나다, CRC/C/15/Add. 215, para. 44)."

이주 아동들에게 지역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이주아동에게 모국어를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학습매체로 지역 방언을 사용한 필리핀의 'Lingua Franca 프로젝트'를 환영하고 이 프로젝트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즉, Lingua Franca 프로젝트를 통해, 원주민 아동과 소수집단 아동들이 자신들의 특징적인 문화적 양상을 존중하는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토착 언어와 소수언어가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필리핀, CRC/C/15/Add. 259, para. 70)."

룩셈부르크의 상황에 대해서는 논평과 함께 다음과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난민 아동과 망명 아동이 룩셈부르크의 학교체계에 무상으로 접근하는 것과 교육부가 교육체계로의 외국인 통합을 촉진하고자 상호문화의 조정자를 지명한 것에 만족감을 표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외국인 아동의 상당수가 언어문제를 포함하여 룩셈부르크의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방법으로부터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외국인 아동과 난민 아동들이 교육영역에서 동일한 기준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언어가 교육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보장하고 아동이 필요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룩셈부르크, CRC/C/15/Add. 250, paras, 50, 51)."

비록 언어가 많은 이주 아동의 핵심적인 쟁점이기는 하지만, 태도와 접근이 더 큰 장애물일 수 있다. 위원회는 그리스에 대해 다음과 사항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교사와 학생들의 외국인 혐오, 학교등록과 교육자력의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망명 및 난민 아동을 포함한 일부 아동집단의 교육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오래된 교재의 사용을 포함한 그리스어 이외의 언어를 가르치는 많은 학교의 열악한 교육의 질, 로마아동의 매우 높은 문맹률, 특정 민족종교언어문화집단 아동의 낮은 중등학교 출석률, 그리고 이 같은 아동들의 학업지위 미인정과 청강자 자격만의 인정 등과 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당사국 내의 모든 아동들에게 입학률의 증가와 중퇴율의 감소, 농촌지역출신과 로마지역 출신 그리고 여타의 다른 특징적인 민족종교언어문화 집단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리고 부모와 지역기관에 초점을 둔 정보캠페인의 활용을 통해 취약한 배경을 가진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중등학교에의 많은 특정 민족종교언어문화집단 아동의 참여, 모든 관련 학업과 주요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 교사의 총원 확대, 모든 특정 민족종교언어문화집단 및 여타의 배경을 가진 아동을 교육체계로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모든 교사에게 다문화적 관련 사항에 대한 기존 훈련 프로그램 및 정보를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그리스, CRC/C/15/Add. 177, para. 66,67)."

위원회는 타국의 부모 없이 분리된 아동의 처우에 관한 일반논평 No.6에서 위원회는 부모가 없는 난민 아동과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제공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당사국은 전환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모 없이 분리된 모든 아동은 그 지위와 상관없이 입국한 국가의 교육에 완전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같은 접근은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분리되고 부모가 없는 여자아동은 모든 수준의 직업훈련을 포함한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 역시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 특히 장애아동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부모가 없는 분리된 아동은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학교 당국에 등록되어야 하고, 교육의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없는 분리된 모든 아동은 그들의 모국어의 유지와 개발을 포함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를 보존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청소년은 직업적/전문적 훈련이나 교육에 등록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어린 아동에게는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부모가 없는 분리된 아동이 그들의 교육수준을 표시하는 증서나 기타 문서를 제공받을 것을 보장해야만 하며 특히 재배치, 재정착 또는 귀환의 경우에 그러하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6, CRC/GC/2005/6, paras. 41, 42)."

비종교적이고 다차원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의 교육체계는 차별적일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제기한 우려 즉, 전체 초등교육시설의 1%도 안되는 학교만이 비종파적이거나 다차원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차 강조한다. 위원회는 비차별적 수업과 다차원적 수업의 이행을 강화하고 학교입학에 있어 차별을 제거하도록 기존의 법률체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제시한 권고를 당사국이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아이슬란드, CRC/C/IRL/CO/2, paras. 60, 61)."

## 장애아동과 HIV에 감염된 아동

아무리 심각한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아동은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특정 아동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여기거나 교육보다는 의료적 처치를 받도록 하는 법이나 관행은 협약 제2조와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다. 더군다나 협약 제23조 3항에서는 장애아동의 교육권은 아동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주류 학교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2006년 12월에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생활부분으로의 완전한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이 규정한 완전한 교육을 장애아동에게 제공하고, 특별히 필수적인 이동수단과 학습수단을 제공하며 모든 수준에서 통합교육체계가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No.9에서 국가가 교육에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적 분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장애인권리협약

### 제24조-교육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에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당사국은 모든 단계에서 통합교육체제와 평생교육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장한다.
  - 인간의 잠재성, 존엄성 및 자기가치에 대한 개발과 기본적 자유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강화한다.
  - 가능한 최대한도로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을 개발한다.
  - 장애인이 자유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한다.
  -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개인의 요구는 합리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 장애인은 일반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 교육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방안이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기술 및 사회 개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점자, 대체문자, 확장적이고 보완대체 의사소통수단 및 형식, 적응지도 및 이동기술에 대한 학습의 장려와 동료집단의 지원 및 멘토링을 장려한다.
    - 수화 학습과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언어 정체성의 증진을 장려한다.
    -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에 대한 교육은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행태와 의사소통의 방식 및 수단을 통해 그리고 학업 및 사회적 발달을 최대화시키는 환경에서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4. 당사국은 이 같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적절하고 보완적이며 대안적인 의사소통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과 교육기술 및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3차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일련의 가치이자 원칙이며 실천으로서, 통합교육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교육조건의 다양성과 교육목구의 다양성을 정당화한다. 통합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서로 다른 기구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통합의 범위는 모든 장애학생들을 일반 학급이나 일정 비율의 특수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통합을 갖춘 일반 학급으로 완전하게 전환하는 것까지이다. 통합은 장애아동의 도전이나 욕구와 관계없이 장애아동을 일반적인 체계로 단순하게 통합시키는 실천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과목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평가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체계에 관계하고 있는 교사와 여타의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전환은 통합교육 철학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목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9, 2006, CRC/C/GC/9, para. 67)."



HIV/AIDS에 감염된 아동과 관련해서, 일반논평 No.3, 즉 HIV/AIDS와 아동국가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3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HIV/AIDS의 감염여부, 고아여부, 영향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기초교육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HIV가 만연한 많은 지역에서, 감염된 가족의 아동들, 특히 여자 아동들은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AIDS로 사망한 많은 교사 및 교직원으로 인해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받고 있고 이로 인해 아동에 대한 교육 접근성 자체가 파괴될 위협에 직면해 있다. 당사국은 HIV/AIDS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아동들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감염된 교사들을 대체할 자격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아동의 지속적인 등교가 영향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제28조)이 완전히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3, 2003, CRC/GC//2003/3, para. 18)."

위원회는 장애아동과 질병에 걸린 아동에 대한 교육차별에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위원회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주시설에서만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같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전반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점에 우려한다(그루지야, CRC/C/15/Add.22, para. 56)."

"위원회는 일부 학교가 예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아동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한다. 더군다나 수많은 장애아동들이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모든 아동들이 협약 제28조와 29조에 따라 교육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아동들이 가능한 한 협약 제3조에 따라 주류 교육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프랑스, CRC/C/15/Add.240, paras.48, 49)."

"위원회는 간염, 빈혈, 피부질환 그리고 HIV/AIDS와 같은 일부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들이 가진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주류 교육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아제르바이잔, CRC/C/AZE/CO/2. para. 57)."

"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많은 파키스탄 난민 장애아동들이 학교교육차별 철폐로부

터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맹률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레바논, CRC/C/LBN/CO/3, para. 65)."

## 수감 아동(Children in forms of detention)

수감된 아동들 역시 교육의 권리 혹은 충분한 교육의 권리가 부정된다.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제13조와 38조에서 47조까지의 규정은 고등 교육, 직업교육, 특수교육 그리고 신체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들의 교육에 관한 높은 기준들을 매수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원회는 협약 제37조에 근거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교육에 관한 쟁점들을 평이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제공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들 아동들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와 라트비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소년 범죄자가 수감시설 내에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소년 범죄자를 교육하는 교사들이 특수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엘살바도르, CRC/C.1/Add 232, para. 58)."

"국가의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차이에 관계없이 인권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배분하는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트비아, CRC/C/LVA/CO/2, para. 51)."

##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초안을 만드는 동안, 무상의 개념에 대한 일부의 논쟁이 있었다. 무상교육 반대의 논거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세금을 통해 누군가는 항상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환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 측 대표는 무상(free)의 개념이 당시국이 의무적으로 무료 교육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은 모든 아동들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협약의 하위조항은 기초교육단계에서 무상교육은 저소득 아동이나 여타의

다른 범주의 아동만이 아닌 모든 아동들을 위해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모아, 싱가포르, 스위스 등 세 국가는 국가의 무상교육 의무를 규정한 이 같은 하위조항의 적용을 유보하였다.

사모아는 유보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서부 사모아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명시된 무상교육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인정하지만 서부 사모아 관내 초등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학교들이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은 기관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무상의 초등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28조의 요구와는 반대로 초등교육에 대한 자원할당의 권리를 서부 사모아 정부는 유보하고자 한다.

스와질란드의 유보결정도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의 보호가 출발점이다. 협약 제4조가 인정한 바대로, 특정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이행의 점진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와질란드 정부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로 무상의 초등교육에 관한 권리를 이행 하고 가능한 완전한 의무의 이행을 위해 국제공동체의 도움을 구할 것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와질란드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상의 기초교육을 보장할 수 없다면, 이 같은 유보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도로 교육에 할당하고 협약 28조의 점진적 이행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채택했어야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유보는 관할지역내 모든 아동에 대한 무상의 의무적인 기초교육의 보장이라고 하는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같은 유보의 결정은 협약 제5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 (a) 협약 제28조에 따라, 싱가포르 공화국은 이미 모든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의무교육이라는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
- (b) 무상의 기초교육을 싱가포르의 시민인 아동들에게만 제공해야 할 권리를 유보하였다.

싱가포르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최종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원회는 싱가포르의 관할지역 내 모든 아동들이 무상의 기초교육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의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유보에 대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기초교육 행동계획에 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1은 기초교육의 권리와 관련하여 무상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모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권리는 아동이나 부모 혹은 후견인의 부담 없이 기초교육이 이용 가능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학교가 부과한 비용이나 여타의 직접적인 비용은 무상교육에 대한 권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 권리의 실현을 위태롭게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비용들은 매우 역진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비용을 없애는 것은 의무적인 행동계획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부모에 대한 의무적 부담이나 비교적 비싼 교복 착용의 의무와 같은 간접적인 비용도 역진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무적인 무상의 초등교육의 권리는 협약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위원회의 주된 관심사이다. 예를 들어, 이 같은 관심은 콜롬비아의 헌법에 대한 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9학년의 교육기간동안 무상의 교육이 헌법의 권리로 규정되었지만, 유보 결정으로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실제 이 같은 조항이 자의적 비용과 사회적 배제로 특징되는 차별적인 교육체계를 만들어 왔다. 위원회는 여전히 부족한 예산할당,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불평등한 배분, 드러나지 않은 행정비용의 지속적인 지출 그리고 교복비나 교재비, 교통비 등의 교육권 이행 과정에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차별적인 교육체제는 사회의 취약집단 특히 농촌지역의 높은 중도탈락률과 급증하는 중도탈락률로 나타나고 있다..(콜롬비아, CRC/C/COL/CO/3, para. 76)."

미안파도 드러나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부모들이 교복비, 교재비, 교구비 기타 용품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지불을 요구받음으로써 무상의 기초교육이 실제로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미안파, CRC/C/15/Add.237, para. 62)."

그리고 콩고 공화국의 직접비용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부모가 교사의 월급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교실의 신축이나 기능보강 등과 같은 학교지출에 대한 투자를 부담함으로써 교육체계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부모연대의 일반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한다...(콩고, CRC/C/COG/Co/1, para. 68)."

니카라과의 자발적 비용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많은 공립학교들이 학생의 명찰비용으로 자발적인 일정금액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이 같은 비용은 가족들에게 교복과 급식, 학용품과 교통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것은 빈곤 가정의 아동에 대한 교육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니카라과, CRC/C/15/Add. 265, para. 57)."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위원회는 에티오피아의 초등교육은 무상교육이지만 아직까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약상의 이 같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교육과 학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아동은 학교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슬프게도 학교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아동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일반 교육과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들이 이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서로 다른 형태의 중등교육에 대한 개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무상교육의 도입과 재정지원의 제공과 같은 적절한 조치의 장려

중등교육권이라는 개념은 기초교육의 개념보다도 절대적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다. 중등교육권의 취약한 개념은 아동에 대한 중등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일종의 의문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무상의 의무 중등교육이 수많은 국가에서 자원을 뛰어넘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무상교육의 도입이나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의 제공과 같은 ‘적절한 조치의 이행’은 교육의 이용가능성과 접근가능성이 부유한 가정은 지불하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무상이나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니도록 하기 위한 자산조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너무 쉬운 접근이라 사실상 중등교육이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교육권에 관한 일반논평을 채택하여 이용가능과 접근가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접근성은 교육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이 차별 없이 당사국의 관할 구역 내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접근성은 세 가지의 유사한 차원을 가진다.

- 비차별 : 교육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장 취약한 집단의 사람들이 법이나 실천 상에 금지된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물리적 접근 : 교육은 매우 편리한 지리적 위치나 현대화된 기술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물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경제적 접근성 :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접근성의 차원은 기초, 중등 그리고 고등교육에 관한 협약 제13조의 서로 다른 개념(differential wording)에 종속된다. 기초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당사국은 무상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접근적 이용가능성의 개념은 다음을 의미한다. 첫째, 중등교육은 학생의 명확한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중등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토대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 전역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적절한 수단이라는 개념은 당사국이 서로 다른 사회적·문화적 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접근들을 통해 중등교육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중등교육의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중등교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특별히 농촌지역 여자 아동에 대한 중도탈락률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격차로 인한 교육체계의 불평등의 증가로 결국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기초한 학교에서의 인종적 분리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짐바브웨, CRC/C/15/Add. 55, para 19)."*

*"위원회는 충분하지 못한 재원이 인간개발사업에 할당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교육기관의 성장에 따라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간의 개발격차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들이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고 차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무엇보다도 공교육을 우선시 할 것을 강조한다(레바논, CRC/C/15/Add.54, paras. 12, 30)."*

*"레바논이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할 때, 위원회는 공교육이 완전하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사교육기관의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차별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재차 우려를 표했다(레바논, CRC/C/15/Add.169. paras. 48, 49)."*

위원회는 의무교육의 연령을 12세에서 15세로 상향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사교육기관의 강화에 따른 차별의 위험에 대해서는 세 번째 검토보고서에서도 반복되었다(레바논, CRC/C/LBN/CO/3, para. 63).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의 제공은 소득원을 아동의 노동에 의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가족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협약 제28조의 하위 조항은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포함한 서로 다른 형태의 중등교육에 관한 규정이다. 협약은 분명한 논리로 직업교육을 제시하였다. 교육은 아동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적절해야 한다. 직업교육과 노동관련 훈련은 자신의 권리로서 교육일 뿐만 아니라 아동이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동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국가로 하여금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도 장려하였다.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가 자신의 사회적 맥락에서 아동의 욕구에 따른 유연한 교육과정과 교육전달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부룬디는 특히 장애아동의 직업교육에 대한 접근보장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아동의 삶의 기회를 황폐하게 하는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선별시험이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몇몇 국가들에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아동의 학업능력이 11세의 이른 시기에 결정되는데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11세의 중등교육 입학시험의 영향에 대한 시려 깊은 연구를 포함하여 교육개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바버도스, CRC/C/15/Add.103, para. 27)."*

*"위원회는 입학시험체계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무상의 공립중등학교로의 입학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모든 학생들이 공립중등학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다 많은 학교를 신축하고, 학교 용구 지원을 개선하며, 입학시험체계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당사국이 사회 내 모든 집단출신의 아동들이 교육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앤티가 바부다, CRC/C/15/Add.247, paras. 57, 59)."*

*"위원회는 제출된 교육개혁들이 성적순에 기초한 국립중등학교 접근이라는 불공정한 분류 요소가 도입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모리셔스, CRC/C/MUS/Co/3, para. 60)."*

위원회가 코스타리카에 강조한 것처럼, 직업교육의 목적은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경쟁으로 학교를 떠나는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는 비록 기술훈련과 직업훈련을 위한 과정과 기관들이 확대되었다 할지라도, 15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많은 아동들이 적합한 노동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코스타리카, CRC/C/15/Add. 266, para. 45)."

중등교육의 입학연령과 졸업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초등교육의 입학연령은 공통적으로 6세이고 위원회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최소 총 9년이 되어 중등학교를 15세에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학제는 고용을 위한 최소연령 관련 조항과도 부합한다. ILO의 최소연령협약 제2에 따르면, 1973의 고용최소연령은 의무교육기간의 졸업연령, 즉 1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졸업연령과 고용최소연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우려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의 졸업연령과 최소고용허용 연령간의 법률적 불일치는 청소년들의 학교 체계로부터의 이탈을 조장할 수 있다(튀니지, CRC/C/15/Add. 39, para. 9)."

"과테말라 헌법뿐만 아니라 ILO 협정 제138의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의무교육 졸업연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총 15세에 의무교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연령을 설정하고 최소고용연령을 1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다(과테말라, CRC/15/Add.58, paras. 15, 26)."

"위원회는 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최고 고용연령은 14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충분치 못한 법적 조치와 여타의 조치가 의무교육 연령에 해당되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고용된 12세에서부터 14세 아동들의 권리를 그럭저럭 보호되어 온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의무교육연령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합법적으로 고용되는 12세에서부터 14세까지의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최저 의무교육 연령을 12세에서 최소 14세까지 상향할 것을 권고한다(수리남, CRC/C/15/Add. 130, paras. 23, 24. 협약 제32조)."

## 초년기; 취학전 교육(Early years; pre-school education)

협약은 취학 전 아동에게 제공해 할 국가의 의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

다. 그러나 위원회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서비스에 대해 점차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현재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가의 정기보고서에 취학전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기 아동기의 아동권리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No.7에서 취학전 교육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원회는 몇몇 당사국이 모든 아동을 위한 일 년간의 무상 취학전 교육을 계획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본 위원회는 초기 아동기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서 최대한의 발달에 대한 유아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제6조 2항). 교육과 발달간의 연계는 제29조 1항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이 (a)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반논평 No.1에서는 그 목적이 "아동의 기술, 학습과 기타의 능력, 인간의 존엄성, 자기 존중 및 자신감을 개발시킴으로써 아동에게 권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고, 이 같은 교육은 아동 중심의, 아동 친화적이며 아동의 고유한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사국은 교육에 관한 아동의 권리는 모든 아동을 포함하며 여자 아동들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함을 명심해야 한다(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가, 공동체 혹은 시민사회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초기 아동기의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기여뿐만 아니라 부모와 확대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교육을 모든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연구 결과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아동들의 교육적 진보 그리고 아동들의 장기적인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국가들과 지역에서는 현재 포괄적 조기 교육을 4세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이것이 일하는 부모의 보육과 결합되어 있다. "보육"과 "교육"서비스 간의 전통적인 차이가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보육(educare)"의 개념은 통합서비스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이고, 초기 아동기의 협동적이며 종합적이며 다면적인 접근의 필요에 대한 인식을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아동권리위

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 paras, 28, 30)."

예를 들어, 위원회는 코스타리카 아동의 90%가 취학 전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취학전 교육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유치원에 입학한 아동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당사국이 취학전 교육의 급증하는 수요에 욕구에 따라 국민간의 상호 대화를 통해 유치원의 교과목을 준비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한 점에 만족감을 표한다(요르단, CRC/C/JOR/CO/3, para. 75)."

그리고 위원회는

"취학 전 최소 1년이 의무교육이 아닌 점(일본, CRC/15/Add. 249, para. 6) 중앙정부가 취학전 교육을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레바논, CRC/C/LBN/CO/3, para. 63)."

"2008/09년까지 모든 아동들이 취학전 교육에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보장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멕시코, CRC/C/MEX/CO/3, para. 56)."

위원회는 의무초등교육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위해 국가가 초기아동기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초기 아동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편적인 교육구조에 초기 아동기 교육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인도, CRC/C/15/Add. 228, para. 65)."

"위원회는 초기 아동기의 아동권리 이행과 초기아동기교육의 증진, 개발, 협력에 관한 국가 기구의 수립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7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모든 아동이 초기아동기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인적·기술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할당하고, 학령기 교육과 조기교육기회와 관련하여 부모의 인식과 동인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을 권고한다(레바논, CRC/C/LBN/CO/3, para. 64)."

**"(c)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기초하여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협약에서의 고등교육이 아동기로 정의하고 있는 연령 이후를 지향하고 있고, 고등교육이 능력에 기초하여 실행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협약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아동권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원회는 협약 제28조의 의무를 국가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규정과 관련한 차별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가끔씩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정치적 배경, 의견, 활동들이 고등교육의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한다(북한, CRC/C/15/Add. 239, para. 54)."*

*"위원회는 많은 바하마의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참여를 이유로 대학입학이 허용하지 않았던 문서로 증명된 정보에 대해 우려한다(이란, CRC/C/15/Add. 254, para. 59)."*

협약 상 고등교육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동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빈곤 아동들이 고등교육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그리고 지원금과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했다.

*"고등교육 입학에 있어 과도한 경쟁은 공교육이 빈곤가족의 아동들을 이용할 수 없는 사교육 강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일본, CRC/C/15/Add. 231, para. 49)."*

‘능력에 기초하여’ 라는 개념은 수학능력이 고소득가정과 사교육시장의 입장에 따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 질 수 있는 시험의 합격에만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여자 아동들을 위한 고등교육은 여자 아동들의 이른 시기의 결혼하는 것과 이른 시기에 부모가 되는 것을 늦추는데도 부가적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d) 교육 및 직업교육 정보와 지침은 모든 아동들이 이용가능 해야 하고 접근가능 해야 한다."**

한편, 위원회는 이 같은 권리에 직접적인 초점을 두지 않았고, 모든 아동들이 교육과 직업훈련에 접근해야 한다면, 이 권리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제 대해서 모든 아동들이 알아야 하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해져야 할 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지역사회, 가족들은 아동들이 자신들의 미래 생활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큰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있고, 직업과 관련하여 변화하고 있는 기회나 요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아동들은 자신들이 이용 가능한 기회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직업에 대해 획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만 자신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e) 학교의 정규출석을 보장하고 중도탈락율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들이 학교를 중도탈락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빈곤은 많은 사회에서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일 수 있다. 아동들이 노동을 해야 한다면 교육에 있어 비용이 요구된다면 아동들의 성장은 저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아동들은 다른 이유들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교과가 너무 단조롭거나 어려운 경우 혹은 부적절한 경우, 교육이 너무 열악하거나 아동의 모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학교의 훈육이 과도하게 징벌적이거나 존엄성을 존중하지 못한 경우, 학습장애가 구분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아동들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있다. 아동들에게 강제로 학년을 반복하는 것도 자원의 낭비에 더하여 아동들의 학업에 대한 중도탈락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하위문단의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책임을 학교에 대한 충분한 자원의 전달에만 한정하지 않고, 아동들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 법의 제

정까지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하위문단의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즉, 국가는 학교에서 아동들이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충분히 유용하고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의무를 당사국이 이행하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중도탈락 아동들이 특히 여자아동, 농촌아동, 소수집단 아동,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 장애아동 등 대체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은 집단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의 중도탈락 원인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중도탈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을 권장하였다. 위원회가 에스토니아에 지적한 것처럼, 이 같은 조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육권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5,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재입학율과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중도탈락의 요인으로는 과밀학급, 축소된 과외활동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그리고 이유로 인한 농촌지역 학교의 폐교 등이 포함될 수 있다(에스토니아, CRC/C/15/Add. 196, para. 42)."*

물론, 높은 중도탈락률의 핵심적 요인으로는 아동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교사의 무능력에 있다. 위원회는 교육의 질과 교사의 조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더 나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사의 수와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훈련과정을 강화하여 당사국으로 되돌아오지 않은 유능한 교사들을 장려하고, 적절한 교육시설과 교재 그리고 교사에 대한 적정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체계에 충분한 자원을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시에라리온, CRC/C/15/Add. 116, para. 66)."*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육부문에 지출되는 예산, 가령 아동의 욕구에 적합한 학교 과과정의 운영이나 취학 전과 중등교육시기를 포함하여 직업교육과 비공식교육 기회의 확대, 혹은 교육체계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등의 예산을 증*

액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한다(캄보디아, CRC/C/15/Add. 265, para. 54)."

"위원회는 충분히 훈련받은 교사의 부족과 동기부여의 상실이나 높은 이직률, 해외이주 그리고 전문성 개발에 대한 낮은 관심 등을 초래하는 교사의 낮은 급여에 대해 우려한다(니카라과, CRC/C/15/Add. 265, para. 54)."

정기보고서 안내지침은 이 부분의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으로 하여금 지역이나 국가차원의 국가 기구나 교사연대와 같은 비정부기구와의 협조의 특성과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학교의 중도탈락률 해소를 위한 조치들에는 아동의 재정적 환경에 대한 인지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높은 학교 중도탈락률과 관련하여 온두라스에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학교의 방학을 추수와 경작기에 맞추고자 아직까지도 농번기에는 학기를 편성하지 않은 정부의 주장에 대해 주목한다. 이와 유사하게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를 통해서 급식과 보건의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한다(온두라스, CRC/C/15/Add. 24, para. 31)."

과테말라에게는

".... 아동들의 학교출석을 위한 유인책으로 교육지원프로그램의 이행을 권고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에게는 높은 중도탈락률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보다 유익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과테말라, CRC/C/15/Add.58, para. 36)."

위원회는 중도탈락률의 감소를 위해 학교교육의 개선, 특별히 교육의 적정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세이셸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아동의 지속적인 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더 나은 고용기회와 사회로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세이셸, CRC/C/15/Add. 189, para. 49)."

학교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더 나은 직업교육의 의미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특히, 빈곤과 이주로 인해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아동들이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중요한 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체계의 개발을 증진하고, 적절한 기술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훈련의 이용과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중국, CRC/C/CHN/CO/2, para. 78)."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훈련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아동을 위한 직업 상담을 제공하며, 교외 아동과 근로아동이 자신의 삶의 특성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많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충분한 재정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보장하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및 기타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며, 유네스코나 유니세프로부터 기술적 원조를 구해야 한다(코스타리카, CRC/C/15/Add. 265, para. 56)."

높은 중도탈락률이 소수집단에서 두드러지는 지역은 소수민족이나 원주민의 문화나 언어를 존중하고, 유목적인 생활양식이나 여타의 상이한 생활양식을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접근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그에 따른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고무시킨다.

위원회는 특별히 청소년 뿐 만 아니라 농촌 아동, 원주민 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의 높은 중도탈락률과 낮은 교육의 질에 대해 우려한다. 아울러 원주민 지역의 불충분한 두 개 국어의 다문화적 교육이 이 지역의 높은 중도탈락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라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원주민 아동들의 높은 중도탈락율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의 인간적 존엄과 현 협약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

일반적으로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협약 제28조의 2는 교육과 관련된 여타의 처우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들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처벌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결코 수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체적 처벌이나 기타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의 아동권리보호에 관한 일반논평 No.8에서 이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No.8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바처럼, 이러한 관행들이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존중받을 아동의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초기의 의존상태와 발달과정중인 상태, 그리고 특별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 뿐만 아니라 취약성을 가진 아동 고유의 특성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법적인 보호와 함께 여타의 보호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본 위원회는 법의 개정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굴욕적인 처벌을 제거하는 것이 당사국의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인 의무임을 강조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8, 2006, CRC/C/GC/8, paras. 20~22)."*

제28조의 규정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과 상해나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규정한 제19조의 의무가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가정과 아동복지 시설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현 협약과 일치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협약 제29조의 교육목적에 대한 합의사항들은 모든 사람들의 이해, 평화, 관용, 성평등 그리고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다. 위원회는 교육목적에 관한 최초 일반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교육은 협약 제12조 1항에 따라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아동이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은 제28조 2항에 반영된 징계어의 엄격한 제한을 존중하고 교내*

에서의 비폭력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만 한다. 본 위원회는 육체적 처벌의 사용이 아동의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의 징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님을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다시금 강조하였다. 제29조 1항에서 인정한 가치 준수는 학교가 용어상의 모든 의미에서 아동 우호적이어야 하며 존엄성에 대한 전적인 존중을 견지해야 함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의 아동의 참여, 학교 공동체와 학생 위원회의 형성, 동료 교육과 동료 상담, 그리고 교내 징계절차에의 아동의 참여는 권리 실현의 경험의 일부이자 학습의 과정의 일부로서 증진되어야 만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1, 2001, CRC/GC/2001/1, para. 8)."

1999년 교육권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역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위원회의 관점에서, 신체적 처벌은 국제인권법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협약과 일치하지 않는 규율이 관할영역 내 공사 교육기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당사국이 일선학교에 긍정적이면서도 비폭력적 방식의 학교 규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조치를 취한 점을 환영한다.

2006년 유엔사무총장 아동폭력연구에서는 비록 강제력이 다르기는 하지만, 102개 국가가 학교에서의 신체적 처벌을 금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모든 학교에서 신체적 처벌을 효과적으로 금지시키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교사의 행동강령이 신체적 처벌을 금지하지 않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내 아동폭력의 문제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여전히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폭력과 성학대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사의 행동강령에 신체적 처벌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고, 학교 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규율기능을 폐지하며, 학생에 대한 지원기능으로 제한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아동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파키스탄, CRC/C/15/Add. 217, paras. 60, 61, 63)."

과테말라에게는 학교에서의 신체적 처벌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짐바브웨에 대해서는 신체적 처벌과 협약 제28조 2항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체적 처벌의 금지는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신체적 처벌은 사립학교에서도 금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영국에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했다.

민간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이 허용되고 있고 이것은 협약 제28조 2항을 포함한 협약의 규정들과 양립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사립학교에서도 신체적 처벌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권고했다.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리고 아동이 공립학교로 갈 것인지 혹은 사립학교로 갈 것인지는 주로 가족의 생활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체계에 관한 협약 제2조의 적용과 차별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적 처벌의 금지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신체적 처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헝가리에서처럼, 신체적 처벌이 법률을 위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위원회는 헝가리의 아동교육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신체적 처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육체계 전문가, 특히 교사가 신체적 처벌을 지양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점을 민감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헝가리, CRC/C/HUN/CO/2, paras. 54, 55).

그리고 이 같은 조치들은 아동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여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특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교직원의 학대와 착취를 예방하고, 신체적 처벌을 가한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징계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동중심의 진정 제도를 통해 신체적 처벌이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말라위, CRC/C/15/Add. 174, para. 56).

신체적 처벌은 협약 제28조에 반하는 교칙의 형태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중 앞에서의 굴욕도 아동의 인간적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보호도 협약상의 여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부모나 친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동이 휴식이나 여가를 즐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제약하는 처벌도 협약 제28조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위원회는 교황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기시켰다.

학교에서 활용되는 교육방법들은 협약의 정신과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교황청, CRC/C/15/Add. 46, para. 1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신체적 처벌을 비난하면서 교육권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적하였다. 학생들 앞에서 굴욕감을 주는 처벌과 같은 학교에서의 많은 훈육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그 어떤 훈육도 먹을 권리처럼 협약상의 여러 권리들을 침해할 수 없다.

문제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극단적인 제제는 제적이다. 학생을 제적하기 위한 절차는 독립적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특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 어떤 아동들도 훈계처원의 제적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정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아일랜드와 영국에 이 같은 문제들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교사가 내린 처벌로 아동들이 학교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 같은 배제가 중도탈락률과 출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아일랜드, CRC/C/15/Add. 85, para.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임시정학 혹은 영구 제적을 감소시키고 당사국의 모든 아동들이 제적에 앞서 청문의 권리를 가지고 임시정학이나 영구 제적을 반대를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제적당한 아동이 계속해서 전일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영국, CRC/C/15/Add. 188, para.48)."

훈육은 진정절차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담고 있는 협약 제12조의 원칙도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훈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하여 학교환경에 아동들의 참여를 증진할 것을 권고한다(수리남, CRC/C/15/Add. 130, para. 52).

위원회는 당사국내 모든 지역의 법률이 협약의 제12조를 반영할 것과 아동의 의견표명의 권리를 존중할 것 그리고 학교의 훈육과 관련하여 아동들이 자신들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정당한 권한을 부여할 것 등을 권고한다(영국, CRC/C/15/Add. 188, para. 48).

위원회는 아동에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했다. 특히,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와 착취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아동학대나 착취의 가해 교직원에게 대해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친화적인 진정구조를 통해 권한 있는 기관에 학내 아동학대와 착취와 같은 사건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따돌림(Bullying)

학내 훈육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폭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학생들 간 따돌림(Bullying)은 항상 학교에서 발생해왔지만 점차 따돌림의 양상이 확대되고 있고 허용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친구뿐만 아니라 성인의 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원회는 따돌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학내 폭력의 빈도와 수준, 특히 광범위한 신체적 처벌의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학생들 간의 빈번한 따돌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법률을 통해 신체적 처벌을 금지하고 있고 따돌림의 피해자를 위한 직통전화의 개설과 같은 조치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현재의 조치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특히 신체적 처벌과 따돌림의 완전한 철폐를 위해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 같은 프로그램의 이행을 세밀하게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일본, CRC/C/15/Add.90, paras. 24, 45)."*

"위원회는 *National Safe School Framework and the Bullying. No Way* 웹사이트와 같이 학내의 따돌림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환영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아동, 특히 아동의 심리적 건강, 교육환경 그리고 사회적 발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학생과 직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동료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학내의 따돌림 현상을 없애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호주, CRC/C/15/Add. 268, paras. 60, 61)."

위원회는 학내 따돌림과 폭력해소를 위한 행동계획의 수립을 모든 학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에 환영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장애아동과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여전히 진부한 조치라는 점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학생, 교직원, 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동료관계의 양상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완전한 참여를 통해 학내에서의 따돌림과 폭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아울러 장애아동과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따돌림 및 폭력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도 권고한다(핀란드, CRC/C/15/Add.272, paras. 46, 47)."

"위원회는 학교폭력과 학생들 간의 따돌림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폭력문화를 해소하고 폭력문화에 따른 높은 수준의 학생들 간 따돌림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학교에서 더 크게는 사회에서 모든 아동들이 불관용과 따돌림 그리고 차별을 배제함으로써 관용과 평화의 환경을 형성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수행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리투아니아, CRC/C/LTU/CO/2, paras. 56, 57)."

매우 단순하면서도 가혹한 대응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아동들을 폭력의 희생자이자 가해자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시설에서의 고질적인 폭력에

대한 쉬운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의 권고에서처럼, 아동의 관점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은 조치를 수행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위원회는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여타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는데 적합한 수단과 구조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기령, 당사국은 관할지역내 모든 지역의 법률이 협약 제12조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아동들에게 자신의 관점에 대한 표현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 규율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정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이태리, CRC/C/15/Add. 198, para. 44)."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교사나 교직원에 의한 폭력과 동료들의 폭력, 따돌림과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2003년에 슬로베니아가 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보충훈련을 포함하여 폭력문제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교육 폭력문제 분석 위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위원회는 학교 훈육이 아동들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또한 슬로베니아의 교육부가 폭력문제 분석을 위해 임명한 위원에게도 국가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위원회는 특별히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 간에 일상적인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슬로베니아, CRC/C/15/Add. 230, paras. 38, 39)."

## 개발도상국의 욕구를 고려한 교육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교육은 개별 아동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달을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교육의 발전은 아동의 삶의 기회, 국가의 경제발달, 농업생산성 그리고 출산율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교육의 진보는 모두에게 유익한 혜택을 제공한다. 유니세프와 유네스코는 교육자원과 에너지 등의 전문성에 상당한 투자

를 해왔다. 여기에 더해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이동을 가장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서로에게 배워야 한다. 그래서 개발원조의 상당부분은 교육프로그램에 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들은 협약 제28조 3항에서 언급된 과학적인 실제 지식과 현대적인 교육방법을 포함하여 서로에게 이동을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 1997년 인권보고 매뉴얼은 국제기술원조 프로그램에 교사들에 대한 훈련, 현대적인 강의 기술의 습득, 교사능력의 향상을 그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국제기술원조 프로그램은 사실 교육의 역할을 촉진하는데 있어 수단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협약이행 체크리스트

### ●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제28조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

-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책임 있는 부서와 기관들이 지정되고 이 부서와 기관들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협약 제28조와 관련된 부처는 교육부와 노동부이다)
- 관련 비정부기구 또는 시민사회 협력기관이 지정되어 있는가?
- 관할지역내 모든 아동들을 위해 모든 입법, 정책 그리고 실천이 협약과 양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전략

- 목표와 이행상황에 대한 지표가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전략에 포함하고 있는가?
- 전략이 아동의 권리에 보다 도움이 되는 특정 조항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
- 전략이 여타의 관련 국제 기준들을 수용하고 있는가?
-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략에 포함하고 있는가?

(이 같은 조치들은 전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정부전략의 일부에 해당된다)

- 예산분석과 필요한 자원은 할당되고 있는가?
- 모니터와 평가를 위한 도구들은 개발되고 있는가?
- 협약 제28조의 의미를 성인과 아동에게 광범위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 적절한 교육 및 인식제고 방안을 개발하고 있는가?(협약 제28조와 관련된 교육에는 교사, 교육행정가, 직업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 ● 제28조의 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 이슈들

- 예산이 점진적인 교육제공의 확대와 점진적인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목적에 할당되고 있는가?
- 교육정책이 모든 아동들에게 최대한도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가?
- 이 같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적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당사국은 관할지역 내 모든 아동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효과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였는가?

모든 아동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여자아동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가?

농촌지역의 아동들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가?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가?

병원에 입원한 아픈 아동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가?

이주아동과 난민아동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가?

가족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가?

유목 아동이나 집시아동 혹은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가?

학교에서 배제된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가?

모든 형태의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라면, 모든 아동들이 무상의 의무 초등교육을 제공받도록 하는 국가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초등교육은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가?

초등교육은 모든 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가?(예를 들어, 교재, 기자재 혹은 교복)

직업교육 및 일반교육을 포함한 서로 다른 형태의 중등교육을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모든 아동들에게 중등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욕구가 있는 아동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가?

의무교육이 종결되는 법적 연령과 고용이 허가되는 법적 연령은 동등한가?

학교출석을 장려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하고자 취해진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같은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아동의 가정환경은 고려되고 있는가?
- 학교의 지리적 위치와 등교시간 그리고 개교시간은 적절한가?
- 교과과정이 아동의 생활에 적합한가, 그리고 직업교육도 적절한가?
- 아동의 지적 능력 개발과 관련하여 교과과정의 적절한가?
- 아동의 모국어는 고려되고 있는가?
- 장애, 질병, 임신 등 아동의 특수한 욕구는 고려되고 있는가?
- 문화 혹은 종교적 전통과 성별 차이는 존중되고 있는가?
- 아동의 관점은 존중되고 있는가?
- 아동의 존엄성은 존중되고 있는가?
- 학습의 어려움은 확인되고 있는가? 그리고 시험탈락이나 학년 혹은 학급의 강제 유급을 예방하기 위한 도움이 제공되고 있는가?
- 교육전달과정에서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욕구와 지역공동체의 생활에서 학교와 관련된 욕구는 고려되고 있는가?
- 교사 채용의 효과성과 학교에 대한 불만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고려되고 있는가?
- 모든 형태의 학교 규정이 아동의 인간 존엄성과 양립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 신체적 처벌과 여타의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이 모든 학교의 법에서 금지되었는가?
- 신체적 처벌과 여타의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가?
-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학교 규정들이 협약과 양립하고 있는가?
  - 학교규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차별적으로 보호되지는 않는가?
  - 학교규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아동의 발달 능력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는가?
  - 학교규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일상적인 토대위에서 양부모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유지되고 있는가?
  - 학교규정에서 아동의 표현,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가?
  - 학교규정에서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가?
  -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방임, 무관심

한 처우, 학대 혹은 착취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

학교규정에 아동의 존엄성, 문화 그리고 언어에 관한 권리는 포함되어 있는가?

학교규정에 휴식과 여가의 권리는 포함되어 있는가?

학교규정에 사회통합과 재통합의 권리는 포함되어 있는가?

학교에서 학내에서의 따돌림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가?

교육프로그램에 적절한 수준의 개발지원금이 발굴되고 관리되고 있는가?

국제기술원조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교사훈련 방법은 포함되어 있는가?

과학적·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은 포함되어 있는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효과적인 전달이 포함되어 있는가?

● 주의사항

협약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협약의 모든 조항들은 상호의존 한다. 협약 제28조 역시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부분

일반원칙

제2조: 관할권내 모든 아동이 어떠한 근거의 차별도 없이 모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제3조 (1):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에 관한 모든 행동들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생명권과 가능한 최대한도의 생존과 발달권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 아동견해의 존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청문의 기회 존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항들

제28조의 이행과 관련된 조항들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15조: 연대의 자유  
제16조: 사생활의 보호  
제17조: 정보의 접근과 언론의 역할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제23조: 장애아동  
제24조: 보건의료(보건교육 포함)  
제29조: 교육의 목적  
제30조: 소수아동 또는 토착주민의 아동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  
제32조: 아동노동